

2003년도 농림사업시행지침서

2002.12



농림부

Ministry of Agriculture & Forestry
Republic of Korea



일 리 두 기

1. 이 지침서는 모두 5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농림부와 농촌진흥청(사업명 뒤에 *표시한 것) 및 산림청 소관 사업내용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2. 제1권에는 농림사업실시규정 및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에 대한 해설과 사업별 주요변경사항 및 농림사업 대출안내를 수록하였고, 제2권부터 제5권까지에는 분야별 **사업시행지침(2003년도 사업시행 요령과 2004년도 사업신청 및 자금지원대상자 선정 안내)**을 상세하게 수록하였습니다.
3. 이 지침서에 의문이 있을 때에는 가까운 시군구, 읍면동, 농산물품질관리원 출장소, 농업기술센터, 농·축·삼협·산림조합, 농업기반공사지사, 농수산물유통공사 지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사업시행지침의 2003년도 사업비는 정부예산의 국회심의나 기금사업의 계획변경과정에서 바뀌어질 수도 있습니다.
5. 각 권별 수록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1권 : 관계규정 해설 및 사업별 주요변경사항
 - 제2권 : 농업(식량작물)구조개선 분야 사업시행지침
 - 제3권 : 농업(원예·축산)구조개선 분야 사업시행지침
 - 제4권 : 농촌개발 분야 사업시행지침
 - 제5권 : 임업및산촌구조개선 분야 사업시행지침
6. 이 지침서의 내용은 인터넷 농림부홈페이지(www.maf.go.kr)에 게재되어 있으며, 개별적으로 지침서를 구입할 수도 있습니다. 개별적 구입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다음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구 입 문 의
 - 문의기관명 : 한국농림수산정보센터 총무과
 - 연 락 처 : 전화 031-299-8822~5, 팩스 031-299-8800

차 례

제1권 관계규정 해설

I. 농림사업실시규정 해설	1
1. 배경	2
2. 주요골자	3
3. 주요 변경사항	6
4. 해설	8
제1장 총칙	
제2장 자율사업	
제3장 공공사업	
제4장 신규사업의 선정절차	
제5장 보칙	
II.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해설	27
1. 배경	28
2. 주요골자	29
3. 주요 변경사항	33
4. 해설	37
III. 농림사업실시규정(농림부 훈령 제1122호)	57
IV.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농림부 훈령 제1120호)	109
V. 농림사업별 주요변경사항	135
VI. 기타주요사항	211

참고 1. 농림사업자금 대출안내

참고 2. 고품질쌀 관련 정의

제2권 농업(식량작물)구조개선

I. 생산기반확충	219
1. 영농규모화사업(자율)	220
2. 토양개량사업(자율)	269
① 토양개량제공급 ② 객토	
3. 주요농작물원원종 및 원종생산(공공)	289
4. 농경지종합정비(공공)	299
① 밭기반정비 ②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5. 경지정리(공공)	345
6. 배수개선(공공)	381
7. 수리시설개보수(공공)	405
① 수리시설개보수사업 ② 저수지 준설사업	
③ 방조제개보수	
8. 농촌용수개발(공공)	442
① 대·중·소규모 용수개발 ② 지표수 보강개발	
9. 농업생산기반정비(공공)	484
① 농업생산기반종합정비 ② 지하수 개발조사	
③ 농업용수관리자동화 ④ 해외농업환경조사	
⑤ 농업용수 수질조사·연구	
10. 농지조성(공공)	537
① 대단위농업종합개발 ② 서남해안간척사업	
11. 지역특화사업(공공)	569
II. 농업기계화	599
12. 농기계구입지원(자율)	600
13. 농기계사후관리지원(자율)	661
① 농기계 보관창고 설치 ② 농기계 수리용 부품·장비지원	
③ 중고농기계 상설판매장 설치	
14. 농기계생산지원(공공)	696
III. 생산 및 유통개선	713
15. 미곡종합처리장 설치·운영(자율)	714
16. 협동조합합병지원(공공)	740

제3권 농업(원예·축산)구조개선

I. 생산기반 확충	743
17. 고품질 우량종자개발(자율)	744
① 고품질 우량종자개발 ② 마늘경쟁력 제고지원	
II. 사육기반확충	795
18. 사료사업 지원(자율)	796
① 조사료 생산기반확충 ② 사료사업지원	
19. 축산분뇨처리시설지원(자율)	838
20. 축산 계열화사업(공공)	864
① 가축계열화 ② 경주마육성	
21. 한우사업지원(공공)	887
① 송아지생산안정사업 ② 송아지생산기지 조성사업	
③ 한우 다산장려금 ④ 거세장려금	
22. 가축개량사업(공공)	970
III. 원예 생산 및 유통개선	1025
23. 농산물 표준 규격화사업(자율)	1026
① 농산물물류표준화 ② 물류기기공동이용촉진 ③ 농산물 규격출하	
24. 농산물 산지유통활성화사업(자율)	1061
① 산지유통전문조직 지원 ② 일반조직산지유통활성화 지원	
③ 인삼출하장려	
25. 농산물산지유통기반확충사업(자율)	1096
①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시설보완 ② 인삼검사장 신축	
26. 농산물 유통시설지원(공공)	1136
① 농산물유통시설보완 ② 농산물출하촉진자금지원(도매시장, 공판장, 종합유통센터)	
27. 농수산물 소비지 유통기반확충(공공)	1160
① 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건설 ② 농산물직거래 시설지원(직거래매취)	
28. 농축산물 자조급 조성지원(공공)	1189
① 농산물 자조급 조성 ② 축산 자조활동자금 조성	
29. 채소 수급안정 사업(공공)	1199
① 계약채배사업(노지채소) ② 약정출하사업(시설채소)	
30. 농축산물 판매촉진사업(공공)	1213
31. 농산물 수출진흥사업(공공)	1218
① 농산물 해외시장개척 ② 화훼생산(수출)단지 조성	
32. 우수농수산물 지원사업(공공)	1261
IV. 축산물 생산 및 유통개선	1279
33. 축산물 품질향상(공공)	1280
① 원료돈 구매자금 지원 ② 육가공업체시설지원 ③ 규격축산물 출하촉진지원	
34. 축산물 유통개선사업(공공)	1290
① 도축도매시설 ② 가공판매시설	
③ 축산물등급판정 ④ 축협조합경제사업 활성화	
⑤ 직거래 매취사업	
35. 축산물안전성 검사 및 경영안정(공공)	1376
① 가축질병 근절대책 ② 축산물검사	
③ 가축방역 ④ 가축공제	
36. 학교 우유급식사업(공공)	1415

제4권 농촌개발

I. 생산 및 유통 개선	1425
37. 친환경농업육성(자율)	1426
① 대규모지구 조성사업 ② 소규모지구 조성사업	
③ 친환경농업시범마을 조성	
38. 농촌가공산업육성사업(자율)	1488
① 농산물가공산업육성 ② 농촌특산단지육성	
39. 농업종합자금지원(자율)	1567
II. 기술개발 및 정보화	1587
40. 농업·농촌 정보화 기반확충(자율)	1588
① 농업인 홈페이지 구축 ② 농업인 정보화교육 지원 ③ 농촌 PC보내기 지원	
④ 농립수산정보망(Affis.net)운영 ⑤ 출하지원시스템 확충	
41. 농업기술개발(공공)	1682
42. 농촌활력화*(공공)	1691
① 농업인건강관리시설치 ② 지역특화시범	
43. 기술보급*(공공)	1705
① 새기술보급시범 ② 품목별전문교육	
③ 4-H회원시범영농 ④ 농업계 특성화대학 지원	
III. 인력육성	1739
44. 후계농업인육성(자율)	1740
① 후계농업인 육성 ②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지원	
45. 농업인 자녀 지원(공공)	1807
①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② 자영농과생 급식비 지원	
46. 농업경영컨설팅지원(공공)	1823
IV. 소득보전	1867
47. 농업 직접지불제(공공)	1868
① 경영이양 직접지불 ② 친환경 농업직접지불 ③ 논농업직접지불제	
48. 농작물 재해보험 시범사업(공공)	1954
49. 농가도우미지원(공공)	1958
V. 소득원개발	1971
50. 농촌관광휴양자원개발(자율)	1972
① 농촌관광휴양자원개발 ② 녹색농촌체험활동지원	
③ 농촌전통테마마을 육성*	
51. 한계농지정비사업(자율)	2028
52. 농가경영안정지원(자율)	2041
① 농·축산경영자금 지원 ② 농업인 경영회생 지원	
53. 농공단지육성(공공)	2058
VI. 생활환경개선	2075
54. 농어촌 생활환경정비(공공)	2076
① 정주권개발 ② 문화마을조성 ③ 농촌마을하수처리시설 ④ 농가주거환경개선*	
55. 농촌농업 생활용수개발사업(공공)	2155

제5권 임업 및 산촌구조개선

I. 경영기반확충	2185
56. 산림경영장비지원(자율)	2186
① 산림경영장비지원 ② 임업기계지원센터설치	
57. 영림계획(자율)	2196
58. 사유림협업경영(공공)	2201
59. 임도시설 및 사방사업(공공)	2206
① 임도시설 ② 사방사업	
II. 생산 및 유통개선	2217
60. 임산소득증대(자율)	2218
① 단기임산물생산 기반조성 ② 조경수·분재생산 ③ 산림복합경영	
61. 임산물이용가공 및 보드류시설지원(자율)	2246
① 임산물 이용·가공지원 ② 보드류시설지원	
62. 산림조합육성(공공)	2264
63. 임산물유통개선지원(공공)	2268
① 임산물 유통구조개선 ② 임산물생산자 조직육성 ③ 임산물 저장 및 건조시설	
III. 인력육성	2313
64. 독립가 및 임업후계자 등 육성(자율)	2314
65. 임업전문인력양성 및 임업기술지도(공공)	2319
① 임업전문인력육성 ② 임업기술지도	
IV. 산림 복지기능 증진	2329
66. 산림휴양공간조성 및 산림박물관 등 조성(공공)	2330
① 산림휴양공간조성 ② 산림박물관 및 수목원 조성 ③ 생태숲 조성	
67. 산촌종합개발(공공)	2344
V. 산림자원조성	2353
68. 해외조림사업(자율)	2354
69. 산림자원조성(공공)	2361
① 조림·육림·묘목생산 ② 보호수 정비 ③ 산지목재비축 지원	

I . 생산 및 유통개선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친환경농업과(과장 배원길, 사무관 김기훈)입니다.

1. 목 적

- 상수원보호구역 또는 친환경농업 실천이 필요한 지역을 중심으로 다양한 형태의 친환경농업 실천지구 조성 지원
 - 농약·화학비료 사용량 감축과 축산분뇨 자원화를 통한 농업환경 유지·보전과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체계 구축
- 벼 재배 들녘을 중심으로 저투입농업을 실천토록 친환경농업마을조성 지원
 - 벼농사의 친환경 핵심기술인 INM·IPM실천기술 집중보급으로 저투입농업 확산

2. 시책 및 추진방향

- 친환경농업육성 5개년('01~'05)계획과 연계하여 지역여건·영농규모·작목 등에 적합한 친환경농업육성 지원
 - 저투입농업을 기반으로 저농약·무농약·유기재배 등 친환경농업 추진 목표의 단계적 향상
 - 친환경농산물 생산시설과 축산분뇨 자원화 지원, 농업인 교육프로그램 보급·지원 등
 - 친환경농업 실천능력을 갖춘 농업인 위주 지원으로 과급효과 제고 및 내실화
- 친환경 쌀 재배 확대로 고품질 쌀 생산기반 조성
- 경종과 축산이 연계하는 자연순환농업(Recycling)의 보급·확산으로 농업환경 오염원 경감(축산분뇨자원화, 푸른들가꾸기 등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등)
- 유기축산물 생산 시범사업 추진
 - 유기축산물 인증기준에 적합하게 시범사업 실시
- 친환경농산물 인증제 참여확대로 소비자 신뢰 제고

3. 근거법령

- 친환경농업육성법 제19조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92~'00	'2001	2002	2003 (예산안)	2004-2006
친환경농업육성지원		개소 1,046	550	50	44	48	354
사 업 비	계	375,558	154,452	16,726	16,130	15,630	172,620
	보 조	148,083	60,262	5,781	6,515	5,115	70,710
	국고융자	30,100	27,100	2,400	-	-	-
	지 방 비	122,699	36,496	5,345	6,389	4,989	69,786
	자 담	74,676	30,600	3,200	3,226	5,526	32,124
<대규모지구>		개소 200	18	10	12	10	150
사 업 비	계	210,000	28,000	10,000	12,000	10,000	150,000
	보 조	84,000	11,200	4,000	4,800	3,200	60,800
	지 방 비	84,000	11,200	4,000	4,800	3,200	60,800
	자 담	42,000	5,600	2,000	2,400	3,600	28,400
<소규모지구>		개소 630	500	24	14	20	72
사 업 비	계	157,500	125,000	6,000	3,500	5,000	18,000
	보 조	59,400	47,900	1,200	1,400	1,600	7,600
	국고융자	30,100	27,100	2,400	-	-	-
	지 방 비	36,500	25,000	1,200	1,400	1,600	7,600
	자 담	31,500	25,000	1,200	700	1,800	2,800
<친환경농업마을>		개소 216	32	16	18	18	132
사 업 비	계	8,058	1,452	726	630	630	4,620
	보 조	4,683	1,162	581	315	315	2,310
	지 방 비	2,199	290	145	189	189	1,386
	자 담	1,176	-	-	126	126	924

5. 2003년도 사업시행요령

① 대규모지구조성사업 (중전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

<사업개요>

(1) 사업내용

(가) 사업배경

- 상수원 보호구역 등 친환경농업 실천이 필요한 지역을 중심으로 친환경농업 실천지구를 조성하고 시설·장비를 지원하여 친환경농업 실천 기반을 구축

(나) 지원대상

○ 대상지역

- 상수원보호구역 또는 상수원에 영향을 미치는 상수원보호구역의 주변지역과 상수원보호구역외의 지역이라도 지역단위로 친환경농업 실천이 가능한 지역
- 농경지가 50ha 이상으로 집단화된 지역으로 사업참여농가가 50호 이상으로 그 지역 내 전체농가의 1/2이상이 집단적으로 참여하는 지역
- 유기농업 등 친환경농업을 실천 중에 있어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되는 지역과 지역농협 주관하에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우선 선정
- 고품질 쌀 생산기반 조성을 위해 친환경농산물 인증기준에 적합한 벼 재배 위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 우선 선정
- '95년부터 시행중인 소규모지구(중전 친환경가족농단지)로 지원받지 않은 지역을 선정하되 지역여건상 부득이한 경우 이미 지원받은 지역도 선정 가능 (다만, 동일한 시설·장비를 해당농가에 중복지원 할 수 없음)

○ 대상자

- 친환경농업지구조성을 희망하는 지역(마을)에서 사업을 원하는 농업인 또는 생산자단체 (농업·농촌기본법시행령 제3조 내지 제4조에서 정하는 기준과 범위에 적합할 것)

○ 작 목

- 벼·일반 밭작물·채소·과수·특작·축산 등 전작목 (화훼류는 제외)

(다) 지원조건

- 지원단가 : 지구당 1,000백만원

- 지원조건 : 공동 이용시설과 개별 생산시설 비율을 6 : 4로 적용

- 공동이용시설 : 국고 40%, 지방비 40%, 자부담 20%
- 개별생산시설 : 국고 20%, 지방비 20%, 자부담 60%

(라) 지원대상사업(사업메뉴)

구 분	세 부 사 업 메 뉴	비 고
<p><공동이용시설> 1. 농업환경오염 경감시설 및 장비(농약·화학비료·축산분뇨 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기자원생산에 필요한 미생물 배양시설 및 부대장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생물 배양기, 배합기, 로다, 분쇄기 등 - 목재파쇄기(툽밥제조기 포함), 팽연왕겨 제조시설 및 장비 등 ○ 친환경농자재 생산시설·장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환경농자재 생산시설·장비의 범위는 토양개량과 작물생육 및 병해충 관리를 위해서 사용이 가능한 자재(친환경농업육성법시행규칙 제7조 별표1)와 농촌진흥청에서 효과검증된 자재를 대상으로 함. ○ INM·IPM 실천에 필요한 시설·장비(성페르몬 등) ○ 천적곤충 증식 시설·장비 ○ 농산부산물을 이용한 퇴비 제조 시설·장비 ○ 축산분뇨 퇴비화 및 액비화 저장시설(살포기 등 부대장비 포함) ○ 토양개량제 및 퇴비 살포장비, 심토파쇄기 등 토양관리 시설·장비 ○ 조사료 생산시설·장비 및 폐영농자재 수거시설·장비 ○ 토양유실방지시설 및 토양검정에 필요한 장비 ○ 기타 농업환경 오염경감에 필요한 시설·장비 	
<p><개별생산시설> 2. 친환경농산물 생산시설·장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환경 쌀생산에 필요한 시설·장비(오리목책 등) ○ 환경친화적 비닐하우스(부대시설 포함), 환경친화적 축사(유기축산에 필요한 시설 포함) ○ 기타 친환경농법 실천에 필요한 시설·장비 	
<p><공동이용시설> 3. 친환경농산물 유통시설·장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냉시설, 선별기, 포장기 등 유통에 필요한 시설·장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하장 또는 공동작업장 포함 ○ 산지직판장 및 기타 계통판매에 필요한 시설·장비 	
<p><공동이용시설> 4. 친환경농업 기술 지도·교육 관련 시설·장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장, 교육용기자재(PC 등), 기타 친환경농업기술 교육에 필요한 시설·장비 	<p>마을회관 신축, 휴·폐교 임대료는 제외</p>
<p>5. 기 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계·감리비 등 부대비용 	

(마) 사업시행요령

- ① 사업자는 지역여건, 영농규모, 작목 등을 감안하여 총사업비 한도내에서 앞(라)항 지원대상 사업메뉴 중 필요한 시설·장비를 선택하여 사업을 실시하여야 함.
- ② 사업계획 수립시 친환경농산물 인증기준(유기~저농약)에 적합하게 친환경농산물이 생산될 수 있도록 투자하여야 함.
 - 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규칙(별표3)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증기준에 맞게 생산토록 지원
- ③ 고품질 쌀생산 기반조성을 위해서 친환경농법으로 쌀을 생산 할 수 있도록 투자하여야 함.
 - 무농약재배 이상 친환경 쌀 생산에 필요한 시설·장비를 설치
- ④ 토양개량과 농약·화학비료 감축을 위해 경종과 축산이 연계하는 자연순환농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축분퇴비·액비화, 푸른들가꾸기를 비롯한 조사료 생산 등
- ⑤ 앞(라)항 지원대상 사업메뉴 중 1~3항목에 중점을 두고 투자하되, 전체 사업비의 80%이상을 투자하여야 함.
 - 참여농가 전체에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여야 하며,
 - 1~5항목 중 1개 항목이 전체 사업비의 1/2를 초과할 수 없음.
 - 특히 시·도지사는 사업자가 사업비 전액을 투자하기 위해서 필요 없는 시설·장비를 설치하는 일이 없도록 지도
- ⑥ 일반 축사신축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다만, 조사료 등 자급사료 확보가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가능
- ⑦ 유기축산물(전환기 유기축산물 포함) 생산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지원 가능
 - 유기축산물(전환기 유기축산물 포함)은 친환경농산물 인증기준(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규칙 별표3)에 적합하게 생산하여야 하며,
 - 농촌진흥청 축산기술연구소에서는 유기축산물을 생산하고자 하는 지구 또는 농가에 대해서 시설 설치·관리 등 사업추진 필요한 지도를 실시하여야 함.

- ⑧ 축산분뇨자원화(퇴비·액비화)시설은 지구내 경지면적 및 퇴비(액비)필요량을 산출하여 적정 규모로 설치하여야 함
- 퇴비화시설의 경우 지구내 축산농가가 없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되, 액비화 시설은 경종농가와 축산농가간에 분뇨 공급 협약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설치 가능
 - 액비화시설 설치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
 - 농촌진흥청 축산기술연구소에서는 축산분뇨자원화(퇴비·액비화) 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기술지도 실시
- ⑨ 친환경농자재 생산시설·장비 범위는 토양개량과 작물생육 및 병해충관리를 위해서 사용이 가능한 자재(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규칙 제7조 별표1)와 농촌진흥청에서 효과 검증된 자재를 대상으로 함.
- ⑩ 친환경농산물 유통·판매시설 중 가공시설, 예냉시설·저온저장고 등은 기존시설을 최대한 활용하고 신규지원은 필요성·타당성 검증 후 지원
- ⑪ 농기계(트랙터, 콤바인 등) 및 농업용 트럭 등 일반농기계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⑫ 시설과 장비를 설치하기 위한 부지 구입비는 전체 사업비에서 제외됨.
- ⑬ 지원대상 사업메뉴 외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설과 장비에 대해서는 시·도지사 판단하에 지원이 가능함. 다만, 유기질 비료 등 소모성 자재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됨.
- ⑭ 지원대상 사업자 중 최근 5년 이내 정부(지방자치단체 포함)로부터 동일한 시설과 장비를 지원 받은 경우 지원이 불가함. 다만, 공동이용시설의 경우 규모를 확대하거나 증축시는 지원이 가능함

(2) 2003년도 사업비(예산안) 내역

사업량	사 업 비			
	사업비 합계	국고보조	지방비	자부담
개소 10	백만원 10,000 (100%)	3,200 (32%)	3,200 (32%)	3,600 (36%)

<추진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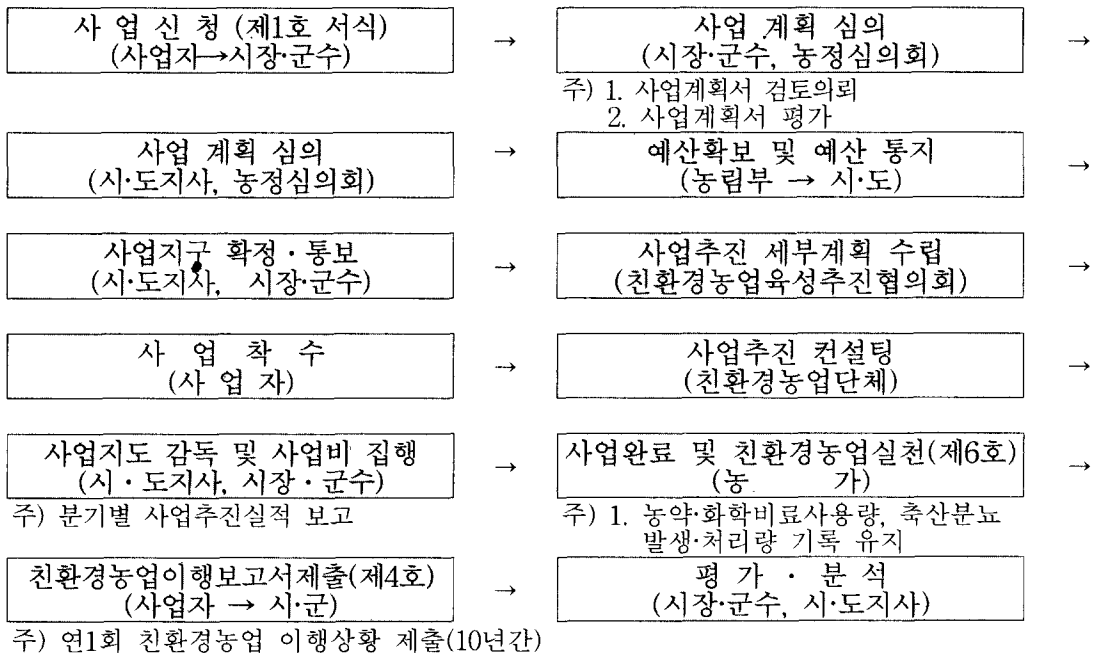
(1) 사업주관기관 : 시·도지사

(2) 사업담당부서

- 농림부 : 식량생산국 친환경농업과(02-500-1803~4)
- 시·도 : 농정국 농산과(농산유통과, 농산지원과, 농업지원과)
- 시·군 : 산업 또는 농정과

(3) 사업시행

(가) 사업시행체계



(나) 사업대상자 확정 및 사업 시행

○ 친환경농업육성추진협의회 구성·운영

- 구성 : 대표농가 2~3인, 친환경농업단체 대표(지회장 또는 지부장), 행정·지도, 농관원·농협 관계자
- 임무 : 사업자 선정 심의 세부사업계획 심사·확정, 사후관리 지도 등

○ 세부사업 계획 수립·승인

- 시·도지사는 농림부로부터 예산 통지된 사업물량 범위내에서 사업 대상지를 선정 (선정결과 보고)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사업대표농가 등과 협의하여 세부사업계획을 수립한 후 친환경농업육성 추진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계획을 승인
- 세부사업계획 수립 및 승인시 시설별(공동, 개별), 소유자(이용자)를 명시하고 지구 내 참여농가의 합의하에 추진하여야 함.
- 특히 친환경 쌀생산 관련사항을 사업계획에 반영

○ 농업환경 기초조사

- 농촌진흥청장은 사업예정지에 대하여 사업실시전에 농업환경 기초조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조사결과를 시·도, 도농업기술원 및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 사업계획 변경

- 사업참여농가 대표는 사업추진과정에서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사업추진협의회 심의를 거쳐 시장·군수를 경유,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별지 제2호 서식), 시·도지사는 변경·승인사항을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 시공업체 선정

- 사업자는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적격업체를 선정하되, 농가가 직접 시공이 가능한 시설은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 시공

○ 설 계

- 설계도가 이미 개발되어 있는 시설은 개발된 설계도에 따르고, 유사모델이 없거나 고난도 시설의 경우에는 농업기반공사 또는 건설업법상 유자격 업체가 작성한 설계서에 의해 시공
- 농가가 직접시공이 가능한 시설과 개발된 설계서의 규모를 현저히 늘리거나 변형시키기를 원할 경우에는 자체설계서를 작성하여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 시공
- 예냉시설은 이미 개발되어 있는 설계도를 이용(한국식품개발연구원 등)

○ 공사 감리

- 사업자는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시공업체 선정과 함께 농업기반공사 또는 유자격 감리업체와 사업 착수전에 감리를 계약하여 철저한 감리에 의한 부실공사를 방지하여야 함.
- 시공업체가 공사 감리를 할 수 없음.

○ 준공 검사

- 시장·군수는 사업자로 부터 준공검사 신청(별지3호서식)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시설물들이 설계도에 준하여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준공검사를 실시하고, 필요시 시장·군수는 농업기반공사의 기술지원을 받아 준공검사 실시
- * 사업자는 사업내용 중 완료된 시설·장비별로 준공검사 신청

○ 사업비 검정 및 집행·정산

- 보조금의 교부신청 및 교부결정 사무를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관련규정에 의거 시·도지사(시장·군수)에게 위임함.
- 시장·군수는 사업비의 집행 및 정산에 대한 책임을 짐.
 - 보조금 교부신청에 의해 교부된 보조금은 즉시 보조금 교부 목적대로 검정 후 시공업체에게 지급되어야 함.

- 시장·군수는 사업자 입회하여 공사 기성고에 따라 사업비를 검정후 시공업체 (농가 직접 시공시는 농가)에 지급
- 정산시는 시공업체의 공사대금 수령영수증 등의 증빙서류와 농가 직접 시공시는 공사비 산출내역 등 정산에 필요한 증빙서를 반드시 첨부 하여 정산하여야 함.
- 시장·군수는 세부 사업별로 사업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준공검사, 사업비 정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시장·군수는 사업비의 적절한 집행을 위하여 사업시행 마을 대표자 및 시공업체로부터 거래할 은행계좌를 신고받아 정산시 통장거래 내용과 입금표를 대조하여 정산하여야 함.

(다) 친환경 쌀 생산 추진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사업계획 수립·승인시 친환경 쌀 생산을 위한 세부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함.
- 지역여건과 영농규모, 참여농가의 기술수준 등을 감안하여 오리농법을 비롯한 친환경농법을 실천하도록 사업계획에 반영
- 투자계획에 축산분뇨 액비화사업, 오리목책 등 친환경농법실천에 필요한 사업비를 반영
- 농촌진흥청에서는 친환경 쌀 재배 기술지도 지침을 작성하여 기술지도를 실시하여야 함.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친환경농법으로 생산된 쌀이 재배기준에 맞게 인증을 받아 출하되도록 적극 지도하여야 함.

(라) 유기축산물 생산지원

- 시장·군수는 사업참여농가가 유기축산을 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시범사업자로 지정하고 사업계획서를 포함한 세부내역을 농촌진흥청 축산기술연구소에 통보
- 농촌진흥청 축산기술연구소에서는 시범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서 검토를 포함한 기술지도를 적극 실시하여야 함.

- 농촌진흥청 축산기술연구소에서는 유기축산농가 교육용 지침을 작성하여 사업시행 전 대상농가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축산기술연구소에서 자체 지도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추진상황 점검 등 기술지도 관리업무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
- 유기축산물(전환기 유기축산물 포함) 인증기준에 따라 생산될 수 있도록 함.

(마) 축산분뇨 액비화시설

- 농촌진흥청(농업과학기술원, 축산기술연구소)은 축산분뇨 액비화시설이 살포 대상면적 등을 고려 적정규모로 설치되도록 지도
- 특히, 액비 살포대상 농경지의 토양검정 및 살포량, 살포시기 등 사용기술 지도 적극실시

(4) 기타사항

- “지구(지역)” 개념에 충실하기 위하여 지구내에 거주하는 농업인을 사업 대상으로 하고, 시설·장비의 설치는 지구(사업지)내에서 이루어져야 함.

< 행정사항 >

(1) 사후관리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사업계획서의 세부사업별 추진일정에 따라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하고 분기별 사업추진상황을 파악하여 그 결과를 농림부장관에게 보고(별지 제1호 서식)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대규모지구(종전 친환경농업지구)조성사업으로 취득한 시설·장비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전담책임자를 지정하고 “관리 카드”를 비치·기록·유지 등 사후관리 감독 철저
-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사업자가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선량한 관리 의무를 다하도록 지도해야 함.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재 산 명	사후관리기간		처분 제한 기준	비고
	부 터	까 지		
○ 대규모지구(중전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으로 취득한 시설	시설설치 완료시부터	10년간	○ 친환경농업 이행기간 및 장비 내구연한을 감안 - 보조금을 지원 받은 사업자는 10년간(장비는 5년)타인에게 시설을 양도를 할 수 없음.	
○ " 장비	장비구입시 부터	5년간	○ 단, 불가피한 사유 발생시에는 농림부장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대규모지구(중전 친환경농업지구)로 지원된 공동이용시설 및 장비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공동이용시설 운영 약관”을 만들어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대규모지구(중전 친환경농업지구)의 운영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대상에 포함 경영컨설팅이 실시 되도록 추진
- 참여농가
 - 참여농가는 친환경농업실천기록대장(별지 제4호 서식)을 개인별로 기록 유지하여야 함.
 - 참여농가는 매월 농약·화학비료의 사용량과 축산분뇨의 발생·처리이용량을 기록하여 대표자의 확인(분기 1회)을 받아 비치하여야 함.
 - 유기축산물 생산참여농가는 친환경농산물인증기준(친환경농업육성법시행규칙 별표 3) 유기축산물(전환기유기축산물 포함) 인증기준에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시·군 농업기술센터

- 시·군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농촌진흥청에서 조사한 농업환경기초조사 결과를 토대로 매년 지구내 농업환경변동실태(토양, 수질 등 성분분석) 조사요령에 따라 시료를 채취하여 분석하고, 그 결과를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함.
-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소속직원을 기술지도 전담자로 지정하여 농약안전사용, 작물별 시비추천량 준수, 토양정밀검정에 의한 시비개선, 종합농토배양 및 농산부산물 이용방법 등 친환경농업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기술지도를 실시하여야 함.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출장소장)은 매년 지구내 생산물(벼 등 대표작물)의 수확기에 관련규정에 따라 농약잔류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함.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출장소장)은 소속 직원을 기술지도 전담자로 지정하고 사업참여 농업인의 친환경농업 실천기술 및 품질관리 지도를 적극 실시하여야 함.
- 사업참여 농가에서 재배조건에 맞는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도록 적극 지도

○ 농 협

- 지역농협장은 대규모지구(종전 친환경농업지구) 참여농가에 판매한 농약·화학비료량을 수시로 파악하여야 함.
- 지역농협장은 대규모지구에서 생산한 농산물의 원활한 판매를 위하여 농협 자체유통망 이용 알선, 친환경농산물 판매시설 이용, 위탁판매 주선, 민간 단체와 직거래 알선 등 유통·판매 지원과 판매 홍보를 강화하여야 함.

○ 농촌진흥청(축산기술연구소)

- 유기축산물생산 사업대상농가에 대해서 유기축산물 생산관리 지도지침을 작성하여 사업시행전 교육을 실시함과 아울러 기술지도를 실시하여야 함.
- 또한, 사업대상농가의 사업추진상황을 수시 점검 및 지도를 실시하여야 함.

○ 친환경농업단체

- 친환경농업실천 기술지도, 경영컨설팅 참여 등 지구내 참여농가에 대한 기술과 경영지도에 적극 참여하여야 함.

○ 시장·군수

- 시장·군수는 사업자가 친환경농업 이행보고서를 제출하면 농업기술센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협 등 관련기관과 협조하여 현지확인을 거쳐 친환경농업 이행상황을 평가 분석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등 사후관리·지도를 철저히 하여야 함.
- 친환경농업단체에서 사업추진협의회 및 기술지도, 경영컨설팅에 참여토록 적극 조치하여야 함.

○ 시·도지사

- 시·도지사는 사업지구의 친환경농업 이행상황을 평가·분석하여 친환경 농업 이행보고서를 다음년도 2월말까지 농림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사업지구를 친환경농업 교육장으로 적극 활용하는 등 친환경농업을 전파시켜 나가야 함.

(2) 보 고

○ 분기별 사업추진상황 보고(별지 제1호 서식)

- 시·군 → 시·도 → 농림부
(매분기 익월 5일까지) (매분기 익월 10일까지)

○ 친환경농업 이행보고(별지 제5호 서식)

- 사업자 → 시·군 → 시·도 → 농림부
(1.31.까지) (2.15.까지) (2.28.까지)

○ 보조금의 검정 및 정산결과 보고

- 시·군 → 시·도 → 농림부
(익년3.20.까지) (익년3.30.까지)

(별지 제1호 서식)

심 사 제 외

(/ 분기)사업 추진상황 보고

1. 지구명 :
2. 소재지 :
3. 대표농가 성명 : (외 명)

사업계획	추진실적	향후추진계획	비고(내용별로 구체적으로)

※ 다음분기 10일까지 농림부에 보고(시장·군수 → 시·도지사 → 농림부)

(별지 제2호 서식)

사업계획 변경신청서

1. 주 소(사업지구 명칭) :
2. 주 민 등 록 번 호 :
3. 성 명 :
4. 사 업 변 경 내 용 :

사업계획(당초)		변 경		사 유
시설별	금 액	시설별	금 액	

위와 같이 사업을 변경 추진코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 ○ ○(인)

시 · 도 지 사 귀 하

※ 시장·군수를 경유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사업(시설)을 변경할 수 있으며, 시·도지사는 주요기본계획 변경·승인사항을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별지 제3호 서식)

대규모지구조성사업 준공검사 신청서

지 구 명		위 치		T E L	
대표자성명		사업내용			
사업기간	. . 부터 . . 까지	완료일자			
신 고 인	주 소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대규모지구조성사업 ○ ○ ○시설의 준공검사를 붙임과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시장·군수 귀하					
* 붙임 : 시설물공사 세부내역 1부					

(별지 제4호 서식)

친환경농업실천 기록대장

(농가명 :)

일자별	농 약 사 용				화 학 비 료 사 용				축 산 분 뇨			대 표 농 가 확 인 (인)
	대상 작물	면적 (ha, 평)	농 약 품목명	사용량 (kg)	대상 작물	면적 (ha, 평)	비료명	사용량 (kg)	축종 (두수)	발생량 (톤)	치 리 이용량 (톤)	

※ 축산분뇨 월 발생량 : 한우(마리수) × 438kg
 젓소(“) × 1,368kg
 돼지(“) × 258kg
 닭 (“) × 3kg

※ 참여농가는 매월 농약·화학비료 사용량과 축산분뇨 발생·처리이용량을 기록하여 대표농가의 확인(분기 1회)을 받아 농가별로 비치할 것

(별지 제5호 서식)

친환경농업이행보고서

항 목 별		사업시행전(A)	사업후(1년차)(B)	대비(B/A)	비고
① 농 약	사 용 량	kg	kg		%	
② 화학비료 사용량		kg	kg			
유기질비료(퇴비등) 사용량		kg	kg			
③ 축산분뇨(처리량/발생량)		() / () 톤	() / () 톤			
④ 친환경농업 유자개량 (토양)	산 도					
	유 기 물	%	%			
	규 산	ppm	ppm			
	중 금 속	ppm	ppm			
⑤ 친환경농법	유기농업	농가	농가			
	자연농업					
	오리농업					
	우렁이농법					
	·					
⑥친환경인증	유기 재 배	호 톤	호 톤			
	무농약재배					
	저농약재배					

년 월 일

○○ 시장·군수 귀하

보고서 제출자 :

- 주 소 :
- 주민등록번호 :
- 성 명 : (인)

※ 대표자는 매년 친환경농업이행 보고서를 사업 1년차 부터 10년차까지 익년 1.31. 까지 시장·군수에게 제출

※ ④의 전항은 시·군 농업기술센터가 시험·분석한 성적표를 첨부할 것

② 소규모지구조성사업
(중전친환경가족농단지 조성사업)

<사업개요>

(1) 사업내용

(가) 사업배경

- 상수원보호구역 및 중산간지내 중소규모 농가가 친환경농업을 통해서 고품질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여 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95년도부터 사업 시작

(나) 지원대상지역

- 상수원보호구역(기타 환경규제지역 포함) 및 중산간지
- 시장·군수가 친환경농업 확산을 위해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 외 지역도 지원가능

(다) 지원대상자

- 소유농지 2.0ha 이하인 농가로서 10농가 이상으로 구성된 영농조직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등 포함)
 - 단지조성 여건상 부득이한 경우 시장·군수가 판단하여 소유농지 2.0ha 이상인 농가가 일부 참여하거나, 10농가 이하(최소 5농가 이상)로 구성된 영농조직에 대해서 지원 가능 (이 경우 구체적인 사유를 기재하여 사업계획서에 첨부)
- * 농업인 또는 생산자단체는 농업·농촌기본법시행령 제3조 내지 제4조에서 정하는 기준과 범위에 적합할 것
- 유기농업을 비롯한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면서 친환경 쌀 등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가가 대표농가로 참여하는 경우 우선 선정
- 사업참여 영농조직에는 벼 재배농가가 반드시 포함(벼 재배면적이 없는 지역은 제외)되어야 함.

(라) 지원대상 작목 : 벼, 일반농산물, 채소, 과수, 특작, 축산(단, 화훼는 제외)

(마) 지원조건

- 지원단가 : 단지당 250백만원 이내
- 지원조건 : 공동 이용시설과 개별 생산시설 비율을 6 : 4로 적용
 - 공동이용시설 : 국고 40%, 지방비 40%, 자부담 20%
 - 개별생산시설 : 국고 20%, 지방비 20%, 자부담 60%

(바) 지원 사업메뉴(시설·장비)

지 원 사 업 메 뉴		지원한도
계		250백만원
○ 농업 환경오염 경감, 유통 시설 ·장비 (공동이용시설)	○ 토착미생물 생산시설 및 부대시설·장비류 ○ 유기자원 생산시설·장비(목재파쇄기, 톱밥제조기 등) ○ 친환경농자재 생산시설·장비 (목초액 등) ○ 축산분뇨 퇴비·액비화시설 및 장비 ○ 예냉시설, 선별기, 포장기 등 유통에 필요한 시설·장비(집하장 또는 공동작업장 포함) ○ 산지직판장 및 기타 계통판매에 필요한 시설·장비 ○ 기타 친환경농업 실천에 필요한 시설·장비 (심토 파쇄기, 퇴비살포기, 유통·판매시설 등)	150
○ 친환경 농산물 생산시설·장비 (개별생산시설)	○ 환경친화형 비닐하우스 (비가림시설 포함) ○ 환경친화형 축사 (유기축산물 생산 포함) ○ 친환경쌀 생산에 필요한 시설·장비 (오리목책 등) ○ 기타 친환경 농산물생산에 필요한 시설·장비	100

(사) 사업시행요령

- ① 사업자는 총 사업비(250백만원)내에서 지역특성, 영농여건, 작목 등을 고려 (바)항의 지원사업 메뉴중에서 필요한 시설·장비를 선택하여 사업계획을 수립 추진
 - 사업계획 수립시 농업환경오염 경감시설·장비와 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 시설 및 장비의 지원한도를 준수하되,
 - 시장·군수가 영농여건, 작목 등 사업내용 등을 감안하여 지원한도의 준수가 어려운 경우 조정 가능

- ② 시장·군수는 사업참여농가가 친환경농법으로 쌀을 생산하도록 하고 이를 사업계획에 반영하도록 하여야 함.
 - 친환경농법 실천에 필요한 사업비를 투자계획에 반영
 - 친환경농법으로 생산된 쌀은 재배기준에 맞게 인증을 받아 출하하도록 지도
- ③ 사업자는 사업계획 수립시 친환경농산물 인증기준(유기~저농약)에 적합하게 친환경농산물이 생산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④ 토양개량과 화학비료 감축을 위해서 경종과 축산이 연계하는 자연순환 농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축분퇴비·액비화, 푸른들가꾸기를 비롯한 조사료 생산 등
- ⑤ 일반 축사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다만, 조사료 등 자급사료 확보가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가능 .
- ⑥ 유기축산물(전환기유기축산물 포함) 생산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지원 가능
 - 유기축산물(전환기유기축산물 포함)은 친환경농산물 인증기준(친환경 농업 육성법시행규칙 별표3)에 적합하게 생산하여야 하며,
 - 농촌진흥청 축산기술연구소에서 유기축산물을 생산하고자 하는 농가에 대해서 시설설치, 기술지도 등 필요한 사항을 중점 지도를 하여야 함.
- ⑦ 축산분뇨 퇴비·액비화 시설은 퇴비 또는 액비 생산량과 수요량을 감안하여 적정규모를 설치하여야 함.
 - 퇴비화 시설의 경우 지구내 축산농가가 없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되, 액비화 시설은 경종농가와 축산농가간에 공급협약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설치 가능
 - 액비화 시설 설치로 인하여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농촌진흥청 축산기술연구소에서 액비화 시설 설치 및 사용지도 실시
- ⑧ 친환경농자재 생산시설·장비의 범위는 토양개량과 작물생육 및 병해충 관리를 위해서 사용이 가능한 자재(친환경농업육성법시행규칙 제7조 별표1)와 농촌진흥청에서 효과 검증된 자재를 대상으로 함.
- ⑨ 농기계(트랙터, 콤팩트 등) 및 농업용 트럭 등 일반농기계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⑩ 친환경농산물 유통·판매시설 중 가공시설, 예냉시설·저온저장고 등은 기존시설을 최대한 활용하고 신규지원은 필요성·타당성 검증 후 지원
- ⑪ 시설 설치를 위한 부지 구입비는 전체 사업비에서 제외됨

(2) 2003년도 예산내역

사업량	사업비			
	사업비계	국고보조	지방비	자부담
개소 20	백만원 5,000 (100%)	1,600 (32%)	1,600 (32%)	1,800 (36%)

<추진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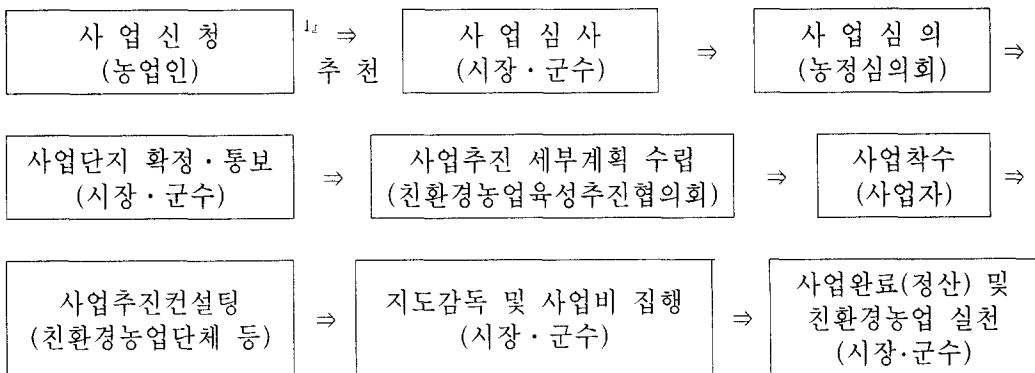
(1) 사업주관기관 : 시장·군수

(2) 사업담당부서

- 농림부 : 식량생산국 친환경농업과 (☎ 02-500-1803~4)
- 시·도 : 농정국 농산과(농업지원과, 농산지원과, 농산유통과)
- 시·군 : 산업·농정과

(3) 사업시행

(가) 사업시행 체계



1] 추천기관 : 농업기술센터, 농산물품질관리원, 농협, 친환경농업단체 등

(나) 친환경농업육성 추진협의회 구성·운영

○ 친환경농업육성추진협의회 구성·운영

- 구성 : 참여농가대표 2~3인, 친환경농업단체(지회장 또는 지부장), 행정·지도·농관원·농협 관계자
- 임무 : 사업자 선정심의, 세부사업계획 심사, 사후관리, 지도 등

○ 세부사업계획 수립

- 시설별(공동·개별) 소유자(이용자)를 명시하고, 단지 참여농가의 합의하에 세부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사업대상 및 사업계획 변경

- 농정심의회 심의를 거쳐 확정·승인된 사업대상지구(참여농가 포함)의 변경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업참여 농가대표가 시장·군수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함.
- 사업장 변경시 읍·면·리 동간 변경은 시장·군수, 시·군간 변경은 시·도 지사가 변경신청을 받아 승인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변경 승인한 사항을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다) 유기축산 생산 지원

- 시장·군수는 사업참여 농가가 유기축산을 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시범사업자로 지정하고 사업계획서를 포함한 세부내역을 농촌진흥청 축산기술연구소에 통보
- 농촌진흥청 축산기술연구소에서는 시범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서 검토를 포함한 기술지도를 적극 실시하여야 함.
- 농촌진흥청 축산기술연구소에서는 유기축산농가 교육용 지침을 작성하여 사업시행 전 대상농가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축산기술연구소에서 자체 지도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추진상황 점검 등 기술지도 관리업무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
- 유기축산물(전환기 유기축산물 포함) 인증기준에 따라 생산될 수 있도록 함.

(라) 축산분뇨 액비화시설

- 농촌진흥청(농업과학기술원, 축산기술연구소)은 축산분뇨 액비화시설이 살포 대상면적 등을 고려 적정규모로 설치되도록 지도
- 특히, 액비 살포대상 농경지의 토양검정 및 살포량, 살포시기 등 사용기술 지도 적극실시

(마) 시설설계

- 환경친화형 하우스는 이미 개발되어 있는 농가보급형 하우스(예: 1-2W형, 무기둥형 등)를 선택하도록 하되, 참여농가가 타 모델을 설치코자 하는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농가 자율선택 가능
- 환경친화형 축사 (유기축산에 필요한 시설 등)
 - 이미 개발되어 있는 『가변형축사표준설계도』 또는 (사)한국유기농업협회, (사)한국자연농업협회가 공동 개발 보급한 『유기·자연농업형 축사설계도』를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시공 가능
 - 유기축산물 생산관련 시설은 농촌진흥청 축산기술연구소의 기술지도를 받아 시공
- 예냉시설
 - 이미 개발되어 있는 예냉시설 설계도를 이용(한국식품개발연구원의 설계도)
- 토착미생물생산시설
 - 자체설계도 작성 시공
- 신규사업 발굴에 따른 기타시설
 - 유사모델이 있을 경우 또는 농가에서 직접 제작이 가능한 간단한 시설의 경우에는 시장·군수의 승인을 얻어 시공하되, 유사모델이 없거나 고난도 시설의 경우에는 친환경농업육성추진협의회 심의를 거쳐 건설업법상 유자격업체가 작성한 설계서에 의해 시공
- 기존시설의 최대한 활용
 - 시장·군수는 예냉시설, 냉장차 등을 지원할 경우에는 생산품목, 출하물량, 주변여건 등을 감안하여 인근의 기존 예냉시설, 냉장차를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중복 또는 과잉 투자되는 일이 없도록 함.

(바) 시공업체 선정

- 대표농가가 시장·군수와 협의, 적격 시공업체를 선정하여 시공하되 농가에서 직접 시공이 가능한 간단한 시설은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 자체 시공

(사) 준공검사

- 시장·군수는 시설물이 설계도에 맞게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준공검사를 실시하고 필요할 경우 시장·군수는 농업기반공사의 기술지원을 받아 준공검사 실시

(아) 사업비 검정 및 집행·정산

- 보조금의 교부신청 및 교부결정 사무는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 법률』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 관련규정에 의거 시·도지사(시장·군수)에게 위임함.
- 시장·군수는 사업비의 집행 및 정산에 대한 책임을 짐.
 - 보조금 교부신청에 의해 교부된 보조금은 즉시 보조금 교부 목적대로 검정 후 시공업체에게 지급되어야 함.
 - 시장·군수가 사업자대표 임회하여 공사 기성고(설계서를 요하는 정도의 건축물 기성고는 전문직이 확인)에 따라 검정후 사업비를 시공업체 (농가 직접 시공시는 농가)에 지급
 - 정산시는 시공업체의 공사대금 수령영수증 등의 증빙서류와 농가 직접 시공시는 공사비 산출내역 등 정산에 필요한 증빙서를 반드시 첨부하여 정산하여야 함.
 - 시장·군수는 세부 사업별로 사업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준공검사, 사업비 정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시장·군수는 사업비의 적절한 집행을 위하여 사업자대표 및 시공업체로부터 거래할 은행 계좌를 제출받아 정산시 통장거래 내용과 입금표를 대조하여 정산
- 시장·군수는 사업추진에 필요한 회의비, 유인비 등 필요한 경비는 자체 예산을 확보하여 집행

(4) 기타사항

- 소유농지 토지대장상 논, 밭의 소유 개념이며 동일거주인(처, 부모)은 동일인으로 간주함.

<행정사항>

(1) 사후관리

- 시장·군수는 지구내 공동이용시설의 운영활성화를 위해서 “공동이용시설·운영 약관”을 만들어 비치하여야 함.
- 시장·군수는 시·군단위 친환경농업육성 추진협의회를 구성하고 사업자 선정, 사업계획 심의 및 확정, 운영활성화방안 수립 등 사후관리 지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
- 유기축산물(전환기유기축산물 포함) 생산농가로 선정·지원된 농가는 친환경농산물 인증기준(친환경농업육성법시행규칙 별표3)을 준수하여 유기축산물을 생산하여야 한다.
- 농촌진흥청 축산기술연구소는 유기축산물 생산농가에 대한 기술지원 등 사후관리를 하여야 함.
- 토착미생물을 이용하여 생산된 유기질비료는 자가소비를 원칙으로 하되 판매시는 비료관리법 제11조에 의한 생산업 등록을 받아서 판매하여야 함.
- 생산된 친환경농산물은 반드시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아 출하토록 적극 지도하여야 함.
- 추천단체는 사업장에 대한 기술·경영지도를 실시하고 그 실적을 다음해 3월말까지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군수는 기술·경영지도 실시 내용을 확인하여야 함.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지구가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년1회 이상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시정 또는 사업비 회수 명령을 할 수 있음.
- 보조금으로 취득한 시설·장비는 사후관리 기간내에 농림부장관의 승인없이 타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관리

재 산 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비 고
	부 터	까 지		
동사업(보조금)으로 취득한 시설·장비	준공·구입 후	시설 10년, 장비 5년	타용도 및 사업 목적외에 사용 금지	시장·군수는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사후관리 사항 등을 기록

- 중요재산의 관리는 시·도지사(시장·군수)에게 위임함.

(2) 보고 기타

○ 사업계획 보고

- 시·군 $\xrightarrow{\text{(2월20일까지)}}$ 시·도 $\xrightarrow{\text{(2월말까지)}}$ 농림부

○ 사업추진상황 보고

- 시·군 $\xrightarrow{\text{(4월20일, 9월20일까지)}}$ 시·도 $\xrightarrow{\text{(4월말, 9월말까지)}}$ 농림부

○ 보조금의 검정 및 정산결과

- 시·군 $\xrightarrow{\text{(익년 3월20일까지)}}$ 시·도 $\xrightarrow{\text{(익년 3월말까지)}}$ 농림부

③ 친환경시범마을조성

<사업개요>

(1) 사업내용

(가) 사업배경

- 농약과 화학비료의 사용량을 절감할 수 있는 IPM·INM 실천기술 보급을 통한 농업 환경보전과 안전한 쌀 생산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서 '99년부터 시행

(나) 사업개요

- 마을·들녘단위로 50ha이상 집단화된 벼 재배면적을 중심으로 친환경농업 마을을 지정하고 벼농사의 친환경 핵심기술인 INM·IPM기술을 3년간 집중보급 지원하여 농업인 스스로 친환경농업(저투입농법)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
- 친환경농업마을을 농업인 교육장으로 활용토록 교육·훈련실시

(다) 지원대상

- 마을·들녘단위로 50ha이상 집단화된 벼 재배지역에서 친환경농업마을 조성사업을 원하는 농업인 또는 생산자 단체(대상면적을 가급적 100ha 수준으로 확대하여 조성)

(라) 지원단가 및 지원조건

- 지원단가 : 개소당 35백만원
- 지원조건 : 국고보조 50%, 지방비 30%, 자담 20%

(2) 2003년도 사업비(예산안) 내용

사업명	사업량	사업비			
		사업비	국고보조	지방비	자부담
친환경농업마을조성	개소	백만원			
	18	630 (100%)	315 (50)	189 (30)	126 (20)

<추진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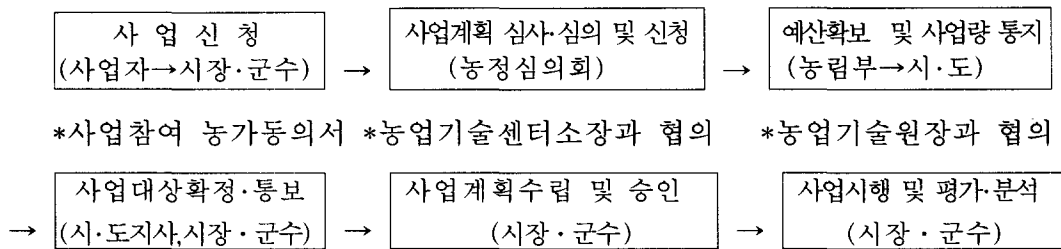
(1) 사업주관기관 : 시장·군수 (농업기술센터소장)

(2) 사업담당부서

- 농림부 친환경농업과(전화 : 02-500-1803~4)
- 농촌진흥청 식량작물과(전화 : 031-299-2715~6)
- 도 : 농산담당과(농업기술원)
- 시·군 : 산업·농정과(농업기술센터)

(3) 사업시행

(가) 사업시행체계



(나) 사업계획 수립

- 시장·군수(농업기술센터소장)는 사업대상마을 선정후 참여농업인을 대상으로 INM·IPM실천기술 등 사업추진요령에 대해서 사전 교육을 실시
- 시장·군수(농업기술센터소장)는 참여농가수 및 재배면적, 재배기술정도등 지역영농여건을 고려하여 세부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참여농업인이 친환경농업을 실천토록 지도
 - 전담지도팀 구성·운영, 친환경농업마을 운영협의회 구성·운영 및 친환경농업실천협약서 이행 기록유지 지도 등
 - 친환경농업마을에서 생산된 쌀은 재배기준에 맞게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아 출하토록 지도

(다) 전담지도팀 구성 및 임무

○ 지역지도팀 : 10명 이내

- 팀장 : 농업기술센터소장(시·군 담당과장 협조)
- 반원 : 농업기술원 분석요원을 포함하여 2명, 시·군, 농업기술센터, 읍·면, 농협, 대학, 민간 전문가 등 각1명

<주요임무>

- 사업계획 수립(별지1호서식 참조) 및 승인 요청
 - 사업비(지도운영비, 조사재료비, 친환경농업실천비)의 교부신청 및 사업비 관리의 총괄
 - 시범마을 영농실태조사 및 토양, 용수, 생물상 등 농업환경 변동 실태조사
 - 조사·분석이 어려운 항목은 농업기술원 또는 중앙지원팀에 의뢰
 - 협약서 작성, 재배력 작성, 영농단계별 기술지도계획 수립
 - ※ 참여농가의 협약·자도 불이행시 실천비 지급중지 등 조치를 할 수 있음
 - 농업인 교육·평가회, 마을 운영협의회 구성지도
 - 중앙기술지원팀과의 기술·조사·분석 지원요청 및 협조
 - 사업(지도)결과 보고서 작성제출 등
- 중앙기술지원팀 구성 및 임무
-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원, 작물시험장, 호남농업시험장, 영남농업시험장 등의 소속 관계전문가로 구성

<주요임무>

- 지역 지도팀에 대한 기술 및 농업인 교육 지원
- 재배기술, INM·IPM기술, 경영분석기술 등

(라) 친환경농업마을 운영협의회 구성 및 임무

○ 마을회의 등을 통하여 5-6명으로 구성

<주요임무>

- 마을의 의사결정 및 지역지도팀과의 연락유지
- 사업참여농가의 영농계획 파악 및 친환경농업 실천기록 유지
- 친환경농업실천 협약서 작성 및 홍보(표찰설치 등) 등

(마) 참여농가의 임무

- 친환경농업실천협약서 이행 및 기록유지
- 사업목적 달성을 위하여 지역지도팀의 지도를 받아야 함.
 - * 참여농가에서 농약·화학비료 사용대장 기록 유지, 시비처방에 따른 토양 개량, 교육참여, INM·IPM 실천기술 등 친환경농업 이행 추진
- 지력증진을 위한 농토배양사업 추진
 - 사료·녹비작물 재배
 - 볏짚시용, 규산질비료시용, 기타유기질시용(액비, 퇴비 또는 유기질비료)

(바) 사업비 집행방법

- 지역지도팀의 팀장(농업기술센터소장)은 집행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에게 사업비를 교부신청하고, 각각의 사업비를 집행
 - 현지출장지도비, 교육·홍보비 등 지도팀(중앙지원팀 포함)의 운영비
 - 토양(비옥도, 농약잔류, 중금속), 용수, 생물상 등 조사에 필요한 시약·실험자재 구입 등 조사재료비
 - 교육이수, 사료·녹비작물 종자대 지원, 규산질비료 공급, 환경친화형비료 등 친환경농업에 필요하여 농가에 직접 지원하는 비용
 - * 항목별로 1/3수준으로 집행하고, 사업규모(대상면적)에 따라 사업내용간 상호 조정이 가능함.
- 각 팀은 사업비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증빙서류를 팀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4) 사업비 검정 및 집행·정산

- 사업비 지원방법
 - 보조금의 교부신청 및 교부결정 사무를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관련규정에 의거 시·도지사(시장·군수)에게 위임함.
 - 시장·군수는 사업비의 집행 및 정산에 대한 책임을 짐.
 - 보조금 교부신청에 의해 교부된 보조금은 교부 목적대로 지역지도팀에게 보조금 검정 후 지급하여야 하며, 지역지도팀장은 거래할 은행계좌를 개설하여 정산함.
 - * 시장·군수는 사업비 집행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가급적 시·군농업기술센터 소장에게 위임.

<행정사항>

(1) 사후관리

- 사업마을로 지정되면 3년간 계속 지원을 하기 때문에 지역지도팀장은 친환경 농업실천기록대장, 농업환경 변동실태조사 결과, 사업(지도)결과 보고서 등 관계자료를 보존하여 다음해 사업추진에 활용하여야 함.
- 친환경농업마을에서 생산된 쌀은 재배기준에 맞게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아 출하하도록 지도하여야 함.

(2) 보고·기타

- 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상황 결과보고
 - 전담 지도팀→시장·군수→시·도지사→농림부장관
- ※ 농촌진흥청장은 사업기간 중 매년 전국단위의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농림부장관에 제출

사업계획서에 포함할 내용

1. 일반현황

- 사업대상지 : 대표자 :
- 농경지면적 : ha(논 ,밭)
- 농 가 수 : 호(인구 명)
- 벼 재배면적 : ha(품종별 ; , , ,)
- 기타 영농여건

2. 사업계획

- 시범마을 영농전 실태조사 실시
 - 토성, 토심, 지하수위, 지형 등 지역적 여건 및 병해충발생, 농약·화학비료 사용량, 재배기술수준 등 영농실태
 - 필지별 토양정밀검정 실시(시비처방서 발부)
- 생육단계별 영농지도 계획
 - 양질다수성 품종선택, 토양개량, 못자리설치 및 관리, 적기 모내기 및 포기수 확보, 물관리, IPM·INM기술 등
- 농업인 훈련계획 : 연 4회이상
- 시범마을 농업환경 변동 실태조사 계획
 - 조사시기 : 연중 2회(영농전3~4월, 수확후10~11월)
 - * 조사방법 및 분석은 농촌진흥청 시험분석요령에 의함
 - 조사항목 : 토양(비옥도, 농약잔류, 중금속 등), 용수(pH, COD, 무기염류 등) 시범마을의 생물상 등
 - * 조사분석 결과는 지도자료로 활용하고 중앙지원팀에 제공
- 시범마을 운영협의회 구성과 협약서 작성
- 회의록, 농약·화학비료 사용대장 등 기록유지 지도계획
- 사업(지도)결과 보고서 작성계획 등

3. 세부사업 추진계획 및 사업추진 일정

항 목	세 부 사 업 계 획	사업비	추진일정	실시기관

* 붙임 : 사업비 산출내역

6. 2004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본 사업시행지침은 2004년도에 변경·수정·보완될 수 있음.

가. 대규모지구조성사업(종전 친환경농업지구조성사업)

(1) 신청서 제출기관 : 시·군

(2) 신청자격

- 2003년도 사업시행요령 <사업개요>(나)항의 지원대상기준에 맞아야 함

(3) 사업신청 및 선정절차

-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자(또는 지역농협)는 지역농업여건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사업계획서(첨부서류 포함)를 작성한 다음 시장·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함.

- 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 : 아래(4)항의 구비서류 참조

- 시장·군수는 사업계획서가 제출되면 사업계획서를 심도 있게 검토(현장확인 포함)한 다음 시·군 단위 농정심의회 심의를 거쳐 적격자를 선정하여야 함.

- 사업계획서 검토시 농업기술센터, 농산물품질관리원, 농협 등 관련기관·단체로부터 소관사항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출받아 이를 종합하여 검토의견서 작성

- 농업기술센터 : 지역농업여건, 참여농업인의 기술정도, 친환경농업실천 정도 및 사업성
- 농산물품질관리원 : 인증 참여상황, 친환경농산물 생산여건 및 사업성
- 농협 : 유통·판매사업 수행능력 및 시설·장비 보유상황, 참여농가 채무 상황 등
- 농촌진흥청 축산기술연구소 : 축산분뇨퇴비·액비화계획, 유기축산물(전환기유기축산물 포함)생산계획 등

- 아울러 사업계획서 평가기준에 따라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고 평가보고서(붙임5)를 작성

<사업계획서 평가기준>

구 분	세부평가항목	평가방법 및 배점기준	비 고
①지역농업여건 및 사업참여상황 등 (30점)	㉗사업예정지 위치 (5점) ㉘참여농가수 및 농경지 면적(5점) ㉙사업참여 형태 (5점) ㉚사업참여농경지 집단화 정도(5점) ㉛사업예정지 비 재배 면적 비율(10점)	○ 상수원보호구역등 환경규제 지역 : 5 ○ 일반지역 : 3 ○ 50호이상, 100ha이상 : 5 ○ 50호이상, 100~50ha이하 : 3 ○ 50호이상, 50ha미만 : 1 ○ 지역농협 : 5 ○ 생산자단체 : 4 ○ 작목반 등 영농조직 : 2 ○ 개별농가(비조직화) : 1 ○ 100% : 5 ○ 100~80%이하 : 4 ○ 80~50%이하 : 3 ○ 50%미만 : 1 ○ 80%이상 : 10 ○ 80~50%이하 : 5 ○ 50%미만 : 1	○ 지역농협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경우 ○ 사업참여농가 소유농경지의 연결·집단화 정도 ○ 사업예정지 전체 면적 대 비재배 면적 비율

구 분	세부평가항목	평가방법 및 배점기준	비 고
② 사업계획 수립의 적정성 (40점)	㉓ 세부매뉴사업별 투자계획의 적정성(10점) ○ 참여농가 전체를 대상으로 한 투자여부 ○ 친환경농산물 인증기준(유기~저농약)을 고려한 투자 계획 수립 여부 ㉔ 축산분뇨 및 농산부산물을 이용한 퇴비·액비화 사업 계획의 적정성(10점) ○ 경종과 축산을 연계한 자연순환농업 실천여부 ○ 축산분뇨 발생량과 처리량을 고려한 적정규모 설치 여부 ㉕ 농약·화학비료 경감을 위한 시설·장비 설치계획의 적정성(10점) ○ 미생물 배양시설의 적정규모 설치 여부 ○ 친환경농자재 생산시설·장비의 적정여부 ○ 푸른들가꾸기·조사료 생산 계획 수립 여부	○ 적합:5, 부적합:1 ○ 적합:5, 부적합:1 ○ 실천계획수립: 5 미수립: 1 ○ 적 정: 5 부적합: 1 ○ 적정:3, 부적합:1 ○ 적정:3, 부적합:1 ○ 적정:4, 부적합:1	○ 사업지침에서 정하는 사항을 충족하는지와 지역농업여건, 친환경농업실천능력을 종합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평가 ○ 토양개량과 화학비료 감축 위한 자연순환농업, 축산분뇨자원화 시설의 적정규모 설치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 ○ 미생물 배양기술과 설치규모의 적정성, 친환경농자재 생산기술 및 인증기준과 적합성, 푸른들가꾸기 등 실천계획에 대한 객관적 평가

구 분	세부평가항목	평가방법 및 배점기준	비 고
	㉔ 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을 위한 시설 수립 적정성(10점) ○ 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시설 투자계획 ○ 기존 생산·유통시설 활용 여부 (비닐하우스, 축사, 집하장, 예냉시설 등)	○ 적합:5, 부적합:1 ○ 적합:5, 부적합:0	○ 지역영농여건, 작목등을 감안 객관적으로 평가 ○ 기존 생산·유통시설은 정부지원 또는 자체자금으로 설치하여 운영중인 시설·장비류
③사업수행 능력 (30점)	㉗ 친환경농산물 생산·판매 계획의 적정성(20점) ○ 친환경농산물 판로확보 (직거래 등) 여부 ○ 친환경농산물 인증 참여정도 ㉘ 사업수행 관련사항(10점) ○ 사업장 부지 확보 여부 (부지사용승락 포함) ○ 자부담금 확보 여부 ○ 대표농업인의 친환경농업교육 이수정도	○ 확보:10, 미확보:1 ○ 30%이상 : 5 ○ 30~10%이하: 3 ○ 10%미만 : 1 ○ 확보:3, 미확보:1 ○ 확보:3, 미확보:1 ○ 이수:4, 미이수:1	○ 친환경농업단체·소비자단체등과 직거래 계약 여부 ○ 사업참여 농가수 대 표시 인증 참여농가수 비율 ○ 친환경농업단체·지도기관 주관으로 실시하는 기술교육 이수(1주이상)

- 시장·군수는 사업계획서 평가보고서와 사업계획서 검토의견서(붙임6)를 첨부한 사업계획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2003.2.28한)
- 시·도지사는 시장·군수로 부터 접수된 사업계획서를 종합 검토하여 검토 의견서와 평가순위표를 작성하고 우선순위를 부여한 다음 농정심의회 심의를 거쳐 농림부에 예산신청
 - 시·도지사는 평가결과 우선 순위를 부여한 사업계획서(첨부서류 포함)를 농림부장관에게 제출(2003.8.31한)
- 시·도지사는 사업계획서 검토의견서 및 평가보고서를 토대로 농정심의회 심의를 거쳐 농림부의 예산통지(안) 범위내에서 대상사업지구 선정

(4) 사업신청시 구비서류

- 신청서류
 - 신청서(농림사업실시규정에서 정하는 공통서식)
 - 사업계획서(별지 1호 서식)
- 사업계획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
 - 최근 5년간 정부지원사업(지자체 포함) 현황(붙임1)
 - 사업참여농가 영농상황(붙임2)
 - 사업참여농가 동의서(붙임3)
 - 부지사용 승인서(붙임4)

사 업 계 획 서

1. 현 황

가. 기본현황

- 위 치 : 사업대상지역 등
- 인 구 : 세대수, 농가수, 인구수(남, 여)
- 농가현황 : 노동력, 경지면적, 영농규모, 농법 등
 - 농 가 수 : 전체 호, 참여농가 : 호
(20~50세, 51~60세, 61~70세, 71세이상)
 - 경지면적 : 전체 ha (논, 밭 ha),
참여 ha (논, 밭 ha)
 - 영농규모 : 경종, 축산, 비닐하우스
 - 농 법 : 일반농법 농가수, ha, 친환경농업실천농가수, ha

나. 조직현황

- 대표자(지도자) : 성명, 주민등록번호, 나이
- 학력, 경력 등 상세히 기록
- 조직 : 조직명, 설립년월일, 회원수, 사업내용 등 상세히 기록

다. 최근 5년간 정부(지자체 포함) 지원사업 현황

- 총 투자금액 : 백만원
- 본 사업과 연계가능여부 및 활용계획

2. 지구의 특징

가. 지리적·기후적 특징

나. 지역농업여건

3. 사업개요

가. 사업목적 및 필요성

나. 사업내용(작목, 농법, 시설·장비 활용계획, 생산계획 등)

다. 친환경 쌀 생산·판매계획

4. 세부사업계획

가. 사업내용 집계표

항 목	시설·장비·자재명	사업비	소유수혜이용자
1. 농업환경오염 경감시설 및 장비	○ ○ 소 계		
2. 친환경농산물 생산시설 및 장비	○ ○ 소 계		
3. 친환경농산물 유통시설 및 장비	○ ○ 소 계		
4. 친환경농업기술 지도·교육관련 시설 및 장비	○ ○ 소 계		
5. 기타사업	○ ○ 소 계		
계			

※ 개별시설·장비는 개별 농가명을, 공동시설·장비는 수혜(이용)자 ○○○외 명으로 기재

나. 사업별 세부내용 및 필요성

다. 자부담금, 운영자금 확보계획

라. 세부사업 추진일정

마. 기술지도 및 교육장 활용계획

바. 세부사업별 사업비 산출 근거

사. 투자 예상효과

아. 사업계획 도면

5. 붙임자료

1. 최근 5년간 정부(지자체 포함) 지원사업현황(사업신청자 작성)
2. 사업참여농가 영농현황(붙임2)
3. 사업참여 동의서(사업신청자 작성)
4. 부지사용승인서(사업신청자 작성)
5. 사업계획 검토의견서(시·군, 시·도에서 작성)
6. 사업대상지구 평가보고서(시·군에서 작성)
7. 사업대상지구 평가집계표(시·도에서 작성)

(붙임 1)

최근 5년간 정부(지자체포함) 지원사업 현황

사업명	사업년도	사업내용 (시설· 장비명)	투 자 금 액 (백만원)					소 유· 수혜자
			계	국 고	용 자	지방비	자부담	

(붙임 2)

참여농가 영농현황

농가명	주민등록번호	경작규모	표시인증여부		작목입식현황				판매방식	
			여	부	벼	축산	채소	기타	직거래	시중판매
		ha								

주) * 작목입식현황은 주소득 기준으로 분류
* 표시인증에는 친환경농산물 표시신고 포함.

(붙임 3)

사업참여농가 동의서

- 지 구 명 :
- 소 재 지 :
- 경 지 면 적 : ha
- 사 업 대 표 자 : 외 명
- 주요시설·장비설치계획
- 내 용 (사업계획서와 사업참여를 동의한다는 내용을 명시)

년 월 일

사업자(대표자) 주소	성명	인(서명 또는 날인)
사업 참여자 주소	성명	인 “
“ ”	“ ”	“ ”

※ 대표자는 사업목적 및 계획을 충분히 설명하고 농가의 동의를 받아 연명 기재

(붙임 4)

부지사용 승인서

지 번 :

지 적 :

상기 토지 m^2 (평)중 m^2 (평)를 「대규모지구조성사업」의
○○ 시설·장비 부지사용을 승인합니다.

주 소 :

주 민 등 록 번 호 :

승낙자 (토지소유자) : (인)

년 월 일

○○ 시장·군 수 귀하

(붙임 5)

사업계획 검토의견서

1. 사업개요

- 지 구 명 :
- 소 재 지 :
- 경 지 면 적 :
- 대 표 농 가 : (참여농가 : 호)
- 투 자 계 획 :

2. 검토의견

- * 시장·군수는 기술센터, 농관원, 농협 등 각기관·단체별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서 검토의뢰한 후 의견서를 제출받아 종합 검토의견서 작성
 - 농업기술센터 : 지역농업여건, 참여농업인의 기술정도, 친환경농업실천 정도 및 사업성
 - 농산물품질관리원 : 표시인증 참여상황, 친환경농산물 생산여건 및 사업성
 - 농협 : 유통·판매사업 수행능력 및 시설·장비 보유상황, 참여농가 채무상황 등
 - 농촌진흥청 축산기술연구소 : 축산분뇨퇴비·액비화계획, 유기축산물(전환기유기축산물 포함)생산계획 등
- *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유관기관으로 부터 검토의견을 제출받아 종합검토의견서 작성

년 월 일

시·도지사

직인

시 장 · 군 수

(붙임 6)

사업대상지구 평가보고서

(시·군 작성 → 시·도 제출용)

구 분	세부평가항목	평가방법 및 배점기준	평가점수	비 고
①지역농업여건 및 사업참여상황 등 (30점)	㉔사업예정지 위치 (5점)	○ 상수원보호구역등 환경규제 지역 : 5 ○ 일반지역 : 3		
	㉕참여농가수 및 농경지 면적(5점)	○ 50호이상, 100ha이상 : 5 ○ 50호이상, 100~50ha이하 : 3 ○ 50호이상, 50ha미만 : 1		
	㉖사업참여 형태 (5점)	○ 지역농협 : 5 ○ 생산자단체 : 4 ○ 작목반 등 영농조직 : 2 ○ 개별농가(비조직화) : 1		
	㉗사업참여농경지 집단화 정도(5점)	○ 100% : 5 ○ 100~80%이하 : 4 ○ 80~50%이하 : 3 ○ 50%미만 : 1		
	㉘사업예정지 비 재배농가 비율 (10점)	○ 80%이상 : 10 ○ 80~50%이하 : 5 ○ 50%미만 : 1		

구 분	세부평가항목	평가방법 및 배점기준	평가점수	비 고
② 사업계획 수립의 적정성 (40점)	㉗ 세부메뉴사업별 투자계획의 적정성(10점) ○ 참여농가 전체를 대상으로 한 투자여부 ○ 친환경농산물 인증기준 (유기~저농약)을 고려한 투자계획 수립 여부 ㉘ 축산분뇨 및 농산부산물을 이용한 퇴비·액비화 사업 계획의 적정성(10점) ○ 경종과 축산을 연계한 자연 순환농업 실천여부 ○ 축산분뇨 발생량과 처리량을 고려한 적정규모 설치 여부 ㉙ 농약·화학비료 경감을 위한 시설·장비 설치계획의 적정성(10점) ○ 미생물 배양시설의 적정규모 설치 여부 ○ 친환경농자재 생산시설·장비의 적정여부 ○ 푸른들가꾸기·조사료 생산 계획 수립 여부	○ 적합:5, 부적합:1 ○ 적합:5, 부적합:0 ○ 실천계획수립 : 5 미수립 : 1 ○ 적 정 : 5 부적합 : 1 ○ 적정:3, 부적합:1 ○ 적정:3, 부적합:1 ○ 적정:4, 부적합:1		

구 분	세부평가항목	평가방법 및 배점기준	평가점수	비 고
	<p>㉔ 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을 위한 시설 수립 적정성(10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시설 투자계획 ○ 기존 생산·유통시설 활용여부 (비닐하우스, 축사, 집하장, 예냉시설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합:5, 부적합:1 ○ 적합:5, 부적합:1 		
<p>③사업수행 능력 (30점)</p>	<p>㉕ 친환경농산물 생산·판매 계획의 적정성(20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환경농산물 판로확보 (직거래 등) 여부 ○ 친환경농산물 인증 참여정도 <p>㉖ 사업수행 관련사항(10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장 부지 확보 여부 (부지사용 승낙 포함) ○ 자부담금 확보 여부 ○ 대표농업인의 친환경농업 교육 이수정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확보:10, 미확보:1 ○ 30%이상 : 10 ○ 30~10%이하: 7 ○ 10%미만 : 5 ○ 확보:3, 미확보:1 ○ 확보:3, 미확보:1 ○ 이수:4, 미이수:1 		

(붙임 7)

사업대상지구 평가 집계표

< 도 → 농림부 제출용 >

순위	지구명	평 가 점 수			비 고
		계 (100점)	①지역영농 여건등(30)	②사업계획 수립등(40)	

나. 소규모지구조성사업(종전 친환경가족농단지조성사업)

(1) 신청서 제출기관 : 시·군

(2) 신청자격

- 2003년도 사업시행요령 <사업개요>의 (나)내지 (라)항 지원대상자 선정 기준에 맞는 영농조직(작목반, 영농조합 포함)

(3) 신청 및 심의절차

- 사업희망 영농조직의 대표는 농업기술센터, 농산물품질관리원, 농협 또는 친환경농업단체연합회 회원단체의 추천을 받아 사업계획서를 작성한 후 추천서(추천기관·단체는 기술, 경영지도 책임자를 명시하여야 함)를 첨부한 사업계획서를 시장·군수에게 제출
- 시장·군수는 사업계획서를 심사한 후 농정심의회 및 친환경농업육성추진협의회에 상정하여 투자규모 적정성, 사업타당성, 사업수행능력 등을 면밀히 심의하여 적격자를 선정
- 시장·군수는 유기축산물 생산농가의 사업계획에 대해서 농촌진흥청 축산기술연구소에 사전검토 의뢰

(4) 구비서류

- 추천서, 사업계획서 : 별지 1호 내지 별지 2호 참조

(5) 지원대상자 선정

○ 선정기준

- (사업개요)의 '(다)'항의 지원대상 기준에 맞는 영농조직

○ 우선순위

- 1순위** : 친환경농업 실천경력이 3년이상 또는 친환경농산물 표시인증을 받은 농가가 대표농가로 참여하는 영농조직과 벼 재배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영농조직

- 2순위** : 친환경농업 실천경력이 2년 미만인 농가로 구성된 영농조직

○ 선정절차

- 시장·군수는 사업계획서를 심사한 후 농정심의회 심의 및 친환경농업육성추진협의회를 거쳐 대상자 선정

< 별지 1호 >

추천서

1. 사업신청자

- 주 소 :
- 주민등록번호 :
- 성 명 : 외 명

2. 추천의견

- 지역적인 여건
- 친환경농업기술 등 영농여건
- 친환경농업교육 이수여부
- 친환경농산물 판매능력 (판로확보 등)
- 기타 친환경농업 실천에 필요한 사항

년 월 일

기관 또는 단체명 ○○○○ (인)

사 업 계 획 서

1. 현 황

가. 기본현황

- 소재지
- 참여농가현황
 - 농 가 수 :
 - 경지면적 : ha (논 , 밭)
 - 영농방법 : 경종 ha, 축산 두, 비닐하우스 ha 등
 - 농법 [친환경농법 : 농가, ha
 - [일반농법 : 농가, ha

나. 대표자

- 성명 (주민등록번호, 나이 포함)
- 학력 및 주요경력
- 친환경농업 실천정도
- 친환경농산물 품질인증(표시신고포함) 여부
 - * 법인(영농조합 또는 농업회사 법인)인 경우 법인현황 첨부

2. 사업계획

가. 사업개요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사업내용 (작목, 실천농법, 시설·장비 활용계획, 생산계획 등)

나. 세부사업계획

- 시설 및 장비투자계획

(단위 : 천원)

주요항목	시설·장비	사업비	소요 및 수혜자	필요성
계				

* 사업비 산출근거 자료 첨부

- 사업항목별 세부내용

다. 자부담 및 부지확보

- 자부담 확보 및 계획
- 사업장 부지 확보상황

라. 생산 및 판매계획

- 생산계획
- 판매계획 (판매방식, 판매처)
- 품질인증 참여 및 가격차별화 계획

마. 운영자금 확보계획

바. 투자예상효과

3. 붙임자료

- ① 사업참여농가 영농현황
- ② 사업계획 검토의견서
- ③ 사업장부지 사용승인서

<붙임 1>

참여농가 영농현황

농가명	주민등록번호	경작규모	표시인증 참여여부		작 목 입 식 현 황				판매방식		
			여	부	벼	가축 (축종별) 두·수	채소	기타	직거래	일반 시중	
		ha			ha						

주) * 작목입식현황은 주소득 기준으로 분류
 * 표시인증에는 친환경농산물 표시신고 포함.

<붙임 2>

사업계획 검토의견서

1. 사업신청자 (대표자)

- 주 소 :
- 주민등록번호 :
- 성 명 : 외 명

2. 검토의견

* 각 기관별 소관사항 위주로 사업계획서 검토

- 농업기술센터 : 품목별 재배기술 등 영농여건 및 사업성 검토
- 농관원 출장소 : 표시인증(표시신고포함) 등 농산물 품질실태
- 농협 : 재무구조(대출가능 여부 등), 유통·판매실태 및 장기운영 계획
- 시·군 : 종합 검토의견

※ 시장·군수는 농업기술센터, 농관원 출장소, 농협 등 각 기관별 소관사항 위주로 사업계획서 검토를 의뢰하여 의견서를 제출받아 이를종합하여 검토의견서 작성

년 월 일

○○○○ 시장·군수 (직인)

<붙임 3>

부지사용 승인서

○ 지 번 :

○ 지 목 :

○ 지 적 :

상기 토지 m²(평) 중 m²(평)를 소규모지구조성
사업의 ○ ○ 시설 설치용 부지사용을 승낙합니다.

주 소 :

주민등록번호 :

승낙자(토지소유자) : (인)

년 월 일

○ ○ 시장·군수 귀하

다. 친환경농업마을조성사업

(1) 신청서 제출기관 : 시장·군수

(2) 신청자격 : 2003년 사업시행요령중 (다) 지원대상요건에 적합한 마을

(3) 신청절차

- 마을·들녘 대표자는 참여 농가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사업신청

(4) 구비서류 : 사업계획서(붙임1) 및 참여 농가의 동의서(붙임2)

○ 선정기준 및 절차

- 시장·군수가 농업기술센터소장과 협의하여 사업목적에 가장 적합한 지역을 선정, 시·도지사에게 사업계획서 제출(2003. 2.28)

-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가 신청한 사업대상지 중에서 농업기술원장과 협의하여 선정하고 농림부장관에게 예산신청

※ 사업대상지는 3년간 계속 지원하게 되므로 2003년 사업대상지(18개소)는 2003년도 예산신청시 반드시 포함되도록 유의

○ 우선순위

- 시범대상 선정시 상수원보호구역이 우선하고, 동일 조건시는 집단화 정도, 대상면적, 참여 농가가 많은 지역이 우선함

<붙임 1>

사 업 계 획 서

1. 일반현황

- 마을명 : (대표농가명 : Tel :)
- 소재지 :
- 지대(평야지, 중간지, 산간지) :
- 농경지 면적 : ha(논 , 밭)
- 농가수 : 호
 - 사업참여 예정농가수 : 호

2. 영농실태

- 벼 재배면적 : ha(호당 재배면적 : ha)
 - 품종별 재배면적('02년도기준) : ha, ha, ha, 기타 ha
- 벼 재배여건 : 경지정리(유, 무), 수리(안전, 불안전)
- 대상농지(논) 집단화 정도 : 100%, 80%, 50%, 50%미만
- 벼 재배기술 정도(지역영농여건을 고려 객관적으로 간략하게 기재)
- 오리농법 등 친환경농법 실천정도 : ha(농법별 , ,)

3. 사업계획(일정별)

- 영농전 실태조사 실시
 - 토성, 토심, 지하수위, 지형 등 지역적 여건 및 병해충발생, 농약·화학 비료 사용량, 재배기술수준 등 영농실태
 - 필지별 토양정밀검정 실시(시비처방서 발부)
- 생육단계별 영농지도 계획
 - 품종선택, 토양개량, 적기 모내기, IPM·INM기술 등
- 농업인 훈련계획 : 연 4회이상
- 농업환경 변동 실태조사 계획
 - 조사시기 : 연중 2회(영농전3~4월, 수확후10~11월)
 - * 조사방법 및 분석은 농촌진흥청 시험분석요령에 의함
 - 조사항목 : 토양(비옥도, 농약잔류, 중금속 등), 용수(pH, COD, 무기염류 등)
시범마을의 생물상 등
- 마을 운영협의회 구성과 협약서 작성
- 회의록, 농약·화학비료 사용대장 등 기록유지 지도계획
- 사업(지도)결과 보고서 작성계획 등

4. 세부사업 추진계획 및 일정

항 목	세 부 사 업 계 획	사업비	추진일정	실시기관

* 붙임 : 세부사업별 산출내역

<붙임 2>

참여농가 영농현황 및 동의서

농가명	주민등록번호	경작 규모	표시인증 여부		작 목 입 식 현 황				동의여부	
			여	부	벼	축산	채소	기타	여	부
		ha								

주) * 작목입식현황은 주소득 기준으로 분류
 * 표시인증에는 친환경농산물 표시신고 포함.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식품산업과 과장 심상인
농업사무관 이득섭(농산물가공산업육성), 행정사무관 임종길(특산단지육성)입니다.

① 농산물가공산업육성

1. 목 적

- 우리농산물의 새로운 수요개발과 부가가치 제고로 농가소득증대 및 대외경쟁력 강화
- 원료농산물의 대량구입처 확보 및 가공처리로 수급조절과 가격안정에 기여

2. 시책 및 추진방향

- 농업인과 생산자단체를 산지가공산업의 주체로 육성
 - 전통 식생활문화를 정착시키고 전통가공식품을 수출산업으로 육성
 - 가공제품의 포장개선 및 홍보를 통한 상품성 제고로 수출 및 판로 확대
 - 신규지원의 타당성 심사를 강화하여 성공가능성이 높은 업체에 한하여 지원
 - 기 지원업체의 수익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시설개보수·자동화 시설 등에 우선 지원
 - 개보수·자동화시설 등 지원시 농업경영컨설팅 결과를 반영함으로써 농산물 가공공장의 경영활성화와 컨설팅 사업의 연계성 강화 도모
- ※ 외식산업(프랜차이즈 : 가맹점업) 육성방안 강구(예산상황을 감안, 별도 지침마련 시행)

3. 근거법령

- 농업·농촌기본법 제33조
-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 제5조
-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15조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백만원)

구 분	'92~2000	2001	2002	2003 (예산안)	2004	
사 업 량	780개소	8	7	10	21	
사 업 비	계 (농특회계)	293,788	8,376	9,173	7,000	15,087
	보 조	106,286	-	-	-	-
	용 자	140,829	5,863	6,421	4,900	10,295
	자부담	46,673	2,513	2,752	2,100	4,792

※ '92~2002까지의 사업량은 지원실적임

5. 2003년도 사업시행요령

< 사업개요 >

가. 사업내용

(1) 배경 : 농산물가공산업을 육성하여 우리 농산물의 안정적인 수요처 확보 및 부가가치 제고로 농가소득 증대

(2) 지원대상자

- 시설비(전통식품 및 산지일반가공사업) : 농가공동, 생산자단체, 주류제조 면허 추천업체, 명인 또는 신지식인 지정업체, 일반업체
 - 농가공동이란 농가 5호 이상이 공동으로 출자하고 운영에 참여한 공동조직
 - 생산자 단체란 농가 5호 이상이 출자하고 운영기간이 1년이상인 영농조합 법인, 농업회사법인, 협동조합
 - 주류제조면허추천 업체란 농림부장관으로부터 주류제조면허 추천을 받아 주세법에 의거 주류제조면허를 받은 농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
 - 명인 또는 신지식인 지정업체란 우리부로부터 전통식품 명인 또는 신지식인으로 지정받은 자가 운영하는 업체
 - 일반업체란 국산농산물을 원료로 사용하는 식품가공업체(민·상법상 법인)
- 운영비(포장개선 및 홍보지원사업) :
농림부지원 농산물가공업체, 전통식품 품질인증업체, 전통식품명인 또는 신지식인 지정업체, 주류제조면허추천을 통해 면허를 받은 업체

(3) 지원대상 품목

- 농림부 고시 제1999-69호('99.10.8)에 의거 전통식품으로 지정된 품목
 - 기타 국내산 농산물로써 원료조달이 용이하고, 경쟁력이 있는 품목
 - 대규모 판매처 등 판로확보가 용이한 품목
 - 주세법에 의거 주류제조면허를 받은 품목
- ※ 동일지역내 동일품목·유사품목은 원료의 수급현황, 판매전망 등을 감안하여 균형지원

(4) 지원기준 및 조건

□ 공통조건

- 지원비율 : 용자 70%, 자담 30%
- 용자조건
 - 시설비 : (농가공동, 생산자단체, 주류면허추천·명인·신지식인 지정 업체)
3년거치 7년상환, 연리 4.0%,
(일반업체) 3년거치 7년상환, 연리 5.5%
 - 운영비 : (농가공동, 생산자단체, 주류면허추천·명인·신지식인 지정 업체)
2년거치 3년상환, 연리 4.0%,
(일반업체) 2년거치 3년상환, 연리 5.5%
- ※ 용자조건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수 있음

□ 신규지원

- 시설비(기준사업비)
 - 농가공동 : 7억원 이내, 생산자단체 및 일반업체 : 20억원 이내
 - 개인이 운영하는 주류제조면허업체와 명인·신지식인 지정업체는 농가공동에 준하며, 단체가 운영하는 주류제조면허업체와 명인·신지식인 지정업체는 생산자 단체에 준함
- ※ 기준사업비를 초과하는 사업계획은 시·도지사가 그 타당성을 인정하고 농림부장관이 최종 승인하는 경우에만 가능
- <예> 기준사업비와 용자금 및 자담금 계산 예(가공공장의 기준사업비가 300백만원인 경우)
 - 용자금 : 사업비 300백만원의 70% 용자(210백만원)
 - 자담금 : 사업비 300백만원의 30% 자부담(90백만원)
- 운영비(기준사업비)
 - 포장디자인개발비 : 업체당 최고 20백만원
 - 용기금형개발비 : 업체당 최고 80백만원(기획조사, 디자인개발, 목형, 금형, 생산용 금형단계까지)
 - 홍보물 유인비 : 업체당 최고 10백만원(팜플렛, 전단인쇄비)
- ※ 수출용은 횟수에 관계없이 지원하여 수출을 적극 장려
(수출용 추가지원시는 수출실적 또는 수출계약 내용을 확인하고 타당성 인정후 지원)

□ 추가지원

- 대상업체 : 우리부로 부터 이미 농산물가공공장 시설비를 지원받아 운영중인 아래에 해당되는 업체중 추가지원시 규모의 경제성 또는 대외 경쟁력 확보가 용이하다고 판단되는 업체
 - 수출 또는 매출실적이 양호한 성장유망업체로 공장 증설 등이 필요한 업체
 - 컨설팅 결과 또는 시·도지사(시장·군수)가 시설·장비의 보완이나 개보수 또는 시설자동화·현대화로 경영활성화가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업체
 - 주류제조면허추천 업체 및 전통식품 명인 또는 신지식인이 운영하는 업체
- 사업내용 : 공장증설, 시설개보수, 시설현대화·자동화, 저장 및 오·폐수처리 등 가공공장 운영(전통식품명인의 기능전수 포함)과 직접 관련이 있는 시설장비(전산장비 포함) 및 부대시설의 설치·구입지원, 운영비(포장개선, 홍보) 지원
- 지원한도 : 신규지원과 같음
 - ※ 다만, 업체당 총사업비가 500백만원 이내일 경우에는 현지사업성 검토를 생략하여 신속한 사업추진 도모

(5) 지원시설의 종류 등

- 시설비 : 가공공장, 일반창고, 저온창고, 기타 부속건물, 오·폐수처리시설, 가공기계류 등(부지구입비는 제외)
 - ※ 저장시설(일반창고, 저온창고)은 가공공장 본래기능에 부합하는 적정규모에 한해서 지원하며, 가공공장의 운영과 직접관련이 없는 시설은 지원 불가
- 운영비
 - 포장개선사업 : 포장디자인개발, 용기금형개발
 - 홍보지원사업 : 홍보물 유인비(팜플렛, 전단)

(6) 대상자 자격조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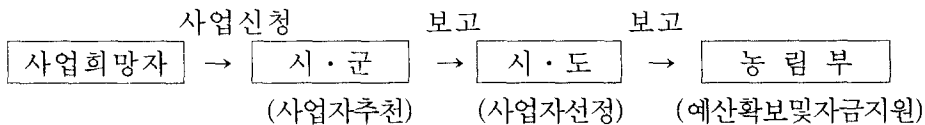
- 가공공장 시설부지 확보
 - 신청당일까지 당해 부지에 대한 소유권 보존등기, 사용권(지상권) 또는 10년이상 장기임차권을 증빙하는 서류 첨부
 - 대구·경북 재경지정리지역은 사업지역에서 제외
 - 농업진흥지역의 논은 사업지역에서 원칙적으로 제외하되 지역여건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시 시·도지사가 판단하여 허용

- 농업진흥지역 밖의 논은 지원대상에 포함하되, 우선순위에서 밭·산지 등보다 후순위로 인정
- 공장설립에 따른 각종법규에 저촉되지 않는 부지
- ※ 도시계획법, 수도권정비법, 산림법, 상수원관리법 또는 군사시설보호법 등에 의거 가공공장 설치에 문제가 되는 지역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담보물 확보 : 대출취급기관의 신용상태 및 대출가능액 검토의견서 첨부(별지 제2-3호)
-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은 사업신청일 현재 운영기간이 1년 이상이고 최저 1억원 이상 출자된 법인으로 다음서류 첨부
 - 정관, 법인등기부 등본 및 조합원 명부
 - 사업계획에 대한 총회 의결을 거친 의사록(참석자 명단포함)
 - 출자금 증빙서류(시장·군수가 확인한 조합원별 출자내역)
- ※ 농업·농촌기본법령상의 각종 규정 준수여부, 특히 출자비율 확인 (1인당 출자비율 25%이하, 농업회사법인의 경우 비농업인의 총출자비율 준수 등)

나. 2003년도 사업비(예산안) 내용

내 용 별	사업량	2003 사 업 비				자부담
		합 계	예산액(농특회계)			
			소계	보조	융자	
○농산물가공산업육성	개소 10	백만원 7,000	4,900	-	4,900	2,100

다.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절차



※ 농산물가공공장건설사업 세부시행 체계도 : 참고1

(1) 사업신청 : 사업신청자 → 관할 시장·군수

- 구비서류 : 신청서(별지제1호, 제3호 서식), 사업계획서(별지제2호, 제2-1~2-5호 서식) 및 대상자자격조건에서 요구하는 서류 등

(2) 사업희망자 추천 : 시장·군수 → 시·도지사

- 시장·군수는 사업계획서를 종합 검토한 후 시·군 농정심의회 심의를 거쳐 시·군 농업기술센터소장 및 시장·군수의견서 등을 첨부하여 시·도에 사업신청자 추천

(3) 사업신청 및 예산확보 : 시·도지사 → 농림부장관

- 시·도지사는 신제품개발, 판매망 확보 등으로 성공가능성이 높은 업체를 대상으로 지원순위를 첨부하여 농림부장관에게 제출
- 농림부장관은 시·도지사가 제출한 사업신청현황을 감안하여 사업예정 연도의 예산을 확보

(4) 지원대상자 우선순위 판단기준

- 품질인증 쌀을 이용하여 가공식품을 생산하고자 하는 업체
- 신제품 개발, 판로확보, 가격경쟁력 확보 등으로 시장성이 높은 업체
- 부지확보, 자부담금 확보 등 사업의지가 양호한 업체
- 농업경영컨설팅사업 결과 추가시설 설치를 권유받은 업체

(5) 사업타당성 조사 : 시·도지사 → 농수산물유통공사 등 전문기관

- 시·도지사는 사업신청서가 접수될 경우 붙임 양식1 「평가항목 및 운영주체별 배점기준」 및 양식2 「업체별 사업성 종합평가표」에 따라 농수산물유통공사에 의뢰 또는 기타 전문기관(소요경비 : 시·도, 자부담)을 통한 현지사업성 검토를 반드시 실시(감사원 개선요구 사항임) 하고, 검토내용을 사업자 선정시 반영

(6) 사업대상자 선정 및 보고

- 시·도지사는 시·도 농정심의회 또는 가공산업육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 범위내에서 지원대상자(예비후보자 포함)를 선정하고 그 결과를 농림부장관에게 보고
- ※ 시·도지사는 현지사업성 조사결과 종합점수가 60점이하인 업체와 기존 정부 지원 가공공장을 운영하는 자가 별도의 가공공장을 설립코자 하는 업체를 선정하여서는 아니되나, 사업자선정의 신속한 대체 등을 위하여 동 심의 위원회에서 예비후보자를 선정할 수 있음.
- 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확정일(시장·군수 공문발송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착공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도지사에게 사업 포기서를 제출하고 시·도지사는 농림부 장관에게 그 결과를 보고

(7) 지원대상자 선정결과 통보

- 시·도지사는 지원대상자 선정결과를 각 시장·군수에게 통보
- 시장·군수는 선정된 대상사업자에게 지체없이 통보

라. 추진체계

(1) 사업주관 기관 : 시·도지사(시장·군수)

- 시설비 : 시·도지사(추가지원 포함)
- 운영비 : 시장·군수

(2) 사업담당 부서

- 농림부 : 농산물유통국 식품산업과 : (02) 500-1850
- 시·도 : 농정국(농림수산물국), 농산유통과(농정유통과, 원예유통과, 유통특작과, 농수유통과, 농업특작과)
- 시군·자치구 : 농정과, 유통과 또는 산업과

(3) 사업시행

□ 자산관리 및 시설물 설치

- 농가공동사업 대표자는 공동참여자와 함께 주요자산의 출자내역, 공장건설, 경영 및 재산처분에 관한 사항 등을 명확히 하는 자체 정관을 작성
- 시설공사는 부실방지를 위하여 건설 관련법에서 규정한 전문건설업체 등을 선정 시공하되 시공에서 준공까지 전문기관의 감리 및 공사감독하에 시행
 - ※ 지원시설의 준공검사는 시·군 기술직(토목, 건축)이 직접 담당
- 사업이 완료되면 준공과 동시에 보존등기 완료하고 지원목적대로 사용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사업기간내 가공공장 건설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지도와 감독철저
 - ※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및 농림사업실시규정을 준수하여 사업실시

□ 포장개선 및 홍보지원사업

- 포장개선사업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업체별, 용도별(포장디자인개발, 용기금형개발)로 자금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시행
 -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포장디자인 및 용기금형개발 의뢰기관과 협의하여 디자인 개발계약·용기금형개발 계약체결 등 사업실시
 - 당초 사업계획에 의거 사업을 실시하되, 사업계획을 임의 변경하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
 - ※ 공인디자인 전문회사 이외의 무자격 디자인회사와 계약불가

- 포장디자인 및 용기금형 개발 의뢰기관
 -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디자인 전문회사로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신고를 필한 업체
 - 수출을 위하여 현지에서 포장디자인을 개발하고자 하는 경우 현지 디자인 전문업체도 가능
 - 유리병 제조업체로서 법인신고를 필한 업체
- ※ 유리병 중개업체(딜러)와 계약은 불허
- 홍보지원사업
 - 홍보물 제작회사(인쇄소)와 계약을 체결하여 제품홍보용 팜프렛·전단을 유인 활용
- 시·도지사는 사업자의 사업추진상황을 수시 점검하여 원활히 추진되도록 하고, 특히 본 지침에서 정하는 포장디자인개발회사 또는 업체와 디자인 개발 계약이 되었는지를 반드시 확인
- 본 지침에서 정하는 업체 이외의 다른업체와 계약시 재계약토록 지도

□ 사업계획 변경

- 사업승인후 불가피 사업계획을 변경코자 할 경우 다음에 의거 처리하고 농림부장관에게 보고
 - 농림부장관 승인사항 : 기준사업비를 초과하는 계획변경[(5)지원기준 및 조건 참조]
 - 시·도지사 승인사항 : 시·군간 사업장 변경
 - 시장·군수 승인 및 신고사항
 - 시·군내 사업장 변경(승인)
 - 지원금액 범위내에서 계획변경(승인)
 - 사업대표자 변경(신고)
 - 품목변경(신고)
 - 상호변경 및 품목추가 등 기타 경미한 사항(신고)
- ※ 위의 사항은 사업완료후 사후관리 기간중에도 동일하게 적용

(4) 사업비 관리 및 집행·정산

- 배정 : 농림부장관 → 농협중앙회장(농특회계사무국) → 농협시도지회(지역본부) → 농협시군지부

- 신청 및 지급
 - 신청 : 사업자 → 시장·군수 → 시·도지사
 - 결정 : 시·도지사 → 시장·군수 → 사업자(시·군지부에서 지급)
- 사업비 집행은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농림부 훈령 제1049호) 제4조(사업자금의 집행의 원칙)에 의거 자부담금을 미리 집행한 후 기성고에 따라 지원사업비를 지원
- 어떠한 경우에도 사업대상자로 선정되기 이전에 취득한 재산, 설치한 시설물 등 이미 추진된 부분은 지원할 수 없음.
- 사업비의 일부를 리스방식으로 집행한 경우 리스도입 시설비는 농림사업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
- 지원된 사업비를 당해 사업시행에 활용하지 아니하고 금융기관 또는 개인 채무변제 등에 사용 불가
- ※ 시장·군수는 사업자가 사업자금을 부당하게 사용한 경우, 부당사용한 금액의 회수는 물론, 그 규모에 따라 1~5년간 정부지원사업자금 지원 중지
- 시장·군수는 사업비 집행 및 정산에 관한 책임을 짐
 - 기성고에 따라 지원된 용자금은 즉시 사업시행자의 대표에게 지급되어야 하며, 사업시행 대표는 관련 시설물을 설치한 업체 및 기계·장비업체에 지급하여야 함.

< 행정사항 >

(1) 사후관리

- 시장·군수는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관리대장을 비치하는 등 사후관리의 책임을 지며, 점검결과를 관리대장에 기록 비치
- 시장·군수는 정부지원사업 홍보를 위하여 준공전 안내판 및 준공후 부착물을 설치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수시로 관내 가공업체에 대한 지도확인을 강화하는 한편, 가공공장 가동상황을 파악하여 경영부실업체에 대하여는 경영활성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농림부에 보고

□ 보조금으로 취득한 주요재산의 관리

재산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비 고
	부터	까지		
○ 부동산과 그 종물	준공 검사일	10년간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변경, 양도, 교환, 대여, 담보 제공을 할 수 없음.	○ 부동산에는 당초 보조금 교부목적 달성을 위해 제공한 대지를 포함
○ 가공기계류	설치일	5년간	다만, 사후관리기간중 천재지변, 기타 사업자의 선량한 관리에도 불구하고 예상치 못한 여건의 변경 등의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 처분함이 효율적이라고 당해 시·도지사가 승인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가공기계류의 신규교체시에는 예외 ○ 기타 필요한사항은 보조금의 예산및관리에관한 법률의 관련조항 준용
○ 포장디자인개발용 필름 및 용기	구입일	3년간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 기본규정 제16조 준용	○ 목 적 - 이면 허위계약방지 - 지원자금 정산자료 활용

(2) 보고·기타

□ 사업추진 관련 보고사항(공통)

보고서명	보고기한	보고기관	수보기관	서식
1. 운영실태보고	○ 익년 2월 말일	시·도지사	농림부장관	별지 5호
2. 포장개선 및 홍보사업 대상자 선정결과	○ 당년 3월 말일	시·도지사	농림부장관	" 6호
3. 사업정산 실적 (가공공장건설·포장개선·홍보사업)	○ 익년 2월 말일	시·도지사	농림부장관	" 4,7호

※ 본 지침에 따로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농업·농촌기본법』,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농림사업실시규정』,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농산물가공공장 관리준칙』 등 기타 관계규정에 의함

6. 2004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가. 신청서 제출기관 : 시군 농정과, 유통과 또는 산업과(제주도는 농업특작과)

- 농산물 가공산업 : 시군 → 시도 → 농림부
- * 수산물 가공산업은 제외

나. 신청서 제출기한

- 사업신청자 → 시장·군수 (2003. 1. 20일까지)
- 시장·군수 → 시·도지사 (2003. 2. 28일까지)
- 시·도지사 → 농림부장관 (2003. 3. 31일까지)

다. 신청자격

- 지원대상자, 지원기준 및 조건, 지원시설의 종류 등은 2003년도 지침과 동일

라. 기 타

- 융자금 금리는 변동될 수 있음.
-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후 사업을 포기할 경우에는 일정기간 동안 정부지원 사업의 참여를 제한 받을 수 있음.

신청서식 및 보고서식

1. 신청서식

농산물 가공사업 시설비 지원

- 사업계획 승인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 사업계획서(전통식품, 산지일반) [별지 제2호 서식]
 - 의견서 (시·도지사, 시장·군수) [별지 제2-1호]
 - 의견서 (시·군 농업기술센터소장) [별지 제2-2호]
 - 신용상태 및 대출가능액 검토의견서 (농협군지부장) [별지 제2-3호]
 - 의견서 (연구기관 또는 식품가공학 전공교수) :
신제품 또는 시제품 미생산업체에 한함 [별지 제2-4호]
 - 영농조합(농업회사)법인 출자내역 확인서 (시장·군수) :
해당되는 경우에 한함 [별지 제2-5호]

포장개선사업비 및 홍보비 지원

- 포장개선 및 홍보사업 지원신청서 [별지 제3호 서식]

2. 보고서식

- 사업정산실적 보고(연보) [별지 제4호 서식]
- 운영실태보고(연보) [별지 제5호 서식]
- 포장개선 및 홍보사업 대상자 선정결과 보고(연보) [별지 제6호 서식]
- 포장개선 및 홍보사업 정산실적 보고(연보) [별지 제7호 서식]
- 평가항목 및 운영주체별 배점기준 [양식 1]
- 업체별 사업성 종합평가표 [양식 2]

[별지 제1호 서식]

사업계획승인신청서										처리기간	
										31일	
신청자	사업체명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소					전화					
사업계획	사업체명		가공품목		주원료						
	공장예정지										
	시설규모	부지	m' 건물		m' 설비		종				
	재원조달 (백만원)	계		정부보조		정부융자		금융기관차입		자부담	
사업형태				구성원내역							
<p>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 제5조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산물가공품생산공장을 설치하고자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청자 (서명 또는 인)</p>											
<p>시 장 군 수 귀하 구청장</p>											
<p>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공장예정지의 위치도 1부. 3. 공장부지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4. 및 5. 삭제('95.6.2)</p>										수수료	
										없음	

27273-03711 민
'93. 8.31 승인

210mm×297mm
(신문용지 54g/m²)

사업계획서

1. 사업의 필요성 및 효과

가. 사업의 필요성

- 1) 입지조건
- 2) 타 당 성
- 3) 기 타

나. 기대효과

- 1) 농가소득증대 측면
- 2) 국산농산물 수요창출 측면
- 3) 고용효과
- 4) 향후전망
- 5) 기 타

2. 사업주체

가. 사업개요

사업명		주요품목	
소재지		전화번호	
사업규모	부지 건물	평, 기계류 평	사업구분 창설·증설
시설자금 총소요액		백만원	시설자금 지원요청액 백만원
시설자금 기지원내역			

※ 시설자금 기지원내역(추가업체)은 지원년도와 지원금액(보조, 융자구분) 기재

나. 대표자 현황

성명		주민등록번호			(세)
주소					
주요경력	기간	내용			
재산현황 (백만원)	동산	부동산	기타	계	

※ 주요경력은 최종학력, 기업체명 및 근무부서 등 기재

다. 조직현황

- 영농법인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법인명		등기 연·월·일	
설립목적			
출자현황	- 출자자수 : 명 (농업인 명, 비농업인 명) - 출자액 : 억원 (비농업인 억원, 비농업인 억원)		
사업실적			

※ 사업실적자료 붙임

- 농업인 및 농가공동(공동참여농가 현황)

성명	주소	소요경지면적(평)	제품원료생산량		참여형태	날인
			원료(톤)	금액(백만원)		

※ 참여형태는 출자(금액명기), 원료제공, 취업으로 구분하여 기재

※ 공동참여자의 총회의사록 및 자체정관 붙임

- 일반업체

연·월·일	회사연혁 및 사업실적

3. 제품개발 내역(계획)

* 해당될 경우에만 작성

품 목		원 료 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품개발내역(또는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료조달방법 : - 제조가공방법 : - 제품특징 및 내용 ○ 연구용역상황(또는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내용 : - 연구기간 : - 연구기관 및 대표자 : - 비 용 : 			

4. 건설계획

가. 입지계획

소재지				
규 모	대 지	m ² (평)	기계류 : 종, 점	
	건 물	m ² (평)		
입지조건	제품과 원료의 수송, 노동력 확보, 주변지역 피해가능성, 부지조성, 용수확보, 진입로확보, 공장설립관련법령상 제약요인 등 기재			
용 수	월 사용량 기재			
전 력	월 사용량 기재			
도 로				
통 신				
기 타				
공 사	착공예정일		준공예정일	

나. 주요투자시설 명세

(단위 : 천원)

항 목	규격	수량	단가 3」	금액	비고
1. 대지(자부담)					
2. 건 물 1」 가. 작업장 나. 일반창고 다. 저온창고 라. 사무실 등 마. 기 타					
3. 구축물 가. 용수시설 나. 수배전시설 다. 오폐수시설 라. 기 타					
4. 가공기계 2」					
5. 공기구비품					
6. 전기공사					
7. 설 계 비					
8. 기 타					
계					

주) 1」 건물의 경우 비고란에는 건축구조계획 기재 (예 : 철골조판넬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슬래브구조 등)

2」 가공기계의 경우 규격 및 단가는 기재하지 아니하고 총수량 및 총금액만 기재 (세부명세는 뒷면 “다”항 “주요가공기계명세”에 구체적으로 기재)

3」 단가는 실거래 가격으로 기재

다. 주요 가공기계 명세

(단위 : 천원)

기계명 1」	규 격	생산능력2」 (톤/시간)	수량	단가	금액	구 입 (계획)처	비 고 (TEL)
		W×L×H					

주) 1」 기계명은 공정별로 구체적으로 기재

2」 생산능력은 각가공기계의 시간당 생산능력을 기재하며 저장탱크일 경우에는 저장능력 및 1회전 처리기간 명기 (필요시 견적서 붙임)

라. 사업부지 현황

지 번	지 목	면적(평)	소유주	소 재 지	전용가능여부	비 고

5. 소요자금 및 자금 조달계획

가. 세부투자계획

항 목	규 모 (평)	단 가 (천원)	재원조달 (백만원)			
			계	용 자	금융기관 차 입	자부담
부지매입(자담 : A)						
시 설 자 금	건 물 - 작업장 - 일반창고 - 저온창고 - 사무실 등 부대시설 - 기 타					
	구 축 물 - 용수시설 - 수배전시설 - 오·폐수시설 - 기 타					
	가 공 기 계					
	기 타					
	시설자금합계(B)					
총 계 (A + B)						

- 주) 1. 저온창고는 100평 기준으로 평당 250만원 기준
 2. 시설자금 합계란은 사업계획승인신청서(별지1호서식)의 재원조달 금액중 총사업비와 일치하여야 함.

나. 자금조달계획

○ 업체부담금 조달방법

(단위 : 백만원)

재 원	금 액	조달시기	조달방법	비 고
자 기 자 금				
외 부 차 입				
계				

※ 외부차입 : 정부지원요청액은 제외

○ 금융기관 차입내역

(단위 : 백만원)

거래은행	금 액	차입일	상환기간	상환일	상환잔액	용 도
계						

○ 담보물 현황

소유자	종 류	면적(m ²)	추 정 가 격		지 번	비 고
			공시지가 (감정가)	실거래가		
계						

6. 원료조달계획

연도별	원료명	조달처	조달방법	조달시기	소요물량 (톤)	자금소요액 (백만원)	비고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 주) 1. 원료명은 종류별로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조달처는 구입원료의 생산지임.
 2. 조달방법은 계약재배, 자가생산, 농가직구입, 도소매상 등 구입으로 기재

7. 생산 및 판매계획

(단위 : 톤, 백만원)

구 분	제품명	단가 (원/kg)	생산능력		생산계획		판매계획			비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계	내수	수출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 주) 1. 추가지원업체인 경우는 기존생산능력을 비고란에 별도 기재하고 신규업체도 기존생산능력이 있으면 기재
 제품명은 생산품목을, 단가는 생산제품의 계획판매단가를 기재
 2. 생산능력은 1일8시간 기준, 년300일로 환산하여 기재(기계의 생산능력기준)

8. 판매방법

(단위 : 톤, 백만원)

제 품 명	수 량	금 액	판매(예정)처	비 고

※ 제품별, 판매회사별로 구체적인 계획을 기재(OEM은 비고란에 명시)하고 판매 (예정)계약서, 상담내역서 등을 첨부해야 지원대상자로 우선 선정가능

9. 생산·판매실적(해당될 경우에만 기재)

구 분	년 도	물 량	금 액	주수출국	비 고
생 산	전전년도	톤	백만원		
	직전년도				
관 매 (수출)	전전년도	(톤)	(백만원 천\$)		
	직전년도				

- 주) 1. 추가지원업체인 경우는 반드시 기재하고 신규업체도 실적 있으면 기재
 2. 재무제표 또는 세무서 신고자료(부가세신고내역등), 경영장부상 매출액, 생산 일보 등 판매 및 생산실적 확인 자료붙임(수출업체는 수출실적자료)

10. 기술개발실적 (해당될 경우에만 기재)

구 분	적 요
전통식품 품질인증 실적	
가공식품 KS표시허가실적	
디자인 개발실적	
신제품 개발실적	
가공산업관련 수상실적	

※ 적요란에 관련기관명 등 구체적으로 기재 (특허출원 사항 등)

11. 기술인력 확보계획

성 명	주 소	학력 및 경력	자격증	담당업무

※ 기술관련자격증이 있을 경우 사본 붙임

[별지 제2-1호]

의 건 서

사 업 명 :

대 표 자 :

소 재 지 :

(의 건)

- 대표자의 경력 및 사업의지 등
 - 부지확보 및 전용가능 여부, 타규정 저촉여부 등
 - 사업의 필요성, 판매전망, 지역내 경합여부, 기대효과 등
- ※ 시장·군수 의견서를 업체별로 각각 별도로 구체적으로 작성

200 . . .

시장 · 군수 직인

[별지 제2-2호]

의 건 서

사 업 명 :

대 표 자 :

소 재 지 :

(의견)

- 해당품목 원료의 관내 재배면적 및 생산량 (전년실적, 금년계획)
- 해당품목 원료의 관내 계약재배 및 조달 가능성 등이 사업성과에 미칠 영향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작성

200

○ ○ 시·군 농업기술센터소장 직인

[별지 제2-3호]

신용상태 및 대출가능액 검토의견서
(200 년 월 일 기준)

1. 사업신청자 인적사항 및 사업신청내용

주 소				전화번호	
업 체 명		주민등록번호		대표자성명	
신청사업명					
소요사업비	총액		융자		자담

2. 재산상태

자산종류	수량	예상평가액	부채종류	차입처	금액
주택,대지, 건물,공장 계		천원			천원

3. 조합거래상황 및 신용상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합원 : 여, 부 ○ 조합이용도 : 적극, 보통, 거래없음 ○ 과거 1년간 연체사실 : 유, 무 - 조사기준일 연체금액 : 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도, 대위변제시설 : 유, 무 ○ 신용상태 : 양호, 보통, 불량 (개인정보신용조회표 활용)
---	---

4. 대출가능액 (신규대출가능액만 기재)

대출구분	담보종류	수량	대출가능액	담보물건소재지	소유자(관계)
담보대출	공장(대지,건물) 잡종지, 전·답		천원		
신용대출					
계			천원		

※ 담보대출의 담보종류는 대지,건물,전·답,과수원,임야,공장,선박으로 구분

5. 종합의견

200 년 월 일
○○○농협협동조합장 직인
농협 군 지부장 직인

[별지 제2-4호]

의 건 서

(해당될 경우에만 기재)

회 사 명 :

대 표 자 :

소 재 지 :

(의 건)

○ 제품 생산공정 및 상품화 가능성에 대한 실질적 검토

※ 신제품 생산업체 또는 시제품이 개발되지 않는 업체

200

대학교 학과 교수 인

(연구기관일 경우 기관명 직위 성명 기록)

출자내역 확인서

1. 사업체명 : ○○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
(합명, 합자, 유한, 주식회사)

2. 대표자 :

3. 법인소재지 :

○ 조합원 출자내역

(단위 : 백만원)

성명	법인내 직책	주민등록상 주소	직업	출자내역			출자비율
				현금	현물	계	

○ 준조합원(영농법인), 비영농법인(농업회사법인) 출자내역

(단위 : 백만원)

성명	법인내 직책	주민등록상 주소	직업	출자내역			출자비율
				현금	현물	계	

※ 출자자가 기업인 경우 성명란에 기업체명(대표자)기재

200

위 내역은 사실과 상이 없음을 확인함.

○○ 시장·군수 관인

(포장개선, 홍보)사업 지원신청서

업 체 현 황	업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소 재 지	☞		
	지원형태	전통()산지()기타()	지 정 년 도	
	주생산품		공장가동일	
	공장품목	대지: 평, 건물: 평(공장: 평, 창고: 평, 기타 : 평)		전년매출액
사 업 계 획	사 업 명		총 소요액	백만원
	재원조달 (백만원)	정부융자신청	금융기관차입	자 부 담
담보제공방법	신용보증서() 지급보증서() 부동산() 기타 ()			
<p>상기와 같이 (포장개선, 홍보)사업 지원대상자로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200 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신청자 (인)</p>				
<p>시도지사 귀하</p> <p>시장·군수</p>				
<p>첨부서류 : 1. 사업현황 (소정양식) 1부.</p> <p style="padding-left: 40px;">2. 수출실적 입증서류 1부 (수출용개발의 경우)</p>				

< 붙임서류 >

사 업 현 황

1. 가공능력

제 품 명	연생산능력(톤)	주 원 료	비 고
1.			
2.			
3.			
계			

2. 생산 및 판매실적(전년도)

(단위 : 톤, 백만원)

제 품 명	생 산		판 매				재 고	
	물량	금액	국내		수출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1.								
2.								
3.								
계								

3. 담보제공계획

(단위 : 천원)

보 증 서			부 동 산				
발행처	보증금액	기 간	물건명	소유자	소재지	추정가액	선순위액

[별지 제4호 서식]

() 사업정산 실적보고 (가공공장건설)

(단위 : 천원)

사업자명 (조합 및 대표자명)	사업지역 (시군읍면)	생산품목	사업량(규모)						사업비						비고						
			계획			실적			비율		계획			집행실적(정산)							
			대지	건물(A)	기계류(B)	대지	건물(C)	기계류(D)	C/A	D/B	계	융자(E)	자담	계	융자(F)	자담	비율(E/F)	차년이월액(E-F)	불용액(E-F)	착공일	준공일

주1) 전통식품가공사업, 산지일반가공사업으로 구분하여 별지작성

2) 차년도 이월 및 불용액이 있을 경우 발생내역 및 사유서를 세부적으로 작성하여 별도붙임

[별지 제5호 서식]

’02년도 농산물가공공장 운영실태보고

일 반 현 황	업 체 명		대 표 자							
	주 소									
	연 락 처 전화:() - Fax: - 휴대폰:() -									
	생 산 품 목									
	업 체 구 분 전통, 산지, 특산		경 영 형 태 협동조합, 영농조합, 농가공동, 개인, 주식회사							
	* 변 경 사 항 당 초: ⇒ 변 경:									
시 설 규 모	부 지	건 물	기 계	오 폐 수	시 설 투 자 비 (백만원)	계	보 조	용 자	자 담 (실투자비)	
	평	평	점	평						
가 동 실 적	연간생산 능력(톤)	가동일수	생산량(톤)	총매출액 (백만원)	국내매출액 (백만원)	수출액 (백만원)	수출국			
	자가생산 (구성원)	계약재배	산지생산자	산지조합	산지수집상	도매시장	기 타			
원 료 조 달	%	%	%	%	%	%	% % %			
	백화점	대형슈퍼 (할인점등)	도소매상	농수축협	우편주문 전자상거래	대량소비처 (외식업체등)	현지직판	기 타		
판 매 방 법	%	%	%	%	%	%	% % %			
	계	원료구입비	인건비	대출이자	전력수도료	판매비	홍보비	기타		
영 비 용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고용 현황	상용직	인 원 : 명,		연간인건비 : 백만원					
	일용직	연인원 : 명,		연간인건비 : 백만원						
실 태	품 질 관 리 상 황		①전통식품품질인증 ②위탁검사 ③자체검사 ④미실시							
	회 계 처 리 방 법		①복식부기 자체처리 ②세무사위탁 ③간이장부기록 ④기타							
	P C 활 용 여 부		①없음 ②단순문서작성수준 ③ 인터넷 활용 ④홈페이지운영							
	사 업 전 망		①크게신장, ②약간신장, ③전년과 비슷, ④약간저조, ⑤크게악화							
	주 요 예 로 사 항		①자금부족, ②판매부진, ③원재료조달, ④설비노후, ⑤금융비용상승, ⑥임금상승, ⑦기 타 ()							
	건 의 사 항									
	조 사 자 의 견									

작성요령 : ① 모든 자료는 '02. 1. 1. ~ '02. 12. 31.까지 실적을 기준으로 작성
 ② 변경사항은 대표자, 업체명, 생산품목, 주소, 전화번호 등 업체현황 변경사항 기재

자체심사 가26-58

[별지 제6호 서식]

포장개선 및 홍보사업 대상자 선정결과 보고

(단위 : 천원)

사업체명 (소재지)	생산 품목	계			디자인개발			용기금형개발			홍보물 유인			비고(전통, 산지,인증 업체별구분)
		계	용자	자담	계	용자	자담	계	용자	자담	계	용자	자담	

총공통-9

[별지 제7 서식]

포장개선 및 홍보사업 정산실적 보고

(단위 : 천원)

사업체명 (소재지)	생산 품목	사 업 계 획									사업비집행			용자금내역				
		디자인개발			용기금형개발			홍보물유인			사 업 비			비율 (B/A) %	디자인개발	용기금형개발	홍보물유인	
		개발내용	건수	소요금액	개발내용	건수	소요금액	홍보내용	건수	소요금액	계	용자 (A)	자담					계

[양식 1]

평가항목 및 운영주체별 배점기준

신 규 업 체						기 존 업 체					
평 가 항 목	농업 인	농가 공동	협동 조합	영농 조합	일반 업체	평 가 항 목	농업 인	농가 공동	협동 조합	영농 조합	일반 업체
1. 사업수행능력	10	10	10	10	10	1. 사업수행능력	15	15	15	15	15
○대표자의경영능력 및 사업의지	10	5	10	5	10	○대표자의 경영능력 및 사업의지	15	15	15	15	15
○공동구성원의 참여형태	-	5	-	-	-	2. 재무,사업현황	20	20	20	20	20
○조직결속력	-	-	-	5	-		○매출액 경상이익율	-	-	2	2
2.사업계획의 적정성	85	85	85	85	85	○매출액증가율	5	5	3	3	5
○제품의 경쟁력	25	25	25	25	25	○공장가동율	3	3	3	3	3
○제품의 판매전망	25	25	25	25	25	○품질관리의 적정성	2	2	2	2	2
○제품의 수익성	10	10	10	10	10	○기술개발실적	5	5	5	5	5
○공장부지이용 및 입지여건의 적정성	5	5	5	5	5	○위생청결상태	3	3	5	5	3
○가공공정설치 및 품질관리의 적정성	5	5	5	5	5	○경영장부운용	2	2	-	-	2
○시설투자규모 적정성	5	5	5	5	5	3. 사업전망 및 증설 계획타당성	60	60	60	60	60
○자금조달계획 적정성	5	5	5	5	5	○제품의 경쟁력	25	25	25	25	25
○공장운영의 계절성	5	5	5	5	5	○제품 판매전망	25	25	25	25	25
3.지역경제기여도	5	5	5	5	5	○시설투자규모 적정성	5	5	5	5	5
○원료조달용이도	3	3	3	3	3	○자금조달계획 적정성	5	5	5	5	5
○시도지사 의견	2	2	2	2	2	4.지역경제기여도	5	5	5	5	5
						○원료조달용이도	3	3	3	3	3
						○시도지사 의견	2	2	2	2	2
합 계	100	100	100	100	100	합 계	100	100	100	100	100

[양식 2]

업체별 사업성 종합평가표 (신규업체)

1. 사업계획 신청현황

사업체명				대표자			
사업형태	가공품목			주원료			
시설규모	부지			건물			기계
채원조달 (백만원)	계		정부융자		금융기관차입		자부담
공장예정지							

2. 사업성 검토결과

검토내용	평가항목	배점	평가등급				특점
			A	B	C	D	
사업수행능력(10) (농업인, 협동조합, 일반업체)	○ 대표자의 경영능력 및 사업의지	10	10	8	5	2	소계:
사업수행능력(10) (농가공동)	○ 대표자의 경영능력 및 사업의지	5	5	4	2	1	소계:
	○ 공동구성원이 참여형태	5	5	4	2	1	
사업수행능력(10) (영농조합)	○ 대표자의 경영능력 및 사업의지	5	5	4	2	1	소계:
	○ 조직결속력	5	5	4	2	1	
사업계획의 적정성(85) (공통)	○ 제품의 경쟁력	25	25	20	12	5	소계:
	○ 제품의 판매전망	25	25	20	12	5	
	○ 제품의 수익성	10	10	8	5	2	
	○ 공장부지이용 및 입지여건의 적정성	5	5	4	3	1	
	○ 가공공정설치 및 품질관리의 적정성	5	5	4	3	1	
	○ 시설투자규모의 적정성	5	5	4	3	1	
	○ 자금조달계획의 적정성	5	5	4	3	1	
	○ 공장운영의 계절성	5	5	4	3	1	
지역경제 기여도(5) (공통)	○ 원료조달의 용이도 및 부존 자원의 활용도	3	3	2	1	0.5	소계:
	○ 시도지사 의견	2	2	1.5	1	0.5	
합 계		100					

※ 별첨 : 평가항목별 평가조서

3. 사업성 검토결과 종합의견

--

4. 투자비 조정 및 지원한도

가. 조정내역

(단위 : 백만원)

시 설 규 모			투 자 비 조 정 내 역						A-B
			신 청			조 정			
부 지	건 물	기 계	건 물	기 계	계(A)	건 물	기 계	계(B)	

나. 지원한도

(단위 : 백만원)

총투자비 조정액	지 원 내 역			비 고
	계	정부융자	자부담	

< 평가항목별 평가조서 >

1. 사업수행능력

평 가 항 목	등 급	평 가 사 유
가. 대표자의 경영 능력 및 사업 의지(공통)		
나. 공동구성원의 참여형태 (농가공동)		
다. 조직결속력 (영농조합)		

2. 사업계획의 적정성

평 가 항 목	등 급	평 가 사 유
가. 제품의 경쟁력 (공통)		
나. 제품의 판매 전망(공통)		
다. 공장부지 이용 및 입지여건의 적정성(공통)		

평가항목	등급	평가사유
라. 가공공정설치 및 품질관리의 적정성(공통) 마. 시설투자규모의 적정성(공통) 바. 자금조달계획의 적정성(공통) 사. 공장운영의 계절성(공통)		

3. 지역경제 기여도

평가항목	등급	평가사유
가. 원료조달용이도 및 부존자원의 활용도(공통) 나. 시도지사 의견 (공통)		

업체별 사업성 종합평가표 (기존업체)

1. 사업계획 신청현황

사업체명				대표자			
사업형태		가공품목	두부		주원료	콩	
시설규모	부지			건물			기계
재원조달 (백만원)	계		정부융자		금융기관차입		자부담
공장예정지							

2. 사업성 검토결과

검토내용	평가항목	배점	평가등급				특점
			A	B	C	D	
사업수행능력(15) (공통)	○ 대표자의 경영능력 및 사업의지	15	15	12	8	3	소계:
재무상태및 사업현황(20) (농업인, 농가공동, 일반업체)	○ 매출액 증가율	5	5	4	3	1	소계:
	○ 공장 가동율	3	3	2	1	0.5	
	○ 품질관리의 적정성	2	2	1.5	1	0.5	
	○ 기술인력확보 및 기술개발실적	5	5	4	3	1	
	○ 위생청결상태	3	3	2	1	0.5	
	○ 경영장부운용	2	2	1.5	1	0.5	
재무상태및 사업현황(20) (협동조합, 영농조합)	○ 매출액 경상이익율	2	2	1.5	1	0.5	소계:
	○ 매출액 증가율	3	3	2	1		
	○ 공장 가동율	3	3	2	1	0.5	
	○ 품질관리의 적정성	2	2	1.5	1	0.5	
	○ 기술인력확보 및 기술개발실적	5	5	4	3	1	
	○ 위생청결상태	3	3	2	1	0.5	
사업전망 및 증설 계획의 타당성(60) (공통)	○ 제품의 경쟁력	25	25	20	12	5	소계:
	○ 제품의 판매전망	25	25	20	12	5	
	○ 시설투자규모의 적정성	5	5	4	3	1	
	○ 자금조달계획의 적정성	5	5	4	3	1	
지역경제기여도(5) (공통)	○ 원료조달의 용이도 및 부존 자원의 활용도	3	3	2	1	0.5	소계:
	○ 시도지사 의견	2	2	1.5	1	0.5	
합 계		100					

※ 별첨 : 평가항목별 평가조서

3. 사업성 검토결과 종합의견

--

4. 투자비 조정 및 지원한도

가. 조정내역

(단위 : 백만원)

시 설 규 모			투 자 비 조 정 내 역						A-B
			신 청			조 정			
부 지	건 물	기 계	건 물	기 계	계(A)	건 물	기 계	계(B)	

나. 지원한도

(단위 : 백만원)

총투자비 조정액	지 원 내 역			비 고
	계	정부융자	자부담	

< 평가항목별 평가조서 >

1. 사업수행능력

평 가 항 목	등급	평 가 사 유
가. 대표자의 경영 능력 및 사업 의지(공통)		

2. 재무상태 및 사업현황

평 가 항 목	등급	평 가 사 유
가. 매출액경상이익율 (협동조합, 영농 조합)		
나. 매출액 증가율 (공통)		
다. 공장가동율 (공통)		
라. 품질관리의 적정성(공통)		
마. 기술인력확보 및기술개발실적 (공통)		
바. 위생청결상태 (공통)		
사. 경영장부 운용 (농업인, 농가공동, 일반업체)		

3. 사업전망 및 증설계획의 타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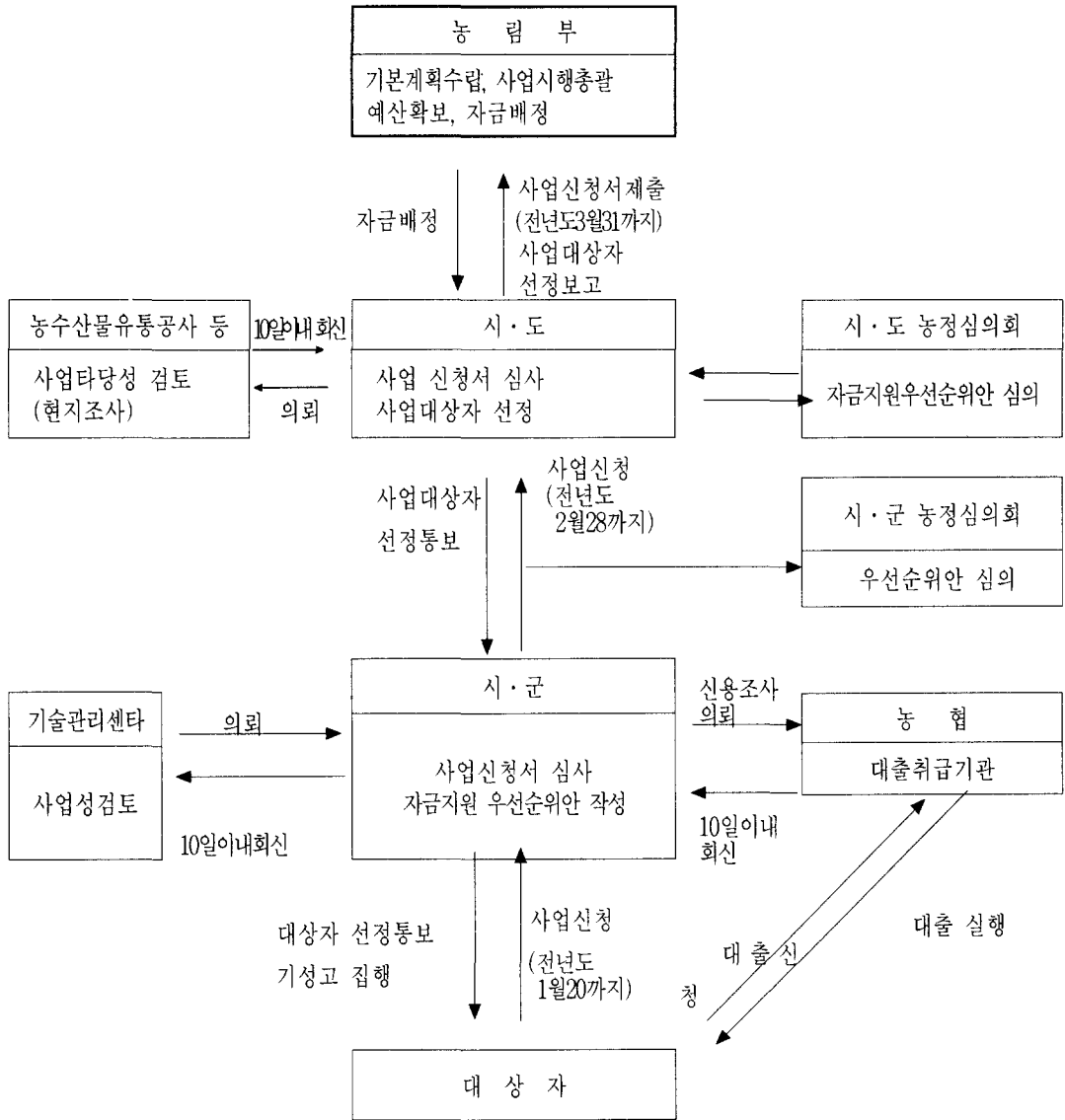
평가항목	등급	평가사유
가. 제품의 경쟁력 (공통)		
나. 제품의 판매 전망 (공통)		
다. 시설투자규모의 적정성 (공통)		
라. 자금조달계획의 적정성 (공통)		

4. 지역경제 기여도

평가항목	등급	평가사유
가. 원료조달용이도 및 부존자원의 활용도 (공통)		
나. 시도지사 의견 (공통)		

< 참고1 >

농산물가공공장건설사업 세부시행 체계



② 농촌특산단지육성

1. 목 적

- 농촌의 부존자원과 유희노동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한 농촌특산품 생산단지(이하 “특산단지”라 한다)를 조성·운영함으로써, 농업인의 농외소득을 증대시키고 농촌지역의 발전 도모

2. 시책 및 추진방향

- 지역부존자원을 활용하여 향토성과 지명도가 높고 지역의 얼이 담긴 농촌 특산품을 생산
- 고부가가치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특산단지를 육성하여 농촌일자리 제공 및 농외소득 증대
- 특산단지간 공조활동을 도모하여 생산제품의 시장정보 제공 및 품질 향상

3. 근거법령

-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9조(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의 육성)

4. 연도별 지원계획

《특산단지육성》

(단위 : 개소,백만원)

구 분		'92~'00	'01	2002	2003 (예산안)	2004
사 업 량		493	14	6	1	24
사 업 비	계	119,712	2,464	1,349	714	6,205
	국 고	87,108	-	-	-	-
	보 조	12,420	-	-	-	-
	융 자	74,688	1,725	1,349	500	4,343
비	자부담	32,604	739	578	214	1,862

※ 사업량은 신규조성단지 기준임

《특산품 전시판매장》

- '99년부터 지역특화사업 세부사업에 포함하여 지원

5. 2003년도 사업시행요령

<사업개요>

가. 사업내용

(1) 배 경

- 농촌의 부존자원을 활용한 특산품을 생산·판매하여 농업인의 소득 증대 및 농촌지역의 발전 도모

(2) 지원대상자

- 특산단지 육성 사업자로 선정된 농업인, 비농업인
(단, 비농업인만의 출자일 경우는 3호이상의 농업인 참여)

(3) 지원규모 및 조건

-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은 농협(군지회 또는 지역농협) 및 특산단지 도연합회·군연합회의 사업성검토를 기초로 사업성 검토 종합평점표(별표1)를 작성하고 사업지구를 3등급으로 분류한 후 농정 심의회 심의후 지원한도 결정

- 단지당 등급별 지원한도

지원등급	평점결과	지원한도	비고
1등급	75점 이상	3억원	단, 지원한도가 초과되었다 하더라도 융자금 대출잔액이 지원한도 이하일 경우는 추가지원 가능
2등급	75점미만~ 50점 이상	2.5억원	
3등급	40점이상~ 50점 미만	2억원	

※ 40점 미만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지원기준 및 지원조건

- 지원기준 : 시장·군수는 당해연도 예산을 고려하여 단지당 등급별 지원 한도내에서 기존단지를 중심으로 지원하되 가능한 신규단지 지원은 지양
 - 신규단지 : 시설비, 운영비
 - 기존단지 : 시설비, 운영비(다만, 운영비는 지원기준초과시 시·도지사 승인후 지원가능)

- 단지당 지원기준

구 분	총사업비	지원기준액	
		국고융자(70%) 이내	자부담(30%) 이상
시 설 비	140백만원	98	42
운 영 비	80	56	24

- 지원조건

구 분	융자조건	비 고
시설비	3년거치 7년균분상환, 연리 4%	시설자동화 및 사업장 신축 등
운영비	2년거치 3년균분상환, 연리 4% (단, 비농업인 : 5.5%)	원료구입, 금형제작, 제품 및 포장 디자인 개발 (단 신규시설 투자 및 토지구입비는 제외)

(4) 참여형태 및 지원대상품목

- 참여형태 : 공동출자, 공동생산, 임가공, 취업형태로 운영
- 지원대상품목

업 종 별	품 목
민속공예품 농산자재 섬유직물 석재분야	죽제품, 목공예, 도자기공예, 한지, 패각가공, 완초가공 등 싸리제품, 지물제품, 인삼발 등 모시, 삼베, 마포, 자수 등 돌벼루, 솥돌, 돌가공제품 등

- 농촌부존자원을 활용한 품목으로 지역대표성과 전통성을 나타낼 수 있는 품목을 선정
- 단, 일반공산품 및 식료품은 신규지원 대상품목에서 제외
- ※ 일반공산품은 공업화에 의해 다른 일반공장등에서도 생산이 가능하고 원료수입 의존도가 높으며, 농촌인력 활용도가 낮은 제품임

나. 2003사업비(예산안)내용

(단위 : 개소, 백만원)

내 용 별	사업량	사업비계	예 산 액			자부담
			계	보조	융자	
계	5	714	500	-	500	214
시설비	1	500	350	-	350	150
운영비	4	214	150	-	150	64

<추진체계>

가. 사업주관기관 : 시장·군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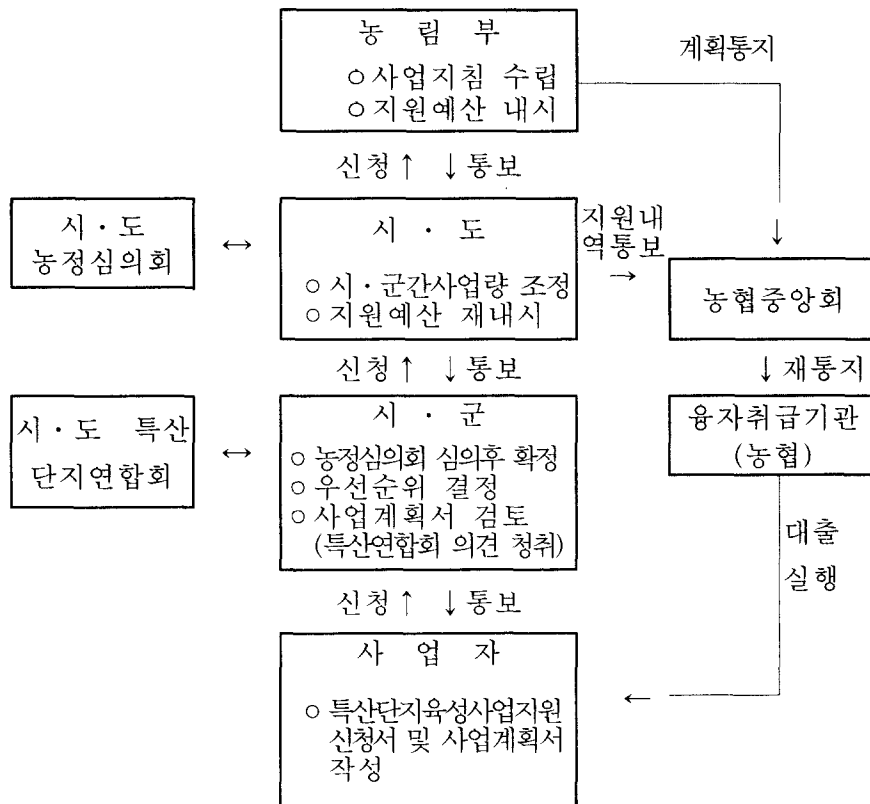
나. 사업담당부서

- 농림부 : 농산물유통국 식품산업과 (☎(02)500-1844, 1845)
- 시·도 : 농정국 농업정책과
- 시·군·자치구 : 산업과

다. 추진절차

- 농림부 : 사업시행지침 수립 시달
- 사업자 : 농촌특산단지육성사업지원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시·군·자치구 (이하 시·군이라 한다)에 제출
- 시·군 : 시·군단위 농어촌발전장기계획의 사업량을 고려하여 농협 및 특산단지연합회의 사업성 검토 자료를 토대로 농정심의회 심의후 사업계획 및 우선순위 확정

○ 사업시행 체계도



라. 사업대상자 선정

(1) 선정기준 및 우선순위

- 신규단지의 지원은 가급적 지양하되, 농촌부존자원의 활용도가 높고 지역대표성, 지명도 및 상품화 가치가 있는 지역특산품을 엄선하여 지원
 - 사업성 검토결과 등급이 높은 단지를 우선 선정하되, 지방자치단체의 「1군1명품육성사업」과 「1농협1특산품개발사업」 등과 연계될 수 있는 품목을 선정
- 기존단지의 시설비는 부가가치가 높은 전통 민속공예품 등을 대상으로 고용창출 효과가 높은 업체에 우선지원
 - 사업성 검토결과 등급이 높은 단지를 선정
 - ※ 지원대상(예시) : 도자기·목공예·한지·패각가공 등 민속공예품, 모시, 마포, 삼베, 석공예, 벼루 등
- 기존단지의 농산자재, 섬유직물 및 석재제품중 공산품성격이 짙은 단지는 시설비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 농업인의 농외소득 확보측면에서 경영정상화를 위한 운영비만을 지원
 - ※ 제외대상(예시) : 비닐제품, 종이상자, PP마대, 어망, 차광막, 면장갑, 타월, 건축용석재·타일 등
- 사업성검토는 신규 및 기존단지 구별없이 특산단지 도연합회 또는 군연합회의 의견과 농협(군지회 또는 지역농협)의 신용상태·대출가능액에 대한 검토의견 등을 반영하여 시장·군수가 하여야 함
 - 시·도지사가 무분별한 계획이라고 판단될 경우는 농정심의회 심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음
 - ※ 일반공산품, 식료품은 선정대상에서 제외

(2) 선정절차

- 신규 및 기존단지에 지원자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농촌특산단지 육성사업 지원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사업시행 전년도 1.20까지 시·군에 제출
- 시장·군수는 시·군단위 농촌발전장기계획의 사업량을 고려하여 대출 취급기관 및 특산단지연합회의 사업성 검토(별표1)와 농정심의회 심의후 지원계획 확정(별지 제2호 서식). 단, 시장·군수는 대상자 선정시 공예협동조합, 기타 품목별 조합의 의견을 청취하여 참고할 수 있음

(3) 사업시행

(가) 사업추진

- 사업자는 시·군의 사업비 지원계획에 따라 사업시행

(나) 사업계획변경

- 사업계획은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으나 사업계획수립 당시 예상하지 못한 중대한 사정으로 사업계획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다음에 의거 처리하고 그 결과를 대출 취급기관에도 통보

- 농림부장관 승인사항
 - 시·도간 예산 변경
 - 시·도간 사업장 변경
- 시·도지사 승인사항 (농림부에 보고)
 - 시·도 지원액 범위내에서 시·군간 예산 변경
 - 시·군간 사업장 변경
- 시장·군수 승인 및 신고사항(시·도에 보고)
 - 시·군내 사업장 변경(승인)
 - 지원금액 범위내에서 계획변경(승인)
 - 사업대표자 변경(신고)
 - 상호변경, 품목변경 등 경미한 사항(신고)

※ 위의 사항은 사업완료후 사후관리 기간중에도 동일하게 적용

마. 사업비 지원

(1) 예산의 지원 : 시·도별로 예산내시(추후 별도)

(2) 자금의 운용관리

- 사업지원신청시 첨부한 사업계획서상의 분기별 용자금소요액에 따라 정부자금 형편을 감안하여 지원
 - 용자금 취급기관의 여신관리 관계규정 등에서 정하는 바를 준수하여야 함.
- 기존단지 취소시 국고보조금은 보조금의 예산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에 따라 처리

(3) 용자요령

-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농특회계용자업무지침 및 대출취급기관의 여신관리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되, 가급적 신용대출 또는 신용보증 대출을 원칙으로 하며, 특산단지의 담보능력을 감안하여 금융기관은 대출시 담보물의 시가기준을 현실화하고, 시설자금 용자시 최대한 후취담보 실시

- 대출취급기관은 사업 시행대표자로부터 용자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사업주관기관이 통보한 사업진도(기성고)에 따라 진도 확인후 자금을 지원
- 단, 대출취급기관 등이 지원대상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비와 운영비는 제외할 수 있음

(4) 사업비 검정 및 결산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사업비가 연내에 모두 집행될 수 있도록 사전에 사업비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미집행액이 발생치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농림사업시설 설치에 따라 부과된 부가가치세액중 환급받게 되는 금액과 리스방식으로 집행한 시설비는 사업비에서 제외
- 시·도지사는 당해 연도말 검정을 붙임서식(별지 제7호 서식)에 의거 실시하여야 함

바. 사업효과

- 부존자원을 활용한 지역특산품 개발과 농촌 일자리 제공으로 지역경제와 농외소득증대에 기여
- 기술 및 경영지도와 정보교환 등을 통한 품질을 향상시키고 경쟁력 제고에 기여

<행정사항>

《특산단지육성》

가. 사업자 준수사항

- 기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건물,기계)은 사후관리기간내 처분제한을 원칙으로 하되, 사후관리기간중 사정변경(처분제한기준 참고)을 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함
- 특산단지 사업자는 사업장 입구의 적당한 위치에 특산단지의 명칭(단지명), 선정년도, 선정권자, 단지규모 등을 표기한 표찰을 부착하여야 함
- 특산단지 사업자는 연도별 수입 및 지출상황(보조금은 별도 계리), 결산상황(자산, 자본, 부채, 손익 등), 제조원가, 매출현황, 참여가구현황, 임금지급상황 등에 관한 농촌특산단지 관리대장을 사업장에 비치하여야 함(별지 제3호 서식)

나. 제품개발 및 품질관리

- 시장·군수는 지역특산품에 대하여 대학, 산업디자인포장개발원 등 연구기관, 특산단지연합회 등을 통하여 디자인 및 상품을 개발하도록 지도
 - 시장·군수는 특산단지사업에 필요한 상품기술 및 디자인개발을 현장애로 기술개발과제로 채택하여 개발될 수 있도록 추진
- 특산단지연합회에서 자율적으로 품질관리기준을 설정하고, 유사제품과 차별화되도록 홍보활동을 강화

다. 사후관리

(1) 관리주체 : 시장·군수

(2) 점검시기 및 내용

- 시장·군수는 대출취급기관 등과 합동으로 정기적(매반기 1회이상)으로 현장실태를 조사하여 사업성을 검토하고, 사업자 준수사항 등을 점검

(3) 점검결과 반영

- 사업성 검토결과 부실화 단지는 과감히 정리(퇴출)하고 사업전망이 있는 단지는 추가지원 요구시 기존단지 지원대상으로 선정
- 시장·군수는 보조금과 융자금(원리금 상환기간 만료 이전)을 지원받은 사업자가 당초 사업목적에 크게 위배하여 부당사용 사유에 해당되면 보조금의 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등에 따라 처리

(4)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관리

재 산 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기타 필요사항
	부 터	까 지		
건물(공장,공동 작업장,창고, 사무실 등)	준 공 검사일	10 년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교부목적에 위 배 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교환,대여, 담보제공을 할 수 없음. 다만, 사후관리기간중 사업자의 질병, 사망, 기타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유지관리가 어렵 다고 판단되거나 시설기자재의 화재, 손·망실, 기타 정당한 사유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에는 시장·군수의 승인을 거쳐 사후관리를 해제할 수 있음.	관리대장을 사업장에 비치하고 현재액 및 사후관리사항 등을 기록
기 계	설치일	5 년		

라. 보 고

- 시·도지사는 매년 12월말 현재 농촌특산단지 사업비 정산결과를 취합하여 다음해 1.31까지 농림부장관에게 보고(별지 제7호 서식)
- 시·도지사는 관내 특산단지에 대해 12월말 현재 사업추진실적, 운영단지현황, 단지정리(퇴출)현황을 파악하여 그 결과를 농림부장관에게 1.31까지 보고(별지 제5호 서식)
- 신규 및 기존단지 지원계획 보고 : 각 시·도지사는 신규 및 기존단지 지원계획(사업량, 재원별 지원액등)을 매년 2월말까지 농림부장관에게 보고(별지 제4호서식)

《특산품 전시판매장》

가. 사후관리

- 기 지원한 농촌특산품 전시판매장 사업의 보조사업자는 보조목적 및 보조사업 내용에 따라 성실히 보조사업을 실시해야 하며, 지원받은 시설물을 처분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는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기타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보조금의 예산및관리에 관한 법률, 농림사업 자금집행관리기분규정 등에서 정하는 바를 준수하여야 함.
- 사후관리책임자 : 시·도지사(시장·군수)

나. 보 고

- 시·도지사는 농촌특산품전시판매장 운영실적을 다음해 1.31까지 농림부장관에게 보고(별지 제6호 서식)

○ 사업추진관련 보고사항

구 분	기 관 별	보고기한	양 식
1. 특산단지 사업 추진 실적 - 연도말 운영단지 현황 - 연도말 단지별 정리(퇴출)현황 - 연도별 선정 및 퇴출현황	시·군→시·도 시·도→농림부	1. 15 1. 31	별지 제5호 서식
2. 특산단지 사업비 정산보고	시·도→농림부	1. 31	별지 제7호 서식
3. 특산단지별 지원계획 보고 (총괄, 신규, 기존) - 특산단지 사업비 조달계획 세부 명세표	시·도→농림부	2월말	별지 제4호 서식
4. 특산단지 정리(퇴출) 결과보고	시·도→농림부	취소즉시	1.31보고시 누계 하여 제출

※ 특산품 전시판매장 운영실적은 별지 제6호 서식에 의거 시·도에서 농림부에 다음해 1.31까지 보고

6. 2004년도 사업신청안내

《특산단지육성》

가. 신청서 제출기관 : 시·군

나. 신청서 제출기한

- 사업신청자 → 시·군(2003.1.20까지)
- 시장·군수 → 시·도(2003.2.28까지)

다. 신청자격

- 농업인, 비농업인(단, 비농업인만의 출자일 경우는 3호이상의 농업인 참여)

라. 신청절차

- 신청자는 농림사업시행지침서에서 정하는 사업지원신청서를 읍·면장을 거쳐 시·군의 총괄부서에 제출
- 단, 시·군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직접 시·군의 총괄부서에 제출

마. 구비서류

- 농촌특산단지 육성사업 지원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별표 1]

사업성 검토

< 종합평점표 : 신규단지용 >

신규단지용		배점 (점)	평점 기준					평점
대항목	소항목		A	B	C	D	E	
특산단지 적합성	고용효과(유휴노동력 활용)	31	10	8	6	4	2	
	소득효과		10	8	6	4	2	
	지역자원 활용도		11	8.8	6.6	4.4	2.2	
시 장 성	판로확보	30	10	8	6	4	2	
	홍보전략		7	5.6	4.2	2.8	1.4	
	제품차별화 정도		5	4	3	2	1	
	동업계전망		5	4	3	2	1	
	경쟁상태		3	2.4	1.8	1.2	0.6	
사업추진 기반	노동력 및 원료조달 용이도	10	5	4	3	2	1	
	판매계획의 적정성		5	4	3	2	1	
재무상태	자기자본 비율	10	5	4	3	2	1	
	채무상환 능력		5	4	3	2	1	
기 술 성	기술수준	10	5	4	3	2	1	
	상품성제고 노력도		5	4	3	2	1	
대 표 자 력	은행거래 신용도	5	5	4	3	2	1	
주 의 성 (전망)	매출액경상 이익율	4	2	1.6	1.2	0.8	0.4	
	투자수익율		2	1.6	1.2	0.8	0.4	
합 계		100	100	80	60	40	20	

< 항목별 등급기준 : 신규단지용 >

평가항목		등급	평가기준
대항목	소항목		
특산단지 지목적합성	고용효과 (유휴노동력 활용)	A B C D E	15가구 초과 참여 15가구 이하 참여 10가구 이하 참여 7가구 이하 참여 5가구 이하 참여
	소득효과	A B C D E	가구당 연간 소득금액 10백만원 이상 " 8백만원 이상 ~ 10백만원 미만 " 6백만원 이상 ~ 8백만원 미만 " 4백만원 이상 ~ 6백만원 미만 " 4백만원 미만
	지역자원 활용도	A B C D E	지역생산 원료 이용율 80% 이상 " 60% 이상 ~ 80% 미만 " 40% 이상 ~ 60% 미만 " 20% 이상 ~ 40% 미만 " 20% 미만
시장성	판로 확보	A B C D E	이미 확보된 고정거래처에 의한 판매 특산단지 도연합회·군지회사무소, 상설전시판매장 등을 통한 직판 대리점 등을 통한 위탁판매 주문판매(고정거래처에 대한 주문판매분 제외) 기타 일반판매
	홍보전략	A B C D E	대중언론매체(신문, 방송등)를 통한 전국적인 홍보 대규모 수요처, 특산품전시판매전 등 전국적인 홍보 도단위 이내의 지역적인 홍보 군단위 이내의 지역적인 홍보 홍보전략 없음
	제품차별화 정도	A B C D E	지역고유 특산물로 타지역 생산불가 독창적 품질로 3년내 유사경쟁제품 출현 가능성 없음 독창적 품질로 2년내 유사경쟁제품 출현 가능성 없음 독창적 품질로 유사경쟁제품 출현이 비교적 어려움 제품 차별성 없음
	동 업계전망	A B C D E	매우 유망 비교적 유망 현상유지 장기적으로 사양화 예상 단기적으로 사양화 확신
	경쟁상태	A B C D E	독점 과점 보통 비교적 치열 매우 치열

평가항목		등급	평가기준
대항목	소항목		
사업 추진 기반	노동력 및 원료조달 용이도	A B C D E	노동력 및 원료조달에 전혀 문제 없음 노동력 및 원료조달이 용이함 노동력 및 원료조달에 대한 전망을 예측할 수 없음 노동력 및 원료조달에 다소 애로가 있음 노동력 및 원료조달에 애로가 많음
	판매계획의 적정성	A B C D E	매우 합리적이며 목표달성이 확실함 비교적 합리적이며 목표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 적정수준이라고 판단되나 달성가능성은 예측 불가 다소 무리한 계획으로 목표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 매우 비합리적인 계획으로 목표달성이 전혀 불가능함
재무 상태	자기자본비율 $\frac{\text{자기자본}}{\text{총자본}}$	A B C D E	50% 이상 ~ 50% 미만 30% 이상 ~ 30% 미만 20% 이상 ~ 20% 미만 10% 이상 ~ 10% 미만
	채무상환능력 $\frac{\text{차입금}}{\text{매출액 (예상)}}$	A B C D E	20% 미만 ~ 40% 미만 20% 이상 ~ 60% 미만 40% 이상 ~ 80% 미만 60% 이상 ~ 80% 미만 80% 이상
기술성	기술수준	A B C D E	인력, 최신설비 등을 보유하여 독자적 기술개발 충분 인력, 최신설비 등을 보유하여 독자적 기술개발 가능 최신설비는 없으나 인력을 보유하여 기술개발 가능 인력은 없으나 최신설비 보유로 기술개발 가능 인력, 최신설비 등이 없음
	상품성 제고노력도	A B C D E	①상표등록②의장등록③KS등공인규격표시허가 획득④ 독창적인디자인개발을 위해 한국디자인포장센터 등에 외부위탁교육 실시⑤기타 품질보증 획득⑥규격포장재 사용 상기 상품성제고활동중 4개이상 해당 " 3개이상 해당 " 2개이상 해당 " 1개이상 해당 " 해당사항 없음

평가항목		등급	평가기준
대항목	소항목		
대표자 능력	은행거래 신용도	A	최근 3년간 불량거래자(연체포함) 규제사실 없음
		B	최근 2년간 "
		C	최근 1년간 "
		D	최근 6개월간 "
		E	그 외의 자
수익성 (전망)	매출액 경상이익율	A	4.7% 이상
		B	4.6% ~ 2.7%
		C	2.6% ~ 0.9%
		D	0.8% ~ △1.7%
		E	△1.7% 미만
(전망)	투자수익율 당기순이익 ($\frac{\quad}{\text{총자본}}$)	A	13.2% 이상
		B	13.1% ~ 7.6%
		C	7.5% ~ 2.8%
		D	2.7% ~ 0.6%
		E	0.6% 미만

사업성 검토

< 종합평점표 : 기존단지용 >

기존단지용		배점	평점 기준					평점
대항목	소항목		A	B	C	D	E	
특산단지 목적 합성	고용효과(유휴노동력 활용)	30	10	8	6	4	2	
	소득효과		10	8	6	4	2	
	지역자원 활용도		10	8	6	4	2	
과거 영업 실적	경영성과	25	10	8	6	4	2	
	매출액 증가율		10	8	6	4	2	
	가동율		5	4	3	2	1	
사업추진 기반	판로확보	15	8	6.4	4.8	3.2	1.6	
	노동력 및 원료조달 용이도		4	3.2	2.4	1.6	0.8	
	제품차별화 정도		3	2.4	1.8	1.2	0.6	
채무상태	자기자본 비율	10	6	4.8	3.6	2.4	1.2	
	채무상환 능력		4	3.2	2.4	1.6	0.8	
사업 전망	가격 및 품질경쟁력 전망	10	4	3.2	2.4	1.6	0.8	
	거래조건 및 판매전망		4	3.2	2.4	1.6	0.8	
	동업계 전망		2	1.6	1.2	0.8	0.4	
수익성	매출액 경상이익율	5	3	2.4	1.8	1.2	0.6	
	투자수익율		2	1.6	1.2	0.8	0.4	
기술성	상품성제고 노력	5	4	3.2	2.4	1.6	0.8	
	신제품개발		1	0.8	0.6	0.4	0.2	
합 계		100	100	80	60	40	20	

< 항목별 등급기준 :기존단지용 >

평가항목		등급	평가기준
대항목	소항목		
특산단지 지목적 적합성	고용효과 (유휴노동력 활용)	A B C D E	15가구 초과 참여 15가구 이하 참여 10가구 이하 참여 7가구 이하 참여 5가구 이하 참여
	소득효과	A B C D E	가구당 연간 소득금액 10백만원 이상 " 8백만원 이상 ~ 10백만원 미만 " 6백만원 이상 ~ 8백만원 미만 " 4백만원 이상 ~ 6백만원 미만 " 4백만원 미만
	지역자원 활용도	A B C D E	지역생산 원료 이용율 80% 이상 " 60% 이상 ~ 80% 미만 " 40% 이상 ~ 60% 미만 " 20% 이상 ~ 40% 미만 " 20% 미만
과거 영업 실적	경영성과	A B C D E	최근3년이상 흑자경영이고 순이익규모 증가추세 최근3년이상 계속흑자경영와 영업기간2년으로 흑자 최근 2년간 계속 흑자경영와 영업기간1년으로 흑자 전년도 흑자경영 그외의 경우
	매출액 증가율	A B C D E	최근 3년간 매출증가율 20% 이상 " 19 ~ 15% " 14 ~ 10%, 영업기간 3년미만 " 9 ~ 5% 5%미만
	가동율 실제가동일 (——) 가동가능일 *연300일기준	A B C D E	90%이상 80%이상 70%이상 60%이상 60%미만

평가항목		등급	평가기준
대항목	소항목		
사업 추진 기반	판로확보	A B C D E	이미 확보된 고정거래처에 의한 판매 특산단지 도연합회·군지회사무소, 상설전시판매장 등을 통한 직판 대리점 등을 통한 위탁판매 주문판매(고정거래처에 대한 주문판매분 제외) 기타 일반판매
	노동력 및 원료조달 용이도	A B C D E	노동력 및 원료조달에 전혀 문제 없음 노동력 및 원료조달이 용이함 노동력 및 원료조달에 대한 전망을 예측할 수 없음 노동력 및 원료조달에 다소 애로가 있음 노동력 및 원료조달에 애로가 많음
	제품차별화 정도	A B C D E	지역고유 특산물로 타지역 생산불가 독창적 품질로 3년내 유사경쟁제품 출현 가능성 없음 독창적 품질로 2년내 유사경쟁제품 출현 가능성 없음 독창적 품질로 유사경쟁제품 출현이 비교적 어려움 제품 차별성 없음
재무 상태	자기자본 비율 자기자본 ($\frac{\quad}{\quad}$) 총자본	A B C D E	50% 이상 30% 이상 ~ 50% 미만 20% 이상 ~ 30% 미만 10% 이상 ~ 20% 미만 10% 미만
	채무상환 능력 차입금 ($\frac{\quad}{\quad}$) 매출액	A B C D E	20% 미만 20% 이상 ~ 40% 미만 40% 이상 ~ 60% 미만 60% 이상 ~ 80% 미만 80% 이상
사업 전망	가격 및 품질경쟁력 전망	A B C D E	수입가능성이 전혀 없음 수입가능성이 있으나 가격및품질에서 절대적 우위 " 다 소 우위 " 대 등 " 열위
	거래조건 및 판매전망	A B C D E	상품의 가격 및 거래조건, 상품의 시장성, 신용있는 거 래처 확보등으로 전망이 매우 양호 " 양호 " 보통 상품의 가격 및 거래조건은 보통이하이나 상품의 시장 성, 신용있는 거래처 확보등으로 전망 보통 그외의 경우
	동 업계전망	A B C D E	매우 유망 비교적 유망 현상유지 장기적으로 사양화 예상 단기적으로 사양화 확신

평가항목		등급	평가기준
대항목	소항목		
수익성	매출액 경상이익율	A	4.7% 이상
		B	4.6% ~ 2.7%
		C	2.6% ~ 0.9%
		D	0.8% ~ △1.7%
		E	△1.7% 미만
투자수익율 당기순이익 (————) 총자본	A	13.2% 이상	
	B	13.1% ~ 7.6%	
	C	7.5% ~ 2.8%	
	D	2.7% ~ 0.6%	
	E	0.6% 미만	
기술성	상품성제고 노력도		①상표등록②의장등록③KS등공인규격표시허가 획득④ 독창적인디자인개발을 위해 한국디자인포장센터 등에 외부위탁교육 실시⑤기타 품질보증 획득⑥규격포장재 사용
		A	상기 상품성제고활동중 4개이상 해당
		B	" 3개이상 해당
		C	" 2개이상 해당
		D	" 1개이상 해당
E	" 해당사항 없음		
신제품개발	신제품개발	A	신제품 월간 판매액이 전년도 월간 판매액의 50%이상
		B	신제품이 개발 완료되어 판매실적 있음
		C	신제품을 개발 완료하여 공인기관 시험 완료
		D	신제품 개발중
		E	신제품 개발없음

○ 참여가구현황

(단위 : 가구)

합 계			공동출자			공동생산			취 업			임 가 공		
계	농가	기타	계	농가	기타	계	농가	기타	계	농가	기타	계	농가	기타

- * (주) 1. 공동생산이라 함은 참여가구가 원료를 스스로 생산 또는 조달하여 특산단지에서 제품을 제조하여 판매한 후 그 이익금을 공동분배하는 것을 말함.
 2. 1가구 단독출자한 사업자는 공동출자란에 적음.
 3. 2인이상 참여가구의 경우 가구원중 특산단지에서의 소득이 가장 많은 가구원의 참여형태를 적음.

○ 참여가구 및 참여자 명단

(단위 : 가구)

가구 번호	가구주 성명	주 소	경작면적(m ²)			참 여 자			
			계	자경	임차	성명	생년월일	가구주와 의 관계	참여 형태

- * (주) 1. 사업자의 가구번호는 1번을 부여함.
 2. 1가구 단독출자한 사업자의 경우 그의 참여형태란에는 “출자”라 적음.

2. 사업비 조달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사 업 비			시기별 소요금액				
	합계	농특용자	자부담	계	1/4	2/4	3/4	4/4
합 계								
시 설 자 금	소 계							
	건 물 · () · () · () · () 기계·기구 · · · 생산부대시설 · · ·							
운 영 자 금	소 계							
	원료구입비 기 타 (금형·디자인 개발 등)							

- * (주) 1. 건물은 공장, 공동작업장, 창고, 사무실 등의 사용목적에 따라 동별로 세분하고, ()안에 신축·증축·개축·매입중 하나를 적음.
 2. 건물을 토지와 일괄매입하는 경우의 건물매입비는 당해건물의 재산세 과세 표준액을 적음.

3. 제조공정

--

* (주) 단위공정별로 상세하게 기재(필요할 경우 도면 첨부)

4. 원료조달계획

연도별	원료명	조달처	조달방법	조달시기	소요량	소요자금(천원)			
						계	정부지원	자체차입	자기자금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 * (주) 1. 조달처는 농촌, 도시 등으로 구분
 2. 조달방법은 자체생산, 구입, 원도급자 제공 등으로 구분(자체생산은 참여형태가 “공동생산”으로써 참여가구가 경작 등의 방법으로 직접 생산한 경우에 한함)
 3. 조달시기는 연중 또는 일시(예 : 3월~6월)로 구분
 4. 소요량에는 물량과 함께 반드시 단위를 적음.

5. 생산 및 판매계획

(단위 : 천원)

품목별	구분	전년(2002)			당년(2003)			2년차(2004)			3년차(2005)		
		수량	단가	금액	수량	단가	금액	수량	단가	금액	수량	단가	금액
	전 년 말 재 고												
	생산계획												
	판매계획 - 내 수 - 수 출												
	다음해로 이 월												
	전 년 말 재 고												
	생산계획												
	판매계획 - 내 수 - 수 출												
	다음해로 이 월												
	전 년 말 재 고												
	생산계획												
	판매계획 - 내 수 - 수 출												
	다음해로 이 월												
	전 년 말 재 고												
	생산계획												
	판매계획 - 내 수 - 수 출												
	다음해로 이 월												

- * (주) 1. 생산 및 판매단가는 사실대로 기입하여야 함.
2. 수량에는 수량과 함께 반드시 단위를 적음.

6. 판매방법 및 판매처

판매경로 : .				
제 품 명	수 량	금액(천원)	판매처	판 매 실 적
				○ 판매기간 : 년도 ~ 년도(○○년간) ○ 제 품 명 : ○ 총판매금액 : ○ 판 매 처 :
향후판매전망 :				

- * (주) 1. 현재 판매(거래)하고 있거나 앞으로 판매계획을 작성함.
 2. 판매경로는 생산에서 판매처까지의 경로를 도표로 작성
 3. 향후 판매전망은 어떠한 사유로 전망이 있다 또는 없음을 명기
 4. 판매실적은 과거 판매실적이 있을 때 제품별로 간략히 기재
 예) 판매기간 : '00~'02(최소한 3년간 이상)
 제 품 명 : 도자기
 판 매 처(상세히) : 서울 미도파백화점, 서울공예품판매점 등

7. 소득효과

(단위 : 가구,천원)

		전년(2002)	당년(2003)	2년차(2004)	3년차(2005)
매출액 (A)					
제조원가 및 비용계	원료구입비 노무비 (취업) 노무비 (임가공) 경비 (제조원가계) 판매관리비 지급이자(원금제외) 세공과금 기타비용				
	원가 및 비용계 (B)				
손익(A-B)					
소득 분석	참여형태별 가구수	공동출자 공동생산 취업 임가공 계			
	가구당소득액	공동출자 공동생산 취업 임가공 계			

- * (주) 1. 원료구입비는 공동생산형태의 참여가구이외(외부)의 자에게 지급한 비용만 적음.
 2. 노무비는 취업 또는 임가공 형태의 참여가구에 지급한 금액만 적음.
 3. 참여형태별 가구수는 “1. 개황”의 “참여가구현황” 기재요령 참조
 4. 가구당 소득액은 다음과 같이 적음.
 - 참여형태가 공동출자 또는 공동생산이거나 2가지 혼합인 경우는 손익을 당해 가구수로 나눈 금액
 - 참여형태가 취업 또는 임가공이거나 2가지 혼합인 경우는 당해 노무비를 당해 가구수로 나눈 금액
 - 참여형태가 공동출자(또는 공동생산)와 취업(또는 임가공) 혼합인 경우는 공동출자(또는 공동생산)는 손익을 당해가구수로, 취업(또는 임가공)은 당해 노무비를 당해 가구수로 각각 나눈 금액
 - 1가구 단독출자한 사업자의 경우는 다른 참여가구의 소득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공동출자란에 적음.

[별지 제2호 서식]

종 합 심 사 서

1. 단 지 명 :

2. 사업장소재지 주소 :

3. 업종 및 생산제품 : (업종) (생산제품)

4. 사 업 자 : (성명) (생년월일) 19 . .

5. 참여형태 :

* 사업지원신청서(사업계획서)의 “참여형태” 작성방법에 준할것

6. 심사내용 : (붙임참조)

년 월 일

○○시장·군수

(직인)

종합심사내용(심사의견)

(1) 사업성검토서에 대한 심사의견

항 목	심 사 의 견

* (주) 제시된 항목별로 구분하여 논리적·구체적으로 적음.

(2) 연합회 의견서에 대한 심사의견

항 목	심 사 의 견

* (주) 제시된 항목별로 구분하여 논리적·구체적으로 적음.

(3) 종합의견

※ 전체사항을 포괄적으로 적되, 객관성이 있어야 하며, 요건 및 법령 적합여부에 대한 검토내용을 반드시 적음.

[별지 제3호 서식]

특산단지관리대장

1. 개 황

○ 단 지 명 :

○ 사업장소재지 : 시·도 시·군 동·읍·면 리 번지

○ 선정 년월일 : 년 월 일

○ 업종 및 생산제품 : (업종) (생산제품)

○ 사 업 자 : (성명) (생년월일)

○ 참여 형태 :

* 사업지원신청서(사업계획서)의 “참여형태” 작성방법에 준할것

○ 사업장 구분 :

○ 관리직원수 : (직책별 인원수를 적음)

2. 참여가구수 변동상황

(단위 : 가구)

점 검 기준일	참 여 가 구 수					점 검 년월일	점 검 자 직·성명·날인
	합 계	공동출자	공동생산	취 업	임가공		

3. 참여가구 및 참여자 변동상황

점 검 기준일	가구 번호	가구주 성 명	주 소	경작면적(m ²)			참 여 자				점 검 년월일	점 검 자 직·성명·날인
				계	자경	임차	성명	생년 월일	가구주 와관계	참여 형태		

4. 사업비 조달상황

(단위 : 천원)

점검 기준일	재원별	용도	조달달		조달금액	사용명세	점검 년월일	점검자		
			년	월일				직·성명	날인	날인

- * (주) 1. 재원은 농특용자를 적음.
- 2. 용도는 시설자금, 운영자금중 하나를 적음.
- 3. 사용명세는 상세하게 적음.

5. 기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사후관리사항

재원	재산명	조달달	조달금액	사용명세	처분 년월일	처분사유	처분사항	점검 직·성명	점검 날인

6. 생산 및 판매상황

(단위 : 천원)

점검 기준일	전기말재고		생산실적		판매실적		당기말재고		점검 년월일	점검자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직·성명	날인	날인

7. 소득효과

점검 기준일	매출 액	제조가 및 비용	손익	소득										점검 년월일	점검자			
				총 소득	가구별소득										직·성명	날인	날인	
					계	공동출자		공동생산		취업		임가공						
					가구 금액	가구 금액	가구 금액	가구 금액	가구 금액	가구 금액	가구 금액							

[별지 제4호 서식]

자체 가26-47

○○년도 농촌특산단지별 지원계획 보고

(단위 : 천개,천점,톤,백만원)

업종 별	우선 순위 번호	품목	사업명	참여 형태	소재지	대표자		참여가구			제품생산	
						성명	전화	계	농가	기타	생산계획	
											수량	생산액
	합계											

및 판매계획			추정생산비			추정소득		사업비 조달계획			
판 매 계 획			계	원 구 입 비	료 비 용	기 타 비 용	총 소 득	가 구 당 소 득	계	농 특 용 자	자 부 담
계	내수 (금액)	수출 (금액)									

※ 작성요령

1. 업종별 : 작성순위(①민속공예품, ②농산자재, ③섬유직물, ④석재)대로 작성 기재
2. 우선순위번호 : 업종별 구분없이 지원대상자 순위번호 기재
3. 품 목 : 목공예, 석공예등 주된 생산품목을 기재
4. 사업명 : 세부적인 사업명(시설비 : ○○공장, ○○기계, ○○개발비(금형,디자인 등), ○○포장비등, 원료비 : ○○원료구입비등)으로 기재
5. 참여형태 : 공동출자, 공동생산, 취업, 임가공중 하나를 기입하되 혼합형 형태는 추가되는 것을 기입하고 말미에 (혼)을 기입함.
6. 소 재 지 : 사업장소의 주소
7. 참여가구 : 농가수는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에 의한 농업인이 직접 참여하는 농가
8. 제품생산 및 판매계획 : 연간 총생산계획과 판매계획을 기입하되, 판매계획은 내수·수출 구분 작성
9. 추정생산비중 기타비용 : 제잡비, 세금 등을 포함하되, 참여농가의 임금은 제외
10. 추정소득(정수로산출) : 제품판매계획 - 추정생산비(가구당소득 = 총소득/참여호수)
11. 추정소득 총 소득 : 제품판매계획 - 추정생산비(소수점이하 생략)
가구당 추정소득 : 총소득/참여호수

총 26-1

농촌특산단지사업 추진실적 보고

(○○시·도, ○○시·군)

○연도말 추진실적

(단위 : 백만원)

업종별	품목	단지소재지	선정년도	단지명(대표자)	참여형태	참여호수		총종사자수	생산실적	관내 실적		비율	소효총소득	특과가동율	사업비						
						계	농가			비농가	계				내수	수출	농용계획	특자실적		자부담실적	
																		비율%	계획	실적	비율%
합계																					

* (주) 작성요령 : 단지별 지원계획보고서(별지 제4호 서식) 작성방법에 준할 것
사업비는 사업추진 당해년도 분만 기재

○ 연도말 운영단지현황

(단위 : 백만원)

업종별	품목	단지소재지	단지명	대표자	참여형태	참여호수	선정년도	연도별 지원자금												
								'00까지			'01			'02			합계			
								계	보조	융자	계	보조	융자	계	보조	융자	계	보조	융자	

○연도말 단지별 정리(퇴출)현황

업종별	품목	단지소재지	대표자	선정년도	정리(퇴출)년월일	퇴출사유 (구체적으로 기입)

[별지 제6호 서식]

심사제외

농촌특산품 전시판매장 운영실적 보고

1. 판매장 시설현황

매장별 (매장명칭)	판매장 소재지			시설규모		사업비				공사 착공일	준공일	매장 개장일
	시·도	시·군	읍·면	부지	건물	계	국고	지방비	자담			
				평		백만원				년월일		

2. 판매실적

○ ○ ○ 판매장

업종별	판매량	판매액	사업비용(관리비)	순손익
계		백만원		
민속공예품				
농산자재				
일반공산품				
섬유직물				
석재				
기타				

* 전시판매장별로 실적을 기입

* 업종별로 판매량, 판매액, 사용비용 및 순손익을 구체적으로 누락없이 기입

3. 홍보실적

시·도 (매장)별	홍보매체별 홍보실적					제품판매업체 현황			
	계	TV	라디오	신문	잡지 등	계	특산단지	지역 특산물	기타
	회					개소			

※ 이 사업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협동조합과(과장 이양호, 사무관 김호성)입니다

1. 목 적

- 품목별 또는 기능별로 분산지원되는 농업분야의 세부사업을 통합하여 농업경영체의 사업계획에 따라 종합지원하고 시설·개보수자금과 운영자금, 농기계자금을 통합 지원
- 대출취급기관이 사업타당성 평가를 통해 자금을 지원하고 자금대출후 사후관리까지 일관 담당함으로써 농업정책자금의 효율성 제고

2. 시책 및 추진방향

- 농업경영체가 스스로의 필요와 판단에 따라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경영체의 자율성을 존중
- 대출취급기관이 경영분석을 통하여 대출여부와 대출금액·대출방법을 결정하고 자금지원과 컨설팅을 병행
 - 대출취급기관이 사업수익성·재무구조평가 등 경영분석을 통하여 자금을 대출하고 자금대출후에는 경영실태 점검등 사후관리도 일관 담당
 - 전문적인 경영분석 또는 기술지도가 필요할 경우에는 대출취급기관의 자체 컨설팅부서 혹은 외부 전문컨설팅기관 활용
- 수요자의 필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자금지원
 - 시설·개보수자금, 운영자금, 농기계자금을 일괄 지원하고 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금액을 필요한 시기에 지원
 - 사업발전단계별로 경영평가를 거쳐 추가지원을 함으로써 농업경영체의 단계적 경영발전 지원

3. 근거법령

- 농업·농촌기본법
 - 제11조(가족농의 경영안정), 제13조(전업농업인 육성), 제15조(영농조합법인의 육성), 제16조(농업회사법인의 육성), 제17조(농업인의 경영혁신 및 자금지원)
- 농업기계화촉진법 제4조(자금지원)
- 농어촌정비법 제66조(농어촌관광휴양사업의 육성)

4. 2003년도 지원계획

	2002 사업비			2003 사업비		
	계	국고용자	대출기관용자	계	국고용자	대출기관용자
계	백만원 723,000	148,000	575,000	백만원 540,000	108,000	432,000

* 원예특작과 축산 등 세부사업별로 내역을 구분하지 않고 수요에 따라 지원

5. 사업시행요령

가. 사업내용

1) 지원대상자

- 해당분야의 사업계획서와 관련서류를 제출하고 금융기관의 대출심사·평가를 통해 사업수행능력과 사업타당성을 인정받은 농업인(신규포함), 선진작목반(공동이용시설에 한함), 1년 이상의 사업실적이 있는 농업법인
 - 원예특작, 축산,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관광농원·농촌민박사업은 시설·개보수·운영자금과 농기계자금 지원
 - 쌀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농업법인(RPC·도정공장 제외), 농업정책자금(지방자치단체사업 포함)을 지원받은 유통가공저장시설 보유사업자, 경주마사육 축산농가는 개보수 및 운영자금, 농기계자금을 한하여 지원

* 지원제외

- 해당 사업 외에 별도의 전업적 직업이 있는 자
- 임대, 위탁 등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않는 자
- 운영자금을 신청한 완전계열화 참여 경영체
- 회계기록을 제출하지 않은 법인·유통가공업자(관광농원 포함)·금융기관 총부채(금차대출신청액 포함)가 3억원이상인 개인

- 종합자금 대출잔액(금차지원액 포함)이 5천만원 이상으로 회계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경영체
- 조합원 5인미만인 영농조합법인
- 배우자 및 법인구성임원이 금융기관 신용불량거래등록(제재) 중인 경우
- 농업정책사업(지방자치단체사업포함)의 자부담 부분에 대한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 수산업, 임업(표고버섯 포함)종사자

2) 지원조건

○ 지원자금의 종류

- 원예특작·축산·농촌관광분야 : 시설·개보수·운영자금과 농기계자금을 종합지원
- 기타 분야 : 개보수·운영·농기계자금만을 지원

○ 지원조건

- 금 리 : 연리 4.0%
- 상환조건
 - 시설자금 : 3~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
 - * 원예특작은 3년 거치 10년 균분상환, 축산, 칠골(유리 혹은 경질)온실, 관광농원, 농촌민박사업은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
 - 개보수자금 :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 운영자금 : 2년 이내 상환(단, 인삼식재자금은 연근별로 3~5년 거치 일시상환)
 - 농기계자금 : 1년거치 4~7년 균분상환

○ 자금용도 : 상세한 것은 「6. 세부사업내용」 참조

- 시설자금 : 생산·재배시설, 저장·유통·가공시설 및 증축자금, 관광농원·농촌민박시설자금, 토지매입자금, 사업비 20백만원 이상의 에너지절감시설, 온실기능향상시설 등
 - 저장·유통·가공시설은 생산시설과 연계된 경우에만 지원
[예시] 농가가 생산시설에 부수하여 소형 저온저장고만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지원 가능
 - 정책자금을 지원 받은 기존 시설물 구입시 지원제외
 - 토지매입자금은 사업목적달성을 위해 필수적인 경우에만 지원
(세부사항은 부록 : 토지매입자금 지원관련 세부지침 참고)

- * 토지매입자금의 용도제한
 - 택지·도로·댐·공단조성 등 해당 토지의 농업 목적 이용과 다른 목적의 개발계획이 고시되는 등 정상적인 경영기반으로 활용되기 어려운 토지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참고2)
 - 농림분야 정책자금을 지원받아 구입한 토지를 재구입하는 경우 지원제외
 - 경작중인 농지이외의 토지(잡종지 등)만을 구입하는 사업계획은 지원제외 (토지에 시설설치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자금조달방안이 있어야 함)
 - 사료생산기반은 사료포의 경우만 지원
 - 노지 300평미만, 시설부지 100평미만 지원제외
 - 관광농원, 농촌민박사업 및 자가배합사료제조를 위한 경우 지원제외
 - 개보수자금 : 기존 시설의 개수·보완 및 기계·장비구입에 필요한 자금 (축산분뇨처리시설지원사업으로 시설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사후관리기간 경과시 추가 시설지원 가능)
 - * 번식용 한우암소 및 착유우(한우, 착유우 모두 암송아지, 육성우만 해당)는 고정자산으로 간주하여 개보수자금에 준하여 지원
 - 운영자금 : 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농산물 매취 및 수입농산물 수입(구매)소요액은 지원제외)
 - * 토지임차자금은 사업계획에 따라 중·장기, 단기자금으로 지원가능
 - * 가축입식비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나 제주도 교잡우 한우대체시에는 지원 가능
 - 농기계자금 : 대당 공급가격 30백만원 이상의 정부지원대상 농기계 구입에 필요한 자금
- 지원한도 : 시설자금의 경우에는 20백만원 이상
- * 20백만원에 미달하는 소액 시설설치자금(에너지절감시설, 온실기능향상 시설 포함)은 개보수자금으로 지원가능
 - * 토지매입자금은 토지가격에 관계없이 평당 35,000원을 한도로 하여 납세자료로 입증되는 관인계약서상 실제거래가격에 따라 지원
 - 관인계약서상 시가가 인접토지와 가격차이가 클 경우에는 대출기관에서 평가하여 하향 조정 가능

나. 사업추진체계

1) 대출취급기관 : 농업협동조합중앙회

2) 농업종합자금취급사무소(이하 “취급사무소”)

○ 농협 시·군 지부 중앙회 소속 농업종합자금 취급 사무소

○ 농협중앙회장이 지정한 농업종합자금 취급 지역조합, 품목조합(이하 회원조합)

* 각 취급사무소는 원칙적으로 원예특작, 축산을 구분하지 않고 대출업무를 취급함

3) 자금운용부서 : 농림부 협동조합과(02-500-1697)

4) 사업담당부서 : 농림부 농산물유통국 채소특작과 (02) 500-2683~4

농산물유통국 과수화훼과 (02) 500-2685~6

축산국 축산정책과 (02) 500-2688

축산국 축산물위생과 (02) 500-1927~9

식량생산국 농업기계자재과 (02) 500-1789

농촌개발국 농촌진흥과 (02) 500-1964

5) 대출기관 연락처

○ 농협중앙회 : 농업금융부 농업종합자금추진단 (02) 397-6533~39

- 시·도지역본부 : 정책자금 담당부서

- 시·군지부 : 농업금융 담당부서

○ 회원조합(별도 공시) : 정책자금 담당자

다. 자금지원결정

1) 사업신청

○ 사업희망자가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취급 사무소에 신청

- 취급사무소가 아닌 농·축·삼협은 신청서류를 해당 취급사무소로 이첩

- 투자계획 수립단계에서 경영체가 희망하는 경우 지도기관에서 자문·상담을 실시(시설자금에 한함)

* 사업계획서 작성방법과 서식등은 취급사무소에서 안내하되 행정·지도 기관에도 비치·안내하여 농업인 편의 도모

* 사후관리 및 점검·평가에 필요한 정보와 관련하여 농협중앙회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금신청이나 대출약정체결시 정보제공동의서 제출

○ 신청시기 : 연중 수시

2) 자금지원결정

- 종합자금취급사무소는 신청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사업의 수익성 등 경영평가와 현장실사를 통하여 자금지원 결정
 - 농·축·삼협은 사전에 지역농업발전계획이나 지역특화시책, 권장품목 등 종합자금제 실시에 대해 시·군과 사전 협의
 - 사업계획서에 대한 대출적격여부, 대출금액 및 대출방법을 결정한 후 인허가 등 행정사항, 기술검토사항 기타 해당 경영체의 평판·신망 등에 관하여 해당 시·군의 의견을 요청
 - * 운영자금, 개보수자금, 농기계자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시·군에 의견 조회를 하지 않음
- 취급사무소는 종합자금 지원상황을 수시로 해당 시·군청에 통지(서식1)
 - 시·군청은 지원대상자에 대한 기존 정책자금지원상황과 사업취소, 추가 지원 등 변경사항을 농·축·삼협에 통지

3) 심사방법

- 사업계획서 심사시에는 이 지침과 농협중앙회의 세부시행지침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업내용과 사업타당성을 검토 분석(재무·경영평가 포함)한 후 지원 여부와 지원금액을 결정
- 토지매입자금의 경우는 전체 사업계획에 비추어 토지매입이 타당한지 여부에 대해 반드시 시장·군수의 의견을 조회

< 중점평가 항목 >

-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수익성
- 경영능력 및 기술수준
- 재무구조의 건전성

< 신용평점 평가시 우대 혹은 가점 부여 고려사항 >

- 농작물재해보험, 가축공제 가입농가
- 친환경농산물 표시농가(품질인증 등)
 - 쌀생산 품질인증 농가 및 법인은 가점 특별우대
- 신지식농업인, 새농민상 수상자

- 가축질병예방활동 참여 우수농가
 - 품질개선노력 : 규격돈생산, 거세축생산, 종축등록생산, 우수축출하, 1등급 원유생산 등
 - 기타 : 집유일원화 참여, 축산분뇨자원화 처리 등
- 사업신청자가 희망하거나, 대상품목(축종) 또는 경영기술등이 농·축·삼협 자체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사업신청자와 협의하여 농촌지도 기관이나 기타 전문기관의 경영컨설팅을 받도록 함
 - 지원대상에서 탈락한 신청자에 대해서는 탈락사유를 설명하고 보완사항이나 추가준비사항 등을 안내 및 지도
 - 농업기술센터, 도 농업기술원, 기타 농업기술관련 정부연구소는 농·축·삼협의 요청이 있을 경우 기술·경영능력 및 사업계획서상의 기술사항에 대한 타당성 평가 결과를 제공

< 농업경영컨설팅사업 추진상황 >

- 농가경영컨설팅운영지원사업(지도계통 컨설팅, 농촌진흥청 주관)
 - 157개 시·군 농업기술센터의 기초컨설팅팀과 9개 도농업기술원의 광역컨설팅팀 운영중
- 농업경영컨설팅지원사업(민간컨설팅, 농림부·9개도 주관)
- 농림부, 농촌진흥청 및 각 시·도는 소관 컨설팅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전문인력, 전문기관에 대한 정보를 농업인과 일선취급사무소에서 용이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
 - 각개인·기관·회사별로 전문분야, 컨설팅실적, 주요 경력 등

라. 자금대출

- 농업종합자금운용규정, 농림수산정책자금대출업무규정 등 정책여신 관련 규정과 각 대출취급기관의 여신관련규정에 따라 자금대출
- 사업대상자가 소요하는 시기 및 금액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출
- 종합자금 회원조합 취급분의 경우, 희망조합에 한해 농협중앙회 이차보전 기준금리로 상호금융자금 사용을 허용
- 이자는 1년 후취원칙

마. 사업검정과 사업비 정산

- 시설·개보수·농기계자금 중 용자지원금의 검정·정산은 농업종합자금운용규정에 따름(개보수자금으로 지원하는 가축입식비의 검정·정산시에는 송아지생산안정제, 가축공제사업에 참여하거나 종축등록을 하는 등 구입대상가축의 개체관리에 입각한 증빙제출이 가능한 경우에만 인정)
- 토지매입자금의 정산은 관인계약서와 토지취득관련 납세자료에 의함
- 제주도의 경우 교잡우 한우대체입식시에 축협에서 한우암소에 대해 발급한 매매증명서도 검정·정산의 증빙으로 인정

바. 사업취소 및 자금회수사유

-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용자지원으로 충당한 토지·시설·설비·장비등을 농업외의 용도로 사용할 목적으로 형질을 변경하거나, 업종을 변경하여 농업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임대 또는 농업외의 용도로 사용하게 한때
- 관광농원·농촌민박사업의 경우에는 당초 사업계획에 의한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한 때
- 허위 자료를 제출하여 대출받은 사실이 확인된 때
- 부도, 폐업, 사업 포기, 정당한 사유 없이 계획된 사업을 추진하지 아니하거나, 장래 전망이 불투명하여 더 이상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등의 사유가 생겨 지원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 매입자금을 지원받은 농지가 농지법 제10조에 의한 처분통지를 받은 때
- 농업종합자금 1억이상 지원경영체가 매년 1회 농업경영 회계기록을 제출하지 아니할 때
 - * 다만, 천재지변이나 중대한 재해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지원자금을 일시에 회수할 경우 생계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시장·군수, 시·도지사)의 조사·확인 및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거쳐 당초 상환조건대로 상환하게 할 수 있음
 - * 대출금의 회수와 대여금의 반납 및 지원의 제한에 대해서는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제14조 내지 제16조에 따름
 - * 취급사무소는 대출약정체결시에 상기 「사업취소 및 자금회수사유」를 지원대상자에게 설명하고 약정서에 첨부해야 함

사. 사후관리 및 행정사항

- 농업종합자금 취급사무소는 세부시행지침이 수립·통보되는 즉시 이를 해당 시·군청 농정담당부서에 통지·송부
- 농업종합자금 취급사무소는 개별경영체에 관한 채권·채무기록등 금융정보와 경영체가 제출한 회계기록 등을 활용하여 사후관리를 위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 농협중앙회는 농업종합자금취급사무소의 농업종합자금지원 추진실태를 연1회 이상 점검하고, 그 결과를 농협의 감사지도부 및 농림부에 보고
- 시·군 농업기술센터와 도 농업기술원은 농·축·삼협 지도업무담당부서 및 민간컨설팅전문가들과 협조, 경영체에 대한 경영·기술적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필요한 기술·경영지도 실시
 - 특히, 농업인의 사업계획수립을 위한 조언과 상담을 강화하고 경영·기술 진단과 처방을 제공
- 대출취급기관과 행정·지도기관이 각각 상담체계를 구축하여 사업분야나 적정투자규모에 대한 조언, 관련정보 제공, 교육이나 컨설팅 알선 등을 통해 농업인의 사업준비에 노력
 - 행정·지도기관은 시·군청, 농업기술센터 등에 전담상담인력을 지정
 - 대출취급기관과 행정·지도기관의 상담창구에는 서식 7호와 서식 7-1호에 의한 상담기록부를 비치하고 상담결과를 기록
- 종합자금 1억원이상(금회 지원금 포함) 지원경영체는 매년 1회 농업경영 회계기록을 제출하여야 함
- 1억원 이상 지원경영체는 농협중앙회에서 집중관리
 - 대출취급기관은 이상징후가 있는 경영체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지도기관에 컨설팅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농업경영컨설팅지원사업」을 통해 민간경영컨설팅을 우선 지원
- 대출취급기관은 농업종합자금 5천만원이상 지원농가에 대해 연1회 경영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상징후가 있는 경우에는 반기별로 실시
 - 경영실태조사결과를 기초로 한 대출취급기관의 경영상태 분석·평가결과 자료를 해당 농업경영체에 제공함과 동시에 동 자료를 축적하여 농업 경영체에 대한 컨설팅 등에 활용

- 지원대상 농가 선정시 컨설팅 전문기관으로부터 컨설팅을 받은 경영체에 대해 경영능력 평가 우대
- 시·군은 대출취급기관의 자금집행실태 등 사업추진상황과 관련하여 문제점, 제도개선사항, 민원사항 등을 시·도를 통해 농림부에 보고
- 농협중앙회장은 사업추진실적을 서식 2호 내지 서식 6호에 따라 주기별로 기간 종료후 10일 이내에 농림부와 시·도, 시·군에 보고 또는 통보
 - 매 회계연도 사업정산 결과보고는 다음 회계연도 3월20일까지
- 농협중앙회장은 농기계구입지원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농협중앙회의 농업 종합자금 세부시행지침에 규정해야 함
 - 대출심사 완료 후 농기계를 선택토록하여 농업인의 농기계선택권을 보장
 - 특정공급자 또는 특정제품의 선택을 강요하거나, 대출심사의 부당한 지연, 불필요한 자료요구 등 특정공급자를 차별대우하는 행위가 있는 경우, 대출담당자 등 관련자에 대한 제재조치

아. 기 타

- 기타 필요한 사항은 건축법·농지법·축산법 등 관련법규에 따름
- 정부시책방향과 부합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청자가 필요로 하는 내용을 신청할 수 있음

6. 세부사업내용

원에·특작분야

가. 지원대상사업(예시)

- 채소·화훼
 - 철골온실(유리, 경질판), 파이프비닐온실, 양액재배시설, 콩나물재배시설 예냉시설, 조직배양시설, 선별처리장, 저온처리시설등 시설장비
 - 발정지, 관수시설, 반출로개설 및 보수, 비가림재배시설, 망사육묘장, 건조시설 등
 - 기계장비 등

○ 과 수

- 키낮은 사과원 등 과원조성, 우량품종갱신, 단감·감귤등 밀식원 간벌
- 관·배수시설, 비가림시설, 지주·덕시설 설치 및 개·보수자금 등
- 과수용 기계장비 등

○ 특 작

- 버섯 : 첨단재배시설, 균상재배시설, 저온저장고, 종균·배지생산시설, 냉동운반차량 등
- 생약 : 생약조제시설, 육묘포설치, 재배시설, 집하장 또는 판매장, 저온저장고 등
- 차 : 제다시설, 다원조성, 생산기반조성 등
- 잠엽 : 뽕밭조성(묘목대, 관정), 생력재배기자재(뽕수확기등), 양잠산물 가공기자재(건조기 등)
- 인삼 : 인삼생산에 소요되는 식재자금 지원, 우량묘삼 생산, 토양개량사업 등 시설기자재·영농기반 현대화사업지원
- 기타 : 지역특산 농산물 생산을 위한 시설, 장비 등

나. 사업추진시 유의사항

- 저온저장시설은 50평 미만 규모만 지원
 - * 대형 저온저장시설은 「산지유통센터」 지원사업을 활용
- 기계장비 지원은 농기계분야 참조
- 생산시설과 관련된 부대사업은 생산시설(기존 시설포함)과 연계된 경우에만 지원
 - (예) 생산시설과 연계되지 않은 집하장, 수송차량 등을 별개사업으로 지원할 수 없음
- 하우스병 예방등 쾌적한 작업환경조성을 위하여 온실부근에 일하면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적정규모의 관리실 또는 작업장 설치 권장
 - * 시설원예분야의 시설 설계, 시공업체 선정, 시공 및 공사감리에 관해서는 농림부 농산물유통국에서 정하는 별도 지침에 따름. 다만, 700평이하 파이프, 비닐온실의 공사감리는 본지침 적용을 배제함.

축산분야

가. 지원대상사업

- 한육우·낙농·양돈·양계·기타 축산법 제2조의 가축, 유기축산업 등의 기반조성, 사육시설 및 장비 등. 다만, 「개」의 경우는 「진도개」를 말함
 - 기반시설 : 진입로, 목로, 용수, 전기시설 등
 - 사육시설 : 축사, 창고, 관리사, 자동급이급수, 착유시설, 사일로, 운동장 비가림시설 등
 - 기계장비 : 농기계분야 참조

나. 사업추진시 유의사항

- 생산시설과 관련된 부대사업은 생산시설(기존 시설 포함)과 연계된 경우에만 지원
 - (예) 생산시설과 연계되지 않은 집하장, 수송차량 등을 별개사업으로 지원할 수 없음
- 팔당특별대책지역등 상수원 수질보전구역에는 축사등 사육시설의 신규지원 불가
- 자가배합사료 생산시설(장비)지원은 남은 음식물을 사료화 또는 사료의 원료로 사용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농기계 분야

가. 지원대상

- 정부지원 대상 농기계 중에 공급가격 30백만원 이상인 농기계
 - 공급가격 30백만원 이상인 농기계와 그 부속작업기, 선택품 등을 함께 구입할 때에는 일괄지원하되 기종별 용자 지원한도액, 상환조건은 「농기계구입지원 사업시행지침」 준용

나. 유의사항

- 30백만원 미만인 정부지원 대상 농기계는 “농기계구입자금지원”사업에서 지원
- 정부지원대상 농기계 이외의 기계장비 또는 시설의 일부분인 정부지원대상 농기계에 대해서는 “농업종합자금”으로 지원
 - 기계장비중 시설의 일부분으로 설치될 때에는 해당분야 시설자금 지원기준에 따라 지원하고, 그 이외의 기계장비는 개보수자금으로 지원
- 농기계가격은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발행 “농업기계가격” 참조
- 30백만원이상 정부지원대상 농기계자금 지원과 관련하여 사후관리 및 행정사항중 본지침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농기계구입지원사업시행지침” 준용

7. 사업비단가 참고자료

- 농림부 승인을 받아 농협중앙회 세부시행지침에서 정함

<서식1호>

농업종합자금 지원현황

(2001. . 현재, 취급사무소명)

(단위 : 백만원)

법인명 (농장명)	대표자 (연령)	사업장주소 (전화번호)	사업추진개요					분야별	총사업비		
			품목 (축종)	사업 규모	중점추진 사업내용	착수 일자	종료 일자		계	융자	자부담
	()	(-)						시설자금			
								개보수자금			
								운영자금			
								농기계자금			
								계			
								지원누계			
	()	(-)						시설자금			
								개보수자금			
								운영자금			
								농기계자금			
								계			
								지원누계			
합 계		개소						시설자금			
								개보수자금			
								운영자금			
								농기계자금			
								계			
								지원누계			

우리 사무소의 농업종합자금 지원현황을 위와 같이 통보드리니, 종합자금 지원사업의 원활한 수행으로 지원대상자들의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O 시장(군수) 귀하

- (주) 1. 사업추진개요 : 종합자금지원을 통한 대상자의 향후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을 기재
 2. 중점추진내용 : 종합자금 사업내용중 대상자의 중점추진 사항을 기재
 3. 지원누계 : 종합자금 대출잔액을 기재. 신규 지원인 경우는 기재하지 않음
 4. 통보시기 : 취급사무소에서 지원대상자 확정(변경 포함)시 수시 통보

<서식2호>

지역별 종합자금 융자지원현황

(기간, 농협중앙회)

(단위 : 백만원)

지 역			융자금지원		용 도 별				채권보전형태별		
시·도	시·군	취급사무소	건수	금액	시설	개보수	운영	농기계	신용대출	자산담보	보증서
		소계(1)									
		비율	100.0	100.0							
		소계(n)									
		비율	100.0	100.0							
		⋮	⋮	⋮	⋮	⋮	⋮	⋮	⋮	⋮	⋮
		⋮	⋮	⋮	⋮	⋮	⋮	⋮	⋮	⋮	⋮
소 계	(1+⋯+n)										
비 율			100.0	100.0							
⋮	⋮	⋮	⋮	⋮	⋮	⋮	⋮	⋮	⋮	⋮	⋮
⋮	⋮	⋮	⋮	⋮	⋮	⋮	⋮	⋮	⋮	⋮	⋮
전국 합계											
비 율			100.0	100.0							

- (주) 1. 농협중앙회는 농림부 자금운용부서에 보고하고 계통사무소를 통해 각 시·도, 시·군에 통보하며, 각 계통사무소는 이를 해당 시·도 및 시·군으로 통보
 2. 보고주기 : 분기별

<서식3호>

품목(축종)별 종합자금 용자지원현황

(기간, 농협중앙회)

(단위 : 백만원)

지역	품목(축종)	용자금지원		경영형태별				자금용도별				
		건수	금액	개인		법인		시설	개보수	운영	농기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소계(1)											
	비율	100.0	100.0									
	소계(n)											
	비율	100.0	10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계	(1+⋯+n)											
비율		100.0	100.0									
⋮	⋮	⋮	⋮	⋮	⋮		⋮	⋮	⋮	⋮		⋮
⋮	⋮	⋮	⋮	⋮	⋮		⋮	⋮	⋮	⋮		⋮
전국 합계												
비율		100.0	100.0									

- (주) 1. 농협중앙회는 농림부 자금운용부서에 보고하고 계통사무소를 통해 각 시·도에 통보
 2. 품목 : 과실, 채소, 화훼, 특작으로 구분하고 시설과 노지를 추가 구분
 - 특작은 「인삼」, 「버섯」, 「약용작물」, 「차」, 「잠업」, 「기타특작」으로 구분
 - 과실·화훼에 대해서는 세부내역을 부속명세서로 제시(서식은 위 서식을 준용)
 3. 축종 : 한우, 젖소, 돼지, 닭, 기타 가축으로 구분
 - 한우, 돼지는 「비육」, 「번식」으로, 닭은 「육계」, 「산란계」로 구분
 - 기타 가축에 대해서는 세부내역을 부속명세서로 제시(서식은 위 서식을 준용)
 4. 보고주기 : 월별

<서식4호>

지역별 사업비투입내역

(농협중앙회)

(단위 : 백만원)

지 역		사업비합계					자부담					용자지원						
		계	시설	개축	운영	농계	계	시설	개축	운영	농계	계	시설	개축	운영	농계		
사·도	시·군 취 급 사무소																	
	소계(1)																	
	비율		A	A1	A2	A3	A4	B	B1	B2	B3	B4	C	C1	C2	C3	C4	
	소계(n)																	
	비율																	
	⋮	⋮	⋮	⋮	⋮	⋮	⋮	⋮	⋮	⋮	⋮	⋮	⋮	⋮	⋮	⋮	⋮	
사 도 소 계	(1+⋯+n)																	
	비율																	
	⋮	⋮	⋮	⋮	⋮	⋮	⋮	⋮	⋮	⋮	⋮	⋮	⋮	⋮	⋮	⋮	⋮	
전국 합계																		
	비율																	

- (주) 1. 농협중앙회는 농림부 자금운용부서에 보고하고 계통사무소를 통해 각시·도에도 통보
 2. 비율계산 : $A+B+C=100(\%)$, $A= A1+A2+A3+A4=100\%$, $B=B1+B2+B3+B4$,
 $C=C1+C2+C3+C4$
 3. 보고주기 : 분기별. 매보고시마다 누계기준으로 부속보고서 첨부

<서식5호>

품목별 사업비 투입내역

(농협중앙회)

품목 (축종)	사업비합계					용자지원(백만원)					자부담(백만원)				
	계 (비율)	시설	개묘수	운영	농기계	계 (비율)	시설	개묘수	운영	농기계	계 (비율)	시설	개묘수	운영	농기계
	A	A1	A2	A3	A4	B	B1	B2	B3	B4	C	C1	C2	C3	C4
합 계															

- (주) 1. 품목 : 과일, 채소, 화훼, 특작으로 구분
 - 특작은 「인삼», 「버섯», 「약용작물», 「차», 「잠업», 「기타특작」으로 구분
2. 축종 : 한우, 젃소, 돼지, 닭, 기타 가축으로 구분
3. 농협중앙회는 농림부 자금운용부서에 보고하고 계통사무소를 통해 각시·도에도 통보
4. 비율계산 : $A=B+C=100\%$, $A= A1+A2+A3+A4=100\%$, $B=B1+B2+B3+B4$, $C=C1+C2+C3+C4$
5. 보고주기 : 월별. 매보고시마다 누계기준으로 부속보고서 첨부

<서식6호>

종합자금지원 정산실적 보고

(농협중앙회)

(단위 : 천원)

품 목 종 종	성 명 (법인명)	사 업 량				사 업 비				비 고	
		세 부 사업명	계 획 (A)	실 적 (B)	대 비 (B/A)	지 원 계 획	집 행 실 적 (정산)	차 년도이 월액	불 용 또는 미 집행	착 공 일	준 공 일
합계					%						

- (주) 1. “사업량”은 개별사업에서 설치, 구입 또는 개발지원하는 계획 대비 실적을, “단위”는 사업성격에 따라 개소, ha, 종, 평 등으로 기재
2. “세부사업명”은 각 단위사업에서 설치, 구입 또는 개발지원하는 유리온실, 파이프 비닐온실, 예냉시설 등을 기재
3. 사업량 및 사업비는 단위사업별로 구분하여 작성
4. 각 사업성격에 따라 본 총괄표외에 품목별, 시군별, 사업주체별(개별농가, 농업 법인)로 위 양식에 맞추어 세부정산실적을 별지로 작성, 첨부
5. 농림부 자금운용부서에 보고
6. 제출기한 : 사업연도 익년 3.20일까지

<서식7호>

종합자금지원 상담기록부(건별)

연 번	2000 -
일 자	년 월 일
상 담 자	
상담장소	

성 명 (법인명)		주민등록번호		상 담 방 법	내방, 방문 전화, 서면
주 소				전 화	
종 분 사 야	농업소득 규 모	백만원	영 농 경 력	년	경 영 규 모
경 영 기 록 방 법	부 채 규 모	백만원	총자산의 추정가액	백만원	유동자산 (현금·예금)
문 의 내 용			상 담 내 용		
회 명 사업분야		투 자 계 획 (백만원)	종합자금	종합자금 신청계획 (백만원)	시 실 자 금
			기타용자		개 보 자 수 금
			자 부 담		운 영 자 금
			합 계		농 기 자 계 금
사업준비 자문내용					
상담자 의견					
상담후 조치사항					

- (주) 1. 각 상담창구에 상시 비치
 2. 상담자의견 : 사업의 타당성, 투자규모의 적정성, 사업준비정도, 향후 지원 혹은 추가상담, 투자유도방향, 타기관과의 협조에 의한 지원방향 등을 간략히 서술

Ⅱ . 기술개발 및 정보화

① 농업인 홈페이지 구축

※ 이 사업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정보화담당관실(과장 신종호, 사무관 조규표)입니다.

1. 목 적

- 홈페이지를 통하여 전자상거래를 함으로써 농업인들의 정보화마인드 확산

2. 시책 및 추진방향

- 우수농가를 대상으로 홈페이지 구축 지원
 - ('99) 106 → ('00) 200 → ('01) 500 → ('02) 500농가 → ('03P) 200농가
 - 지원대상을 영농조합법인, 작목반, 회원농협 생산자조직 등으로 확대
- 구축비용의 50%를 자부담으로 하여 농가의 참여와 책임의식 고취
- 지역별 사이버동호회 모임 활성화
- 웹호스팅 지원을 통한 농업인들의 전자상거래 운영 투자비용 절감
- 소비자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강화 및 체계적인 교육실시
- 농업인 홈페이지 경진대회를 매년 실시하여 우수농가를 적극발굴·홍보
- 홈페이지 구축 이후에도 운영·관리가 소홀하거나 운영능력이 부실한 농가의 경우 별도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정상화하는 등 대책 강구

3. 근거법령

- 농업·농촌 기본법 제28조(농업 및 농촌지역의 정보화)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99~'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예산안	2004년 이후
사 업 량		306농가	500농가	500농가	200농가	400농가
사업비	계	387	324	400	340	680
	보 조	387	324	300	300	600
	용 자	-	-	-	-	-
	지 방 비	-	-	-	-	-
	자 부 담	-	-	100	40	80

주1 : '99 농업인 홈페이지 지원예산은 농안기금임

5. 2003년도 사업시행 요령

《사업개요》

가. 사업내용

- 전자상거래를 위한 농업인 홈페이지 구축 지원
 - 구축비용의 50%(20만원 내외) 농가 자부담
- 일정수준이상 자체구축농가에 대해서도 무료로 정보센타 웹호스팅 지원
- 인터넷 활용 및 운영·관리에 필요한 전문교육 실시
- 필수적인 홈페이지 운영·관리(가격수정, 품질여부표기, 신상품 등록 등 상품관리)를 할 수 있도록 농업정보119를 통해 필요시 교육실시

나. 2003년도 사업비(예산안) 내용

(단위 : 백만원)

내용별	사업량	사 업 비					
		합 계	예산액(농특회계)			지방비	자부담
			계	보조	융자		
홈페이지 구축	200농가	340	300	300	-	-	40

《추진체계》

가. 사업주관기관 : (재)한국농림수산물정보센터

나. 사업담당부서

- 사업지원과 : 농림부 정보화담당관실(02-503-7255~7)
- 사업실시부서 : (재)한국농림수산물정보센터 전자상거래팀(031-299-8989)
- 협조기관
 - 신청접수기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농가추천기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종자관리소, 농산물유통공사, 축산관련협회, 농업정보119대학, 농업인 사이버동호회, 각 도(시군지자체), 각 도기술원(시군기술센터)
 - 사후관리기관 : 농업정보119대학

다. 대상자 선정기준

- 전자상거래 참여의지 및 운영능력을 갖춘 농업인이면서 직거래가 용이한 상품을 보유한 농가 및 영농조합법인, 작목반, 회원농협 등 생산자조직 위주로 선정
- 쌀생산농가, 축산농가, 전통식품가공업체 등 다양한 품목 및 조직에 대해서도 홈페이지 구축 참여 유도
- 선정항목으로는 홈페이지 운영능력, 상품의 직거래 적합성, 생산자와 상품에 대한 인지도 등을 심사·평가
- 심사평가점수가 일정수준이하인 농가에 대해서는 대상자로 선정하지 않음

라. 대상자 추천 및 선정

< 추천 및 선정체계 >

추천기관		접수/취합기관		대상농가 선정
농진청	⇒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본 원 (접수/취합)	⇒	'03년 홈페이지 구축농가 선정/평가 위원회 - 농림부 주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시군 출장소(85개소)				
국립종자관리소				
농산물유통공사				
농·축산관련협회				
농업정보119대학				
농업인 사이버동호회	⇒	품질관리원 시·군 출장소 (접수) ↓ 본 원 (취합)	⇒	- 관련기관 전문가로 구성
시군 지자체(178개소)				
시군 기술센터(149개소)				
개인신청농가				

- 추천기관의 다원화로 다양한 품목 및 조직의 능동적인 농업인 신청 유도
 - 소속기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종자관리소, 농진청)
 - 품질인증농가, 친환경농가, 신지식농업인, 육종가 등 다양한 형태의 농가에 대해 홈페이지 구축을 적극 유도 및 추천
 - 시·도 지자체 및 기술센터
 - 전국적으로 광범위한 지역을 기관에서 담당하고 있는 관계로 다양한 계층에서 우수한 농업인 추천 적극 유도
 - 쌀 생산농가와 전자상거래에 적합한 조합·법인등 단체에 대해서도 적극 추천

- 관련단체 (농산물유통공사, 농업정보119대학, 축산관련협회, 농업인 사이버동호회)
- 축산농가회원으로 구성된 축산관련협회와 전통가공식품업체를 관리하는 농산물유통공사, 농업인 정보화교육을 현장에서 지도하는 농업정보119대학 등에서 다양한 농가 추천
- 추천/접수한 농가를 취합하여 각기관의 전문가로 구성된 홈페이지 구축대상 농가 평가·선정위원회에서 항목별로 평가하여 최종선발

《세부추진절차》

□ 단계별 추진과정

단 계	기 간	비 고
1.농가신청안내 및 사업공고	'03.1월 -3월	농림부 홈페이지 및 농민신문공고
2.관련기관 농가추천의뢰	'03.2월 -3월	농림부공문발송(농관원 집계)
3.신청 및 추천농가집계	'03.3월 중	농산물 품질관리원 담당
4.신청농가 서류평가	'03.4월 중	평가선정위원회 구성
5.신청농가 현지실사 및 자료수집	'03.4월 -5월	농산물 품질관리원 총괄 담당 - 농업정보119대학 부분참여
6.최종선정농가 발표	'03.5월 중	농림부 홈페이지
7.홈페이지 농가 자부담금 수납	'03.5월 중	농림수산정보센터 담당
8.홈페이지 개발	'03.5월 -10월	농림수산정보센터 담당
9.홈페이지 농가교육	'03.6월 -9월	농업정보119대학 담당
10.홈페이지 개통	'03.10월 말	시범서비스 및 보완

가. 농가신청안내 및 사업공고 ('03.1월 -3월)

- '03년 농업인 홈페이지 구축지원사업내용을 공식적으로 공고하고 신청 방법 및 선정과정을 농림부 및 관련기관 홈페이지에 소개
 - 농가의 취향에 따라 전자상거래용, 홍보용으로 분류해서 소개하고 제작 단가 및 장단점을 제시
 - 관련기관추천과 개별신청농가접수 병행
- 농업관련전문지 공고안내
 - 【첨부1】 농가신청안내문, 【첨부2】 농가홈페이지신청서(개별신청농가용)

나. 관련기관 농가 추천의뢰 ('03.2월 ~ 3월)

- 다양한 기관 및 단체별로 홈페이지 구축대상농가를 추천하게 하여 다양한 분야의 농업인을 골고루 추천하게끔 유도

< 기관별 추천농가 현황 >

추천기관	우선 추천대상	추천농가수
농산물품질관리원 출장소 (도지원취합)	품질인증농가 우선	시군출장소별 각1농가
국립종자관리소	육종가 위주	총 5농가
농산물유통공사 (가공산업팀)	전통식품가공업체 위주	총 10농가
축산관련협회 (5개 협회)	우수브랜드 축산농가	협회별 각5농가
농업정보119대학	정보화교육농가 우선	대학별 각3농가
시군 지자체 (도청 취합)	쌀농가우선, 법인등 조직	시군청별 각1농가
시군 기술센터 (도 기술원취합)	쌀농가등 우수농가	시군센터별 각1농가
농업인 사이버 동호회	정보화능력 보유농가우선	도별 각1농가

※ 축산관련협회

- 대한양돈협회, 대한양계협회, 한국양봉협회, 한국종축개량협회, 대한잡사회

- 【첨부3】 농가 홈페이지 신청서(기관추천용)

다. 신청접수 및 추천농가 집계 ('03.3월 중)

- 농가추천 및 신청/접수 절차도

추천기관	접수/취합기관	농 립 부
농산물품질관리원 시군출장소 → 도지원(취합) 국립종자관리소 본원 농산물유통공사 본부(가공산업팀) 축산관련협회 농업정보119대학 농업인 사이버동호회 시군지자체 → 도청(취합) 시군기술센터 → 도기술원(취합)	본원 송부 ⇨ <송부양식> 1.기관별현황표 2.개별신청서 본원 송부 ⇧	농 립 부 송부 ⇨ <송부양식> 1.전체현황표 2.기관별현황표 3.개별신청서
개인신청농가	⇨ 품질관리원 출장소(접수) /도지원(취합)	

○ 추천기관 자료송부

- 농가추천기관 : 농산물품질관리원 도지원(시군출장소), 국립종자관리소, 각도청(시군청), 각도기술원(시군기술센터), 농산물유통공사, 농업정보119 대학, 농업인 사이버 동호회, 축산관련협회
- 자료집계기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본원 품질관리과
- 자료양식 : 【첨부3】 농가 홈페이지 신청서 (추천농가용)
【첨부4】 기관별 현황표 (반드시 엑셀파일로 구성, 파일형태로 전송요망)

○ 일반신청농가 자료송부

- 신청접수기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시군 출장소
- 자료집계기관 : 농산물품질관리원 도지원(중간집계) ⇨ 본원 품질관리과(집계)
- 자료양식 : 【첨부2】 농가 홈페이지 신청서 (개별신청농가용)
【첨부4】 기관별 현황표 (반드시 엑셀파일로 구성, 파일형태로 전송요망)

○ 품질관리원 본원 ⇨ 농림부 자료송부

- 송부내용 : 기관추천농가, 개인신청농가의 자료 취합 송부
- 주관기관 : 농림부 정보화담당관실 (담당자: 손경자)
(Tel: 02-500-1636, E-mail : sonkj@maf.go.kr)
- 송부양식 : 【첨부2, 3】 농가 홈페이지 신청서(추천농가용, 개별신청농가용)
【첨부4】 기관별 현황표 (엑셀파일 취합), 【첨부5】 전체 현황표

라. 1차 심사 : 신청농가 서류평가 ('03.4월중)

○ 평가선정위원회 구성

- 홈페이지 구축·운영 업무 관련자로 구성

소 속	직 위	역 활
농 립 부	정보화담당관실 사무관	반 원
농 진 청	관련부서 연구관	"
농산물품질관리원	품질관리과 사무관	"
농업인 사이버 동호회	동호회 임원	"
농림수산 정보센터	사업담당부장, 전자상거래팀장	평가총괄

○ 대상농가선정방법

- 피심사자 1인에 대하여 심사위원 4명이 각기 배당된 전문항목별로 배점
- 각 항목의 배점을 합산하여 평가점수 부여

○ 선정방법

- 심사평가 결과 평가점수 순위 상위 210명을 선정(하위 20명은 예비후보자로 분류)
- 선정된 농가방문 실사시 부적격 사유가 발견된 농가는 예비후보자중에서 평가점수 순위 순으로 대체

○ 심사항목: 【첨부6, 7】 심사평가표 참고

- 직거래 적합성 (전자상거래용 40% 배점, 보급용 20%)
 - 생산품목상 직거래 적합성 평가
 - 전자상거래에 적합한 운영조직, 생산량, 배송용이성 평가 (홍보용 홈페이지 신청농가는 평가항목 배제)
 - 정보통신 활용능력 (30% 배점)
 - PC보유현황, 정보통신 교육이수 여부 평가
 - PC통신, 인터넷 이용 여부 평가
 - 인지도 (전자상거래용 30% , 홍보용 50% 배점)
 - 생산자인지도 평가 : 신지식농업인, 친환경 농산물생산농가, 품질인증 농가
 - 상품인지도평가: 브랜드인지도, 원산지인지도 , 규격출하여부
- ※ 1차 서류심사결과 부적합 대상사유 「전자상거래 부적합」, 「PC 미보유」, 「인터넷 사용불능」에 해당하는 농가는 별도로 리스트를 작성 2차심사의 참고자료로 활용

마. 2차 심사 : 대상농가 현지실사 및 자료수집 ('03.4월~5월)

<현지실사와 자료수집 개요>

- 대 상 : '03년 홈페이지 구축 신청농가 중 해당지역 농가
- 방 법 : 현지방문실사와 자료수집 작업을 병행 실시
 - 농가의 최종구축의향조사, 선택사항 확인, 입금방법, 금액등 공지사항전달
 - 농가의 홈페이지 구축적합성 심사 (PC보유, 인터넷 연결여부등 확인)
 - 농가가 직접 작성한 본지침서와 구축용 사진자료등을 출장소에서 취합하여 5월 30일까지 농림수산정보센터로 송부
- 담당기관 : 농산물품질관리원 시·군출장소
 - 농관원 지원 직원대상 자료수집시 주의사항 및 중점점검내용 교육 ('03.4월중)
 - 농관원 지원에서는 출장소 직원에게 전달교육을 실시
 - 농관원 출장소 직원은 현지실사표에 의하여 실사 및 자료수집
 - * 단, 농업정보119대학에 개발이 할당된 농가는 대학에서 별도로 자료수집담당

(1) 현지방문시 실사할 내용

- ① 농가의 홈페이지 신청내용 최종확인
 - 홍보용, 전자상거래용 홈페이지 선택여부확인

※ 전자상거래용, 홍보용 홈페이지의 차이?

◁ 홍보용 홈페이지 (자부담 17만원)

- 품목의 특성상 소포장 택배송이 어려워 점진적인 농가의 브랜드 홍보를 통해 인지도를 높여 향후에 소비자와 생산자간의 전화나 메일을 통한 대량거래를 추구하는 경우

◁ 전자상거래용 홈페이지 (자부담 22만원)

- 홈페이지를 통한 상품 소량주문과 택배송이 가능한 품목에 해당
- 카드지불결제와 무통장입금결제가 가능
- 지속적인 상품정보와 주문관리가 필요

- VOD 동영상편집 선택여부 확인

※ VOD 동영상 편집이란?

농가에서 직접 촬영하여 보관중인 일반 비디오 테이프나 TV방송으로 소개된 화면이 들어있는 비디오 테이프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 상에 올려 방문자들이 볼 수 있게 동영상파일로 편집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따라서 비디오테이프가 없는 농가에서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총 편집시간은 3분 이내이며 편집비용은 5만원입니다.

② **농가 자부담 사항 및 부담금액, 입금방법**

- 개발비 50% 농가 자부담 (전자상거래용 22만원, 홍보용17만원)
 - VOD동영상편집 신청농가는 5만원 추가
- 계좌번호: **125-01-146201 (농협중앙회), 농림수산정보센터**
- 개발자부담금은 **5월 말일**까지 완료해야하며 미납시 구축포기로 간주

③ **외국어 홈페이지 구축신청 의향조사 (지정된 농가에 한해서 실시)**

- 수출관련 농가와 영농조합법인에 대해서는 외국어 홈페이지 구축에 관한 의향조사 실시

④ **홈페이지 구축 적합성 심사**

- PC 비보유 농가 : 원칙적으로 지원대상에서 제외.
- 인터넷사용 불능지역농가 : 원칙적으로 지원대상에서 제외.
단, 위탁운영 등 확실한 운영방안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적합농가로 인정

(2) 자료수집 방법

- 공지사항설명 및 농가심사를 거쳐 적합농가로 판단되는 농가를 대상으로 홈페이지 구축용 자료작성 및 수집
 - 홈페이지 구축에 필요한 상품사진, 농장사진 및 홍보용 리후렛 등도 병행하여 첨부하도록 함
 - VOD동영상 편집 신청농가의 경우 반드시 **원본 비디오테이프** 수집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책자에 기재된 샘플 홈페이지를 내용을 보고 농가에서 작성하도록 유도하고 홈페이지의 품질은 농가에서 구축에 필요한 자료를 얼마나 성의있게 제출하느냐에 따라 결정됨◀ 홈페이지 구성에 관한 농가의 독특한 아이디어도 반영이 가능 |
|--|

(3) 자료수집 절차

- ① 농가 자료수집이 농업인 홈페이지구축 사업의 관건인 만큼 중요성을 농가가 인식토록 유도
 - 홈페이지 운영관리의 주인이 참여농가라는 인식을 갖도록 유도
 - 자발적인 홍보활동 및 독창적인 아이디어 개발이 중요함을 인식

② 선정확인 및 실사관련 농가안내

- 선정사실, 실사, 자료수집에 대해 전화로 농가에 안내
- 사전에 전화통화 후 실사 및 자료수집을 위한 농가 방문일자 확정
- 1회 방문으로 원하는 자료 수집이 어려운 만큼 수집한 자료부터 농림수산정보 센터로 우송하여 주시고 농가에서 자료 준비하는 기간 등을 고려하여 추가자료 확보

(4) 수집할 자료의 내용

① 홈페이지 제작용 사진자료제출

- 상품사진 : 실제로 판매하고자 하는 상품사진 (품목별, 판매단위별)
 - 생산자 사진 : 대표자사진, 가족사진 등 (가급적 표정과 인상이 자연스러운 것)
 - 상호, 캐릭터, 농장마크등 농장을 대표하는 이미지 및 사진
 - 농장전경 또는 농장을 표현하기 좋은 사진
 - 생산현장, 재배과정, 수확과정, 선별과정, 출하과정등 생산에서 출하까지를 보여 줄 수 있는 사진
 - 농산물에 대한 인증서, 마크, 표창장, 감사패등 농작물과 생산자를 알릴 수 있는 자료사본
 - 기타 참고 사진이나 이미지 (홍보용등)
- ※ 사진자료는 개별농가 홈페이지 질을 높이는데 있어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자료 이므로 개별농가 실제사진 이어야 함
- 또한, 상품사진은 소비자가 전자상거래 이용시 구매력을 높일 수 있는 자료로 전자상거래용 홈페이지에서는 매우 중요한 것임
 - 개별농가에서 현재 보유하고 있지 않은 사진 자료는 농가에서 향후 직접 카메라로 촬영제출

② 홈페이지구축용 자료작성 양식을 농가에서 직접 작성 제출

- 홈페이지 메뉴 구성도와 홈페이지 샘플 자료를 참고하여 작성양식을 빠짐없이 작성

바. 최종 구축대상농가발표 ('03.5월 중)

- 방 법 : 농림부 홈페이지에 명단 게시
- 내 용 : 향후추진일정, 농가 자부담금 입금방법, 농가교육일정 소개등

사. 홈페이지 개발 자부담금 수납 ('03.5월 중)

- 입금방법 : 농가 개별 무통장입금 (농림수산정보센터 계좌)
- 확 인 : 입금시 홈페이지 신청인의 이름으로 입금
 - 농가는 입금 후 정보센터로 입금 확인전화

아. 홈페이지 개발 및 교육 ('03.5월 ~ 10월)

신규농가 집합교육(12시간 비합숙)

- 각 도별로 지정된 농업정보119대학(9개 대학)에서 금년에 신규로 참여한 관내 홈페이지 농가를 대상으로 홈페이지 개발기간 중(4~10월)에 개발 중인 본인의 홈페이지를 실습하면서 교육 실시
 - 지정대학 : 경기(한경대), 강원(강원대), 충북(충북대), 충남(충남대), 전북(전북대), 전남(순천대), 경북(경북대), 경남(경상대), 제주(제주대)
- ※ '03년도 신규참여농가는 5월말경 확정되면 통보예정임
- 교육장소 : 대학별 사정에 따라 학교시설 및 인근 관공서등 이용
- 강사구성 : 중앙과전 강사와 농업정보119팀 강사로 구성(대학에서 섭외)
- 교육과목 : 교재는 별도제공
 - pc활용 및 e-mail, 홈페이지운영관리, 사이버마케팅, 상거래관련 세무 회계, 농업인 성공사례 소개 등
- 정부지원 : 강사료 및 교통비, 강의장 사용료, 교육교재지급

자. 홈페이지 개통 ('03.10월말)

- 신규구축농가 홈페이지 개통식 및 시연회를 마련하여 각계 분야의 의견을 듣고 발전방향을 모색

차. 홈페이지농가 사후관리

기구축 농가 전문교육(1일 6시간 비합숙)

- 신규농가교육 지정대학(9개 대학) 등 22개 대학에서 '99년부터 '03년까지 참여한 관내 홈페이지 농가를 대상으로 홈페이지 운영관리에 중점을 두어 교육 실시
- 교육대상 : 농림부지원 기구축 홈페이지 농가(1306농가)

- 교육과목 : 교재는 신규농가교재를 활용하고 농가의 수준에 맞춘 눈높이 교육 실시
- 교육장소 및 강사섭외는 신규농가 교육방법과 동일

□ 농가정기 방문교육(상·하반기 1회씩 년 2회)

- 홈페이지농가의 운영·관리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119대학(22개)에서 정기적(년2회)으로 관내 홈페이지 농가를 방문하여 교육 실시
 - 농가를 방문하기 전에 농가교육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기초이력사항을 출력, 농가의 수준 등을 파악한 후 농가방문
 - 교육을 실시한 후에 농가교육관리시스템에 교육내용을 입력, 방문교육⑦에 해당하는 평가항목을 입력하여 수시로 평가 실시
- 119대학에서 방문교육 후 수시로 평가된 내용과 전자상거래 실적, 참여도 등을 시스템적으로 반영하여 최종평가 실시(10월30일)
 - 평가결과 (1)우수농가, (2)장려농가, (3)부진농가로 구분하고 부진농가에 대해서는 보충교육 실시
- 교육내용은 홈페이지운영관리, 마케팅교육, 우수사례소개 위주로 실시

□ 부진농가 방문보충교육

- 농가 최종평가(10월30일 예정) 결과 부진농가에 대해서 11~12월 기간중 보충교육 실시 후 교육결과를 농림부로 송부(12월말)
 - 부진농가의 경우 농가별로 방문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전화통화를 통해 교육일정을 잡아 홈페이지 운영교육 위주로 보충교육 실시
 - 이때 운영포기 및 무관심농가 등의 경우는 관리제외농가로 분류
 - 홈페이지 운영의지는 있으나 교육시간 할애가 어려운 농가의 경우는 잠정적인 교육일정을 농가와 합의, 향후 보충교육을 실시(교육기회 2회부여)
 - 부진농가의 교육결과를 농가별로 (1)보충교육실시농가, (2)교육보류농가, (3)관리제외농가로 분류하여 제출

◀ 홈페이지 사후관리를 위한 기관별 조치사항

□ **농림수산정보센터**에서는 교육관리시스템 개발 등 119대학에서 교육·운영지도에 필요한 환경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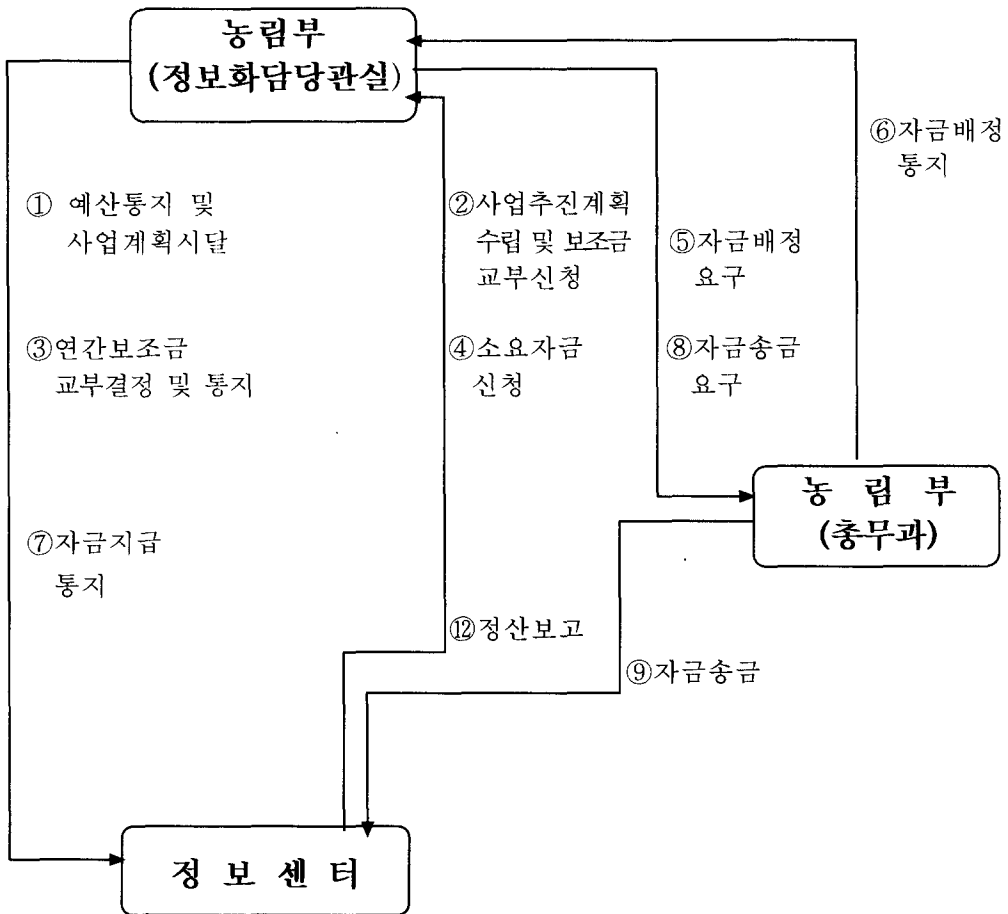
- 교육관리시스템 개발 및 운영요령을 해당119대학에 송부('03.4월)
- 신규농가 교육('03.6~9월)시 활용할 교재발간('03.5월)과 집합교육(신규농가, 기존농가), 방문교육시 예산지원
 - 금년 신규농가 선정이 확정된 후, 119대학별로 해당농가 통보('03.5월 말)
 - 집합교육은 25명기준이며 20명 이상시 확인 후 예산지원(16만원), 방문교육은 농업정보119 교육지침과 동일(1회방문 4만원)
- 119대학에서 농가 요구 시 홈페이지 수정이 가능토록 서버 접근 권한 허용 등 조치('03.6월)
 - ※ 119대학에서 홈페이지 수정시 활용할 수 있는 지침서 마련도 병행
- 119대학의 수시평가, 교육관리시스템에 의한 평가 등을 토대로 홈페이지 농가 평가 (매년 10월 말 기준)실시
 - 평가후 부진농가 관리방안, 홍보용 및 전자상거래용 홈페이지 분리운영 등을 포함한 관리방안 마련

□ **농업정보119대학**에서는 교육세부계획을 자체 수립하여 관내 홈페이지농가 지도 교육과 수시평가 등 실시

- 교육세부계획 수립 후 농림부 송부('03.5월 말)하고 교육실시
 - 집합교육, 방문교육, 방문보충교육 실시 및 교육장소, 강사섭외 등 추진
 - 교육실시 후 교육관리시스템에 입력, 교육지침(참고2,3)에 의거 수시평가 실시
- ※ 교육관리시스템 개발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홈페이지농가 교육에 대한 실적을 별도 기록·유지하여 향후 개발 후에 교육관리시스템에 입력
- 평가후('03.10월말) 부진농가 교육결과를 농림부로 송부(매년12월 말)
- 홈페이지농가로부터 HTML수정, 이미지 및 메뉴수정 등의 요구가 있을 경우 119대학(<지도내용>에서 지정된 대학)에서 수정
- 방문교육 등을 실시하면서 고객관리에 남다른 노하우를 보유한 농가 등 우수농가의 경우, 홈페이지경진대회에 추천

《보조금 집행절차》

가. 절차도



① 예산확정 즉시

② 사업계획시달 후 20일 이내

④ 매월 20일까지(문서도착 기준)

* 이미 지급한 보조금의 집행 및 잔액명세, 소요액 산출명세, 기타 사업지원과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서류 첨부

⑤ 매월 25일까지

⑩ 12.20까지

나. 보조금 교부조건

- ① 사업주관기관은 보조금 교부목적 및 보조사업내용과 조건에 따라 보조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함.
- ② 농림부장관은 보조금 교부결정후 사정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보조사업의 내용과 보조조건을 변경하거나 보조금 교부결정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으며, 사업주관기관은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보조사업 내용 및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함.
- ③ 사업주관기관은 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의 승인을 얻은 때 또는 국가의 회계연도가 종료한 때에는 보조사업실적보고서에 보조사업에 소요된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작성 제출하여야 함.
- ④ 농림부장관은 사업주관기관이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보조금 교부 목적과 보조사업내용 또는 조건 및 관계법령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전액 또는 일부를 취소하고, 취소된 부분에 대한 보조금을 국가에 반환하도록 할 수 있음.
- ⑤ 사업주관기관은 보조금을 반드시 당해 사업비로만 집행하고, 인건비 또는 다른 사업비등으로 유용할 수 없음
- ⑥ 사업주관기관은 보조금에 대하여 각 사업별로 별도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정리하여야 함.
- ⑦ 사업주관기관은 보조사업의 수행에 관하여 농림부장관의 명령에 따라야 하며, 농림부장관의 명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이 사업주관기관의 장부, 서류, 기타 재산을 검사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할 때에는 성실히 이에 응하여야 함.

◀ 농업인 홈페이지구축 사업 보조사업자 특별관리지침

① 보조사업자에 대한 업무관리 점검 내용

- 연도별 농업인 홈페이지구축 지원사업 관리
 - 세부계획 수립 및 시행
 - 개발업체 선정 및 계약
 - 과업내역서에 의한 사업 수행관리 및 산출물 관리
 - 접수 및 인수, 완료보고
- 홈페이지구축 사업 보조금 관리
 - 연간 보조금 집행 계획서
 - 월별 보조금 집행실적 보고
 - 분기별 보조금 예산집행 실적보고
- 농업인 홈페이지 운영/관리 현황
 - 교육 및 이용자 현황실적
 - 농업인 사이버동호회 활동사항 및 운영현황
 - 농업인 홈페이지 유지보수 현황
 - 홍보 및 마케팅 실적
- 농업인 홈페이지 운영/관리 담당자 업무 세부내역 관리
 - 담당자별 업무 세부내역
 - 담당인력에 대한 업무 분석

② 보고서 제출 현황

- 사업 월간업무 현황 보고서 (사업승인서 포함)
- 연간보조금 집행계획서 대 월·분기별 집행실적 보고서

《 행정사항 》

가. 농림수산정보센터

- 농업인 홈페이지 구축사업 세부사업계획제출 (매년 1월말까지)
- 농업인 홈페이지 구축사업 교부신청서제출 (매년 2월말까지)
- 농업인 홈페이지 구축사업 정산보고 (매년 12월15일까지)
- 농업인 홈페이지 구축사업 분기별 예산집행보고 (분기마다)
- 농업인 홈페이지 구축사업 연간 홍보계획수립보고 (매년 3월말까지)

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농업인 홈페이지 신청농가 추천 및 취합보고 (매년 4월말까지)
- 농업인 홈페이지 현지실사 결과제출 (매년 5월말까지)
- 농업인 홈페이지 경진대회 참여농가 추천 (매년 6월말까지)

다. 농업정보119대학

- 농업인 홈페이지 신청농가 추천 (매년 4월말까지)
- 농업인 홈페이지 구축농가 교육결과보고 (교육 후 15일 이내)
- 농업인 홈페이지 구축농가 평가결과보고 (매년 12월말까지)
- 농업인 홈페이지 경진대회 참여농가 추천 (매년 6월말까지)

라. 지방자치단체

- 농업인 홈페이지 구축농가추천 (매년 4월말까지)
- 농업인 홈페이지 구축지원실적보고 (상·하반기 1회씩)
- 농업인 홈페이지 경진대회 참여농가 추천 (매년 6월말까지)

마. 주요보고목록

보고사항	보고주기	보고기한	비 고
○ 홈페이지 농가추천	1회(추천기관)	매년 3월말까지	
○ 홈페이지사업 세부계획	1회(농림수산정보센터)	매년 1월말까지	
○도별 홈페이지 구축 현황 파악	상·하반기 2회(지방 도청)	매년 5월말 매년 11월말	
○ 홈페이지 구축완료보고	1회 (농림수산정보센터)	매년 11월말	
○ 홈페이지 경진대회 참여농가 추천	1회 (추천기관)	매년 7월말	

6. 2004년도 사업신청 및 대상자 선정 안내

- 대상자 선정절차
 - 농림부에서 선정기준, 대상 농가 수 등을 확정하여 추천기관에 통보
 - 추천기관은 신청 받은 농가에 대해서 결격사유가 없는지 여부 등을 선정기준에 의해 검토 후 농림부에 보고

- 시·도별로 확정된 농가에 대해서 홈페이지 구축
 - ※ 신청 기간은 연초에 농림부, 농산물품질관리원, 농림수산정보센터 등 추천기관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농업전문지를 통해서도 홍보

【첨부-1】 '03년 농업인 홈페이지 구축 신청 안내문

□ 안녕하십니까?

우리부에서는 농산물 전자상거래를 활성화시키고 농업인들의 정보화마인드 확산을 위하여 '03년 농업인 홈페이지 구축지원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아래의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 홈페이지 구축지원농가 : 올해 200농가 지원
- ◀ 신청대상 : 농업 또는 농업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개별 농업인, 작목반, 영농법인, 가공업체, 회원농협
- ◀ 신청기간 : '03년 2월4일-'03년 3월15일까지
- ◀ 신청/접수 : 신청서를 해당지역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시·군출장소로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 신청/접수('03.3.14일 소인분까지 인정)
 - 신청서는 농림부 홈페이지(www.maf.go.kr)와 농산물 품질관리원 시군출장소에서 배부
- ◀ 지원내역 : 농가의 구축의향에 따라 홍보용과 전자상거래용 홈페이지 2종류중 선택한 홈페이지 개발비용 50% 지원 (농가당 20만원선 자부담 예상)
 - ※ 홍보용, 전자상거래용 홈페이지의 샘플을 농림부 홈페이지(www.maf.go.kr)에 게시
 - ※ 개발업체 선정 후 구체적인 농가 자부담 금액결정
- ◀ 사후관리 : 해당지역 농업정보119대학에서 전담 유지관리
- ◀ 선정방법 : 신청농가가 200농가를 넘는 경우 신청서를 토대로 농가의 운영능력, 적합성, 인지도등을 평가하여 순위별로 200농가 선정 (평가기준표 참고)
- ◀ 세부일정
 - 신청접수: '03.3월
 - 신청농가 평가 및 홈페이지 구축용 자료수집: '03.4월-5월
 - 대상농가결정: '03.5월 중 (농림부 홈페이지에 명단 게시)
 - 홈페이지 개발 자부담금 납부: '03.5월
 - 홈페이지 개발 및 완료 : '03.5월-10월 (농가홈페이지운영교육: '03.7-9)
- ◀ 문의사항 연락처
 - 농림부 정보화담당관실 (02-500-1636)
 -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시군 출장소 (자료 참고)
 - 한국농림수산정보센터 전자상거래팀 (031-299-8835, 8893, 8989)

< 홍보용, 전자상거래용 홈페이지 비교 >

구 분	홍보용 홈페이지	전자상거래용 홈페이지
대상 및 역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의 특성상 인터넷 전자상거래 보다는 소비자들에게 브랜드 및 농가홍보에 중점을 두고 전화를 통한 직거래에 활용하고자 하는 농가 <농가 역할> · 지속적인 고객 및 회원관리 (이메일관리, 게시판운영, 판촉홍보행사) · 상품브랜드홍보 및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자체홍보 노력 ※ 홈페이지 수정관리 필요시 인근 지역 농업정보119대학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의 특성 및 농가의 보유물량이 인터넷 전자상거래를 하기에 적당한 농가 <농가 역할> · 홈페이지를 통해서 직접 상품주문을 처리하여 상품배송까지 처리 · 지속적인 고객 및 회원관리 (이메일관리, 게시판운영, 판촉홍보행사) · 계절에 따라 상품정보 수정관리 ※ 카드대금 및 무통장입금 정산등은 농림수산정보센터에서 대행, 운영 관리는 농업정보119대학 도움으로 본인이 함
개발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5만원선 (농가 자부담 17-18만원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5만원선 (농가 자부담 22-23만원선)
주요기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가홍보기능 · 생산자 안내, 생산물 정보게시 · 농가의 독자적인 콘텐츠 추가가능 · 게시판, 방명록, 농가알림기능 · VOD기능 (선택사양) - 약 15page내외로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가홍보기능 · 생산자 안내, 생산물 정보게시 · 게시판, 방명록, 농가알림기능 · VOD기능 (선택사양) - 전자상거래 기능 · 상품정보게시 및 변경가능 · 카드지불결제 기능 · 농산물 통합쇼핑몰 연계 가능 - 약 20page 내외로 구성
장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가의 홈페이지운영이 간단 - 전화주문으로 상품판매 가능 - 농가 및 브랜드 홍보에 적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카드결제기능, 장바구니기능 부여로 전자상거래기능이 강화 - 적극적인 상품판매에 적합
단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카드결제기능 불가로 인해 상대적으로 전자상거래기능 약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품정보에 대한 수정 및 상품구매확인 등에 따른 농가의 시간 할애 및 노력이 요구됨
선택사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VOD 동영상 편집비 (비용 : 5만원) · 농가에서 보유하고 있는 농가소개, 생산모습 및 TV방송소개를 담은 VTR화면을 편집하여 홈페이지에 VOD로 제공 (농가방문촬영은 하지 않음) · 2분 내외로 구성편집 	

【첨부-2】 농업인 홈페이지 구축신청서(개별신청농가용)

◀ 접수기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_____ 지원 _____ 출장소 _____ ▶ 일련번호: _____

생산자유형	<input type="checkbox"/> 개인농가 <input type="checkbox"/> 작목반 <input type="checkbox"/> 영농법인 <input type="checkbox"/> 가공업체		
	<input type="checkbox"/> 신지식농업인 <input type="checkbox"/> 품질인증농가 <input type="checkbox"/> 친환경 농산물생산농가 <input type="checkbox"/> 기타		
대표자명(나이)		주민등록번호	-
농장명		전화번호	() -
		핸드폰번호	() -
주소	우편번호:		
생산품목 ※신고인증농산물은 인증번호,신고번호 필히 기재		생산품목 브랜드	
생산량(2001년기준)	물량	톤	매출액 (2001년기준) 금액 원
구축희망 홈페이지 형태 (둘 중 택일)	<input type="checkbox"/> 홍보용 (농가자부담 17만원선) <input type="checkbox"/> 전자상거래용 (농가자부담 22만원선)	선택사양	<input type="checkbox"/> VOD 동영상편집 (5만원선)
판매시기 (일년중 기간)		PC활용능력	<input type="checkbox"/> 상 <input type="checkbox"/> 중 <input type="checkbox"/> 하
PC보유현황	PC보유여부 : <input type="checkbox"/> 486급 <input type="checkbox"/> 586-II급이하 <input type="checkbox"/> 586-II급이상 <input type="checkbox"/> 미보유 PC통신/인터넷 사용여부 : <input type="checkbox"/> 가능 <input type="checkbox"/> 불가능		
PC통신/인터넷 사용여부	PC통신	<input type="checkbox"/> 아피스 <input type="checkbox"/> 천리안 <input type="checkbox"/> 하이텔 <input type="checkbox"/> 유니텔 <input type="checkbox"/> 기타()	
		회원ID :	
	인터넷	<input type="checkbox"/> 한국통신 <input type="checkbox"/> 하나로통신 <input type="checkbox"/> 두루넷 <input type="checkbox"/> 전용선 <input type="checkbox"/> 기타()	
	E-mail :		
정보통신교육	교육기관		교육기간
	교육내용		
생산품목특징 및 생산자소개			

※ 「생산품목의 특징 및 생산자소개」의 내용이 담긴 책자, 팜프렛 및 리후렛등이 있을 경우 첨부가능

【첨부-3】 농업인 홈페이지 구축신청서 (기관추천 농가용)

◀추천기관:

추천인:

◀일련번호: _____

생산자유형	<input type="checkbox"/> 개인농가 <input type="checkbox"/> 작목반 <input type="checkbox"/> 영농법인 <input type="checkbox"/> 가공업체		
	<input type="checkbox"/> 신지식농업인 <input type="checkbox"/> 품질인증농가 <input type="checkbox"/> 친환경농산물생산농가 <input type="checkbox"/> 기타		
대표자명(나이)		주민등록번호	-
농장명		전화번호	() -
		핸드폰번호	() -
주소	우편번호:		
생산품목	생산품목 브랜드		
생산량(2001년기준)	물량	톤	매출액 (2001년기준) 금액 원
구축희망 홈페이지형태 (둘 중 택일)	<input type="checkbox"/> 홍보용 (농가자부담 17만원선) <input type="checkbox"/> 전자상거래용 (농가자부담 22만원선)		선택사양 <input type="checkbox"/> VOD 동영상편집 (5만원선)
판매시기 (일년중 기간)		PC활용능력	<input type="checkbox"/> 상 <input type="checkbox"/> 중 <input type="checkbox"/> 하
PC보유현황	PC보유여부 : <input type="checkbox"/> 486급 <input type="checkbox"/> 586-II급이하 <input type="checkbox"/> 586-II급이상 <input type="checkbox"/> 미보유 PC통신/인터넷 사용여부 : <input type="checkbox"/> 가능 <input type="checkbox"/> 불가능		
PC통신/인터넷 사용여부	PC통신	<input type="checkbox"/> 아피스 <input type="checkbox"/> 천리안 <input type="checkbox"/> 하이텔 <input type="checkbox"/> 유니텔 <input type="checkbox"/> 기타()	
		회원ID :	
	인터넷	<input type="checkbox"/> 한국통신 <input type="checkbox"/> 하나로통신 <input type="checkbox"/> 두루넷 <input type="checkbox"/> 전용선 <input type="checkbox"/> 기타()	
E-mail :			
정보통신교육	교육기관		교육기간
	교육내용		
생산품목특징 및 생산자소개			
추천사유			

※ 「생산품목의 특징 및 생산자소개」의 내용이 담긴 책자, 팜플렛 및 리후렛등이 있을 경우 첨부가능

【첨부-5】

전체 현황표 (농관원 본인 취합용)

기관명	추천의뢰 농가수	추천/신청농가수				
		계	홍보용		전자상거래용	
			VOD선택	미선택	VOD선택	미선택
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종자관리소						
농산물유통공사						
축산관련협회						
농업정보119대학						
농업인사이버동호회						
시군지자체						
시군기술센터						
개인신청농가						
총 계						

【첨부-6】

심사평가표(홍보용)

접수/신청기관 : _____

○ 생산자 명 : _____

○ 지 역 서울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 개발 유형 홍보용

○ 생산자유형 농가 작목반 영농법인 가공업체 단위농협

○ 생산자구분 신지식농업인 품질인증농가 친환경농산물농가 기타 ()

○ 평 가

구 분	심사항목	배당점수	심사자	평 점
직거래 적합성 (20)	- 전자상거래 적합한 생산품목여부(5) - 전자상거래 적합한 생산자조직이나 농가(10)	15		
	- 일정량 이상의 생산량보유 및 배송 용이성(5)	5		
인지도 (50)	- 신지식농업인, 친환경농업인, 품질인증농업인 및 이와 상응한 농가(20)	20		
	- 브랜드상품, 유명원산지, 규격출하여부 (30)	30		
홈페이지 운영능력 (30)	- PC 보유 및 기종(15)	15		
	- PC통신, 인터넷 활용능력(10) - 컴퓨터교육 이수여부 (5)	15		
합 계		100	총 _____	점

【첨부-7】 심사평가표 (전자상거래용)

접수/신청기관 : _____

○ 생산자 명 : _____

○ 지 역 서울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 개발 유형 전자상거래용

○ 생산자유형 농가 작목반 영농법인 가공업체 단위농협

○ 생산자구분 신지식농업인 품질인증농가 친환경농산물농가 기타 ()

○ 평 가

구 분	심사항목	배당 점수	심사자	평 점
직거래 적합성 (40)	- 전자상거래 적합한 생산품목여부(10) - 전자상거래 적합한 생산자조직이나 농가(20)	30		
	- 일정량 이상의 생산량보유 및 배송 용이성(10)	10		
인지도 (30)	- 신지식농업인, 친환경농업인, 품질인증농업인 및 이와 상응한 농가(20)	20		
	- 브랜드상품, 유명원산지, 규격출하여부 (10)	10		
홈페이지 운영능력 (30)	- PC 보유 및 기종(15)	15		
	- PC통신, 인터넷 활용능력(10) - 컴퓨터교육 이수여부 (5)	15		
합 계		100	총	점

【첨부-8】

현 지 확인서 (농관원 출장소용)

번호: _____

1. 일반현황

성 명		전화번호	
주 소			

2. 특이사항

내 용	비 고
※ 서류기재내용과 다르거나, 전자상거래 부적합 요인을 기록 ※ 농가포기의사 표현 시에도 기재	

3. 검토의견

※ 종합적인 검토의견으로 농산물 전자상거래 부·적합을 기재

출장 확인자 : (인)

【참고1】 【집합교육 지침】

<p>① <신규농가 집합교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별로 지정된 1개 대학에서 실시 ◀ 매년 6-9월중 실시 ◀ 신규구축농가대상 ◀ 2일간 12시간교육 (비합숙) ◀ 신규농가 의무교육사항 	<p>① <기구축농가 전문교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 22개 119대학에서 실시 ◀ 매년 6-9월중 실시 ◀ 기구축농가대상 ◀ 1일간 6시간교육 (비합숙)
--	---



<p>② 대학별 세부 교육계획 수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별 교육 대상농가 파악 (농가교육 관리시스템 조회) · 교육장소 및 강사섭외 (과목별로 외·내부 강사 섭외) · 농림부로 교육계획 송부 (교육시행 15일전까지 송부) ◀ 정부지원: 교육운영비, 강사료, 교재지원



<p>④ 교육대상농가 개별안내 및 참석여부 확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메일발송 및 전화통화 등을 통해 참석여부확인 · 팜모아닷컴, 아피스넷 등에 교육안내 · 농업인사이버 동호회지역대표 등에 협조요청



<p>⑤ 교육실시</p> <p>◀ 교육과목 (교재는 정부에서 별도 제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c활용 및 e-mail, 홈페이지운영관리 - 사이버 마케팅, 상거래관련 세무회계 - 농업인 성공사례 소개 <p>※ 개발중인 농가자신의 홈페이지 실습 및 조회 가능</p>	<p>⑤ 교육실시</p> <p>◀ 교육과목</p> <p>(교재는 신규농가교재를 활용하고 농가의 수준에 맞춘 눈높이 교육 병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넷뱅킹, 홈페이지운영관리 - 사이버마케팅, 농업인성공사례 소개
---	---



<p>⑥ 농가 교육확인서 취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이후 수강 농업인들의 교육확인 및 기초사항조사실시 · 추가로 교육반응 조사등을 자체적으로 실시 가능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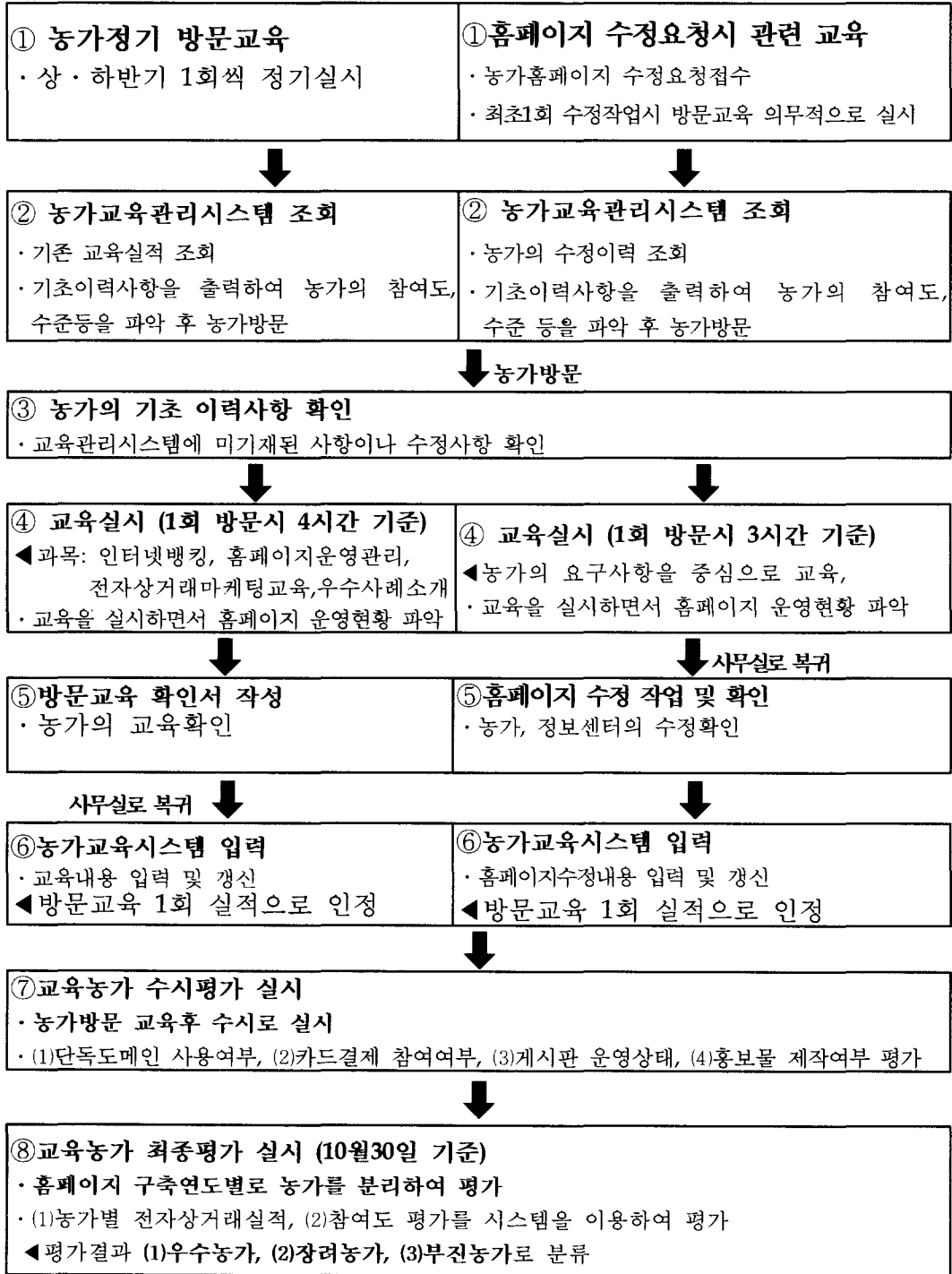


사무실로 복귀

<p>⑦ 농가교육 관리시스템에 교육사항 입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가교육확인서를 토대로 농가교육 이력관리란에 정보 추가 및 갱신

※ 농업정보119대학에서는 지역별 농업인 사이버 동호회 간담회에 적극 참여 하여 수시 교육도 실시

【참고2】 【 방문교육 및 평가지침】



⑨ <부진농가 방문보충교육>

◀최종평가결과 부진농가에 대해 11-12월중 교육 실시

◀최종평가결과 부진농가를 119대학별로 「농가교육관리시스템」을 통하여 확인

- 개별농가의 이력사항 확인
- 농가별로 방문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전화통화를 통하여 농가의 참여의향 등 파악
- 농가로 하여금 교육이 필요한 과목을 선택하게 유도

↓ 농가방문

↓ 교육거부시

⑪ 방문 보충교육실시

- 과목:홈페이지운영관리교육, 사이버마케팅 교육 위주로 실시
- 기타:농가필요에 따라 pc기초교육, e-mail활용 인터넷뱅킹,우수농가사례소개등을 교육

⑪ 관리제외농가와 교육보류농가로 분류

- ◀ 관리제외농가로 분류되는 경우
 - 홈페이지 운영포기, 운영 무관심등의 사유
- ◀ 교육보류농가로 분류되는 경우
 - 홈페이지 운영의지는 있으나 영농으로 인해 교육시간 할애가 어려운 경우
 - 잠정적인 교육일정을 농가와 합의하고 향후 보충방문교육을 실시한 후 부진농가로 재 분류



⑫ 농가교육관리시스템 입력

- 교육내용을 시스템에 입력
- ◀방문교육 1회 실적으로 인정

⑫ 농가관리시스템 입력

- ◀관리제외농가
 - 사유입력
- ◀교육보류농가
 - 잠정적인 교육일정 기록



⑬ 부진농가 교육결과를 농림부로 송부 (매년 12월말까지)

- 부진농가의 교육결과를 농가별로 (1)보충교육실시농가, (2)교육보류농가, (3)관리제외농가로 분류하여 제출
- ◀ 관리제외농가의 홈페이지에 대해서는 농림부에서 별도관리할 예정

【참고3】

농가 관리 카드

(농가교육관리시스템에 적용해서 개발)

<농가기초사항>

※ 농가의 모든 이력사항을 입력/갱신하여 개별농가의 정보를 한번에 확인하는 카드로서, 교육전에 출력하여 교육에 활용하고 농가평가결과를 교육시 파악하여 입력/갱신한다

◀코드번호: 농림-경기-2000-1		◀구분 : <input type="checkbox"/> 홈페이지 농가 <input type="checkbox"/> 일반농가	
◀이름:	◀ 나이:	◀담당119대학 :	
◀농장명:	◀홈페이지 주소:		
◀주민등록번호:	◀구축기관:	◀구축연도:	
◀영농형태: <input type="checkbox"/> 개인농가 <input type="checkbox"/> 법인 <input type="checkbox"/> 조합 <input type="checkbox"/> 가공업체			
◀주요품목:			
◀우편번호:	◀주 소:		
◀자택전화번호:	◀핸드폰번호:		
◀전자우편:	◀팩스:		

<교육이력관리>

No.	구분 (방문/집합)	일 자	교육과정	교육과목	교육기관

<홈페이지 유지보수관리>

No.	일자	작업기관	작업내용	비 용(유/무료)

<행사참여 내용>

※ 동호회 행사, 간담회, 관측행사 및 정기총회등의 모임에 참여한 내

No.	일자	주관기관	행사제목	행사내용

<정보화 환경>

S/W	H/W	N/W
-농업용S/W:	-PC기종:	-인터넷사용여부:
-문서편집기:	-RAM:	-연결방식:
-E-MAIL프로그램:	-주변장치:	-회선속도:

<홈페이지 운영관리 평가>

◀ 홈페이지 게시관 관리상태 (119대학평가) <input type="checkbox"/> 10점 <input type="checkbox"/> 7점 <input type="checkbox"/> 2점	◀ 전자상거래실적 (농림수산정보센터평가) <input type="checkbox"/> 30점 <input type="checkbox"/> 20점 <input type="checkbox"/> 10점 · 30점: 상위 20% 이내 · 20점: 상위 20-70% · 10점: 하위 30% 이하
◀ 단독도메인 사용여부 (119대학평가) <input type="checkbox"/> 사용10점 <input type="checkbox"/> 미사용5점	◀ 농가홈페이지 홍보물제작여부 (119대학평가) <input type="checkbox"/> 제작 10점 <input type="checkbox"/> 미제작 5점
◀ 카드결제 참여여부 (119대학평가) <input type="checkbox"/> 참여5점 <input type="checkbox"/> 미참여2점	합 계 : _____ 점

<농가의지 및 참여도 평가 >

<input type="checkbox"/> 홈페이지 수정1회당 : 10점 ※ 119대학에서 수정사항 발생시 수시 입력한 내용을 토대로 평가
<input type="checkbox"/> 홈페이지 교육1회당 : 10점 ※ 119대학에서 농가교육 참여사항 발생시 수시 입력한 내용을 토대로 평가
<input type="checkbox"/> 홈페이지 관련 행사참여 : 10점 ※ 농림수산정보센터에서 각종 간담회 및 행사 참여한 명단을 파악하여 입력

< 종합 평가 >

※ 10월 30일 농림수산정보센터에서 시스템에 의해 자동일괄 평가

◀ 총 점 (점) = 홈페이지운영관리 (점) + 참여도 (점)
◀ 순 위 : 위 / 년 구축 농가 중
◀ 특이사항 : _____
■ 종합평가 <input type="checkbox"/> 우수농가 <input type="checkbox"/> 장려농가 <input type="checkbox"/> 부진농가
■ 부진농가 관리결과 <input type="checkbox"/> 보충교육실시 <input type="checkbox"/> 교육보류 (교육예정일: 년 월 일) <input type="checkbox"/> 관리제외대상

< 연도별 평가결과 >

※ 시스템에 의해 자동누적

'02년 평가결과	'03년 평가결과	'04년 평가결과	'05년 평가결과	'06년 평가결과

【참고4】 홈페이지농가 항목별 평가지침

분류	평가항목	평가방법	평가주체
홈페이지 운영평가	<단독도메인사용여부> · 사용:10점 미사용: 5점	【수시파악】 방문교육 후 변경사항 발생시 수정	119요원
	<카드결제 참여여부> · 참여: 5점 미참여: 2점	【수시파악】 방문교육 후 변경사항 발생시 수정	119요원
	<게시판 운영상태> · 지속적인 글 게시 및 질의에 즉시 회신 10점 · 비장기적인 관리 및 질의에 대한 회신 7점 · 전혀 관리하지 않음: 2점	【수시평가】 최종 방문 교육시 파악한 평가로 갱신	119요원
	<전자상거래를 위한 홍보물제작 여부> · 제작: 10점 · 제작안함: 5점	【수시파악】	119요원
	<전자상거래실적> · 상위20% : 30점 · 중위20-70%: 20점 · 하위30%: 10점	【일괄평가 10월30일】 최종평가일에 일괄평가	정보센터
	참여도 평가	◀홈페이지수정 1회당: 10점 ◀교육참여 1회당: 10점 ◀관련 행사참여 1회당: 10점	【일괄평가 10월30일】 기존의 입력된 참여 실적을 최종평가일에 일괄 자동평가
종합평가	◀홈페이지운영평가 + 참여도 평가합산 · 우수농가 (총점75점이상) · 장려농가 (총점74점~55점) · 부진농가 (총점54점이하)	【일괄평가 10월30일】 구축 연도별 그룹평가	정보센터
부진농가 평가	◀종합평가결과 부진농가들을 대상 으로 보충교육을 실시후 평가실시 ◀평가결과분류 · 관리제외농가 (운영포기농가, 무관심 농가) · 교육실시농가 · 교육보류농가(교육가능일자명시)	【11-12월중 방문교육 이후평가】	119요원

② 농업인정보화교육지원

※ 이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정보화담당관실(과장 신중호, 사무관 이대형)입니다.

1. 목적

- 농업인의 정보이용능력 향상을 통해 농업·농촌정보화 촉진
- 도·농간, 산업간 정보화 격차 해소 및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2. 시책 및 추진방향

- 2005년까지 농업인 정보화인력 40만명 육성
- 농업인의 수준에 따라 교육내용을 차별화하여 교육효과 제고
 - 농업인 수준과 농업 특성에 맞는 정보화 교육과정을 개발
- 농업인의 특성을 감안하여 현장위주의 농가(마을)방문교육 확대 추진

3. 근거법령

- 농업·농촌 기본법 제28조(농업 및 농촌지역의 정보화)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98-'00년	2001년	2002년	2003 (예산안)	2004이후
사업량		천명 85	76	80	62	166
사 업 비	계	5,458	3,174	4,663	2,700	9,723
	보 조	5,458	2,849	3,700	2,700	9,723
	용 자	-	-	-	-	-
	지방비	-	-	-	-	-
	자부담 (시행기관)	-	325	962	-	-

* '01~'03년도 보조사업비는 정보화촉진기금임.

5. 2003년도 사업시행요령

< 사업개요 >

가. 사업내용

(1) 사업배경

- 농업인의 정보이용능력 향상을 통한 농업·농촌정보화 촉진을 위해 정보화교육 추진

(2) 농업인 정보화교육과정

- 컴퓨터활용교육
 - 읍·면단위 농협회원조합이 담당(집합교육)
 - 컴퓨터 초보자·사용자를 대상으로 수준에 맞는 컴퓨터활용교육(18시간) 실시
- 농업정보전문교육
 - 농업정보활용교육 : 시·군단위 농업기술센터가 담당(집합교육)
 - 컴퓨터 활용능력을 가진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업정보 활용에 대한 정보화교육(18시간) 실시
 - 농업용S/W활용교육 : 농업계 특성화대학 등 교육기관이 담당(집합교육)
 - 컴퓨터 활용능력이 있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업용 S/W, 마케팅 등 정보화교육(18시간) 실시
- 농업정보119서비스
 - 전국 농업계대학이 담당(농가방문교육)
 - 홈페이지 구축 농가 및 농업용 S/W 활용농가 등 전문교육위주의 방문교육 실시
- 이동버스정보화교육
 - 한국농림수산정보센터가 담당(마을방문교육)
 - 정보화교육을 필요로 하는 마을을 대상으로 PC를 탑재한 버스로 신청한 마을을 방문(12시간)하여 교육 실시
- 원격교육(www.farmedu.net)
 - 한국농림수산정보센터가 담당
 - 농업인 정보화교육 이수자의 반복 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교육과정에 맞게 다양한 과정의 콘텐츠를 운영

(3) 지원내역

- 컴퓨터활용 교육기관(농협회원조합) : 교재지원 100%, 강사료 50% 지원
- 기타 교육기관 : 교재·강사료 100% 지원
- 농업인은 교육비 무료

나. 2003년도 사업비(예산안) 내용

(단위:백만원)

내용별	사업량	사 업 비					
		사업비 합계	예 산 액(정보화촉진기금)			지방비	자부담 (시행기관)
			계	보 조	용 자		
정보화교육	62천명	2,700	2,700	2,700	-	-	-

< 추진체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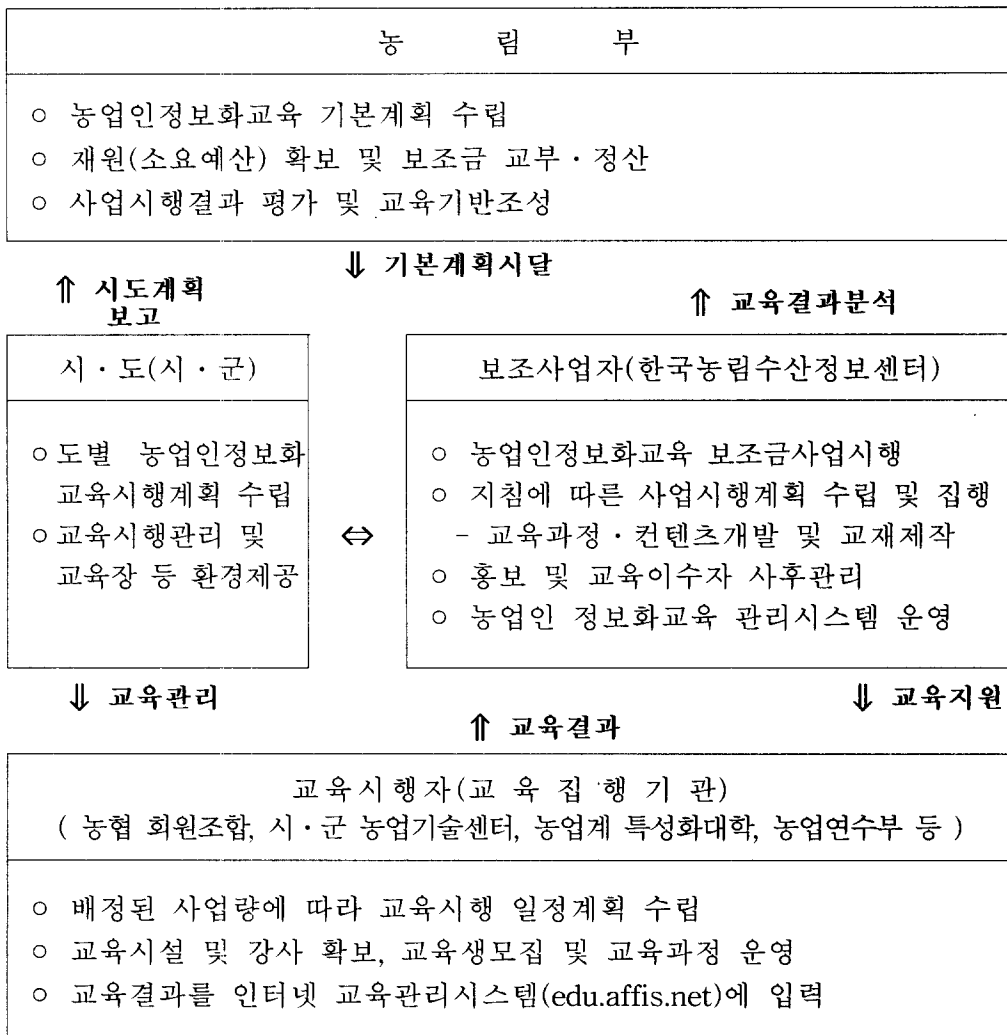
가. 사업주관기관 : (재)한국농림수산정보센터

- 사업지원과 : 농림부 정보화담당관실
- 사업시행계획 수립 및 관리 : (재)한국농림수산정보센터
- 관할 시행기관별 교육시행계획 수립 및 관리 : 9개도(시·군)
- 교육시행계획 수립 및 관리협조 : 농촌진흥청(농업기술원) 및
농협중앙회 (도지역본부)
- 교육집행·운영 등 교육시행기관
 - 컴퓨터활용교육 : 농협 회원조합
 - 농업정보활용교육 : 시·군 농업기술센터
 - 농업용S/W활용교육 : 농업계 특성화대학 등
 - 농업정보119서비스 : 농업계대학
 - 이동버스정보화교육 : (재)한국농림수산정보센터
 - 원격교육 : (재)한국농림수산정보센터

나. 사업담당부서

- 농림부 정보화담당관실(02-500-1631~3)
- (재)한국농림수산물정보센터 정보교육과(031-299-8911)
- 9개도(시·군) 농정과(산업과)
- 농촌진흥청 지도기획과(031-299-2668)
- 농협중앙회 농촌지원부(02-397-5634)

다. 사업시행



(1) 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

- 농림부는 농업인 정보화교육 예산을 확보하고, 기본계획을 수립
 - 각시도는 농림부의 기본계획에 따라 관할지역의 교육과정별·지역별·시행기관별 교육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도내 교육시행기관별 교육일정 및 교육관리 - 각도 농업기술원 및 각시도 농협지역본부와 협의·결정
 - 보조사업자(농림수산정보센터)는 농림부의 기본계획과 도별 교육시행계획을 참조하여 세부시행계획을 수립·집행
 - 교육시행자는 사업시행계획에 배정된 사업량에 따라 추진일정계획을 수립,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교육관리시스템(edu.affis.net)에 입력
- ※ 농업인 정보화교육 업무절차 및 방법 : [별첨1] 참조

(2) 사업비 지급 및 정산

- 사업시행자에 대한 사업비 지급 및 정산은 보조사업자를 통하여 시행
- 농업정보119서비스 및 이동버스정보화교육은 분기별로 자금을 지급하고, 기초-중급-전문교육은 교육시행 건수별로 사업시행자의 교육결과보고서에 의거 지급

(3) 사업변경

- 각도는 농림부의 기본계획에 따라 배정된 사업량 범위 내에서 시군별·교육기관별 사업량(교육인원)은 지자체장의 책임하에 조정하고, 농림부에 보고
 - 다만, 각도별 당초 사업량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농림부와 협의하여야 함
- 사업시행자의 사정으로 사업기간 내에서 일정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는 농림부장관에게 통보하고 교육관리시스템에 변경사항을 입력

라. 교육대상자 선정기준

- 컴퓨터활용교육 : 컴퓨터 초급자 또는 사용능력 보유 농업인
- 농업정보전문교육 : 컴퓨터 활용능력 보유 농업인
- 방문(119, 이동버스)교육 : 정보화교육을 희망하는 농가 및 농촌마을
- 원격교육 : 정보화교육을 희망하는 농업인

마. 우수기관 및 공로자에 대한 평가실시

- 정보화교육의 활성화 및 효율성을 증대를 위한 우수기관 평가 실시
- 교육계획 대비 실적, 정보화교육 추진 노력 등을 종합 평가하여 우수기관 및 공로자에 대한 포상 추진

< 보조금의 집행절차 >

가. 적용원칙

- 사업시행기관(보조사업자)은 원칙적으로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농림사업실시규정,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농업인정보화교육지원 협약서 등 관계법·규정에 따라 사업자금을 집행관리

나. 사업자금(보조금 개산금) 배정신청 및 지급

- 보조사업자는 사업수행에 따라 개산금이 필요한 경우 신청서, 보조사업실적 등 부속서류를 갖추어 신청
 - 매월 20일까지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농업인정보화교육지원 협약서에 명시된 경우 협약서 우선
- 농림부는 개산금 신청내용의 적정여부를 검토 및 전기 사업실적 및 보조금 집행실적 확인한 후 사업자금 지급 요청
 - 농림부는 한국정보문화센터에 자금 지급 요청시 정부지원금관리계좌 등본을 제출
 - 한국정보문화센터에서는 보조사업자의 계좌(정부지원금관리계좌) 확인후 송금하여 자금 지급

다. 사업자금 집행 및 정산

- 보조사업자는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사업결과보고서 및 사업정산서를 당해년 12. 31일까지 제출
- 농림부에서는 보조사업자의 보조사업 실적보고 내용심사, 법령,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위반 여부 검토, 필요시 현지조사 등을 통하여 정산(안) 검토
- 농림부장관은 익년 1. 31까지 사업전담기관(한국정보문화센터)과 사업정산 확정
- * 이미 교부(송금)한 금액이 정산액을 초과할 경우 반환 지시

< 행정사항 >

가. 보고사항

- 보조사업자(농림수산정보센터)는 월별 사업추진실적 자료([서식1] 참조)를 익월 5일까지 보고
- 교육시행기관은 사업기간(2003.1.1~2003.12.15) 내에 사업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교육관리시스템에 입력 완료

나.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관리

재 산 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비고
전산장비(중형소형서버) 개발용PC(펜티엄Ⅲ이상) 이동교육용차량	구입일로부터 5년 단, 이동교육차량 8년	○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 도에 사용하거나 양도·교 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 로 제공하여서는 안됨 ○ 사후관리 기간 중에는 처 분불가 및 타 용도로 임 의사용금지	○ 내용연수가 경과하여도 사용에 지장이 없는 장비는 계속사용 ○ 내용연수가 경과하지 않 아도 경제적 수리한계가 초 과되었을 경우 불용처분 가 능
S/W(DBMS, 백업S/W, 방화벽S/W, 응용S/W)	구입일로부터 5년	○ 동 사업 이외의 목적으로 임 의사용금지 ○ 불법 복제 사용금지	○ 함께 운용중인 장비 폐기 시 S/W이전 설치 사용가능(사 후관리기간: 이전장비 운용 기간 적용)

다. 기타사항

- 교육시행기관장은 매회 교육실시 후 E-mail 주소 부여 및 설문조사를 실시 하여 교육관리시스템에 입력하고, 원격교육을 안내하여 반복학습 유도
- 교육시행기관은 상위교육과정에 대하여 반드시 안내
- 교육시행기관장은 교육 이수자에게 수료증을 발급(119방문서비스 제외)
- 교육시행기관은 모든 교육시 농산물 통합쇼핑몰, 농산물 출하정보지원 시스템, 농림 지식관리시스템, AFFIS-NET, 농가경영장부 등 농림부 정보화사업을 소개
- 보조사업자 및 전문교육 시행자는 교재작성시 교재표지에 농림부(농업인 정보화교육 주관 사업자)를 교재 표지에 명시
- 농업인 정보화교육 신청 : 인터넷 이용 또는 교육실시기관에 전화 신청
- 인터넷 사이트 <http://edu.affis.net> 참조

[서식1]

2003년도 농업인 정보화교육 실적보고서

[2003 ~ 2003]

월 일기준

교 육 과 정	계 획		실 적				달성도 (B/A)%	비 고
	예산 (천원)	인원(A) (회수)	예산 (천원)	인원				
				수료	진행	계(B)		
기초교육								
중급교육								
전문교육								
119서비스								
이동버스교육								
교육기반조성 및 교육관리								
총 계								

월간업무현황보고서(요약)

[2003 ~ 2003]

보고일 : 2003년 월 일

사 업 명	농업인정보화교육지원	사업책임자	인
사업단계명	교육기반조성 및 교육관리		
실 적			
계 획			
미결업무 및 문제사항			

※ 세부내역은 별첨

월간예산집행보고서

[2003 ~ 2003]

월 일기준

예산내역	예산 승인액	당월계획	집행액		익월계획
			당월	누계	
합 계					
기초교육					
중급교육					
전문교육					
119서비스					
이동버스교육					
교육기반조성 및 교육관리					

※ 항목별 세부집행내역 별첨

월간인력투입현황보고서

[2003 ~ 2003]

보고일 : 2003년 월 일

사 업 명				사업책임자	인	
사업단계명						
개인별 인력투입현황						
성 명	소 속	직 위 (정규,계약,촉탁)	담당업무		근태상황	
			내 용	참여율 (%)	출근 일수	기타 (출장,휴가등)
총투입인력						명
인력변동사항						
변경사유						

[별첨1]

농업인 정보화 교육 업무 절차 및 방법

순서	추진업무	시행기관업무	정보센터 업무
1	정보화교육 기본계획 수립 시달 (농림부)	농업인 교육수요 사전 조사	
2	시행기관별 농업인 정보화 교육계획 수립	시도 교육계획 접수·신청	교재 제작·발송
3	농업인 정보화 교육 실시		
3.1	교육세부일정 수립		
3.1.1	교육관리대상 등록	교육세부 일정 수립 및 입력 교육세부 내용 결정 및 입력	
3.1.2	장소, 강사 확보	강사현황 입력	
3.1.3	교육홍보 및 교육생 모집	교육생 모집	홍보물 제작 및 종합홍보
3.1.4	교육신청	교육신청자 확인	
3.2	교육실시	교육실시, 운영비 집행, 정보화 교육사업 홍보, 사이버 학당 안내 및 교육	관련 자료 요청(사이버학당 사용자 매뉴얼 등)시 제공
3.2.1	교육내용 조정	교육세부내용 조정(교육생의 정보화 능력과 요청에 따라 필요시 조정)	
3.2.2	교육이수 조치	교육생 설문입력(교육생직접), 교육이수생 수수료증 발급 등	
3.3	교육결과보고	교육결과 내부보고	
3.3.1	교육결과보고(전산보고)	이수 확인체크, 행정사항(통장 번호, 강사료·수당 집행현황 등 정산 요청금액 등) 입력	교육완료확인(관리시스템 입력사항 확인, 수수료생 에게 직접 확인)
3.3.2	정산요청	교육완료 공문발송	공문확인(공문내용, 영수증 등), 교육관리 입력 내용 및 수수료생 현장 확인
3.3.3	비용수령	강사료, 수당 등 수령	정산집행결재(내부) 및 비용집행
3.4	교육완료		
4	정보화 교육사업 및 교육생관리		
4.1	농업인 정보화 사업 홍보	정보화 교육사업 홍보	홍보물 제공
4.2	중급·전문교육 홍보 및 참여유도	상위단계 교육 안내	계획서 제공
4.3	농업인 사이버 학당 활용 교육	사이버학당 이용안내 교육 및 홍보 실시	매뉴얼 및 홍보물 제공

③ 농촌PC보내기 지원

※ 이 사업시행지침에 의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정보화담당관실(과장 신종호, 사무관 서규식)입니다.

1. 목 적

○ 2005년까지 「농가 PC보내기 운동」을 전개하여 농가 PC보급율을 50%수준으로 제고

※ 농가PC 보급율 : ('00) 29.8%(40만대) → ('05) 50%(57만대)

(5년간 자연증가(연평균 3.5% 추정시, 14만대 예상)를 제외하고, 농촌PC보내기 운동(25천대), 농협의 PC보급(5천대) 등을 통해 3만대 추가 공급)

2. 시책 및 추진방향

○ 농림부, 지자체(시도·시군), 농협(도지역본부 등)이 연계하여 기관별 역할분담을 통해 「농촌PC보내기 운동」을 본격 전개

- 시·도가 사업을 주관하여 PC보내기 목표를 설정하고, 출향인사 등을 통한 「1지자체 1민간업체 자매결연 맺기 운동」 전개

- 기증PC의 수집·수리·배송은 농협이 담당

※ 농림부는 기본방침 수립 및 홍보 등 지원

○ 농림부·농진청·농협 등 농림관련기관·단체가 사용하고 있는 중고PC를 관련기관을 통해 농가에 보급

3. 근거법령

○ 농업·농촌기본법 제28조(농업 및 농촌지역의 정보화)

○ 정보격차 해소에 관한 법률 제9조(정보통신기기의 지원)

4. 연도별 지원계획(국고)

		2002	2003예산(안)	2004이후
사업량(대)		5,000	4,500	15,500
사업비	계(백만원)	400	405	1,500
	보조	400	405	1,500
	융자	-	-	-
	지방비	-	-	-

5. 2003년도 사업시행요령

《 사업개요 》

가. 사업내용

(1) 배경

-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조한 농촌의 PC보급율을 높이기 위해 지자체, 민간기업이 참여하는 「농촌 PC보내기 운동」 전개
- 정보화 취약계층인 농업인의 정보이용 활성화를 위해 농가PC 보급 확대를 통한 정보접근기회 제공이 우선적으로 필요

(2) 지원대상자

- 농협에서 기증받은 중고PC를 수리하여 보급(농가, 정보화선도자, 교육장 등)

(3) 지원조건 : 대당 9만원 수준(수리비)

(4) 사업시행기관 : 농협(도지역본부)

나. 2003년도 사업비(예산안) 내용

(단위 : 백만원)

내용별	사업량	사 업 비					
		사업비 합계	예 산 액 (농특회계)			지방비	자부담
			계	보 조	용 자		
중고PC수리	4,500대	405	405	405	-	-	-

《 추진체계 》

가. 사업주관기관 : 시·도지사

나. 사업시행기관 : 농협(도지역본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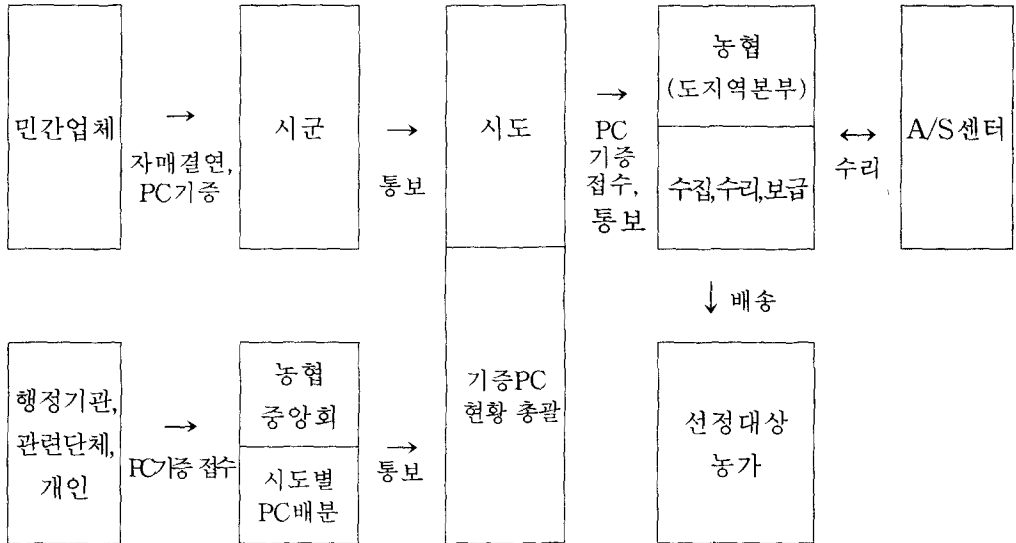
다. 사업담당부서

- 사업지원과 : 농림부 정보화담당관실(02-500-1628~30)
- 시·도 : 농정국 농정(산)과
- 시·군(읍·면) : 농정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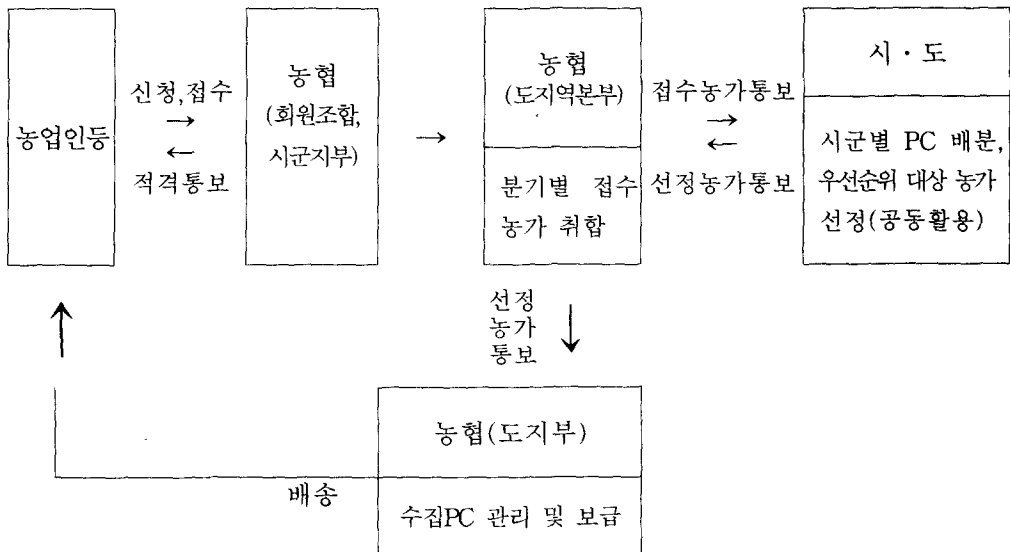
라. 사업시행

(1) 사업추진체계

○ 기증PC 수집 및 수리



○ 농가PC 보급



(2) PC 기증

- 시장·군수는 PC기증업체 발굴 및 자매결연을 맺어 PC기증 협약을 체결한 후 농협중앙회에 통보
 - 자매결연 맺기 행사 및 언론홍보 실시
- 농림관련기관·단체의 중고PC는 인근 농협에 기증
- 농촌PC보내기 인터넷사이트를 통하여 일반인이 PC를 농협중앙회에 기증
 - 인터넷사이트는 농협중앙회의 홈페이지에 코너를 개설·운영

(3) PC의 수집·수리·배송(농협의 도지역본부 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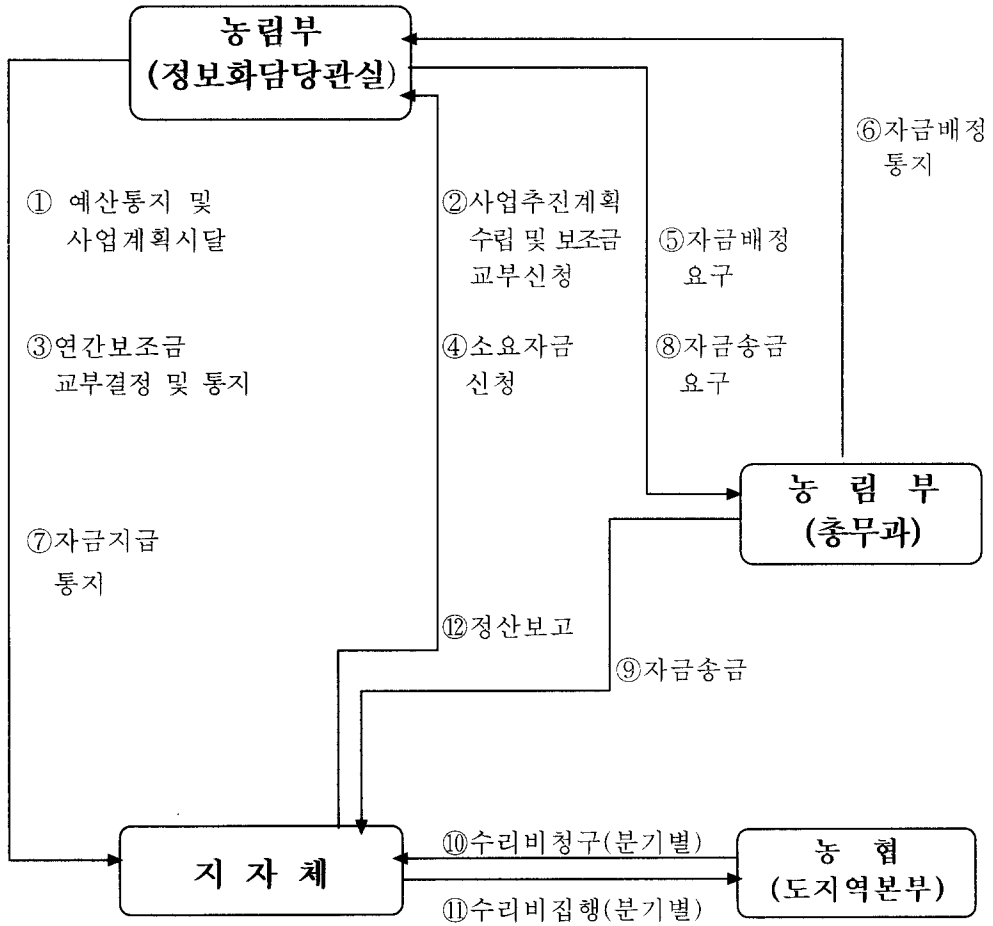
- 기증 접수된 PC는 농협에서 수집 후 A/S센터와 협약을 체결하여 수리
 - 초고속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펜티엄급이상 수준으로 기능향상
 - 기능향상이 어려운 PC는 폐기처분하고, 그 내역을 반기별로 시·도지사에게 제출
 - PC 수리비용은 농협의 청구에 의해 시·도지사가 집행(정산)
- 수리된 PC는 농협을 통해 배송
 - 농가에서는 PC수령증을 작성하여 배송기관(농협)에 제출
 - 농협도지부는 수리되어 배송이 확인된 내역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수리비용을 청구

(4) PC의 보급

- 자매결연이나 보급대상 지역이 지정된 기증PC는 해당 지역에 우선 배분하고, 지역이 지정되지 않은 기증PC는 농협에서 보급대상지역을 적정 배분
- 분기별로 보급대상 농가를 선정
 - 시·도의 「농촌PC보내기 추진위원회」가 농협(도지역본부)에 취합된 신청농가를 선정기준에 의거 평가하여 선정
 - 농가 선정의 기본기준은 농림부에서, 세부선정 기준은 시도에서 설정하여 평가
- 농협(도지역본부)에서는 수리된 PC를 선정농가에 직접 배송

《보조금 집행절차》

가. 절차도



- ① 예산확정 즉시
- ② 사업계획 시달 후 20일 이내
- ⑫ 2003. 12. 20까지

나. 보조금 교부조건

- ① 사업주관기관은 보조금 교부목적 및 보조사업내용과 조건에 따라 보조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함.
- ② 농림부장관은 보조금 교부결정후 사정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보조사업의 내용과 보조조건을 변경하거나 보조금 교부결정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으며, 사업주관기관은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보조사업 내용 및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함.
- ③ 사업주관기관은 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의 승인을 얻은 때 또는 국가의 회계연도가 종료한 때에는 보조사업실적보고서에 보조사업에 소요된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작성 제출하여야 함.
- ④ 농림부장관은 사업주관기관이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보조금 교부 목적과 보조사업내용 또는 조건 및 관계법령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전액 또는 일부를 취소하고, 취소된 부분에 대한 보조금을 국가에 반환하도록 할 수 있음.
- ⑤ 사업주관기관은 보조사업의 수행에 관하여 농림부장관의 명령에 따라야 하며, 농림부장관의 명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이 사업주관기관의 장부, 서류, 기타 재산을 검사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할 때에는 성실히 이에 응하여야 함.

《 행정사항 》

가. 사후관리

- 농촌 PC보내기 운동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농림부와 사업주관기관은 상호협력하여 추진하고, 사업주관기관은 사업시행기관을 관리·감독
- 사업시행기관은 사업변경 등으로 인하여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주관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나. 보고

- 농협중앙회는 사업실적 및 추진현황을 분기별로 농림부에 통보하고, 그 사항을 농촌 PC보내기 홈페이지 사이트에 게시
- 농협(도지역본부)은 사업실적 및 추진현황을 분기별로 시·도에 통보

6. 2003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 안내

가. 기증 및 신청서 제출기관

- PC 기증 : 시·도, 시·군, 농협계통사무소
- PC 신청 : 농협(회원조합, 시·군지부 등)

나. 기증 및 신청자격

- PC 기증 : 사용이 가능한 일정수준(펜티엄급) 이상의 PC를 보유한 개인이나 민간업체, 농림관련기관·단체 등
- PC 신청
 - PC를 보유하지 않은 농가 중 농업인 정보화교육을 1회이상 이수한 농업인
 - 농림부가 주관하는 농업인 정보화교육기관으로 수요에 비해 PC 보유량이 부족한 기관
 - 농업·농촌정보화선도자 선정마을로 주민의 정보화교육을 위해 공동장소에 PC를 설치하고자 하는 읍·면

다. 신청절차

- PC 기증
 - 시·군별 출향인사(민간업체)의 PC 기증 : 해당 시·군과 직접 자매결연 체결
 - 개인 및 농림관련기관·단체 등의 PC 기증 : 농협에 직접 기증
 - 기증기간 : 연중 수시
- PC 신청
 - 신청기관
 - 농업인이 거주하는 인근의 농협에 신청(회원조합 및 시·군지부)
 - 농협중앙회 홈페이지의 “농촌 PC보내기” 사이트
 - 신청기간 : 연중 수시

라. 구비서류

- PC 기증 : PC 기증서(양식 1)
- PC 신청(양식 2, 3, 4, 5)
 - 농가
 - 농가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농지원부, 농협조합원 등)
 - 농가에 보급수준 이상의 PC를 보유하지 않은 확인서
 - 농림부가 주관한 농업인 정보화교육 수료증 사본
 - 농업인 정보화교육기관
 - PC보유 현황
 - 해당기관의 농업인 정보화교육 수요계획과 PC활용 계획서
 - 농업·농촌 정보화선도자 선정 읍·면
 - 읍·면 정보화선도자 위촉장

마. PC보급 농가

- 선정기준
 - 농가 구성원 중 정보화교육을 1회이상 이수한 농업인이 있는 농가
 - 농림부가 주관하는 농업인 정보화교육기관
 - 농업·농촌 정보화선도자가 선정된 읍·면지역

○ 우선순위

- 정보화교육 이수 실적 우수자 : 교육 이수시간 기준
- 정보화선도자, 신지식농업인, 새농민상 수상자 등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정책적으로 육성하는 농업인력
- 시·도에서 실정에 맞는 우선순위 선정기준을 수립 : 농촌 PC보내기 추진위원회에서 결정

○ 선정절차

- 농업인 또는 정보화교육기관 등이 PC신청시 회원조합, 시·군지부 등에서 선정기준에 따라 적격여부를 확인 후 접수
 - 인터넷으로 신청한 농가 또는 정보화교육기관 등은 해당서류 사본을 농협중앙회에 제출 후 농협중앙회에서 적격여부를 확인 후 접수
- 분기별로 농협(도지역본부)에 취합된 농가를 농촌PC보내기 추진위원회에서 선정기준에 따라 농가 선정
 - 해당 기간내에 보급이 안된 농가는 다음기간에 재선정 대상으로 조치

(양식 1)

접수번호 :

PC기증하기 신청서

< 인적사항 >

성명	(조직일 경우 조직 및 대표자성명)		
전화번호		휴대폰	
E-Mail		팩스	
주소			

< 기증내용 >

PC 사양			
기증 수량	PC :	대,	기타 :
기증희망지역		희망기증일	
기타 기재사항			

상기와 같이 PC기증을 신청합니다.

2003년 월 일

기증인 : 인

(양식 2)

접수번호 :

PC기증받기 신청서

[신청구분 : 개인(), 조직()]

< 인적사항 >

성명	(조직일 경우 조직 및 대표자성명)		
주민등록번호	(조직일 경우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휴대폰	
E-Mail		팩스	
주소			

< 신청내용 >

희망수량	PC : 대, 기타 :
희망시기	
용도	

상기와 같이 PC기증 받기를 신청합니다.

2003년 월 일

신청인 : 인

< 자격확인 >

구분	농업인 여부	PC보유여부	교육수료시간	기타자격
자격여부	(○) (×)	(○) (×)	시간	
필요서류	○ 농업인 여부 : 농지원부, 영농확인서 ○ PC보유여부 : PC미보유 확인서(펜티엄급 이상) ○ 교육수료시간 : 정보화교육 수료증 사본 ○ 기타자격 : 정보화선도자 위촉장, 신지식농업인, 수상경력 등			

(양식3)

영 농 확 인 서

(비조합원 농업인용)

성 명 :

주 소 :

주민등록번호 :

전 화 :

상기인은 우리마을에서 영농에 종사하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확 인 자 : ○○○영농회장 (인)

연락전화 :

(양식4)

PC 미보유 확인서

성 명 : (조직일 경우 조직 및 대표자성명)
주 소 :
주민등록번호 : (조직일 경우 사업자등록번호)
전 화 :

상기인(조직)은 우리마을에서 영농에 종사하고 있으나, 펜티엄급 이상의 PC를 보유하고 있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확 인 자 : ○○○영농회장 (인)

연락전화 :

(양식5)

PC 수 령 증

아래 물품을 「농촌지역 PC보내기 운동」과 관련한 기증품으로
수령합니다.

○ 수령내용 :

○ 수령인 인적사항

- 성 명 : (조직일 경우 조직 및 대표자성명)
- 주 소 :
- 주민등록번호 : (조직일 경우 사업자등록번호)
- 전 화(휴대폰) :

2003년 월 일

수 령 인 : (인)

④ 농림수산정보망(Affis.net) 운영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정보화담당관실(과장 신종호, 사무관 이대형)입니다.

1. 목적

- 품목별 종합정보 등 농업전문정보 제공 및 활용을 통한 농업생산성 제고
- Affis.net을 통한 인터넷 접속 서비스 등 정보이용환경 마련으로 도·농간 균형발전 도모
- 교육, 의료 등 농촌생활정보 제공을 통한 농업인의 복지증진

2. 시책 및 추진방향

- 물리적인 한계로 ADSL 등 인터넷을 이용하지 못하는 지역 농업인의 정보통신 접근 및 활용이 용이하도록 농업정보통신환경 조성
 - 인터넷 무료 접속 서비스(ISP) 시스템 운영·관리
 - 농림수산정보망(Affis.net) 자동접속 통신환경 설정 S/W 개발·보급
- 영농에 실질적으로 활용 가능한 농림수산정보의 지속적인 개발·제공
 - 농산물유통정보 등 농업전문정보 취급 전문 IP 발굴·제공
 - 품목별 종합정보 서비스 체제 구축 및 품목 확대 등
- 농촌생활의 복지 향상을 위한 교육·의료·문화 등 생활도움정보 제공
- 농업·농촌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회원증대 및 홍보강화
 - 품목관련조직 등 생산자와 소비자 모임을 통한 사이버 동호회 집중 지원·육성
 - 동호회 서비스 확대를 통한 정보교류의 장을 제공하여 자발적인 참여 유도

3. 근거법령

- 농업·농촌 기본법 제28조(농업 및 농촌지역의 정보화)
- 정보격차해소에관한법률 제8조 3항(농어민을 위한 정보내용물 제공 사업자 지원)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 백만원)

구분		'92-'00년	2001년	2002년	2003년(예산안)	2004~2005
사업량		-	-	-	-	-
사업비	계	2,840	1,850	2,133	2,337	4,600
	보조	2,840	1,850	2,133	2,337	4,600
	융자	2,840	1,850	2,133	2,337	4,600
	지방비	-	-	-	-	-
	자부담	-	-	-	-	-

5. 2003년도 사업시행요령

< 사업개요 >

가. 사업내용

(1) 주요사업내용

- Affis.net의 안정적인 서비스를 위한 시스템 및 통신망 등 자원운영·관리
 - 원활한 정보제공과 시스템 운영을 위한 H/W, S/W 등 전산자원 관리
 - 인터넷 무료접속서비스 실시, 인터넷회선 운영 등 통신망 관리
 - 시스템 성능향상과 안정화를 위한 시스템 보강 및 신기술 도입
 - 영농 및 농촌생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보콘텐츠 개발·제공
 - 품목별 종합정보 제공품목 추가 등 농업전문정보 확충
 - 실생활에 필요한 농촌생활정보를 전문사이트와 제휴 제공 등
 - 농업·농촌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회원증대 및 홍보강화
 - 생산자조직을 중심으로 한 품목 위주의 동호회 육성
 - 농업인 정보화교육생 및 농민단체·생산자조직의 중심으로 회원 확대 및 Affis.net 이용 활성화를 위한 홍보 강화
- ⇒ 수요자 요구 중심의 농업전문 포털사이트 위상 강화

(2) 지원 규모 및 조건

- 사업규모 : 인터넷 서비스, 정보 콘텐츠 개발 등
- 지원형태 : 민간경상보조
- 지원조건 : 국고 100%

(3) 사업비 지원방법

- 사업비는 농림부의 기본사업계획 및 보조사업자의 세부사업계획에 의거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예산규모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나. 2003년도 사업비(예산안) 내용

(단위:백만원)

사업내용	사업량	사 업 비					
		사업비 합계	예 산 액 (재원명 기재)			지방비	자부담
			계	보 조	용 자		
○AFFIS 운영관리 및 콘텐츠 관리· 개발	-	2,337	2,337	2,337	-	-	-

< 추진체계 >

가. 사업주관기관 : (재)한국농림수산정보센터

나. 사업담당부서

- 사업지원과 : 농림부 정보화담당관실(02-500-1631~2)
- 사업실시부서 : (재)한국농림수산정보센터 정보개발팀(031-299-8831)
- 기관별 역할

기 관	주 요 역 할
농 릫 부 (정보화담당관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림수산정보망(affis.net) 운영 기본계획 수립 - 세부사업추진계획 심의·조정 및 사업추진 지도·감독 - 예산확보 및 보조금 교부 결정 및 확정(정산)
보조사업자 (한국농림수산정보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림부 기본계획에 따른 세부사업 추진계획 수립 - 농림수산정보망 운영·관리 및 농업정보 발굴·제공 등 사업추진 - 보조금 예산집행 및 회계처리(정산신청)

다. 사업기간 : 2003. 1. 1 ~ 2003. 12. 31까지(1년)

라. 사업계획 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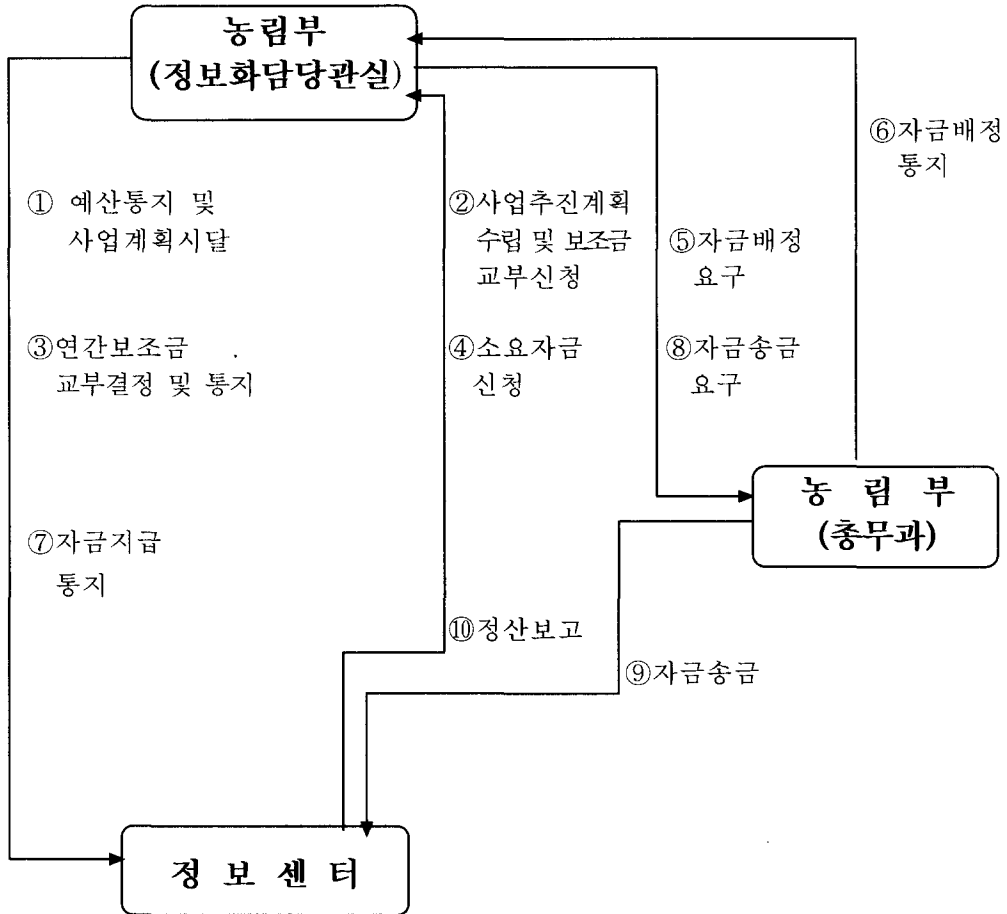
- 보조사업자는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농림부에 사업계획변경을 신청하고 농림부는 사업목적, 변경사유 및 변경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변경 승인

마. 외부용역업체 선정 및 계약체결

- 보조사업자는 전산장비 도입 및 S/W용역개발 등에 있어 민간전문업체와의 계약이 필요할 때는 사업관리지침(붙임자료1) 및 관련법령을 준수하여 사업을 추진

< 보조금 집행절차 >

가. 절차도



① 예산확정 즉시

② 사업계획시달 후 20일 이내

④ 매월 20일까지(문서도착 기준)

* 이미 지급한 보조금의 집행 및 잔액명세, 소요액 산출명세, 기타 사업지원과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서류 첨부

⑤ 매월 25일까지

⑩ 12.20까지

나. 보조금 교부조건

- ① 사업주관기관은 보조금 교부목적 및 보조사업내용과 조건에 따라 보조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함.
- ② 농림부장관은 보조금 교부결정후 사정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보조사업의 내용과 보조조건을 변경하거나 보조금 교부결정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으며, 사업주관기관은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보조사업내용 및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함.
- ③ 사업주관기관은 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의 승인을 얻은 때 또는 국가의 회계연도가 종료한 때에는 보조사업실적보고서에 보조사업에 소요된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작성 제출하여야 함.
- ④ 농림부장관은 사업주관기관이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보조금 교부목적과 보조사업내용 또는 조건 및 관계법령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전액 또는 일부를 취소하고, 취소된 부분에 대한 보조금을 국가에 반환하도록 할 수 있음.
- ⑤ 사업주관기관은 보조금을 반드시 당해 사업비로만 집행하고, 인건비 또는 다른 사업비등으로 유용할 수 없음.
- ⑥ 사업주관기관은 보조금에 대하여 각 사업별로 별도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정리하여야 함.
- ⑦ 사업주관기관은 보조사업의 수행에 관하여 농림부장관의 명령에 따라야 하며, 농림부장관의 명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이 사업주관기관의 장부, 서류, 기타 재산을 검사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할 때에는 성실히 이에 응하여야 함.
- ⑧ 사업주관기관은 보조사업의 수행과정에 관하여 농림부 사업관리지침에 따라야 함.
- ⑨ 사업주관기관은 농업정보통신환경개선(농림수산정보망운영)사업에 투입되는 장비는 동사업 이외의 목적으로 임의로 사용하여서는 안되며 개발된 정보시스템의 확산 등 이용활성화에 최대한 노력을 하여야 함.

< 행정사항 >

가. 사업평가실시

- (1) 시스템 운영에 따른 정보화 효과 검증 등을 위한 사업평가 실시
 - 정보시스템 운영 등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사업목표 달성을 위하여 정보시스템 운영평가 실시(4/4분기)
 - 현지 이용자, 관계 전문가 설문조사 및 면접실시
 - 평가기준
 - 사업목표 달성도를 평가하여 성공요인이나, 장애요인과 개선방안 도출
 - 이용의 편리성, 대민 서비스의 개선도 등
 - 정보시스템의 효율성 평가 : 정보공동활용도, 정보의 정확성 등
- (2) 평가결과 및 도출된 문제점의 개선방안 등을 차년도 사업계획에 반영

나. 사후관리

- (1) 사후관리사항
 - 농림수산정보망(AFFIS.NET)에서 제공되고 있는 콘텐츠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담당자 지정·운영 및 이용현황분석 등을 통하여 개선사항 도출
 - 사업에 투입되는 전산장비(H/W, S/W)는 동 사업 이외의 목적으로 임의로 사용하여서는 안되며, 장비관리 대장(별지 6호 서식), 정보콘텐츠관리대장(별지 7호 서식)에 등록하여 성실히 관리
 - 사업추진결과 취득한 유형적 발생품(응용S/W 등) 관리와 이용활성화에 최대한 노력
 - 정보수요자 중심으로 동호회 및 회원관리와 농림수산정보망(AFFIS.NET) 홍보
 - 신규회원확보 극대화를 위해 고객정보 분석기법 과학화, 직원고정 배치 등으로 고객지원 기능강화
- (2)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관리

재 산 명	사후관리 기 간	처분제한기준	비고
전산장비(중형,소형서버) 통신장비(스위치, 라우터) 부대장비(항온항습기) 개발용PC(펜티엄Ⅲ이상) 백업장비, 프린터 복사기	구입일로부터 5년 단, 복사기, 개발용PC는 4년	○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교환 또는 대여 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여서는 안됨 ○ 사후관리 기간 중에는 처분불가 및 타 용도로 임의사용금지	○ 내용연수가 경과하여도 사용에 지장이 없는 장비는 계속사용 ○ 내용연수가 경과하지 않아도 경제적 수리한계가 초과 되었을 경우 농림부 사전승인 후 불용처분 가능
S/W(DBMS, 백업S/W,방 화벽S/W, 응용S/W)	구입일로부터 5년	○ 동 사업 이외의 목적으로 임의사용 금지 ○ 불법 복제 사용금지	○ 함께 운용중인 장비 폐기 시 S/W이전 설치 사용가능(사후 관리기간: 이전장비 운용기간 적용)

다. 보고사항

- (1) 보조사업자는 사업추진 개발진도 사항에 대해 다음 각 호에 대한 업무보고서를 작성, 농림부에 보고

보고사항	보고주기	보고기한	비 고
실적·계획 등이 포함된 업무보고서	월	익월 10일	별지 1호 서식
시스템 및 통신망 운영보고서	월	익월 10일	별지 4호 서식
사업이 완료되는 단계의 업무보고서	년	12월 20일	
기타 사업보고결과, 주요사안 등	부정기	-	

6. 2004년도 사업신청 안내

가. 신청서 제출기관

- (재)한국농림수산정보센터 → 농림부

나. 신청자격

- (재)한국농림수산정보센터

다. 사업계획 제출절차

- 농림부 기본사업계획 범위내에서 농림사업실시규정에 따라 세부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제출(사업계획 시달후 20일 이내)

7. 2003년도 농림수산정보망(AFFIS.NET) 운영 주요사업 안내

가. 시스템 운영 및 기능개선

(1) 시스템 성능 향상을 위한 장비보강 및 전산자원 관리 강화

- 시스템 사용증가에 따른 서버과부하 해소 및 속도개선을 위한 노후장비 Memory 증설 등 시스템 운영·관리 강화
- 기존장비(S/W포함) 및 무료하자보수 기간 만료에 따른 신규장비(S/W포함) 유지보수 실시
 - 유지보수 대상장비 : 동 사업이외 농림부 위탁사업(출하, 전자상거래, 농업인 홈페이지 등) 관련장비 등

나. 통신망 운영

(1) 아피스 접속 속도 개선

- 통신환경 개선 및 서비스 개선을 통한 접속속도 개선

(2) 포탈 서비스 중심으로 회선 운영

- 인터넷 포탈중심의 웹서비스에 중점

(3) IP 회선 및 인터넷 회선 효율적 운영

- 고속의 T3급 인터넷 회선운영 등 이용률에 따라 회선용량(속도) 조정 운영

(4) 도메인 등록 및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 운영

⇒ 빠르고 편리한 접속 제공 및 24시간 안정적인 Affis.net 운영

다. 콘텐츠 확충 및 관리

(1) 품목 중심의 농업전문 포털사이트 위상 강화

- 품목별정보, 농업관련 소식 등 농업정보 중심으로 메뉴체계 운영
- 품목별 종합정보서비스 제공품목 확대 : 18 → 26 품목
- 농업관련 전문기관·단체·업체 및 전문가 등 정보제공자(IP)를 발굴하여 정보를 주기적으로 수집·가공 제공

(2) 21C 신영농 기술정보 제공

- 21세기 신영농 기술정보(귀농, 친환경농업, 벤처농업) 제공하여 농업인에게 이해도를 높임
- 전문가 그룹과 IP제공 체결·운영

(3) 회원 참여형 콘텐츠 운영

- 회원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콘텐츠(현장리포터, 성공사례, 시사토론) 운영
- 회원들의 다양한 욕구 충족을 통한 커뮤니티 활성화

(4) 농촌 생활 관련 콘텐츠 운영

- 교육(학습, 상담, 상식), 의료(질병, 상담, 상식), 문화(여가생활, 취미/오락, 전통문화) 등으로 분류
- 교육, 의료, 문화 등 일반생활 콘텐츠는 전문서비스업체와 전략적 제휴를 통해 정보를 제공

라. 동영상 서비스 제공·운영

(1) 유통정보 프로그램 제작

- 산지 농업인, 수집상, 중도매인, 유통업체 종사자 등으로부터 가장 필요한 정보로 꼽히고 있는 농산물 가격정보를 다양한 유통정보와 함께 빠른 시간 안에 전달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
- 늦은 밤 또는 새벽에 거래된 농산물 가격 추세와 전망을 서비스

(2) 농업계 소식 프로그램 제작

- 농민단체 농업기관 등과 유대강화를 위해 각종 행사때 현장을 촬영하고 프로그램을 제작해서 서비스 함

(3) 전통문화 프로그램 제작

- 풍물, 전통놀이, 전통공예, 전통무예 등을 동영상으로 제작, 도시민의 농업·농촌에 대한 인식제고

(4) 기획특집 프로그램 제작

- 수입개방 가뭄 병해충 흉수 가격파동 등 우리 농업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안을 심층 보도 ⇒ 농업현안에 대해 기획물 제작

<동영상 서비스 프로그램 편성표>

구분	방송시간	방송주기	주요내용
유통정보	2-3분	주 1회	각종 농산물의 품목별 유통, 가격정보를 속보로 제공
농업뉴스	3-5분	월 2회	농업관련 각종 홍보, 교육자료 및 뉴스 등 제공
Food Biz	3-5분	부정기적	우리 고유의 먹거리에 담긴 맛과 멋을 발굴하여 소개
전통문화	5-10분	월 2회	지역 축제 및 각종 문화행사를 취재하여 우리의 전통과 멋을 소개
기획특집	5-10분	월 1회	농업·농촌 관련 핫이슈를 소재로 심도있는 취재
기타	※농업관련 기관·단체, 타부서 동영상자료 제작 및 컨버팅 등 의뢰건 1. 정보교육과 : 원격교육 동영상 제작 2. 전자상거래팀 : 농가 동영상 제작 3. 농업관련 기관·단체 : 홍보영상, 행사 촬영 등 업무 제휴		

마. 동호회 및 회원관리

(1) 단위목표

- 품목별 종합정보와 연계하여 품목별로 동호회 결성 및 동호회 신규 유치
- 동호회 활동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기존 동호회 및 신규 동호회의 활성화
- 동호회 활성화 및 유치, 관계 기관/단체 등을 집중공략하여 특히 여성회원 확보에 주력하면서 3만명 이상 신규회원 확보('02년 15만명 → '03년 18만명)
- AFFIS 포털 사이트 기능개선 및 품목별 종합정보를 비롯한 콘텐츠 보강, 커뮤니티 기능 강화 및 활동이 미비한 이용자에 대한 관리를 통해 일일 평균 접속건수 30,000건(단일접속자) 유지

(2) 기본방향

- 품목별 종합정보를 제공하게 될 26개 품목 중 10개를 선정하여 전략적으로 우선 유치
- 기본적으로 동호회의 운영·관리는 동호회 자율에 일임하나, 기존 동호회의 활동이 극히 미비한 관계로 동호회 활동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센터에서 적극적으로 유도 및 지원
- 신규회원 확보는 농업인 정보화 교육 수강생 및 농촌여성을 주 타겟으로 선정
- 각종 이벤트 및 홍보 등을 통해 기존 이용자들이 지속적으로 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
- 도·농 연계를 위해 각종 이벤트 등을 통한 도시민 신규회원 적극유치

바. 농림수산정보망 홍보

(1) 목적

- 사이트의 기능 개선, 콘텐츠 내용 개편에 따른 농업전문포털 사이트로서의 새로운 변모를 홍보함으로써 사이트 활성화 및 신규회원 확보
- 활동이 부진한 이용자들의 이용을 제고 및 동호회의 활성화를 위한 홍보 지원
- 아피스를 통해 농업과 도시를 연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농업에 대한 도시민의 관심 및 이해도 촉구

(2) 기본방향

- 농업·농촌정보화 통합홍보계획에 따라 효율적으로 추진
- 농업인 대상의 홍보는 정확한 목표 타겟을 설정으로 사이트의 변화된 기능, 콘텐츠 및 커뮤니티를 강조하는 등의 수단으로 실시
- 정보 수혜자인 농업인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홍보와 도·농 연계를 위한 도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홍보로 나누어 실시
- 도시민 대상의 홍보는 30 ~ 50대의 인터넷 활용이 가능한 사람들을 타겟으로 커뮤니티 및 농산물 전자상거래를 강조하여 농업을 이해하고 우리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홍보
- 가능한 모든 매체를 통한 집중적인 홍보를 실시함으로써 홍보 효과 극대화

사. 사업 추진일정

세 부 사 업 내 용	1	2	3	4	5	6	7	8	9	10	11	12
○ affis.net 운영(농업정보전문포털)	■											
○ 시스템 자원 및 통신망-운영 분석·평가			■			■			■			■
○ 전산장비(Memory 등) 보강		■	■	■								
○ 품목별 종합정보 확대				■	■	■	■	■	■			
○ 사업추진협의회 구성·운영			■			■			■			
○ 농업인·농업관련기관 초청 협의회		■	■				■	■				
○ IP 발굴·계약 및 콘텐츠 운영평가		■					■					
○ 고객지원센터 운영	■											
○ 동호회 및 회원관리, 홍보 등	■											

아. 사업 지원 체계

(1) 사업추진협의회 구성·운영

- '03 농림수산물정보망(Affis.net) 운영사업 중 콘텐츠개발 과제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 정보수요자그룹, 관련전문가 등이 참여한 사업추진단을 구성·운영
 - 특히, 품목 및 기능중심으로 소그룹(이용자협의회)을 구성하여 그룹별 회의 활성화, 자료공유, 상호협력 등으로 효율적인 사업추진
- 구 성

구분	소속
단장	정보센터 시스템지원부장
간사	정보센터 정보개발팀장
관련기관 (담당사무관 등)	농림부, 농촌진흥청, 농촌경제연구원, 농협중앙회 농수산물유통공사 등

- 주요역할
 - 원활한 사업추진 및 정보콘텐츠 제공을 위한 업무협조
 - 콘텐츠 제공 분석단계에 참여하여 제공방향 설정 협조
 - 개발단계 보고회에 참석하여 개발추진상황 점검 및 협의
 - 관련기관, 단체간 정보공유를 위한 법·제도적 개선사항 점검 및 쟁점사항 조율 및 합의도출
- 운영기간 : 2003년 1월~12월
 - 정보서비스 제공 후 평가단으로 활용 등 지속적인 협조체계 구축

(2) 기능별 소그룹 구성

- 구성 : 총 4개반(총괄반, 콘텐츠확보반, 커뮤니티조성반, 시스템연계반)
- 소그룹별 주요역할
 - 총괄반 : 소그룹간 유기적 연계, 조정 및 관련자료 종합
 - 콘텐츠확보반 : 정보제공자 위주의 품목별 정보 분석, 유관기관 자료활용 방안 및 정보수요자 요구 파악, IP협정 체결, 신규자료 생성방안협의 등
 - 커뮤니티조성반 : 품목별 커뮤니티 시범사업 추진 및 동호회 육성
 - 시스템연계반 : 관련기관 등과의 시스템 연계 및 협력방안 논의

[붙임1]

농림수산정보망(Affis.net)운영사업관리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03년도 농림수산정보망(AFFIS) 운영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효율적 관리를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조기관) 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업세부계획 및 운영계획 수립
2. 도입장비 제안요청서 작성
3. 시스템공급자 선정
4. 계약체결
5. 과제진도관리
6. 감리, 검사 및 인수
7. 개발 서비스의 보급확대 및 사후관리
8. 시스템 관리·운영 및 서비스의 제공

제3조(사업운영) ① 보조사업자(사업주관기관)는 효율적인 사업운영을 위하여 사업진도를 전체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개발내용의 충실한 이행여부에 대해 사업추진협의회(소그룹 포함)에게 정기적으로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자문을 받는다.

② 보조사업자는 본 사업의 모든 운영, 관리부문을 책임지고 수행하며 장비공급 등 외부업체가 담당하는 부문이 필요할 경우 사업주관기관으로서의 책임 하에 지도, 감독한다.

③ 보조사업자는 외부개발업체와의 계약체결시 과업내역서를 작성하여 사업내용을 명확히 하고, 사업 추진일정이나 내용과 관련하여 외부업체가 계약서 내용을 충실히 이행치 못한 경우 제재사항을 명시한다.

제4조(외부용역수행사업의 제안요청서작성) ① 보조사업자는 도입장비 제안요청서를 작성하여 농림부에 제출한다.

② 제안요청서에는 도입장비와 관련된 업무설명, 요구기능, 소요장비 내역 및 규격, 제안요청사항, 제안서 접수처 및 제출기한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5조(입찰공고) ① 보조사업자는 외부용역 수행사업에 대해서는 국가를당사자로 하는계약에관한법률등에 따라 입찰공고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에는 과제명, 과제내용, 참여자격, 제안요청설명회 일시 및 장소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6조(평가위원회 구성) ① 보조사업자는 입찰업체의 제안서에 대한 기술평가를 위해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평가위원회 위원은 7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평가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과반수 이상을 외부전문가로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위원회 구성시 농림부 소속의 해당사업분야 전문가 1인을 내부 평가위원으로 참여시켜야 한다.

제7조(예정가격) 보조사업자는 지원예산의 규모, 계약조건, 기타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8조(시스템공급자 선정) ① 보조사업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을 준용하여 시스템공급자를 선정한다.

② 제6조1항의 규정에 의해 기술평가를 하는 때에는 사업담당자, 외부전문가 등이 포함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를 하여야 한다.

제9조(시스템공급자 확정통보) 보조사업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해 선정된 시스템공급자 및 낙찰금액 등을 농림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 (계약의 체결) ① 보조사업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해 시스템공급자가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체결시 보조사업자는 과업내용서, 시스템공급자는 산출내역서를 작성하여 확정하여야 하며, 확정된 과업내용서 및 산출내역서는 계약서의 일부로 포함한다.

제11조(계약의 변경) 보조사업자는 계약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농림부의 사전승인을 얻은 후 시스템공급자와 협의하여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제12조(홍보) 보조사업자는 이용설명서, 홍보물 등을 제작 할 경우 구체적인 홍보계획을 수립하여 농림부의 사전 승인을 얻은 후 제작·배포하여야 한다.

제13조(잔여예산) 보조사업자는 농림부에서 승인한 예산항목에 대해 예산을 적정하게 집행하여야하며, 예산집행 후 잔여예산이 발생할 경우 잔여예산을 사용할 수 없다. 단, 여건변화 등에 따라 사업목적 달성에 필요한 중요사항이 발생할 경우 농림부의 사전승인을 얻은 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잔여예산을 집행 할 수 있다.

제14조(진도관리) 보조사업자는 사업추진 개발진도 사항에 대해 다음 각 호에 대한 업무보고서를 작성, 농림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실적·계획 등이 포함된 월간 업무보고서(별지 1호 서식)
2. 시스템 및 통신망 운영보고서(별지 4호 서식)
3. 사업이 완료되는 단계의 업무보고서
4. 기타 사업보고결과, 주요사안 등

제15조(인력관리) 보조사업자는 월간보고서 제출시 사업운영 및 관리에 투입된 인력에 대한 현황보고서(별지 2호 서식)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예산관리) 보조사업자는 월간보고서 제출시 사업운영 및 관리에 소요된 월간예산집행보고서(별지 3호 서식)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고객지원센터운영관리) 보조사업자는 월간보고서 제출시 고객지원센터 운영 결과보고서(별지 5호 서식)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전산장비관리등) ① 보조사업자는 농림수산정보망(AFFIS.NET) 운영사업에 투입되는 전산장비(H/W, S/W)는 동 사업 이외의 목적으로 임의로 사용하여서는 안되며, 장비관리 대장(별지 6호 서식) 및 정보콘텐츠관리대장(별지 7호 서식)에 등록하여 성실히 관리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자는 기관실정에 맞는 시스템 및 통신망 보안대책 및 운용지침을 수립하여 시스템 관리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19조(유형적발생품관리) 보조사업자는 당해 사업추진결과 취득한 유형적 발생품(응용S/W 등)은 사업 이외의 목적으로 임의로 사용하여서는 안되며, 관리와 이용활성화에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제20조(감리) ① 보조사업자는 시스템의 신뢰성, 안정성, 유효성 등을 제고하기 위하여 외부위탁감리를 실시할 수 있다. 이러한 감리에는 개발완료 후의 사후감리와 착수, 분석, 설계단계 등 개발 중간단계에서의 중간감리를 포함할 수 있다.

② 시스템공급자는 계약상의 개발완료일 14일전까지 전담기관의 장에게 사후감리를 요청하여야 하며, 중간감리는 보조사업자 및 농림부가 실시여부, 시기 및 방법 등을 협의하여 시행한다.

③ 보조사업자는 감리를 종료한 후 감리결과를 농림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보조사업자는 감리비용을 사업비에 계상하여 집행한다.

제21조(검사) ① 보조사업자는 시스템공급자가 계약의 이행을 완료하여 검사요청을 하면 검사요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자는 검사완료후 7일 이내에 자체평가의견서가 포함된 검사결과를 농림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기타규정 준용) 이 요령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 관한법률 및 국고보조금집행요령을 준용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월간업무현황보고서(요약)

[2003 ~ 2003]

보고일 : 2003년 월 일

사 업 명	농림수산정보망(AFFIS) 운영	사업책임자	인
사업단계명			
실 적			
계 획			
미결업무 및 문제사항			

※ 세부내역은 별첨

월간인력투입현황보고서

[2003 ~ 2003]

보고일 : 2003년 월 일

사 업 명	농림수산정보망(AFFIS) 운영	사업책임자	인			
사업단계명						
개인별 인력투입현황						
성 명	소 속	직 위 (정규,계약,축탁)	담당업무		근태상황	
			내 용	참여율 (%)	출근 일수	기타 (출장,휴가등)
총투입인력						명
인력변동사항						
변경사유						

[별지 제3호 서식]

월간예산집행보고서

[2003 ~ 2003]

월 일기준

예산내역	예산 승인액	당월계획	집행액		익월계획
			당월	누계	
합 계					
장비 및 S/W도입비					
통신망운영비					
시스템운영비					
컨텐츠확충비					
사업운영비					
회원관리비					
홍보비					
인건비 등					

※ 항목별 세부내역(실적, 계획)은 별첨

[별지 제4호 서식]

월간시스템 및 통신망 운영보고서

[2003 ~ 2003]

○ 장비별 시스템 월간 부하율

장비명		최고(%)		최저(%)		일평균(%)		상위 10% 범위 유지 일수		용도
IP	Model	CPU	메모리	CPU	메모리	CPU	메모리	CPU	메모리	

○ 콘텐츠별 월간 이용률

콘텐츠명	관리책임자	갱신주기	등록건수	이용건수		
				월간	일평균	전월대비(%)

○ 회선별 월간 이용률

회선명	최고	최저	일평균	상위 10% 범위 유지 일수	비 고

○ 서버, 네트워크장비 등 시스템 주요장애 상황

장비명		고장시간	주요고장원인	비고
IP	Model			

[별지 제5호 서식]

고객지원센터 운영결과 보고서

[2003 ~ 2003]

○ 고객문의 및 애로사항 처리현황

문의유형	문의건수	조치결과			진행 및 조치불가 주요사유
		완료	진행	불가	

※ 문의유형은 고객문의 및 애로사항 등을 유형별로 분류하여 총괄작성

○ 신규가입 및 탈퇴회원 현황

전월말(누계)	당월현황		당월말(누계)
	신규가입	탈퇴회원	

○ 월간회원 이용률

구분	Homepage View	접속자수	회원Login수
월간(건, 명)			
일평균(건, 명)			

○ 접속 다이얼러 배포실적

전월말(누계)	당월배포실적	당월말(누계)

[별지 제6호 서식]

전산장비 관리대장

관 리 번 호		장 비 명	
제 작 회 사		취 득 일 자	
내 용 연 수		취 득 가 액	
주 용 도			
관리책임자		운 용 자	
장비 정비점검기록 사항		장비 주요작업 및 장애사항	
점검일	정비사항	확인	작업일
작업내용 및 장애내용			

※ 서식을 장비별 특성에 맞게 수정 가능

[별지 제7호 서식]

정보콘텐츠 관리대장

구분	콘텐츠명		주요내용	갱신정보			정보제공개시 (년월일)	자료제공유무 (중단운영전환)	중단/전환시		IP	관리책임자	
	대분류	세분류		주기	자료량	형태			사유	일자		정	부
예산 사업													
비예산 사업													

※ 본 서식은 횡으로 변경하여 사용가능

⑤ 출하지원시스템 확충

※ 이 사업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정보화담당관실(과장 신중호, 사무관 조규표)입니다.

1. 목 적

- 농업인에게 농산물 출하시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적기에 제공하여 농업 소득향상 및 유통 효율화 도모

2. 시책 및 추진방향(사업관리지침 [붙임1] 참조)

- 공영도매시장 주거래 품목으로 정보제공 대상품목을 확대
 - 부류별 주요품목을 우선 개발('01)하고, '02년 부터는 품목별 생산 비중을 고려하여 '05년까지 공영도매시장 거래 주요 품목(91개)으로 확대
 - ('00) 5 → ('01) 11 → ('02) 23 → ('03) 44 → ('04) 67 → ('05) 91개 품목
- 정보체계 내실화 및 지속적인 분석정보 확충
 - 품목별 전문가를 발굴하고 인력 Pool에 참여시켜 시황 및 전망정보 제공
 - ('01) 125 → ('02) 150 → ('05) 350명 운영
 - 농산물유통 종합정보시스템 연구결과('01.11) 중 도매시장 등 출하단계와 관련된 정보요구분석, 의사결정 흐름도 분석, 콘텐츠설계안 등 반영
 - 이용자 반응조사 및 사업평가 실시
 - 출하지원시스템 운영 3년간 성과를 정리하고 향후 추진계획 수립
- 안정적인 데이터 수집체계 구축 및 정보분산 매체의 다양화
 - 공영도매시장 경락정보(전자경매, 정산자료) 수집체계의 통합, 농수산물 표준 코드변환 체계의 개선으로 대농민 안정적 서비스 기반 구축
 - 도매시장 가격정보 등에 대한 무선인터넷 정보제공 서비스
 - 제공방법 : 이동전화망사업자(4개)와 콘텐츠 제공협약체결
 - * ('01) 016, 018 → ('02) 011, 016, 017, 018 서비스 중

3. 근거법령

- 농업·농촌 기본법 제28조(농업 및 농촌지역의 정보화)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92-'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예산안)	'04년이후	
사업량	10	11	23	44	91	
사업비	계	600	871	1,036	1,005	2,717
	보조 용자 지방비 자부담	600	871	1,036	1,005	2,717

5. 2003년도 사업시행 요령

<사업개요>

가. 사업내용

- 정보제공 품목의 대폭확대에 따른 정보컨텐츠 확충 및 서비스 지속 개선
 - 정보제공 품목 확대 : ('02) 23 → ('03) 44개 품목(축산, 화훼·과채·과실류)
 - 축산(젓소), 화훼(백합, 국화, 카네이션), 과채(딸기, 메론), 과실(포도, 복숭아, 뽕은감, 꽃감, 자두, 모과, 살구, 참다래, 바나나, 파인애플, 레몬, 오렌지, 자몽, 유자, 석류)
 - 농협, 농경연(관측센터), 농수산물유통공사 등 기관간 연계로 산지, 해외정보를 보완하여 영농단계별로 의사결정시 필요한 정보를 적기 제공
 - 전자경매를 실시하는 도매시장을 중심으로 경매정보 실시간 제공확대
 - ('01) 5 → ('02) 14개 도매시장
- 출하지원시스템 내실운영 및 정보유용성 제고 등
 - 출하지원시스템(H/W, S/W, 분석정보 등) 운영·관리 및 유지보수
 - 매월 정기적인 추진실적 보고를 통해 효율적인 사업운영·관리
 - 전문가 인력풀 지속관리로 고품질의 시황, 전망정보 유지 및 품목확대에 따른 전문가 영입 확대
 - 전망정보 제공자 위주로 전문가 발굴 : ('02) 150 → ('03) 200명
 - 서비스 내용의 지속개선, 교육 및 홍보실시 등 이용활성화 촉진
 - 전국 대형유통업체 판매가격정보 제공확대 : ('02) 10 → ('03) 15개소
 - 사용자 편의위주의 이용환경 및 화면 인터페이스 제공
 - 출하지원시스템 이용자 교육 및 홍보 지속 실시

나. 2003년도 사업비(예산안) 내용

(단위 : 백만원)

내 용 별	사업량	사 업 비					
		합 계	예산액(농특회계)			지방비	자부담
			계	보조	용자		
출하지원시스템 확충	21품목	1,005	1,005	1,005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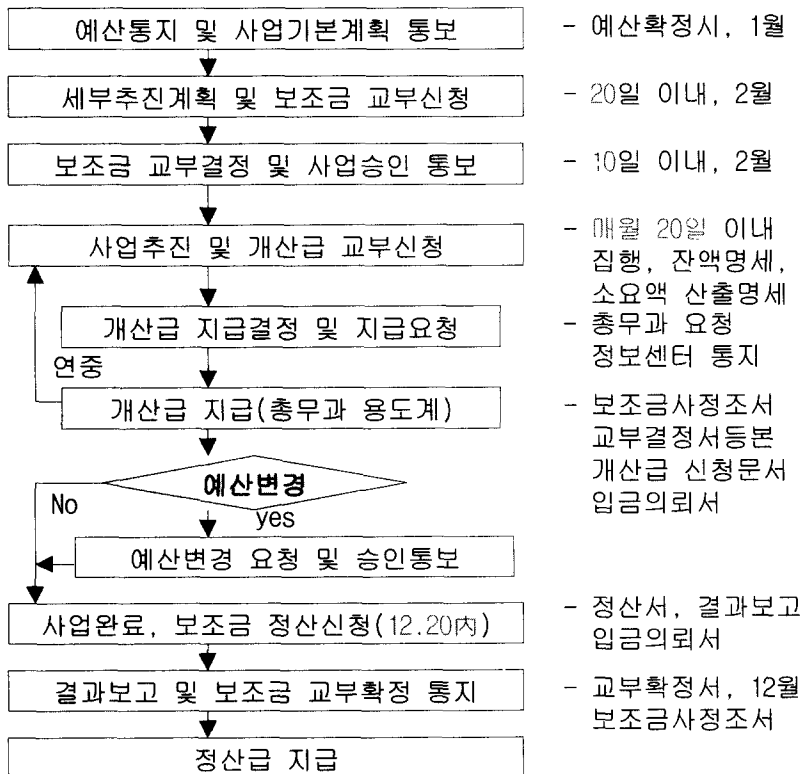
<추진체계>

가. 사업주관기관 : (재)한국농림수산정보센터

나. 사업담당부서

- 사업지원과 : 농림부 정보화담당관실(02-500-1634 ~ 5)
- 사업실시부서 : (재)한국농림수산정보센터 출하지원팀(031-299-8884~6)

다. 사업시행(세부절차)



라. 사업추진협의회 구성·운영

(1) 목적

- 업무분석 및 개발단계에서 농업관계기관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사업추진협의회를 구성·운영하여 의견 수렴

(2) 운영기간 : 2002. 5 ~ 11월

(3) 구성 및 운영

- 농림부 사업국(정보통계, 농산물유통, 축산), 농진청, 농산물품질관리원, 농협중앙회, 농경연 등
- 품목별, 제공정보내용별로 소그룹(채소반, 과수화훼반, 축산반, 전자경매반) 구성

구 분	소 속
단 장	농림부 정보화담당관
간 사	농림부 정보화담당관실 담당사무관
관련기관 (담당사무관 등)	농림부 채소특작과, 과수화훼과, 축산경영과, 축산물유통과, 시장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업정보통계과 농협중앙회 유통정보화팀, 농경연 농업관측센터 (재)한국농림수산물정보센터, 축산물등급판정소

○ 운영

- 원활한 사업추진 및 개발시스템 유용성 제고를 위하여 업무협조
- 사업분석단계에 참여하여 개발방향 설정 협조
- 개발단계의 보고회(월간, 수시)에 참석하여 개발추진상황 점검

(4) 관리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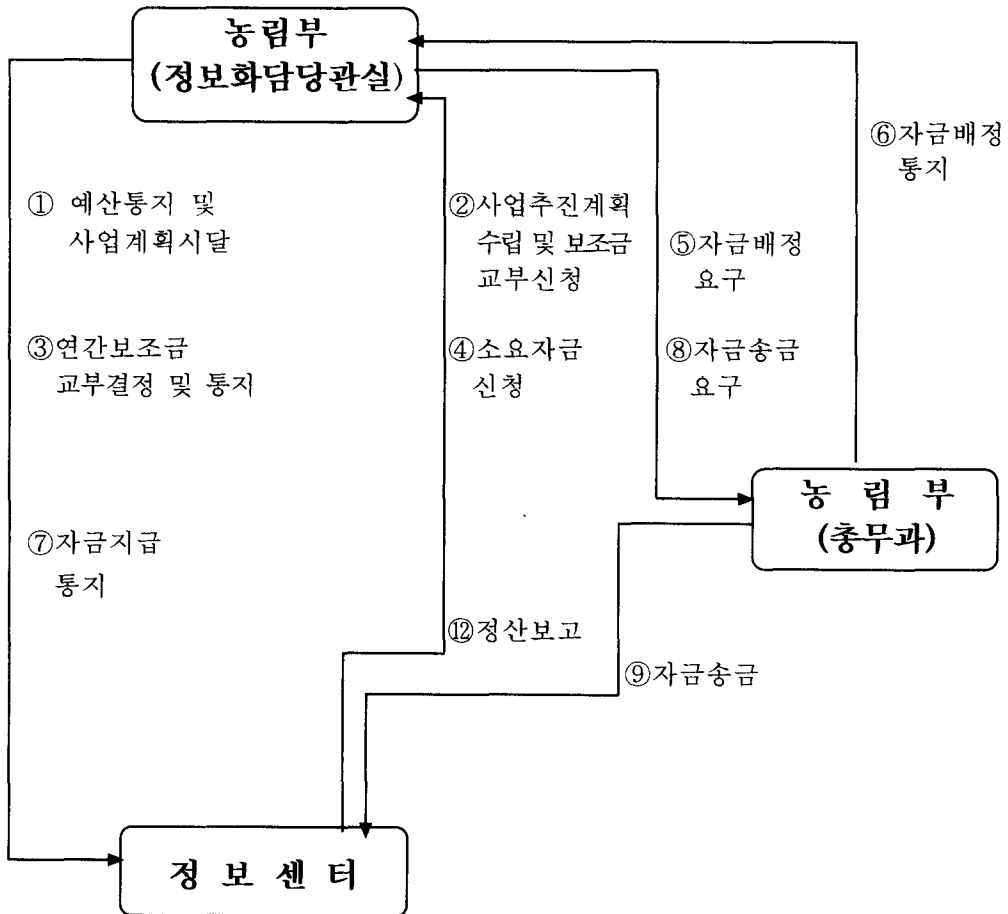
- 정기 및 수시모임을 통한 효율적인 사업 진행
 - 정기(전체), 수시(소그룹)모임 개최
 - ※ 신규확대개발품목(배, 감귤, 닭, 계란)관련 소그룹회의를 먼저 운영하며 전체 정기모임 등은 필요시 개최
- 추진협의회원 및 개발사업자와의 원활한 의견 교환 유도
 - 출하지원시스템 홈페이지에 추진상황게시판 개설
 - 품목별로 상호 의견 게재

(5) 기관별 협조사항

기 관		협조사항
농림부	채소특작과 과수화훼과 축산경영과 축산물유통과	○ 품목별 시스템 분석 및 설계시 추진점검단에 참여하여 개발방향 및 내용정립 지원, 추진상황 점검
	시장과	○ 전자경매 실시 도매시장/법인 경매정보 실시간 제공 지원
농촌진흥청	농업경영관실	○ 개발방향 및 내용정립 지원, 추진상황 점검
농산물 품질관리원	농업정보통계과	○ 통계정보(작물재배면적, 생산량, 재배의향 등) 활용방안 지원
농협중앙회	농업경제기획부	○ 품목별 시스템 분석 및 설계시 추진점검단에 참여하여 개발방향 및 내용정립 지원
	채소부	
	과수화훼부	
	축산유통부	○ 축산물(한우,돼지) 유통정보 활용지원 ○ 공판장정보(산지공판장 포함) 정보활용 지원
	축산물등급 판정소	
	전산정보부	
농촌경제 연구원	농업관측센터	○ 추진점검단(소그룹)에 참여하여 개발방향 및 내용정립 지원 및 추진상황 점검
농수산물 유통공사	유통조사부	○ 유통업체판매정보, 정부비축물량, 화훼공판장정보 활용지원
서울시농 수산물공사	전산정보팀	○ 도매시장/법인 경매정보 실시간 제공 지원
(주)농협 유통	영업지원부	○ 물류센터 판매가격 활용 지원

<보조금 집행절차>

가. 절차도



① 예산확정 즉시

② 사업계획시달 후 20일 이내

④ 매월 20일까지(문서도착 기준)

* 이미 지급한 보조금의 집행 및 잔액명세, 소요액 산출명세, 기타 사업지원과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서류 첨부

⑤ 매월 25일까지

⑩ 12.20까지

나. 보조금 교부조건

- ① 사업주관기관은 보조금 교부목적 및 보조사업내용과 조건에 따라 보조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함.
- ② 농림부장관은 보조금 교부결정후 사정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보조사업의 내용과 보조조건을 변경하거나 보조금 교부결정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으며, 사업주관기관은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보조사업내용 및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함.
- ③ 사업주관기관은 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의 승인을 얻은 때 또는 국가의 회계연도가 종료한 때에는 보조사업실적보고서에 보조사업에 소요된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작성 제출하여야 함.
- ④ 농림부장관은 사업주관기관이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보조금 교부목적과 보조사업내용 또는 조건 및 관계법령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전액 또는 일부를 취소하고, 취소된 부분에 대한 보조금을 국가에 반환하도록 할 수 있음.
- ⑤ 사업주관기관은 보조금을 반드시 당해 사업비로만 집행하고, 인건비 또는 다른 사업비등으로 유용할 수 없음
- ⑥ 사업주관기관은 보조금에 대하여 각 사업별로 별도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정리하여야 함.
- ⑦ 사업주관기관은 보조사업의 수행에 관하여 농림부장관의 명령에 따라야 하며, 농림부장관의 명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이 사업주관기관의 장부, 서류, 기타 재산을 검사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할 때에는 성실히 이에 응하여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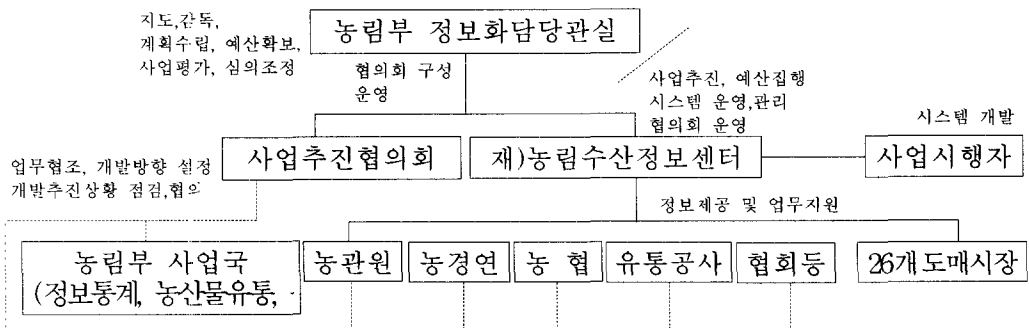
라. 기타사항(이용방법)

- 인터넷(<http://www.chulha.net>) 및 휴대폰(011, 016, 017, 018)으로 접속
 - 휴대폰(무선인터넷) 접속방법
 - 011, 017 : NATE접속⇒⑦뉴스학습⇒⑦쇼핑⇒④추천쇼핑매장⇒⑦전문매장⇒①농산물유통
 - 016, 018 : magic@접속⇒Kmerce증권⇒⑥쇼핑⇒①Kmerce쇼핑⇒⑥전문쇼핑⇒③농산물
- 업무문의 : 농림부 정보화담당관실 최재웅(02-500-1635, chaung@maf.go.kr)

<행정사항>

가. 사후관리

- 농림부 : 사업 지도·감독 및 평가
 - 정기적인 추진상황 보고를 통해 효율적인 사업운영 관리 및 지도, 감독
- (재)한국농림수산물정보센터 : 사업시행, 운영 및 홍보
 - 정보시스템의 운영·관리 수행 및 정기보고
 - 교육·홍보계획 및 전문가 인력풀 관리·평가 실시
 - 이용자 설문조사 및 우수활용 사례 발굴



나.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관리

재 산 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구 분	모델명	수량	부터	까지	
Web서버	HP Lxr8000	1	'99.12	5년간	-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변경, 양도, 교환, 대여, 담보 제공을 할 수 없음 -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보조금의예산및 관리에관한법률」의 관련조항 준용
D/W서버	HP N4000	1	'99.12		
Olap서버	컴팩 8000R	1	'01.06		
	컴팩 8000R	1	'01.12		

[붙임1]

출하지원시스템 사업관리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농산물 출하지원시스템 운영·확대 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효율적 관리를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조기관) 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업계획 및 운영계획 수립
2. 제안요청서 작성
3. 시스템공급자 선정
4. 계약체결
5. 과제진도관리
6. 시스템 감리
7. 검사 및 인수
8. 개발 서비스의 보급확대 및 사후관리
9. 시스템 관리·운영 및 서비스의 제공

제3조(사업운영) ① 보조사업자(사업주관기관)는 효율적인 사업운영을 위하여 사업진도를 전체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개발내용의 충실한 이행여부에 대해 사업추진점검단에게 정기적으로 추진상황보고를 하여 자문을 받는다.

② 보조사업자는 본 사업의 모든 운영, 관리부문을 책임지고 수행하며 외부업체가 담당하는 개발부문 또한 사업주관기관으로서의 책임하에 지도, 감독한다.

③ 외부 개발업체는 본사업의 보조금 교부신청시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사항을 수행하며, 보조사업자는 외부개발업체와의 계약체결시 과업내역서를 작성하여 사업내용을 명확히 하고, 사업 추진일정이나 내용과 관련하여 외부업체가 계약서 내용을 충실히 이행치 못한 경우 제재사항을 명시한다.

제4조(외부용역수행사업의 제안요청서작성) ① 보조사업자는 외부용역수행 사업에 대한 제안요청서를 작성하여 농림부에 제출한다.

② 제안요청서에는 과제와 관련한 업무설명, 요구기능, 소요장비 내역 및 규격, 제안요구사항, 제안서 접수처 및 제출기한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5조(입찰공고) ① 보조사업자는 외부용역 수행사업에 대해서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등에 따라 일간지 등에 입찰공고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에는 과제명, 과제내용, 참여자격, 제안요청 설명회 일시 및 장소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6조(평가위원회 구성) ① 보조사업자는 입찰업체의 제안서에 대한 기술 평가를 위해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평가위원회 위원은 7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평가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5인 이상을 외부전문가로 한다.

제7조(예정가격) 보조사업자는 지원예산의 규모, 계약조건, 기타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8조(시스템공급자 선정) ① 보조사업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을 준용하여 시스템공급자를 선정한다.

② 제6조1항의 규정에 의해 기술평가를 하는 때에는 사업담당자, 외부전문가 등이 포함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를 하여야 한다.

제9조(시스템공급자 확정통보) 보조사업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해 선정된 시스템공급자 및 낙찰금액 등을 농림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 (계약의 체결) ① 보조사업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해 시스템공급자가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체결시 보조사업자는 과업내용서, 시스템공급자는 산출내역서를 작성하여 확정하여야 하며, 확정된 과업내용서 및 산출내역서는 계약서의 일부로 포함한다.

제11조(계약의 변경) 보조사업자는 계약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농림부의 사전승인을 얻은 후 시스템공급자와 협의하여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제12조(교육홍보) 보조사업자는 이용설명서, 홍보물을 제작하되, 홍보물을 제작·배포 시에는 농림부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3조(진도관리) 보조사업자는 사업추진 개발진도 사항에 다음 각호에 대한 업무보고서를 작성, 농림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실적·계획 등이 포함된 별지 1호 서식에 의한 월간 업무보고서
2. 사업단위가 완료되는 단계(설계, 개발, 구현)의 업무보고서
3. 기타 사업보고결과, 주요사안 등

제14조(인력관리) 보조사업자는 월간보고서 제출시 사업운영 및 관리에 투입된 인력에 대한 현황보고서(별지 2호 서식)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감리) ① 보조사업자는 시스템의 신뢰성, 안정성, 유효성 등을 제고하기 위하여 용역개발부문에 대해 외부위탁감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자는 감리를 종료한 후 감리결과를 농림부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검사) ① 보조사업자는 시스템공급자가 감리지적사항 보완 등 계약의 이행을 완료하여 검사요청을 하면 검사요청일로 부터 14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자는 검사완료후 7일 이내에 자체평가의견서가 포함된 검사결과를 농림부에 제출한다.

제17조(시연회등 개최) 보조사업자는 사업 진행중이나 완료된 후 사업추진 협의회의 사업추진상황점검 등을 위한 요구 및 필요시에는 개발된 과제들에 대한 시연회 등을 개최하여야 하며, 시스템 공급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8조(기타규정 준용) 이 요령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국고보조금집행요령을 준용한다.

[서식 1] 월간업무현황보고서

월간업무현황보고서(요약)

[200 ~ 200]

보고일 : 200 년 월 일

사 업 명	농산물 출하지원시스템 운영·확대	사업담당자	인
개발단계명			
실 적			
계 획			
미결업무 및 문제사항			

월간사업운영관리인력투입현황보고서

[200 ~ 200]

보고일 : 200 년 월 일

사 업 명	농산물 출하지원시스템 운영·확대		사업담당자	인
개발단계명	-			
개인별 인력투입현황				
성 명	소 속	직 위 (정규,계약,축탁)	담당업무	
인력변경				
변경사유				

월별사업관리 세부실적

[200 ~ 200]

보고일 : 200 년 월 일

	구 분	내 용	자료량(건수)
- DB관리	공영도매시장경락가격	도매시장별 자료제공일수 및 건수	
	전자경매속보	도매시장별 자료제공일수 및 건수	
	축산물도매시장경락가격	등급판정소별 자료제공일수	
	화훼공판장 가격정보	자료제공일수 및 건수	
	가락시장조사정보	자료제공일수 및 건수	
- 시스템운영	DB 백업현황	백업일자, 백업횟수, 백업종류 등	
	정비현황	시스템 개선관련 작업내용	
	장애현황	장애횟수, 원인, 복구 조치 등	
- 이용자 교육 및 홍보실적		교육내용 및 인원 홍보내용 및 횟수	
- 품목별 전문인력POOL 운영		품목별, 인력별 자료제공건수	
- 기타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친환경농업과(과장 배원길, 농업사무관 박백화)입니다.

1. 목 적

- 농업인들이 영농현장 또는 일상생활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현장애로기술의 개발과 생물, 물리, 화학, 기계, 전자, 생명공학, 환경공학 등을 응용하여 농림업에 적용되는 첨단기술을 개발
- 이미 다른 분야에서 개발된 첨단기술을 농림업 분야에 접목시켜 농림축산물의 생산성과 부가가치를 높여 시장개방화에 대응한 대외경쟁력 제고

2. 시책 및 추진방향

- 농업인들이 영농·영림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실용성 있는 현장애로기술의 개발과 타 산업의 첨단기술을 농림업 분야에 접합시켜 품종개량, 시설자동화, 친환경농업, 가공·유통분야에서 기술도약의 계기를 마련
- 지식농업기반을 확충할 창조적 기술개발과제 발굴 및 개발 지원
- 개발된 기술의 실용화·산업화 촉진
- 과제별로 연구기관, 대학, 농업인(또는 농업인단체), 기업체 등으로 구성된 산·학·관·연 협동연구팀을 구성하여 추진

3. 근거법령

- 농업·농촌기본법 제29조(농업기술개발사업의 추진)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 억원)

구 분	총투자 계 획	투 자 계 획				
		'94~'00	'01	'02	'03예산안	'04
계	4,150	2,695	382	412	421	240
첨 단 기 술 개 발	2,478	1,474	246	269	292	197
현 장 애 로 기 술 개 발	1,472	1,178	101	101	84	8
벤처형 중소기업기술개발	200	43	35	42	45	35

5. 2003년도 사업시행요령

<사업개요>

가. 배 경

- WTO체제 출범과 더불어 농림업도 무한 경쟁시대에 돌입함에 따라 경쟁력 강화가 최우선 과제로 대두됨
- 각국의 기술개발에 대한 역량집중과 국가간 기술이전 규제강화로 우리 농림업의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한 독자적 기술개발이 요구됨
- 21세기 선진농업 실현을 위하여 '94~2004 기간 중 농특세를 재원으로 4,150 억원을 투자

나. 사업의 종류

- 첨단기술개발사업
 - 첨단기술개발과제 : 7대 핵심기술분야 기술개발(첨단농업적합형 품종개발 및 종자처리 기술, 기계화·자동화시스템 개발, 첨단가공·저장·유통기술, 생명공학관련기술, 기능성소재 및 고기능성제품 개발, 환경친화형 기술, 첨단 소프트웨어 개발)
 - 기획연구과제 : 국가차원의 정책목표 달성 및 당면현안문제 해결을 위하여 절실하게 필요한 기술을 대상과제로 선정하여 품목별 일관 기술개발
- 현장애로기술개발사업
 - 현장애로기술개발과제 : 영농현장중심의 기술개발로 영농현장에서 제기된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기술개발
 - 농업인개발과제 : 지역농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술개발로 농업용 기계·자재개발, 지역특화작목에 대한 특수농법 등
- 벤처형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 벤처형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활동을 통한 농림산업의 상품화와 수출농업에 기여할 수 있는 기술개발

다. 지원대상

- 첨단기술개발과제, 기획연구과제, 현장애로기술개발과제
 - 대학, 연구·지도기관, 산업체, 농민(단체)등 산·학·관·연 협동연구팀
- 벤처형 중소기업기술개발과제
 -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 및 중소기업을 창업하고자 하는 자로서 기술개발 능력(연구인력 및 시설 등)을 보유한 기업 또는 창업자
- 농업인개발과제
 - 농업인(시·군 농업기술센터와 협동연구팀 구성)

라. 지원조건

- 연구개발비 : 국고출연
- 기업참여시 연구개발비 부담비율
 - 대기업 : 총 연구개발비의 50%이상
 - 중소기업 : 총 연구개발비의 25%이상

마. 사업별 지원규모

사 업 별	연 구 기 간	연구개발비
○첨단기술개발사업 - 첨단기술개발과제 - 기획연구과제	3년 이내 (필요시 1~2년 추가지원) 5년 이내 (필요시 1~3년 추가지원)	5억 이내 10억 이내
○현장애로기술개발사업 - 현장애로기술개발과제 - 농업인개발과제	3년 이내 2년 이내	2억 이내 3천만원 이내
○벤처형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3년 이내	3억 이내

※ 연구개발비는 정부출연금 기준임

바. 과제신청방법

- 첨단기술개발과제, 기획연구과제, 현장애로기술개발과제, 벤처형 중소기업 기술개발과제
 - 소정의 양식에 의거 연구계획서를 작성, 공모기간 내에 농림기술관리센터에 제출
- 농업인개발과제
 - 소정의 양식에 의거 연구계획서를 작성, 공모기간 내에 시·군 농업기술센터에 제출

사. 2003년도 사업비 : 421억원

- 첨단기술개발사업 : 292억원
- 현장애로기술개발사업 : 84억원
- 벤처형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 45억원

<추진체계>

가. 사업주관기관 : 농림부(농림기술관리센터)

나. 사업담당부서 : 농림부 친환경농업과(02-500-1810~11)

- 농림기술관리센터(관리전문기관)
 - 주소 : 서울특별시 강동구 길동 318 동화빌딩 5층 (우편번호 134-010)
 - 전화 : 02-482-1500 (FAX : 02-478-1173)

다. 과제공모

- 첨단기술개발과제
 - 생명공학관련기술, 자동제어기술 등 첨단기술이 포함된 기술개발
 - 기술개발방식이 타 분야의 첨단기술 등을 응용한 선진화 기술
 - 산업화 및 실용화가 가능한 신기술
 - 특히 산업체 등과의 연계를 통한 구체적인 산업화·실용화 방안과 특허 획득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 기획연구과제
 - 국가차원의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전략적으로 개발할 필요성이 있는 일관기술
 - 과제지정방식(Top-down)에 의하여 정책과제를 공모하고 기술개발 능력이 가장 우수한 연구팀 선정
 - ※ 과제활용담당관은 연구 협의회 참여 등 역할강화를 통한 실용성 제고
- 벤처형 중소기업기술개발과제
 - 농림기술개발사업 목적 및 특성에 부합되는 산업체 기술로서 신규성 및 사업화 가능성이 인정되는 기술, 기술적·경제적 파급효과가 크고 실용성이 높은 기술 등
 - 특히 하이테크기술, 수출산업화가 기대되는 기술, 수입대체 효과가 큰 기술은 우선적으로 지원
- 현장애로기술개발과제
 - 영농·영림현장에서 제기된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기술
 - 농림업의 생산성 향상과 농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기술
 - 지역농업인들이 필요로 하는 비교적 단기간에 해결이 가능한 기술
- 농업인개발과제
 - 농가소득 증대와 지역농업 경쟁력 제고를 기할 수 있는 농업인 실용기술
 - 농업용 기계·자재 개발
 - 지역특화 작목에 대한 특수농법 등
 - 농업인(단체)이 직접 참여하여 개발할 수 있는 실용기술
 - 저비용으로 단기간에 생산성 향상과 직결되는 기술

<행정사항>

가. 사후관리

- 기술개발연구추진 : 주관연구기관(총괄연구책임자)
 - ※ **주관연구기관**이라 함은 선정·지원되는 당해과제의 연구개발사업을 주관하여 수행하는 연구기관으로 당해분야의 연구인력, 시설 등 연구개발수행 능력이 있고 농림부장관이 별도로 정한 기준에 적합한 기관이어야 하며, **총괄책임연구자**는 당해과제의 연구개발사업을 총괄하여 수행하는 연구책임자로 주관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이어야 함.

- 진도관리(매반기별), 연차평가(매년 협약 종료시점) 및 최종평가(개발완료 시점) 등 실시 : 농림기술관리센터, 농업과학기술정책심의회
- 연구수행미진, 연구결과 불량정도에 따라 “과제수행중단”, “협약해약”, “연구비 회수”, “참여제한” 등 제재 조치
- 기술개발성과 보급 및 활용 : 농림부 및 농진청, 산림청, 농림기술관리센터
- 산업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 :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의 소유를 원칙으로 함. 단, 기업이 주관연구기관일 경우 정부출연금 지분에 상당하는 부분을 전문기관의 소유로 할 수 있음

나. 기타사항

- 농림기술개발사업실시요령('02.4.12. 농림부훈령 제1,097호)에 의거 추진
- ※ 이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기술관리센터의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arpc.re.kr>)에서 볼 수 있습니다.

6. 2003년도 사업신청 및 사업대상자선정 안내

가. 신청서 제출기관

- 첨단기술개발과제, 기획연구과제, 벤처형 중소기업기술개발과제, 현장애로 기술개발과제 : 농림기술관리센터
- 농업인개발과제 : 시·군 농업기술센터

나. 신청자격

- 첨단기술개발과제, 기획연구과제, 현장애로기술개발과제
 - 대학, 연구·지도기관, 산업체, 농업인(단체) 등으로 산·학·관·연 협동연구팀을 구성하여 신청
 - ※ 현장애로기술개발과제는 반드시 기업체나 공동연구로 실용화를 제고
- 벤처형 중소기업기술개발과제
 -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 및 중소기업을 창업하고자 하는 자로서 기술개발 능력(연구인력 및 시설 등)을 보유한 기업 또는 창업자
- 농업인개발과제
 - 기술개발에 참여코자 하는 농업인은 해당 시·군 농업기술센터와 협동연구팀을 구성, 연구신청서(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함.
 - 협동연구팀에 참여하는 시·군 농업기술센터는 해당과제의 개발업무를 담당하는 주관연구기관이 됨

<주관연구기관의 자격요건>

- 1) 농업·농촌기본법 제29조에 의한 농업관련 연구기관 또는 단체로서 연구전담
요원 5인 이상을 늘 확보하면서 연구시설을 갖춘 기관
- 2) 국·공립 연구기관 및 지도기관
- 3) 교육법에 의한 대학 및 전문대학
- 4)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고 있는 연구기관
- 5)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하여
설립된 연구기관
- 6) 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 제14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
- 7)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
- 8)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과학기술분야의 비영리법인 연구
기관으로서 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 제14조 제2항에서 정하는 자격 요건을
갖춘 전담요원을 5인이상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관
- 9) 기타 과학기술분야의 연구기관이나 단체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자연계분야의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소지하고 3년이상의
연구경력을 가진 연구전담요원 5인이상(영리법인은 10인)을 늘 확보하면서
독립된 연구시설을 갖춘 연구기관

다. 신청절차

- 과제공모시 『농림기술개발연구과제신청서』를 접수기간 내에 농림기술관리
센터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arpc.re.kr>)에 제출·접수
- ※ 다만, 농업인개발과제는 시·군 농업기술센터에 제출

라. 과제공모기간

- 공고 시기
 - 첨단기술·현장애로기술·벤처형중소기업기술개발과제 : 2002년 11월 중
 - 기획연구과제 : 2002년 11월 중
 - 농업인개발과제 : 2002년 10월 중
- ※ 과제공모 : 관보, 농림부·농림기술관리센터 홈페이지, 신문 등에 공고 또는 게시
농업인개발과제는 농진청 홈페이지, 농림축산업 관련전문지에 게재

○ 접수 기간

- 첨단기술·현장애로기술·벤처형중소기업기술개발과제 : 2003년 1~2월 중
- 기획연구과제 : 2003년 1월 중
- 농업인개발과제 : 2002년 11월 중

마. 구비서류

- 『농업기술개발연구과제신청서』 1부(농업인개발과제는 4부)
- 기업참여시 『농업기술개발사업 참여의사 확인서』 및 참여기업이 중소기업인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 1부
- 농업인(단체)의 참여시 『농업기술개발 참여의사 확인서』 1부

바. 대상자 선정

(1) 선정기준

- 연구개발수행의 필요성 및 시의성
- 연구개발목표의 명확성 및 적정성
- 연구개발목표의 실현 가능성
- 개발대상기술의 신규성, 첨단성, 복합성 및 기반성
- 연구책임자연구팀의 우수성, 연구개발비 규모, 연구기관 및 연구수행방법의 적정성
- 기대되는 기술적, 경제적, 사회적 효과 등이 우수한 과제

(2) 우선순위

- 고부가가치, 수출촉진, 소득증대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과제
- 실용화, 산업화가 가능하여 영농현장에 파급효과가 큰 과제
- ※ 산업체, 농업인(단체), 지도기관 참여과제는 과제 선정·평가지 우대배점 부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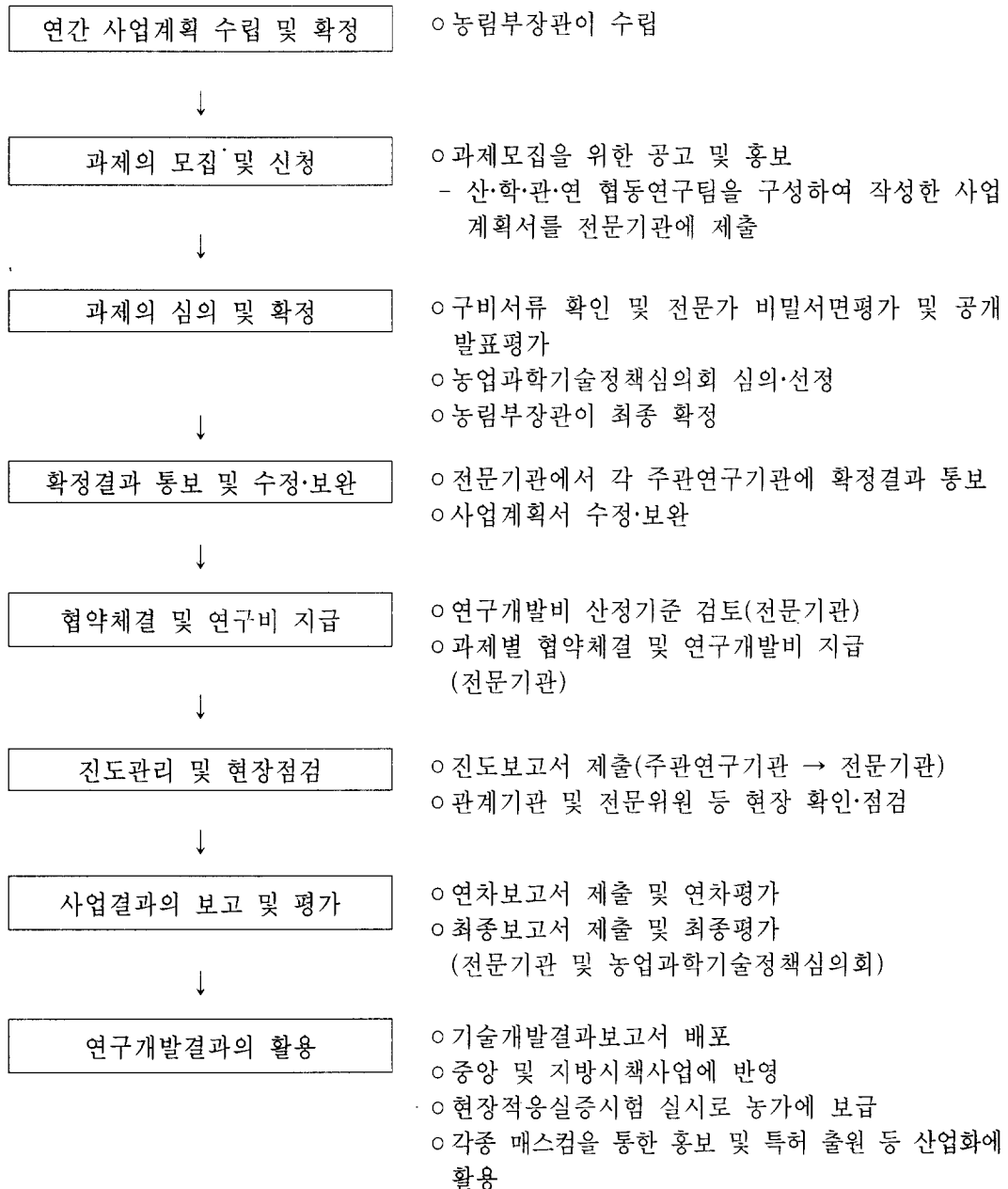
(3) 과제 평가방법 : 4단계 평가

- 1단계 : 실무위원회 사전검토
- 2단계 : 비밀서면평가
- 3단계 : 공개발표평가
- 4단계 : 농업과학기술정책심의회 최종심의

(4) 과제의 심의 및 확정

- 농업과학기술정책심의회 심의·선정
- 농림부장관 최종확정

(5) 사업추진체계



① 농업인건강관리시설치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촌진흥청 생활개선과(과장 김화님
지도관 신영숙, 지도사 심미옥)입니다.

1. 목 적

- 과중한 노동부담과 열악한 농작업 환경으로 인한 농업인의 농작업 피로의 조기회복과 건강 증진으로 활력 있는 농촌마을을 조성하고자 함.

2. 시책 및 추진방향

- 농작업으로 인한 피로회복 환경 조성으로 농업인 건강생활 실천의 장으로 활용
- 객관적 기준에 의한 대상마을 선정으로 사업효율성 증대
- 신축보다 기존 건물의 내부시설 보수 및 효율적 건강기구 구비 중심 추진
- 사업마을의 시설 및 기구의 활용 관리 책임 강화
- 농업인의 건강관리와 관련된 유관기관과의 유기적 협력 강화

3. 근거법령 : 농촌진흥법 13조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96-'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예산안)	2004이후
사업량		개소 404	80	120	140	681
사업비	계	백만원 17,770	4,000	6,000	7,000	34,050
	보 조	8,885	2,000	3,000	3,500	17,025
	지방비	8,885	2,000	3,000	3,500	17,025

5. 2003년도 사업시행 요령

< 사업개요 >

가. 사업내용

(1) 배경

- 과중한 농작업과 열악한 작업환경으로 비닐하우스증 및 농부증 심화
- 농작업 피로를 풀 수 있는 마을단위 피로회복 시설이 필요함
- 농업인의 피로회복과 건강관리에 대한 인식 및 관리능력 부족

(2) 사업기간 : 2003년 1월 ~ 12월

(3) 지원대상 및 조건 : 농촌마을

○ 기본 조건(아래 3가지 요건 충족시 신청가능)

- 반경 3km이내에 피로회복 시설(헬스센터, 찜질방, 목욕탕 등)이 없는 마을
- 운영비 자부담 능력이 있는 마을
 - 최소한의 기준 : 운영비로 활용할 수 있는 마을기금 1,000만원(연 200만원 ×5년) 또는 마을주민들이 월 20만원정도를 5년간 회비로 납부한다는 동의 (예: 5,000원×40가구 등) 또는 이에 상응하는 기타 확보방법이 있어야 함
 - 마을기금 통장잔액 증명서, 마을기금 운영비 지원 동의서, 마을주민 회비 부담 동의서(총회 회의록 사본)등 해당되는 증명자료 첨부
- 적정 규모의 마을 공동명의 대지나 건물이 있는 마을
 - 전체적으로 토지는 마을 공동명의이고 전용절차 없이 건축이 가능한 대지 (또는 잡종지)이어야 하며 개축 또는 증개축 대상 건물도 활용에 문제가 없어야 함
 -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건축물대장, 지적도, 등기부등본 등 지역 여건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확인

○ 선정우선순위

- 기존 건물을 활용하는 마을
- 운영비 절감 시설을 설치할 마을
- 농작업환경이 열악한 마을(농가비율, 하우스·밭작물·특작·과수 등의 호당면적 등)

- 활용가능한 농가인구수가 많은 마을
- 마을주민의 건강관리실 설치에 대한 동의 비율이 높은 마을
- 마을주민 누구나 사용하기 쉬운 중앙부에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마을
- 최근 3년 이내 복지시설(회관, 경로당 등)을 지원 받지 않은 마을
- 마을주민의 연령분포가 적절한 마을
- 보수를 지급하는 전담 관리인을 배치할 마을

※ 사후운영관리 책임소재, 운영비 확보 계획이 분명할 경우 면 단위 또는 인근 몇 마을 공동으로 광역단위 사업 추진 가능. 노인회관, 복지회관 등의 사업과 연계 추진 가능

(4) 지원단가 : 개소당 50백만원(국비 50%, 지방비 50%)

(5) 지원시설

- 피로회복시설 : 기본시설을 중심으로 지역실정에 맞는 시설 구비
 - 기본시설 : 건강기구실, 목욕실 또는 샤워실
 - 권장시설 : 심야전기, 찜질방, 옥외쉼터, 조리실, 식품가공실, 게이트볼장, 노인실, 태양열온수기, 친환경화장실, 건강정보실(컴퓨터, 비디오, 도서) 등
- 피로회복 및 건강관리 기구 : 권장기구를 중심으로 마을민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여 선정
 - 피로회복 : 벨트맞사지기, 안마의자, 발맞사지기
 - 운동치료 및 체력단련 : 런닝머신, 헬스자전거, 트위스트기, 아령
 - 물리치료 : 온열치료기, 원적외선치료기, 찜질기(찜질매트), 어깨회전운동기
 - 건강측정 : 전자체중계, 자동혈압측정계

나. 2003년도 사업비(예산안) 내용

구 분	사업량	사 업 비					
		사업비 합 계	예산액(농특회계)			지방비	자부담
			계	보조	융자		
계	개소 140	백만원 7,000	3,500	3,500	-	3,500	-

< 추진체계 >

가. 사업주관기관 : 시군 농업기술센터

나. 사업 담당부서

- 농촌진흥청 : 기술지원국 생활개선과(031 - 299 - 2680)
- 도 : 농업기술원 생활개선(기술)과·팀
- 시군 자치구 : 농업기술센터 생활개선(기술)팀·담당

다. 사업시행

- 사업시행계획 작성
 - 본 지침과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도 및 시군단위 사업추진계획 수립
 - 마을단위에서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사전교육 및 마을 주민의 의견수렴, 관련전문가 검토 과정을 거쳐 사업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에게 제출
- 사업대상지역의 변경
 - 사업대상지역이 사업을 포기하거나 시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여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는 시도 및 농촌진흥청의 승인을 거쳐 변경
- 사업추진
 - 세부 사업 추진지침은 2003년도 농촌지도사업기본지침에 제시
- 사업비 집행방법
 -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보조금 지급 규정에 의해 마을대표에게 지원
 -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예산집행상황 등 사업추진상황을 지도 점검
- 추진일정

세부내용	추진시기											
	1월	2	3	4	5	6	7	8	9	10	11	12
○ 추진위원회 구성												
○ 사전 교육 및 계획수립												
○ 사업 추진												
○ 사업 평가												

< 행정사항 >

가. 사후관리

○ 농업기술센터 기술지도

-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사업착수 연도부터 3년간 기술지도 실시

○ 마을 운영관리위원회 사후관리

- 사후관리기간

- 보조금으로 취득한 주요한 시설을 준공일로부터 5년간 사후관리하며 사후관리기간 중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할 때는 시군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승인을 받아 처리

- 운영관리위원회 구성 및 위원 교체시 처리

- 운영관리위원회는 마을이장, 부녀회장, 개발위원 등 마을의 주요인사를 당연직으로 포함하여 구성함
- 사후관리기간중 운영관리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의 교체시에는 차기 선출자에게 운영관리책임이 위임되며 위원장이 교체될 경우에는 인수 인계서를 작성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에게 제출함

- 의무 범위

- 설치 후 모든 시설 및 기구의 운영관리 책임은 전적으로 마을 운영관리 위원회에 있음

- 운영규약 및 위원현황 제출

- 설치 완료 후 운영위원회에서는 운영관리규약 및 운영관리위원 현황을 작성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에게 제출함

- 관리책임자 지정

- 시설 및 기구의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하되 가능한 일정액의 보수를 지급하는 전담관리인을 고용하여 시설과 기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도모함

- 운영관리에 필요한 제비용 확보

- 시설의 운영비, 무상수리기간 이후의 시설 및 기구의 수리비, 교체소모품비 등 운영관리에 필요한 제비용은 마을 자체적으로 확보함. 단, 지방여건에 따라 지방비 확보 지원이 가능한 경우는 지원을 권장함

- 교육, 건강검진, 운동프로그램 실시
 - 건강기구 구입업체 또는 전문가 등을 초빙하여 활용가능한 전 마을주민을 대상으로 기구활용법을 반복 교육하여 기구고장과 활용상의 위험 방지
 - 보건소, 병원, 생활체육협의회 등의 협력을 유치하여 건강검진이나 건강 교육, 운동프로그램 등을 실시함
- 시설 및 기구 고장시 처리
 - 즉각 수리하여 활용함. 단 즉각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타당한 사유와 처리 계획을 농업기술센터소장에게 제출함. 기구 중 수리가 불가하여 폐기 처분하여야 할 경우 고장수리 의견서 및 사진 등의 증거서류를 보관함
- 운영현황 제출
 - 설치 후 2년차, 3년차에는 연간운영현황을 농업기술센터소장에게 제출
- 시도 및 시군에서는 사업계획에 의한 지원금의 타용도 사용을 금지하고 전·유용 등 타용도로 이용된 경우에는 지원자금을 회수하고 금후사업대상에서 제외

나. 보고·기타 : 2003년 농촌지도사업기본지침 참조

6. 2004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 안내

가. 신청서 제출기관 : 시군 농업기술센터

나. 신청자격 : 2003년 지원대상 및 조건과 동일함

다. 신청절차

- 사업 희망마을에서는 마을 총 가구의 과반수 이상이 참석한 마을총회를 열고 마을의 운영비 부담, 사후관리 의무 등에 대하여 충분히 고지하고 사업유치 동의를 얻은 후 사업신청서(사업계획서 포함)를 시군 농업기술센터소장에게 제출하여 신청함(2003년 7월 31일까지)

라. 구비서류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 시군 농업기술센터에 비치

마. 지원대상자 선정절차

○ 농촌진흥청

- 2004년 잠정예산안, 시도별 읍면수, 기투입 사업량, 2004년 신청량 등을 기준으로 시도별 추천마을 수 배정(2003년 8월경)
- 시도별 추천마을을 검토·조정하여 대상마을 확정(2003년 10월경)

○ 도 농업기술원(특별광역시 농업기술센터)

- 시군별 읍면수, 기투입 사업량, 2004년 신청량 등을 기준으로 시군별 추천마을 수를 배정(2003년 8월경)
- 시군 제출자료, 현지조사 등을 통하여 객관적 심사표에 의거 시군 추천마을을 심사하고 우선순위를 부여한 후 농촌진흥청에 추천(2003년 9~10월경)

○ 시군 농업기술센터

- 시군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신청한 마을을 선정기준에 따라 적합성 여부를 현지조사하여 확인하고 배정된 추천마을 수에 해당하는 마을현황자료를 시도에 제출(2003년 8~9월경)

바. 기타사항

- 기본사업방향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청자가 필요로 하는 내용을 신청할 수 있음.

② 지역특화시범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촌진흥청 원예축산과(과장 박용균, 지도관 정길영)입니다

1. 목 적

- 시험연구결과 정립된 새 기술의 실용화 촉진으로 농가소득 향상
- 생력고품질 생산기술과 협업경영 능력 향상으로 기술집약형 선진농업기술 조기 정착 도모

2. 시책 및 추진방향

- 새로 개발된 기술의 종합적인 투입으로 품질 향상과 생산성 증대
- 작목입식 후 생산, 가공, 판매 등을 충분히 반영한 계획 수립 추진
- 에너지절약 및 부존자원 활용 사업 추진과 기존시설을 보완하는 시범사업 추진 확대
- 협업경영, 생산시설의 현대화 및 기계화를 통한 생산비 절감
- 특산물 생산 규모 확대 및 대외 경쟁력 확보를 위한 수출농업 육성
- 시범사업장을 농업인 산 교육장으로 활용

3. 근거법령 : 농촌진흥법 제2조 및 제13조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 개소, 백만원)

구 분	'00이전	2001	2002	2003 (예산안)	2004이후	
사 업 량	3,636	396	365	348	1,255	
사 업 비	계	269,034	36,191	35,232	35,041	274,978
	보 조	50,069	7,988	10,890	11,566	118,594
	용 자	113,092	13,877	11,018	10,370	80,713
	지방비	49,667	7,388	7,815	7,920	38,734
자부담	56,206	6,938	5,509	5,185	36,937	

※ 특화작목육성촉진시범사업 포함

5. 2003년도 사업시행요령

<사업개요>

가. 사업내용

- (1) 배 경 : '89년부터 UR대응책으로 사업 시작
- (2) 지원대상자 : 해당 사업별로 재배(사육) 경험이 있는 농업인 또는 생산자 단체
- (3) 지원규모 및 지원내용

시범사업명	개 소 당		지 원 내 용
	규 모	사업비	
○ 기술개발 소득사업		백만원	
- 시설원예 에너지절감 환경관리	기존 하우스40a이상	30	환기, 자동경보, 무인방제, 점적관비, 지중난방, 자동변온관리 시설 등
- 사과 저수고밀식과원 조성	1ha이상	50	과원토양개량, 측지묘, 지주설치, 자동관수시설 등
- 화훼 벤처농업 육성	-	100	벤처농업에 필요한 장비·시설, 자동꽃다발 가공 결속기, 부대장비 등
- 신제품버섯류 안정생산	재배사 165m ² 2동	40	신품종 우량종균, 자동관수·가습·송풍장치 등
- 느타리버섯 환경개선	시설개선 165m ³ 3동	40	균상, 단열시설, 환경조절 기자재 등
- 수출규격돈 수송체계 개선	출하두수 10천두이상	50	비육돈 수송차량 개조, 상·하차대 등
○ 지역특성화기술개발	-	-	사업내용에 따라 재배 및 사육시설 지원
○ 지역소득작목개발	-	-	지역소득작목 개발 지원을 위한 사업비

(4) 지원조건

- 지원비율 : 보조 40%(국비 20, 지방비 20), 융자 40, 자부담 20
- 융자조건 : 연리 5.0%, 3년거치 7년 균분상환

나. 2003년도 사업비(예산안) 내용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					
		사업비 합 계	예산액(농특회계)			지방비	자부담
			계	보 조	용 자		
계	개소 348	백만원 35,041	21,936	11,566	10,370	7,920	5,185
○ 시설원예 에너지절감 환경관리	60	1,823	1,093.8	364.6	729.2	364.6	364.6
○ 사과 저수고밀식과원 조성	28	1,400	840	280	560	280	280
○ 화훼 벤처농업 육성	10	1,000	600	200	400	200	200
○ 신품종버섯류 안정생산	30	1,200	720	240	480	240	240
○ 느타리버섯 환경개선	40	1,600	960	320	640	320	320
○ 수출규격돈 수송체계 개선	20	1,000	600	200	400	200	200
○ 지역특성화기술개발	110	17,902	10,741.2	3,580.4	7,160.8	3,580.4	3,580.4
○ 지역소득작목개발	50	9,116	6,381	6,381	-	2,735	-

※ 융자조건 : 연리 5.0%, 3년거치 7년 균분상환

<추진체계>

가. 사업주관기관 : 시군농업기술센터

나. 사업담당부서

- 농촌진흥청 : 기술지원국 원예축산·식량작물·생활개선·지도기획과
(031-299-2730, 2700, 2670, 2650)
- 도 : 농업기술원 관련사업 담당부서
- 시군자치구 :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부서

다. 대상자 선정

○ 선정기준 및 우선순위

- 수출농산물 주산지역과 연계하여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지역
- 지역농업개발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 기술과급 효과가 기대되는 지역(민원발생 가능성 사전조사 철저)
- 한국농업전문학교 졸업자로서 영농에 종사하며 사업의욕이 왕성한 자
- 시범사업 참여 의지가 강한 농업인 선정
- 자부담 능력과 융자금 담보능력, 신용도 등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선정
- 행정기관에서 지원하는 유사 보조(융자)사업과 중복되는 농업인 제외

○ 선정절차

- 농업인(생산자 단체)이 신청한 사업에 대하여 영농규모, 사업추진의욕 등 제반여건을 감안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현지조사하고 농업산학협동심의회를 거쳐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선정
-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시범사업 선정상황을 농업기술원장에게 보고하고, 농업기술원장은 타당성 검토 후 농촌진흥청장에게 보고

라. 사업시행

○ 사업계획 수립 및 변경

- 시·군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사업내용에 따라 지역농업종합개발 차원에서 유관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사업지구 참여농업인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된 세부사업 계획을 수립 추진
- 인·허가와 관련된 사업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관련부서와 사전협의 및 협조를 받아 추진
- 사업추진을 위하여 작물재배(사육), 시설물 건축, 생산자재 구입, 생산가공, 판매, 이익금 분배, 운영 등에 관한 세부계획 수립
- 3인이상 참여하는 시범사업은 협의회 구성 운영
- 시범농가 변경, 사업포기 등이 있을 때는 농업기술원장(특·광역시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승인 후 농촌진흥청장에게 보고
- 사업명, 사업계획 전체를 변경할 때는 농촌진흥청장의 승인후 사업추진

- 시범농가 교육
 - 사업별 시범농가가 선정된 후에는 도 또는 시군단위 사전교육 실시
 - 사업추진 요령, 사업비 집행방법, 관련기술 등 교육
- 대상사업에 대한 경제성, 기술의 타당성 등 검토
 - 사업별 시범농가 및 생산자조직체와의 수시 협의회를 개최하여 시범 사업을 평가
 - 중앙 및 지방단위 기술지원단 운영
- 사업비 지원방법
 - 사업비는 사업추진 진도에 따라 지급
 - 자부담금 우선 집행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규정 제4조)
 - 시·군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예산집행상황 등 사업추진 상황을 지도 점검
 - ※ 기타 보조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보조금 교부조건, 융자금 취급기관의 여신관리 관계 제규정 등에서 정하는 바를 준수함

< 행정사항 >

가. 사후관리

- 시·군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사업착수 연도부터 3년간 기술지도하여 연차별, 사업별로 구분하여 사업 추진상황을 도 농업기술원장에게 보고 하고, 이후부터는 농업기술센터소장 책임하에 사후 기술지도 실시
- 보조사업자는 보조목적 및 보조 사업내용에 따라 성실히 사업을 수행 하여야 하며 지원 받은 시설을 처분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 도 농업기술원장은 시·군별 사업추진 결과를 평가하여 업무추진에 활용
- 시·군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사업단계별로 사진첩을 비치하여 홍보 자료로 활용하고 우수사례 확산
- 기타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규정하는 바를 준수하여야 함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사 업 명	재 산 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 기 준
		부 터	까 지	
0 시설원예에너지절약 환경관리	0 상, 하이동식 수평커튼	사업추진연도	사업시작후3년	사후관리기간 내 처분금지
	0 지중난방시설	"	3년	
0 사과저수고밀식과원	0 자동관수시설	"	3년	
	0 지주시설	"	5년	
0 화훼벤처농업 육성	0 결속기 등	"	3년	
	0 저온차량	"	3년	
0 신제품 버섯류 안전생산	0 버섯재배사	"	5년	
	0 균상시설	"	3년	
	0 각종기자재	"	3년	
0 느타리버섯 환경개선	0 버섯재배사	"	5년	
	0 생력균상시설	"	3년	
	0 환경자동기자재	"	3년	
0 수출규격돈 품질향상	0 수송용차량	"	5년	
	0 상·하차시설	"	5년	

- ※ 시설 및 중요 장비중 상기에 명시된 재산은 사후관리 기간내에 처분을 금지하되 부득이한 사유로 처분할 경우 지방자치 단체장의 승인을 받아 처분
- ※ 단 사업비로 취득한 재산중 명시되지 않은 시설 및 장비 등의 재산은 3년 이후 지방자치 단체장이 지역특성을 감안하여 별도 기준을 정하여 관리

나. 보 고

- 대상농가 선정결과 보고 : 3월말
- 사업추진 결과 보고 : 11월말

6. 2004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 안내

가. 신청서 제출기관 : 시군 농업기술센터

나. 신청자격

- 작물별 주산지역 및 가축 집단사육 지역으로 파급효과가 높은 지역
- 시범요인 수용의지가 높고 사업수행에 충분한 영농규모를 갖춘 농업인
- 자부담 및 융자금 담보능력 등 시범사업 수행능력이 있는 농업인

다. 신청절차

- 시범사업 희망 농업인은 사업신청서(사업계획서 포함)를 작성하여 관할 시군 농업기술센터 소장에게 신청
 - 구비서류 : 농림사업실시규정 제28조 준용 또는 시군농업기술센터 비치서식
- 시군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업인의 사업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해당 농가의 사업의욕, 영농규모, 신용조사 등 사업수행 능력을 검토하여도 농업기술원에 사업예산 신청
- 도 농업기술원에서는 시군농업기술센터의 사업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소관 절차를 거쳐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

라. 지원대상자 선정

- 정부예산이 확정된 후 시도별로 예산배정계획이 시달되면 시도에서는 시군별 예산배정계획을 확정 통지
- 세부 사업추진은 2004년도 농촌지도사업 기본지침에 의거 추진

① 새기술보급시범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촌진흥청 지원기획(과장 윤병두, 지도관 박홍규), 식량작물과(과장 곽창길, 지도관 박종욱), 생활개선과(과장 김화남, 지도관 박영자), 원예축산과(과장 박용균, 지도관 조병철)입니다.

1. 목 적

- 새로운 기술·품종·기계 등을 농업인에게 신속하게 보급
- 식량작물의 안정생산과 소득작목의 주년생산으로 국민생활의 안전을 도모
- 농약, 화학비료 등 시용량 절감 기술보급을 통한 환경농업 실천과 가축 분뇨 정화 개선을 통한 환경오염 방지
- 농업·농촌의 자원을 활용한 새로운 소득원 개발 및 농작업 환경개선으로 농촌생활의 질 향상

2. 시책 및 추진방향

- 새로 개발된 식량작물 우량품종 시범재배로 농업인의 자율선택 유도
- 벼 신육성 품종의 시범증식으로 농가에 신속한 확대 보급
- 국민식량의 지속적 자급을 위한 초다수성 품종 종자를 일정량 확보
- 농작물 병해충의 신속한 예찰을 통한 효율적인 방제대책 추진
- 토양검정의 지속적 추진과 전산망을 이용한 토양관리 정보 제공
- 벼 직파, 무경운 등 생력재배기술 종합투입으로 생산비 절감
- 보리, 콩, 참깨 등 밭작물 재배 기계화 추진을 통한 단지화 유도
- 해외유입 병해충 등 신속한 진단 및 천적을 활용한 방제기술의 농가보급
- 농약, 화학비료 사용량 절감 기술보급으로 안전한 농산물 생산
- 농산물의 가공상품화 및 고품질화 기술지원 확대
- 농업인의 직업관련 질병예방을 위한 농작업 환경개선 시설보급 확대
- 전작·원예·특용작물시범사업중 논에 설치 가능한 사업은 논에 설치유도

3. 근거법령 : 농촌진흥법 제13조

4. 연도별 지원계획

		'93-'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예산안)	2004이후
사업량		개소 10,590	3,446	3,658	4,528	12,004
사업비	계	백만원 55,000	18,558	23,380	26,796	72,844
	보조	27,500	9,279	11,690	13,398	36,422
	지방비	27,500	9,279	11,690	13,398	36,422

5. 2003년도 사업시행요령

< 사업개요 >

가. 사업내용

- (1) 배 경 : 1962년부터 새기술의 신속한 농가보급을 위하여 추진
- (2) 지원대상자 : 시·군 농업기술센터를 통하여 시범농가에 지원
- (3) 지원규모 및 지원내용

식량작물 시범

○ 시범내용

- 벼농사 : 식량작물 우량품종 비교, 신육성 벼품종 시범, 초다수성 벼 종자 증식, 벼 생력재배 선도실천, 쌀 생산비 절감단지, 벼 기계이앙 동시추진시비시범, 부분경운직파시범, 재해상습지 논개선 시범,
- 발작물 : 식용보리 기계화 일관시범, 콩 최소경운 재배, 우량참깨 기계화, 소립 발작물 과립종자 이용 시범, 고품질 감자 생력재배시범

○ 지원규모 및 내용

- 지원규모는 사업의 내용에 따라 달라 2003년 농촌지도사업 기본지침에 별도로 정함
- 주요지원내용 : 시범사업 농기계 및 농자재 구입비, 교육 및 평가비 등

□ 소득작목 시범

○ 시범내용

- 채소 : 마늘 주아이용 우량종구 생산, 채소 기계화 생력재배
노지채소 연작장해 대책, 딸기 우량묘 증식, 채소 생물학적 방제, 하우스 경보 일사감응 시스템, 단동형비닐하우스 자동축창개폐시범
- 과수 : 과수 토양감응형 관수시범, 포도 덕 및 비가람 복합시설, 과수성 페로몬이용 해충방제, 사과하수형 전정시범, 과수 고품질 장기저온 저장시범, 사과 초생재배, 과원 전층시비, 감귤원 타이백 피복시범, 인공수분용 꽃가루 은행설치, 감귤환경개선시범
- 화훼 : 국화 재절화 관비시범, 소형 분화 저면관수 재배, 시설원에 에너지절감 시범, 양란 축성재배, 장미보광처리 시범, 백합 최소양액재배시범, 카네이션 연작재배 격리상시범, 생활원예가꾸기 시범
- 특작 : 느타리버섯 비닐멀칭 재배, 병버섯 생력화 액체종균시범, 마이크로파 특용작물 건조 시범, 고부가가치 양잠산물 생산, 고품질 누에 수번데기 생산기술, 인삼 해가림시설시범
- 축산 : 한우 인공수정시범, 한우 계획번식시범, 흑염소개량거점농가 육성, 중북부 내한성 사료작물 재배, 답리작 사료작물 증산, 수출용 규격닭 생산시범, 봉독이용 가축생산성 향상시범, 가축해충방제 생력화 시범

○ 지원규모 및 내용

- 지원규모는 사업의 내용에 따라 달라 2003년 농촌지도사업 기본 지침에서 별도로 정함
- 주요지원내용 : 시범사업 시설 및 장비, 재료비, 교육 및 평가비 등

□ 환경보존 농업기술지도

○ 시범내용

- 병해충 방제 : 벼 병해충 예찰포, 농작물병해충 종합진단실, 병해충 종합관리 기술보급, 천적증식 시설설치, 농작물 생육 및 병해충 관찰포, 농작물 병해충 진단장비 보강
- 친환경 농업 : 토양 정밀검정 종합관리, 토양환경 종합개선, 친환경 농업 기술 보급단지, 종합검정실 장비보강, 농업기상관측 장비 설치시범
- 축산 환경개선 : 돼지사육 환경개선, 가축방역 무인소독 시스템, 환경 친화형 가축분뇨처리시범, 초지사료포 액비시용시범, 액상분뇨 퇴비화 시설개선, 오존이용 축산폐수정화 개선

○ 지원규모 및 내용

- 지원규모는 사업의 내용에 따라 달라 2003년 농촌지도사업 기본지침에서 별도로 정함
- 지원내용 : 예찰소 운영비, 시범사업 시설 및 재료비 등

□ 농촌생활과학기술보급 시범

- 시범내용 : 농촌여성 일감갓기, 농촌여성 소득원제품 품질향상 및 유통개선 시범, 농산물가공 교육시범, 농촌여성향토음식 맥 잇기 지원, 전통식품 천연염료 염색, 전통 규방공예품 제조시범, 고품질 포도 식초 제조시범, 농작업 환경개선 보조구 시범, 농산물 선별작업장 개선, 딸기작업 개선 보조도구

○ 지원규모 및 내용

- 지원규모 및 내용은 2003년 농촌지도사업 기본지침에 의거 별도로 정함
- 지원조건 : 보조100%(국비 50%, 지방비 50%)

나. 2003년도 사업비(예산안) 내용

내 용 별	사업량	사 업 비					
		사업비 합 계	예산액(일반회계)			지방비	자부담
			계	보 조	용자		
계 (77종)	개소 4,528	백만원 26,796	13,398	13,398	-	13,398	-
○ 식량작물시범(13종)	432	3,898	1,949	1,949	-	1,949	-
○ 소득작목시범(39종)	1,053	9,558	4,779	4,779	-	4,779	-
○ 환경보전농업기술(17종)	2,768	10,044	5,022	5,022	-	5,022	-
○ 농촌생활과학기술(8종)	275	3,296	1,648	1,648	-	1,648	-

< 추진체계 >

가. 사업주관기관 : 시군 농업기술센터

나. 사업 담당부서

구 분	농촌진흥청 기술지원국	농업기술원	시군농업기술센터
식량작물 시범	식량작물과 (031-299-2708)	기술보급과 등	기술보급과 등
소득작목 시범	원예축산과 (031-299-2731)	기술보급과 등	기술보급과 등
환경보전 농업기술 지도	식량작물과 (031-299-2715)	기술보급과 등	기술보급과 등
농촌생활과학기술보급시범	생활개선과 (031-299-2679)	생활개선과, 농촌지원과 등	농촌지원과 등

다. 대상자 선정

○ 선정기준

- 시범사업 참여 의지가 강하여 파급효과가 큰 농업인이나 농업인 단체
- 기술 낙후지역으로 새기술의 파급효과가 기대되는 지역
- 농축산물 수입개방 대응을 위한 작목대체가 필요한 지역

* 농촌생활과학기술보급시범은 2003년도 농촌지도사업 기본지침에 제시

○ 선정절차

- 대상농가 중에서 영농규모, 제반여건 등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현지 조사하고 사업에 따라 농업산학협동심의회를 거쳐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선발
-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선정된 농업인 및 생산자 단체 명단을 각도 농업기술 원장에게 제출하고, 각도농업기술원장은 타당성 검토후 농촌진흥청장에게 보고

라. 사업시행

○ 사업계획 수립 및 변경

- 각도 농업기술원장(특·광역시농업기술센터소장)은 시·군별 사업물량 및 예산 배정계획을 시군농업기술센터소장에게 통보
 - 시군농업기술센터에서는 시군별 사업물량 및 예산배정계획에 의거 대상자 선정, 기계장비, 예산집행 등을 포함한 자체 사업계획 수립 추진
 - 새기술 보급을 위한 사업단계별 교육 및 평가회를 개최하여 기술 파급 효과 거양
 - 사업포기 등의 사유로 사업계획 조정이 필요한 경우
 - 시군내에서는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사업을 변경 승인하고
 - 시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농업기술원장이 변경 승인
- ※ 조정 변경내용은 상급기관에 보고

○ 사업비 지원방법

- 사업비는 가급적 시범농가의 사업추진 진도에 따라 지급
- 지원단가 및 금액을 초과하는 사업비는 자부담으로 추진

마. 사업검정 및 사업비 정산

- 시범사업 추진상황 및 예산집행상황을 수시로 점검 확인

< 행정사항 >

가. 사후관리

-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단위사업별로 지정된 기간동안 특별관리
- 시군 및 시도에서는 사업계획에 의한 지원금의 타용도 사용을 금지하고, 전·유용 등 타용도로 이용된 경우에는 지원자금을 회수하고 금후 사업 대상에서 제외

- 사업중간 및 연말에 평가회를 개최하여 시범사업 추진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발굴하여 개선방안을 강구
- 보조금으로 취득한 주요 기기는 성질에 따라 사업완료 후 2~3년까지 처분 제한 (구체적인 내용은 2003년 농촌지도사업 지침 참조)

나. 보 고

- 새기술 보급 시범사업 대상농가 선정상황 보고 : 3월말까지
- 새기술 보급 시범사업 추진결과 보고 : 11월말까지
- 농촌생활과학기술시범사업 계획보고 : 3월말까지
- 농촌생활과학기술시범사업 추진실적 보고 : 11월말까지
- ※ 세부사업별 보고서 양식(농촌진흥청 정기보고 서식, 농촌지도사업 기본지침에 의함)

6. 2004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 안내

가. 신청서 제출기관 : 시군 농업기술센터

나. 신청자격 및 자금지원 대상자 선정

- 신청기준
 - 가급적 해당 시범작목의 주산단지 지역
 - 전작·원예·특용작물시범사업중 논에 설치 가능한 사업은 논에 설치유도
 - 많은 농업인이 수시로 관찰 할 수 있는 지역
 - 시범사업을 원활히 추진하여 좋은 성과가 기대되는 농가 또는 단체

다. 선정절차

-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시범사업 신청농가의 사업수행능력, 시범사업 추진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농업기술센터 내 산학협동심의회 의결을 거쳐 사업대상자 선정

라. 구비서류

- 사업신청서(계획서) : 농업기술센터에 비치

② 품목별 전문교육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촌진흥청 기술지원국 지도기획과 (과장 윤병두, 농촌지도관 가형로)입니다.

1. 목 적

- 전문경영인으로서 투철한 직업관 확립과 기술 능력배양
- 영농 후계인력의 안정적 확보와 영농정착 의욕 배양
- 농촌생활 개선과 지역사회 발전의 선도 실천자로서 능력배양
- 농기계 현장이용자에 대한 안전이용 및 정비점검 능력배양

2. 시책 및 추진방향

- 품목별 농업인 조직 중심의 소집단 대상 연중교육 실시
- 단일품목에 대한 전문재배기술 및 경영교육을 위한 참여식 교육 강화
- 건전하고 생산적인 후계 농업인력 양성교육
- 농촌의 활성화를 위한 지도력의 함양과 생활개선 실천의지 함양
- 최신 농업기계 중심으로 안전이용 및 정비점검교육

3. 근거법령

- 농촌진흥법 제13조 1항(농촌지도사업에 대하여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
-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5조2항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92-'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예산안)	2004이후
사업량(천명)		10,852	923	768	559	3,473
사 업 비	계	73,430	5,420	5,823	5,845	24,725
	국비(중앙)	8,377	218	221	329	831
	보 조	11,117	2,601	2,801	2,758	11,947
	지 방 비	53,936	2,601	2,801	2,758	11,947

5. 2003년도 사업시행요령

< 사업개요 >

가. 사업내용

(1) 사업주관기관 : 농촌진흥청, 도농업기술원 및 시군농업기술센터

(2) 추진계획

○ 중앙 : 정예 농업전문인력 양성 교육(5,690명)

- 실수요품목별교육(990명) : 소득작목 전문기술교육, 선도 경영농가 전문
기술교육, 농기계 정비교육

- 유관기관, 단체위탁 및 협력교육(4,700명) : 영농공개강좌, 농촌여성 대표
지도자 교육

○ 도 : 중견 농업인력 양성교육(4,450명)

- 농업인 정보화교육(600명) : 전문농업정보화교육

- 농업기계교육(1,350명) : 기계화영농사, 농기계 신규농업인교육

- 농촌여성교육(2,500명) : 농촌여성지도자교육, 여성농업인 능력개발교육

○ 시군 : 현장애로기술 및 취약기술 실천과제 교육(548,370천명)

- 영농기술교육(351,400명) : 품목별 농업인 상설교육, 새해영농설계교육

- 정보화교육(7,370명) : 농업정보활용교육

- 농기계교육(20,000명) : 농업기계 현장이용 기술교육

- 청소년교육(11,000명) : 청소년 전문교육

- 농촌여성교육(161,300명) : 농촌여성 과제교육, 능력개발교육

(3) 분야별 농업인교육 계획 : 별표 참조

나. 2003 사업비(예산안) 내용

내 용 별	사업량 (명)	사 업 비				
		사업비 합계	예산액(일반,농특회계)			지방비
			계	국 비	보 조	
계	명 558,510	백만원 5,845	3,087	329	2,758	2,758
< 기술지도 >	5,690	321	321	321	-	-
○ 품목별전문교육(중앙)	5,690	321	321	321	-	-
< 기술지도사업보조 >	731,470	4,754	2,381	8	2,373	2,373
○ 새해영농설계교육	300,000	3,000	1,500	-	1,500	1,500
○ 품목별 상설교육	51,400	514	257	-	257	257
○ 농업인 정보화교육	7,970	398	199	-	199	199
○ 청소년교육	11,000	330	165	-	165	165
○ 생활기술 과제교육	151,500	330	169	8	161	161
○ 여성농업인 능력개발교육	9,600	182	91	-	91	91
< 농촌활력화시범사업 >	21,350	770	385	-	385	385
○ 농업기계교육훈련	21,350	770	385	-	385	38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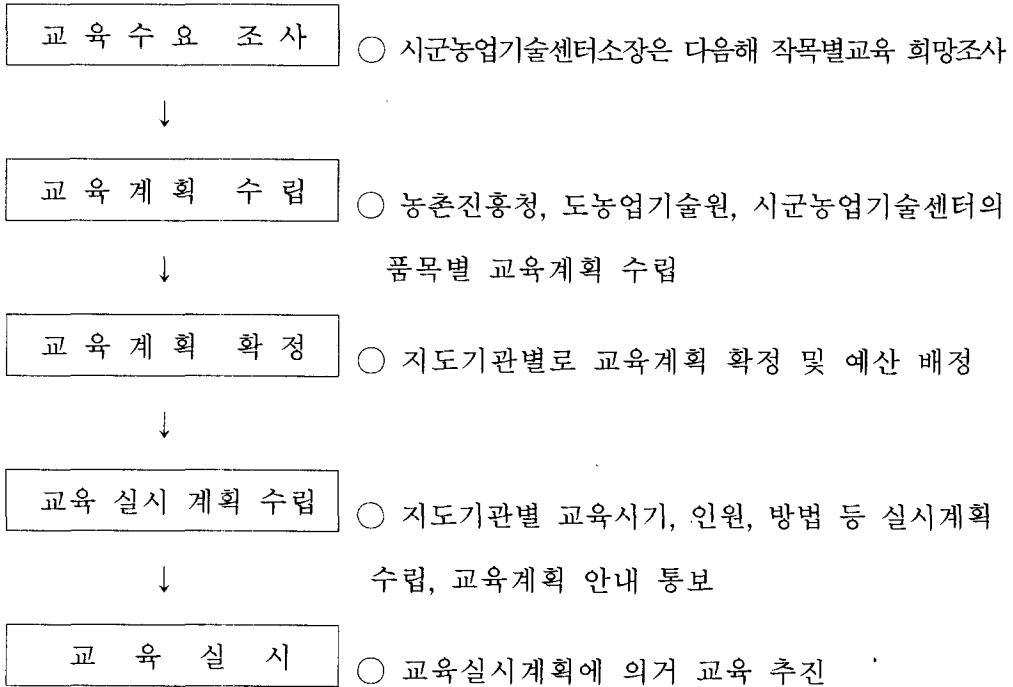
< 추진체계 >

가. 사업주관기관 : 농촌진흥청, 농업기술원 및 시군 농업기술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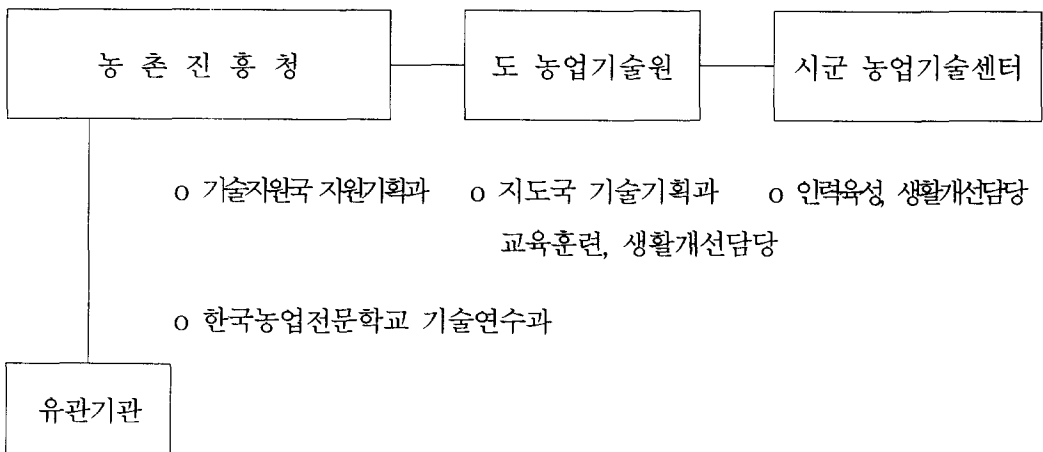
나. 사업 담당부서

- 농촌진흥청 : 기술지원국 지원기획과 (전화 : 031-299-2668)
- 시 도 : 도농업기술원 기술기획·지원기획·농민교육과 등
- 시 군 : 시군 농업기술센터 교육훈련담당(자)

다. 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



< 농업인 교육훈련기관 >



< 행정사항 >

가. 사후관리

- 사후관리책임자 : 도농업기술원장 및 시군농업기술센터소장
- 점검 및 평가
 - 농촌지도기관장은 사업추진내용을 파악 사업별 시행여부 확인
 - 시군단위 자체 사업평가회 실시로 익년도 사업계획에 반영

나. 교육수요조사

- 교육실시 전년도에 경영형태, 규모, 표본조사 등을 통한 품목별·분야별 교육수요 분석
- 평소 교육 및 현장지도 등 농업인 접촉시 교육희망사항 반영

다. 보고·기타 : 교육훈련 기본계획에 의함

6. 2004년도 농업인 교육사업 추진

가. 주관부서 : 농촌진흥청, 도농업기술원 및 시군농업기술센터

나. 교육대상 : 2003년도 교육대상 참조

다. 추진계획 및 기타사항 : 2003년도 지침에 준용하여 지속적인 추진

[별표 1]

2003년 분야별 농업인교육 계획

교육기관	과정별	시기 (기간)	인원	교육 대상	세부교육과정 (내용)	방 법
농촌진흥청	소득작목 전문기술 교육	2-6월 (2~4일)	명 600	○교육작목에 대한 영농 경험이 있고 보다 새로운 기술을 필요로 하는 자 ○시군 농업기술센터 수요조사시 희망자	○매년 희망자 목 수요조사 결과에 따라 과정설정	전일합숙교육 -주간:강의, 실습, 견학 -야간:영농 정보 교환, 시청각, 기타
"	농기계 정비 교육	7-8월 (2주)	190	○농기계 정비교육 회 망농업인 및 취농인 등	○매년 희망자 수요조사 결 과에 따라 과정 설정	"
"	선도경영 농가 전문기술 교육	4-10월 (2-3일)	200	○농업분야의 최고 경영지 육성 ○시군 농업기술센터 수요조사시 희망자	○매년 희망 작목수요 조사결과에 따라 과정설정	"
"	농촌여성 대표지도 자 교육	2~3월 (2일)	200	○생활개선회 임원 및 회장	○농촌여성의 정보화 대응 및 리더쉽	"
농촌진흥청 (희망 주산지역)	영농공개 강좌	3-11월 (1일)	4,500	○전문기술교육 참여 희망 농업인	○개방화대응 지역주산 성장작목	강의 및 질의 응답식교육
도 농업 기술원	전문농업 정보화교육	연 중 (3일)	600	○교육희망농업인	○정보화필요 ○농산물 유통 방법 ○농업용소프트 웨어	이론 및 실기 실습
"	기계화 영농사 교육	연 중 (2주)	1,000	○기계화영농사 요원	○종합반 편성 운영	이론 및 실기 실습
"	신규농업인 농기계 교육	연 중 (1주)	350	○신규농업인으로 기계화영농 희망자	○정비수리 핵심기술	이론 및 실기 실습
"	농촌여성 지도자 교육	3-11월 (1일)	1,500	○농촌여성지도자	○지도력배양 ○농촌생활 환경조성	강의, 실습

교육기관	과정별	시기 (기간)	인원	교육대상	세부교육과정 (내용)	방법
도 농업 기술원	여성농업 인능력 개발교육	3-11월 (1~2일)	1,000	○여성전문경영인	○농업경영 및 정보화교육 ○영농기술교육	이론 및 실습
시군농업 기술센터	품목별 농업인 상설교육	3-12월 (연 4회 이상)	51,400	○품목별 조직 농업인 대상 중심	○품목별생산 및 유통단계 별 핵심기술 지도	강의, 토의, 사례발표, 실기 실습, 견학 등
시군농업 기술센터 (지역별 주산지의 공공시설)	새해영농 설계교육	1-2월 (1일)	300,000	○품목별조직농업인 ○주산단지 등 참여희망농업인	○공통교과: 농어촌발전 대책 지역농 정시책 ○전문교과: 과정별 전문 기술 및 개선 과제핵심기술	새품종, 새기술 등 핵심기술 중점교육(강의, 토의, 사례 발표 등)
시군농업 기술센터	농업정보 활용교육	연 중 (2일)	7,370	○교육희망 농업인	○농가경영장부 ○농산물출하정 보시스템활용 ○정보검색 등	이론 및 실기 실습
"	농업기계 현장이용 기술교육	농 한기 (1~2일)	20,000	○농업기계 공동 이용조직 기간 요원및실수요자 ○교육희망 부녀자 등	○신규농업기계 기종 중심 정비점검요령 ○운전조작 및 교통안전	실기실습
시군농업 기술센터	청소년 전문교육	연 중 (1일)	11,000	○핵심4-H회원 및 영 농후계세대 회원	○과제분야별 교육 ○진로지도교육	강의, 토의, 사례발표, 실습
시군농업 기술센터	청소년 전문교육	연 중 (1일)	11,000	○핵심4-H회원 및 영 농후계세대 회원	○과제분야별 교육 ○진로지도교육	강의, 토의, 사례발표, 실습
시군농업 기술센터	농촌여성 과제교육	연 중 (1일)	150,000	○농촌여성 및 주민	○농작업 환경 개선 ○농촌경관조성 ○농산물가공 ○한국형식생활 ○지역사회활동 참여	강의, 실습
"	여성농업 인능력 개발교육	연 중 (1~2일)	8,600	○여성농업인	○농업경영 및 정보화교육 ○영농기술교육	이론 및 실습

③ 4-H 회원 시범영농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촌진흥청 지도기획과(과장 윤병두, 농촌지도관 구현희)입니다.

1. 목 적

- 미래농촌을 이끌어갈 농업 후계인력의 확보
- 영농4-H회원의 과학영농 체험학습으로 영농 정착유도
- 학교4-H회원의 다양한 과제활동 능력 함양

2. 시책 및 추진방향

- 영농4-H회원의 영농 학습활동으로 전문농업능력 배양
- 영농4-H회원의 영농기반 조성으로 경쟁력 있는 농업인 육성
- 학교4-H회원의 사기 진작으로 학교4-H 활성화 도모

3. 근거법령

- 농촌진흥법 제13조(농촌지도사업에 대하여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 보조)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92-'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예산안)	2004이후
사업량 (명)		1,200	880	580	580	1,740
사 업 비	계	6,000	2,000	2,000	2,000	6,000
	보 조	3,000	1,000	1,000	1,000	3,000
	지방비	3,000	1,000	1,000	1,000	3,000

5. 2003년도 사업시행요령

<사업개요>

가. 사업내용

(1) 배경

- 영농4-H회원 및 학교4-H회원에게 4-H활동의 동기를 부여하고 농심함양 필요

(2) 지원대상

- 영농4-H회원으로 과제이수능력을 갖추어 전문농업인으로 발전 가능성이 있는 자로서 시·군농업산학협동심의회(또는 농어촌발전심의회) 심의를 거쳐 시군농업기술센터소장이 지원대상자로 확정된 자
- 학교4-H회로서 시·군농업산학협동심의회(또는 농어촌발전심의회) 심의를 거쳐 시군농업기술센터소장이 지원대상학교로 확정된 학교4-H회

(3) 개소당 지원규모 및 지원 조건

○ 지원규모

- 영농4-H회원 과제자금 지원 : 5백만원(1인 또는 개소당)
- 학교4-H회 지원 : 2백만원(개소당)

※ 학교4-H회지원은 시군별 학교4-H육성 여건에 따라 개소당 차등지원 가능

○ 재 원 : 국비 50%, 지방비 50%

(4) 지원내역

○ 영농4-H회원 지원

- 영농4-H회원의 영농활동 촉진을 위한 농자재 및 시설지원
- 분야별 지원대상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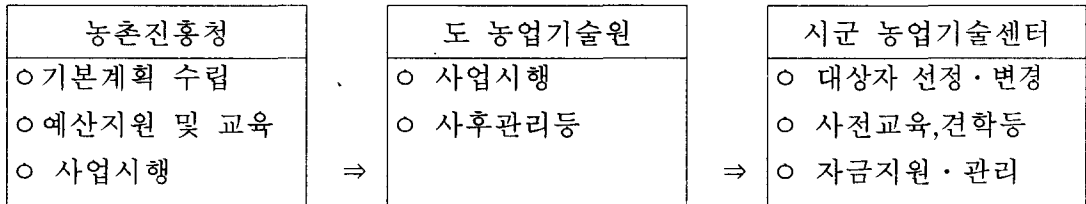
분야	사업작목	지원대상 사업내역
농업 분야	수도작, 원예(채소, 화훼등), 과수, 특작, 복합영농 등	농지구입, 고정식 온실, 하우스 시설, 수경 재배시설, 과원조성, 묘목구입, 버섯재배· 저장시설, 관수시설, 농기계구입, 컴퓨터 구입, 기타 농업기반 시설 등
축산 분야	한(육)우, 낙농, 양돈, 양계, 기타 축산 등	축사신축 및 시설개선, 가축입식, 폐수처리 시설, 초지조성, 사료포 조성, 농기계 구입, 저장시설, 컴퓨터 구입, 기타 축산 기반 시설 등

※ 지원자금은 종자, 비료, 농약, 유류 구입 등의 운영비로 사용할 수 없음

○ 학교4-H회 지원 대상 사업

- 학교4-H회원의 과제 및 기타활동에 필요한 실습 시설 및 기구, 활동재료, 전문강사 지원 등

(5) 사업시행 체계



나. 2003년도 사업비(예산안) 내용

(단위 : 백만원)

내용별	사업량	사 업 비					
		사업비 합 계	예산액(농특회계)			지방비	자부담
			계	보 조	용 자		
계	580	2,000	1,000	1,000	-	1,000	
영농4-H회원 지원	280명	1,400	700	700	-	700	
학교4-H회 지원	300개교	600	300	300	-	300	

<추진체계>

가. 사업주관기관

- 특별·광역시농업기술센터소장
- 시군농업기술센터소장

나. 사업담당 부서

- 중앙 : 농촌진흥청 지도기획과 (전화번호 : 031-299-2666)
- 도 : 농업기술원 4-H업무 담당과
- 시군 : 농업기술센터 4-H업무 담당과

다. 자금지원예정자

(1) 선정기준

○ 영농4-H회원 과제자금 지원 : 다음 평가기준에 의하여 고득점자순 선발

〈평가기준〉

구 분	배점	평 가 방 법
영농기반	10	- 1.5ha 이상 : 10점 - 1.5ha ~ 1.0ha 미만 : 8점 - 0.7ha ~ 1.0ha 미만 : 6점 - 0.7ha 미만 : 4점
학 력	10	○ 최종학력 기준 - 농업계 전문(대학) 및 농업계고등학교 : 10점 - 일반계 전문대학 및 일반계 고등학교 : 8점 - 중학교 : 5점
교육훈련	10	○ 객관적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 아래의 교육시설에서 교육을 이수한 실적을 3일 단위로 1점씩 가산 (10점을 초과할 수 없음) - 농촌진흥청, 각도 농·축·협의 훈련기관 - 도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 및 동 연수기관 - 한국농업전문학교, 여주농업전문교육원 (재학중의 장기현장 실습기간 포함) - 대학 또는 전문대등 농업계학교부설 영농훈련기관
영농관련 단체활동	25	○ 4-H연합회장 : 시군3, 도4, 중앙5점(1년당) ○ 4-H연합회임원 : 시군2, 도3, 중앙 4점(1년당) ○ 4-H회원 활동 : 1점(1년당) ※ 25점을 초과할 수 없으며 기타 단체 활동도 이에 준하여 배점
영농경력	10	○ 영농종사 경력 1년단위로 1점씩 가산(총10점)
자 격 증	5	○ 관련분야 기술자격증 소지자 5% 범위내에서 가산
영농정착의욕	15	○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평가기준 작성활용
사업계획	20	○ 사업계획의 타당성, 치밀성 및 발전가능성 등을 분석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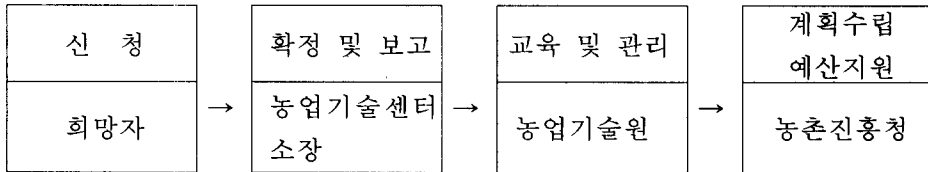
※ 영농기반은 본인·배우자 소유 및 상속 가능한 직계존속 소유분은 100%, 서면계약한 임차농지는 50%를 영농기반으로 인정

- 학교4-H회 지원 :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자체 평가기준 작성 활용
 - 학교4-H활동 연수 및 회원 참여, 단체봉사활동, 지역사회 발전 기여 등

(2) 우선 순위

- 평가점수가 높은 회원 및 학교 4-H회
-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 종합점수가 동점일 경우에는 4-H활동 점수가 높은 자, 자격증소지자, 농업계 학교 출신 자 순

(3) 선정절차



- 대상자 심의 추천
 -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사업신청 서류(붙임참조)를 확인후 평가하여 산학협동심의회(농어촌발전심의회)에 상정하여 대상자를 최종 확정
 - 시군농업기술센터 소장은 확정된 대상자 현황을 붙임 양식에 의거 도농업기술원장에 보고
 - 도 농업기술원장은 선정결과를 붙임 양식에 의거 사업 시행 전년도 3월 31일까지 농촌진흥청장에게 보고
 - 농업기술원장은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지원대상자를 확정하여 시군 통보

라. 사업시행

- 사업자금배정
 - 보조금 : 농촌진흥청 → 도지사 → 시군 → 농업기술센터 → 신청자
- 집행 :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과 시군 보조금 관리 조례 및 시행규칙에 의거 집행 및 정산

<행정사항>

가. 사후관리

- 관리책임 : 특별·광역시 및 시군농업기술센터의 장
- 현지도도
 - 지도점검자 : 특별·광역시, 시군농업기술센터 전문지도공무원
 - 지도내용 : 영농 과제이수 상황, 전문기술 경영지도, 학교4-H회 활동 지도
- 사업취소 및 지원자금 회수
 - 국고보조 및 지방자치단체보조금 집행기준의 취소사유 해당시
- 사업대상자 및 장소 변경
 - 시군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사업대상자 변경시 15일 이내에 해당 도 농업기술원장에 보고
 - 사업대상자가 사업장소를 변경할 경우에는 해당 시군농업기술센터 소장 및 도농업기술원장에게 보고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한 재산관리
 - 시군보조금관리조례 및 시행규칙에 의거 관리
- 관리기간 : 시군보조금관리조례에 규정된 기간

나. 보고사항

- 사업추진결과 (별첨양식)
 - 농업기술센터소장 : 반기 익월 10일 까지 농업기술원장에게 보고
 - 농업기술원장, 특별·광역시농업기술센터 소장 : 반기 익월 15일 까지 농촌진흥청장에게 보고

6. 2004년도 사업신청 및 사업대상자 선정 안내

가. 신청서 제출기관 : 사업대상지의 관할 농업기술센터

나. 신청자격 : 영농4-H회원으로 활동한 개인 및 단체, 학교4-H회

다. 신청절차 : 사업시행 전년도 1.20일까지 신청서 제출기관에 신청

라. 구비서류

- 사업계획서 1부
- 4-H회원 시범영농 지원사업 또는 학교4-H회 지원 사업 신청서 1부
- 기타서류 : 교육훈련이수 확인, 영농단체활동 확인 등에 필요한 서류

마. 기타사항

- 사업신청자에 대한 평가 및 우선순위 결정 등은 2002년도 지침을 준용하여 결정

<별표 제1-1호> 영농4-H회원 과제활동 지원사업 신청서

신청인	성명	(한자)		주민등록번호	-		
	주소	(우편번호:)			전화번호		
	최종학력	학교 과 (졸업)		졸업년월일	. . .		
지원사업	분야	농업, 축산	작목명	지원금액 (지원시기)	백만원 ()년도		
영농어 기반	경지면적	전: 답: 과수원: 초지: 기타: 평					
	시설규모	우사, 돈사, 계사: 평, 두, 수, 비닐하우스: 기타:					
	장비	트랙터: 이앙기: 트럭, 승용차: 컴퓨터: 기타: 대					
가족사항 (본인제외)	성명	관계	생년월일	주소		직업	
포상경력 영농어기 술자격증 및 주요경력	년월일	내 용			수 여 자		
영농어 교육훈련	기간(년월일)	내 역			실시기관명		
영농경력	년 월 - 년 월 까지						
단체활동 경 력	구 분	기 간	직 책		활동지역		
	4-H활동	년 월					
	기타단체활동	년 월					

년 월 일 신청인 : (인)

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

첨부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학력증명서, 기술자격증 사본, 4-H활동확인서, 교육훈련확인서,
영농기반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영농4-H회원 과제활동 지원 사업계획서

1. 현 황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 사업장 :

영농규모 (평)		논	밭	과수원	사료포	목초지			계
	소유								
	임차								
	계								
시설현황 (평)	창고	축사	온실	비닐하우스	버섯재배사				기타
농기자재 (대)	트랙터	경운기	이앙기	콤바인	관리기	건조기	설별기	차량	컴퓨터
	방제기								기타
재배현황 (평)	벼	보리	사과	배	포도				계
가축보유현황 (두수)	한우	젖소	돼지	닭					기타
기타특기사항									

2. 사업계획

○ 사업명 : 영농4-H회원 과제활동 지원사업

○ 세부사업계획

세부사업명	단위	단가	사업량	사업비 (백만원)				
				계	국고	지방비	용자	자담
계								
수도작								
화훼								

○ 세부사업별 추진일정

세부사업명	1/4분기	2/4	3/4	4/4
자재구입			←-----→	
재배관리		←-----→		
·				
·				
·				
·				

* 사업추진일정은 ←→으로 표시

○ 기타 (향후 년차별 영농계획 등을 작성)

[별표 제3호 서식]

4-H회원 과제활동 지원사업 선정결과 보고

I. 영농4-H회원 과제자금 지원

1. 일반현황

구분	계	결혼여부		연 령 별(세)			학 력 별					
		기혼	미혼	21-23	24-26	27-29	국졸	중졸	고졸	전문	대졸	
계												
남												
여												

2. 사업작목별 지원 실적

(단위 : 명)

시군별	계	경 종 농 업 분 야						축 산 분 야					
		소계	수도	채소	과수	화훼	기타	소계	한우	육우	양계	기타	
계													

II. 학교4-H 과제활동 지원

시군별	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기타	
		개소수	회원수	개소수	회원수	개소수	회원수	개소수	회원수
계									

<별표 제4호 서식>

사업추진결과 보고

시도명 :

(단위 : 명, 천원)

분야별	계	채 소	시설채소	화 훼	과 수	축 산	기 타	학 교
인 원								
지원액								

※ 지원실적은 금회/누계로 작성

④ 농업계 특성화대학 지원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촌진흥청 연구기획과(과장 정광용, 농업연구원 김재덕)입니다.

1. 목 적

- 지역농림업 발전을 위한 구심체 역할을 담당할 14개 농업계 대학을 특성화 대학으로 선정하여 지역여건에 맞는 농업기술 개발, 전문인력 양성, 첨단 및 현장애로기술 개발, 대 농민 경영 및 기술지도를 할 수 있는 교육기관으로 육성 지원
- 첨단시설 및 기자재, 장비 등의 지원으로 실험·실습위주의 기술습득을 위한 교육여건 조성
- 특성화대학, 도단위 농업관련 연구소 및 농업기술센터, 농업인 등이 공동으로 산·학·관·연 협동체제를 구축

2. 시책 및 추진방향

- 특성화대학 특성화분야의 연구, 개발, 교육 등에 필요한 시설·장비·기자재 등을 지원

3. 근거법령

-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법 제3조
 - 전문대학의 학력인정을 받는 농림수산기술전문교육을 하는 각종학교
 - 기타 예산이 정하는 사업
-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10조(농림수산과학기술진흥)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 개교, 백만원)

구 분		'92-'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예산안)	2004이후
사업량		14	14	14	14	14
사 업 비	계	42,034	7,375	6,000	6,000	6,091
	보 조	42,034	7,375	6,000	6,000	6,091
	용 자	-	-	-	-	-
	지방비	-	-	-	-	-
	자부담	-	-	-	-	-

5. 2003년도 사업시행 요령

< 사업개요 >

가. 사업내용

(1) 지원대상

○ 14개 농림계 특성화대학

서울대 농생대, 한경대학, 강원대 농생대, 충북대 농대, 충남대 농대, 전북대 농대, 전남대 농대, 순천대 농대, 경북대 농대, 안동대 자연과학대, 경상대 농대, 진주 산업대, 제주대 농대, 강원대 산림과학대

(2) 지원조건

○ 농업계 특성화대학지원, 농림계 학교 등 시설 및 장비 지원 : 국고보조 100%

(3) 지원시설의 종류

○ 특성화 분야의 연구·개발에 필요한 시설, 기자재 및 장비

나. 2003년도 사업비(예산안)내용

(단위 : 백만원)

내 용 별	사업량	사 업 비					
		합계	예 산 액(농특세)			지방비	자부담
			계	보 조	용 자		
○ 농업계 특성화 대학 지원	14	6,000	6,000	6,000	-	-	-

< 추진체계 >

가. 사업주관기관 : 도지사

○ 농업계 특성화대학지원

- 농촌진흥청 : 기본계획 수립
- 대 학 교 : 사업계획 수립·시행
- 도지사(농업기술원장) : 사업계획 승인, 집행감독 및 사후 관리

나. 사업담당부서

- 농촌진흥청 연구관리국 연구기획과(☎031-299-2587, FAX 031-299-2568)
- 도농업기술원

다. 사업시행

(1) 사업계획 승인

- 도지사(농업기술원장)는 농촌진흥청의 기본계획에 의거 해당 학교로부터 2002. 12월 말까지 2003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2003년 사업계획을 승인
 -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주요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농촌진흥청의 승인을 받아 변경 (변경 가액 5000만원 이하 도지사 승인)

(2) 사업추진

- 도지사(농업기술원장)는 다음사항을 지도·감독하여 사업추진에 원활을 기하여야 함
 - 사후봉사 및 운영조작에 따른 문제예방을 위해 가능한 한 시설물의 공사계약을 일괄 발주
 - 사업의 기성고(공사 감독자의 확인 등)에 따라 자금이 집행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
 - 유리온실 등 첨단시설물의 공사계약시에는 자동화시설의 조작기술지도, 사후봉사 기간 등에 관한 제반사항이 계약서에 명문화하도록 함
 - 시설, 실험실습장비 및 기자재는 사전에 세부 운영계획을 수립한 후 구매하여 고가의 시설·장비가 정상 운영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지도·감독 및 승인
 - 각종 장비 및 기자재는 학과 또는 연구과제별로 중복 구입치 말고, 특성화분야의 연구개발과 실험실습위주의 교육에 직접 필요한 공통장비·기자재를 우선 구입
 - 과학기술센터시설은 대농민 교육에 필요한 강의실, 실험·실습실 위주로 하고 회의실, 교육연구실, 행정실 등은 최소규모로 조정 시행
 - 자금배정은 당해연도 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조치

< 행정사항 >

가. 사후관리

- 사후관리 책임자 : 도지사
 - 도지사는 분기별로 시설 및 장비·기자재의 운용 실태를 점검하여 지원된 시설·장비가 정상 운용되도록 지도·감독

- 첨단유리온실 등 계절적으로 운영비 부담이 큰 시설 및 장비에 대하여는 운영비, 수리보수비 등 대응투자 등 사전 조치토록 유도
- 총 사업비가 5,000만원 이상 투입된 주요 사업의 건축물, 시설, 장비는 입구 또는 몸체 등 잘 보이는 곳에 안내표지판 설치(농림사업실시규정 제39조 제4항, 별표 2 참고)
- 도지사는 매년도 말에 당해연도 사업 추진실적을 자체 점검·평가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다음연도 사업비 지원요구시 반영
 - 사업 추진실적 자체 점검·평가시에는 당해 사업의 계속성 여부, 투자 우선순위, 대응투자실적(Matching Fund), 농업인 교육 및 컨설팅실적, 특성화분야 연구 및 활용도 등을 중점 점검·평가
 - 도지사는 특성화대학을 중심으로 농업기술원, 지역연구소 및 특화시험장 등과 지역특화 품목의 기술개발 및 보급을 위한 산·학·관·연의 유기적 협력 활동 확대 유도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사후관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내용 년수와 같은 기간동안 관리 되도록 조치

나. 보고사항

내 용	보 고 기 일	비 고
○ 사업계획 승인결과 보고	승인후 10일 이내 (2003지원사업 : '02.12월말)	붙임 별지 제1호 서식
○ 사업계획 변경승인(결과) 요청(보고)	승인후 10일 이내 (요청 : 즉시)	붙임 별지 제2호 서식
○ 분기별 사업추진실적 보고	매분기 익월 10일	붙임 별지 제3호 서식
○ 사업정산결과 보고	사업종료후 10일 이내	붙임 별지 제4호 서식

※ 도지사는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준공검사(사용승인검사), 건축물 등기,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사업비 정산 등 사업의 마무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6. 2004년도 사업신청 안내

가. 신청서 제출기관 : 도지사 → 농촌진흥청장

나. 신청자격 : 14개 특성화 지원대학

다. 사업계획 제출절차

- 농림부에 기 제출한 특성화대학 5개년 투자계획상에 계획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농림사업실시규정에 따라 사업계획을 제출(2003. 2월 말까지)

< 별지 제1호서식 >

자체 가 26-12

사업계획 승인결과 보고			
(○○ 대학)			
시 설 명 (기자재명)	시 설 규 모 (기자재 수 량)	사 업 비	비 고

210mm×297mm

(일반용지 60g/m²)

< 별지 제2호서식 >

자체 가 26-13

사업계획 변경승인(결과) 요청(보고)						
(○○ 대학)						
당		초	변			경
시 설 명 (기자재명)	시 설 규 모 (기자재 수 량)	사 업 비	시 설 명 (기자재명)	시 설 규 모 (기자재 수 량)	사 업 비	변 경 사 유
* 변경사유를 상세하게 기재하고, 변경승인 요청의 경우는 도지사의 검토의견 반드시 첨부						

210mm×297mm

(일반용지 60g/m²)

< 별지 제3호서식 >

심 사 제 외

분기별 사업추진실적 보고(/4분기)						
(○○대학)						
시설명 (기자재명)	시설규모 (기자재수량)	사업비	집행액	사업추진 상황	사업진도	완료 예정일
	평, 개	천원	천원			

210mm×297mm
(일반용지 60g/m2)

< 별지 제4호서식 >

총 공통 9

사업정산결과 보고					
(○○ 대학)					
시설명 (기자재명)	시설규모 (기자재수량)	사업비	집행액	잔 액	비 고
	평, 개				잔액발생 사유 등
* “비고”란에는 잔액발생 사유 등을 기록					

210mm×297mm
(일반용지 60g/m2)

여 백

Ⅲ . 인 력 육 성

44 후계농업인 육성(자율)

① 후계농업인육성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농촌인력과(과장 정황근, 사무관 강형석)입니다.

1. 목 적

- 농업에 종사할 의욕이 있는 청장년을 적극 발굴·지도하여 농업에 대한 적성과 능력을 높이고, 경영개선 및 신규 영농창업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자립영농 정착을 촉진시켜 유능한 미래 농업 전문인력의 체계적 확보·유지에 기여

2. 시책 및 추진방향

- 재촌 농업인에 대한 경영개선 지원과 농업계학교 졸업자 등의 창업자금 지원을 통하여 미래 농업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육성
- 타산업분야 종사자 또는 농업분야 이외의 학교졸업자 중 농촌정착을 원하는 자에 대한 농촌정착 유도
- 여성의 농촌정착 유도
- 북한 이탈주민중 보호대상자에 대한 영농정착 지원
- 후계농업인의 성공적인 영농정착을 위한 경영지도 및 사후관리 강화

3. 근거법령

- 농업·농촌기본법 제12조(후계농업인의 육성)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 명, 백만원)

구 분	'93~'01년	2002년	2003년(예산안)			2004이후	
			소 계	신규후계 농업인	취농창업 후계농업인		
사업량	108,794	2,500	2,000	800	1,200	38,000	
사업비	계	1,141,630	100,000	96,000	24,000	72,000	2,494,000
	용자	1,141,630	100,000	96,000	24,000	72,000	2,494,000

5. 2003년도 사업시행요령

□ 사업개요

가. 사업내용

1) 사업배경

- 농촌인구의 급속한 감소 및 노령화·부녀화로 농업인력이 점차 감소하여 젊고 유능한 전문 후계농업인력 육성 필요

2) 지원대상자

<신규후계농업인>

- 병역필 또는 면제자와 여성으로서 사업시행년도 1.1일 현재 40세미만인 자중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되어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자와 특별·광역시장, 시장·군수가 시·군 농정심의회 심의를 거쳐 후계농업인 육성대상자로 선발·확정한 자(단, 농정심의회가 없는 경우에는 시·군 농정심의회에 준하는 별도 심의회를 구성하여 심의)

<취농창업후계농업인>

- 병역필 또는 산업기능요원 편입을 원하는 자와 면제자, 여성으로서 사업시행년도 1.1일 현재 35세미만인 자중 ① 농업계학교 졸업(졸업예정자 포함)하고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중 영농승계를 원하거나 독립하여 영농에 종사(예정자 포함)하는 자, ② 2001년도 이전에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되어 복무중인 자중 영농승계를 원하거나 독립하여 영농에 종사(예정자 포함)하는 자, ③ 타산업분야 종사자 또는 농업분야 이외의 학교졸업자중 영농에 종사하기를 원하거나 영농에 종사한지 4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영농승계라 함은 신청자가 정착하고 있거나 정착하고자 하는 지역에서 부모 또는 형제의 영농기반을 상속·증여 또는 입차 등의 형태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영농기반을 확보(계획 포함)하는 경우(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 확인)를 말함(단, 후계농업인으로 기 선정된 자로부터의 영농승계 제외)

3) 지원단가

<신규후계농업인>

- 1인당 지원규모 : 본인들의 영농설계에 따라 20~50백만원까지 차등지원

<취농창업후계농업인>

- 1인당 지원규모 : 본인들의 영농설계에 따라 20~100백만원까지 차등지원
 - 산업기능요원 편입대상자에 대해서는 시·군의 예산형편에 따라 지원금액 하향조정(20백만원까지) 가능

4) 지원조건

가) 용자조건

- 채원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금리 및 용자기간 : 연리 4.0%, 국고용자 100%,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15년)

나) 용자 취급기관 : 농협중앙회

- 경종 농업분야 : 농협, 축산분야 : 축협
 - ※ 용자취급기관은 용자금 지급 및 회수와 이자 징수에 관한 업무를 자금지원대상자의 편의를 위하여 일선조합으로 하여금 용자업무를 수행토록 조치

5) 분야별 지원대상 사업

- 농업경영컨설팅 자부담금 지원(용자)
 - 후계농업인이 원할 경우 농업경영컨설팅 자부담금중 60%(사업비의 30%)이내인 자금
- 경종농업분야(수도작, 원예(채소, 화훼등), 과수, 특작, 복합영농등)
 - 농지구입, 고정식온실·하우스시설·양액재배시설 설치, 과원조성, 묘목 및 종근(화훼묘 포함)구입, 버섯재배사·저장시설·관수시설 설치, 대형농기계(지원금의 50%이내)·컴퓨터구입·기타 농업기반시설의 설치

※ 표고버섯(노지재배에 한함), 밤, 송이버섯, 산나물, 산약초, 장뇌, 조경수, 분재, 대추 등 임산물 생산 또는 버섯종균 배양사업, 내수면 어업 등의 사업에 대해서는 지원이 불가

○ 축산분야(한(육)우, 낙농, 양돈, 양계, 기타 축산 등)

- 축사신축 및 시설개선, 가축입식, 폐수처리시설 설치, 초지조성, 사료포 조성, 대형농기계(지원금의 50%이내), 사료저장시설, 컴퓨터구입, 기타 축산기반시설

○ 수도작 및 영농시설물 설치를 위한 농지구입 자금의 경우 논은 평당 30천원, 밭은 평당 35천원까지 지원(과수원 구입의 경우 식재된 과수제외)

- 부부, 형제자매 또는 직계존비속 소유농지는 지원불가(다만, 기혼인 형제자매로서 세대가 분리되어 있고 동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원 가능)

○ 축사, 고정식온실, 하우스 시설 등 기존의 영농시설물(중고농기계 포함)에 대한 구입비 지원가능

※ 지방법원(등기소) 등의 등산 또는 부동산 매매계약서 검인(확인인)을 필한 경우에 한함

나. 2003사업비(예산안) 내용

내 용 별	사업량	사 업 비					
		사업비 합 계	예산액(농특회계)			지방비	자부담
			계	보조	융자		
계	명 2,000	백만원 96,000	96,000	-	96,000	-	-
신규후계 농업인	800	24,000	24,000	-	24,000	-	-
취농창업후계 농업인	1,200	72,000	72,000	-	72,000	-	-

* 융자조건 : 연리 4.0%, 5년거치 10년 균분상환

□ 추진체계

가. 사업주관기관 : 시장·군수

- 농업기술센터(특별시·광역시, 기타시), 읍·면 : 대상자 심의·추천
- 시·군 또는 농업기술센터 : 대상자 선정 및 지원액 결정, 대상자 교육
사업실적확인, 사후관리
- 농·축협 : 사업비 지원, 지원융자금 관리

나. 사업담당부서

- 농림부 : 농업정책국 농촌인력과(TEL 02-500-1683)
- 시·도 : 농어촌개발부서(농정국 농업정책과, 농정과 등)
- 시·군·자치구 : 산업과, 농업기술센터

다. 대상자선정

1) 선정절차

- 대상자 심의·추천
 - 농업기술센터, 읍·면의 장은 평가 다음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 결과 합계점수가 신규후계농업인의 경우 360점, 취농창업후계농업인의 경우 300점 이상된 자에 한하여 시장·군수 등에게 추천
 - 대상자 순위결정
 - 시장·군수 등은 읍·면의 장 등이 추천자한 자중에서 우선순위 기준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는 우선순위 부여후 평가점수가 높은자 순으로 순위부여
 - 대상자 확정
 - 시장·군수 등은 우선선정 기준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는 우선선정
 - 점수가 높은자 순으로 대상자 확정
- ※ 다만, 시장·군수 또는 농업기술센터의 장은 지역농업여건 등을 고려하여 품목간 균형있게 후계농업인이 선발될 수 있도록 조정 가능

<신규후계농업인 평가기준 >

구 분	평가방법 및 배점	비 고
영농정착의욕 (10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농 정착의욕(10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 : 100점(신청자의 20%) - 중 : 70점(" 60%) - 하 : 40점(" 20%) 	
학력 및 영농 교육훈련 (13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 력(8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남자의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계대학, 한국농업전문학교, 여주농업전문교육원 : 80점 - 최고농업경영자과정 수료자, 농업계 전문대학 및 자영농과(자영농고, 농고중 자영농과) 졸업자 : 70점 - 일반대학(4년제) 및 농업계 고등학교 졸업자 : 60점 - 기타 학교졸업자 : 40점 * 사업시행년도 졸업 예정자는 졸업자로 인정 <여자의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대, 농진, 자영농과, 농고 졸업자 : 80점 - 일반대학, 일반전문대학 졸업자 : 70점 - 기타 학교졸업자 : 60점 * 사업시행년도 졸업 예정자는 졸업자로 인정 ○ 교육훈련실적(통산일수) : 5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위기간이 2일이상인 경우만 통산일수에 반영 < 남자의 경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개월 이상 : 50점 - 2개월 이상 : 40점 - 1개월 이상 : 30점 - 15일 이상 : 20점 - 7일 이상 : 10점 < 여자의 경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개월 이상 : 50점 - 15일 이상 : 40점 - 10일 이상 : 30점 - 5일 이상 : 20점 - 3일 이상 : 1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훈련기관은 다음기관에서 이수한 실적에 한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림부가 인정한 교육기관 - 농촌진흥청, 각 시·도, 농·축협 의 훈련기관 - 농진청장이 인정한 연수기관, 농업기술센터 및 동 연수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과목이 개설되지 않은 특별작목(예 : 선인장 재배 등) 재배농가에서의 실습실적(재배농가 주소지 관할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인정하는 경우)도 교육훈련 실적으로 인정가능 - 대학 또는 전문대 등 농업계 학교부설 영농훈련기관 - 한국농업전문학교, 여주농업전문교육원(재학중의 장기 현장실습기간 포함)

구 분	평가방법 및 배점	비 고
영농경력 (100점)	○영농 경력(영농 4-H 경력포함) < 남자의 경우 > - 6년미만은 50점으로하되, 6년이상 1년단위로 10점 씩가산 . 1년미만 0점 . 1년이상 6년미만 50점 . 6년이상 7년미만 60점 . 7년이상 8년미만 70점 . 8년이상 9년미만 80점 . 9년이상 10년미만 90점 . 10년이상 100점 < 여자의 경우 > . 1년이만 0점 . 1이상 2년미만 50점 . 2이상 3년미만 60점 . 3이상 4년미만 70점 . 4이상 5미만 80점 . 5이상 6미만 90점 . 6이상 100점 - 한국농업전문학교, 여주농업 전문교육원 졸업자 경력평가에 재학기간을 1년단위로 10점씩 가산, 4-H경력은 1년단위로 5점씩 가산하여 평가	○농업계학교(농업계학과포함) 졸업자 및 재학증인자는 재학 기간을 영농 경력으로 인정 ○여성에 대하여는 혼인전 영농 종사 경력도 인정 ○농업 관련분야의 교사, 지도사, 연구사로 근무한 경력은 영농 경력으로 인정 * 북한 이탈주민의 사회적응훈련 기간 포함 * 영농4-H경력은 농업에 종사 하기 전의 경력임 ○군근무경력(보충역 포함)은 영농경력으로 간주하되 1년단위로 5점씩 가산(1년미만은 5점)

구 분	평가방법 및 배점	비 고
영농기반 (17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농기반(170점) <남자의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ha 이상 : 170점 - 1.5ha~2.0ha미만 : 150점 - 1.0ha~1.5ha미만 : 130점 - 0.5ha~1.0ha미만 : 90점 - 0.2ha~0.5ha미만 : 50점 <여자의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ha 이상 : 170점 - 0.7ha~1.0ha미만 : 150점 - 0.5ha~0.7ha미만 : 120점 - 0.2ha~0.5ha미만 : 80점 <공통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인 소유 및 상속 가능한 직계 존속 보유분은 100% 영농기반으로 인정 * 서면계약한 0.5ha이상의 임차농지는 50%를 영농기반으로 인정(단, 5년이상 장기계약한 임차농지의 경우 70%까지 인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사업작목별 평가기준은 별첨 세부평가기준표를 참고하여 평가(별표 1) * 농경지는 축산분야의 영농기반으로도 인정 * 직계존속이 임차한 임차농지도 본인이 임차한 것으로 인정
영농사업계획 (10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농사업계획(10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배지역 및 재배기술상의 적합성 : 40점 - 투자 및 자금조달계획 : 30점 - 생산 및 판매계획 : 20점 - 사업분야에 대한 타농가재배작목과의 작목집단화(조화)가능성 : 10점 ※ 평가서에 평가한 점수가 영농사업계획 점수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별도의 사업계획을 받아 평가(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 평가) * 사업계획의 평가시 4개항목에 대한 타당성, 치밀성 및 발전가능성을 평가(각 항목별 점수는 만점시 점수임) * 사업계획서 작성시 해당분야 지도공무원 등의 조언 또는 민간 컨설팅업체의 컨설팅을 받은후 서명을 받은 경우 인정

구 분	평가방법 및 배점	비 고
<p>○ 가점사항</p>	<p>○ 농업계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자, 영농 사업계획과 관련 분야의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 여성(영농세대주)에 대하여는 총점(600점)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각각 20점 가산</p> <p>○ 환경친화적 농업을 2년이상 계속하거나 토착기술을 현대화하여 자원절약형 농업을 2년이상 계속하는자에 대하여는 총점(600점)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내에서 20점 가산</p> <p>- 단, 고품질쌀생산을 위한 수도작 농지매입의 경우는 계속 환경친화적 농업에 종사하지 않았더라도 총점(600점)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내에서 20점 가산</p> <p>○ 정보통신분야의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총점(600점)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20점 가산</p>	<p>○ 한국농업전문학교, 여주농업전문교육원 추천은 영농기반조성이 가능한 자에 한함</p> <p>○ 일반 농업계학교장 추천은 영농기반조성이 가능한 학생에 한함</p>

<취농창업후계농업인 평가기준>

구 분	평가방법 및 배점	비 고
영농정착의욕 (10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농 정착의욕(10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 : 100점(신청자의 20%) - 중 : 85점(" 60%) - 하 : 70점(" 20%) 	
학력 및 영농 교육훈련 (20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 력(10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계대학, 한국농업전문학교, 여주농업전문교육원 : 100점 - 일반대학(4년제), 최고농업경영자과정 수료자, 농업계 전문대학 및 자영농과(지역농고, 농고중 자영농과) 졸업자 : 90점 - 일반전문대학 및 농업계 고등학교 졸업자 : 80점 - 기타 학교졸업자 : 70점 * 사업시행년도 졸업 예정자는 졸업자로 인정 ○ 교육훈련실적(통산일수) : 10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개월이상 : 100점 - 3개월이상 : 85점 - 2개월이상 : 70점 - 1개월이상 : 60점 - 15일이상 : 40점 - 7일이상 : 20점 * 단위기간이 2일이상인 경우만 통산일수에 반영 * 교육과목이 개설되지 않은 특별작목(예: 선인장 재배 등) 재배농가에서의 실습실적(재배농가 주소지 관할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인정한 경우에 한함)도 교육훈련실적으로 인정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훈련기관은 다음기관에서 이수한 실적에 한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림부가 인정한 교육기관 - 농촌진흥청, 각 시·도, 농·축협외의 훈련기관 - 농진청장이 인정한 연수기관, 농업기술센터 및 동 연수기관 - 대학 또는 전문대 등 농업계 학교부설 영농훈련기관 - 한국농업전문학교, 여주농업전문교육원(재학중의 장기현장실습기간 포함)

구 분	평가방법 및 배점	비 고
영농사업계획 (20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농사업계획(20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배지역 및 재배기술상의 적합성 : 80점 - 투자 및 자금조달계획 : 60점 - 생산 및 판매계획 : 40점 - 사업분야에 대한 타농가재배 작목과의 작목집단화(조화) 가능성 : 20점 ※ 평가서에 평가한 점수가 영농사업계획 점수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별도의 사업계획을 받아 평가 (별지제13호서식에 의한 평가) * 사업계획의 평가시 4개항목에 대한 타당성, 치밀성 및 발전 가능성을 평가(각 항목별 점수는 만점시 점수임) * 사업계획서 작성시 해당분야 지도공무원 등의 조언 또는 민간 컨설팅업체의 컨설팅을 받은후 서명을 받은 경우 인정
○가점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농 사업계획과 관련 분야의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에 대하여는 총점(500점)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내에서 20점 가산 ○ 정보통신분야의 자격증 소지자에 대하여는 총점(500점)를 초과하지 않은 범위내에서 20점 가산 ○ 농산물 관련 유통 및 무역 등에 종사(1년이상)한 사실을 입증한 자는 총점(500점)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내에서 각각 20점 가산 	

2) 선정시 우선순위

<신규후계농업인>

-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 종합점수가 동점일 경우에는 여성, 산업기능요원 편입자, 농업계학교 출신자, 관련분야의 국가기술 자격증 소지자 순

<취농창업후계농업인>

- 동점일 경우에 한하여 전 세대 이주가 확인된 자를 취농창업후계농업인으로 우선 선정

3) 선정절차

가) 대상자 심의·추천

- 읍·면, 농업기술센터(이하 “읍·면 등”이라 한다) 심사위원회 심의·추천
 - 읍·면 등의 장은 읍·면 등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영농정착의욕, 학력 및 영농 교육훈련, 영농경력, 영농기반 등을 평가기준에 의하여 신규후계자와 취농창업후계자로 구분하여 검토·평가하고 개인별 신용상태 및 사업자금 융자 적격여부에 대해서 심사
 - 적격자에 대해서만 관련서류(신청서류등)를 첨부하여 시장·군수 등에게 추천(별지 제2호서식)
- ※ 적격자 : 신규후계농업인 360점이상, 취농창업후계농업인 300점이상

<읍·면 등의 심사위원회 >

- 읍·면·동 산업계장 또는 부읍면장, 사무장
- 시장·군수 등이 지정하는 읍·면·동 담당 농촌지도직 또는 이에 준하는 공무원
- 농·축협 등 관련 융자취급기관 임직원
- 우수농가 3인 등 총 6인내외(후계농업인 대표 1인이상 포함)

나) 대상자 순위 결정

<공통사항>

- 시장·군수 등은 읍·면 등의 장이 추천한 자를 대상으로 시·군 농정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시행 전년도 2월말까지 지원 대상자 우선순위와 지원금액을 결정하되 다음사항을 고려하여 우선 순위 결정에 적정을 기하도록 함
 - 시장·군수 등은 후계농업인 선발에 있어 지역 농업여건과 품목별 전업농가 육성대상자수·농가호수 등을 감안하여 품목간 균형있게 후계농업인이 선발될 수 있도록 함(이 경우 품목간 순위부여 등 객관적 근거 마련)
- 농업이외의 다른 직업을 겸하여 가진 자에 대하여는 후계농업인 추천 선발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다만, 농업회사법인등 농업관련 직종과 겸업하고 있는 경우는 농업종사자로 봄)

<신규후계농업인>

- 시장·군수 등은 2001년 이전 산업기능요원 편입자에 대하여는 시·군 농정심의회에서 지원금액만 결정하여 우선적으로 사업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함
- 한국농업전문학교, 여성농업전문학교 졸업자로서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신규후계농업인으로 우선순위를 부여하여야 함
- 시장·군수 등은 시·군·구별 선정예정인원의 20%수준내외를 산업기능요원 편입자(2001년 이전 편입자), 자영자 양성 지정고등학교 농·공(종)고 자영농과,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순수 농업전문대학 졸업자(졸업예정자 포함), 각 대학 최고 농업경영자과정 수료자에 배정하여 동학교 출신자를 신규후계농업인으로 우선 선발될 수 있도록 함. 단, 상기학교 졸업자(졸업예정자 포함)가 20%에 미달할 경우 일반 농대 및 농업전문대, 농고 출신으로 충원(농업계학교 출신 우선선발 원칙)
 - ※ 자영자 양성 지정고등학교(9) : 여주자영농고, 흥천농고, 보은자영고, 공주농고, 김제자영고, 강진농고, 안동생명과학고, 경남자영고, 서귀포산업과학고

- 사업시행년도 이전에 농어촌구조개선사업자금(농·축산경영자금, 귀농자 창업자금 제외)을 지원받아 상환중인자와 사업시행년도에 선정된 자에 대하여는 후계농업인 선정대상에서 제외
- 시장·군수 등은 농어촌구조개선사업자금 지원여부를 용자취급기관을 통하여 농정심의회 이전에 확인 실시

다) 대상자 확정

<공통사항>

- 시장·군수 등은 시·군·구별 후계농업인 육성자금 지원액이 확정되면 배정된 예산범위내에서 다음사항을 고려하여 지원대상자와 지원금액을 확정
- 부부가 모두 후계농업인 지원자금을 신청한 경우 원칙적으로는 부부중 한사람에게만 지원 가능(다만, 부부의 주사업품목이 각각 다를 경우 부부 모두에게 사업자금 지원은 가능하나 신청자수 등을 고려하여 시·군 농정심의회에서 지원여부 결정)
 - ※ 시장·군수 등은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를 예비대상자로 확보하여 신청자중 사업을 포기하거나 결격사유자 발생시 예비대상자 중 평가점수가 높은자 순으로 시·군 농정심의회에서 즉시 대체
 - ※ 시장·군수는 후계농업인 확정과 동시에 용자취급기관에 신용조사를 의뢰하여 신용불량 후계농업인의 신속한 대처 또는 후계농업인 교체를 통하여 신속한 자금집행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신규후계농업인>

- 시장·군수 등은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2001년 이전 편입)된 자에 대하여는 우선 지원
- 시장·군수 등은 특수전문대 출신 우선선발 원칙에 따라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 신규후계농업인으로 우선 확정
 - 시장·군수 등은 시·군·구별 선정 및 지원인원(산업기능요원 지원 대상포함)의 20% 이상을 농업계학교 출신 우선선발 원칙에 따라 신규 후계농업인으로 우선 확정
- 시장·군수 등은 시·군별 선정예정인원의 20%범위 내에서 평가점수가 360점이상인 여성을 우선 선정할 수 있음

<취농창업후계농업인>

- 한국농업전문학교 졸업자(사업시행년도 졸업예정자 포함)로서 평가 기준으로 300점 이상인 자에 대하여는 사업자금지원 없이 대상으로 선정 가능

라. 사업시행

1) 사업계획수립 및 변경

- 후계농업인으로 선정된 자가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하여 사업계획변경 신청(신고)서를 시장·군수 등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동 신청(신고)서의 사업추진계획을 확인·관리하여야 함
- 사업시행년도에 타 사업분야 또는 동일사업 분야내에서 품목을 변경하고자 하거나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군수 등은 타당성을 검토하여 농업여건의 변화 등으로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경우 사업변경을 승인
- 사업시행년도 경과 후 동일사업 분야내에서 품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군수 등에게 사업계획 변경신청(신고)서를 제출하면 가능하고, 타 사업분야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군수 등은 타당성을 검토(기 지원된 자금을 타 사업분야에 투자한 것이 확인된 경우에 한함)하여 사업변경을 승인

2) 사업비 지원방법

- 사업자금 배정
- 농림부장관은 사업시행년도 후계농업인 육성자금 지원액이 확정되면 시·도별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와 농협중앙회에 시달
- 자금배정을 받은 농협중앙회장은 즉시 시·도 및 시·군 계통조직에 배정
- ※ 시·도지사는 지원대상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융자취급기관(농협, 또는 축협) 변경요청을 할 경우 농림부장관에게 융자취급 기관변경 요청

○ 용자실시 등

- 용자취급기관의 용자지원에 관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과 『농특회계용자업무지침』에 의함
- 사업자금의 용자는 후계농업인의 편의에 따라 1인의 연대보증에 의한 신용대출,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대출, (후취)담보대출로 분할 용자할 수 있음.
- 시장·군수는 교육이수자에 대하여 지원대상자가 작성한 사업추진계획(확인서)의 사업추진 일정을 검토한 후 자금소요 성격으로 보아 사업추진전 일시에 자금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예 : 농지구입등)에는 사업추진계획(확인)서를 발급(별지 제4호서식)하여 지원대상 농업인이 사업추진전에 자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함

단, 대상자 변경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전교육 이수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차기 교육을 이수할 것임을 전제로 미이수시에는 기지원된 자금을 회수하여도 좋다는 약속서를 제출받아 확인서 발급가능(이 경우 시장·군수는 차기 교육대상에 반드시 포함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에 불응할 경우 사업취소와 함께 지원된 자금을 회수)

- ※ 다만, 축사신축 등 상당한 날짜(2개월 이상)가 소요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지원자금의 목적외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추진계획(확인)서의 사업추진 일정에 따라 분할하여 인출할 수 있도록함(기반시설 등 사업기간이 2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사업자금 일시 전액 인출 가능)

- 용자취급기관장은 시장·군수 등이 발급한 사업추진 계획(확인)서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당해년도 지원자금을 일시에 전액 용자 지원하여야 함

- ※ 후계농업인이 사업자금(용자금)을 당해년도내에 용자받지 아니하면 자격이 상실됨

- ※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된 자중 사업자금 지원을 신청하지 않은자와 사업자금 지원은 신청하였으나, 당해년도에 사업자금을 용자받지 못한 자는 후계농업인 자격이 자동 상실됨

- ※ 이자는 연 1회 후취(대출일 기준 만 1년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후계농업인이 분할납부를 희망할 경우 이자납부 시기 조정 가능

마. 교육훈련 및 행정사항

1) 교육훈련

<신규후계농업인>

- 시장·군수 등은 자체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신규후계농업인으로 선정된 자에게 후계농업인으로 성장발전함에 필요한 각종지원 및 행정절차 등에 관한 공통교육과 영농정착에 필요한 분야별 영농기술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구 분	교육기간	교육기관	교육대상
공 통 교 육	5일간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	사업시행년도에 선발된 후계농업인
영농기술교육	1주이상	농업계학교, 농업기술센터	"

※ 영농기술교육기관은 현지여건, 후계농업인의 희망 등을 감안하여 시장·군수 등이 결정

- 다만,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후계농업인은 영농기술교육을 면제할 수 있음
 - 영농사업계획상의 분야와 관련된 농업계학교(대학, 전문대, 고교 등) 졸업자
 - 최근 2년이상 영농사업계획상의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자

<취농창업후계농업인>

- 시장·군수는 취농창업후계농업인으로 선정된 자에게 5일간의 공통교육 및 3주이상의 현장실습교육(정보화교육 포함)을 이수토록 함(단, 신청자가 제출한 영농사업계획서상의 농업분야와 관련된 농업계학교(대학, 전문대, 고교 등) 졸업자 및 영농사업 계획서상의 농업분야에 최근 2년이상 종사하고 있는 자는 현장실습교육을 면제할 수 있음)

<공통사항>

-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 등은 후계농업인의 교육훈련, 경영실태 조사 등에 필요한 예산과 인력을 적극 확보·지원하여야 함
- 시장·군수는 신규후계농업인의 경우 공통교육 및 영농기술교육 이수자, 취농창업후계농업인의 경우 현장실습교육 이수자에 대하여 사업추진계획(확인)서 발급사실을 읍·면·동 취업기관에 통보하여 지원자금을 읍·면·동에서 받을 수 있도록 함

바. 행정사항

1) 선정결과 보고

- 시장·군수 등은 사업시행년도 1월 15일까지 사업대상자와 지원금액을 확정하고 그 결과를 지원대상자에게 통보하고 그 결과 및 익년도 사업신청자 현황을 계통보고(신규후계농업인, 취농창업후계농업인 구분)
- 시·도지사는 후계농업인 선정결과(신규후계농업인, 취농창업후계농업인 구분)를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작성 사업시행년도 2.10까지 농림부장관에게 보고
 - 시·군, 구별 신청 및 선발인원과 지원금액만 집계 보고(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된자도 선발 및 지원인원에 포함 집계)

2) 사후관리

- 사후관리기간
 - 후계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정착을 위하여 융자금 지원연도부터 융자금 상환완료연도까지 사후관리 실시
 - 한국농업전문학교 졸업자로서 사업자금을 지원받지 아니한 후계농업인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연도부터 15년간 사후관리 실시
- 시장·군수 등은 후계농업인으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 사업추진계획(확인)서의 사업추진 일정에 맞추어 사업장을 방문 사업추진현황을 확인하여야 하며, 지원자금이 사업계획 외의 타용도 전·유용, 사업장이탈 등 사후관리 실시
 - 시장, 군수 등은 현지 확인결과 융자금 회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융자취급기관에 융자금을 회수할 것을 통보
- 시장·군수 등은 후계농업인 관리카드(별지 제5호서식)를 작성, 비치하고 후계농업인 선정된지 3년이내인 자는 매년, 3년이상인 자에 대하여는 격년제로 농·축협 등 융자취급기관과 매년 경영실태를 조사·분석하고 교육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에 대하여는 영농상담 및 영농기술교육 실시(영농종사 여부는 지속적으로 확인)
 - 취농창업후계농업인 자금을 지원받은 자는 경영장부를 작성하여 매년 시장·군수 등에게 제출(익년 1월말)해야 하며, 시장·군수 등은 경영일지를 분석하여 교육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에 대하여 영농상담 및 영농기술교육 실시
 - 시장·군수 등은 취농창업후계농업인 자금지원후 3년이 도래되는 연도에 취농창업후계농업인에 대한 경영평가 실시
- 시장·군수 등은 취농창업후계농업인의 영농기반 확보(영농승계)여부를 확인

3) 후계농업인 사업취소 및 지원자금 회수

가) 사업취소사유

- 시장·군수 등은 후계농업인에게 다음사항의 사업취소 또는 용자금 회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현장확인 실시(별지 제6호서식)
 - 지원자금을 용자받은 후 상환기일전에 사업장을 이탈하거나 지원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
 - 도시이주 등으로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자
 - 회사, 공공기관 등에 상근 직원으로 채용되어 월정급여액(봉급) 및 연봉을 받는 자(단, 영농에 지장이 없는 영농현장에서 출·퇴근이 가능한 생계보전 부업형 취업자, 농한기를 이용한 일시취업자, 격일·격주 2~3회 교대 근무자, 선거 또는 위촉에 의하여 선임된 상근 또는 비상근 근무자는 제외)
 - 본인의 농업 종사분야와 무관한 사업체를 경영하고 있는 자(자금지원 당시보다 사업분야 경영규모가 축소된 자에 한함)중 후계농업인으로 인정할 수가 없다고 판단되는 자
 - 형사상의 소추를 받아 형집행중인 자로서 영농에 계속 종사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자
 - 기타 시장·군수 등이 후계농업인으로 존속시킬 수 없다고 판단되는 자(단, 농업계대학, 대학원 등에 진학할 경우 후계농업인 자격을 유지하고 재학기간동안 매년 1회이상 재학증명서 징구)
 - 영농승계를 위하여 취농창업후계농업인으로 선정된 자가 영농승계 계획에 의한 영농기반을 확보하지 못하여 2회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

나) 지원자금회수

- 시장·군수 등은 현장을 확인한 결과 사업취소 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즉시 사업대상자에게 작목의 특성, 계절적 특성 등을 감안, 영농에 종사할 적절한 기한을 설정하여 시정할 것을 통보하고, 사업대상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체없이 사업대상자에게 지원자금을 상환할 것을 통지함과 동시에 용자취급기관에 지원자금을 회수할 것을 통보(단, 무단이주 등으로 영농종사가 불가능한 것이 확실한 경우 15일 이내)

- 영농승계 계획에 의한 영농기반 확보를 하지 않은 자에게는 15일 이내에 선정당시 영농승계 계획에 의한 영농기반을 확보할 것을 통보하고, 시정이 되지 않을 경우 15일 이내에 영농기반을 확보할 것을 다시 통보 하였으나 사업대상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체없이 사업 대상자에게 지원자금을 상환할 것을 통지함과 동시에 용자취급기관에 지원자금을 회수할 것을 통보
- 시장·군수 등으로부터 지원자금 회수를 통보받은 용자취급기관은 지원자금을 회수
- 지원자금의 상환조치를 통보받은 자는 용자취급기관에서 정한 기한내에 원리금을 일시상환하여야 하며 그 기한을 경과한 경우에는 기한경과 일로부터 연체 이자율을 적용
 - 다만, 사망·신병등으로 불가피하게 사업을 계속할 수 없거나 기상재해등으로 사업이 취소된 경우중 용자금의 일시 회수로 인하여 생계유지가 극히 곤란하다고 시장·군수 등이 판단할 때에는 용자시 용자조건에 따라 용자금을 정상상환하게 할 수 있음. 이 경우 용자취급기관에 정상상환 조치사유를 명기하여 당초 용자조건에 따라 용자금을 회수토록 통보
-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된 자가 편입후 6년 이내에 자금을 상환할 경우 기 납부한 이자 등에 대해서 연체이자율을 적용하여 상환토록 조치
- 시장·군수 등이 사업취소 조치를 한 경우에는 사업취소자의 명단과 사유를 매월말 기준으로 관련기관 및 단체에 통보하고, 반기 익월 10일까지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여 반기익월 20일까지 농림부장관에게 보고

4) 사업장소의 이전

- 후계농업인이 사업장소를 이전하여 영농에 종사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군수 등의 승인을 받아 사업장소를 이전할 수 있으며 이전후의 사후관리는 주소지 관할 시장·군수 등이 담당

- 시장·군수 등은 사업장소 이전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승인하였을 때에는
관련기관(시·도, 용자취급기관등)에 통보 및 보고
 - 이 경우 사업장소를 타 시·도로 이전할 경우에는 시·도지사를 경유
하여 통보
- 거주지와 사업장 이전 등으로 용자취급기관이 변경될 경우 이전전 관할
용자취급기관과 이전후 관할 용자취급기관은 행정기관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대출금을 이관·인수

5) 후계농업인의 교체 및 승계

가) 후계농업인의 교체

- 시장·군수 등은 사업시행년도 11월말까지 지원자금을 용자받지 않은 자에
대하여는 사유를 제출토록 하여 사업추진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예비대상자중 우선순위가 높은자 순으로 즉시 교체하고 교체
결과를 용자취급기관에 통보

나) 후계농업인의 승계

- 사업자금 용자후 후계농업인의 사망·신병등으로 인하여 배우자,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에게 승계시키고자 할 때에 시장·군수 등은 승계사유를
검토하여 승계여부 결정
 - 시장·군수 등은 승계자에게 반드시 후계농업인 교육훈련을 이수하도록 함
 - 용자금은 승계자 명의로 서류와 보증인을 갱신하여야 하며 용자금 및
용자조건은 사망한 자 등의 잔여액과 조건 등을 승계
 - 배우자,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에게 승계시킨 경우 그 결과를 관계
기관(용자취급기관 등)에 통보
- 여성 후계농업인이 결혼으로 인해 영농에 계속 종사할 수 없을 경우에는
형제 또는 자매에게 승계 가능(이 경우 위의 후계농업인 승계절차에 준함)

다) 사후관리 기간이 경과한 후계농업인의 확인서 발급

- 사후관리 기간이 경과한 후계농업인에 대한 확인서를 발급할 경우 현지 확인을 거친후 사후관리 기간 경과후에도 계속하여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확인서(별지 제14호 서식)를 발급

6) 후계농업인에 대한 지원강화 등

-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 등은 사업실적이 우수한 후계농업인에 대하여 농촌발전을 위한 투융자 자금을 우선지원하고
- 농협중앙회장과 농수산물유통공사사장은 후계농업인의 영농활동에 필요한 생산기자재 공동구입, 생산물 공동출하 등 유통판매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농·축산물 수매비축시 후계농업인이 생산한 농·축산물을 우선 수매하고 생산물 판매 알선 등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 농촌진흥청장, 시·도지사는 동 사업지침 이외의 후계농업인력의 확보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농촌인력육성 업무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계획 수립후 추진

7) 보고 (보고기관 → 농림부)

보고기관	보 고 내 용	보고시기	비 고
시·도지사	후계농업인 선정결과 및 익년도 대상자 신청결과	사업시행년도 2.10까지	별지 제3호서식
시·도지사	사업취소 및 지원자금 회수현황	반기익월 20일까지	별지 제7호서식
농협중앙회장	융자실적	반기익월 30일까지	별지 제9호서식
농협중앙회장	지원자금회수 불가능한 사업 취소자 현황	반기익월 30일까지	별지 제10호서식

6. 2004년도 사업신청 및 사업대상자 선정 안내

가. 신청서 제출기관

- 영농정착(정착예정지역 포함)지역의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와 후계농업인 심의·추천권한을 위임받은 해당 품목별 생산자단체
 - 단, 시지역(읍·면지역 제외)과 농정심의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은 특별시, 광역시 등은 주소지 관할 농업기술센터

나. 신청자격

<신규후계농업인>

- 농업·농촌기본법 제3조 제5호 및 동법시행령 제5조, 동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에 영농정착중이거나, 영농정착하고자 하는 자 중 사업시행년도 1.1현재 40세 미만이고 병역필 또는 면제자와 여성으로서,
 - 30세미만인 미혼 여성으로서 영농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
 - 생산자 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는 자중 품목별 생산자 단체장이 추천한 자
 - 영농에 종사하고자 하는 직업군인중 전역희망자
 - 2001년도 이전에 후계농업인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된 자중 사업시행 연도에 의무종사기간이 만료되는 자
 - 2년이상 농업을 경영하고 (사)한국농업경영인연합회의 시·군 또는 읍·면 단위 연합회장의 추천을 받은 자
 - 북한 이탈주민중 보호대상자로서 영농교육 훈련등을 마친 자
 - 한국농업전문학교, 여주농업전문교육원 등 농업계학교 졸업(예정)자로서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 ※ 단, 농어촌구조개선사업자금(농·축산경영자금, 귀농자창업자금 제외)을 지원 받아 상환중인자와 후계농업인 지원사업 포기 및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는 신청할 수 없음

<취농창업후계농업인>

- 농업·농촌기본법 제3조 제5호 및 동법시행령 제5조, 동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에 영농정착중이거나, 영농정착하고자 하는 자 중 사업시행연도 1.1현재 35세 미만이고 병역필 또는 면제자, 산업기능요원 편입을 원하는 자와 여성으로서,
 - 농업계학교를 졸업(졸업예정자 포함)하고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중 영농승계를 원하거나 독립하여 영농에 종사(예정자 포함)하는 자,
 - 2001년도 이전에 후계농업인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되어 복무중인 자중 영농승계를 원하거나 독립하여 영농에 종사(예정자 포함)하는 자
- ※ 2004년도 후계농업인 산업기능요원 편입을 희망하는 자는 2004년도 후계농업인 신청을 해야함
- 타산업분야 종사자 또는 농업분야 이외의 학교졸업자중 영농에 종사하기를 원하거나 영농에 종사한지 4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 영농승계라 함은 신청자가 정착하고 있거나 정착하고자 하는 지역에서 부모 또는 형제의 영농기반을 상속·증여 또는 임차 등의 형태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영농기반을 확보(계획 포함)하는 경우(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 확인)를 말함(단, 후계농업인으로 기 선정된 자로부터의 영농승계 제외)

다. 신청절차

- 사업시행 전년도 1. 20일까지 신청서 제출기관에 신청

라. 구비서류

- 사업 지원신청서(실시규정 제3호서식) 1부
- 사업계획서 (별지 제1호서식) 1부
- 영농승계 확인에 필요한 호적등본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 단, 평가시 가점반영에 필요한 학력증명서, 농업계학교장 추천서, 국가기술자격증사본, 산업기능요원 복무확인서, 영농교육훈련 증명서, 농산물 유통관련 사업종사 확인서 등은 해당되는 자만 제출

마. 기타사항

- 시장·군수 등은 사업신청자에 대한 평가 및 우선순위 결정 등은 2003년도 후계농업인 육성 사업지침을 준용하여 참정 결정

[별표 1]

영농규모 평가기준(자영규모)

구분 품목	0.5ha미만에 준하는 농가	0.5~1.0ha 미만에 준하는 농가	1.0~1.5ha 미만에 준하는 농가	1.5~2.0ha 미만에 준하는 농가	2.0ha이상 준하는 농가
	ha미만	ha미만	ha미만	ha미만	ha이상
식량작물	0.79	0.79~1.58	1.58~2.37	2.37~3.16	3.16
노지채소	0.32	0.32~0.63	0.54~0.95	0.95~1.27	1.27
시설엽근채	0.13	0.13~0.26	0.26~0.40	0.40~0.53	0.53
시설과채	0.07	0.07~0.15	0.15~0.22	0.22~0.29	0.29
노지과수	0.22	0.22~0.44	0.44~0.66	0.66~0.88	0.88
시설과수	0.07	0.07~0.14	0.14~0.20	0.20~0.27	0.27
화 훼	0.05	0.05~0.11	0.11~0.16	0.16~0.21	0.21
약용작물	0.25	0.25~0.49	0.49~0.74	0.74~0.98	0.98
특용작물	0.49	0.49~0.99	0.99~1.48	1.48~1.98	1.98
느타리버섯	0.03	0.03~0.06	0.06~0.10	0.10~0.13	0.13
	두(수)미만	두(수)미만	두(수)미만	두(수)미만	두(수)이상
한우(번식)	7	7 ~ 14	14 ~ 21	21 ~ 28	28
한우(비육)	4	4 ~ 7	7 ~ 11	11 ~ 14	14
낙 농	2	2 ~ 4	4 ~ 6	6 ~ 8	8
양돈(번식)	26	26 ~ 52	52 ~ 78	78 ~ 104	104
양돈(비육)	69	69 ~ 138	138 ~ 207	207 ~ 276	276
양계(산란)	1,263	1,263~2,525	2,525~3,788	3,788~5,050	5,050
양계(육계)	1,639	1,639~3,278	3,278~4,917	4,917~6,556	6,556

※ 영농기반은 신청당시 기준으로 평가

※ 이 표에 없는 품목은 표준소득을 감안하여 배점

※ 2개이상의 농업기반이 있을 경우 사업 신청분야 기반은 100%, 그외의 기반은 50%인정

※ 계산예 : 수도작 신청자(남)가 논 0.9ha, 식량작물 0.9ha, 한육우 3두, 특용작물 0.8ha일 경우 1.77ha(논 0.9+식량작물 0.28+한육우 0.19+특용작물 0.40) = 150점

- 한육우 : 3두÷4(해당구간 최고두수)×0.5ha(해당구간 표준기준 최고규모)÷2(50%)=0.19ha

사 업 계 획 서

1. 현 황(신청당시)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 사업장 :

		논	밭	과수원	사료포	목초지			계
영농 규모 (평)	소 유								
	임 차								
	계								
시설 현황 (평)	창 고	축사	온실	비닐 하우스	버섯 재배사				기 타
농기자재 (대)	트랙터	경운기	이앙기	콤바인	관리기	건조기	설별기	차 량	컴퓨터
	방제기								기 타
재 배 현 황 (평)	벼	보 리	사 과	배	포 도				계
가 축 보 유 현 황 (두,수)	한 우	젓 소	돼 지	닭					기 타
기 타 특 기 사 항									

2. 사업계획

사업명 : 후계농업인 육성사업

사업비 투자계획

세부사업명	단위	단가	사업량	사업비(백만원)				
				계	국고	지방비	융자	자부담
계								
농지 구입								
하우스 신축								
축사 신축								
한우 입식								
•								
•								

※ 자부담금 조달계획

○

세부사업별 추진일정

세부사업명	1/4분기	2/4	3/4	4/4
농지 구입				←→
한우 입식		←→		
•				
•				
•				
•				

* 사업추진일정은 ←→으로 표시

향후 영농(신청 사업분야)계획

(단위 : 평, 마리, 만원)

작 목 명	현 재			사업비 투자(준공)후		
	재배면적 (사육두수)	연 간 판매수입	경영비	재배면적 (사육두수)	연 간 판매수입	경영비
수 도 작						
화 췌						
한 우						
돼 지						
•						
•						

※ 투자후 판매수입 및 경영비는 신청당시의 물가 적용

생산된 농산물 판매방법

○

※ 판매방법은 구체적으로 작성(예 :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 등)

본 사업계획서는 본인의 제반 정보 및 사업의지를 바탕으로 사실 그대로 작성한 것임을 확약합니다.

작성일 : 년 월 일

신청자 : (인)

확인자 : 소속 직위(급) 성명 (인)

후계농업인 추천명단

추천 순위	성명	주소	주민 등록 번호	최종 학력	평가 기준 (점수)								지원 자금	
					영농 정착 의욕	학력	교육 훈련	영농 경력	영농 기반	사업 계획	가점	총 점수		

2003년도 선정결과 및 2004년도 대상자 신청현황 보고

<2003년도 사업대상자 선정결과>

신규후계농업인, 취농창업후계농업인으로 각각 구분하여 아래 서식에 의하여 집계보고

1. 성별·연령별 신청 및 지원대상 인원

(단위 : 명)

구분	산업기능요원	결혼여부		연령별					
		기혼	미혼	합계	19세이하	20-24	25-29	30-34	35-39세
합계									
남									
여									

※ 신청인원은 ()로 표시하고, 산업기능요원은 결혼여부, 연령별에도 포함

2. 학력별 신청 및 지원대상 인원

(단위 : 명)

구분	합계	국졸	중졸	고졸			전문대졸			특수전문대			대졸이상			
				소계	농업계	농업계외	소계	농업계	농업계외	소계	한국농전	여주농전	소계	농업계	농업계외	
합계																
남																
여																

※ 신청인원은 ()로 표시

3. 사업작목별 신청 및 지원대상 인원

(단위 : 명)

시·군·구별		합계	경 종 농 업 분 야						축 산 분 야					
시·군	구분		소계	수도작	복합영농	원예	과수	특작	소계	한우(육우)	낙농	양돈	양계	기타
합 계	합계													
	남													
	여													
○○군	소계													
	남													
	여													

※ 신청인원은 시·군·구별로 합계란에만 ()로 표시하되 분야별로 신청인원 기재는 생략

4. 사업작목별 지원대상 금액

(단위 : 백만원)

시·군·구별		합계	경 종 농 업 분 야						축 산 분 야					
시·군	구분		소계	수도작	복합영농	원예	과수	특작	소계	한우(육우)	낙농	양돈	양계	기타
합 계	합계													
	남													
	여													
○○군	소계													
	남													
	여													

<2004년도 사업대상자 신청현황>

신규후계농업인, 귀농창업후계농업인으로 각각 구분하여 아래 서식에 의하여 집계보고

1. 성별·연령별 신청 및 지원대상 인원

(단위 : 명)

구분	산업기능요원	결혼여부		연령					
		기혼	미혼	합계	19세이하	20-24	25-29	30-34	35-39세
합계									
남									
여									

※ 산업기능요원은 결혼여부, 연령별에도 포함

2. 학력별 신청 및 지원대상 인원

(단위 : 명)

구분	합계	국졸	중졸	고졸			전문대졸			특수전문대			대졸이상		
				소계	농업계	농업계외	소계	농업계	농업계외	소계	한국농전	여주농전	소계	농업계	농업계외
합계															
남															
여															

3. 사업작목별 신청 및 지원대상 인원

(단위 : 명)

시·군·구별		합계	경 종 농 업 분 야						축 산 분 야					
시·군	구분		소계	수도작	복합영농	원예	과수	특작	소계	한우(육우)	낙농	양돈	양계	기타
합 계	합계													
	남													
	여													
○○군	소계													
	남													
	여													

사업추진 계획(확인)서

1. 주 소 :
2. 성 명 :
3. 주민등록번호 :
4. 신 청 금 액 :
5. 사업추진계획(확인) 내용

(단위 : 천원)

사업별	사업규모	소요사업비			사업추진일정
		계	후계자 자금	기타자금	
축사시설개선	200평	15,000	15,000		'03. 3월중순
한 우 입 식	10두	15,000	15,000		'03. 4월중순
농 지 구 입	1,000평	30,000	30,000		'03. 4월초순
축 사 신 축	200평	30,000	30,000		'03. 4월중순~7월중순

위의 사업추진 계획에 따라 후계농업인 지원자금을 사용코자하니 인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인)

확인자 : 시장·군수, 특별시·광역시 농업기술센터의 장(직인)

용 자 취 급 기 관 장 귀 하

후계농업인 관리카드

사 진 (반명 합판)	① 성명 (한자 :)	② 주민등록번호 -	고유 번호	③ 연락처 전화번호 :	
	④ 현주소 우편번호 :	⑤ 정착사업장소 우편번호 :	⑥ 주사업(희망)작목 :		
			⑦ 자금지원(희망)내역		
			후계인	년 분기	백만원
		전업농	년 분기	백만원	
⑧ 최종학력 : 학교 과(졸업,재학)		⑨ 결혼여부: ㉗미혼 ㉘기혼		⑩ 세대주명(본인과의 관계):	

⑪ 병역 등 주요경력

⑫ 영농교육훈련(총교육일수 : 일)

구 분	기 간(년월일)	주요경력 및 직책	기 간(년월일)	내 역	실시기관명
병 역		
		
		
		

⑬ 포상경력·영농국가기술자격증 등

⑭ 가족사항(본인제외)

년 월 일	내 용	수 여 자	성 명	관 계	생년월일	직 업

⑮ 영농기반 및 사업 추진실적

구 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주요 사업작목(벼,사과,배,오이, 배추,한우,인삼,느타리버섯 등)별 규모(평, m ² , 두, 수 등)								
영농기반 (본인소유·승계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지(논,밭,과수원,초지 등)종류별 규모(평) ○ 시설(우사,돈사,비닐하우스, 유리온실,저온냉장고, 스프링쿨러등)종류별 규모(대) ○ 장비(트랙터,컴퓨터,트럭, 승용차,이앙기등)종류별 규모(대) 							
경영실적 (천원)	농업 조 수 익 농 외 소 득 경 영 비(생산비) 농가소득 (순수익)							
지원자금상환잔액(천원)								
경 영 기 술 수 준								
조 사 자 직 · 성 명								

- ① 매년도말 기준으로 익년도 1월말까지 농업기술센터 또는 주사업작목 담당지도사가 현지확인후 작성하되 구분년에는 후계농업인 1년차, 2년차, 등을 구분기입
- ② 경영기술 수준은 경영실적 및 주요경력, 개인면접 등을 종합하여 작성자가 상, 중, 하, 문제있음 등으로 구분 기입

[별지 제6호서식]

후계농업인 사업취소 확인서

1. 성 명 :

2. 주 소 :

3. 주민등록번호 :

4. 사업 내용 :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명	사업비(지원액)	회수결정액
계		
농지구입 · · ·		

5. 사업취소 사유

※ 사업취소 사유(사망, 신병, 재촌전업, 이주, 무단이탈등)를 상세히 기재

[별지 제7호서식]

자체가 26-4

사업취소 및 지원자금회수 현황

1. 연도별 사업취소자 현황

(단위 : 명)

계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

※ '81년도부터 사업취소 연도별로 작성

2. 사유별 사고인원 및 지원자금회수 현황

(단위 : 명, 백만원)

구 분		합계	사망	신병	전업	이주	무단이탈	기타
총사업 취소자	인 원 금 액							
회 수 완료자	인 원 금 액							
회 수 증인자	인 원 회수액 미회수액							

[별지 제8호서식]

사업계획변경 신청(신고)서

1. 주 소 :

2. 성 명 :

3. 주민등록번호 :

4. 사업변경내용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명		사업비(지원액)		변경 사유	비 고
당 초	변 경	당 초	변 경		

* 변경하고자하는 분야의 사업계획서 첨부(별지 제1호서식)

위와 같이 사업을 변경코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사업을 변경하고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인)

시장·군수, 특별시·광역시 농업기술센터의 장 귀하

지원자금 회수불가능한 부실후계자(사업취소자) 현황

시·도 별	사업 취소 연도 별	지원자금 회수불가능 사업취소자 인적사항						지원자금회수현황(단위 : 천원)						
		성명	주 소	선정 연도	사업 작목	취소 일자	취소 사유	지원 년도	지원액 (용자액)	기상 환액	회수불능액			회수 불가능 사유
											계	원금	이자	
합 계														
서울시 · · · 제주도														

※ '81년부터 매년도 반기까지 누계로 집계 작성

- ◇ 회수 불가능 사유(아래 “양식” 참조하여 구체적으로 작성바람)
 - 채무 관련인 전원 무재산 상태로 강제 집행 불가능자 : 명
 - 본인 행방불명, 보증인 무재산으로 회수 불능자 : 명
 - 강제 집행에 따른 경비가 채무관련자의 재산보다 많아 회수 불가능한 자 : 명
- ◇ 회수 불가능자에 대한 대처방안(구체적으로 작성)

추천순위	후계농업인 심의·추천서
	<p>1. 성 명 : 2. 주 소 : 3. 주민등록번호 : 4. 신청분야(품목) : 5. 영농종사기간 : 년 개월 (. . ~ . . 현재까지) 6. 추천의견(추천권자) :</p> <p>상기자를 ○○연도 농림사업지침에 의한 후계농업인 육성사업 심의 대상자로 추천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p> <p style="text-align: right;">추천자 : (사)한국농업경영인연합회 ○○시·군(읍·면)연합회장 ○○○ (인) ○○읍·면 등의 기관장 귀하</p>

※ 읍·면외의 지역은 시·군 연합회장이 추천

영농사업계획 평가서

□ 사업신청자 : ○○면 ○○리 123 김○○

□ 심사자 : 소속 직위(직급) 성명 (인)

○ 총 점

구 분	합 계	타 당 성	치 밀 성	발전가능성
총 점				
적합성 및 문제점				
투자 및 자금조달				
생산 및 판매				
작목 집단화				

○ 재배지역 및 재배기술상의 적합성

구 분	합 계	타당성	치밀성	발전가능성
점 수				
평가의견				

○ 투자 및 자금조달계획

구 분	합 계	타당성	치밀성	발전가능성
점 수				
평가의견				

○ 생산 및 판매계획

구 분	합 계	타당성	치밀성	발전가능성
점 수				
평가의견				

○ 사업분야에 대한 타농가 재배작목과의 작목집단화(조화) 가능성

구 분	합 계	타당성	치밀성	발전가능성
점 수				
평가의견				

※ 각 항목에 대한 평가는 만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타당성, 치밀성, 발전가능성의 점수를 임의로 부여 평가(예 : 신규후계농업인의 경우 재배지역 및 재배기술상의 문제점 총점은 40점임)

[별지 제13호서식]

후계농업인 확인서

1. 주 소 :
2. 성 명 :
3. 주민등록번호 :
4. 용 도 :

위 사람은 년도 후계농업인으로 선정되어 영농에 종사중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 ○○○시장(군수)

② 여성농업인센터운영지원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여성정책담당관실(과장 박성자, 사무관 이세열)입니다.

1. 목적

- 농촌생활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충을 상담하고 여성농업인이 마음놓고 농사일을 할 수 있도록 자녀의 영유아보육 및 방과후 학습지도
- 농한기에 교양강좌 및 문화활동, 도시인에게 농업·농촌을 알리는 농촌체험사업 및 농업인 소득증대사업 등 지역실정에 맞는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안정적인 영농활동과 젊은 여성의 농촌 정착 지원

2. 시책 및 추진방향

- 각 도별 2개소씩 총 18개소 시범운영
- 여성농업인센터는 여성농업인의 영농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고충상담, 보육 및 방과후 학습지도, 교양·문화활동은 필수적으로 시행
- 기타 농업·농촌체험사업 및 농가소득증대사업 등은 임의적으로 지역실정에 맞게 추진하도록 유도.

3. 근거법령

- 농업·농촌기본법 제14조(여성농업인의 육성)
- 여성농어업인육성법 제13조(여성농어업인관련시설의 설치·운영)

4. 연도별 지원실적 및 계획

		2001	2002	2003 (예산안)	2004이후
사업량	개소	-	18	18	163
	계	-	2,160	1,710	33,960
사업비 (백만원)	국고보조	-	1,080	855	16,980
	지방비	-	756	599	12,048
	자부담	-	324	256	4,932

5. 2003년도 사업시행요령

< 사업개요 >

가. 사업내용

(1) 사업배경

- 여성농업인의 고충상담, 자녀의 영유아보육 및 방과후 학습지도, 농한기 교양강좌 및 문화활동, 도농교류사업 등 지역실정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젊은 여성의 농촌 정착 유도

(2) 사업기간 : 2003년 1월 ~12월

(3) 세부사업내용

- 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필수사업과 임의사업으로 구분하며 필수 사업은 의무적으로 수행하여야 하고, 임의사업은 센터의 사정에 따라 수행할 수 있다.
 - 필수사업은 고충상담, 여성농업인이 마음놓고 농사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보육 및 방과후 학습지도, 교육·문화 등 지역 실정에 맞게 자아실현 프로그램 운영
 - 임의사업은 농업·농촌의 체험과 우리 농산물의 우수성을 알리는 도농 교류사업, 농촌 소득증대 프로그램운영 등

(4) 지원대상자

- 사업계획서를 평가하여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
 -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사업신청자의 자격·경력, 시설의 확보 및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심사한다.

(5) 지원조건

- 센터 1개소의 사업규모 및 보조비율

계	국 고	지 방 비	자 부 담
95,000천원 (100%)	47,500 (50)	33,250 (35)	14,250 (15)

나. 2003년도 사업비 내용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사업량	사업비			
		계	국고보조	지방비보조	자부담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지원사업	18개소	1,710	855	599	256

※ 각 도 2개소씩 총 18개소 운영

< 사업신청 및 사업자선정 >

(1) 사업신청기간 : 각 도의 방침에 따라 추진

(2) 사업신청자의 자격

- 실제로 농촌에 거주하면서 3년이상 농업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로서
 - 사무실·상담실,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영유아보육시설, 방과후 아동학습지도 시설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여성농업인의 교양·문화활동 등을 위한 시설은 필요시 임차하여 이용할 수 있다.

(3) 사업신청서의 제출 및 접수기관

- 사업신청서는 정해진 서식을 이용하고 사업을 신청하는 자는 사업신청서를 사업주소지를 관할하는 시·군에서 접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각 도의 방침에 따라 접수기관을 변경할 수 있다.
- 사업신청서를 접수한 시·군에서는 사업신청자의 자격·경력, 시설의 확보 상황 및 사업내용, 시·군비 부담 가능여부 등을 검토 후 관할 도에 보고한다.

(4) 사업신청서 : 별첨2 참조

(5) 사업계획서의 심사 및 선정

- 도는 각 시·군에서 보고된 사업신청서를 『여성농업인센터 운영비의 지원 대상자 선정기준』에 따라 사업자를 선정한다.
- 사업신청서(사업계획서)는 농정심의회에서 심사하거나 별도의 심의회를 구성하여 심사한다.

※ 여성농업인센터 운영비의 지원대상자 선정기준(농림부고시 2002- 호, 2002. 10.) : 별첨1 참조

(6) 사업자 선정시 유의사항

- 매년 사업계획서를 심사하여 사업자를 선정한다. 다만, 연속해서 사업자로 선정된 경우 4년째는 지원할 사업비의 30%, 5년째는 지원할 사업비의 50%를 각각 감하며, 2002년도 사업부터 적용한다.
- 사업신청서가 단체명의로 제출된 경우에는 단체의 설립목적과 사업목적의 일치 여부 및 총회 또는 이사회 의결사항을 확인한다.
- 도지사는 사업자로 선정되어 연속해서 사업을 신청한 자에게는 심사시 가점을 부여한다. 다만, 사업을 수행한 자가 심사에서 탈락된 후 차년도 사업을 신청한 경우에는 가점 하지 않는다.
 - 도지사는 매년 9월말까지의 사업추진실적을 확인하여 차년도 사업계획서 심사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추진실적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 점수를 가점한다.
- 센터의 운영자가 사업기간 중에 교체될 경우 사업인수자의 경력과 자격이 고시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해야 하며, 전 사업자의 잔여기간만 인정한다.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받은 단체(자)가 사업범위를 확대하여 제출한 사업계획서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중복지원금지).

<예> 보육사업과 관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받은 단체(자)가 여성농업인의 자아실현 프로그램 등을 추가하여 신청한 사업.

<사업추진체계>

가. 사업주관기관

- 도지사 : 사업자선정 및 센터운영상황점검
- 시장·군수 : 센터운영 및 운영비 집행·정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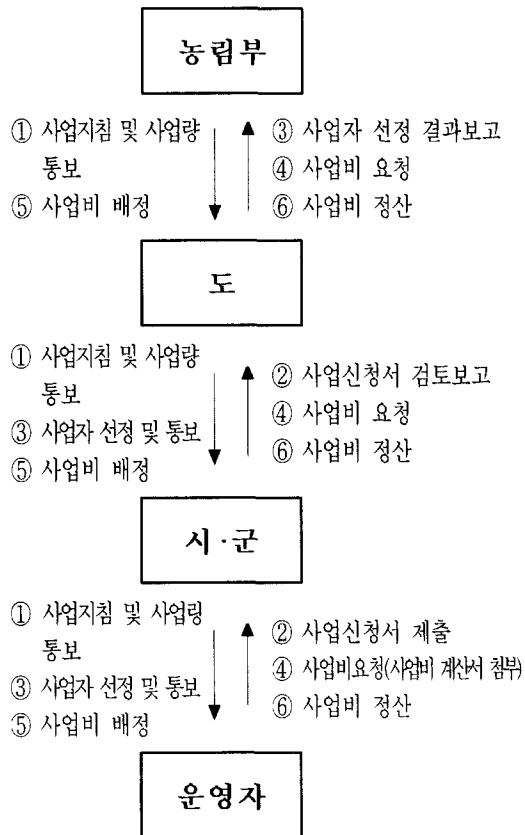
나. 사업담당부서

- 농림부 : 기획관리실 여성정책담당관실(☎02-500-1604, 1605)
- 도 : 농정담당과
- 시·군 : 농정담당과

다. 사업추진절차

- 농림부 : 사업지침시달, 사업량(비)배정, 사업실적평가 및 지도감독
- 도 : 사업지침시달, 사업자선정, 사업비배정, 사업실적평가 및 지도감독
- 시·군 : 사업신청서접수 및 이송, 사업비배정(정산), 센터지도감독

라. 사업시행체계도



마. 사업비의 신청 및 집행 등

(1) 사업비 신청

- 센터 운영자는 분기별로 사업추진 자금을 분기개시 20일전까지 시장·군수에게 교부신청 한다.
- 시장·군수는 신청된 사업비를 검토하여 시·도지사에게 요청하고, 시·도지사는 분기시작 10일전까지 농림부에 배정요청 한다.
- 농림부는 각 시·도의 신청에 따라 배정한다.

(2) 사업비의 집행

- 센터의 종사인원은 사업실적에 따라 집행한다.
 - 보육사 1인당 2세미만의 영유아는 5인, 2세 영유아는 7인, 3세 이상의 영유아는 20인, 취학아동은 30인 기준(단, 50%초과시 총사업비의 범위 내에서 1인을 추가 할 수 있음)
 - 운전기사와 취사부는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와 음식을 조리하는 경우에 각 1인을 인정
 - 고충상담을 위해 상담원 1인을 인정
- 센터의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는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국고 보조 기준』을 준용하며, 지원할 인건비의 범위내에서 인원을 조정하여 집행할 수 있다.
- 방과후 학습지도자의 인건비는 시간급으로 추정하여 강사수당에 계상한다.
<예> 10,000원×4시간×20일 = 800,000원
- 교양강좌·문화활동 등 부정기적인 사업은 사업계획에 의거 분기별로 사업비를 요청하고, 지급받은 사업비는 사업종료 후 15일내에 정산한다.
 - 정산결과 사업비 집행잔액은 차기 사업비 요청금액에서 감하여 배정하거나 최종 정산시 반납.

- 시설의 수리비는 500만원 범위내에서 집행한다. 단, 5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 영유아보육에 따른 차량임차료는 전액 이용자의 부담으로 운영하되 차량 유지비는 농어촌보육시설 차량운영비 지원기준에 준하여 지원하고 수리비는 월 10만원 지원한다. 단, 여성농업인의 교육·문화활동을 위한 차량은 임차하여 이용할 수 있다.
- 영유아보육에 따른 급식비 및 간식비는 전액 이용자가 부담하여 제공할 수 있다(15% 자부담과 무관).
- 폐교 및 공공시설, 농협 및 영농조합법인 등의 시설을 센터로 이용하는 경우 임차료는 연간 12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 센터운용에 필요한 집기 등 비품은 1회에 한하며, 사업추진과 관련이 없는 물품은 구입할 수 없다.

	집행기준
인건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센터 종사원의 급여(인건비 지원금액 내에서 증원집행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육교사의 1인당 기준 50%초과시 총사업비 범위내에서 1인을 추가할 수 있음. - 센터 종사인원에 대한 퇴직충당금(10~12월기간 중 평균급여로 지급) ○ 센터 종사원의 각종수당 및 보험료 등
경상운영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량비 : 차량유류대(월 12만원), 수리비(월 10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육 및 공부방용 차량임차비는 이용자가 부담하며, 여성농업인 교육 및 단체활동 차량은 임차할 수 있음. ○ 강사수당 : 초청강사 및 공부방지도자에게 지급하는 수당 ○ 급식비 : 여성농업인의 교육비 및 단체활동에 따른 중식비·간식비(단, 보육에 따른 중식비 및 간식비는 이용자가 부담) ○ 공공요금 : 전기요금, 전화요금, 수도요금, 우편요금 등 ○ 의약품비 : 상비약, 구급약 등 ○ 출장비 : 종사자의 출장비(연간 40만원이하) ○ 행사인건비 : 사업추진과 관련 행사기획 및 행사추진 보조자의 인건비 (사업의 난이도에 따라 인원과 고용일수 조정) ○ 시설유지비 : 시설의 재산가치를 증액시키지 않는 범위의 시설유지를 위한 소규모 수리 및 수선(500만원미만, 500만원이상 : 승인) ○ 수수료 : 협회비, 보육사의 건강검진비 등 ○ 교재교구구입 : 장난감, 아동도서, 비디오교재 등 ○ 연료비 : 센터의 난방용 연료비 ○ 사무용품비 : 사무용 소모품비 등(연간 60만원이하) ○ 회의비 : 행사기획 및 추진에 따른 회의 등(연간 40만원이하) ○ 시설임차료 : 사업추진을 위한 시설물 임차료로 연간 120만원까지 지급 ○ 홍보비 : 사업 홍보용 현수막 제작, 소식지 발간 등 ○ 보험료 : 상해보험료, 자동차보험료, 화재보험료 등(소멸식으로 가입) ○ 사업추진에 필요한 물품구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컴퓨터 및 컴퓨터 주변기기(프린트, 스캐너 등) - 상담실 집기류(책상, 소파, 탁자 등), 전화기, FAX기 등 - 보육용·공부방용·사무용 책상·의자 등 - 난로, 선풍기, 주방기구(식탁, 싱크대, 식기, 등) ○ 기타 사업추진에 필요한 경비

(3) 사업비의 정산

- 사업비 집행 및 정산의 책임은 시장·군수에게 있다.
- 시장·군수는 익년도 1월 말일까지 사업비 집행실적을 정산하여 시·도지사에게 보고한다(서식2 참고)
- 시·도지사는 익년도 2월 말일까지 농림부에 보고한다(서식2 참고)
- 정산결과 집행잔액은 반납하고 조치결과를 통보한다(영수증사본 첨부)
 - 회계 및 소관 : 농림부 일반회계 세입징수관
 - 과목 : 경상이전수입(12-59-591, 2003년 여성농업인센터 지원사업 반납금)

6. 2004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 안내

가. 사업신청자의 자격

- 실제로 농촌에 거주하면서 3년이상 농업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
-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영유아보육시설 및 방과후 아동학습지도시설, 기타 여성농업인교육시설 등을 확보하여 여성농업인 영농활동을 지원하고자 하는 자(단체)

나. 사업신청서의 제출기관

- 사업신청자는 여성농업인센터를 관할하는 시·군 농정담당과에 제출한다.

다. 사업신청절차

-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사업을 희망하는 자는 사업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시·군 농정담당과에 접수한다.
- 시·군에서는 사업계획을 검토한 후 시·군비 부담여부 및 사업의 타당성 등의 의견을 첨부하여 도에 보고한다.

라. 제출서류 : 별첨2 참조

마. 사업자 선정절차

- 각 도에서는 시·군으로부터 제출받은 사업신청서를 검토하여 무자격자를 제외한 후 심사하여 우선 순위를 결정한다.
- 사업신청서는 농정심의회에서 심사하거나 별도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한다.
- 정부의 예산이 확정되어 사업량이 확정·통지되면 각 도에서는 사업신청자의 여건변화를 검토한 후 우선 순위에 따라 사업자를 선정한다.

바.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사업실시규정(농림부 훈령),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 관한법률의 규정에 따른다.

<별첨 1>

농림부고시 제2002 - 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에 따른 지원대상자 의 선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2002. 10. .

농림부장관

여성농업인센터 운영비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여성농어업인육성법 제13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여성농업인관련시설중 여성농업인센터의 운영비 지원대상자의 선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여성농업인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라 함은 여성농업인의 고충상담, 농촌지역 영유아의 보육 및 방과후 아동학습지도, 여성농업인의 교육·문화활동을 수행하는 시설을 말한다.
2. “계속사업계획서”라 함은 신규사업의 수행을 완료한 자가 차년도 센터 운영비를 지원 받기 위하여 제출하는 사업신청서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자의 선정방법) ①센터의 운영비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사업신청자의 자격·경력, 시설의 확보 및 사업계획의 내용을 심사하여야 한다.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과 동점자가 있을 경우에는 여성농업인의 수와 영유아 및 아동의 수가 많은 지역을 선정한다.
- ③심사항목별 배점기준은 별표 1과 같다.
- ④심사서식은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제4조(사업신청자의 자격·경력) ①사업을 신청하는 자는 실제로 농촌에 거주하면서 3년이상 농업에 종사한 경험이 있어야 한다.

②사업신청자가 농업인단체에서 2년이상 활동한 경험이 있거나 보육교사·일반교사 또는 사회복지사의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 가점을 부여한다.

제5조(시설의 확보) ①사업을 신청하는 자는 사무실·상담실, 영유아보육 시설, 방과후 아동학습지도시설을 확보하되, 여성농업인의 문화·교양강좌를 위한 시설은 필요할 때 임차하여 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사무실과 상담실은 영유아보육시설의 사무실과 겸할 수 있다.

②영유아보육을 위한 시설은 영유아보육법의 규정에 적합한 시설을 확보하고 있거나 확보할 수 있어야 하며, 센터의 운영자로 선정된 후에는 영유아보육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보육시설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이 면 지역에 있고 반경 5km이내에 주부 대학, 여성회관, 보육시설 등 유사시설이 없는 경우 및 자기소유인 경우에는 가점을 부여한다.

제6조(사업계획의 내용) ①사업계획서의 사업내용은 사업의 창의성·사업의 종류·사업비의 적정성·사업추진협의체의 유무 등을 심사한다.

②계속사업계획서의 사업내용을 심사할 경우에는 가점을 부여한다.

부 칙

①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이 기준 시행전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센터는 이 기준에 의하여 선정된 것으로 본다.

<별표 1>

사업계획서 심사항목별 배점기준

항 목	심 사 내 용	배 점
○자격 및 경력	○실제로 농촌에 거주하면서 3년이상 농업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 - 농업인단체에서 2년이상 활동한 자 및 자격증소지자는 가점 부여 (보육교사, 교사 및 사회복지사중 1개 만 인정)	○필수조건 - 기본 : 20점 - 가점 : 각5점
○시설의 확보	○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시설을 보유한 자 또는 기존 유휴시설(안전상 문제가 없어야 함)을 활용할 수 있는 자 * 교육·문화활동을 위한 시설은 시설의 이용 권리가 확보된 자 - 센터의 시설물이 먼 지역에 있고 센터를 중심으로 반경 5km이내에 주부대학, 여성회관, 보육시설 등이 없는 경우 - 사업신청자가 시설물을 소유한 경우	○필수조건 - 기본 : 20점 - 가점 : 5점 - 가점 : 5점
○사업의 내용	○사업의 창의성(상대평가) - 다른 신청자보다 차별화된 사업의 유무 · 3개 이상 : 10점, 1개 이상 : 8점, 없음 : 6점 ○사업의 종류(고충상담, 보육 및 방과후 학습지도사업 제외) - 10종이상: 10점, 5종이상: 5점 ○사업비의 적정성(상대평가) - 사업비에 낭비적인 요소는 없는지 여부 · 상 : 10점, 중 : 7점, 하 : 4점 ○자립방안의 타당성(상대평가) - 상 : 5점, 중 : 4점, 하 : 3점 ○사업추진협의체 유무	○10점이하 ○10점이하 ○10점이하 ○5점이하 ○5점

- ※ 단체의 경우 정관에 여성농업인의 권익보호·지위향상·삶의 질 제고 및 전문인력화 내용의 유무와 총회 또는 이사회 의결사항을 확인한다.
- ※ 계속사업의 경우 전년도 사업실적이 90%이상인 경우 5점, 80%이상인 경우 4점 70%이상인 경우 3점의 가점을 부여하되 평가를 못한 경우에는 5점을 부여한다.

<별지 제1호서식>

사업계획서 심사표

사업계획서 심사표	기호
과제명 : ○○년 여성농업인센터사업계획서() 심사위원 성명 : (날인)	
..... 절취선 확인(인)	
사업계획서 심사표	기호
과제명 : ○○년 여성농업인센터사업계획서()	

심사항목	확인		가점	계	심사의견	비고	
	여	부					
자 격	○ 실제로 농촌에서 3년이상 농업에 종사한 자(필수요건) - 농업인단체에서 2년이상 활동한 자(5점 가산) - 보육교사, 교사 또는 사회복지사 자격증소지(1개에 한함, 5점 가산)		20	-	점 () ()	점	
시 설	○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시설물을 보유하고 있거나 기존 시설물 활용이 가능한 자, 기타시설 이용권리확보 여부(필수요건) - 센터의 시설물이 면 지역에 있고 인근에 부부대학, 여성회관, 보육시설등이 없는 경우(5점 가산) - 시설이 자기소유인 경우(5점 가산)		20	-	점 () ()	점	
사 업 계 획 서	○ 다른 신청자와 차별화된 사업의 유무 (3개 이상 : 10점, 1개 이상 : 8점, 없음 : 6점) ○ 사업의 종류(상담, 보육, 방과 후아동지도 제외) (10종이상 : 10점, 5종이상 : 5점) ○ 사업비의 낭비요인 (상 : 10점, 중 : 7점, 하 : 4점) ○ 자립방안의 타당성 (상 : 5점, 중 : 4점, 하 : 3점) ○ 사업추진협의체의 유무(5점) ○ 전년도 사업추진실적(%)		-	-	점 () () () () ()	점	
계						점	

※ 심사의견 제시가 어려운 경우 사업자로서 「적정」 또는 「부적정」으로 기재.

<별첨 2>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사업 신청서

신 청 자	성 명		주민등록 번호		전화 번호	
	주 소					
	직 업		학 력	년 월	학교(과) 졸업, 중퇴	
	농업경력	년 월	농업인을 위한 활동경력			년 월
사 업 장	주 소					
	시 설				비 고	
	구 분	규 모	소유/임대 체크			
	부 지 건 물	m ² m ²	소 유() 임 대()			
사업비	총액 : 천원(국고 : , 자부담 :)					
<p>본인은 여성농업인센터의 위탁사업을 수행함 있어 제반규정 및 지시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 사업목적의 달성에 노력할 것이며, 목적달성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사업자선정을 취소하더라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함은 물론 발생한 손해도 자신이 감수할 것을 서약하면서 사업을 신청합니다.</p> <p>붙임 : 사업계획서 1부. 끝.</p> <p style="text-align: right;">200 년 월 일 신청자 (인)</p>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20px;">귀하</p>						

여성농업인센터 사업계획서

1. 사업 신청자 인적사항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	(년 월)	연락처	사무실:	주택:	
			휴대폰:	FAX:	
학 력	기 간	학 교	전 공	학 위	비 고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경 력	기 간	비 고			
	년 월 ~ 년 월(개월)				
	년 월 ~ 년 월(개월)				
	년 월 ~ 년 월(개월)				
	년 월 ~ 년 월(개월)				
	년 월 ~ 년 월(개월)				
	년 월 ~ 년 월(개월)				
기 타	취득자격증	<input type="checkbox"/> 자격증명 : (년 월 일) <input type="checkbox"/> 발급기관 :			

※ 경력에는 농업종사경력, 농업인을 위한 활동경력 등을 상세히 기술.

※ 첨부서류

- 자격증 사본
- 농업에 종사했거나 농업인을 위한 활동 또는 여성관련 분야에서 종사한 경력 등을 입증할 서류(농지원부, 세금납부영수증, 영농자금대출확인서, 단체활동증명서,등 기타참고 서류)

2. 여성농업인센터 시설에 관한 사항

사업장 위치	도 군 면 리 번지								
시 설 규 모	○부지 : m ² ○시설현황 - 총 : m ² (상담실: , 회의실: , 강의실: , 화장실: , 등)								
시설물 소유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마을 현황 (센터로 부터 반경 5km내)	마을명	계							
	세대수								
	여성 농업인수								
	아동수								
	유사시설명								

※ 첨부서류

- 부지 및 시설물 입증서류(등기부등본, 토지대장등본, 건축물대장 등 입증 가능한 서류)
- 임대시설의 경우 임대차 계약서 사본
- 시설물 사진

※ 「유사시설」이라 함은 주부대학, 여성회관, 보육시설 등을 말한다.

3. 2003년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사업 개요

가. 사업의 필요성

-
-
-

나. 사업세부설명

-
-
-

다. 사업비 총괄

(단위 : 천원)

	계	인건비	운영비	부정기사업
계				
국 고				
지방비				
자부담				

라. 센터위치의 주변환경

-
-
-

마. 기대효과

-
-
-

바. 센터의 운영비 자립방안(구체적으로 기술)

4. 사업추진 계획 및 사업비 내역(예시)

2003년 사업추진일정

사업명	1/4				2/4				3/4				4/4				사업비(천원)																																			
	1				2				3				4				5				6				7				8				9				10				11				12				계	국고	지방비	자부담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교육	-																																												100,000	50,000	30,000	20,000				
2.																																																				
3.																																																				
4.																																																				
5.																																																				
6.																																																				
7.																																																				
8.																																																				
계																																									200,000	100,000	60,000	40,000								

※ 사업 우선순위로 작성하고 보육 및 방과후 학습지도 등을 제외한 부정기 사업에 대해 추진시기를 해당 주간에 “—”로 표시.

5. 2003년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사업비 내역

재원	사업비 산출내역	심사구분
인건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급여(4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 담 사 : ○○○천원×1인×12월 = ○○○○천원 - 보 육 사 : ○○○천원×1인×12월 = ○○○○천원 - 운전기사 : ○○○천원×1인×12월 = ○○○○천원 - 취 사 부 : ○○○천원×1인×12월 = ○○○○천원 소계 : ○○○천원(국고 ○○, 지방비 ○○, 자부담 ○○) ○ 퇴직충당금 : ○○○천원(국고 ○○, 지방비 ○○, 자부담 ○○) 계 : ○○○천원(국고 ○○, 지방비 ○○, 자부담 ○○) ※ 퇴직충당금은 인건비 1개월을 계산 ※ 사업규모에 맞게 종사인원은 조정할 것 ○ 각종수당 및 보험료 등 	
경상운 영비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차량운행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류대 : 1,440천원× 1대 = 1,440천원 - 수리비 : 80천원 ×12월 = 960천원 2. 강사수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 : 100천원×10회 = 1,000천원 - ○○○교육 : 50천원× 8회 = 400천원 3.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 ○○○천원×○월 = ○○○천원 계 : ○○○천원(국고 ○○, 지방비 ○○, 자부담 ○○) <p>《비품비》</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PC구입 : 1,500천원×1대 = 1,500천원 2. ○○○ : ○○○천원×1대 = ○○○천원 계 : ○○○천원(국고 ○○, 지방비 ○○, 자부담 ○○) <p>※ 비품비는 시범사업시 1회에 한하여 지원.</p>	

재원	사업비 산출내역	심사구분
부정기 사업비	<p>1. 여성농업인 도·농교류사업(농촌체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목적 - - ○ 참여인원 : ○○○명(보조인원 ○명) ○ 사업시기 및 장소 : 2001. 5. 10(××센터) ○ 기대효과 - - ○ 운영비 산출내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사보조 인건비 : ○○원×○○인×○일 = ○○○천원 - ○○○비 : ○○원×1개×2회 = ○○○천원 - ○○○구입 : ○○원×10개 = ○○○천원 계 : ○○○원(국고 ○○, 지방비 ○○, 자부담 ○○) <p>2. 여성농업인과 지역사회 발전(교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목적 - - ○ 참여인원 : ○○명(보조인원 ○명) ○ 교육일시 및 장소 : 2002. 1. 20(○○강당) ○ 기대효과 - - ○ 운영비 산출내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사보조인건비 : ○○원×○○인×○일 = ○○○천원 - ○○○비 : ○○×2개 = ○○○천원 계 : ○○○천원(국고 ○○, 지방비 ○○, 자부담 ○○) <p>※ 사업비에 보조율을 곱하여 재원별로 구분 ※ 사업의 우선순위를 꼭 지키기 바람.</p>	

①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여성정책담당관실(담당관 박성자, 사무관 조용범)입니다.

1. 목 적

- 지리적·경제적·교육 여건이 불리하고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육비 부담이 큰 영세농업인에 대하여 자녀학자금을 지원함으로써 부담경감 도모

2. 시책 및 추진방향

가. 지원대상은 아래의 지역에 거주(주민등록 기준)하고 경지소유규모 10,000㎡ 미만의 농업인 및 이에 준하는 양축인, 임업인, 어업인(이하 ‘농업인’ 이라 함) 중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자녀나 손자녀 또는 동생이 있는 농업인.

(2003년부터 인문계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자녀까지 지원대상 확대)

- 농업인 기준 : 농업·농촌기본법 제3조(정의), 동법 시행령 제3조(농업인의 기준)
- 농촌지역기준 : 농림부고시 95-86호('95.10.10)에 의한 농어촌지역(시·군의 읍·면지역, 시의 동지역중 주거·상업·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 특별시, 광역시 및 시의 지역중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3조(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등)에 의거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

나. 지원금액은 시·도교육감이 정하는 당해 학교의 급지별 구분에 따른 수업료및 입학금(이하 ‘학자금’ 이라 함) 전액

다.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학교 또는 직장 등에서 당해 학생에 대한 학자금을 수혜받는 농업인은 제외

3. 근 거 : 농어촌발전종합대책 실천계획('89.4.28)

4. 년도별 지원실적 및 계획

구 분	'90~'92	'93~'98	'99	2000	2001	2002	2003 (예산안)
사업량 (명)	625,506	587,337	79,834	65,969	51,979	52,000	105,000
사업비 (백만원)	148,142	277,187	47,544	40,710	32,198	39,600	59,053
- 국 비	142,142	88,536	14,263	12,213	9,722	11,880	17,716
- 지방비	-	188,651	33,281	28,497	22,476	27,720	41,337

주) '90~'92 전액 국비, '93~'96 국비 1/3, 지방비 2/3, '97이후 국비 30%, 지방비 70% 지원(결산기준)

5. 2003년도 사업시행요령

〈사업개요〉

가. 사업내용 설명

1) 지원대상자

- 농어촌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에 거주(주민등록 기준)하고 경지소유규모 10,000㎡미만의 농업인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나 시·도교육감이 인정하는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자녀나 직접 부양하는 손자녀, 동생이 있는 농업인 (2003년부터 인문계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자녀까지 지원대상 확대)
- 직접부양자의 내용
 - ① 손자녀 : 부모 모두의 사망 등으로 호주(세대주)인 조부모가 학생인 손자녀를 직접 부양하는 경우
 - ② 동 생 : 부모·조부모 모두의 사망 등으로 호주(세대주)인 장남이나 장녀가 학생인 동생을 직접 부양하는 경우
 - ③ 본 인 : 직계존속(부모, 조부모)의 사망 등으로 학생본인이 세대주(호주)가 되어 농업(축산업, 임업, 어업)에 종사하는 경우

※ 일시적으로 조부모 등의 보호를 받는 경우는 제외

2) 지원금액

- 당해 학교의 급지별 구분에 따른 입학금과 수업료 전액

3) 지원대상 농업인 기준표 : < 별표 > 참조

4) 제외대상

- 국가기관에서 지원하는 학자금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학자금을 당해 학생이 지원받고 있는 경우
 - 보건복지부의 저소득층자녀학자금, 이·통장자녀 장학금지원등
- 교육청, 학교 등에서 당해 학생에 대한 학자금을 면제(지원)받고 있는 경우
- 보호자 및 가족(본인 포함)이 직장으로부터 당해 학생에 대한 학자금을 지원 받고 있는 경우
- 경지소유규모는 10,000㎡미만이나 대지(공시지가), 건물(건물과세표준액) 기준 재산이 170백만원 이상인 경우

나. 2003년 사업내용

사업량	총사업비	국비	지방비	비고
명	백만원			
105,000	59,053	17,716	41,337	※ 1인당 평균지원 단가 - 실업계 : 678천원 - 인문계 : 728천원

다. 사업비 부담기준 : 국비 30%, 지방비 70%(시·도비 35%, 시·군·구비 35%)

-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형편에 따라 시·도지사가 도(시)·군(시,구)간 지방비 부담비율을 조정할 수 있음

〈추진체계〉

가. 사업 주관기관 : 시장·군수·구청장

나. 사업담당 부서

- 농림부 : 기획관리실 여성정책담당관실 【 (02) 2110-4123~4 】
- 시·도 : 농업정책과(농정과)
- 시·군·구 : 농업정책과(산업과)

다. 대상자 선정

- 선정기준 : < 별표 > 「지원대상 농업인 기준표」 참조
- 선정절차(행정사항 참조)
 - ① 농업인 : 「농업인자녀학자금 지원신청서」를 매반기(12월말, 6월말) 별로 이·통장을 경유하여 읍·면·동장(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이하같음)에게 제출 [별지 제1호 서식]
 - ※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신청서」를 이·통장이 비치할 수 있도록 읍·면·동장은 미리 서식배부 조치
 - ② 이·통장 : 지원신청서 내용확인(신청농업인의 거주여부, 영농규모 등의 지원대상 또는 제외대상 여부확인) 후 서명(날인)
 - ③ 읍·면·동장 : 학자금 지원신청서가 접수되면 거주 확인, 지원대상 또는 제외대상 여부를 분기별로 확인하여 지급대상학생의 재학여부를 당해 학교장에게 조회 [별지 제2호 서식]
(녹지지역, 개발제한구역 거주여부는 특별히 확인요망)
 - ※ 읍·면·동장은 재학조회 회신 후 지원대상여부를 신청인과 학교장에게 통지
 - ④ 학교장 : 읍·면·동장이 조회한 학자금 지급학생 재학여부를 분기별로 확인하여 읍·면·동장에게 통보하고 지원대상으로 확정된 학생의 입학금 및 수업료는 납입받은 것으로 정리(학생에게 납입고지 불필요, 다만, 신입생의 1/4분기 학자금은 예외)
 - ※ 농업인학자금 지원대상자녀 재학확인 통보 : 년초에는 1. 20까지, 기타는 학교분기 익월 5일까지 별도의 조회요구가 없어도 읍·면·동장에게 통보

라. 사업시행

○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비 요구

- ① 읍·면·동장 : 학자금지원대상자를 확정하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기일내에 소요액 신청
· 1·2분기(2월10일), 3분기(6월10일), 4분기(9월10일)
- ② 시장·군수·구청장 : 학자금지원대상 학생수 및 소요액을 파악하여 당해년도 2월20일(1·2분기), 6월15일(3분기), 9월15일(4분기)까지 시·도지사에게 제출
- ③ 시·도지사 : 시·군·구 자료 취합후 2월28일(1·2분기), 6월20일(3분기), 9월20일(4분기)까지 농림부에 학생수 및 소요예산 신청 [별지 제3호 서식]
- ④ 시·도교육감 : 각 학교의 학자금 지원업무를 감독하고, 시·도지사에게 관내 학교현황, 급지별 수업료 등 학자금지원에 필요한 자료통지 등 협조

○ 사업비 지원방법

- ① 농림부에서 학자금에 대한 총사업비중 국비부담금을 시·도에 배정 → 시·도에서는 시·도부담금을 합하여 시·군·구에 배정 → 시·군·구는 시·군·구의 부담금을 합하여 읍·면·동에 배정
- ② 읍·면·동장은 지원대상 농업인의 거주확인, 지원대상 농업인 기준 및 제외대상에 해당되는지의 확인과 학교의 재학확인 결과에 따라 학교장이 개설한 학교계좌에 수업료·입학금 입금

○ 학자금지원 홍보

- ① 읍·면·동장, 시장·군수·구청장, 시·도지사 : 이·통장회의, 반상회보, 각종 화보, 홍보물 등을 이용하여 홍보함으로써 지원대상자가 누락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 ② 각 학교장, 시·도교육감 : 지원대상 학생이 학자금을 지원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홍보 및 관련자 교육(신입생 모집요강, 입학안내서 등에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 사항의 상세한 설명 등)

○ 학자금 정산결과보고 [별지 제4호 서식]

① 시장·군수·구청장 : 익년도 1월31일까지 시·도지사에게 보고

② 시·도지사 : 2월말까지 농림부장관에게 보고

※ 국고잔액 반납 : 정산보고후 연말까지 아래구좌로 납입 및 영수증 첨부하여 결과보고

· 회계 및 소관 : 농림부 일반회계 세입징수관

· 과목 : 경상이전수입(12-59-596 : 농업인 자녀학자금 반납금)

<행정사항>

○ 업무별·일정별 추진절차

업 무 명	최 초 작성기관	학교장	읍·면·동장	시장·군수·구청장	시·도지사	농림부
○ 학자금지원신청서 작성·제출	보호자	(이장경유)	→12.31			
○ 학적확인 조회	읍·면·동장	→1.15				
○ 학적확인 회신	학교장	→1.20				
- 1/4, 2/4분기 국비 보조금 신청	읍·면·동장				→2.20	→2.28
○ 학자금 지원대상 여부 통보	읍·면·동장 → 보호자			→2.10		
○ 1/4분기 재학확인 통보	학교장		→6.5			
- 3/4분기 국비보조금 신청	읍·면·동장			→6.10	→6.15	→6.20
○ 학자금지원신청서 작성·제출	보호자	(이장경유)	→ 6.30			
○ 학적확인 조회	읍·면·동장	→7.25				
○ 학적확인 회신	학교장	→9. 5				
- 4/4분기 국비보조금 신청	읍·면·동장			→9.10	→9.15	→9.20
○ 3/4분기 재학확인 통보	학교장		→12.5			
○ 4/4분기 재학확인 통보	학교장		→2.28			
- 집행실적 보고	읍·면·동장			→2.28		
○ 학자금 정산 보고	시장·군수·구청장				→3.15	→3.31
○ 보조금예산 통지	장 관				10.15←	
○ 학자금 지원지침 통지	장 관		11.30←	11.25←	11.20←	

※ 정부 분기 : 1/4(1~3월), 2/4(4~6), 3/4(7~9), 4/4(10~12)

학교 분기 : 1/4(3~5월), 2/4(6~8), 3/4(9~11), 4/4(12~2)

학자금 납입고지 : 1/4(2월), 2/4(5월), 3/4(8월), 4/4(11월)

< 별표 >

지원대상 농업인 기준표

농업인	양축인	임업인	어업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지소유규모 10,000㎡미만 ○ 기타 위에 준하는 농업인 및 연간 90일이상 농업에 종사한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말,젓소,사슴 : 30마리미만 ○ 돼지,개 : 200마리미만 ○ 산양,면양 : 300마리미만 ○ 토끼,친칠라,밍크 : 5,000마리미만 ○ 가금 : 10,000마리미만 ○ 양봉 : 150군미만 ○ 기타위에 준하는 양축인 및 연간 90일이상 축산업에 종사한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야소유규모 260,000㎡미만 ○ 기타 위에 준하는 임업인 및 연간 90일 이상 임업에 종사한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선이 없는 자 ○ 무동력선 사용자 ○ 15M/T이하 동력선 사용자 ○ 소규모 양식사업을 하는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하(垂下), 연승(延繩) 4.0ha미만 - 살포(撒布), 투석(投石) 14.0ha미만 ○ 기타 위에 준하는 어업인 및 연간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한 자

※ 임차하여 경작하는 면적은 소유규모에 포함되지 않음

※ 양축인의 경우 신청일 현재 성축(成畜)기준(새끼, 육성우는 2두를 1두로 환산)

※ 각각의 기준을 환산하여 중복적용 금지(예 : 경지 7,000㎡ 소유, 소 25마리 및 돼지 150마리를 사육할 경우 지원대상임)

< 제외대상 >

- 보건복지부의 「저소득층자녀학비」 등 국가기관에서 지원하는 학자금이나 「이통장자녀장학금」 등 지방자치단체의 학자금을 당해 학생이 지원받고 있는 경우
- 교육청, 학교 등으로부터 당해 학생이 학자금을 지원(면제)받고 있는 경우
- 당해학생의 보호자 및 다른 가족(학생본인 포함)이 직장 등으로부터 학자금(학비수당)을 지원받고 있는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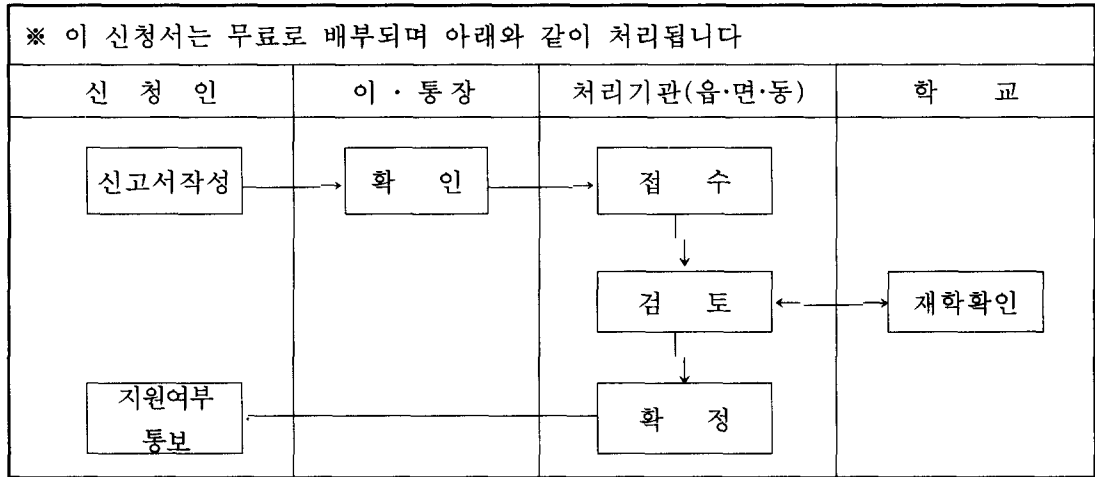
[별지 제1호 서식]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신청서						
신청인 주소				전화		
신청 자 기 재 내 용	성명		주민등록번호		학생과의관계	
	영농(어)규모				영농(어)일수	
	재산사항	토지(공시지가), 건물(과세표준액) 등 재산가액이 170백만원 미만 () 또는 이상()				
	가 구 원 취업상황	취업가구원 성 명	학생과의 관 계	직 장 명	당해학생의 학비수당 등 수령 여부	
					수령(), 미수령()	
	학생성명	학생 생년월일				
	학 교 명		학과명		학년반	
	학교주소				학교우편번호	
<p>신청인(확인자)은 상기내용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기재 내용이 허위인 경우 학자금 회수 등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200 년 월 일</p> <p>신청인 : 보호자 성명 (인)</p> <p>확 인 : 이·통장 성명 (인)</p> <p style="text-align: right;">읍·면·동장 귀하</p>						
<행정기관 확인사항>						
확 인 내 용				확인자 (직, 성명, 서명)	비 고	
주민등록주소 :						
공부(公簿) 소유 : 경지 m ² , 임야 m ² 가축 두, 어선(15M/T이하) 척						
공시지가 : 기준미만(), 기준이상() ※ 해당()에 ○ 표시, 기준 이상자는 비교란에 금액표시						
직장에서 당해 학생에 대한 학자금 수령 여부 : 수령(), 미수령() ※ 해당()에 ○ 표시						

(민원서)

210mm × 297mm
(인쇄용지(2급) 60g/m²)

(뒤면)



(민원서)

210mm × 297mm
(인쇄용지(2급) 60g/m²)

[별지 제2호 서식]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급대상학생 재학조회						
수신 기관명(학교명) :						
학생명	학생생년월일	보호자 성명	학과	학년	비고(재학확인)	
200						
담당자 (직) (성명) (인) 전화 : 주소 : 읍.면.동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인)						
학 교 기재사항	급 지	입학금	원	수업료(분기분)	원	
	납입구좌 은행		성 명			
			구 좌 번 호			
	학교주소				우편번호	
	담당자	(직)	(성명)	(인)	전화번호	
	특기사항					
※ 학교재학 확인란(학교에서 작성) 기재요령 ○ 작성기준일 : 학교분기 익월 5일까지. 단, 연도초에는 1.20일까지 (별도의 조회요구가 없어도 분기별로 읍·면에 통보) ○ 변동자 : 사유 및 발생일자(작성예 : 자퇴 3.10) - 전학시 : 전학한 학교명·학과·날짜기재, 전입시 : 이전 학교명·학과·날짜기재 ○ 재학자 : 재학중인 학과 기재 ○ 교육부 또는 학교 등에서 수업료·입학금 면제여부를 확인하여 특기사항란에 해당유무를 기재 - 지원대상으로 확정된 학생의 입학금 및 수업료는 납입받은 것으로 정리하시고 지원대상 학생에게 별도의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서는 안됩니다.						

(일 반)

210mm × 297mm
(인쇄용지(2급) 60g/m²)

[별지 제3호 서식]

□ 작성기관명 : (전화번호)

분기별 농업인 자녀학자금 국비보조 신청										
[단위 : 학생수(명), 사업비·국비 (천원)]										
구 분		전분기까지 배정			/4분기 요구			/4분기까지 누계		
		학생수	사업비	국 비	학생수	사업비	국 비	학생수	사업비	국 비
면지역	입학금									
	수업료									
읍지역	입학금									
	수업료									
시지역	입학금									
	수업료									
계	입학금									
	수업료									
	계	-			-			-		

주) 1. 수업료지급 학생수에는 입학금지급 학생수를 포함
 예) 입학금 15명(1학년), 수업료 45명(1학년 15명, 2·3학년 30명)
 2. 사업비는 국비와 지방비를 합한 금액임

(일 반)

210mm × 297mm
 (인쇄용지(2급) 60g/m²)

[별지 제4호 서식]

(총 공통 - 9)

농업인 자녀학자금 정산결과 보고									
구 분		예산액(A)		교부결정액(B)		집행(정산)액(C)		정산잔액(B-C)	
		학생수	금 액	학생수	금 액	학생수	금 액	학생수	금 액
면지역	국 비	-	천원	-	원	-	원	-	원
	지방비	-		-		-		-	-
	소 계								
읍지역	국 비	-		-		-		-	-
	지방비	-		-		-		-	-
	소 계								
시지역	국 비	-		-		-		-	-
	지방비	-		-		-		-	-
	소 계								
합 계	국 비	-		-		-		-	-
	지방비	-		-		-		-	-
	소 계								

주) 1. 학생수는 “소계”란에만 표시
 2. 예산액은 당초(년초) 편성된 예산임
 3. 교부결정액은 연말에 교부결정이 확정된 금액이며, 국비는 농림부에서 시·도에 교부된 총액이고 지방비는 읍·면·동에 배정된 도(시)비 + 군(구)비 총액임
 4. 집행(정산)액은 읍·면·동에서 학교에 실제 지출(송금)된 금액임
 * 3명에게 각각 1분기씩만 지급하였어도 학생수는 3명으로 집계요망
 5. 정산잔액은 농림부에 반납할 국비만 기재
 6. 잔액 과다발생 또는 국고부담비율을 3%이상 초과 또는 미달하여 지원하였을 경우 별지 또는 하단에 사유를 작성·제출

(보고서)

210mm × 297mm

(인쇄용지(2급) 60g/m²)

② 자영농과생 급식비 지원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여성정책담당관실(과장 박성자, 사무관 조용범)입니다.

1. 목적

- 자영농과생에 대한 급식비 지원으로 영세농업인의 부담경감을 도모하고, 농업을 합리적·과학적으로 영위할 수 있는 농업인 후계자를 육성하여 젊고 우수한 농업전문인력의 농촌정착을 유도

2. 시책 및 추진방향

- 자영농과생에 대한 급식비의 70% 수준(국고 20%, 도비 30%, 교육청 20%)을 지원함으로써 핵심농업인 후계세대 육성
- 지원대상 : 전국 11개 농업계열 고등학교에 설치된 자영농과 재학생

3. 근 거 : 대통령지시사항('84.11. 3)

4. 연도별 지원실적 및 계획

		2001	2002	2003(예산안)
사업량	대상인원	2,500	2,050	2,600
사업비 (백만원)	계	1,950	1,599	1,767
	국고보조	390	320	353
	지방비	975	799	884
	자부담	585	480	530

5. 2003년도 사업시행요령

《사업내용》

가. 사업내용

- (1) 지원대상 : 전국 11개 농업계열 고등학교에 설치된 자영농과 재학생

- 경기 : 여주자연농고
- 강원 : 홍천농고, 춘천농공고, 주천종합고
- 충북 : 보은자연농고
- 충남 : 공주농고
- 전북 : 김제자연농고
- 전남 : 강진농고
- 경북 : 안동생명과학고
- 경남 : 경남자연농고
- 제주 : 서귀포산업고

(2) 지원액

- 지원단가
 - 기숙사 입사생 : 3,090원/1일
 - 기숙사 비입사생 : 1,030원/1일
- 지원기준 : 국고 20%, 지방비 50%(도 30, 교육청 20), 자부담 30%

(3) 지원일수 한도 : 연간 260일

나. 2003 사업비(예산내용)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사업량	사업비			
		합계	국고보조	지방비	자부담
자연농과생급 식비지원	2,600명	1,767 (100%)	353 (20%)	884 (50%)	530 (30%)

※ 예산편성기준으로 기숙사생 2,000명, 비기숙사생 600명

《추진체계》

가. 사업주관기관

- 농림부 : 시행지침 발달, 시·도별 예산 및 자금교부
- 시·도지사 : 도 분담금을 확보하여 교육청 배정, 사업 추진상황 감독 및 사업결과 정산 등

- 도·교육청 : 교육청 분담금을 확보하여 학교별 배정, 사업 추진상황 감독 및 사업결과 정산 등
- 각학교 : 자체부담금 확보, 사업비 집행 및 정산

나. 사업담당부서

- 농림부 : 여성정책담당관실(☎ 02-2110-4123~4, FAX : 02-503-7295)
- 시·도 : 농정업무 담당부서(농정관련과)

다. 사업시행절차

- 농림부에서 총사업비 중 국고부담금(20%)을 각도에 배정 → 각도에서는 도 분담금(30%)을 합하여 교육청 배정 → 교육청에서는 분담금(20%)을 합하여 각 학교에 배정 → 학교에서는 자체부담금(30%)을 합하여 집행

라. 사업비 집행 및 정산

(1) 국고자금 교부

- 상반기 중 국고자금 소요액은 시·도의 별도 자금요구 없이 농림부에서 2003년도 예산의 1/2을 일괄 교부
- 하반기 중 국고자금 소요액은 시·도지사가 2003년도 6월25일까지 농림부에 자금교부를 요청

(2) 사업비 정산

- 각 학교는 사업비 집행실적을 정산하여 교육청을 경유하여 익년도 2월 20일까지 시·도지사에게 보고(별지 제1호 서식)
- 시·도시사는 익년도 2월 28일까지 농림부에 보고(별지 제1호 서식)
- 국고잔액 반납 : 정산보고 후 영수증을 첨부하여 결과 보고
 - 회계 및 소관 : 농림부 일반회계 세입징수관
 - 과목 : 경상이전수입(12-59-591, 자영농과생급식비 지원사업 반납금)

자영농과생급식비 지원사업 결과 보고

(단위 : 원)

학교별		예산액(A)		교부결정액(B)		정산액(C)		정산잔액(B-C)	
		학생수	금액	학생수	금액	학생수	금액	학생수	금액
	국 비								
	도 비								
	교육청비								
	학 교								
	학 생								
	계								
	국 비								
	도 비								
	교육청비								
	학 교								
	학 생								
	계								
	국 비								
	도 비								
	교육청비								
	학 교								
	학 생								
	계								
합계	국 비								
	도 비								
	교육청비								
	학 교								
	학 생								
	계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농촌인력과(과장 정황근, 행정사무관 이경천)입니다.

1. 목 적

- 농업경영의 혁신을 지원 농업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정부의존을 탈피, 자기혁신능력을 갖춘 농업경영주체 육성
- 컨설팅서비스 민간공급기반을 정비·강화하고 농가의 컨설팅 수요를 촉발하여 중장기적으로 자율적 시장기구에 의한 컨설팅 추진(소프트웨어적 공공투자)

2. 시책 및 추진방향

- 농업 경영체의 컨설팅수요 및 민간컨설팅기관의 공급능력이 취약함을 감안, 컨설팅 서비스의 질 향상을 통한 농업컨설팅 내실화를 유도하는 한편, 점진적인 저변확대 추진
- 컨설팅 필요 경영체와 컨설팅기관·업체·전문가팀(이하 컨설팅기관·업체)간의 자발적인 계약을 바탕으로 사업을 추진하며 행정기관(농림부, 시·도, 농업기술원, 시·군, 농업기술센터 등)은 계약의 알선과 적정화, 계약이행여부 감독, 정보 제공 및 제도정비에 주력
- 지원대상 경영체와 컨설팅기관·업체 및 행정기관 사이에 정보유통체계와 사업관리체계를 정비, 투명하고 효율적인 사업추진 도모
 - 지원사업 관련정보를 집중시켜 사업 참가자의 정보활용도 제고
- 가공업체의 경우 각 전문분야의 경영혁신 방안을 구체화하여 이를 해당 가공업체로 하여금 수행토록 하는 종합컨설팅 체제 확립

3. 근거법령

- 농업·농촌기본법
 - 제17조(농업인의 경영혁신 및 자금지원), 제25조(농업과학기술의 진흥) 제33조(농산물가공산업의 육성)
-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
 - 제11조(가공업자의 경영개선 지원)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 개소, 백만원)

구 분	'99	2000	2001	2002	2003 예산안	2004이후
사 업 량	464	462	453	570	670	5,516
사 업 비	2,800	4,000	4,000	5,000	5,696	46,866
· 국 고	840	1,200	1,200	1,500	1,709	14,060
· 지방비	560	800	800	1,000	1,139	11,716
· 자부담	1,400	2,000	2,000	2,500	2,848	23,443

* 사업량은 수요·공급자간의 실제계약단가에 따라 변동가능

5. 2003년도 사업시행요령

<사업개요>

가. 사업내용

(1) 배경

- 농업구조개선투자로 경영규모화와 시설·장비 현대화는 진전되었으나 경영 능력향상이 병행되지 못해 사업이 조기 정착되지 못하는 사례가 적지 않아 농업인의 경영혁신노력을 측면 지원할 필요
- 민간컨설팅 활성화를 위해 컨설팅희망 농업 경영체(농업법인, 가공업체 및 개별농가)에 대해 컨설팅료 일부를 지원, 경영상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강구·실행토록 함

(2) 지원대상

- 원예·특작, 축산분야 농업법인 및 개별농가
- 국산 농산물을 주원료로 사용하는 농산물가공업체

(3) 지원규모 및 지원조건

- 컨설팅비용 지원 : 경영체당 평균 8.5백만원
 - 지원을 : 국고보조 30%, 지방비보조 20%, 자부담 50%
- 사업비한도 : 농업법인·가공업체 : 5~20백만원, 개별농가 : 3~10백만원
 - 계약금액이 사업비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은 자부담
- ※ 계약기간 : 1년 이내를 원칙으로 하며, 계약발효일을 2003.10.31 이내로 체결토록 하고 계약종료는 2004.6.30이내로 함

(4) 지원내역

- 지원대상에 대해 사업비 한도 내에서 컨설팅료의 50% 지원
 - 지원한도 : 농업법인·가공업체 : 2.5~10백만원, 개별농가 : 1.5~5백만원

- 지원자금은 농업경영 컨설팅료의 지급 이외에 시설·장비구입자금, 운영자금 등 다른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음
- ※ 지원대상컨설팅은 [별표2]에 예시된 바에 의함

나. 2003 사업비(예산) 내용

사업명	사업량	사 업 비			
		사업비합계	국고보조	지방비보조	자부담
농업경영컨설팅 지 원 사 업	개소 670	백만원 5,696	1,709	1,139	2,848

< 추진체계 >

가. 사업주관기관 : 시·도지사

- 시·도지사는 컨설팅사업 추진 관련 자문, 사업추진상황 평가 등을 수행하기 위해 과장급 이상 시·도 농정담당공무원, 지도계통 전문가, 농업계 대학 교수·연구자, 선도농가, 농업·비 농업 분야의 컨설팅 전문가를 위촉,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음
- 시·군과의 협조
 - 시·도지사는 시·군 담당 직원에 대해 컨설팅사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시·군과의 업무협조계획을 수립하여 실시
 - 시장·군수는 농업경영컨설팅사업 전담직원을 지정 및 농가홍보를 실시하고, 농업경영체와 농산물가공업체 등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
- 시·도지사는 지역농정시책이나 농업여건, 컨설팅가능 기관·업체 등의 존재 여부 등을 감안, 원예·특작, 축산 분야 중 세부사업분야를 지정하며, 이 사항을 포함하여 컨설팅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본 지침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자체지침 제정 가능(자체지침 제정시 농림부와 협의)

나. 사업담당 부서

- 농림부 : 농업정책국 농촌인력과(전화 : 02-500-1686~7, FAX : 02-503-7217)
- 시·도 : 농정 담당 부서(농업정책과, 농정유통과 등)
- 시·군 : 농정 담당 부서 또는 농업기술센터

다. 컨설팅대상 경영체선정 및 컨설팅공급업체 지정

(1) 컨설팅대상 경영체 선정

1) 신청자격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원예·특작, 축산경영체 또는 국산 농산물을 주원료로 사용하는 농산물가공업체
- 시·도 및 시·군 단위 정보화교육기관(사설기관포함), 농림수산정보센터(AFFIS) 등의 농업정보화교육을 3일 이상 이수하였거나 계약이후 일정 시기 이내에 이수할 예정인 경영체로서 신청시점 현재 농림수산정보망 또는 인터넷을 활용중이거나 활용의사가 있는 경영체

※ AFFIS, 인터넷, 기타 상용서비스 가입·사용자로서 정보통신활용 능력이 갖추어진 농업인은 정보/통신서비스회사가 발행하는 가입 및 최근 3개월 이상의 사용실적을 증빙하는 문서(가입일시, 접속회수, 사용시간 등을 포함)를 제출함으로써 정보화교육 이수에 갈음할 수 있음

2) 선정우선순위(순서대로 적용)

- ① 경영장부나 영농일지를 최근 1년 이상 기록한 경영체
- ② 농업경영종합자금지원사업 지원(대상) 경영체
- ③ 신청요건을 충족하는 경영체로서 지도계통컨설팅을 받은 경영체
- ④ 후계농업인, 신지식농업인등 전문 경영체
- ⑤ 수출실적이 있거나 수출계약을 체결한 경영체
- ⑥ 컨설팅 계약분야(별표 2 참조)가 많은 경영체
- ⑦ 정책자금 지원(대상) 경영체
- ⑧ 지원 신청 시점 현재 인터넷 계정이 있거나 농림수산정보망 회원인 경영체
- ⑨ 경영규모가 큰 경영체

3) 선정절차

- 시·도별 지원대상 경영체 수 확정 : 농림부
 - 신청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시·도별 경영체 수를 감안, 농림부에서 일괄적으로 배정하되 각 시·도의 계약체결 절차 1차 완료 후 과부족이 있을 경우 시·도간 사업물량 조정 가능
- 시·군·구별 추천대상 경영체 수 배정 : 시·도지사
 - 시·도지사는 컨설팅분야별(원예, 축산, 가공업체 등)로 지원대상 경영체수를 사전에 결정하여 배정할 수 있음
- 지원대상 경영체 추천 :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군수)
 - 시장·군수는 관내소재 경영체 중 컨설팅 희망 경영체의 신청을 받아 도지사에게 추천
 - 시장·군수는 시·군 농정심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추천 가능
 - 시장·군수는 컨설팅 희망 경영체의 신청이 많을 경우 선정요건 및 선정우선순위에 따라 해당 시·군에 배정된 추천대상 경영체 수의 2배수를 우선 순위를 표시하여 추천
 - 시장·군수는 사업 추진시 관할지역의 시군 농업기술센터를 적극 활용

- 지원대상 경영체 확정 : 시·도지사
 - 시·도지사는 시·군에서 추천한 경영체에 대해 본 지침 및 시·도 지침이 정하는 선정요건 및 선정우선순위에 따라 지원대상 경영체 확정 후 농림부에 보고하고, 분기별로 자문위원회(또는 농정심의회)에 사후 집계 보고
 - 시·도지사는 추천 받은 경영체 전체에 대해 순위를 매기며 계약체결 이전에 선 순위자의 선정이 취소될 경우 차 순위자를 대체선정
 - 일단 지원대상 경영체로 선정된 연후에도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할 컨설팅기관·업체 등이 없을 경우 시·도지사는 그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2) 컨설팅공급기관·업체 등 지정

1) 지정신청자격 : 아래 요건 모두를 충족해야 함

- 농업분야 컨설팅 서비스를 실시하기 위해 고용계약이나 법인설립에 의해 전문인력 4인(농산물가공분야는 1인)이상 보유한 민간기관(대학 포함 - 이하 “기관”이란 대학을 포함함)·업체 또는 4인(농산물가공분야는 1인) 이상의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전문가팀
 - 기관·업체에는 그 부속기관도 포함. 다만, 계약의 이행책임은 당해 기관·업체 및 전문가팀 전원에 귀속되며 이를 계약에 명시
- ※ 컨설팅공급기관·업체 및 전문가팀은 이하에서 ‘컨설팅공급업체’라 칭함
- 인터넷 또는 농림수산정보망(AFFIS)을 활용한 농업경영컨설팅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는 컨설팅공급업체
- 컨설팅공급업체는 [별표2]에서 분류한 컨설팅 서비스분야 중 내부 전문인력을 보유하지 못한 분야는 각 2인 이상의 외부 인력을 확보해야 함 (단 가공분야는 제외함)
-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필한 컨설팅공급업체 (전문가팀은 대표컨설턴트의 명의로 개인사업자등록을 필해야 함)
- ※ ‘전문인력’ : 법령상 공인된 자격증이 있는 분야의 경우에는 그 자격증 소지자(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상 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포함) 또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 해당 분야를 전공하고 석사 이상의 학위가 있는 자
 - 해당 분야를 전공하고 학사 학위가 있는 자로서 해당 분야 기관·업체에서 3년 이상 근무 경험자
 - 해당 분야 기관·업체에서 5년 이상 근무 경험자 (시설원예온실의 경우 3년 이상의 생산온실 현장경험 포함)
 - 선도농업 경영체의 경영주

- ※ 특정 컨설팅공급업체(컨설팅기관·업체·전문가팀)의 내부전문인력은 다른 컨설팅공급업체의 내부전문인력이 될 수 없으며, 여타 2개 컨설팅공급업체의 외부전문인력으로 참여가 가능함.
 - 단 컨설팅공급자의 대표는 1개의 외부전문가그룹에만 참여할 수 있음
 - 동일인의 외부전문인력 참여는 3개의 외부 전문가그룹 까지만 가능

2) 지정 우선 순위(순서대로 적용)

- 최근 2년 이내에 유료컨설팅계약을 체결하여 농업경영체에 대한 경영 컨설팅을 수행한 실적이 있는 컨설팅공급업체(전문가팀의 경우 컨설턴트 개인의 최근 2년 이내 컨설팅계약실적을 전문가팀의 계약실적으로 할 수 있음)
 - 컨설팅계약건수와 컨설팅계약액 총액 및 컨설팅 성과를 상호 비교 평가
 - 연구용역, 경영교육, 정보화교육은 유료컨설팅계약에 해당하지 않음
- 중소기업청에 지정된 벤처기업으로서 농업경영컨설팅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는 컨설팅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
- 컨설팅 가능분야 시설·장비 보유현황이 우수한 컨설팅기관·업체
- 컨설팅 가능분야 보유인력 및 외부전문가그룹이 충실한 컨설팅공급업체
- 인터넷 및 농림수산정보망의 전자우편, 게시판, DB 등을 활용한 컨설팅 서비스를 시행중인 컨설팅기관·업체·전문가팀
- 농업교육·훈련기관이 주관하는 교육 또는 workshop을 이수한 컨설팅공급업체
 - ※ 시·도지사는 지역농정시책이나 지원대상 경영체가 요구하는 컨설팅내용 등을 고려, 지정 우선 순위에 관한 규정을 추가 가능
- ※ 컨설팅공급업체 지정에 있어 지역제한은 두지 않음

3) 지정절차

- 2002년도 농업경영컨설팅지원사업에서 해당 도에서 계약 5건 이상 수주 컨설팅공급업체는 변경 사항만 신고하고 재 지정 절차 생략가능
 - 단, 컨설팅공급자 지정신청서 [별지서식 4-1] 는 제출
- 컨설팅공급업체 지정 : 시·도지사
 - 시·도지사는 컨설팅지원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컨설팅공급업체로부터 신청을 받아 지정요건과 지정 우선 순위에 따라 컨설팅공급업체를 지정
 - 시·도지사가 직권으로 지정하거나, 자문위원회를 구성한 경우 동 위원회의 공개심의를 거쳐 컨설팅공급업체를 지정 가능하며 이 경우 별도로 시·도 농정심의회 심의를 거치지 않음.
 - 시·도지사는 지정요건을 충족하는 업체가 10개 미만이거나, 가용 예산에 의한 농가추가선정시 컨설팅 가능한 기관·업체가 1개소 이하인 경우 지역농정시책이나 지원대상 경영체의 컨설팅 수요를 감안 하여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기관·업체 등을 직권으로 추가 지정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지원대상 경영체에 컨설팅공급업체에 대한 참고자료, 소개문을 서신으로 발송하고 인터넷 도정홈페이지와 농림수산정보망에 게시하는 한편 지정결과를 농림부에 보고
- 시·도지사는 지정심사시 지역농업시책이나 경영체의 수요를 감안 품목별, 분야별로 각각 구분하여 컨설팅공급업체를 심사할 수 있음

- 4) 컨설팅공급업체의 내부인력과 외부인력은 농림부 또는 시·도(시·군)에서 개최하는 워크숍 등 행사에 참여하고 협조해야 함

라. 사업시행

(1) 계약체결

1) 설명회 개최 : 시·도지사

- 참가대상 : 선정·지정된 지원대상 경영체 및 컨설팅공급업체 대표
 - ※ 선정된 지원대상 경영체는 설명회에 참여 해야 하며, 불참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지원대상 경영체 선정 및 컨설팅공급업체 지정을 완료한 후 시·도지사가 일시·장소를 정하여 1회 이상 설명회 개최
- 시·도지사는 컨설팅공급업체가 제출한 사업계획서, 소개자료, 계약서 실례 등과 지원대상 경영체가 제출한 지원신청서 및 경영관련기록을 계약 쌍방에게 교부, 충분한 판단기회 제공 및 계약 적정화 유도

2) 계약체결 및 계약승인요청

- 계약체결
 - 지원대상 경영체 및 컨설팅공급업체는 계약체결협의를 거쳐 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약서 작성
 - 시·도지사는 계약체결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
 - ※ 계약서에 반드시 포함할 사항 : [별표 3]
- 계약승인요청 : 컨설팅공급업체는 가계약서와 함께 아래의 서류를 첨부하여 계약승인 요청
 - 컨설팅서비스 수행계획서 1부 [별지서식 1]
 - ※ 수행계획서의 필수 항목 : 컨설팅대상 경영체의 기술 및 경영현황, 개선필요사항, 컨설팅의 주요내용 및 개선목표, 컨설팅의 기대효과
 - 3년 차 이상 컨설팅사업 지원대상 경영체와 컨설팅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경영체의 직전 년도 또는 직전반기 재무제표(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 1부
- 계약체결건수 제한
 - 1개 컨설팅공급업체는 1개 시·도당 30건 이내, 전국 총계약건수 60건 이내로 컨설팅계약 체결 가능
 - 단, 시·도지사는 컨설팅공급업체의 규모, 업무수행능력, 컨설팅 수행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컨설팅업무를 내실 있게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건수 상한의 제한 없이 계약체결 승인 가능.
 - 위의 건수제한을 초과하는 경우 익년도 계약건수 상한을 그 초과건수 만큼 제외하고 적용
 - ※ 시·도지사는 해당 컨설팅공급업체의 보유인력을 감안하여 공급능력을 초과한 무리한 사업물량 수주로 컨설팅이 부실화되지 않도록 유의

(2) 지원금액 결정 및 계약의 효력

○ 지원금액 결정 : 시·도지사

- 시·도지사는 컨설팅공급업체로부터 가계약서 및 첨부문서를 제출받아 [별표 3]에 명시된 사항이 빠짐없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검토한 후 경영체의 성격, 약정된 컨설팅의 내용, 계약금액 등을 감안하여 지원금액을 결정, 계약쌍방에 통보

※ 시·도지사는 지원결정 및 지원금액 통보 시 본지침상의 사업취소 사유를 컨설팅기관·업체와 컨설팅대상경영체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함

- 시·도지사는 지원금액 결정시 당해 컨설팅공급업체와 [별표 4]의 “농업경영컨설팅서비스대금 지원약정”을 체결

○ 계약의 효력은 시·도지사의 지원금액 결정·통보 후 계약에 정해진 바에 따라 발생함

- 단, 효력발생의 초일(시·도지사의 계약승인으로 지원금액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약기간의 초일)은 가계약서 상 계약기간의 초일로 하되, 계약기간의 초일은 가계약서 및 첨부문서가 시·도에 접수된 날로부터 1주일 이후여야 함.

* (예시) 시·도(시·군)에 계약서를 접수한 날이 2003. 2.1인 경우 계약서상 계약기간 초일은 2003. 2.8 이후 여야 함

○ 사업비 지급방법

- 시·도지사(시장·군수)가 지원대상 경영체의 동의하에 컨설팅공급업체에 직접 지급(컨설팅계약체결시 계약서상에 명기하도록 함)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경영체가 공급업체의 계좌에 자부담금을 입금한 경영체명의로 통장사본 또는 금융기관에서 발행한 송금자와 수취인을 확인할 수 있는 입금확인서를 확인한 후 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함.

(3) 계약의 무효·해지·변경 등

1) 계약의 무효

- 계약이 무효인 경우 기 지원금액 전체를 회수

2) 계약의 해지

- 컨설팅공급업체가 컨설팅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시·도지사는 실비를 제외한 자금을 회수하고 지원대상 경영체와 타 컨설팅공급업체를 알선

- 대체계약의 체결은 연중 가능(다만, 지원금액결정일 및 계약 발효일이 2003.12.31이내여야 하며, 지원기간만료일은 2004.6.30이내이어야 함)

- 자금회수대상에서 제외되는 실비의 범위는 계약에서 정하는 실비의 범위에 따르며 그 부담은 계약금액, 지원금액 결정 시 책정된 사업비한도 및 지원조건을 감안, 비례적으로 자부담과 보조금(국비, 지방비)으로 안배함 (이하 실비를 제외한 자금회수를 규정한 경우 동일 내용 적용)

- 지원대상 경영체가 컨설팅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시·도지사는 실비를 제외한 자금을 회수

3) 계약의 변경

- 계약서 상에 정해진 사정변경사유 혹은 계약쌍방의 합의에 따라 중요 계약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체결 및 지원금액 결정의 예에 따라야 함
 - 중요계약사항변경 : 계약금액, 컨설팅서비스 내용 및 컨설팅의 기대효과에 관한 약정의 변경, 계약에 정해진 컨설팅인력의 구성 변경(계약금액의 변경 없이 컨설팅 참가인원을 늘리는 계약변경은 제외), 기타 컨설팅 계약의 본질적 요소라고 인정되는 사항
 - 컨설팅공급업체는 계약서 변경안 및 첨부문서 사본, 계약변경이유서(서식자유, 계약쌍방 서명날인) 각 1부를 시·도지사에게 제출
- 계약의 무효·해지·변경 및 이에 따른 자금회수조치를 취한 경우 시·도지사는 농림부에 즉시 보고

(4) 사업비 집행방법

- 자부담액을 먼저 집행한 후 보조금을 지급
 - 단, 보조금 및 자부담을 동률 병행집행 가능
 - * (예시) 사업비중 계약금 30% 지급시 자부담 15%, 보조금 15%로 구성
- 사업비는 계약금 30%, 중도금 40%, 잔금 30%로 나누어 지급
 - 계약기간이 4개월 이하인 경우 사업비를 계약금과 잔금으로 50%씩 균분 하여 집행가능

(예시) 계약액이 사업비한도액을 초과하고 계약서 상 계약금, 중도금, 잔금이 각각 30%, 30%, 40%이며, 계약금액 40백만원, 인정사업비가 10백만원인 경우

계약금액 지급	기간1(30%)	기간2(30%)	기간3(40%)
초과액 30백만원	자부담 9	자부담 8	자부담 13
사업비 10백만원	자부담 3	자부담 2 보조금 2	보조금 3
사업비 집행	기간1(30%)	기간2(40%)	기간3(30%)

※ 계약기간 만료 후 컨설팅업체의 잔금지급요청으로 시·도(시·군)의 현장확인 시 [별지서식 2] 의 '지원대상 경영체 실태조사표' 작성

○ 지급시기는 다음에 따름

< 자부담 선집행의 경우 >

- 계약금 : 계약서에 정한 기한 내에 자부담금이 컨설팅공급업체에 입금된 사실확인파 현장 확인한 후 허위사실, 계약 불이행 등 보고서 내용과 상위점이 없을 경우 지급
- 중도금 : 컨설팅추진상황보고서 제출 후 1주 이내 현장 확인한 후 허위사실, 계약 불이행 등 보고서내용과 상위점이 없을 경우 지급
- 잔 금 : 계약기간 종료이후 컨설팅결과보고서(또는 컨설팅추진상황 보고서) 제출 후 1주 이내 현장 확인 한 후 허위사실, 계약불이행 등 보고서내용과 상위점이 없을 경우 지급

< 보조금 동률 병행지원의 경우 >

- 계약금 : 컨설팅서비스 수행계획서 제출 후 현장 확인한 후 허위사실, 계약불이행 등 보고서내용과 상위점이 없고, 자부담금이 공급업체에 입금된 사실확인후 보조금을 지급
 - 중도금 : 컨설팅추진상황보고서 제출 후 1주 이내 현장 확인한 후 허위사실, 계약불 이행 등 보고서내용과 상위점이 없고, 자부담금이 공급업체에 입금된 사실확인후 보조금을 지급
 - 잔 금 : 컨설팅결과보고서(또는 컨설팅결추진상황보고서) 제출 후 1주 이내 현장 확인한 후 허위사실, 계약 불이행 등 보고서 내용과 상위점이 없고, 자부담금이 공급업체에 입금된 사실 확인후 보조금을 지급
- 컨설팅추진 상황 보고서(별지서식 10-4)와 컨설팅결과보고서는 계약기간종료 후 15일 이내 제출
 - 현장 확인 후 컨설팅서비스 수행계획서, 컨설팅추진상황(결과)보고서와 상위점이 발견될 경우
 - 경미한 하자에 대해서는 보고서 재작성 혹은 계약의 이행 촉구
 - 계약의 본질적 내용에 대한 위반 혹은 컨설팅지원사업의 목적 이탈이라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시·도지사가 1차 시정 촉구 후에도 시정이 안될 경우 실비를 제외한 자금을 회수(상세한 것은 ‘사후관리’ 항목 참조)

- 보조금 교부신청
 - 컨설팅공급업체는 경영현황기술서, 컨설팅추진상황보고서 및 컨설팅 결과보고서 제출 시 시·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교부를 신청하여야 함
 - ※ 계약기간 만료 후 컨설팅기관·업체의 잔금 지급 요청 시 '컨설팅결과보고서'와 함께 [별지서식 3] '농업경영컨설팅 이행확인서' 첨부

(5) 추진일정(별표 5 참조)

- 본 지침 및 시·도지침의 게시·공고 및 사업참가신청 : 2003.1.31 까지
 - 농림사업실시규정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한 달 이상 게시·공고하되 인터넷 도정홈페이지와 농림수산정보망에도 게시·공고
 - 신청서 제출기관
 - 컨설팅 희망 경영체 : 시·군
 - 컨설팅공급업체 : 시·도청
 - 제출서류
 - 컨설팅공급업체와 컨설팅대상 경영체는 다음 서류를 선정 또는 지정 신청 시 각각 시·도청, 시·군에 제출하며 시장·군수는 추천 시 관련 신청서류 사본을 시·도지사에게 이송

구 분	제출서류	비 고
· 컨설팅공급업체	· 농업경영컨설팅서비스 공급업체지정신청서 1부 등 · 농업경영컨설팅사업계획서 1부 · 기타 소개자료	별지서식3, 4-1, 4-2 및 첨부서류 신청자 희망에 따라 제출
· 컨설팅희망경영체	· 농업경영컨설팅신청서 1부	별지서식 5 및 첨부서류

※ 농업경영컨설팅사업계획서는 자유로이 작성하되 다음 사항을 포함
해야 하며 설명회 시 지원대상 경영체에 공개

- 1) 당해 컨설팅공급업체 등의 일반현황(전문인력, 협조 가능한 외부전문가 현황, 시설·장비보유현황, 이용 가능한 외부기관의 시설·장비현황 포함)
- 2) 제공 가능한 컨설팅서비스 내역과 기대효과(가급적 상세히)
- 3) 기존 컨설팅실적 및 효과(계약서 사본 포함)
- 4) 컨설팅서비스 공급비용 관련 세부내역
- 5) 인터넷 및 농림수산정보망을 통한 컨설팅서비스제공계획

- 컨설팅 대상경영체 선정 : 2003. 2월말까지
 - 시장·군수는 신청 접수후 2주이내 자체심사(심사결과는 별지 서식6-1을 활용)를 거쳐 컨설팅대상 경영체 추천대상자 확정 및 시·도 보고
 - 시·도는 시·군의 추천 후 2주 이내 자체심사(심사결과는 별지 서식 6-2를 활용) 또는 자문위원회(또는 시·도농어촌발전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컨설팅대상 경영체 선정
 - 컨설팅공급업체 지정 : 2003. 2월말까지
 - 시·도지사는 신청접수 후 4주 이내 자체 심사(심사결과는 별지 서식 6-3을 활용) 또는 자문위원회(또는 시·도 농정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컨설팅공급자 지정
 - 계약체결절차 : 2003. 10. 31 이내에서 수시로 하되, 계약종료는 2004. 6. 30
까지로 한정
 - 시·도지사는 지원대상 경영체 선정 및 컨설팅공급업체 지정 후 2주 이내 (각도 자체일정에 따라 변경 가능)에 컨설팅지원사업설명회를 1회 이상 개최
 - 시·도지사는 지원대상 경영체와 컨설팅공급업체간의 계약서 및 첨부 문서 검토 후 4주 이내에 지원금액결정
 - (* 계약의 효력 발생 후 사업개시
- ※ 이상의 추진일정은 각 시·도의 사업추진준비 및 여건에 따라 수정 시행 가능

(6) 농업경영종합자금 신청 혹은 지원농가에 대해서는 컨설팅 신청 시 우선 지원함.

마. 사업검정 및 사업비 정산

(1) 사업검정 :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

- 회계연도 종료 혹은 계약기간 종료시 시·도지사는 계약서(변경계약서) 및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제4조 제5항, 제6항이 정한 증거자료에 입각, 검정 실시 후 농림부에 보고

(2) 사업비정산 : 시·도지사

- 시·도지사는 회계연도 종료 혹은 계약기간 종료후 사업비를 정산하고 그 결과를 농림부에 보고

바. 기타사항

- 정부시책방향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컨설팅 대상 경영체가 필요로 하는 컨설팅 내용과 기대효과를 컨설팅공급업체의 합의에 의해 자유로이 계약으로 정할 수 있음

< 행정사항 >

가. 사후관리

(1) 사후관리기관 :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

- 시·도지사는 시장·군수의 협조를 얻어 컨설팅계약 기간 중 계약 쌍방의 계약이행여부를 지도·감독하고 컨설팅 성과를 점검하며, 계약기간 종료 후 1년 동안 지원대상 경영체의 경영실태를 연도말을 기준으로 점검, 농림부에 보고
- 시·도지사는 도 농업기술원과 농업기술센터의 컨설팅팀을 중심으로 각분야 컨설팅전문가를 위촉, 컨설팅 모니터링팀을 구성하여 컨설팅 계약의 정상적인 추진여부를 감독
 - 컨설팅대상 경영체별 전담관리 병행

(2) 정보통신네트워크 구축

- 컨설팅공급업체는 인터넷 및 농림수산정보망을 통한 컨설팅서비스체제 구축(농림수산정보센터와 협의)
- 농림수산정보센터는 농림부와 각 도, 컨설팅공급업체와 지원대상 경영체간에 인터넷 및 농림수산정보망을 통한 정보통신네트워크 구축지원 및 컨설팅 지원반 편성(농림수산정보센터 전화 : 031-299-8822)
- 농림수산정보센터는 시·도지사의 요청이 있을 경우 농업정보교육원 경영정보화교육이수확인서 및 이용실적확인서 발급

(3) 컨설팅 추진상황 및 컨설팅결과 보고

- 컨설팅공급업체와 지원대상 경영체는 방문·전화·서신·전자우편 기타 방법에 의해 컨설팅을 행할 때마다 그 주요내용에 대해 컨설팅일지(별지 서식 9-1, 9-2)를 기록
 - 시·도지사 등 관련공무원의 열람, 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응해야 함

- 컨설팅공급업체는 계약기간의 1/3 경과시점까지의 추진상황을 10일 이내에 [별지서식 10-1]에 따라 시·도지사(시장·군수)에게 제출
- 컨설팅공급업체는 계약기간 종료 후 15일 이내에 컨설팅추진상황보고서 [별지서식 10-4]와 컨설팅결과보고서를 작성, 시·도지사에게 제출
 - 농업용 자산보유 변동, 자산/부채현황 변화 등 주요 경영지표, 생산성·수익성 등 경쟁력관련 지표의 변화, 경영현황기술서에 기재된 경영개선 목표의 달성 정도, 경영상 애로사항에 대한 컨설팅의 효과 등을 구체적으로 서술
- ※ 컨설팅공급업체는 매보고 시 해당 작목 농진청 진단표 및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진단서식에 따른 진단결과를 작성·제출

(4) 사업취소

1) 개별 계약의 지원결정취소

-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컨설팅추진상황보고서 및 자체 조사를 통해 계약기간 1/3 경과시점까지의 컨설팅내용이 부실한 경우 컨설팅의 내실화 또는 지원대상 경영체의 적극 협조를 1차 촉구하고, 그후로도 개선이 없을 때에는,
 - 귀책사유가 컨설팅공급업체에 있을 경우 실비를 제외한 자금을 회수하고 지원대상 경영체와 타 컨설팅공급업체를 알선
 - 귀책사유가 지원대상 경영체에 있을 경우 경영체 선정을 취소하고 컨설팅공급업체로부터 실비를 제외한 자금을 회수
- 사업신청시 또는 컨설팅관련 보고 시 농가가 허위자료를 제출한 경우 지원결정 취소 후 실비를 제외한 지원자금을 회수
- 컨설팅료 보조지원액을 컨설팅사업이외의 타 용도로 사용된 경우 지원 자금 전액 회수하고, 향후 3년간 컨설팅대상 경영체 선정자격 제한
- 계약의 무효·해지의 경우에는 본 지침 '계약의 무효·해지·변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지원자금 회수

2) 컨설팅공급업체의 지정 취소

- 컨설팅공급업체 지정 후 계약기간 진행 중 자격요건에 흠결이 발생한 경우 지정을 취소하고, 지원자금을 전액 회수
 - 컨설팅공급업체 지정을 취소한 경우 지원대상 경영체와 타 컨설팅공급업체를 알선
 - 다만, 흠결이 경미한 사항인 경우 1차 보완을 촉구한 후 후속조치를 취함

- 사업신청 시 또는 컨설팅관련 보고 시 컨설팅공급업체가 허위자료를 제출하거나 자부담을 받지 않고 컨설팅을 한 경우, 지정 취소 후 지원자금을 전액 회수하고, 향후 3년간 동일업체 지정불가 및 참여인력 타 공급업체 참여 제한

나. 보고사항

- 시·도지사는 컨설팅계약체결, 컨설팅사업 추진상황 및 컨설팅결과에 대해 아래와 같이 농림부에 보고
 - 컨설팅지원대상경영체선정결과 보고 : 2003. 3월말(별지서식 6-2)
 - ※ 추가선정의 경우 해당월말 보고
 - 컨설팅공급업체지정결과 보고 : 2003. 3월말(별지서식 6-3)
 - 컨설팅계약체결상황보고 : 매월말 보고(별지서식 10-2)
 - 컨설팅추진상황중간보고 : 2003. 9월말까지(별지서식 10-3)
 - 컨설팅추진실적최종보고 : 2004. 7월말까지(별지서식 10-3 및 10-4)
 - 사업검정보고 : 익년도 12. 31까지
- 시·도지사는 도 농업기술원 및 시·군 농업기술센터의 협조를 얻어 사업시행 차기 년도에 경영체별로 경영, 기술 개선여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결과를 농림부에 보고
- 컨설팅공급업체는 컨설팅사업 추진과정에서 각 계약선별로 컨설팅서비스수행 계획서, 컨설팅추진상황보고서, 컨설팅결과보고서를 시·도(시·군)에 제출
 - ※ 모든 컨설팅공급업체는 자체 E-mail 주소를 갖고 있어야 함

6. 2004년도 사업신청 및 자금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2003년 농업경영컨설팅지원사업 추진결과 및 사업추진방향 재검토 후 별도 시행

[별표 1]

도별 2003년도 컨설팅지원예산 배정내역

시·도	도 별 경영체배정	지 원 액			
		계	국고보조	지방비보조	자부담
	개소(농가)	천원			
서울	-	-	-	-	-
부산	-	-	-	-	-
대구	-	-	-	-	-
인천	-	-	-	-	-
광주	-	-	-	-	-
대전	-	-	-	-	-
울산	-	-	-	-	-
경기	90	765,000	229,500	153,000	382,500
강원	30	255,000	76,500	51,000	127,500
충북	46	391,000	117,300	78,200	195,500
충남	84	714,000	214,200	142,800	357,000
전북	106	902,660	270,800	180,530	451,330
전남	102	867,000	260,100	173,400	433,500
경북	114	969,000	290,700	193,800	484,500
경남	74	629,000	188,700	125,800	314,500
제주	24	204,000	61,200	40,800	102,000
합계	670	5,696,660	1,709,000	1,139,330	2,848,330

(*) 위 내역은 추후 변경가능하며 시·도지사는 경영체수 등에 의거 사업량 배정을
고르게 하되 컨설팅수요를 감안하여 사업량 조정 가능

[별표 2]

컨설팅서비스의 분류

분 야	항 목
1) 농업경영컨설팅	생산관리, 재무관리, 판매관리, 인력관리, 정보관리 등
2) 사업계획컨설팅	사업계획수립자문, 사업타당성 분석 등
3) 생산기술컨설팅	생산관리기술, 사양관리기술 등
4)가공기술컨설팅	가공기술, 공정설계검토, 저장·유통, 제품의 다각화, 위생관리기술, 포장·디자인 등
5) 기타 농업경영혁신에 필요하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컨설팅	

<컨설팅서비스 분야별 세부내용 예시 >

분야	항 목	세 부 지 원 내 용
경영 관리	생산관리	생산일정계획, 적정재고관리, 원부재료 조달방법, 품질관리, 제품 다각화, 품목 조정, 비용절감 방안, 생산성 제고 방안 등
	재무관리	재무제표 분석, 투자사업의 수익성 분석, 현금흐름분석, 합리적인 자금조달 및 운영방법, 보유자본의 포트폴리오, 전산기장, 재무제표 작성 등
	판매관리	시장분석, 판매전략 수립, 판매방법 개선, 판매촉진 전략, 신판로 개척의 접근방법 등
	인력관리	근로자의 숙련도, 고용형태의 적절성, 적정인력배치, 자동화 방안, 작업능률 제고 방안, 경영자 및 종업원의 의식교육 등
	정보관리	정보유형별 정보원 및 접근방법, 수집정보의 전산관리, 정보통신망 이용방법 등
사업 계획	사업계획자문	생산계획, 판매계획, 기계장비계획, 제품별 가공기술, 추정 시설투자비 산정, 소요자금 조달계획 등 사업계획수립문
	사업타당성분석	생산계획, 판매계획, 기계장비계획, 제품별 가공기술, 추정 시설투자비 산정, 소요자금 조달계획 등 사업타당성 분석
생산 기술	생산기술	생산관리기술, 농자재조달, 농자재이용기술
	사양기술	생산관리기술, 양축자재조달, 농축기계이용관리기술, 축산시설·환경·위생방역기술 등
가공 기술	가공기술	전처리기술, 건조기술, 추출·농축기술, 여과기술, 분쇄기술, 살균기술, 제품품질 평가기술, 저장기술, 유통기한 연장기술, 식품첨가물 활용기술 등
	공정설계검토	공정자동화 방안, 생산설비의 효율적 배치, 기계장비의 효율성 평가, 공정흐름도의 분석, 생산능력 제약요소 진단 등
	저장·유통기술	원부재료의 보관, 제품의 보관 및 유통방법, 저장시설 및 운영방법의 개선 등
	제품의 다각화	신상품 제조기술, 가동을 제고기술, 부산물활용기술 등
	위생관리기술	공장위생, 개인위생 등
	포장·디자인	포장재질, 포장용기, 포장방법, 디자인, 포장의 표시사항 개선 등

[별표 3]

컨설팅용역계약서 필수 포함 사항

구 분	내 용
○ 계약금액 및 기간	- 컨설팅료 총액 및 계약기간
○ 컨설팅기대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대효과에 대한 약정 - 기대효과의 달성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 계약쌍방간 상호검증의 방법 <p>※ 객관적 검증이 가능하도록 구체적으로 규정하되, 경영현황기술서에 따른 경영개선목표를 계약의 일부로 포함하는 약정도 가능</p>
○ 컨설팅내용 및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지침 [별표2]를 참고하되, 시·도지사 승인하에 지침에 없는 내용도 컨설팅내용으로 채택가능 - 월별 정기방문회수, 부정기 방문회수 및 비방문 컨설팅(전화, 통신망 활용 등)에 대한 규정
○ 컨설팅료지급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부담분 우선 지급 명시 - 계약금, 중도금, 잔금별로 지급시기와 지급방법, 지급자(경영체인지, 행정기관인지)를 명시 - 보조금의 경우 지침상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행정기관이 직접 컨설팅기관·업체 등에 지급함을 명시
○ 분쟁해결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약의 중도해지, 지원결정의 취소에 따른 사업중단시 변상·회수대상에서 제외되는 '실비'의 범위 - 문제 발생시 책임의 소재에 대한 규정(기관·업체의 부속기관의 경우는 소속기관·업체에 계약이행 책임이 있음을 명시) - 분쟁 또는 이견 발생시 해결방법과 절차에 대한 규정 - 경영체와 컨설팅업체간의 가계약서가 사업주관에 의해 승인받지 못할 경우 동계약의 당사자간 효력 등에 대한 내용

[별표 4]

농업경영컨설팅 서비스대금 지원약정서

농업경영컨설팅지원사업 시행지침(2003년도 농림사업시행지침서 제4권, 이하 “지침”이라 한다)에 의거 경영체와 컨설팅 공급업체가 계약한 바에 따라_____도 (이하 “갑”이라 한다)는_____공급업체(이하 “을”이라 한다)가 수행한 용역에 대하여 농업경영컨설팅 용역대금을 지원함에 있어 “갑”과 “을”은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제1조(용역수행내용 기재) “을”은 용역을 성실히 수행하고, 보편타당한 원칙에 따라 용역대금을 산정하며, 용역수행 내용을 기재한 장부를 비치하고, “갑”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에 응한다.

제2조(용역계약 통보) “을”이 용역대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14일 이내에 동 내역을 “갑”에게 통보한다.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3조(보유인력변동보고) “을”은 지침상 별지서식 1-1(컨설팅전문인력보유현황)에 의한 보유인력 변동현황을 사유발생 14일 이내에 성실히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용역대금 지원의 취소) 이미 지원된 용역의 용역수행결과가 법령 등의 목적에 위배한 경우 또는 용역수행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라고 인정하는 경우 “갑”은 용역대금 지원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 반환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을”은 지원받은 용역대금을 “갑”이 정하는 순서와 방법에 따라 지체없이 반환한다.

제5조(계약의 해약) ①“갑”은 다음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본 약정을 해약할 수 있다.

가. 사업의 착수가 늦거나 사실상 정지상태가 되어 소기의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기타 중대한 사유로 인하여 본 사업의 계속수행이 불가능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해약이 되었을 경우에는 “을”은 해약 당일까지 사업비 집행내용을 “갑”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갑”은 해약의 귀책사유에 따라 “을” 또는 “컨설팅지원대상경영체”의 비용을 정산처리하고 정부지원금을 회수한다.

제6조(지침 및 약정의 준수) “을”은 지침에서 정하는 사항과 본약정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시 지원금의 중단 및 회수조치를 받을 수 있다.

제7조(지침의 적용) 지침의 제 조항은 이 약정서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으로 한다.

제8조(해석) 이 약정서 내용의 해석상 이견이 있는 경우 또는 이 약정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갑”의 결정에 따르기로 한다.

년 월 일

“갑” 주 소 :
명 칭 :
대표자 : (인)

“을”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인)

※ 본 약정서는 “예시”임

[별표 5]

추진 일정 도시

컨설팅사업지침 확정			
시·도 지침 확정			
게시·공고 ※ 1월중	<경영체> 선정신청, 심사·추천 (시·군) ※ 2월까지 선정 완료	<공급업체> 지정신청접수 (시·도)	직전 연도 12월부터 신청접수 개시
	2배수 심사·추천		
컨설팅공급업체 지정 (시·도)			2월말까지
설명회 개최 (시·도)			
계약 체결			
지원금액 결정			

컨설팅서비스수행계획서
 (컨설팅공급업체 작성용)

컨설팅공급업체		컨설팅대상경영체명	
책임컨설턴트		소재지	
전화		전화	
주재배작목		부재배작목	
경영규모		영농경력	
자 현 산 황	자산종류	계약체결시장부가액	활 용 및 관 리
정 책 자 금 지 원 현 황	지원자금	계약체결시지원내역	용 도
	합 계		
컨설팅계약 기간	2003. . . ~ 2004. . . (개월)		계약금액
주요컨설팅 계약내용			

주요컨설팅 내 용 및 기 대 효 과	내 용		기 대 효 과	
경영현황 및 개 선 목 표	경영·기술지표 (컨설팅초기)	경영개선목표 (구체적으로)	애로사항 및 향 후 과 제	

년 월 일 현재 경영현황을 공동 조사한 후 이상과 같이
경영개선목표를 수립하였음을 보고합니다.

제출일 : 년 월 일
 확인자 : 책임컨설턴트 (인)
 컨설팅대상경영체 (인)

별첨 : 조사시점 현재 농촌진흥청 표준진단표 1부 작성 첨부.

[별지서식 2]

농업경영컨설팅 지원대상경영체 실태조사표

1. 지원대상경영체 개요

경영체명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소재지			
설립일 (영농개시일)		'02판매금액 (순소득)	
경영규모		영농경력	
주재배작목 (주사업)		부재배작목 (부대사업)	

2. 컨설팅서비스 내용

--

3. 검토의견

--

농업경영컨설팅서비스 이행확인서

농업경영컨설팅서비스 이행확인서

농업경영컨설팅 지원대상 경영체 _____와(과) 농업경영 컨설팅
공급업체 _____와(과)간에 체결된 2003년 월 일부터 2004년 월
일 까지 ____개월간의 농업경영컨설팅서비스 계약이 당초 계약서에서
정한 바대로 정상적으로 수행되었고, 계약 쌍방간에 이의없이 성공적으로
완료되었음을 확인함.

200 . .

경영체명 : _____(인)

[별지서식 4-1]

농업경영컨설팅서비스공급업체지정신청서

(컨설팅공급업체 작성용)

공급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주민등록번호)			
소재지						
설립일			'02컨설팅계약액			
전화			F A X			
AFFIS ID			인터넷 MAIL주소			
컨설팅가능분야 (해당항목 모두표시)	<input type="checkbox"/> 농업경영컨설팅 <input type="checkbox"/> 생산관리, <input type="checkbox"/> 재무관리, <input type="checkbox"/> 판매관리, <input type="checkbox"/> 인력관리, <input type="checkbox"/> 정보관리 <input type="checkbox"/> 사업계획컨설팅 <input type="checkbox"/> 생산기술컨설팅 ※ 컨설팅가능작목() <input type="checkbox"/> 가공기술컨설팅 <input type="checkbox"/> 기타컨설팅()					
	박사	석사	학사	유자격자	유관기관· 업체 5년 이상근무자	총계
내부전문인력						
외부전문가풀						
주요시설·장비	명칭 및 수량			용도		

이상과 같이 귀도에서 시행하는 농업경영컨설팅지원사업에 참가하고자 하니 컨설팅서비스 공급업체로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일 : 년 월 일

공급업체명 :

대표자 : (인)

- 별첨 :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설립 및 변경등기부등본 1부
 3. 컨설팅전문인력보유현황 1부
 4. 주요 컨설팅실적 1부.

컨설팅전문인력 보유현황

(컨설팅공급업체 작성용)

년 월 일 기준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외부인력 소속	자격및학위 (구체적으로)	컨설팅가능분야 (구체적으로)	컨설팅 경력	전담 지역
-	(주소) (전화)				년	
-	(주소) (전화)				년	
-	(주소) (전화)				년	
-	(주소) (전화)				년	
-	(주소) (전화)				년	
-	(주소) (전화)				년	

- ※ '자격 및 학위'에는 해당 분야 기관·업체 근무경력 포함
- ※ 전문인력 개인별 컨설팅실적기술서 첨부 가능, 전담 시·도를 기재
- ※ 기관·업체의 경우 소득세 징수액 집계표등 증빙첨부
- ※ 소속 : 내부인력은 '내부'로, 외부인력은 '소속'을 기재
- ※ 외부인력의 경우 본인이 작성한 '참가동의서'를 첨부

주요 컨설팅실적 기술서
(컨설팅공급업체 작성용)

컨설팅 기간	경영체명 주소·연락처	컨설팅 계약액 (백만원)	컨설팅내용	성 과 (구체적)	컨설팅팀	협력기 관 및 컨 설 턴 트
년 월 ~ 년 월	(성명)				전담()명 보조()명	
	(주소)					
	(전화)					
년 월 ~ 년 월	(성명)				전담()명 보조()명	
	(주소)					
	(전화)					
년 월 ~ 년 월	(성명)				전담()명 보조()명	
	(주소)					
	(전화)					
년 월 ~ 년 월	(성명)				전담()명 보조()명	
	(주소)					
	(전화)					
년 월 ~ 년 월	(성명)				전담()명 보조()명	
	(주소)					
	(전화)					
년 월 ~ 년 월	(성명)				전담()명 보조()명	
	(주소)					
	(전화)					

※ 별첨 : 컨설팅계약서 사본 각 1부

※ 진행중인 컨설팅계약도 포함

[별지서식 5]

농업경영컨설팅서비스신청서

(원예·특작, 축산 경영체 작성용)

농가성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명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주민번호)	
소재지			
설립일		2000년 판매금액	
전화		F A X	
AFFIS ID		인터넷 MAIL주소	
주재배작목		부재배작목	
경영규모		영농경력	
종합자금지원여부	<input type="checkbox"/> 받음 <input type="checkbox"/> 안받음	종합컨설팅필요여부	<input type="checkbox"/> 필요 <input type="checkbox"/> 불필요
지도계통컨설팅	<input type="checkbox"/> 받음 <input type="checkbox"/> 안받음	컨설팅기관	
정책자금 지원현황	지원년도	자금종류	지원내역 금액(백만원)
			보조 용자
			보조 용자
			보조 용자
			보조 용자
			보조 용자
			보조 용자
			보조 용자
컨설팅경험	연도	컨설팅업체	성과
			확인란
개인용컴퓨터보유·사용여부	<input type="checkbox"/> 미보유 <input type="checkbox"/> 보유·미사용 <input type="checkbox"/> 보유·사용		
정보통신활용능력 보유여부	<input type="checkbox"/> 보유 <input type="checkbox"/> 미보유 *가입통신망(,)		
농업정보화교육이수여부	<input type="checkbox"/> 이수(이수연월 :) <input type="checkbox"/> 미이수		
농업정보화교육이수의향	<input type="checkbox"/> 이수 예정 <input type="checkbox"/> 이수할 생각 없음		

※ 확인란 : 행정기관이 확인후 사실이면 ○, 사실과 다르면 ×로 기입함

컨설팅필요분야	
컨설팅을 받고자 하는 이유(구체적으로)	
경영상태 평가의견 (농업기술센터 또는 시·군기재사항)	

이상과 같이 '03 농업경영컨설팅지원사업에 참가하여 컨설팅을 받고자 하니, 지원대상자로 선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일 : 년 월 일

경영체명 : (인)

대표자 : (인)

- 별첨 1. 최근 1년간 경영장부·영농일지 기록사본 1부
 2. 지도계통컨설팅을 받은 경우 농촌진흥청 표준진단표와 진단결과 의견서(서식자유) 첨부
 3. 정보통신서비스 활용능력이 있는 경우 가입 및 최근 3개월 이상 이용실적증빙
 4. 농업정보화 교육 이수증 첨부

농업경영컨설팅서비스신청서
(가공업체 작성용)

업체명				대표자명			
주 소					우편번호		
전화번호	() -	휴대폰	- -	FAX	() -		
종업원수	총 ___명[생산직: 명, 관리직: 명, 영업직: 명, 기타: 명]						
생산제품명							
사업구분 (해당에 O표)	전통식품개발사업(), 산지일반일반가공사업(), 특산단지(), 1군1특품사업(), 도비지원사업(), 기타()						
시설투자비 (천원)	건 물	기계장비	기 타	합 계			
컨설팅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항 (구체적으로)	○ ○ ○						
농업경영컨설팅(가공산업분야) 지원을 받고자 하니, 지원대상자로 선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일 : 2002년 월 일							
신청업체명 :							
대표자 :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 하							

농업경영컨설팅지원대상경영체 심사(추천)결과

(○○시·군)

(농업법인, 가공업체)

추천순위	코드번호	법인명 (ID, EMAIL)	경영부 장기	합자 지원	문 명 전 경 체	출 입 금 수 액 계 금	지 도 통 설 지 계 컨 팅	설 계 분 수 컨 팅 약 야	정 자 지	책 금 원	컴 퓨 터 보 사 유 용	정 보 화 교 육 수 교 이	인 터 넷 정 유 계 보	AHS 회 원 부 여	정 규 영 모

(개별농가)

추천순위	코드번호	법인명 (ID, EMAIL)	경영부 장기	합자 지원	문 명 전 경 체	출 입 금 수 액 계 금	지 도 통 설 지 계 컨 팅	설 계 분 수 컨 팅 약 야	정 자 지	책 금 원	컴 퓨 터 보 사 유 용	정 보 화 교 육 수 교 이	인 터 넷 정 유 계 보	AHS 회 원 부 여	정 규 영 모

※ MS EXCEL 파일로 작성 권장

※ 해당란에 ○ 표시

농업경영컨설팅지원대상경영체 심사(선정)결과

(○○시·도)

(농업법인, 가공업체)

추천순위	코드번호	법인명 (ID, EMAIL)	경영장부기록	종합금지	문영전정체	출입계금수액	지계컨팅	도통설컨팅	설계분수	정자지	책금원	컴퓨터보사	정보교육수	인터넷계보	AHS회원부	경영모

(개별농가)

추천순위	코드번호	법인명 (ID, EMAIL)	경영장부기록	종합금지	문영전정체	출입계금수액	지계컨팅	도통설컨팅	설계분수	정자지	책금원	컴퓨터보사	정보교육수	인터넷계보	AHS회원부	경영모

※ MS EXCEL 파일로 작성 권장

※ 해당란에 ○ 표시

※ 코드번호부여방법 : AABBCDD 예) 9912122(99년 지원대상 전북의 법인 22순위)
(AA=년도, BB=시·도수신처기호, C=법인,가공업체(1), 전업농등(2), DD=순위)

컨설팅서비스공급업체 심사(지정)결과

(OO시·도)

기업 관 체 명	품 목	조 직 형 태	소 속 기 관 체	컨 설파 팅 분 야	전 문 인 력 (명)	외 부 인 력 (명)	사 업 자 등 록	'01~'02 유 료 계 약 (건,백만원)	품 목 관 련 주 요 시 설 장 비	정 보 통 신 서 비 스 시 행 여 부

- ※ 품목 : 원예분야는 채소, 과수, 화훼, 특작등으로 대분류하고 ()속에 세부 품목을 기입. 축산분야는 축종을 기입
- ※ 조직형태 : 상법상 회사형태, 부속기관(연구소), 학교법인, 국공립대학, 전문가팀 등
- ※ 컨설팅분야 : [별표2]의 분야별 구분에 의하고, () 속에 세부컨설팅가능 항목 기입
- ※ 사업자등록여부 : ○, × 표시하고 사업자등록번호 기재
- ※ 유료계약에는 정보화컨설팅, 경영교육, 연구용역 등 불포함
- ※ 정보통신서비스 : 해당란에 ○ 표시
- ※ MS EXCEL 파일로 작성 권장

[별지서식 7]

농업정보화교육이수확인서

성명		소속	
주소			
AFFIS ID		인터넷 MAIL주소	
교육과정명			
교육기간			
교육책임자		전화	
특기사항			

위 사람은 (예:농림수산정보센터 농업정보화교육원)에서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까지 시행한 농업정보화교육 ()과정 교육을 이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발급일 : 년 월 일
담당자 : (인)

(예:농림수산정보센터) 사장

[별지서식 8]

농림수산정보망이용실적(인터넷계정보유)확인서

성 명						소 속		
주 소								
AFFIS ID						인터넷 MAIL주소		
농림수산정보망 이용 실적	년 월	년 월	년 월	년 월	년 월	년 월	년 월	년 월
접 속 회 수								
이 용 시 간								
인터넷계정	인터넷계정 보유여부				(있음, 없음)			
	유무확인방법(또는 확인기관)							
특 기 사 항								

위 사람의 농림수산정보망이용실적은(인터넷계정보유여부는) 상기 내용과 같음을 확인합니다.

발급일 : 년 월 일
 담당자 : (인)

농 립 수 산 정 보 센 터 사 장

[별지서식 9-1]

농업경영컨설팅일지
 (경영체보관용)

연월일	컨설팅방법	컨설팅턴트명	컨설팅내용	특기사항	서명	
					농가	컨설팅턴트
		(총 인)				
		(총 인)				
		(총 인)				

[별지서식 9-2]

농업경영컨설팅일지
 (컨설팅공급업체용)

연월일	컨설팅방법	대상경영체	컨설팅내용	특기사항

※ 컨설팅공급자가 2건이상 컨설팅공급계약체결시 대상경영체별로 컨설팅일지 작성

컨설팅계약체결상황보고

OOOO(시·도)

시군	품목 (경영 규모)	컨설팅 공급 업체명	컨설팅대상 법인체명(성명)	컨설팅 분야	계약 액 (만원)	보조 액 (만원)	계약 기간	컨 설 팅 내 용	경영 개선 목표
		(ID)	주소 (전화)				~		
			주민 번호						
			법인 체명						
			성명 (ID)						
		(ID)	주소 (전화)				~		
			주민 번호						
			법인 체명						
			성명 (ID)						
		(ID)	주소 (전화)				~		
			주민 번호						
			법인 체명						
			성명 (ID)						
		(ID)	주소 (전화)				~		
			주민 번호						
			법인 체명						
			성명 (ID)						

컨설팅추진상황중간(최종실적)보고

○○○○(시·도)

시군	품목	컨설팅 공급 업체명	컨설팅 대상 경영체명	컨설팅 분야	컨 설 팅 용	경영 개선 목표	경영 개선 실적	문제 해 결 과 제	시 · 도 평 가 의 견
		(ID)	(ID)						
		(ID)	(ID)						
		(ID)	(ID)						
		(ID)	(ID)						
		(ID)	(ID)						
		(ID)	(ID)						

컨설팅 결과 요약 보고

(컨설팅공급업체 작성용)

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컨설팅공급업체명					컨설팅대상경영체명				
책임컨설턴트					소재지				
전화					전화				
주재배작목					부재배작목				
경영규모					영농경력				
농업용 자산 보유변경 상황	자산종류	계약체결시 장부가액			자산종류	계약종료시 장부가액			
정책자금 추가지원	지원자금	계약체결시 지원내역			지원자금	계약종료시 지원내역			
	합계				합계				
부채변동상황	부채종류	계약체결시 부채액			부채종류	계약종료시 부채액			
	정책자금				정책자금				
	제도금융				제도금융				
	사채				사채				
컨설팅계약기간	. . . ~ . . . 총 개월				계약금액				
주요컨설팅 계약내용									

주요컨설팅 내 용	내 용		성 과	문 제 점
	경영개선실적	경영·기술지표 (컨설팅초기)	경영개선목표	경영개선실적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의 농업경영컨설팅
추진실적을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제출일 : 년 월 일

확인자 : 책임컨설턴트 (인)
컨설팅대상경영체 (인)

별첨 : 1. 농업경영컨설팅결과보고서 1부.

2. 보고시점 현재 농촌진흥청 표준진단표 1부 작성 첨부.

여 백

IV. 소득보전

① 경영이양 직접지불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농지과(과장 나승렬, 행정사무관 김규억)입니다

1. 목 적

- 농업경영을 이양하는 고령은퇴농가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고 쌀전업농의 영농규모확대를 촉진함으로써 쌀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함

2. 시책추진방향

- 고령은퇴농업인의 소득안정과 전업농업인등의 영농규모확대가 동시에 달성되도록 영농규모화사업과 연계하여 추진

3. 근거법령

- 세계무역기구협정의이행에관한특별법 제11조제2항제2호 및 제5호
- 농산물의생산자를위한직접지불제도시행규정 및 시행규칙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 ha, 백만원)

구 분	'97	'98	'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11	
사 업 량	10,588	8,132	6,483	4,021	1,952	600	1,500	12,000	
사 업 비	계	27,319	21,710	17,952	11,709	5,855	1,686	4,335	34,680
	보 조	27,319	21,710	17,952	11,709	5,855	1,686	4,335	34,680
	용 자	-	-	-	-	-	-	-	-
	지방비	-	-	-	-	-	-	-	-
	자부담	-	-	-	-	-	-	-	-

※ 2003년 이후 사업량 및 지급단가는 2003년 기준 적용

5. 2003년도 사업시행요령

< 사업개요 >

가. 사업내용

(1)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자 : 농업인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가) 연령

- 신청년도 12월 31일 현재 65세이상 75세이하인 자(2003년도의 경우 1928년 1월 1일 ~ 1938년 12월 31일 사이 출생자). 다만, 다음중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0세이상(1943년 12월 31이전 출생자) 65세미만인 자 포함
 -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한 건강상 장애로 영농을 하지 못하게 된 경우 : 건강진단서(사고확인서) 또는 이장이나 농지관리위원의 확인서 징구
 - 노동력 부족으로 영농을 하지 못하게 된 경우 : 주민등록등본 확인 및 이장이나 농지관리위원의 확인서 징구

(나) 영농경력

-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일부터 3년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2003년도의 경우 2000년) 1월1일 이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농작물을 경작하였고 그 기간중 벼를 1년 이상 경작한 농업인
 -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한 건강상 장애나 노동력 부족으로 영농을 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3년중 1년이상 벼를 경작한 농업인

(다) 지급요건

- 지급약정 체결 전일까지 소유하고 있는 답의 모두를 농업기반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나 전업농업인등에게 매도할 것. 다만, 다음중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이상 임대(사용대 포함. 이하 같음)하는 경우도 포함
 - 신청년도 12월 31일 현재 71세이상인 자(1932년 12월 31이전 출생자)
 - 2001년 12월 31이전에 보조금지급을 신청하여 지급대상자로 시·군 농정심의회에서 확정된 자
 - ※ “전업농업인등”이라 함은 쌀전업농육성대상자 또는 농지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법인을 말함
- 지급약정 체결이후 경영이양을 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단계별 경영이양 계획서(별지 제1호서식)를 공사에 제출할 것. 이 경우에는 최초 경영이양 보조금 지급약정 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에 이양을 완료하여야 함.

(라) 지급요건의 예외

-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소유하고 있는 답의 모두를 매도하거나 임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음
 - 자급 또는 취미경작 목적으로 1,000㎡이하의 답을 계속 경작하고자 하는 자 (다만, 1필지 규모가 1,00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2,000㎡까지 허용)
 -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답이 다음의 지역에 포함되어 있어 공사 또는 전업 농업인 등에게 경영이양이 곤란하여 계속 경작하고자 하는 자
 - 도시계획법 제32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도시계획구역안의 주거·상업·공업지역
 - 도시계획법 제33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보호지구
 -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6조 내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국가산업단지·지방산업단지·농공단지
 -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택지개발예정지구
 -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에 포함된 전원개발사업구역과 동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전원개발사업예정구역
 - 도시개발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개발구역으로 승인된 지역
 -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구역
 - 자유무역지역의지정등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자유무역지역
 -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유치지역
 -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댐건설예정지역
 - 공공철도건설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철도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지역
 - 관광진흥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
 -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3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경지정리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지역
- (다)의 지급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
 - 약정체결일 현재 임차 또는 사용차하여 경작하고 있는 답이 있는 경우 (계속 경작 허용규모이내의 답은 임차 또는 사용차 가능)
 - 배우자 또는 동일세대원인 직계존비속에게 경영이양을 하고자 하는 경우
 - 민법 제789조의 규정에 의한 법정분가가 아닌 임의분가를 통해 부모의 답을 경영이양을 받는 경우 포함
 - 지원조건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경영이양약정을 해지한 경우
 - 공사의 지원을 받아 농지를 매입한 자로서 전매제한기간(8년)이 경과하지 않았거나 용자금 전부상환하지 않은 경우
 - 경영이양보조금을 이미 수령한자로서 임대차계약 만료후 재계약하고자 하는 경우

- (2)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 답 :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답
-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자가 소유하고 있는 답
 - 지적법상 지목이 답이며, 실제 벼를 경작하고 있거나 경작할 수 있는 답
 - 농작물의 경작에 이용되고 있지 않는 답(휴경답)은 제외
 - 농업진흥지역내의 답(경지정리가 완료된 농업진흥지역밖의 답 포함)
 - 영농규모화사업 대상자가 매입 또는 임차를 원하는 영농규모화사업의 대상 답
- (3) 경영이양보조금 지급기준
- 지급단가 : m²당 289원(ha당 289만원)
 - 지급액 산정 : 경영이양면적(m²) × 289원
 - ※ 필지별 지급액 합계의 1,000원 미만은 절사하여 지급
 - 지급액 상한 : 1,500만원

나. 2003년도 사업비 내용

(단위 : ha, 백만원)

내 용 별	사업량	사 업 비					
		사업비 합 계	예 산 액(국고)			지방비	자부담
			계	보조	융자		
경영이양직접지불	1,500	4,335	4,335	4,335	-	-	-

< 사업추진체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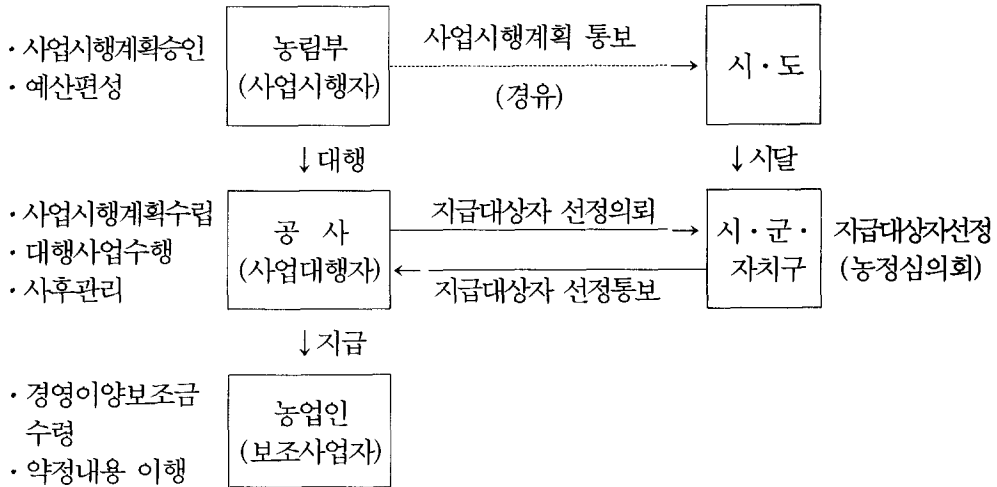
가. 사업주관기관 및 대행기관

- (1) 사업주관기관 : 농림부
- (2) 사업대행기관 : 농업기반공사

나. 사업담당부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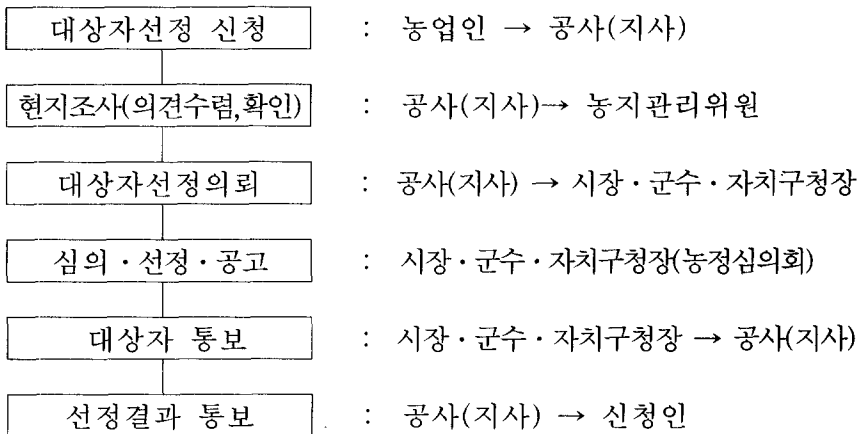
- (1) 중 앙
 - 농림부 농지과(전화 : 02-500-1672~3)
 - 농업기반공사 영농규모화사업처(전화 : 031-420-3356~3357)
- (2) 시·도
 - 시·도 : 경기 농산유통과, 강원 농어업정책과, 충북 농산과, 충남 농정유통과, 전북·전남·경남 농업정책과, 경북·제주 농정과, 부산 농업행정과, 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 농정과
 - 농업기반공사 각도본부 영농규모화사업부
- (3) 시·군·자치구
 - 시·군·자치구 : 산업과 (농정과)
 - 농업기반공사 각 지사

다. 사업시행체계도



라. 사업대상자 선정

(1) 선정절차



(2) 지급대상자 선정신청

(가) 신청시기

- 다음기간내에 신청하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연중 수시 신청 가능하며, 영농규모화사업에 의한 경영이양 농지의 매도·임대 신청서류와 함께 신청
 - 신청기간 : (상반기 지급희망자) 1. 1~1. 31, (하반기 지급희망자) 6. 1~6. 31
- 접수기관 : 신청인 거주지 관할 농업기반공사 지사

(나) 신청서류

-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자신청신청서(별지 제2호서식)
- 농지원부등본(공사에 매도·임대시 생략)
- 등기부등본 및 토지대장등본(공사에 매도·임대시 생략)
- 전업농업인 등에게 직접 매도 또는 임대하는 경우 매매계약서 또는 임대차·사용대차계약서 사본

※ 전업농업인등에게 직접 매도 또는 임대하는 경우 제출하는 매매 또는 임대차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기본적인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 계약당사자, 목적 부동산, 계약년월일
- 농지대금(또는 임차료) 및 지급일자에 관한 사항
- 부동산중개업자가 있을 때에는 부동산중개업자
- 계약의 조건이나 기한이 있을 때에는 그 조건 또는 기한

(3) 신청서류 검토

- 신청서 기재사항 누락 또는 첨부서류 내용과 일치여부
- 지급대상자 및 대상농지 요건 적합 여부

(4) 현지조사

(가) 신청서류 검토결과 결격사유가 없는 자에 대하여는 영농규모화사업의 농지 매도·임대 신청농지 현지조사와 병행 실시(별지 제3호서식)

(나) 지급대상자 조사

- 현지거주 여부
- 영농규모 : 지목별 소유·임차규모
- 영농규모 축소 사유
- 영농경력 및 비 경작 경력
- 농업법인 재직여부
- 기지급 경영이양보조금 환수사실 여부
- 쌀전업농육성대상자 여부 또는 영농규모화사업 지원수혜 여부
- 전업농업인등에게 직접 매도 또는 임대시 매매 또는 임대차계약의 사실여부
- 시행규정에 의한 영농중단사유와 기간의 일치 여부

(다) 지급대상 답의 조사

- 실제지목, 자경여부 및 재배작목
- 지적도와 대비 일치여부
- 농업진흥지역 여부 및 경지정리 여부
- 수리·교통 등 영농조건
- 지급대상의 잔여 소유·임차농지규모

(라) 농지매입·임차예정 전업농업인등 조사

- 지급약정체결 전일까지 전업농업인등의 자격요건 구비 여부
- 담합·위장거래 여부

(5) 농지관리위원 의견수렴 및 확인

(가) 내용

- 지급대상자의 이농·탈농계획 및 대상 답 등 현지조사결과 사실여부

(나) 조사방법

- 현지조사후 조사내용에 대해 해당 답의 소재지 리·동에 거주하는 농지관리위원으로부터 확인을 받아야 함
 - 해당 리·동에 농지관리위원이 없는 경우에는 연접한 리·동에 거주하는 농지관리위원, 농지가 2개 이상의 리·동에 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면적이 큰 리·동의 농지관리위원이 확인

(6) 지급대상자 심사 및 선정의뢰

- 농업기반공사 지사장은 신청서류 검토 및 현지조사 결과 보조금지급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함)에게 지급대상자 선정을 의뢰 (별지 제4호서식)
- 농업기반공사 지사장이 대상자 선정을 의뢰할 경우에는 다음 기준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여야 하며, 보조금지급예정액이 당해 지역에 배정된 예산액의 10%이상 초과하지 않아야 함

< 보조금지급 우선순위 >

- ① 2001년에 보조금지급을 신청하여 농정심의회에서 지급대상자로 확정된 자(매도·임대 포함)
- ② 2002년 신청자중 농지를 매도하는 자
- ③ 2003년 신청자중 농업기반공사에 농지를 매도하는 자
- ④ 2003년 신청자중 쌀전업농육성대상자등에게 농지를 매도하는 자
- ⑤ 농지를 임대하는 자

※ ①순위부터 순차적으로 대상자를 선정하고 ③④⑤순위안에서는 각각 다음과 같은 순서로 대상자를 선정

- ① 영농규모가 적은 자
- ② 농업진흥지역내 경지정리된 논을 매도(임대)하는 자
- ③ 연령이 많은 자

(7) 지급대상자 선정

(가) 지급대상자 및 농지 확인

- 농업기반공사로 부터 지급대상자 선정의뢰를 받은 시장·군수는 공사에서 제출된 서류의 검토와 농지원부의 확인 등에 의하여 지급대상자 및 대상 농지의 적격여부를 확인

(나) 농정심의회 심의 및 선정

- 시장·군수는 확인결과 적격자를 대상으로 시·군 농정심의회(자치구의 경우 자체 심의기구 구성)의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
 - 공사로부터 선정의뢰를 받은 날부터 20일이내에, 당해지역에 배정된 예산 범위내에서 선정해야함

(다) 대상자 선정 공고 및 통보

- 시장·군수는 선정된 지급대상자 명단을 14일 이상 공고하고 농업기반공사 지사장에게 통보(선정에서 탈락된 자에 대하여는 그 사유도 함께 통보)

(라) 선정결과 개별통보

- 시장·군수로부터 지급대상자 선정결과를 통보받은 농업기반공사 지사장은 모든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보(별지 제5호서식)하고 지급약정체결을 안내(탈락자에 대하여는 그 사유도 명기하여 통보)

마. 지급약정 체결 및 경영이양보조금 지급

(1) 지급약정 체결

(가) 약정 체결전 확인사항

-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자가 경영이양을 신청한 답의 전부를 매도 또는 임대하였는지의 여부
- 경영이양 농지를 매입 또는 임차하고자 하는 전업농업인들이 자격요건을 구비하였는지의 여부

-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자가 지급약정체결일 전까지 임차 또는 사용차 하고 있는 답에 대한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계약을 해제하였는지의 여부(계속 경작 허용규모이내의 임차 또는 사용차하고 있는 답은 제외)
 - 전업농업인등에게 직접 매도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 완료여부, 임대하는 경우에는 농지원부 정리 여부
- (나) 농업기반공사 지사장은 지급약정 체결 전 확인사항을 확인한 결과 적정요건을 구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지급약정을 체결
-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자는 경영이양보조금 수령을 위한 예금계좌를 공사에 신고
- (다)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단가는 필지별 매매 또는 임대차 계약연도의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단가를 적용

(2) 경영이양보조금 지급

- 지급시기 : 지급약정체결 후
- 지급방법 :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자가 신고한 예금계좌에 입금지급

< 행정사항 >

가. 사업시행

(1) 경영이양보조금지급계획의 수립

- 농업기반공사는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자의 경영이양계획과 전업농업인 등의 경영계획등을 감안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간 경영이양보조금지급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시행 전년도 3월 31일까지 농림부장관에게 제출
 - 사업의 목적 및 사업내용
 - 시·도별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인원 및 소요예산
 - 전업농업인등의 농업경영규모확대 지원계획

(2) 경영이양보조금지급사업시행계획의 수립

- 농업기반공사는 수립된 연간 경영이양보조금 지급예산의 범위안에서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영이양보조금지급사업시행계획(이하 “사업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전년도 10월 31일까지 농림부장관에게 승인 요청

- 사업의 목표
- 매도 및 임대에 의한 사업추진내용
- 시·군·자치구별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 인원 및 소요예산
- 조사·교육·홍보 계획
- 농림부장관은 사업시행계획을 심사하여 승인하고 전년도 12월 31일까지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며, 시·도지사는 이를 관할 시장·군수에게 통보
- 농업기반공사 지사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시행계획의 개요를 영농규모화사업 시행계획 공고와 함께 시·군·구·읍·면 및 농업기반공사 관할지사의 게시관 등에 10일이상 공고
 - 당해년도 경영이양보조금 지급 사업비 규모
 -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자 및 대상농지의 요건
 -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경영이양보조금 지급기준과 지급시기 및 방법
 - 경영이양보조금 지급조건 및 반환에 관한 사항
- 농업기반공사 지사장은 승인된 사업시행 계획의 개요를 농업인이 알 수 있도록 적극 홍보
 -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자 등에 대한 유인물 송부
 - 홍보용 책자 및 리후렛 제작 배포
 - 신문, 생활정보지, 반상회보, 시·군 홍보지 등에 게재
 - 반상회 및 사랑방 좌담회 개최 등을 통한 홍보
- 공사는 사업시행과정에서 지역여건에 따라 지역별, 사업내용별(매도·임대) 사업시행계획의 조정이 필요한 때에는 다음과 같이 조정시행하고, 조정 결과는 농림부에 보고 및 시·도에 통보
 - 시·도간 조정 : 농림부와 협의
 - 시·군·자치구간 및 사업내용별 조정 : 공사 자체 조정

나. 사후관리

(1) 경영이양보조금 수혜자 관리

- 조사시기 : 매년 7월부터 9월까지
- 조사대상 : 당해년도 6월까지 경영이양보조금을 지급 받은 농업인 및 농지

- 조사내용
 - 경영이양보조금을 지급 받은 자의 약정 이행여부
 - 경영이양보조금을 지급 받은 자의 영농규모 변화내용
 - 조사방법
 - 농지원부 확인
 - 현지출장을 통한 본인, 농지관리위원, 이장, 주민 등에 대한 면담조사
 - 조사결과 정리
 - 조사결과는 경영이양보조금수령자관리대장(별지 제10호서식)에 기재하여 관리
 - 사후관리 기간
 - 매매·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계약일로부터 5년간
- (2) 경영이양보조금 수령자의 행위제한사항
- 경영이양보조금을 지급받은 후 영농이 허용된 담외의 담을 매입 또는 임대 (이하 사용차 포함)하여 벼를 경작
 - 임대한 담의 소유권 이전
 - 임대한 담에 공작물 설치 및 형질 변경
 - 기타 경영이양한 담을 경작하고 있는 전업농업인등의 농업 경영의 규모 확대에 지장을 주는 행위
- (3) 지급약정의 해지
- (가) 해지사유
- 지급약정의 체결원인이 되는 당해농지의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계약의 해지. 다만, 공사 또는 쌀전업농육성대상자에게 매도하거나 농업기반공사에 임대하기 위하여 계약이 해지된 경우는 제외
 - 공공용지 편입등으로 인한 농지 수용시
- (나) 지급약정의 해지 통보
- 약정해지예정일 20일전까지 상대방에게 통보(별지 제7·8호서식)
- (다) 지급약정 해지통보의 취소
- 경영이양보조금 수령자가 약정의 해지·해제사유 해소를 공사에 통보한 때에는 약정의 해지 또는 해제를 취소

(라) 지급약정 해지에 따른 보조금 환수

- 경영이양보조금 전부반환의 경우를 제외한 약정해지사유에 해당되어 약정이 해지된 경우
- 경영이양보조금 일부반환시 반환금액 산정

$$\text{반환금액} = \frac{\text{기지급경영이양보조금총액}}{\text{임대기간}} \times \frac{\text{잔여기간}}{\text{임대기간}} \times \frac{\text{지급약정해지면적}}{\text{경영이양 총면적}}$$

- 임대기간 : 5년(임대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5년으로 봄)
- 잔여기간 : 5년에서 이미 경과한 임대기간을 뺀 기간으로 하되 년단위를 초과하는 잔여기간이 있는 경우 다음의 기준에 따라 산정
 - 경영이양을 받은 농업인이 경작중인 농작물을 수확하기로 임대인 또는 사용대주와 합의한 경우에는 초과 잔여기간은 잔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함
 - 경영이양을 받은 농업인이 경작중인 농작물을 수확하지 아니하기로 임대인 또는 사용대주와 합의한 경우에는 초과 잔여기간은 잔여기간에 산입
 - 약정해지연도에 경작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초과 잔여기간은 잔여기간에 산입. 다만, 임대기간 만료연도에 경영이양을 받은 농업인이 경작중인 농작물을 수확하고 경작을 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초과 잔여기간은 잔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함

(4) 지급약정의 해제

(가) 지급약정 해제의 사유

-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자로 선정되거나 지급약정을 체결
- 경영이양 후 영농이 허용된 답 외의 농지(답)에서 농작물을 경작하는 경우
- 경영이양보조금 지급약정체결시 제출한 단계별 경영이양계획서상의 경영이양 완료예정일까지 경영이양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나) 지급약정 해제의 통보

- 약정해제예정일 20일전까지 상대방에게 통보(별지 제7·8호서식)

(다) 지급약정 해제통보의 취소

- 경영이양보조금 수령자가 약정의 해지·해제사유 해소를 농업기반공사에 통보한 때에는 약정의 해지 또는 해제를 취소

(라) 경영이양보조금 전부반환의 경우

- 경영이양보조금 전부반환의 경우는 다음과 같음
 -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자로 선정되거나 지급약정을 체결하고 경영이양보조금을 수령하여 약정이 해제된 경우
 - 경영이양 후 영농이 허용된 답외의 답에서 농작물을 경작함으로써 약정이 해제된 경우
 - 경영이양보조금 지급약정체결시의 단계별 경영이양계획서의 내용대로 경영이양 완료예정일까지 이행치 않아 약정이 해제된 경우

(마) 지급약정해제에 따른 보조금 환수

- 반환금액 계산방법 : 기지급 경영이양 보조금을 지급한 다음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연 1할의 가산금 부과

$$\text{반환금액} = \text{기지급경영이양보조금총액} + \left(\text{기지급경영이양보조금총액} \times \frac{\text{반환일까지의 일수}-1}{365} \times 10\% \right)$$

(5) 경영이양보조금 반환 통지 : 약정해지일로부터 7일 이내(별지 제9호서식)

(6) 경영이양보조금 반환 기한 : 반환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7) 경영이양보조금 반환 미이행시의 조치

- 반환통지를 받고 30일 이내에 반환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조치
 - 납기경과 후 10일 이내에 반환독촉장을 발부하며, 반환독촉장은 3회에 걸쳐 매 1개월마다 발부
 - 반환독촉을 받고도 반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채권보전을 위한 가압류, 가처분 등 법적 절차를 취하여 채권을 확보하고 공사의 소송업무 처리규정에 의하여 제소 등 법적 조치

다. 사업대행에 따른 비용보조

- 경영이양보조금 지급계획 수립, 보조금지급대상자 선정, 현지조사, 사후관리 등 사업대행에 따른 제비용(수수료)은 2003년 예산에 계상하여 보조할 수 있음

라. 보고

구 분	보고사항	보 고 기 한			비 고
		지 사	본 사	농림부	
○ 분기보	○ 사업추진실적 보고	분기익월 5일	분기익월 10일	분기익월 15일	별지 제11호서식
○ 연 보	○ 사후관리 조사결과 보고	10월 5일	10월 10일	10월 31일	별지 제12호 서식

6. 2004년도 사업신청 및 대상자 선정안내

가. 신청서 제출기관 : 신청인 거주지 관할 농업기반공사 관할지사

나. 신청자격

-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12월 31일 현재 65세 이상인 자
-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신청일의 3년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2001년)의 1월 1일부터 3년간 계속하여 농작물을 경작한 농업인으로서 벼를 1년이상 경작한 농업인.
- 지급약정체결 전일까지 소유하는 답을 모두 농업기반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나 전업농업인등에게 매도 또는 5년이상 임대(사용대 포함. 이하 같다) 하고자 하는 농업인

※ 상세한 내용은 2003년도 사업시행요령 참조

다. 신청절차

- 다음기간까지 신청하되,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연중 수시 신청도 가능하며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신청서를 당해 농지의 매도 또는 임대신청서류와 함께 농업기반공사 관할 지사에 제출 (제출서식은 농업기반공사 관할지사에 비치)
 - 상반기 지급희망자 : 2004. 1. 1~1. 31
 - 하반기 지급희망자 : 2004. 6. 1~6. 31

라. 구비서류

-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신청서 (공사 시·군 관할지사에 비치)
- 농지원부등본(읍·면장 발행)
- 등기부등본(관할법원 발행) 및 토지대장등본(시·군발행) } 농업기반공사에 농지매도·임대신청서 제출분으로 대체 가능
- 농지매매·임대 또는 사용대차계약서 사본(공사를 경유하지 아니하고 쌀전업농 육성대상자에게 직접 매도·임대 또는 사용대차시)

마. 대상자 선정

- 농업기반공사가 신청자에 대한 제출서류 검토와 현지조사 확인 후 지급 요건에 적합한 자를 시장·군수에게 통보하여 시·군 농정심의회 의 심의를 거쳐 대상자 선정

【 별지 제1호 서식 】

단계별 경영이양계획서

1. 선정신청인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
	신청일			선정일

2. 경영이양대상 농지내역

구분	농지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경영이양	
					방법	시기
경영이양 대상답						
금회 경영 이양						
단계별 경영 이양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시행규정 제4조제1항제3호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경영이양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농업기반공사 사장 귀하

※기재방법

단계별 경영이양란에는 소유하는 답의 모두를 5년이내에 단계별로 경영이양하는 계획을 기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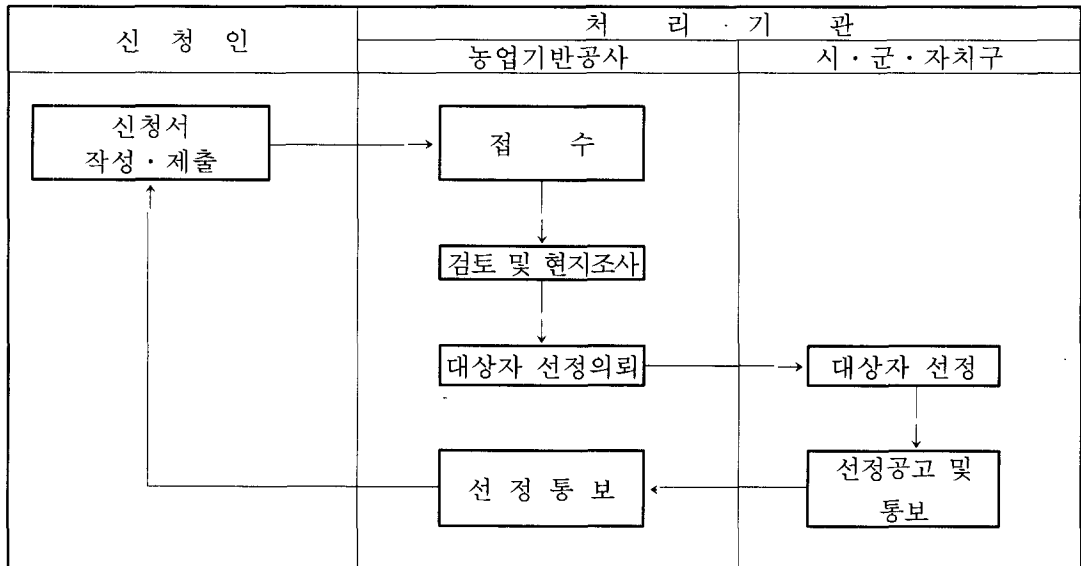
【 별지 제2호 서식 】

(앞 쪽)

경 영 이 양 보 조 금 대 상 자 선 정 신 청 서											
신 청 인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주 소				전 화						
구 분	농지소재지			지 번	공부 지 목	면 적 (㎡)	진 흥 지 역	소 유 자	경 작 구 분	경 영 이 양 방 법	지 급 방 법
	사 군	읍 면	리 동								
지 급 대 상 농 지											
		계									
잔 여 소 유 농 지	답										
	전										
	기타										
	계										
임 차 경 영 농 지	답										
	전										
	기타										
	계										
										수수료	
										없 음	
<p>농산물의생산자를위한직접지불제도시행규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하오니 경영 이양보조금 지급대상자로 선정 의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 청 인 (서명 또는 인)</p> <p>농업기반공사 사장 귀하</p>											
붙 임 서 류	<p>1. 농지원부등본 2. 등기부등본 3. 토지대장등본</p> <p>4. 매매 또는 임대차·사용대차계약서 사본(전업농업인등에게 직접 경영이양하는 경우 에 한합니다)</p> <p>5. 경영이양계획서(단계별 경영이양하는 경우에 함함)</p>										

제출 및 처리기관	○ 거주지 관할 농업기반공사 지사
근거법규	○ 농산물의생산자를위한직접지불제도시행규정 제6조(경영이양보조금지급대상자 선정신청) - 제3조 2의 규정에 의하여 경영이양보조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경영이양보조금지급대상자 선정신청서에 농림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사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작성방법	○ 진흥지역 : 농업진흥지역은 ○, 농업진흥지역밖은 ×로 기재 ○ 소유자 :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 명의 기재 ○ 경작구분 : 자경 임대 임차 위탁 사용대 사용차 및 휴경으로 구분기재 ○ 경영이양방법 - 소유농지 · 농업기반공사 임대·매도, 쌀전업농육성대상자 임대·매도·사용대, 영농조합법인 임대·매도·사용대, 농업회사법인 임대·매도·사용대, 개별 임대·매도·사용대 - 임차농지 : 경작권종료, 경작권이양, 경작권포기 ○ 지급방법 : 일시불 또는 연불로 기재 ※ 구분란(잔여소유농지·임차경영농지)의 지목은 실제 지목을 말함.

※ 이 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 별지 제3호 서식 】

경영이양보조금지급대상자현지조사서

1. 신청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신청일자	...
주소				전화	
조사내용	영농경력	벼재배기간	실거주여부	경영이양후 이주여부	규모화지원여부
	년	년~년			

2. 가족구성원 내역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동거구분	주민등록 주소지	규모화지원여부

3. 본인 및 가족 경영농지 내역

구분	농지소재지	지번	공부지목	진흥지역	면적(m ²)	소유자
			실제지목	경작구분	경영이양방법	경영이양대상자
지급대상농지						
	계					
잔여소유농지						
	계					
임차경영농지						
	계					

농지관리 위원확인	의견 : 리·동(마을) 농지관리위원 (인)
년 월 일	
조사자 직급 성명 (인)	

【 별지 제4호서식 】

경영이양보조금지급대상자 선정의뢰서

일련 번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 주소지	신청일자	배재배 경 력

경 영 이 양 내 역						경영이양보조금 지급예정액 (천원)		
매 도		임 대		계		일시불	년불	계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농산물의생산자를위한직접지불제도시행규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영이양보조금지급대상자 선정을 의뢰하오니 농정심의회 심의를 거쳐 선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임 : 선정의뢰자 개인별 조서 각 1부. 끝.

20 년 월 일

의뢰인 농업기반공사 ○ ○ ○ 지사장 (인)

○ ○ 시장 · 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 귀하

[불 임]

경영이양보조금지급대상선정신청자개인별조사서

1. 선정신청자

신청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신청일자	...
	주소			전화		

2. 가족구성원 내역

관계	가족성명	주민등록번호	비고	관계	가족성명	주민등록번호	비고

3. 경영농지 내역

구분	농지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m ²)	소유자 / 이양받은자	
			공부	실제	경영이양형태	성명	주민등록번호
지급대상농지							
	계						
잔여소유농지							
	계						
임차경영농지							
	계						

경영이양보조금지급대상자선정통지서

농산물의생산자를위한직접지불제도시행규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귀하가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자로 선정되었음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기한내에 지급약정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1.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 화	

2. 지급대상 농지의 표시 및 경영이양보조금지급 내역(세부내역 별첨)

- 대상 면 적 :
- 지급 총 액 :

3. 지급약정체결

- 약정체결기한 : 선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 장소 : 농업기반공사 ○○ 지사

4.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방법 및 지급시기

- 방법 : 대상자의 예금계좌에 입금
- 시기 : 약정 체결후

5. 경영이양보조금 수령후 신고하여야 할 사항

- 영농규모의 확대 또는 축소사항
- 주소 변경사항
- 지급약정의 해지사유 발생에 관한 사항

6. 약정체결시 준비할 사항

- 주민등록증
- 인감도장
- 온라인 예금통장(농지매도 대금 또는 임차료선금금 입금통장으로 대체 가능)

7. 약정 해지·해제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 반환

약 정 해 지 · 해 제 사 유	경영이양보조금 반환기준
1. 신청인이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대상자로 선정되어 지급약정을 체결	○ 지급받은 경영이양보조금 전액과 가산금 10%를 가산하여 반환
2. 경영이양 당시 영농이 허용된 담외의 담을 매입하거나 임차 또는 사용차하여 경작	
3. 단계별 경영이양계획서의 내용대로 경영이양 완료예정일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	
3. 임대 또는 사용대 농지의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계약의 해지	○ 반환사유 발생일 이후 잔여기간 해당 경영이양보조금 반환

20 년 월 일

농업기반공사

지사장 (인)

○ ○ ○ 귀하

경 영 이 양 보 조 금 지 급 약 정 서

1. 매도(임대) 농지의 표시 및 경영이양보조금 지급액

매도·임대 또는 사용대 농지의 표시				지 급 액 (원)
농 지 소 재 지	지 목	면 적 (㎡)	경 영 이 양 방 법	
계				

위 표시의 농지에 대한 매매(임대차)·사용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경영이양 보조금을 지급함에 있어 농업기반공사를 “갑”이라 하고 ○○○를 “을”이라 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을 체결한다.

2. 약 정 기 한 : 년 월 일까지

3. 약 정 내 용

제1조(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방법 및 지급시기) ① “갑”은 위 표시농지에 대한 경영이양보조금을 약정체결후 “을”에게 지급한다

② “갑”은 “을”이 신고한 은행의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경영이양보조금을 지급한다.

제2조(약정의 해제 또는 해지) ① “갑”과 “을”은 상대방의 동의없이 일방이 이 약정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갑”은 “을”에게 약정해지예정일 20일전까지 통지하고 이 약정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

1. “을”이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대상자로 선정되거나 약정을 체결한 경우
2. “을”이 약정기간중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당시 계속경작이 허용된 답외의 답을 경작하는 경우
3. “을”이 경영이양보조금 지급약정 체결시 제출한 단계별 경영이양계약서의 내용대로 경영이양 완료예정일까지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4. “을”이 임대 또는 사용대한 답의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계약이 해지된 경우

② “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약정의 해지 또는 해제통지를 받고 약정의 해지 또는 해제예정일 이전에 그 사유를 해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갑”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을”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약정의 해지 또는 해제사유 해소를 통보한 때에는 “갑”은 약정의 해지 또는 해제를 취소할 수 있다.

제3조(경영이양보조금의 반환)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약정이 해제 또는 해지된 때에는 “을”은 다음 각호와 같이 기지급 경영이양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갑”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1. 제2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경우 기지급 경영이양보조금 전액과 지급일 다음 날부터 반환일까지 연 1할의 이율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가산하여 반환
2. 제2조제1항제4호에 해당되는 경우 임대 또는 사용대기간중 약정해지일 이후의 잔여기간에 해당되는 경영이양보조금을 반환. 이 경우 잔여기간은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다.

제4조(통지사항) “을”은 소유농지를 “갑”에게 임대하고 제1조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을 수령한 후 다음 각호의 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갑”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1. 영농규모의 확대 또는 축소
2. 주소 변경
3. 약정의 해지사유

제5조(해석) 이 약정문서의 해석에 관하여 이의가 있거나 “갑” “을” 쌍방의 의견이 다른 때에는 약정체결 당시의 농림사업시행지침서 및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6조(관할법원) 이 약정에 관련된 분쟁에 관하여는 이 약정을 체결한 “갑”의 소재지 관할법원으로 한다.

위 약정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약정서 2부를 작성하고 “갑” “을” 쌍방이 서명·날인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갑” 농업기반공사 지사장 (인)

“을” 성 명 (서명·날인)

주민등록번호

주 소

【 별지 제7호 서식 】

경영이양보조금지급약정해지(해제)통보서

귀하에 대한 지급약정내용 이행여부를 조사·확인한 결과 아래와 같이 약정 제 2조제1항제○호에 해당하는 약정의 해지(해제)사유가 발생하였으므로 지급 약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약정의 해지(또는 해제)를 통보하오니, 만약 이의가 있거나 약정해지(해제) 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약정의 해지(해제)예정일전까지 우리 공사에 즉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약정 해지(해제)사유 :

2. 약정 해지(해제) 대상농지

약정해지 또는 해제 대상 농지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내역	
농지소재지	지목	면적 (m ²)	약정해지 면적(m ²)	지급일자	지급액(원)
계					

3. 약정 해지(해제) 예정일자 : 년 월 일

4. 경영이양보조금 의 반환 방법

약정이 해지 또는 해제되는 경우, 이미 지급 받은 경영이양 보조금의 전부(또는 일부)와 약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환할 경영이양보조금에 대하여 지급일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 연 1할의 이율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합니다.

5. 반환예정액 : 총 원(경영이양보조금) 원 + (가산금) 원
(해지예정일자기준)

 년 월 일

농업기반공사

지사장 (인)

○ ○ ○ 귀하

【 별지 제8호 서식 】

경 영 이 양 보 조 금 지 급 약 정 해 지 통 보 서

본인은 농업기반공사와 체결한 경영이양보조금 지급약정을 다음과 같은 사유로 해지하고자 통보하오니 약정의 해지에 관하여 의견이 있으면, 약정해지예정일 전까지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경영이양보조금 수령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 화	

2. 약 정 일 자 : 년 월 일

3. 약정해지 대상농지 및 경영이양보조금 수령내역

약 정 해 지 대 상 농 지				경 영 이 양 보 조 금 지 급 내 역	
농 지 소 재 지	지 목	면 적 (m ²)	약정해지 면적(m ²)	지급일자	지급액(원)
계					

4. 약정해지 사유 :

3. 약정해지 예정일자 : 년 월 일

 년 월 일

○ ○ ○ (인)

농업기반공사사장 귀하

경영이양보조금수령자관리대장						관리 번호
경영이양보조 금수령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 화	
신청일	확 정 일	지 급 예정액	일 시 불 연 불	원
약정일	지 급 일			원
경영이양 계약내역	이양받은자	주민등록번호	계약구분	계약번호	입 금 계 좌	
					은행	
					No.	
가 족 구 성 원 내 역						
관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직 업	동거구분	주민등록 주소지	규모화지원여부
경 영 이 양 보 조 금 지 급 및 사 후 관 리 조 사 내 역						
지급구분	지 급 내 역		사 후 관 리 조 사			
	지급 일자	금 액	조사일자	조 사 자	조 사 결 과	확 인 자

경 영 이 양 농 지 내 역							
구분	농지소재지	지번	공부지목	면적(m ²)	소유자	보조금 지급액(원)	
			실제지목	진흥지역	경영이양방법	일시불	연 불
지급대 상 농지							
변경농 지 내역	중전농지소재지	지 번	중전면적	변 경 사 유	환수일자	환수액 (원)	
	변경농지소재지	지 번	변경면적	변 경 일 자			
잔 여 경 영 농 지 내 역							
구분	농지소재지	지번	공부지목	면적(m ²)	소 유 자	경 작 자	
			실제지목	진흥지역	경영이양형태	주민등록번호	
잔여 소유 농지							
임차 경영 농지							
사 후 관 리 조 치 내 용							
시정요구 통보일	약정해지(해제) 통보일	조 치 내 역					
		조 치 내 용			환 수 금 액 (원)		
시 정 일	해지(해제)일	환 수 일		경영이양보조금	가산금	계	
※사후관리대상 제외		년 월 일		확 인	지 사 장	(인)	

【 별지 제11호 서식 】

직불사업 추진실적(/ 분기)

가. 총괄

(단위 : 호, ha, 백만원)

사업별	계 획				보조금지급				비 율	
	년 간		금 분 기		농가	면적	금액	금액	년간 대비	분기 대비
	면적	금액	면적	금액						
농지매매										
임대차										
계										

나. 시·도별 경영이양보조금 지급실적

(단위 : 호, ha, 백만원)

시 도 별	계 획				보조금 지원실적									
	년 간		금분기		계			농 지 매 매			임 대 차			
	면적	금액	면적	금액	농가	면적	금액	연간 대비 (%)	농가	면적	금액	농가	면적	금액
계														

【 별지 제12호 서식 】

직불사업 사후관리 조사결과 보고

가. 총괄

(단위:㎡,천원)

시 도 별	보 조 금 지급실적			약정위반농지			보조금반환			위반농지에 대한 경영이양보조금 반환조치중								
										전년도까지			당해년도			계		
	인원	면적	금액	인원	면적	금액	인원	면적	금액	인원	면적	금액	인원	면적	금액	인원	면적	금액
계																		

※ 작성요령

1. 경영이양보조금지급 실적 : 조사년도 6월말까지 지급한 경영이양 보조금 실적 누계 기재
2. 약정위반 농지 : 조사년도 6월말까지 지급농지 중 사후관리조사결과 경영이양보조금 환수대상이 되는 약정위반 농지를 모두 기재
3. 경영이양보조금 반환 : 조사년도 9월말까지 경영이양보조금 환수대상 농지 중 경영이양보조금을 반환한 농지를 모두 기재
4. 경영이양보조금 반환조치 중 : 전년도까지 위반농지는 전년도까지 사후관리 조사결과 경영이양보조금 반환대상이 되는 농지중 미반환 농지 기재, 당해년도 위반농지는 당해년도 사후관리 조사결과 위반농지 중 경영이양보조금 미반환농지를 기재

나. 약정위반자 명단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위반사유	보조금지급			보조금환수대상			보조금환수		보조금미환수액	환수예정일
				일자	면적	금액	보조금	가산금	계	일자	금액		

② 친환경농업직접지불

※ 이 사업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친환경농업과 (과장 배원길, 사무관 정영환)입니다.

1. 목 적

- 친환경농업실천농가에게 직접지불 보조금을 지원하여 친환경농업을 육성함으로써 농촌환경을 보전하고 안전한 농산물의 생산을 장려하기 위함

2. 시책 및 추진방향

- 저농약이상 친환경인증농산물을 생산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보조금 지원
 - '03년부터 논농업직불제에 통합·지원하고 있는 논부문 친환경농업직불사업 (이하 “친환경논직불”이라 함)의 시행요령은 본 사업지침에 의함.
- '02년 사업대상자중 계속지원자와 '03년 신규사업 신청자중 종전의 환경농업 육성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환경농산물표시를 사용중인 자는 2003. 6. 30까지 친환경농업육성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인증으로 전환하여야 함,

3. 근거법령

-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제2항
-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13조 내지 제23조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99~'00	2001	2002	2003 (예산안)	2004이후
사업량(ha)		21,144	10,572	5,731	5,270	384,763
사업비 (보조금)	계	11,462	5,731	3,003	2,988	200,816
	농가보조	11,080	5,540	3,003	2,988	200,816
	재료비	382	191	-	-	-

* 2003년도 친환경논직불 예산은 논농업직불 예산에 별도로 포함

5. 2003년도 사업시행 요령

<사업개요>

가. 사업내용

- 저농약이상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에게 친환경농업 실천에 따른 소득감소분 보전
- 지원대상 농업인
 - 전국의 유기농산물·전환기유기농산물·무농약농산물·저농약농산물 인증(표시신고 및 유기·전환유기축산물 포함) 농가로서 1천㎡ 이상의 농지를 경영·경작하는 자 또는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00만원 이상인 자 단, 토양을 이용하지 않고 생산하는 수경(양액)재배, 버섯재배 농가 등은 제외
- 지급기준 : 국고보조 100%
 - 친환경직불 : 유기·전환유기 794천원/ha, 무농약 674, 저농약 524
 - 친환경논직불 : 유기·전환유기 770천원/ha, 무농약 650, 저농약 500
 - 친환경논직불 보조금의 유기·전환유기, 무농약은 인센티브 보조금(유기·전환유기 270천원/ha, 무농약 150)이 포함된 금액임.

나. 2003년도 사업비(예산안) 내용

구 분	사업량 (ha)	사업비(백만원)			비 고
		계	국고	융자	
합 계	7,440	4,337	4,337	-	
○ 친환경농업보조금	5,270	2,988	2,988	-	
○ 친환경논직불보조금 (인센티브포함)	2,170	1,349	1,349	-	

* 친환경논직불보조금은 논농업직불사업비중 친환경농업직불사업비(논) 예산임.

<사업신청 및 대상자 선정>

가. 사업신청

- 신청기간 : 2003. 3. 1~ 3. 31.
- 신청기관 : 거주지 읍·면·동

- 신청자격 : 신청일 현재 친환경농산물 인증 및 표시신고를 한 농업인 또는 작목반
 - 표시신고 농가는 '03.6.30까지 친환경농업육성법에 의한 인증으로 전환하여야 함.
 - 공부상 지목이 답인 경우는 논 부문으로, 전 또는 임야인 경우에는 밭 부문으로 신청
 - 2002년도에 이미 선정확정되어 보조금 지급을 받은 농가(농지)도 새로운 규정에 따라 논·밭을 구분하여 변경신청하여야 함
- 신청서류 : 친환경농업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 1농가가 논·밭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논·밭별로 구분하여 별도 신청
 - 구비서류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민간인증기관의 장이 교부한 친환경농산물인증서 사본 첨부

나. 지급대상 선정 및 결과 통지

- 지급대상자 선정 : 시장·군수·구청장
 -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 등” 이라 함)은 제출된 신청서류 및 구비서류를 검토한 후 우선 순위에 따라 사업대상자를 선정
 - 시장·군수 등은 사업대상자 선정결과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에게 보고하고 시·도지사는 농림부장관에게 4. 20까지 보고 [별지 제2호 서식]
- 친환경농업직접지불 사업량 배정 및 조정
 - 농림부장관은 시·도의 선정결과를 종합하여 시·도별 사업량 배정(5.10까지)
 - 시·도지사는 사업량의 조정이 필요한 때에는 시·군간 조정
- 지급대상자 확정 : 시장·군수 등
 - 확정기한 : 5. 31까지
 - 시장·군수 등은 사업배정량을 감안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대상자를 확정하고 “친환경농업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통지서”를 신청농업인에게 통지 [별지 제3호 서식]

다. 대상자의 변경

-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농업인의 사망·전출·농지의 매도·임대·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대상자를 변경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농업인 또는 작목반장은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시장·군수 등에게 [별지 제1호 서식] 에 의거 사업대상자 변경신고서를 제출

- 사업대상자 변경으로 경작자가 바뀔 필지는 새로 경작할 농업인이 희망할 경우 자격을 승계

(라) 대상자 선정 우선순위

- 유기인증, 전환기유기인증, 무농약인증, 저농약인증 순으로 우선순위를 부여 하되 작목별 영농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과실류, 채소류, 곡류, 기타 작물류 순으로 우선순위 부여
- 동일 조건에서는 인증승인 일자가 빠른 것이 우선
- * 우선순위 참고
유기인증 과실류 → 유기인증 채소류 → 유기인증 곡류 → 유기인증 기타 작물류 → 전환기유기인증 과실류 → 전환기유기인증 채소류 → …… → 무농약인증 과실류 → 무농약인증 채소류 → …… → 저농약인증 과실류 → 저농약인증 채소류 → 유기표시신고 과실류…… → 전환기표시신고 과실류……

<사업추진체계>

가. 사업주관기관 : 시장·군수 등

-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확보 : 농림부
- 사업시행 및 예산집행 : 시·도(시·군·구)

나. 사업담당부서

(1) 중앙

- 농림부 친환경농업과(전화 02-500-1800~1)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품질관리과(전화 031-446-0127)

(2) 시·도(시·군)

- 시·도 농산담당과, 시·군 등의 산업·농정과(농업기술센터)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시·도지원, 시·군출장소

다. 사업추진체계

업무흐름	시 기	주 요 내 용
① 지침시달 및 홍보	(2002.12월~ 2003.3월말)	· “친환경농업직불제 사업지침”시달(농림부) · 사업지침 설명 및 홍보(시·군·구, 읍·면)
② 사업신청	(3.1~3월말)	· 신청서 작성 및 시·군 등 제출(해당 농업인등)
③ 대상자선정 및 결과보고	(4.20)	· 대상자 선정(시·군 등) · 대상자선정결과→시·도지사→농림부장관보고
④ 사업량 배정 및 조정	(5.10)	· 시·도별 사업량 배정(농림부) · 시·군간 사업량 조정(시·도지사)
⑤ 이행상황 점검	(5~10월)	· 지급요건 이행여부 확인(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민간인증기관)
⑥ 보조금 지급	(11~12월)	· 보조금 지급(시·군 등) - 농가별로 지급

라. 사업추진절차

- 친환경농업직접지불 사업계획의 수립·통보
 - 농림부장관은 사업계획(농림사업 지침)을 수립하여 시·도에 시달
 - 시·도지사는 농림부 “친환경농업직접지불 사업지침”에 의거 “시·도별 친환경 농업직접지불사업 시행지침”을 수립하여 시장·군수 등에게 시달
 - 시장·군수 등은 시·도지사가 수립·시달한 “친환경농업직접지불사업 시행 지침”에 따라 사업 시행
- 사업설명 및 공고
 - 시장·군수 등은 농업인 및 작목반의 대표자에게 사업시행지침을 설명하고 시·군·구, 읍·면 게시판에 10일이상 공고

- 사업시행지침의 홍보
 - 시장·군수 등은 사업시행지침의 내용을 농업인이 알기 쉽도록 반상회보 시·군 홍보지, 지방지, 마을 앰프방송 등을 통해 홍보

마 사업비 집행·정산 및 보고

(1) 보조금의 지급기준

- 시장·군수 등은 보조금 지급기준에 의하여 농가별 보조금액을 결정하여 지급
- 지급한도
 - 지급대상 면적 : 농가당 0.1~5.0ha
 - 지급상한을 초과하거나 지급하한보다 적은 면적은 보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
 - 지급액 : 친환경농산물인증 지급기준에 대상면적을 곱하여 산출

(2) 보조금 지급 및 정산

- 보조금의 교부신청 및 교부결정 사무를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시·도지사(시장·군수 등)에게 위임함
- 시·도지사(시장·군수 등)의 사업비 집행 및 정산보고
 - 보조금 집행은 밭 부문은 친환경농업직접지불 사업비, 친환경논직불(논부문)은 논농업직접지불 사업비에서 각각 집행
 - 시장·군수 등은 작목반별, 농가별 보조금액을 결정하여 작목반의 대표자 또는 지급대상 농업인에게 통지하고 친환경농산물 인증여부 확인을 거쳐 농가별 지정 입금계좌에 보조금 입금
 - 집행잔액은 보조금 관련규정에 따라 농특회계 세입금으로 반납 정산
-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농가는 계속하여 친환경 인증농산물을 생산하여야 하며, 인증이 취소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초선정 연도를 포함하여 3년간 지원
- 사업대상자 중 당해 사업연도내에(1년단위) 친환경농업육성법 제18조의2의 규정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농가 및 4개월이상 표시중지를 받은 농가와 표시 신고농가가 '03.6.30.까지 인증으로 전환하지 않은 경우에 대하여는 당해 연도의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음

- 사위·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것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며, 그 사유가 발생한 기간동안 이미 지급한 보조금은 회수 조치하고, 해당 농업인은 향후 친환경농업직불사업(논·밭부문)의 참여를 제한
- 회수 조치된 보조금은 국고(농특회계) 세입금으로 반납 정산

<행정사항>

가. 사업신청자의 허위·중복 등 적격여부 확인

- 시장·군수 등은 3월말까지 접수된 사업신청자 명단을 인증서등을 발급한 해당 인증기관(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출장소, 민간인증기관) 별로 허위·중복 신청 등 적격여부를 의뢰함 [별지 제4호 서식]
 - 면적은 공부상 지적면적만 인정
 - 한 지적(필지)에 2기작 또는 3기작을 하는 경우에도 실제 지급대상 면적은 누적 면적이 아닌 지적(공부)상 면적 중 실제 재배승인 면적만 인정됨.
- 인증기관(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출장소, 민간인증기관)에서는 시장·군수 등이 의뢰한 사업신청인의 적격 여부를 검토한 후 그 결과를 통지 [별지 제 5호 서식]
 - 검토사항은 중복신청여부, 재배면적 확인, 사업대상자 부적격여부(허위·중복신청, 인증취소 및 표시중지 여부 등) 확인

나. 사업대상자 및 대상지역관리

- 시장·군수 등은 사업대상자 명단을 확정하고 10일 이내에 해당 인증기관(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출장소, 민간인증기관)에 통보하여 이행여부를 확인토록 함 [별지 제6호 서식]
- 인증기관은 사업대상자중 표시농가의 기한내 인증전환 여부와 표시중지·인증취소, 인증 및 생산조건 이행여부 등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확인결과를 10월말까지 해당 시장·군수 등에게 통보 [별지 제7호 서식]

다. 친환경직불(밭부문)과 친환경논직불(논부문)의 관리요령

- 친환경직불과 친환경논직불의 관리요령은 본 지침에 따라 시행하고 사업비만 예산항목별로 구분하여 집행 및 정산
- 논·밭 구분은 공부상 지목으로 구분하고 임야인 경우는 밭으로 분리
- 1농가가 논·밭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논·밭별로 구분하여 접수

라. 기관별 보고일정

○ 시·도지사, 시장·군수 등 및 인증기관의 장은 다음 사항 보고기한을 준수

구 분	기관별	보고기한	양 식
○ 사업신청자 적격여부 확인 의뢰	시장·군수등→인증기관	4. 5	제4호서식
○ 사업신청자 적격여부 확인결과 통보	인증기관→시장·군수 등	4. 10	제5호서식
○ 지급대상자 선정결과 보고	시장·군수등→시·도지사	4. 15	제2호서식
	시·도지사→농림부장관	4. 20	"
○ 사업량 배정 및 조정	농림부장관→시·도지사	5. 10	
○ 사업대상자 확정명단 통보	시장·군수등→인증기관	확정후 10일 이내	제6호서식
○ 지급이행조건 이행여부 결과 통보	인증기관→시장·군수 등	10월 말	제7호서식

6. 2004년도 사업신청, 대상자 선정 등 안내

가. 신청서 제출기관 : 거주지 읍·면·동

나. 신청자격

- 전국의 유기농산물·전환기유기농산물·무농약농산물·저농약농산물인증농가

다. 신청절차

- 해당 농업인은 소정의 사업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시장·군수 등에게 제출

라. 구비서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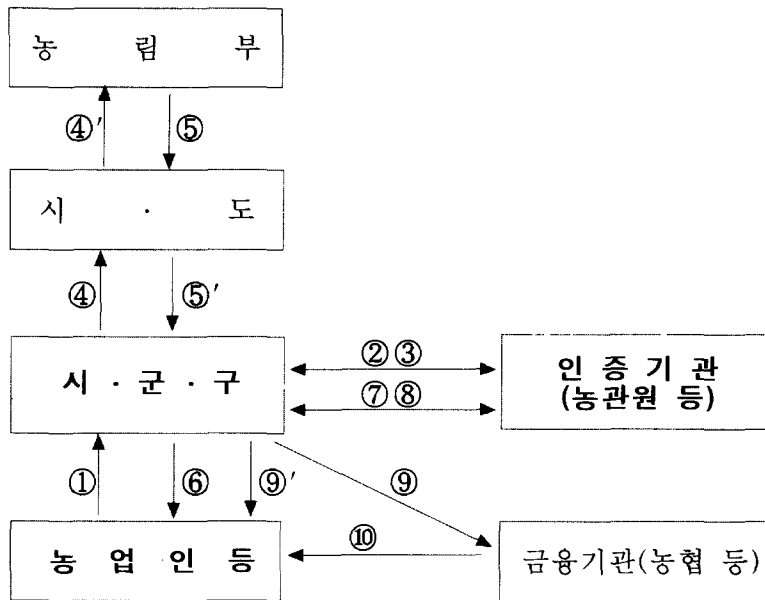
- 친환경농업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변경)신청서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민간인증기관의 장이 교부한 친환경농산물 인증서 사본

마. 지원대상자 선정

- 선정기준
 - 전국의 유기농산물·전환기유기농산물·무농약농산물 인증(유기·전환유기 축산물 포함)농가로서 1천㎡ 이상의 농지를 경영 또는 경작하는 자 또는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00만원 이상인 자 단, 토양을 이용하지 않고 생산하는 수경(양액)재배, 버섯재배 농가 등은 제외
- 우선순위
 - 유기인증, 전환기유기인증, 무농약인증, 저농약인증 순으로 우선순위 부여
- 선정절차
 - 사업설명 및 공고(시장·군수 등) → 사업신청(농업인, 작목반대표) → 대상자 선정(시장·군수 등)

<참고>

친환경농업보조금 지원 체계도



- ①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 (3월중, 1호 서식)
- ② 대상자 적격여부 확인의뢰 (4.5까지, 4호 서식)
- ③ 대상자 적격여부 확인 통지(4.10까지, 5호 서식)
- ④~④' 대상자 선정결과보고 (4.20까지, 2호 서식)
- ⑤~⑤' 시도(시군별) 사업량 배정 (5.20까지)
- ⑥ 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 통지(5.30까지, 3호 서식)
- ⑦ 사업대상자 명단 확정 통보 (확정후 10이내, 6호 서식)
- ⑧ 보조금 지급조건 이행여부 결과 통보 (10월말, 7호 서식)
- ⑨ 지급대상자 명단 통보 및 보조금 배정 (11~12월)
- ⑨' 지급대상자별 보조금 지급 통지(11~12월)
- ⑩ 친환경농업 보조금 지급 (11~12월)

[별지 제1호 서식]

친환경농업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변경)신청서(□논, □밭)						
농가(작목반)명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품목종류	<input type="checkbox"/> 곡류 <input type="checkbox"/> 채소 <input type="checkbox"/> 과수 <input type="checkbox"/> 기타					
품목명						
친환경농산물 인증구분		<input type="checkbox"/> 유기, <input type="checkbox"/> 전환기유기, <input type="checkbox"/> 무농약, <input type="checkbox"/> 저농약				
구분	농 지(농장) 소 재 지			지번	지목 (공부)	재배면적(m ²)
	시·군	읍·면	리·동			
대상 농지 · 농장						
	계					
입금계좌	은행, 예금주 :			계좌번호 :		
<p>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시행규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하오니 친환경농업보조금 지급대상자로 선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p> <p>시(도) 시장(군수) 귀하</p>						
※ 구비서류 1.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민간인증기관의장이 교부한 친환경농산물 인증서 사본 또는 환경농산물표시사용신고필증 사본						수수료
						없음

- [기재방법] 1. 농가(작목반)명, 대표자성명 등을 기입
 2. 친환경농산물은 유기·전환기유기·무농약·저농약으로 구분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도 대상자 선정결과 보고

1. 친환경농산물 종류별 농가수 및 재배면적

시·군		합계		유기		전환기유기		무농약		저농약	
		농가수	면적	농가수	면적	농가수	면적	농가수	면적	농가수	면적
합계	계										
	논										
	밭										
○○시	소계										
	논										
	밭										
○○군	소계										
	논										
	밭										

2. 품목별 농가수 및 재배면적

시·군		합계		곡류		채소		과수		기타	
		농가수	면적	농가수	면적	농가수	면적	농가수	면적	농가수	면적
합계	계										
	논										
	밭										
○○시	소계										
	논										
	밭										
○○군	소계										
	논										
	밭										

[별지 제3호 서식]

친환경농업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 통지서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시행규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귀하가 금년도 친환경농업보조금 지급대상자로 선정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 지급대상자 명단

일련 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품목 및 재배면적 (m ²)	보조금 지급액 (예상)

년 월 일

시(도) 시장(군수) 인

농업인(작목반장) 귀 하

[별지 제4호 서식]

친환경농업직접지불 사업신청자 적격여부 확인의뢰

문서번호 :

수신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출장소장
민간인증기관의 장

우리 시(군·구)의 친환경농업보조금 사업신청자 명단을 다음과 같이 통보 하오니 사업대상자에 대한 적격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 대상자			신청 농지				
성명	주민등록번호	인증(신고)번호	농지소재지	지번	면적(m ²)	지목	주요작물

년 월 일

○○○ 시장(군수·구청장) ①

[별지 제5호 서식]

친환경농업직접지불 사업신청자 적격여부 확인결과 통지

문서번호 :

수신 : ○○○ 시장(군수·구청장)

귀 시(군·구)에서 의뢰한 친환경농업보조금 사업신청자에 대한 적격여부 확인결과를 다음과 같이 통보합니다.

사업 대상자			신청농지					확인결과
성명	주민등록 번호	인증(신고) 번호	농지 소재지	지번	면적 (㎡)	지목	주요 작물	

년 월 일

○○○ 시장(군수·구청장) 인

[별지 제6호 서식]

친환경농업직접지불 사업대상자 통보

문서번호 :

수신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출장소장
민간인증기관

우리 시(군·구)의 친환경농업보조금 사업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확정하여 통보하오니 친환경농산물 인증기준 실천 이행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 대상자			신청농지(해당 농관원 관할)				
성명	주민등록번호	인증(신고)번호	농지소재지	지번	면적(m ²)	지목	주요작물

년 월 일

○○○ 시장(군수·구청장) 인

[별지 제7호 서식]

친환경농업직접지불 사업대상자 이행여부 통보

문서번호 :

수신 : ○○○ 시장(군수·구청장)

귀 시(군·구)의 친환경농업보조금 사업대상자에 대한 친환경농산물 인증 기준 실천 이행여부 확인결과를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

사업 대상자			신청농지				이행여부 확인결과
성명	주민등록 번호	인증(신고) 번호	농지 소재지	지번	면적 (㎡)	지목	

년 월 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출장소장 ①
민간인증기관 의장 ①

③ 논농업직접지불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친환경농업과(과장 배원길, 사무관 김완수)입니다.

1. 목 적

- WTO농업협정의 허용정책인 직접지불제도를 논농업에 도입
- 논의 공익적 기능을 보전하고, 비료·농약의 적정사용 등 친환경적 영농의 확산을 유도하여 국토환경보전 및 안전한 농산물의 생산을 장려하기 위함

2. 시책 및 추진방향

- 논의 형상과 공익적기능유지에 적합한 농지(논)를 대상으로 실시
 - 지급대상 농지(논)는 1998년부터 2000년까지 과거 3년간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논)로서 지급요건 이행에 적합한 농지(논)를 선정
 - 지급대상으로 선정된 농지(논)에 대해서 지급요건 불이행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사업시행기간동안 계속하여 보조금 지급
- 논농업직불제사업은 2001~2002년도에 선정된 농지(논)를 대상으로 지원하며 2003년부터 신규사업신청 및 선정을 하지 않음
- 실질적인 농업경영인(실경작자)으로써 지급요건을 이행하는 자에게 지급함
- 논의 형상과 기능유지 의무중 담수의무를 해제하여 재배작목 자유화
- 논의 형상과 공익기능유지 및 친환경적 영농 실천 등의 의무를 부과하고 이행여부를 점검하여 보조금을 지급하되 확인 및 검사결과 불이행 농가에 대하여는 제재조치
- 논농업직불제의 친환경 기능을 강화하고 친환경농업직불제 수혜대상 농지중 논부분은 논농업직불제에 통합하여 지원
 - 유기·전환기, 무농약 등 친환경농산물 인증단계에 따라 인센티브 차등 부여
 - * 친환경농업직불제 논부분의 세부사업 시행에 관한 사항은 친환경농업직불제 사업지침에서 정하는 사항에 따름
- 생산조정제 수혜대상 농지는 제외

3. 근거 법령

- 세계무역기구(WTO)협정의이행에관한특별법 제11조, 농업·농촌기본법 제39조,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4장

4. 2003년도 지원계획

구 분	사업량	사 업 비 (백만원)			비 고
		계	국고	융자	
합 계	837천ha	394,249	394,249		
○ 논농업직불제 보조금	-면적835천ha	390,400	390,400		
- 진흥지역	· 564천ha	282,000	282,000	-	· 진흥지역(50만원/ha)
- 비진흥지역	· 271천ha	108,400	108,400		· 비진흥지역(40만원/ha)
○ 사업관리비	-	2,500	2,500	-	
○ 친환경직불제보조금(논)	2,170ha	1,349	1,349	-	· 기본단가(50만원/ha) · 인센티브(27~15만원/ha)

* 2003년도 지원계획에 '02논농업직불제 부족예산 110억원 미포함

가. 지급기준

○ 지급단가

- 농업진흥지역 : ha당 500천원 (국고보조 100%)
- 농업진흥지역밖 : ha당 400천원 (국고보조 100%)
- 친환경직불제(논부문)
 - 기본단가 : 진흥·비진흥 구분없이 ha당 500천원(국고보조 100%)
 - 인센티브 : 유기·전환기유기 ha당 270천원, 무농약 ha당 150천원

○ 지급대상 : 0.1~2.0ha까지(농가당)

* 단, 친환경농업직불제(논)는 0.1~5.0ha까지임.

나. 사업주관기관 :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

-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 확보 : 농림부
- 사업시행 및 예산집행 : 시·군·구
 - 마을별 자율추진체계 구축 : 리·통(마을대표)
 - 대상자 적격여부 확인 및 대상자 관리 : 읍·면·동(이하 “읍·면“)
 - 대상자 선정, 지급요건 이행점검 및 보조금 지급 : 시·군·구
- 이행여부 점검 및 농업인 교육, 영농기장조사 등은 시장·군수·구청장의 책임하에 다음 각 전문기관이 주관하여 실시
 - 논외형상과 공익기능유지 의무 점검 : 농업기반공사(시·군지부)
 - 토양검사(도복필지 포함) : 시·군 농업기술센터
 - 잔류농약 검사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시·군 출장소)
 - 친환경농업 교육실시 : 시·군 농업기술센터
 - 영농기장 조사 : 읍·면·동(협조 : 시·군 농업기술센터)

다. 사업추진체계

업무흐름	시 기	주 요 내 용
① 지침시달홍보	(2002.12.1 ~ 2003.1.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논농업직불제 시행지침”시달(농림부) · 직불제 사업설명 및 홍보(시·군·구, 읍·면·동)
↓		
② 마을대표선정 및 사업신청	(2003.1.1 ~ 3월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을별(영농회별)로 마을대표 선정, “마을협약” 작성 · 마을대표는 지급 약정 신청서를 취합하여 읍·면에 제출(마을대표)
↓		
③ 대상자 선정	(4.1 ~ 4월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자 적격여부 확인(읍·면·동) · 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시·군·구) · 확정명단 마을별·관련기관 통보(마을협약 이행표 배포)
↓		
④ 이행상황 점검	(5 ~ 10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급요건 이행여부 점검(시·군·구) ※ 전문기관에서 주관하여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논의 형상과 공익기능유지(농업기반공사) -토양검사(시·군 농업기술센터) · 과비에 의한 도복 필지 조사(시장·군수·구청장) -잔류농약검사(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영농기장조사(읍·면·동) -친환경농업 교육 (시·군 농업기술센터)
↓		
⑤ 종합점검, 대상확정	(10 ~ 11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행상황 종합점검(시·군·구) - 보조금 지급대상자 및 금액 확정통보 * 지원대상확정자 및 탈락자 열람실시: (시·군·구·읍·면·동)
↓		
⑥ 보조금 지급	(11 ~ 1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조금 지급 - 농가별로 지급(통장계좌입금)

5. 사업시행요령

가. 사업대상 농지(논) 선정

(1) 대상 농지(논) 요건

- 공부상 지목에 상관없이 실제 토지 이용현상이 1998년부터 2000년까지 3년동안에 논농업으로 이용된 농지(논)로서 “논의 형상과 공익기능유지” 및 “친환경적 영농실천” 등 지급요건 이행에 적합한 농지(논)
- 3년기간('98~'00)중 경지정리, 천재지변 등 시장·군수·구청장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는 사유로 일시적으로 논농업에 이용 못한 경우에는 지급대상으로 선정 가능
-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농지(논)로서 논의 형상과 기능을 유지(2개월 담수의무 해제)하면서 밭작물 재배 전환을 신고한 농지
 - 재배가능 작물 : 식량작물(콩, 옥수수) 등, 채소류, 초본성 약용작물, 담배, 사료작물, 녹비작물, 잔디, 버섯, 특용작물, **묘목(과수, 관상수 등) 등**
 - * 논외형상과 기능을 유지하면서 재배되는 과수·관상수 등의 묘목을 추가허용
 - 다만, 논외형상과 기능유지가 어려운 과수·관상수등 영년생 목본류를 재배하는 경우는 지급대상에서 제외
 - * 제외대상 작물 : 과수, 관상수, 영년생 목본류 약용작물 등
 - 밭작물 재배전환을 희망하는 농가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밭작물 재배전환 신청을 하여야 함
- '03년부터 친환경농업직불제 대상농지중 논부문은 논농업직불제에 통합됨에 따라 지급대상에 포함
- * **친환경농업직불제 논부문의 세부사업시행에 관한 사항은 친환경농업직불제 사업지침에서 정하는 사항에 따름**

(2) 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지

- 하천부지 (하천법상 하천구역 안의 토지)
 - 다만, 지목은 하천이나 하천구역에 속하지 않는 농지(논)는 대상 농지(논)로 선정가능
- 농업기반시설 부지 (저수지의 홍수면 부지, 구거 등)
- 농지의 전용이 수반되는 사업시행등으로 농지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협의(다른 법률에 의해 의제처리 되는 경우를 포함)를 거쳤거나 농지법 제37조 및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신고를 거친 농지

- 각종 개발사업예정지안의 농지로서 보조금 지급요건 이행이 어려운 다음의 농지. 다만, 보조금 지급 신청년도 이후 5년 이상의 기간동안 논농업에 이용이 가능하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판단하는 경우에는 지급대상에 포함 가능
 - 도시계획법상 도시계획구역의 주거·상업·공업지역안의 농지(논)
 -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해 지정된 산업단지·농공단지안의 농지(논)
 -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 지정된 택지개발 예정지구안의 농지(논)
 - 기타 법률에 의하여 각종 개발사업 예정지로 지정되거나 고시된 지역으로서 향후 지급요건 이행이 곤란한 농지(논)
- 지급대상으로 선정된 이후 “논의 형상과 기능유지” 의무를 위배한 사실이 확인되어 보조금지급이 중단된 농지(향후 3년간 논농업직불제 참여 제한)
- 경영이양직불제 수혜대상 농지(경영이양직불제와 논농업직불제중 한가지 사업에만 참여가능)

(3) 대상 농지(논) 선정 절차

(가) 시행지침 수립·통보 및 사업 홍보

○ 지침 수립·시달

- 농림부장관은 논농업직접지불제 시행지침을 수립하여 특별·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시달
- * 농업기반공사, 농촌진흥청, 농산물품질관리원은 분야별 세부 시행지침을 수립·시달하고,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
- 시장·군수·구청장은 농림부 및 시·도지사가 수립·시달한 논농업직접지불제 시행지침에 따라 사업이 효율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제반사항을 강구하여 시행

○ 시행지침 홍보 및 사업안내

- 시장·군수·구청장은 관련기관(농업기술센터, 농협, 기반공사 등)의 협조를 받아 시행지침의 내용을 농업인이 알 수 있도록 홍보
- 홍보 방법
 - 시·군 홍보지, 지방지 등에 게재
 - 홍보용 책자 또는 리후렛 제작·배포
 - 마을 앰프 방송, 반상회 및 좌담회 개최 등을 통한 홍보

○ 마을대표 선정

- 읍·면·동장은 마을별로 이장(또는 구성원이 추천하는 자)을 마을대표로 선임
- 마을대표는 논농업직접지불제 관련업무에 관하여 업무협조
 - 실제 논농업에 이용되는 농지(논)여부 확인 협조
 - 마을별 환경친화적인 영농 유도, 친환경농업 전달교육, 영농기장 취합제출, 마을협약 이행표 작성·관리, 요건 이행여부 확인 협조

○ 논의 공익적 기능보전을 위한 관리협약(이하 “마을협약”)체결

- 읍·면·동장은 매년초에 마을협약서[별지 제1호서식]서식을 유인하여 마을에 일괄배포하고 마을협약서 작성 및 관리요령 등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마을대표는 구성원의 합의로 “마을협약”[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고, 마을협약에 참여한 농가의 약정(변경)신청서와 함께 읍·면·동에 제출
 - * 마을대표는 마을회관등 공공장소에 “논의 공익적기능 보전을 위한 관리협약 (마을협약)”과 “마을협약이행표”를 비치하여 참여농가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 출입경작하는 농가의 경우 “농지 이용 및 경작현황 확인서[별지 제3호 서식]”를 발급받은 농지소재지 마을의 마을협약에 가입하고 “논농업직불제 마을협약 운영위원회”로 부터 “마을협약서 사본”을 발급받아 거주지 읍·면·동에 제출하고, 마을협약사항을 공동으로 이행하여야 함.
- 마을협약은 마을단위 또는 영농회단위로 작성하고, 마을지도자 등 2~3명의 운영위원을 추가 선출하여 “논농업직불제 마을협약 운영위원회” 구성
 - 운영위원은 “마을협약” 작성 및 “농지이용·경작 확인서” 발급 등 직불제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마을대표 및 구성원과 협의하여 처리
- 마을협약은 논의 공익기능 유지 및 환경친화적 활동에 관하여 마을의 목표를 설정하고 구성원간 책임과 역할을 규정하여 자발적인 실천을 유도하고, 이행표에 시기·내용·참여농가 현황등을 기록하여 이행실태 확인 검사결과에 대하여 마을협약 참여농가가 책임을 질 것을 결의 실천하여야 함.
- * 친환경적 영농실천 필수업무(토양검사, 잔류농약검사, 교육, 영농기장)에 대한 적격여부 심사결과 부적격 판정시 「이행요건 불이행시 제재기준」에 따라 마을 전체 또는 개별 농가별로 책임을 짐.

○ 농지원부 자료 활용 협조

- 읍·면·동장은 농지원부를 수시 정비하여야 하며 마을대표가 요청하거나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약정신청전에 농지원부(조사용) 사본을 출력하여 마을대표에게 제공하고, 농가의 신청서 작성에 참고토록 함

(나) 사업신청(변경신청 포함)

○ 신청시기 : 2003. 1. 1 ~ 3월말

○ 신청기관 : 거주지 읍·면·동

○ 신청자격 : 2003년부터 신규사업 신청 및 선정을 하지 않음

- 2002년도에 이미 선정 확정되어 보조금지급을 받은 농지(농가)는 새로이 신청할 필요가 없음. 다만, 아래의 경우 반드시 사업신청(변경포함)을 하여야 함.

- 경작면적의 증·감등 변경사유가 발생할 경우(경작자 변경 포함)

- 이미 지급대상으로 선정되어 보조금 지급을 받은 농지(농가)로서 재배작목 전환 희망농지(농가)

-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대상농지중 논

- * '03년부터 친환경농업직불제의 논부문이 논농업직불제에 포함하여 지원됨에 따라 반드시 신청해야 보조금 지급 가능

- 지급대상으로 선정된 농지(논)에 대해서 지급요건 불이행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시행기간동안 계속하여 보조금 지급함.

- 지급대상 농지(논)에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농업경영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으로서 논의 형상과 공익기능유지 및 친환경적 영농의무 등 지급요건을 이행하고자 하는 자

- 다음의 경우에는 신청자격이 없음

- 지급 신청한 농가당 총 논면적규모가 1,000㎡미만인 농가

- 시·군·구 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 농지처분명령을 받은 자

○ 신청서류

- 논농업직접지불제 보조금 지급 약정 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
 - 이미 지급대상으로 선정된 지급대상농지(농가)로서 2003년도에 경작면적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와 재배작목 전환(밭작물 재배) 희망농지(농가)는 변경신청서 제출
 -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수혜대상 농지(논)로서 2003년에 계속 농사에 이용되는 농지(논)의 경우 신규신청서 제출
- 해당 농지(논)가 과거 3년('98~'00)동안 논농업에 이용된 토지임을 증명하는 서류 (토지대장, 마을대표의 확인서 등)
- 신청인이 해당 농지(논)에서 농업경영을 하는 경작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농지원부 등본(타 시·군·구, 읍·면에서 발급한 경우), 자경증명, 마을대표의 확인서, 매매·임대차 계약서 등)
 - * 농지원부상 농업활동을 같이 하는 세대원으로 등록된 경우 그 세대원 명의로도 신청가능함. 다만, 이 경우 농지원부상 농가주와 중복 신청 및 초과면적 분할신청 등 적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부적격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제외
 - * 타지역거주자(출입경작자)의 경우에는 농지소재지 마을대표(또는 읍·면장)로부터 “농지이용 및 경작현황확인서”를 받아 거주지 읍·면·동에 제출하여야 함 (마을협약서 사본 포함 제출)
- ※ 마을대표 확인서 [별지 제3호 서식 “농지이용 및 경작현황 확인서“ 사용]
 - 토지소유자의 임대차 계약기피 등으로 농지원부 등 공적인 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객관적 위치에 있는 마을대표(또는 읍·면·동장)가 농지의 실제 이용 및 실경작자 임을 확인해 주면 이를 구비서류로 인정
 - 타지역 거주자(출입경작자)의 경우에도 농지소재지 마을대표(또는 읍·면장)가 경작자에게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음
 - 읍·면·동장은 필요한 경우 관할지역내 출입경작자 현황을 일괄 파악하여 경작자 거주지 읍·면·동에 그 내용을 통보하고 통보내용은 “마을대표 확인서“로 인정할 수 있음

○ 신청절차

- 해당 농업인은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마을대표에게 제출
- 마을대표는 신청서류를 취합하여 신청서 기재항목의 누락여부 등을 확인하고 “마을협약서“와 함께 읍·면·동장에게 제출

- 마을대표는 필요한 경우 마을별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마을대표확인서 발급 및 마을협약 작성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여 처리

(다) 대상농지(논) 적격여부 및 신청자격 확인 : 읍·면·동장

○ 대상농지(논) 적격여부 확인 : 변경 신청농지(논)는 물론 이미 선정되어 보조금을 지급받은 농지(논)를 정비차원에서 일제 확인·점검 실시

- 농지(논)의 소재지, 면적 및 진흥지역·비진흥지역 여부 등 확인
 - 농가별 농지원부를 우선 대조·확인(읍·면·동장은 매년초에 농지원부를 일제정비)
 -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등 관련서류를 조회·열람, 마을대표의 확인서 첨부, 읍·면장이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직접 현지 실사토록 하여 재확인
- 지역내 각종 개발사업예정지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공부 및 관련부서로부터 의견조회를 받아 확인
- 실제 토지이용현상이 논인지 여부(실제지목 일치여부) 확인
 - 농지원부 및 토지대장 등 공부상지목, 진흥지역 여부, 연결지번과의 상관성 등을 참고하여 실제 논농업에 이용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되 필요시 현지확인
 - 전년도 토지이용현황(휴경, 주재배작목 등), 농지전용 허가·협의·신고 여부 등을 관련서류, 마을대표 등을 통해 확인
- 계속 경작기간 및 실경작자 등을 확인
 - 농지원부의 최초 작성일자, 기록변경 일자, 임차기간, 실경작여부등을 우선 확인하고, 주민등록의 전·출입 일자, 약정추곡수매조서, 종합토지세 부과대장, 마을대표의 확인서 등을 통하여 재확인
- 신청서 접수결과 농업인 거주지와 농지소재지가 시·군·구(읍·면·동)을 달리하는 경우 [별지 제 4호 서식] 에 따라 해당 시·군·구에 일괄 확인 (통보)조치 (4월말까지)
- * 이미 지급대상으로 선정되어 보조금을 지급받은 관외 출입경작 농가에 대해서 정비차원에서 일제 확인조치[별지 제4호 서식]
- * 도시지역 읍·면·동에서는 타지역 출입경작농가에 대하여 “농지이용 및 경작 현황 확인서[별지 제3호서식]”첨부 결과를 확인하고 농지소재지의 “논농업 직접지불 마을협약 운영위원회”에서 작성한 “마을협약서” 사본을 제출 받아 비치하여야 함.

○ 신청자격 유무 확인

- 읍·면·동장은 농지원부를 기준으로 신청인의 자경, 임차, 위탁영농 여부 등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마을대표 확인서, 현지 확인 등을 통해 종합적으로 신청자격 유무를 확인

○ 확인결과 시·군·구 제출

- 확인결과를 [별지 제5호 서식]에 의거 시·군·구에 4월 20일까지 제출
- * 읍·면·동장은 확인결과를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시·군·구에 제출하고 대상농가별 필지별 내역은 전산자료 등을 이용하여 별도 제출

(라) 지급대상 선정 및 결과 통지

○ 선정시기 : 4월말까지

○ 지급대상 선정 : 시장·군수·구청장

- 시장·군수·구청장은 읍·면·동장으로부터 제출된 논농업직접지불제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결과를 바탕으로 지급대상자 명단 및 농지(논)면적을 확정
- 향후 지급상한 확대에 대비하여 지급상한면적(2ha)을 초과하는 면적도 지급대상 농지(논)에 포함하여 관리(초과면적은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음)

○ 선정결과 통지 (5.15까지)

- 시장·군수·구청장은 지급대상 선정결과를 [별지 제6호 서식]에 의거 마을별·영농회별 일괄 통보
-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신청인 및 예비대상자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별도 통보
- 「마을협약 이행표」 [별지 제7호 서식], 사업설명서, 친환경농업 안내문 등을 첨부하여 통보
- 시장·군수·구청장은 지급대상으로 선정된 농업인별 지급대상 농지지번,면적 등을 [별지 제6호 서식]에 의거 관내 의무이행사항 점검기관인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농업기술센터, 농업기반공사에 일괄 통지
- * 의무이행 점검기관에 지급대상 농지를 일괄 통지할 때 전산자료(농가별, 필지별 내역)를 첨부하여 통지

○ 이의신청 및 정정

- 대상자 선정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5월말까지 읍·면·동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
- 읍·면·동장은 이의신청내용 및 소명자료를 참고로, 대상 적격여부, 신청 자격 유무 등을 확인하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
- 시장·군수·구청장은 이의신청내용이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변경 내용을 확정하여 신청인 및 관련기관에 통지하며, 타당성이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는 등 지급대상 선정절차에 준하여 처리
- 시장·군수·구청장은 이의신청에 의하여 정정한 경우 의무이행 점검기관에 변경내용을 통지

(3) 지급대상 변경

- 농지의 매매 및 임대 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변경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마을대표를 경유하여 읍·면·동장에게 변경신청
- 변경신청은 매년도 10월말이전까지 하여야 함
- 읍·면·동장은 변경신청된 농지(논)가 당초 지급대상인지 여부와 경영을 이양받는 신청인이 자격이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 [별지 제5호 서식]에 의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
- 시장·군수·구청장은 변경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6호 서식]에 의거 읍·면·동장, 마을대표, 신청인 및 의무이행사항 점검기관에 통지
- 지급대상이 변경된 경우 당해 농지(논)의 경영을 양수하는 자는 당초 선정된 지급대상자의 자격 및 의무조건을 승계
- 보조금 변경승인을 받은 자에게 지급함

(4) 대상자 관리(전산관리)

- 논농업직접지불제 보조금 지급대상으로 선정된 농지(논)에 대하여 전산 입력 및 관리를 하여야 하며 지급요건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최초 선정 년도를 포함하여 사업시행기간동안 계속하여 보조금을 지급

- 지급요건을 이행하지 않은 농가에 대하여는 제재조치를 하며, 지급요건 불이행의 사유로 보조금 지급이 중단된 경우에는 해당 농업인은 당해 년도를 포함하여 향후 3년간 논농업직접지불제 사업의 참여를 제한
- 지급대상자가 타 시·군·구로 진출한 경우 진출지 시·군·구에서는 전입지 시·군·구로 관련서류를 송부하고 전입지 시·군·구에서 관리한다
 - 이경우 보조금 지급은 전입지 시·군·구에서 지급하여야 하되 대상자 관리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급대상 전·출입 통보는 매년 10월말 까지 마감하여야 함.

< 관외 출입경작 농가관리 >

(1) 일반관리 원칙

- 관외 출입경작 농가라 함은 거주지와 농지소재지가 시·군·구를 달리 하는 경우를 말함
- 관외 출입농가는 거주지 시·군·구(읍·면·동)에 사업신청(변경신청 포함)을 하여야 하며 거주지 행정기관과 농지소재지 행정기관간에 긴밀히 협조하여 지급요건 이행점검 등 관리를 하여야 함

(2) 선정결과 통지

- 거주지 시장·군수·구청장은 지급대상으로 선정된 농지(농가)중 관외 출입경작 농가에 대해서 농업인별 지급대상 농지 지번, 지적 등을 [별지 제6호 서식]에 의거 농지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에 통보
 - 농지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은 거주지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출입경작 농가 자료를 관내 의무이행사항 점검기관(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업기술센터, 농업기반공사)에 일괄 통지

(3) 의무이행 점검결과 통지

- 농지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은 관내 의무이행사항 점검기관으로부터 점검결과를 통보받아 이를 거주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일괄 통지

나. 지급요건

(1) 논외형상과 공익적기능 유지 의무(필수 의무)

< 논외형상 유지 >

- 바닥의 경사도를 일정한 수심이 유지될 수 있도록 평탄하게 유지
- 수자원함양 등 공익기능 유지를 위해 담수가 가능하도록 논 주위에 논뚝을 설치하고 유지·관리

< 논외공익적기능 유지 >

- 4월~10월중 2개월 이상 담수(물을 담아놓는 것). 다만, 가뭄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일시적으로 비담수한 기간은 담수기간으로 봄
 - * 논외발작물 재배작목 전환 신청농지(농가)에 대하여는 담수외무 해제
- 논 주변에 용·배수로 설치·관리하고, 기상 상태를 감안하여 적절한 담수량 조절

(2) 친환경적 영농 실천외무(필수 의무)

< 화학비료·농약외 적정한 사용 >

- 화학비료는 토양검사 및 시비처방에 의한 검정시비량을 따르며, 검정시비량이 없는 경우는 농업기술센터소장이 권장하는 사용량을 따라야 함
- 농약은 식품외약품안전청장이 고시한 농산물의 농약잔류허용 기준을 초과해서는 안되며 살포시 「농약안전사용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 농약안전사용기준 >

- 적용대상 농작물과 당해 병해충에 알맞는 농약을 사용
- 사용시기, 사용횟수를 지켜 사용할 것
- 가능한 독성이 낮고 잔류성이 적은 농약 선택

< 친환경농업 관련 교육 이수 >

- 교육대상 : 논농업직접지불제 보조금 지급대상 농업인
- 교육종류(다음중 1개 이상 이수)
 - 새해영농설계교육(농업기술센터)
 -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친환경농업 관련 영농교육
 - 마을대표(이장 등)외 전달교육
 - 논농업직접지불제 농업인 특별교육(농업기술센터)
- 대상 : 마을대표, 다른 친환경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농업인

< 영농기장 실천 >

- 지급대상으로 선정된 농가에서는 화학비료·농약 사용량을 기재하는 영농기장을 의무적으로 기록 관리하여야 함
- 시·군농업기술센터에서는 친환경농업관련 영농교육 및 마을대표 전달교육시 기장요령 교육 실시
 - * 고령 등으로 기장이 어려운 농업인은 화학비료, 농약구입 영수증을 부착하여 읍·면·동에서 확인 받을 수 있도록 함.
- 농가별로 영농기록장 기록을 9월말까지 완료하고 마을대표에게 제출
 - 마을 대표는 10월 10일까지 읍·면·동사무소에 제출
- 읍·면·동사무소에서는 농가별 영농기장을 인수받아 기장여부를 검토 판정하고, 영농기록장을 농업인에게 반환

(3) 친환경적 활동 실천 권장사항 (선택적 의무)

<친환경적 영농 실천 >

- 토양개량제(규산, 벗짚, 석회 등)를 시용
- 겨울철 푸른들 가꾸기 등 친환경농업에 적극 참여

<농촌환경 가꾸기 등 친환경적 활동 실천 >

- 폐비닐, 농약병 등의 수거 및 처리
- 마을주변 및 농로 등에 경관작물 재배(꽃길 조성 등)
- 마을내 어류 및 곤충 보호활동
- 동절기 조류를 위한 먹이제공 활동
- 논에 인접한 산기슭 주변 제초활동 및 봄철 산불예방 활동
- 주말농장, 시민농원 등의 개설 및 운영
- 기타 마을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단체활동

< 마을협약 작성 및 성실한 이행, 이행표 작성·관리 >

- 논농업직접지불제 보조금 지급대상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마을협약서에 서명·날인하고, 마을대표를 중심으로 마을협약에 명시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출입경작자는 농지 소재지 마을협약에 가입하여야 함)

- 마을협약서에 가입하지 않은 농가에 대해서 “이행요건 불이행시 제재기준”에 따라 제재
- 또한 마을협약서 [별지 제 1호 서식] 의 약정내용 제 2조 제 1항 제 1호의 사항과 제 2호에 대한 점검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는 “이행요건 불이행시 제재기준”에 따라 제재조치함
- 마을협약에 참여한 지급대상자는 이행표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들을 적극적으로 실천하여야 함.
- 마을대표 및 구성원은 이행표에 명시되어 있는 선택적 의무사항가운데에서 최소 3가지 이상을 실천하고 그 내용을 기록하여 매년 9월 30일까지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다. 지급요건 이행여부 점검(Monitoring)

(1) 논의 형상과 공익기능유지 의무 이행여부 확인

- 주관기관 : 농업기반공사 시·군지부
- 점검시기 : 이양후(5~6월) 또는 생육관리(7~9월) 기간중 자체결정
- 점검방법 : 물관리(수리시설 유지관리) 업무와 병행하여 실시
 - * 논의 발작물 재배전환 신청농지(농가)는 논의 형상유지 여부를 점검
 - 일반관리지역, 중점관리지역으로 분류하여 점검
 - 지급대상자 명단 및 지급대상 논의 지적도 등을 시·군·구 또는 읍·면·동으로부터 확보하여 자체 점검계획 수립·시행
 - 의무 불이행사례 발견시 마을대표 또는 경작자의 확인서를 징구하여야 함
- 협조기관 : 시·군·구, 읍·면·동
 - 시·군·구 : 현지조사용 지적도면 및 관련자료 제공
 - 읍·면·동 : 지급대상자 필지별 내역(전산자료 포함) 등 기초자료 제공
- 농업기반공사 시·군지사는 점검결과, 의무불이행 농가 및 면적 등 점검자료를 10월 31일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함
 - 시·군·구청장은 농업기반공사 지사로부터 통보받은 점검결과중 관외 지원대상 농지(출입경작)에 대해 거주지 시·군·구에 11월 15일까지 통보하여야 함(의무불이행자가 없는 경우는 없음을 통보)

○ 점검결과에 대한 조치

- 시장·군수·구청장은 관내 시·군농업기반공사 지사장 및 농지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통보된 점검결과 부적합 판명된 농지(농가)에 대해서 “이행요건 불이행시 제재기준”에 따라 제재를 하여야 함

(2) 토양검사 및 잔류농약 검사

< 토양검사 >

○ 주관기관 : 시·군농업기술센터

- “농촌진흥청장은 논농업직불제 토양검사 세부시행지침”을 수립하여 일선에 시달
- 시·군농업기술센터소장은 농촌진흥청장 및 도농업기술원장으로부터 시달된 “토양검사계획”에 따라 시·군 자체 “논농업직접지불논토양검사계획”을 수립·시행
- 토양검사계획수립시 과다시비로 도복된 과다시용 논에 대한 토양검사요령을 포함하여야 함

* 2차년도·3차년도 부적합 필지는 작물과종(또는 이양)전·수확후 토양검사를 실시하여야 함

○ 토양검사 대상농지(논) 표본선정

- 시·군별 토양검사 표본수는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지역실정에 맞게 결정하되 ‘논농업직접지불 토양검사세부시행지침’에 근거하여 시행

* 논외 발작물 재배작목 전환 신청농지(농가)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 조사

○ 토양검사 방법 : 농촌진흥청의 ‘논농업직접지불 토양검사세부시행지침’에 근거하여 실시

○ 논 토양 화학성분 적정기준 함량

구 분	유기물 함량 (g/kg)	유효인산함량 (mg/kg)	치환성칼리함량 (cmol ⁺ /kg)
일반 논	11~30	170이하	0.5이하
간척지 논	11~25	140이하	0.9이하
석회암지대 논	11~40	170이하	0.5이하
특이산성 논	20~40	170이하	0.5이하

* 농촌진흥청 표준분석법에 의한 분석결과 적용

○ 토양검사 적합여부 판단기준

- '논토양화학성분 걱정기준합량' 범위 내(1차 토양검사) : 적합
- 토양화학성분의 걱정범위를 초과하여 벗어날 경우(2차·3차 토양검사)

구 분	판 정
수확후 토양화학성분 ≤ 파종(이앙)전 토양화학성분	적 합
수확후 토양화학성분 > 파종(이앙)전 토양화학성분	부적합

- 토양화학성분의 걱정범위를 미달하여 벗어날 경우(2차·3차 토양검사)

구 분	판 정
수확후 토양화학성분 > 파종(이앙)전 토양화학성분	적 합
수확후 토양화학성분 ≤ 파종(이앙)전 토양화학성분	부적합

○ 토양검사 결과 통지

- 시·군농업기술센터소장은 1차 부적합 및 2차·3차 부적합 농가의 명단을 11.15일 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
- 통보시 검사결과를 “1차 부적합 및 2차·3차 부적합 등으로 표시하여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가의 명단을 통보(부적합 농가가 없는 경우는 부적합 없음 통보)
- 시·군·구청장은 관내 농업기술센터 소장으로부터 통보 받은 토양검사 결과 중 관외 지원대상농지(출입경작)의 검사결과를 거주지 시·군·구청장에게 11.15일까지 통보하여야 함

○ 토양검사 결과에 따른 제재

- 시장·군수·구청장은 관내 시·군농업기술센터소장 및 농지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통보된 토양검사 결과부적합 판명된 필지(또는 농가)에 대해서 “이행요건 불이행시 제재기준”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질소질비료 과다사용 논 검사 >

- 시장·군수·구청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과 협의하여 매년 9월상순(1~10일)을 전후하여 마을별로 화합비료 과다사용에 의해 도복된 논을 조사하여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검사 분석할 수 있도록 조치
- 조사대상논 : 필지면적의 1/2이상(50%) 도복된 전 필지
- * 태풍 등 외부요인 없이 도복한 논에 대하여만 토양검사를 실시

- 과다시용으로 도복된 조사대상 논(필지)가 많은 경우 논농업직불제 토양 검사 표본점수와 관계없이 추가조사

< 잔류농약 검사 >

○ 주관기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시·군출장소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논농업직불제 잔류농약검사 세부시행지침을 수립하여 시달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시·군출장소장(이하 “출장소장”)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수립·시달한 “잔류농약검사계획”에 따라 자체 “시·군별 잔류농약검사계획”을 수립·시행

○ 잔류농약검사 대상농지(논) 선정

- 잔류농약검사 조사표본은 작물생산량 조사 방법을 활용하여 마을별, 들녘별로 고루 분포 되도록 선정(논의 발작물 재배작목전환 농지에 동일 적용 조사)
- 잔류농약검사 표본조사 결과를 적용할 권역은 협약마을 단위로 설정

○ 잔류농약 검사방법(세부시행 지침에 명시)

- 잔류농약 검사용 시료는 채취하여 건조·조제한후 시료에 명패를 붙여 신속하게 관할 분석실에 송부하여 정밀분석 실시하고, “부적합”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지하여 제재조치

○ 잔류농약검사 결과 판정기준

-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고시한 농산물중 농약잔류허용기준을 적용하여 허용기준치 이상인 경우 “부적합” 판정

○ 잔류농약 검사결과 통지

- 잔류농약분석기관의 장은 정밀분석 종료 후 그 결과를 출장소장에게 통지
- 출장소장은 잔류농약검사가 완료된 후 1주일 이내(11.15일까지)에 잔류농약 검사결과 부적합 여부를 권역별(마을단위 또는 들녘단위)로 검사한 필지의 소재지 및 농지소유자 성명, 주소 등을 기재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지
- 시·군·구청장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출장소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잔류농약 검사결과중 관외 지원대상 농지(출입경작)에 대한 검사결과를 거주지 시·군·구청장에게 11.15일까지 통보하여야 함.

○ 잔류농약검사 결과에 대한 조치

- 시장·군수·구청장은 관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시·군출장소장 및 농지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통보된 잔류농약 검사결과 부적합 판명된 필지(농가)에 대해서 “이행요건 불이행시 제재기준”에 따라 필요한 제재를 하여야 함.

(3) 친환경 관련 교육 이수 확인

- 주관기관 : 시·군 농업기술센터
- 교육이수 확인방법 (논의 발작물 재배작목전환 농가도 동일교육이수)
 - 시·군·구는 선정된 대상자 명단을 시·군농업기술센터에 통보하며 시·군농업기술센터는 대상자별 교육 이수현황을 별도로 관리
 - 새해 영농설계 교육 등 센터 실시교육 이수자 명단은 센터가 자체 관리
 - 마을대표 전달교육 이수자 명단은 마을협약 이행표를 확인하거나, 마을대표로부터 교육이수자 명단을 확보
 - 기타 관련교육 이수자는 이수사실(교육확인서 등)을 센터에 제출
- 시·군농업기술센터소장은 교육이수를 받지 않은 농가 명단을 10월 말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

※ 농촌진흥청에서 별도 “논농업직접지불제 농업인교육 시행지침” 시달

(4) 영농기록장 기록 관리 확인

- 주관기관 : 읍·면·동사무소
- 지원대상농가별 영농기장 실천 이행여부를 10월말까지 점검
- 영농기록장 점검결과 통지
 - 읍·면·동장은 영농기록장 점검결과를 11. 15일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지
 - 시·군·구청장은 관외 지원대상자(출입경작자)에 대해 영농기록장 점검결과를 11.15일까지 거주지의 시·군·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함
- 영농기록장 점검 결과에 대한 조치
 - 시장·군수·구청장은 관내 읍·면·동장 및 농지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통보된 영농기록장 점검결과 불이행한 농가에 대해서 “이행요건 불이행시 제재기준”에 따라 필요한 제재를 하여야 함.

6. 이행요건 불이행시 제재기준

- 이행요건 검사결과 부적합판정으로 “보조금 지급이 중단”된 경우는 향후 3년간 지원대상에서 제외

이행요건		점검결과	제 재 기 준
논의 형상과 공익 기능유지		불이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차년도 : 경고 및 감액지급 - 불이행면적 해당금액 감액 ○ 2차년도 : 보조금 지급중단
친환경적 영농실천	토양검사, 잔류농약 검사	부적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1차년도</u> : 무작위로 검사대상 필지를 선정하여 토양 검사 및 잔류농약검사를 한 결과 친환경영농의 무를 위반한 경우 검사필지를 경작한 농가가 속한 협약마을 전체 농가에 대하여 경고 ○ <u>2차년도</u> : 1차 경고를 받은 협약마을 농가중에서 무작위로 검사대상 필지를 선정하여 토양검사 및 잔류농약검사를 한 결과 친환경영농의무를 위반한 경우 검사필지를 경작한 당해 농가에게 대하여 보조금 50% 감액지급 ○ <u>3차년도</u> : 2차년도에 해당하는 제재를 받은 협약 마을 농가중에서 무작위로 검사대상 필지를 선정하여 토양검사 및 잔류농약검사를 한 결과 친환경영농 의무를 위반한 경우 검사필지를 경작한 당해 농가에 대하여 보조금지급중단
	<u>도복된 논에 대한 토양검사</u>	부적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1차년도</u> : 해당농가 경고 ○ <u>2차년도</u> : 지원대상제외
	친환경농업 교육이수	미이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차년도 : 해당농가 경고 ○ 2차년도 : 해당농가 보조금 50%감액지급 ○ 3차년도 : 해당농가 보조금 지급중단
	영농기록장 기록	미기장	
	<u>마을협약 가입</u>	<u>미가입</u>	

7. 사업비 지급 및 정산

가. 지급요건 이행여부 확정

- 시장·군수·구청장은 각 기관별 점검결과 보고(통지)를 토대로 지급대상자별 명단·논면적·요건별 이행여부를 확정
- 지급요건별 이행여부 판정 주관기관
 - 논의 형상과 공익기능유지(이행, 불이행) : 농업기반공사 시·군지부
 - 토양검사(도복)·잔류농약검사(적합, 부적합) : 시·군농업기술센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시·군출장소
 - 친환경농업 교육 이수(이행, 불이행) : 시·군농업기술센터
 - 영농기장 기록(기록, 미기록) : 읍·면·동 사무소
 - 마을협약서 가입(가입, 미가입) : 시·군·구청

나. 보조금 산정

- 시장·군수·구청장은 보조금 산정기준 및 제재기준에 따라 지급액을 결정
- 보조금 산정기준
 - 보조금은 대상면적에 비례하여 산출 (산출결과 10원단위 미만은 절사)
 - 농업진흥지역 : 50만원/ha (50원/m²), 농업진흥지역밖 : 40만원/ha (40원/m²)
- 보조금 지급방식
 - 농가별 보조금이 5만원미만인 농가는 5만원 지급(최소지급액)
 - 대상농가당 면적 2ha까지만 보조금 산정에 포함(지급상한면적)
 - * 지급상한 초과된 면적은 농가별 보조금액 산정에서 제외
 - 농가별 보조금은 신청시 제출한 계좌에 전액 입금 처리
 - * 농협, 우체국, 일반 금융기관에 입금처리할 수 있음. 다만,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입금처리
- 현물지급
 - 논농업보조금을 사전에 비료, 농약등 농자재로 지급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논농업보조금 사전지급 표준절차(환경 51410-162 : ‘01. 3. 2)” 따라 시·군에 신청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이에 따라 농협과 협의하여 영농자재 공급

다. 보조금 지급 및 정산

- 시장·군수·구청장은 논농업직불제 보조금을 시·군·구의 예산으로 편성시 지방재정법 등 관련법령과 예산편성지침에서 정한 범위내에서 집행상의 편의를 고려하여 보상금 등 적절한 예산과목으로 편성하여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보조금 규정에 따라 농특회계 세입금으로 반납 정산한다
- 시장·군수·구청장은 지급대상자별 지급금액을 확정하여 신청시 지정한 입금 계좌에 농가별로 보조금을 전액 입금 처리
 - * 필요시 읍·면·동에 자금을 전도하여 계좌입금 지급할 수 있음
-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것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며, 그 사유가 발생한 기간동안 이미 지급한 보조금은 회수 조치하고, 해당 농업인은 향후 논농업직불제 사업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 지주의 보조금 수령 및 이중·중복신청 등으로 보조금을 수령한 경우는 향후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 * 회수조치된 보조금은 국고(농특회계) 세입금으로 반납 정산한다

라. 보 고

-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사항을 [별지 제8호 서식]에 의거 시·도지사 및 농림부장관에게 보고
 - 지급대상 선정결과 보고 : 각 시행년도 5월말까지
 - 보조금 지급결과 보고 : 각 사업시행 다음년도 1월말까지
 - * 시·도 지사는 보조금 관련 법령에 따라 지급잔액 정산조치

8. 2004년도 사업변경신청 및 사업대상자선정 안내

* 아래사항은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함

가. 신청서 제출기관 : 읍·면·동

나. 신청농지 : 1998년부터 2000년까지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로서 2003년도에 선정 확정되어 보조금을 지원 받은 농지로서 변경신청이 필요한 농지 (신규 신청 불가)

다. 신청자격 : 대상농지에서 농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논외의 형상과 공익기능유지 및 친환경적 영농 의무이행 등 지급 요건을 이행하고자 하는 자

라. 신청절차

- 신청자는 신청서를 작성,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마을대표를 통해 읍·면·동에 제출

마. 구비서류

- 논농업직접지불보조금 지급 약정(변경) 신청서
- 농지원부 등 경작자·논농업 이용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논의 공익기능 보전을 위한 관리협약

○ ○ 시장·군수
○ ○ ○ 마을(영농회)

농가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고 논외의 형상과 공익기능을 유지함으로써 국토를 보존하고 환경친화적인 영농을 실천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농업을 가능케 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논농업직접지불제”를 시행함에 있어 (○○ 시장·군수)를 “갑”이라 하고 ((○○○마을(영농회))을 “을”이라 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을 체결한다.

1. 약정기한 : 200 년 월 일 부터 사업종료시까지

2. 약정내용

제1조(구성원의 자격) ① “을”의 구성원은 논농업직접지불을 신청한 농업인으로 한다.

② 마을대표는 본 마을(영농회)를 대표하며, 논농업직접지불제와 관련하여 신청, 이행여부의 점검, 교육 등 마을의 제반 사항을 총괄하며 논농업직접지불제와 관련된 “갑”의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2조(책임과 의무) ① “을”의 각 구성원은 “갑”이 제시하는 논외의 형상과 공익적 기능 유지, 친환경적 영농 실천 등 다음 각호의 의무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논외의 형상과 공익적 기능 유지(필수 의무)

가. 바닥의 경사도를 수심이 일정하도록 평탄하게 조성

나. 담수가 가능하도록 논 주위에 논뚝을 설치하고 유지·관리

다. 4~10월중 2개월이상 담수 (가뭄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일시적인 비담수 기간은 담수기간으로 간주)

라. 논 주변에 용·배수로를 설치·관리

마. 논외의 발작물 재배 작목 전환농지(논)에 대하여는 담수의무는 해제하되 논뚝, 용·배수로 설치 등 논외의 형상과 기능은 유지하여야 한다.

2. 친환경적인 성실한 영농 실천(필수 의무)

가. 비료는 토양검사를 통한 검정시비량에 따라 사용하며, 검정시비량이 없을 경우는 지도기관에서 권장하는 시비량에 따라 사용하도록 한다.

특히 태풍등과 같이 외부요건 없이 과다시비로 도복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나. 농약은 농약안전사용 기준을 반드시 준수하여 살포한다.

다. 친환경농업 관련 농업인 교육을 받아야 한다.

라. 농가경영, 농업자재의 사용현황 등 영농상황을 기장(영농기장 실천)하여야 한다.

마. 논·밭작물 재배작목 전환농지(농가)에 대하여도 상기 가목내지 라목의 사항을 동일하게 적용한다.

3. 친환경적 영농 실천(선택적 의무)

가. 토양개량제(규산, 벗짚 등)를 사용하여 지력을 높인다.

나. 겨울철 푸른들 가꾸기 등 친환경농업에 적극 참여한다.

4. 농촌환경 가꾸기(선택적 의무)

가. 폐비닐, 농약병 등의 수거 및 처리

나. 마을주변 및 농로 등에 경관작물 재배(꽃길 조성 등)

다. 마을내 어류 및 곤충 보호활동 또는 동절기 조류를 위한 먹이 제공

라. 논에 인접한 산기슭주변 제초활동

마. 봄철 산불예방 활동

바. 기타 마을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단체활동

② 제①항 제2호 나목의 의무이행여부 점검을 위해 잔류농약검사 조사표본으로 선정된 농가는 검사용 시료를 의무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조사표본은 필지별 순환)

③ 마을 대표는 구성원 개개인이 1에서 4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고, 이행표를 작성하여 매년도 10월말까지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을”의 각 구성원은 마을대표와 합심하여 ①항에서 규정한 의무 이행사항을 준수하고 의무이행여부 점검에 적극 동참·협조하여야 한다.

⑤ 제①항 제1호의 사항을 위반하였거나 제①항 제2호의 사항에 대한 검사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농농업직접지불제 시행지침”의 “이행요건 불이행시 제재기준”에 명시된 바에 따라 “갑”은 “을”에게 제재조치할 수 있다.

제3조(자격 상실) “갑”은 “을”의 각 구성원이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대상자로 선정된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을”의 대표를 경유하여 해당 구성원에게 위반 사실을 통지하고 “을”에게 구성원의 자격 상실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을”은 “갑”의 요청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구성원의 자격을 상실시킨다

제4조(보조금의 지급방법 및 시기) ① “갑”은 “을” 및 “을”의 각 구성원이 의무사항을 성실히 이행한 것을 확인하여 논농업직접지불보조금을 지급한다.

② “갑”은 논농업직접지불제 시행지침에 근거한 지급기준에 따라 “을”의 각 구성원이 신고한 은행의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논농업직접지불보조금을 지급한다.

제5조(제한 사항) “을”의 각 구성원은 제3조 규정에 의거 자격이 상실되거나 제 2조에 규정된 의무 이행 조건을 이행하지 않아 “갑”으로부터 논농업직접지불제 시행지침에서 정한 제재 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에 따른다

제6조(해석) 이 약정서의 해석에 관하여 이의가 있거나 “갑”, “을” 쌍방의 의견이 다른 때에는 농산물의생산자를위한직접지불제도시행규정 및 약정 체결 당시의 농림사업시행지침서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부장관의 해석에 의한다.

제7조(특약사항) 논농업직불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관련 법령 및 시행지침과 본 마을협약 제1조 내지 제6조에서 정한 내용의 범위내에서 “갑”과 “을”사이 또는 “을”구성원 상호간에 다음과 같이 특약사항을 정하여 운영한다.

위 약정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약정서 2부를 작성하고 “갑” “을” 쌍방이 서명 날인하여 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갑” 시장·군수·구청장 :	인
“을” 마을대표 성명 :	인
운영위원 성명 :	인
운영위원 성명 :	인
운영위원 성명 :	인

[별지 제2호 서식]

농업직접지불보조금 지급 약정(변경) 신청서												
①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②신청농지(논)	농지 소재지		③지목 (공부)	④소유 (자,타)	⑤면적(m ²)		⑥ 농업 이용기간	⑦ 밭작물 배전환 여부	⑧ 전경작자 (변경신고사)	⑨읍·면확인란*		
	사· 군	읍· 면			리· 동	지번				진흥 지역	비진흥 지역	대상농지 적부확인
			합 계									
입금계좌	은행		(예금주)	계좌번호								
<p>○ 본인은 신청농지(논)에 대하여 지급요건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지급요건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정해진 규정에 따른 것을 약속하오니 농업직접지불보조금 지급 대상자로 선정(변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200 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신청인 (인) 경영양도인(변경신고의 경우) (인)</p> <p style="text-align: center;">○ ○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p>												
<p>※ 기타 구비서류</p> <o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지원부가 없거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에 이용된 토지임을 증명하는 서류(토지대장, 마을대표 확인서) ○ 경작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농지원부등본, 자경증명, 매매·임대차계약서, 마을대표 확인서등) 지급대상변경신청서 : 매매계약서, 임대차계약서 등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음		
읍·면장 확인 결과 *												
⑩신청자격 유무(○, × 표시)								담당공무원				
⑪지급대상적격농지	구분		합계	진흥지역	비진흥지역							
	면적(m ²)		()									
												(인)

※ 신청인 신청서 기재상 주의사항

“*” 표시된 흙색 바탕란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습니다.

- ①란은 신청농지에서 실제 농업경영을 하는 신청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하며, 지급대상 변경신고의 경우 경영을 양수하는 사람의 인적사항을 기재합니다
- ②란은 신청인이 실제 논농사를 짓는 논을 대상으로 작성합니다.
- ③란은 신청농지(논)의 공부상 지목을 기재합니다.
- ④란은 농지소유기준으로 본인소유 본인경작지“자”로 타인소유 임차경작지는 “타”로 기재합니다.
- ⑤란은 신청농지(논)의 면적을 진흥지역과 비진흥지역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 ⑥란은 “자경”의 경우에는 자경기간을, 임차의 경우에는 임차기간을 기재합니다.
- ⑦란은 논·밭작물 재배작목 전환을 희망하는 농가는 지번별로 전환 여부 기재(전환○, 미전환 공란)
- ⑧란은 “변경신고서” 변경신고 이전 경작자(또는 지급대상자) 이름과 주민등록 번호를 기재합니다.

※ 읍·면 확인시 주의사항

- ⑨란은 신청농지의 대상적격여부 등을 신청인의 농지원부, 기타 첨부서류, 관련 서류 및 현지확인을 거쳐 확인한 후 “적”, “부”를 기재하고, “부”인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근거를 명시합니다.
- ⑩란은 신청인의 신청자격 유무를 “○”, “×”로 표시합니다.
- ⑪란은 적격 농지(논)로 확인된 논·밭의 필지수()와 면적을 기재하고 담당공무원이 확인날인합니다.

※ 논농업직접지불 보조금 지급요건

- 논·밭의 형상과 공익기능 유지 : 논을 평탄하게 유지, 논둑 유지관리, 4월~10월중 2개월이상 담수, 용·배수로 설치 및 관리(논·밭작물 재배전환시 담수의무 해제)
- 친환경농업 실천 : 비료는 토양검사 및 시비처방에 의한 적정시비량 또는 농업기술센터소장이 권장하는 사용량에 따라 적정하게 사용하고 , 농약은 농산물 농약잔류허용기준 및 농약안전사용기준을 준수
- 친환경농업 교육 참석 : 매년 친환경농업 관련교육을 1회이상 참석
- 영농기장 실천 : 비료·농약 사용량을 기재하는 영농기장을 하여야 함

농지 이용 및 경작현황 확인서

<농지 현황>

농지소재지	지번	지목(공부)	면적(m ²)	지역	농지소유	발작물전환여부

- * 지역 : 농업진흥지역은 “진흥지역“, 농업진흥지역밖은 “비진흥지역“ 표시
- * 농지소유 : 자작의 경우 “자”, 임차농의 경우 “타”로 표시
- * 기타란에는 임차농지의 경우 임대인과 임차기간을 표시

<경작자 현황>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위 신청 농지는 '98년부터 2000년까지 논농업에 이용되었으며, 상기 경작자가 현재 경작하고 있음을 확인함

200 년 월 일

○○ 마을대표(읍·면·동장) (인)
마을운영위원 (인)
마을운영위원 (인)

※ 이 확인서는 농지원부상 실제지목(공부상 지목이 아님)이 “답”으로 등재되지 아니한 경우(농지원부에서 누락된 농지 포함)로서 실제 토지이용현상이 논농업으로 이용되는 농지 및 농업인(타지역 거주자 등)의 경우 마을대표(또는 읍·면장)가 이를 확인하는데 사용합니다

농업보조금 신청농지 접수결과 통보

수신 : ○○○ 시장·군수·자치구청장

- 우리 시·군·구 농업 보조금 신청접수결과 다음과 같이 귀 시·군·구 관할구역의 농지가 접수되어 통보하오니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인		신청농지(해당 시·군 관할)					
성명	주민등록번호	농지소재지	지번	면적(m ²)		농지소유자	발작물 전환여부
				진흥	비진흥		

200 년 월 일

□□□ 시장·군수·자치구청장

- * 이미 선정되어 보조금을 받은 출입경작자의 경우에는 본 서식에 준하여 통보하고 이상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농업직접지불 보조금 지급대상(변경) 확인결과

○ 추천자(변경자) 명단

마을 리·동	주소 (번지)	성명	주민등록번호	신청면적 (㎡)	확인면적(㎡)			지급예상액 (원)	비고 (발작물전환 유무등)
					합계	진흥지역	비진흥지역		
소계		○○ 명 신청							
소계		○○ 명 신청							
소계		○○ 명 신청							
총합계		○○ 명 신청							

※ 신청면적과 확인면적이 다른 경우 그 사유를 비고란에 기재하며, 변경신청의 경우 변경신청내역, 논의 발작물 재배작목 전환 유무 등을 기재

○ 제외자 명단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신청면적(㎡)	제외사유

※ 신청자격이 없는 경우 및 신청농지 전체가 대상농지에서 제외된 경우

200 년 월 일

○○ 읍·면·동장 (인)

[별지 제6호 서식]

농업직접지불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변경) 통지서

1.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칙 제 19조 제 3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 년도 농업직접지불 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가. 마을(영농회) 현황

마을명(영농회명)		대표자 성명	
-----------	--	--------	--

나. 선정자(변경) 명단

연 번	성 명	주민등록 번호	주 소	지급대상면적(m ²)			보조금 예상액(원)	발작물 전환여부
				합 계	진흥지역	비진흥지역		
합			계					

2. 선정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5월말까지 읍·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시장·군수·구청장 (인)

시군 농업기술센터 소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출장소장
 농업기반공사 시군지사장
 리장(마을대표) 귀 하

* 의무이행 점검기관에 통보할 때 농가별, 필지별 내역이 포함된 전산자료를 첨부하여 통지

□ 선택적 의무 이행 상황

○ 농촌생활환경 가꾸기 등 친환경적 활동 실천				
① 폐비닐, 농약병 수거	예		아니오	
- 시기: 월 일 - 실천사항:				
② 마을주변 및 농로 경관작물 재배(꽃길조성 등)	예		아니오	
- 시기: 월 일 - 실천사항:				
③ 마을내 어류 및 곤충보호 활동	예		아니오	
- 시기: 월 일 - 실천사항:				
④ 동절기 조류를 위한 먹이 제공활동	예		아니오	
- 시기: 월 일 - 실천사항:				
⑤ 논에 인접한 산기슭 주변 제초작업	예		아니오	
- 시기: 월 일 - 실천사항:				
⑥ 봄철 산불예방 활동	예		아니오	
- 시기: 월 일 - 실천사항:				
⑦ 주말농장, 시민농원 등의 개설 및 운영	예		아니오	
- 시기: 월 일 - 실천사항: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농업정책과(과장 김종진, 사무관 김원일)입니다.

1. 목적

- 자연재해로 인한 경영불안을 해소하여 농가의 소득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여 안정적인 농업재생산활동을 뒷받침

2. 시책 및 추진방향

- 피해통계축적, 객관적인 손해평가방법 정립 등 보험실시 선결요건이 비교적 잘 갖추어진 품목을 중심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한 후 제도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개선한 후 전국으로 확대 시행
 - 2003년에는 사과·배는 전국으로 확대 시행하고 포도·단감·감귤·복숭아는 주산지를 중심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가입상황 등을 분석·검토하여 2004년부터 전국 확대 추진

3. 근거법령

- 농작물재해보험법 제14조
 - 예산의 범위안에서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와 재해보험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이하 “운영비”라 한다)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 백만원)

구분		'92-'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예산안)	2004이후
사업량						
사업비	계	백만원	12,779	15,068	20,544	
	보조		4,646	8,890	13,043	
	지방비					
	자부담		8,133	6,178	7,501	

5. 2003년도 사업시행요령

< 사업개요 >

가. 사업내용

○ 배경

- 자연재해로 인한 농가의 경영불안요소를 해소하여 농가의 소득안정과 안정적인 농업생산활동 보장

○ 지원대상자 및 지원단가

- 순보험료 지원

- 지원대상자 : 사과, 배, 포도, 단감, 감귤, 복숭아 재배농가중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하는 농가
- 지원기준 : 농가별로 산출한 순보험료의 50%지원

- 운영비 지원

- 지원대상자 : 농작물재해보험사업을 운영하는 농협중앙회
- 지원기준 : 보험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80% 지원

○ 지원조건 : 정액지원율에 해당하는 금액은 보조

나. 2003년도 사업비(예산안) 내용

(단위:백만원)

내용별	사업량	사 업 비					
		사업비 합계	예 산 액 (일반회계)			지방비	자부담
			계	보 조	용 자		
계		백만원	20,544	13,043		7,501	
순보험료지원			11,298	5,649		5,649	
운영비지원			9,246	7,394		1,852	

<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 >

- 보험실시 대상작물이 재배되고 있는 소재지의 단위농협에 가입 신청
- 가입신청을 하여 농가별 부담 보험료가 산출된 후에 농가부담보험료 납입과 동시에 지원대상자로 선정

< 추진체계 >

가. 사업주관기관 :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나. 사업담당부서 : 농림부 농업정책과

다. 자금지원예정자 : 사과·배·포도·단감·복숭아·감귤 재배농가중
보험가입을 신청한 농가

라. 사업시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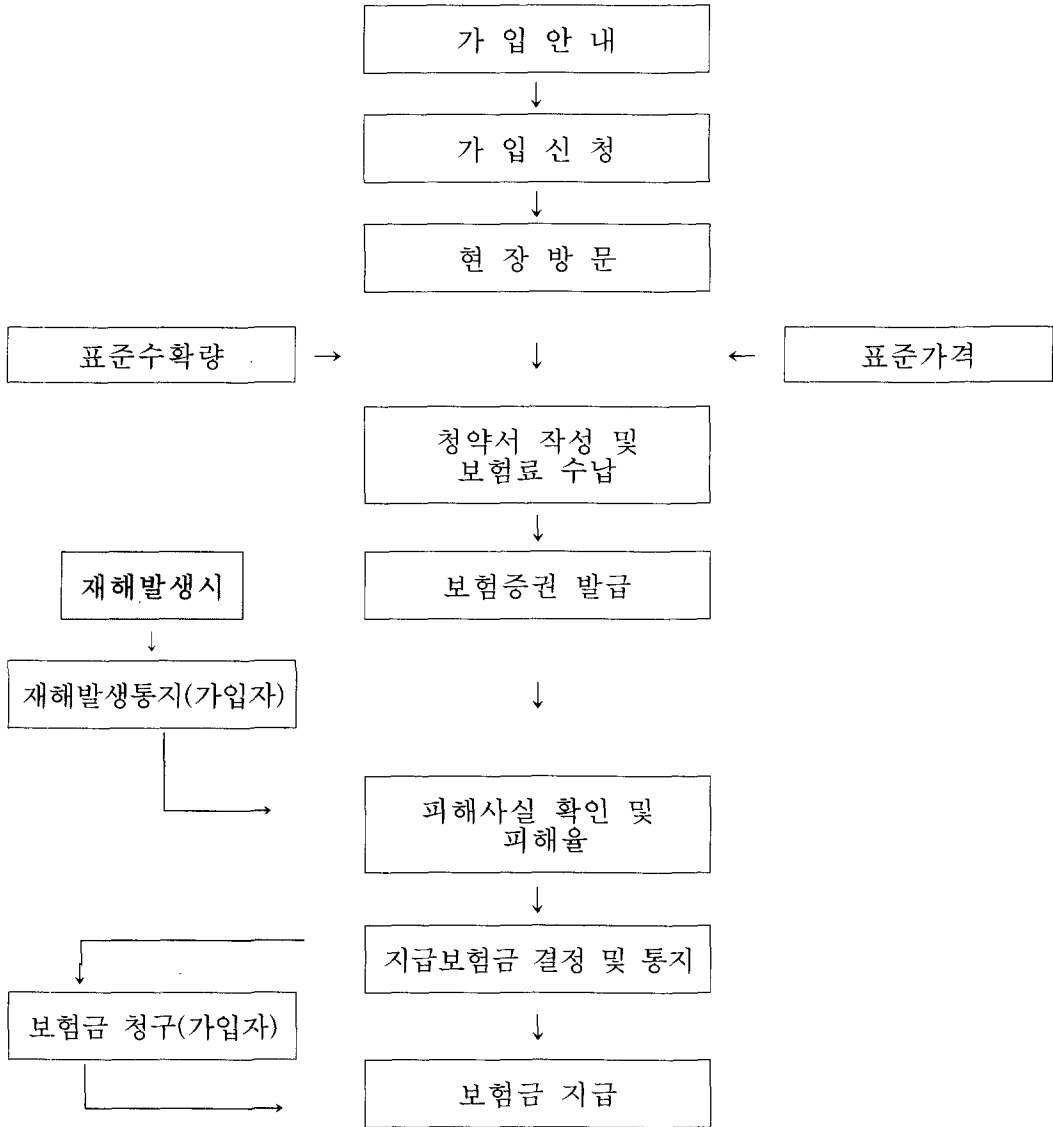
- 농협중앙회장은 보험요율, 보험약관 등 세부 시행계획을 농림부에 제출하고 지역조합에 대한 세부실시방안 교육 실시
- 지역조합은 농협중앙회의 세부시행계획에 의하여 농가로부터 보험가입 신청접수하고 농협중앙회장은 보험증권을 발급
- 농협중앙회장은 분기별 자금 계획에 따라 농림부에 자금 배정 신청
 - 농협중앙회장은 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지급받고자 하는 때에는 보험계약을 완료한 후 재해보험가입현황서를 첨부하여 농림부에 제출
 - 농협중앙회장은 재해보험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급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운영비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농림부에 제출

마. 사업검정 및 사업비 정산

- 농협중앙회장은 사업년도말을 기준으로 지급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정산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농림부에 제출

바. 기타사항

농작물재해보험 추진절차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여성정책담당관실(과장 박성자, 사무관 조용범)입니다.

1. 목적

- 여성농업인이 출산으로 영농을 일시 중단하게 될 경우 농가도우미가 영농을 대행토록 함으로써 영농중단방지를 통한 농업생산성제고 및 모성보호를 통한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도모

2. 시책 및 추진방향

- 출산농가의 신청에 의하여 농가도우미가 영농을 대신하고, 도우미 임금의 80%수준(30일간 648천원)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생산적 복지시책
- 농업생산성 제고 및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산적인 정책으로 발전·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
- 지원대상지역 : 특별시·광역시 및 도의 시·군·구
(2002년도에 163개 시·군에 대해 지원하던 것을 2003년도에는 특별시·광역시의 자치구까지 지원대상지역 확대)

3. 근거법령

- 농업·농촌기본법 제14조(여성농업인의 육성)
- 여성발전기본법 제18조(모성보호의 강화)

4. 연도별 지원실적 및 계획

		2001	2002	2003(예산안)
사업량	대상인원	1,760	3,200	3,200
	계	1,425	2,592	2,592
사업비 (백만원)	국고보조	570	1,037	1,037
	지방비	570	1,037	1,037
	자부담	285	518	518

5. 2003년도 사업시행요령

《사업내용》

가. 사업내용

(1) 지원대상 :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농업인

※ 임신 4개월(85일)이후에 발생한 유산·조산·사산의 경우도 출산에 포함

○ 농업인 : 농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① 1,000㎡이상의 농지를 경영 또는 경작하는 자

②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00만원 이상인 자

③ 1년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 적용범위 : 출산(예정)여성농업인이 경영 또는 경작하는 영농관련 작업에 한하며, 기타 가사일을 돌보는 작업 등은 제외

(2) 지원액

○ 농가도우미 지원액은 1일 지원기준단가 27,000원의 80%인 21,600원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국고 10,800원, 지방비 10,800원)

- 계약금액의 80%를 지원함을 원칙으로 함. 단, 1인당 지원액은 1일 21,600원, 30일 648,000원(30일×21,600원)을 초과할 수 없음

○ 도우미이용료(노임)는 농가와 도우미(작업자)간에 합의 결정하며, 1일 작업이 8시간 이상(휴식시간 제외)일 경우 1일 도우미이용료를 전액지원 하며 8시간 미만일 경우는 시간급으로 계산함

☞ 노임 정산방법

◆ 1일 노임을 30,000원 이상으로 계약한 경우에는 21,600원 지원

(1일 8시간이상 작업한 경우)

▶ 21,600원 지원(국고 10,800원, 지방비 10,800원), 자부담 8,400원

(1일 4시간 작업한 경우)

▶ 10,800원 지원(국고 5,400원, 지방비 5,400원), 자부담 2,700원

· 10,800원 = (21,600원÷8시간)×4시간

◆ 1일 노임을 27,000원 이상으로 계약한 경우에는 21,600원 지원

(1일 8시간이상 작업한 경우)

- ▶ 21,600원 지원(국고 10,800원, 지방비 10,800원), 자부담 5,400원

(1일 4시간 작업한 경우)

- ▶ 10,800원 지원(국고 5,400원, 지방비 5,400원), 자부담 2,700원
 - 10,800원 = (21,600원 ÷ 8시간) × 4시간

◆ 1일 노임을 20,000원 이상으로 계약한 경우에는 16,000원 지원

(1일 8시간이상 작업한 경우)

- ▶ 16,000원 지원(국고 10,800원, 지방비 10,800원), 자부담 4,000원

(1일 4시간 작업한 경우)

- ▶ 8,000원 지원(국고 5,400원, 지방비 5,400원), 자부담 2,000원
 - 8,000원 = (16,000원 ÷ 8시간) × 4시간

(3) 지원일수 한도 : 30일

- 30일 범위에서 출산여성농업인이 도우미를 이용한 일수(도우미가 실제 영농작업을 실시한 일수)에 대하여 지원

(4)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기준으로 출산전 90일부터 출산후 90일까지 180일 기간중 출산(예정)농가가 거주지 읍·면·동사무소(또는 시·군·구, 이하 같음)에 신청하여야 하며, 180일 기간 중에 도우미를 30일간 이용할 수 있음

나. 2003 사업비(예산내용)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사업량	사업비			
	지원대상	합계	국고보조	지방비	농가자부담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3,200명	2,592 (100%)	1,037 (40%)	1,037 (40%)	518 (20%)

《추진체계》

가. 사업주관기관

- 농림부 : 시행지침 발달, 시·도별 예산 및 자금교부, 홍보
- 시·도지사 : 시·군별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사업내용 홍보, 시·군 감독 및 사업 결과 정산 등
- 시장·군수 : 세부시행계획 수립 및 집행, 사업내용 홍보, 읍·면·동 감독 및 사업결과 정산 등
- 읍·면·동장(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이하같음) : 출산(예정)농가로부터 농가도우미 이용신청서 접수 및 지원대상 여부 확인, 농가도우미 지원금 청구서 접수 및 사실여부 확인, 시·군에 지원금 지급 요청 등

나. 사업담당부서

- 농림부 : 여성정책담당관실(☎ 02-2110-4123~4, FAX : 02-503-7295)
- 시·도 및 시·군 : 농정업무 담당부서(농정관련과)
- 읍·면·동사무소 : 농정업무담당부서

다. 사업시행절차

- 농가
 - 출산(예정) 여성농업인이 있는 농가에서 “농가도우미 이용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에 “농가도우미 이용계약서”(별지 제2호 서식)와 출생(예정)증명서를 첨부하여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제출
 - ※ 출생증명서 구비가 어려운 농가는 이장·통장의 확인서를 첨부하고, 읍·면·동사무소에 출생신고가 되어 있는 경우는 첨부서류 없이 읍·면·동사무소에서 주민등록 확인으로 같음
 - 농가도우미 이용 완료 후 “농가도우미 지원금 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에 “농가도우미 영농일지”(별지 제3호 서식)와 통장사본을 첨부하여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제출
 - ※ 도우미 이용기간 중 10일 간격으로 지원금 신청가능

○ 도우미

- 농가에서 도우미를 직접 지정하여 신청하거나, 읍·면·동사무소에 도우미 추천을 요청하여 이용할 수 있음
 - ※ 직계 존속·비속, 함께 동거하는 형제·자매 및 가족은 농가도우미로 지정·이용할 수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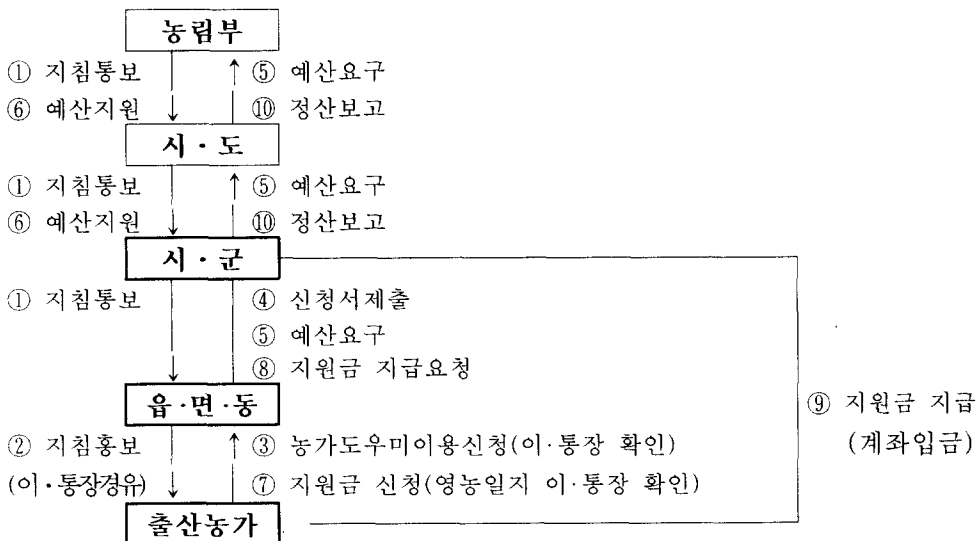
○ 읍·면·동장

- “농가도우미 이용신청서”를 접수하여 시·군에 제출
 - ※ 원본은 시·군에 제출, 사본은 읍·면·동에 보관
- “농가도우미 지원금 청구서”를 접수하여 시·군에 제출
 - ※ 원본은 시·군에 제출, 사본은 읍·면·동에 보관
- 읍·면·동 관계공무원이 월1회 이상 현지점검을 실시하고, 농가에 비치된 영농일지에 기록·유지하여야 함

○ 시장·군수

- 읍·면·동장으로부터 제출 받은 “농가도우미 이용신청서” 및 “농가도우미 지원금 청구서” 등 관련서류의 적정여부 및 사실여부를 확인 후 (전화 등) 지원금(국비+지방비)을 반드시 출산여성농업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 하여야 함

○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시행절차도



라. 도우미 등록관리

- 시장·군수 또는 읍·면·동장은 농가도우미로 희망하는 자를 등록대장에 관리하고, 출산농가의 요청이 있을 때 농가도우미 지원
 - 도우미 등록기준은 시·군 또는 읍·면·동에서 자체 설정
 - 시·군 또는 읍·면·동에 농가도우미로 등록되지 않은 사람도 출산농가가 도우미를 직접지정해서 농가도우미로 이용할 수 있음

마. 사업비 집행 및 정산

(1) 사업비 신청

- 읍·면·동장 : 농가도우미 이용수요(인원수 및 이용일수)를 파악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
 - 1분기(12.15), 2분기(3.15), 3분기(6.15), 4분기(9.15)
- 시장·군수 : 신청내역을 집계하여 시·도지사에게 사업비배정 요청
 - 1분기(12.20), 2분기(3.20), 3분기(6.20), 4분기(9.20)
- 시·도지사 : 시·군 신청내역을 집계하여 농림부에 사업비 신청
 - 1분기(12.25), 2분기(3.25), 3분기(6.25), 4분기(9.25)
- 농림부 : 각 시·도의 사업비 신청에 따라 예산 및 자금 배정

(2) 사업비 집행

- 도우미 이용농가는 농가도우미 지원금 청구서(농가도우미 영농일지 첨부)를 읍·면·동장에게 제출
 - 지원금신청시 영농일지에 이장·통장의 확인을 받아 제출
- 읍·면·동장은 농가에서 제출한 청구서의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원본)하여 농가도우미 이용료 지급을 요청
(지원금 지급요청시 농가별 사업완료보고서 함께 제출 : 서식 ⑤)
 - 읍·면·동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농가에 비치된 “농가도우미 영농일지”를 월1회 이상 현지 점검하여야 함
- 시장·군수는 읍·면·동장이 제출한 관련서류를 확인 후 도우미이용 농가의 통장(출산여성농업인 명의)에 지원금(국고+지방비)을 입금하고 읍·면·동장에게 통보, 읍·면·동장은 해당 농가에 통보함

(3) 계약의 무효·위반·변경 등

- 농가도우미 이용신청서·이용계약서 및 도우미의 영농일지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는 **지원금 전액 환수**
- 농가도우미 이용과 관련 재산상 또는 신체상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손해를 유발시킨 농가나 도우미가 **책임정도에 따라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4) 사업비 정산

- 시장·군수는 익년도 2월 20일까지 사업비 집행실적을 정산하여 시·도지사에게 보고(별지 제6호 서식)
- 시·도시사는 익년도 2월 28일까지 농림부에 보고(별지 제6호 서식)
- 국고잔액 반납 : 정산보고 후 영수증을 첨부하여 결과 보고
 - 회계 및 소관 : 농림부 일반회계 세입징수관
 - 과목 : 경상이전수입(12-59-591,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반납금)

농가도우미 이용신청서

신청인 (여성농업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		출산일 (예정일)	월 일
	주소							전화	
농가도우미 (영농작업자)	성명		연령		성별	남, 여		신청인과의 관계	
	주소							전화	
영농작업기간 및 작업내용	기간	2003년 월 일 ~ 월 일						계약일수	일간
	내용								
<p>신청인(확인자)은 상기내용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기재내용이 허위인 경우 지원금 회수 등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2003년 월 일</p> <p>신청인 : 출산(예정)여성농업인 성명 : (인)</p> <p>확인자 : 이·통장 성명 : (인)</p> <p>첨부 : 1. 농가도우미 이용계약서 1부.</p> <p style="padding-left: 40px;">2. 출산(예정)증빙서 1부(출생신고자는 증빙서 불필요, 출생미신고자는 출산 또는 출산예정 증거서류 제출)</p> <p style="text-align: right; font-weight: bold;">읍·면·동장 귀하</p>									
(확 인 란)									
이용 영농분야		읍·면·동 담당공무원(직 성명 인)							
논벼, 과수, 채소, 특용, 화훼, 전작, 축산, 기타		출산(예정) 확인	농경지 경영 및 경작(평)확인						
<p>위 신청자는 영농에 종사하는 출산(예정)여성농업인임을 확인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2003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 font-weight: bold;">읍·면·동장 (직인)</p>									

[별지 제2호 서식]

농가도우미 이용계약서

출산여성농업인(이하“갑”이라 함)과 영농을 대신해 주는 농가도우미(이하“을”이라 함) 간에 농가도우미 이용계약을 아래와 같이 체결한다

제1조(적용범위 및 영농작업시간) 이 계약은 “갑”의 영농과 관련된 작업에 적용하며, 1일 작업시간이 8시간 이상(휴식시간 제외) 작업했을 경우에만 1일로 인정된다.
(8시간 미만은 시간급으로 정산)

제2조(영농작업기간) “을”의 영농작업은 2003년 월 일부터 월 일 기간 중에 일간 실시한다.

제3조(도우미 이용료) 농가도우미 이용료(노임)는 “갑”과 “을”의 합의에 따라 1일 원으로 하고, “갑”은 영농작업 일수에 따라 농가도우미 이용료(노임)전액을 “을”에게 지급한다.

제4조(지원금 청구) “갑”은 농가도우미의 영농작업이 끝난 후 농가도우미 지원금 청구서에 영농일지를 첨부하여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손해비용 부담) “갑” 또는 “을”의 잘못으로 손해비용이 발생한 경우에는 “갑” 또는 “을”은 책임정도에 따라 손해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6조(계약유효기간) 본 계약은 도우미이용료(노임)의 지급이 완료되는 날까지 유효한다.

제7조(계약 이외의 사항) 본 계약 이외의 여타 사항은 관련 법률에 의한다

제8조(계약서 제출) “갑”은 본 계약서와 농가도우미 이용신청서를 작성하여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일 : 2003년 월 일

출산여성농업인(갑) : (인)

농가도우미(작업자)(을) : (인)

사 업 완 료 보 고 서

- 사업명 : 2003년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 사업비 : 원(지원금 원, 농가자부담 원)
- 신청여성농업인
 - 성명 :
 - 주소 :
 - 전화 :
- 출산(예정)일 : 2003년 월 일
- 도우미이용기간 : 2003년 월 일 ~ 2003년 월 일
- 이용일수 : 일
- 내 용 : 지원금청구서(영농일지 첨부) 참조
- 이용료 청구액 : 원(일 × 원)

상기 출산(예정)농가의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 붙임 : 1. 농가도우미 지원금 청구서(원본) 1부.
2. 농가도우미 영농일지(원본) 1부.

2003년 월 일

읍·면·동장 (직인)

시장·군수 귀하

농가도우미 지원사업결과 보고

(단위 : 원)

시·군별		예산액(A)		교부결정액(B)		정산액(C)		정산잔액(B-C)	
		이 용 농가수	금액	이 용 농가수	금액	이 용 농가수	금액	이 용 농가수	금액
	국 비								
	지방비								
	자부담								
	계								
	국 비								
	지방비								
	자부담								
	계								
	국 비								
	지방비								
	자부담								
	계								
	국 비								
	지방비								
	자부담								
	계								
합계	국 비								
	지방비								
	자부담								
	계								

V. 소득원개발

① 농촌관광휴양자원개발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농촌진흥과(과장 조무희, 사무관 박병태)입니다.

1. 목 적

농촌지역의 풍부한 관광·휴양자원을 농업과 연계하여 보전·개발하므로써 도·농교류를 촉진하고 농촌소득증대 및 지역개발 촉진 도모

2. 시책 및 추진방향

- 농촌지역의 자연환경을 지역특성에 맞게 농업활동과 연계·개발하여 자연환경의 보전과 지역발전을 도모
- 농업과 연계된 농촌관광휴양자원의 건전한 개발·운영으로 도·농교류의 촉진과 농촌지역 소득증대에 기여
- 도시민이 농업·농촌을 이해할 수 있는 농촌사회와 농업생산의 산교육장으로 조성·활용
- 지역여건에 맞는 사업유형의 다양화
 - 관광농원 : 농원으로서의 특성을 위해 일정규모이상의 작목입식을 하여 자연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건전하게 개발·운영
 - 농어촌관광휴양단지 : 지역개발계획과 연계될수 있도록 하고, 사전 공청회 등을 거쳐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
 - 농촌민박 : 지역관광지와 자연환경을 이용한 전원형 휴양숙박시설 조성·운영
 - 주말농원 : 비영리목적의 영농활동을 위한 주말·체험영농장 운영

3. 근거법령

- 농어촌정비법 제66조, 농어촌관광휴양의 지원·육성
- 농어촌정비법 제67조, 제67조의2, 농어촌관광휴양단지 및 관광농원의 개발
- 농어촌정비법시행령 제63조, 제63조의2,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지정·개발 및 농어촌휴양지사업계획 수립및승인

4. 연도별 지원계획

- 관광농원·농촌민박사업은 2003년부터 “농업종합자금”으로 지원
- 농어촌관광휴양단지는 예산지원을 희망하는 경우, 예산(국고용자)확보 지원

<지원실적>

(단위 : 개소, 백만원)

구 분	'01까지	'02예산	'03예산안	비 고
○ 사 업 량	637	9	-	-
- 관광농원	353	-		
- 휴양단지	9	-		
- 민박마을	275	9		
○ 사 업 비	166,366	900	-	-
- 관광농원	123,380	-		
- 휴양단지	16,600	-		
- 민박마을	26,386	900		

5. 2003년도 사업시행요령

<사업개요>

가. 사업내용

(1) 배경

- 농촌지역의 자연경관을 이용, 국민의 여가수요를 농촌공간으로 유치함으로써 농촌지역의 개발과 농업인의 소득증대 도모

(2) 사업대상자

- 관광농원사업 : 농업인, 농업기반공사, 농업협동조합, 산림조합,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어촌계, 영어조합법인
 - ※ 공동참여방법 : 농원구성·운영 및 작목입식, 부대·편의시설의 설치·운영, 지역특산품 등의 판매, 현물 출자등
- 농어촌관광휴양단지사업 : 제한 없음
- 농촌민박사업 : 기존의 주택을 개·보수 또는 증·개축하여 민박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 주말농원사업 : 제한 없음

(3) 지원규모 및 조건

구 분	관광농원·농촌민박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지원자금	○ 관광농원 : 농업종합자금의 시설자금 또는 개보수자금 용자 ○ 농촌민박 : 농업종합자금의 개보수자금 용자	○ 농특회계 국비용자
용자지원 대 상 자	○ “농업종합자금지원” 편 참조	○ 농업인, 시장·군수, 농기공, 농협,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용자한도	상 동	○ 총사업비의 100%이내로서 지구당 2,500백만원이내
용자조건	상 동	○ 연리 5%, 3년거치 5년균분상환
대상시설	상 동	○ 지정된 휴양단지내의 농업부대시설, 기반조성시설 및 편의시설등 설치

※ 주말농원사업은 전액 자부담으로 시행

(4) 구비서류

- 사업승인 신청시
 - 관광농원·농어촌관광휴양단지사업 :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63조의2 규정에 의한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 승인신청서류 및 사업승인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 농업종합자금 신청시
 - 관광농원·농어촌관광휴양단지사업 : “농업종합자금지원” 편 참조

(5) 세부사업내용

(가) 관광농원사업

- 개발유형 : 사업지역의 제반여건을 감안하여 사업자 자율결정
 - 별지 표1의 예시(유형 및 시설)내용 참조
- 사업규모 및 시설기준
 - 사업규모 : 66,000㎡미만
 - 기본시설 : 사업자가 반드시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
 - 영농체험시설(농장면적) : 작목입식면적등이 2,000㎡이상으로서 농원 면적의 20%이상 조성

※ 대규모 양돈장등 공해유발사업은 제외

- 자율시설 : 농어촌정비법 제66조제3항 규정에 의한 농특산물판매시설, 운동시설, 휴양시설, 음식제공시설, 기타시설등으로 사업자가 설치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시설로서 경영안정화를 위해 시설설치는 적정규모로 설치
- 숙박시설은 러브호텔의 형태로 설치되지 않도록 함
- 편의시설의 설치는 미풍양속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시장·군수가 제반여건을 감안하여 허용여부를 결정하되, 관광농원 사업취지에서 벗어나는 유흥·위락시설 설치의 억제, 특히 유흥주점업, 단란주점업은 영업불가

(나) 농어촌관광휴양단지사업

○ 개발방법 및 유형

- 지역개발계획 및 지역문화등과 연계·조화되게 개발
- 농촌지역의 자연경관을 보전·활용하여 지역실정에 맞도록 다양하게 개발
 - 자연학습형, 청소년심신수련형, 주말휴양형등
 - ※ 농어촌정비법령에서 규정하는 기본시설은 반드시 설치·운영하여 일반관광지와 구분될수 있도록 개발

○ 사업규모 및 시설기준

- 사업규모 : 30,000㎡ ~ 100,000㎡미만
- 기반시설 : 단지조성, 진입로, 주차장, 상·하수도, 전기·통신시설등
- 기본시설 : 사업자가 반드시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
 - 농림어업전시관(60㎡이상), 학습관(60㎡이상)
- 자율시설 : 농어촌정비법 제66조제3항 규정에 의한 지역특산물판매장, 체육시설, 휴양시설, 기타시설등으로 사업자가 설치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
 - 편의시설 : 숙박시설, 휴게소, 식당, 예식장등
 - 체육·휴양시설 : 놀이시설, 원두막, 낚시터, 수영장, 눈썰매장, 미니골프 연습장, 야영장, 자동차캠핑장등
 - 교양시설 : 농업과학관, 농기구전시관, 영농체험학습관등

(다) 농촌민박사업

○ 개발방법

- 기존 주택을 민박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개·보수 또는 증·개축

- 시설기준
 - 이용객의 숙박에 부수되는 취사시설과 이용객의 위생과 직접 관련된 화장실, 욕실(샤워장 포함)등 시설등 구비

(라) 주말농원사업

- 농어촌 및 도시지역에서 영리목적이 아닌 주말·체험영농을 목적으로 이용객에게 농지의 임대 또는 용역을 제공

나. 2003년도 사업비(예산안) 내용

(단위 : 개소, 백만원)

내 용 별	사업량	사 업 비					
		사업비 합계	예산액(농특회계)			지방비	자부담
			계	보조	융자		
농촌관광휴양단지	-	-	-	-	-	-	-

※ 관광농원, 농촌민박사업은 2003년부터 “농업종합자금”으로 지원

<추진 체계>

가. 사업주관기관 : 시장·군수

나. 사업담당부서

- 농림부 : 농촌개발국 농촌진흥과(전화 : 02-500-1964, 1966)
- 시·도 : 농정(농정산림, 농림수산)국 농업정책(농정유통, 농업특작)과
- 시·군 자치구 : 산업(농정)과, 농협(군지부 또는 단위농협)

다. 추진절차 (붙임 표2 사업추진체계도 참조)

- 농림부 : 기본계획수립 시달 및 예산내시
- 사업자 : 사업유형에 따라 개발·경영·양수자가 다름
 - 관광농원사업 : 농업인, 농업기반공사, 농업협동조합, 산림조합,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어촌계, 영어조합법인
 - 농어촌관광휴양단지사업 : 제한없음
 - ※ 사업시행예정자는 사업계획승인신청서를 시장·군수에게 제출
 - 농촌민박사업 : 제한없음 (관할 농협에 농업종합자금 융자 신청)
- 시·군 : 사업계획심의(농정심의회 심의 및 지구지정) 및 그내용을 고시

라. 사업시행

(1) 농촌관광휴양지개발 사업계획승인

- 관광농원·농어촌관광휴양단지등의 “농어촌관광휴양지”를 개발하고자 할 때에는 사업비지원 여부와 관계없이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사업시행절차를 거쳐야 함
- 농어촌관광휴양단지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사업시행예정자가 작성한 사업계획개요 및 주요내용에 대하여 시군 농정심의회 심의를 거쳐야 함 (농어촌관광휴양단지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음)
 - 시장·군수가 농어촌관광휴양단지를 지정하거나 사업계획을 승인(변경승인 포함)한 때에는 농어촌정비법시행령 제6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함(시장·군수가 직접 개발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음)
- 관광농원·농어촌관광휴양단지를 개발하고자 할 때에는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군수에게 승인신청을 하여야 함
 - 사업시행예정자는 사업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농어촌정비법 제86조 규정에 따라 지역주민 및 관계전문가(학계, 협회, 전문연구기관등)의 의견을 들어 이를 사업계획에 반영하여야 함
 - 사업계획에는 연차별·공종별 공정계획 및 자금집행계획을 포함
 - 관광농원사업의 경우는 일정구역 범위내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사업구역을 분산 계획한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사업계획서를 보완·보정하게 하여야 함
- 시장·군수가 농어촌관광휴양지개발 사업계획을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농어촌정비법 제87조등의 규정에 따라 미리 관계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관계기관의 협의 의견을 반영하여 승인하여야 함
 - 사업계획의 보완·변경 또는 조건부 승인등

(2) 사업계획변경

(가) 공통사항

- 사업계획의 변경은 사업목적 달성 또는 현지여건 변화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 경우외에는 가급적 억제

-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63조의2제2항 각호 1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농어촌정비법 제67조 또는 제67조의2 규정에 따라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함
 - 다만, 다음사항에 대하여는 시장·군수에게 사전 신고후 실시 가능
 - 입식작목 종류의 일부변경등 경미한 변경
 - 건축법 등 관련법률에 의한 신고대상 범위내에서의 사업계획 변경
- 시장·군수는 사업시행자의 사업계획변경신청에 대하여 사전 관계기관의 협의를 거쳐 승인여부를 결정하여야 함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농지법등 제반 관련법령에 의한 행위 제한여부등 검토
 - ※ 사업계획변경내용이 국토이용계획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는 관련 법령에 따라 토지이용계획 변경후 가능

(나) 개별사항

- 관광농원사업
 - 시장·군수는 면적변경이 수반되는 사업계획의 변경에 대하여는 농원 면적의 20%이상 농장조성여부를 확인한 후 사업계획변경여부 결정
 - 사업자의 경영상태에 비해 과다한 투자가 되지 않도록 사전 지도
 - ※ 기성농원의 경우에도 시설규모 등이 현행 법령 및 지침에 부합되도록 유도
 - 또한, 숙박·식당등 위락시설의 확대변경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하여 최소한도 범위내에서 변경 승인
 - 시장·군수는 관광농원개발사업 시행중에 경영사정 등으로 인하여 사업 토지 및 시설등이 경매처분된 사업장에 대하여는 현지 청문조사 등을 실시한 후 당해 사업시행자·사업계획의 변경 및 사업계획의 승인취소 등을 검토하여야 함

(3) 사업추진

(가) 공통사항

-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 시행자는 시장·군수로부터 사업계획승인을 얻은후 정당한 사유없이 2년이상 대지의 조성 및 시설물의 설치등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착수 후 1년이상 공사를 중단한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한 후 사업승인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 사업시행자는 당해연도 예산에 맞는 공정계획을 작성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예산액 또는 사업계획변경에 따라 공정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음
- 공정계획은 인력·자재 수급계획뿐만아니라 기상여건 및 각종 인·허가 절차 등을 감안하여 무리한 공기단축으로 사업이 부실화되지 않도록 수립하여야 함
- 시장·군수는 공정계획에 따라 원활하게 사업이 추진되도록 현지 확인하여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
- 사업시행자는 사업이 완료되면 시장·군수에게 준공검사를 신청하여야 함 (별지 제6호, 제7호 서식)
- 시장·군수는 농어촌정비법 제94조 규정에 따라 준공검사를 실시토록 하고, 준공검사결과를 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함
- 농어촌관광휴양지개발 사업시행자 등이 사업을 경영하고자 할 때에는 사업준공후 시장·군수에게 사업자지정 신청을 하여야 함(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별지 제50호 서식)
 - 사업 준공검사와 농어촌관광휴양지 사업자지정을 동시에 신청 가능
- 시장·군수가 농어촌관광휴양지 사업자지정을 한때에는 사업자지정서를 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함(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별지 제51호 서식)

(나) 개별사항

- 관광농원사업
 - 식당·숙박시설등 대중이용시설에 대한 지도·점검 및 준공검사를 철저히 하여 관광농원으로서의 특성유지와 시설 및 위생관련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작목입식 및 관리실태에 대한 지도·점검 실시
 - 건축분야등에 대하여는 관계부서와 긴밀히 협조하여 지도·점검 실시
- 농어촌관광휴양단지사업
 - 시장·군수, 농업기반공사 등 공공기관이 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공사 발주 및 사업시행은 공공사업에 준하여 추진하여야 함
 - 용지매수 및 보상
 - 용지매수 및 보상은 지가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공공용지의취득 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등 관계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실시하되 협의매수를 원칙으로 함

- 용지매수보상비는 공사비에 우선하여 가능한한 전액보상하고, 동일인 토지에 관한 보상은 일괄보상을 원칙으로 함.
- 조사설계 및 공사감리
 - 사업시행자는 조사설계 및 용지매수가 완료된 후 사업을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조사설계 및 공사감리는 농어촌정비법 제97조에 의거 농업기반공사 등에 위탁 시행가능
 - 조사설계 및 공사감리를 위탁할 경우의 위탁요율기준은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49조(별표5)를 적용
- 지적공부정리
 - 사업시행자는 공사가 완료되면 조속한 시일내에 확정측량을 필한 후 지적공부를 정리
- 농촌민박사업
 - 사업추진은 예산이 지원된 당해년도말까지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사업비지원은 민박을 위한 농가주택의 개·보수 또는 증·개축(기본 시설인 취사시설 포함)에 한하여 지원

마. 사업비 지원

(1) 예산의 지원

- 관광농원·농촌민박사업 : 농림사업시행지침서 제4권 “40. 농업종합자금 지원(자율)”편에 의하여 농업종합자금(융자)을 지원할 수 있음
- 농어촌관광휴양단지사업 : 예산지원을 희망하는 농업인 등에 한하여 예산(국비 융자)을 확보하여 지원

(2) 자금의 운용관리

- 융자금은 사업계획에 의한 사업목적외 사용은 일제 불허함
- 기타 융자에 관한 사항은 농협중앙회 여신관리규정을 준용

<행정 사항>

가. 사업자 준수사항

(1) 공통사항

- 사업자는 농촌관광휴양사업 취지에 부합되고 미풍양속을 저해하지 않도록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함
-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불건전·퇴폐운영 엄금

- 사업자는 시설 및 위생안전에 주의·관리를 철저히 하여 안전사고 등의 방지에 노력하여야 함
 - 공중위생관리법 및 식품위생법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시설관리 및 위생관리 철저
- 사업자능력을 벗어난 대규모, 호화시설등에 과도한 투자는 억제하여 내실경영 적극 도모
- 사업자는 시장·군수등 관계 행정기관의 시설·운영 개선명령을 준수하여야 함

(2) 개별사항

- 관광농원사업의 양도·양수등
 - 관광농원을 양도·양수할 수 있는자는 농어촌정비법 제67조의2 내지 제70조 및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농업인등에 한함
 - 관광농원을 양수한 자는 관광농원에 대한 권리·의무를 승계

나. 사후관리

(1) 공통사항

(가) 사업자 및 사업장에 대한 정기적인 지도·점검 실시

- 관리주체 : 시장·군수
- 점검자 점검내용
 - 점검자 : 도지사, 시장·군수
 - 점검시기 : 도는 년 1회이상, 시·군은 반기 1회 이상
 - 점검내용
 - 공정계획등 사업계획에 의한 사업추진 여부
 - 작목입식, 부대편의시설 등의 조성·운영 실태
 - 시설 및 위생안전관리 실태등
- 점검결과 조치
 - 농어촌정비법, 공중위생관리법, 식품위생법등 제반관련법령에 따른 시정조치 및 사업계획승인 취소등 조치
 - 시장·군수는 사업계획승인 취소시 농어촌정비법 제87조제1항 내지 제3항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 및 사업자 지정과 관련하여 협의한 관계 기관에 승인취소 내용을 통보하여야 하며, 농업종합자금(융자)을 지원 받은 사업자에 대하여는 관할 농업협동조합에 통보하여야 함

(나) 사업시행단계(개발단계)에서의 위법·부당행위에 대한 조치

- 시장·군수는 사업이 적정하게 시행되도록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사전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여야 함
- 시장·군수는 사업시행자가 다음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농어촌정비법 제98조에 따라 지정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공사의 중지등 엄중하게 조치
 - 농어촌정비법 또는 동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경우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은 경우
 - 사정의 변경으로 관광농원개발사업의 계속적인 시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사업운영단계에서의 위법·부당행위에 따른 조치

- 시장·군수는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이 미풍양속을 저해하지 않게 건전하게 운영되도록 사업시행자 및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여야 함
- 시장·군수는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44조의2 및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취소등의 행정처분 및 과태료를 부과하여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의 건실화 도모
 - 정당한 사유없이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을 1년이상 사업을 경영하지 아니한 때
 - 관광농원에 입식작목의 경작을 1년이상 하지 아니한 때
 - 기타 농어촌정비법 또는 동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2) 개별사항

(가) 관광농원사업

- 관광농원의 시설 및 위생관리실태에 대하여 공중위생관리법, 식품위생법령등 개별법령에 따라 지도·단속 및 행정조치 강화
- 관광농원사업자 변경시에는 권리·의무 승계에 관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 관광농원사업자는 필요시 경영능력이 우수한 사람을 영입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소득증대는 농어민에게 귀착되도록 하여야 함

○ 기타 사업장의 관리등

- 시장·군수는 관광농원중 청소년수련활동에 이용되는 농원에 대하여는 수련활동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 청소년기본법 제36조 규정에 따른 청소년이용시설로 지정이 되도록 적극 관리
- 양도·양수 및 임대 관광농원에 대하여는 농어촌정비법령에서 규정한 적격 자격자여부를 직접 확인하여 미비사항에 대하여는 시정등 조치
- 관광농원 지도·관리카드를 정확히 작성하여 시·군에 비치 활용하고 정기적으로 지도
- 지방자치단체는 관광농원이 휴양농원, 체험농원등으로 잘 운영되도록 측면 지원
 - 청소년등이 심고, 기르고, 수확하는 프로그램
 - 인근의 유적지, 문화재등과 연계하여 상품개발등
- 농산물판매시설은 농원인근지역의 농산물출하시기가 아닌 비수기에는 타품목판매, 전시장등 타용도로 활용 가능

(나) 농어촌관광휴양단지사업

- 시장·군수는 농어촌관광휴양단지사업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행정지도 및 관리를 하여야 함
- 실수요자에게 분양된 편의시설은 실수요자 명의로 등기 이전
 - 시설 및 위생관리 실태에 대한 철저한 지도·단속

(다) 농촌민박사업

- 시장·군수는 농촌민박사업이 농어촌관광휴양사업의 취지에 맞는 적절한 시설과 건전한 운영이 되도록 관리 강화

다. 자부담개발사업에 대한 적용

- 정부의 자금지원을 필요로 하지않고 사업비전액을 자부담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사업참여자격 및 지구지정등의 사업절차는 농어촌정비법 및 제반 관련법규정에 따라야 함

라. 보고

- 도지사는 매년 12월말현재 농촌관광휴양사업(관광농원, 농어촌관광휴양단지, 농촌민박) 추진실적(운영실적 포함)보고서(별지 제8-1, -2, -3, -4, -5, -6)를 취합하여 다음해 1.25일까지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부진지구에 대하여는 그사유와 대책을 구체적으로 보고
- 도지사는 당해년도 농어촌관광휴양단지사업의 예산지원에 따른 사업계획서(별지 제1호, 제2호 및 제9호 서식)를 시장·군수로부터 받아 3월20일까지 농림부장관에게 보고
- 도지사는 매년 12월말현재 농촌관광휴양자원개발사업에 대한 연도말 검정결과를 취합하여 “농촌개발사업실행검정 및 정산요령”에 따라 다음해 1.30일까지 농림부장관에게 보고(별지 제10호 서식)

6. 2004년도 사업신청 및 대상자 선정 안내

가. 사업신청서 제출기관 : 시·군(읍·면), 농업협동조합

나. 신청자격 : 본사업시행지침 “5. 사업시행요령 <사업개요> 가. 사업내용의 지원대상자”의 사업유형별 자격요건을 갖춘자

다. 신청절차

-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어촌관광휴양사업의 사업별 신청자격을 갖춘자가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사업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 관광농원·농촌민박사업은 용자대출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농업종합자금 대출을 담당하는 농업협동조합에 제출
- 농어촌관광휴양단지사업은 본사업시행지침이 정하는 사업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읍·면장을 거쳐 시·군에 제출

라. 구비서류 : 사업지원신청서(별지 제9호 서식)

마. 농어촌관광휴양단지사업 지원대상자 선정

(1) 선정기준

- 농업진흥지역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자연환경보전법, 산림법, 자연공원법 등 제반 관계법령에 의한 제한을 받지 않거나 인·허가 등에 문제가 없는 지역

- 농어촌관광휴양단지로 지정할 수 있는 특성을 갖춘 지역으로서 지역 주민의 호응이 높고 시장·군수가 지역개발과 지역농업인 소득증대 등을 위하여 농어촌관광휴양단지로 개발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지역
- 자연경관이 아름답고 주변에 역사적 유물·유적·문화재등이 있는 지역
- 토산품·민예품등 지역특산물의 생산과 판매가 용이한 지역

(2) 우선순위

- 상기 선정기준에 적합한 지역으로서
 - 농가참여호수 및 예상취업자수가 많은 지구
 - 지역농특산물의 판매액이 많아 농업소득증대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구
 - 주변여건이 좋아 도·농교류의 촉진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구
- 사업대상자 확정후 사업을 포기한 경우에는 다음연도 사업대상자 선정시 가장 낮은 순위 부여

(3) 선정절차

- 시장·군수는 “다”, “라”에 따라 제출된 사업지원 신청내용에 대해 현지 확인등을 거쳐 사업타당성등에 대하여 사전에 면밀히 검토
- 시장·군수는 농정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을 결정

바. 기타사항

- 기관별 보고일정

구 분	기 관 별	기 한	양 식
1. 농촌관광휴양자원개발 사업시행 지침시달	농림부→도	12월	
2.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사업계획 승인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사업자→시·군	매년1.1~2.21	별지 제1호, 제2호, 제9호 서식
3.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사업계획서	시·군→도	3.10	상 동
	도→농림부	3.20	
4. 자부담 개발 사업계획(지구지정) 보고	도→농림부	6.30	상 동
5. 농촌관광휴양자원개발 사업추진 실적(운영실적) 보고	시·군→도	1.15	별지 제8-1, -2, -3, -4, -5, -6호 서식
	도→농림부	1.25	

- 농어촌관광휴양지(관광농원·농어촌관광휴양단지) 개발추진시 사업자와 시장·군수가 참고할 서식

구 분	작성자	제출처 (교부처)	양 식
1. 농어촌관광휴양지 개발사업계획 승인 신청서	사업자	시·군	별지 제1호 서식
2. 농어촌관광휴양지 개발사업계획서	사업자	시·군	별지 제2호 서식
3. 농어촌관광휴양지 관리·운영 계획서	사업자	시·군	별지 제3호 서식
4. 지구지정의견서	시·군	시·군 농정심의회	별지 제4호 서식
5. 농어촌관광휴양지 개발사업계획 승인서	시·군	사업자	별지 제5호 서식
6. 농어촌관광휴양지 개발사업 준공검사 신청서	사업자	시·군	별지 제6호, 제7호 서식
7. 농어촌관광휴양지 사업자지정(변경) 신청서	사업자	시·군	시행규칙 별지 제50호 서식
8. 농어촌관광휴양지 사업자지정증서	시·군	사업자	시행규칙 별지 제51호 서식

[표1] 관광농원개발사업의 유형 및 시설(예시)

1. 사업의 유형

가. 기능별 유형

유형	조성예시
자연학습형	기본시설+ 동·식물원, 민속자료관, 식당, 캠프장, 운동장, 자연학습관찰장, 놀이터 등
주말농원형	기본시설+ 주말농원, 농기구창고, 숙박시설, 식당, 특산품판매장, 낚시터, 놀이터, 야영장 등
심신수련형	기본시설+야영장, 민속자료관, 운동장, 수영장, 기타
농촌휴양형	기본시설+숙박시설, 식당, 야영장, 휴게소, 특산품판매장, 기타
효도농원형	농장, 부속주택, 농업부대시설, 가공시설 등

※ 기본시설 : 일정규모이상의 특색있는 농장(과수원, 초지, 특수작물재배지 등)

나. 운영형태별 유형

유형	운영형태
농산물채취형	농가가 재배한 농작물을 내방객이 직접 채취토록 운영 · 과일따기, 감자캐기, 밤줍기등
생산수단대여형	농산물생산에 보람을 느낄수 있도록 농장을 일정하게 구획하여 그 토지와 작물(축사, 가축등 포함), 농기구등의 생산수단을 제공
장소 제공형	농장, 과수원, 화원등을 개방하여 감상, 견학토록 하고, 레크레이션시설 등을 설치, 휴양을 위한 장소로 제공

※ 효도농원 : 은퇴, 귀농인을 대상으로 관광농원내 시설등을 대여 또는 이용토록 하게 하거나 영농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

2. 관광농원지구내 설치하는 시설범위(예)

구 분		시 설 명 (작목명)
농 장 (작목입식)	작 물	식량작물, 채소, 특용작물, 약용작물, 과수화훼, 기타작물
	임 산 물	유실수(밤나무등), 버섯(단, 자연림은 제외)
	축 산 물	초지, 조류, 가축(조류, 기축을 사육장에서 관상용으로 사육의 경우)
	수 산 물	어류(양어장등 생산시설에서 양식의 경우)
	농 수 산 생산시설	축사, 양어장, 하우스시설, 분재원, 조류·가축사육장 등
시 설 물	농 업 시 설	저장고, 농업창고, 집하장 등
	농특산물판매시설	농특산물판매장 등
	기 반 시 설	관리사무소, 상·하수도, 전기·통신, 관·배수시설, 오물처리장 등
	숙 박 시 설	농원이용객을 위한 숙소, 민박, 야영장등
	휴양·편의시설	식당, 휴게소, 매점, 휴식시설, 예식장, 목욕탕(일반목욕탕에한함), 건전오락실, 공중화장실, 잔디광장, 낚시터, 원두막 등(단란주점,유홍주점업은 영업불가)
	운 동 시 설	수영장, 테니스장, 골프연습장, 체력단련장, 롤러스케이트장, 탁구장, 볼링장, 썰매장, 운동장, 어린이놀이터 등
	교 양 시 설	영농체험학습관, 농업전시관 등
	기타시설 및 녹지	자연조경지, 조경시설지 등

- 주) 1. 숙박시설중 민박은 농어촌정비법 및 동법시행규칙 규정에 의한 민박개념임.
숙박시설은 러브호텔의 형태로 설치되지 않도록 함
2. 편의시설중 예식장, 건전오락시설 및 목욕탕시설은 미풍양속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시장·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허용

[표2] 사업추진체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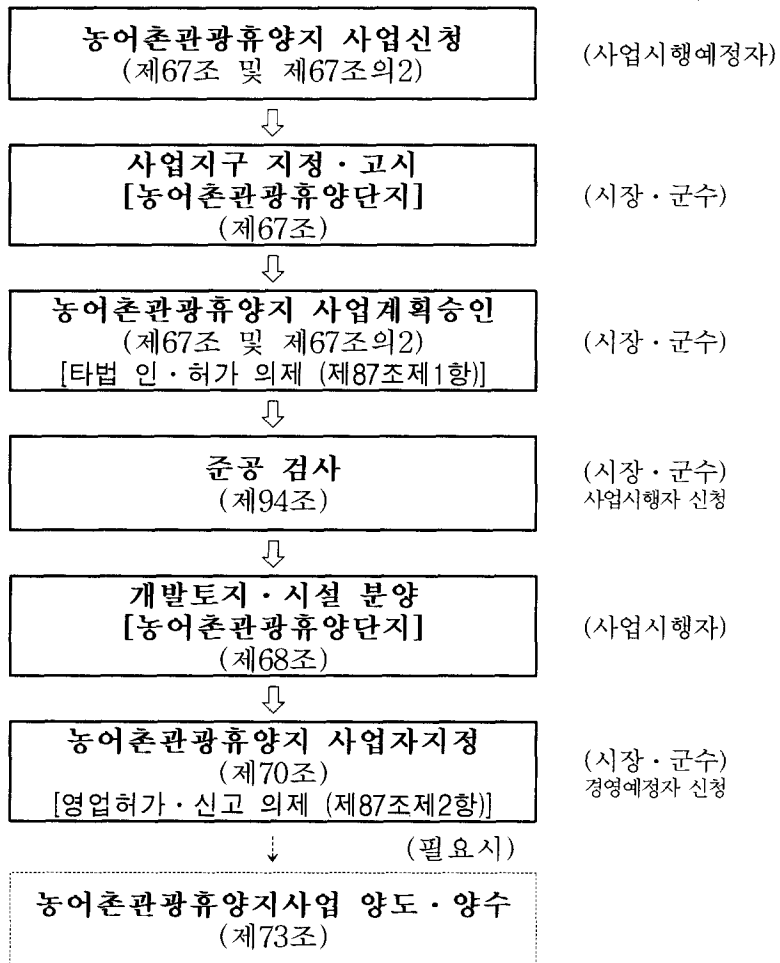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 추진체계

[농어촌정비법]

□ 대상사업 : 관광농원 · 농어촌관광휴양단지

□ 사업시행자

- 관광농원 : 농림어업인, 농업기반공사,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어촌계, 영어조합법인
- 농어촌관광휴양단지 : 제한 없음



[별지 제1호 서식]

농어촌관광휴양지 [<input type="checkbox"/> 관광농원 <input type="checkbox"/> 농어촌관광휴양단지] 개발 사업계획승인신청서					
사 업 시행자	성 명 (명칭)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농어촌관광 휴양지 명칭					
위 치					
사 업 규 모		㎡ (답 전 과 대지 기타)			
사 업 기 간		착공예정일	. . .	준공예정일	. . .
사 업 비		백만원 (용자 , 지방비 , 자부담 , 기타)			
농어촌정비법 제67조, 제67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63조의2 규정에 따라 농어촌 관광휴양지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합니다. <div style="text-align: right;"> 200 년 월 일 사업자(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div>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10px;">시장·군수 귀하</p>					
첨부서류 : 1. 농촌관광휴양지 시설물 등 조성계획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2. 지번·지목 및 지적이 포함된 토지소유명세서 3. 시설물 배치상황등이 포함된 조감도 4. 휴양지 주변의 관광자원현황과 도로등 교통여건 5. 작목별, 시설별 사업비 조달계획 6. 농어촌관광휴양지의 분양·운영계획 7. 농수산물·민예품·전통음식·토산품 등의 판매계획 8. 변경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 변경사유서					

[별지 제2호 서식]

농어촌관광휴양지 개발 사업계획서

- 지 구 명 : (사업 규모 : ha)
 소 재 지 :
 사업자(대표자) : (참여농가수 : 호)

(단위 : m², 백만원)

사업내용		총계획				2003계획				2003 분기별 용자소요액				주변관광지	개발유형	비 고
		사업물량	사업비			사업물량	사업비			계	1 / 4	2 / 4	3 / 4			
분 야	세부시설명		합계	음 자	지 방 비		자 부 담	합계	음 자					지 방 비	자 부 담	
합계																
작 목 입 식	합계															
	유 실 수	m ² · 마리														
	축사(기축)															
특용작물																
농수산부대시설	농업전시관 학 습 관 농업창고 농특산물 판매장 ·															
편 의 시 설	식당시설 숙박시설 운동·체육 시설 휴양시설 주 차 장 기타시설 ·															
기 반 시 설	상 수 도 하수시설 전기·통신 시설 ·	식														

※ 비고란에는 자부담개발사업여부 및 특이사항 기재

[별지 제3호 서식]

농어촌관광휴양지(관광농원·휴양단지) 관리·운영계획서

1. 휴양지 관리·운영계획 요약
2. 작목별·시설별 이용계획
3. 농수산물, 민예품, 전통음식, 토산품등 지역특산품 연계 판매계획
4. 입장료 및 시설이용료 징수계획
5. 참여농가가 있는 경우 참여농가 참여계획서
6. 구체적 운영계획

시기별	프로그램명	프로그램 운영내용	비 고

※ 프로그램은 분기별 또는 월별로 구분, 대표적인 프로그램을 기준으로 작성하되, 구체적인 내용이 나타나도록 한다.

(예) 2/4분기 : 피서지 개장 - 농원내 설치된 원두막 등을 내방객에게 제공, 과일등 농원내에서 생산된 농산물 직판

 낚시대회 개최 - 농원내 양어장에서 낚시대회를 유치, 내방객 유치확대

 어린이 자연학습행사개최 - 유치원생 등을 유치, 농원내 농장을 활용한 농사체험행사 개최

3/4분기 : 과수따기행사 - 과수원을 개방, 과실을 직접 수확할 수 있도록 함.

 자매결연단체 유치 - 농원과 자매결연을 맺은 단체를 유치, 농원 특산품 등 판매행사 개최

 버섯큰잔치 - 내방객들을 대상으로 농원내 또는 인근마을에서 생산되는 버섯판매 또는 버섯요리를 판매

4/4분기 : 김장독 유치행사 - 도시민들이 농원에서 김장을 하여 보관해 주는 행사

[별지 제4호 서식]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지구지정의견서

1. 사업계획의 타당성
2. 입지여건(도로, 교통, 환경등) 및 지역개발계획과의 관계
3. 농업여건 구비실태(지구내 연결지역)
4. 참여농가의 실질소득 연계 및 소득효과 여부
5. 지역특산품(희귀작물, 토산물, 민예품 등) 생산판매 연계여부
6. 국토이용관리법, 도시계획법, 자연환경보전법, 산림법 등 타법령에 제한여부
7. 기타의견

200 년 월 일

○○ 시장·군수

(인)

[별지 제7호 서식]

사업별 추진실적

□ 지구소재지 :

□ 대표자 :

구 분	계획물량	추진실적	증감	비고(내용별로 구체적으로)
“예시”				
○ 작목입식				
-과수	1,000평	1,100평	100평	- 사과 300평, 배 100평, 감나무 100평, 밤 500평 - 자두 100평
-축산	500평	500평	-	- 사슴 10두, 토종닭 50수, 흑염소 10두
○ 농업부대시설				
-축사	100평/1동	100평/1동	-	
-비닐하우스	200평/2동	200평/2동	-	- 고정식(철재) 100평/1동, 일반(죽제) 100평/1동
○ 편의시설				
-식당및휴게소	50평/1동	40평/1동	△10평	- 주방5평, 식당25평, 휴게소10평

[별지 제8-1호 서식]

총26-51

농어촌관광휴양사업 추진실적

1. 관광농원사업 추진(운영)현황

작성자 : 소속 직 성명 (인)

지구(농원)명	지구지정일 (개발사업기간)	○○년○○월○○일 (~)	지구지정 면적	ha (평)	
소재지	사업자(대표자)				
참여농가수 (총사업자수)	○○호 (○○명)	사업추진현황	준공(), 일부준공(), 사업추진중(), 사업중단()		
총 사업비 (백만원)	계	지방비보조	국고용자	자부담	기타
	명	기능에의한 유형			
사업내용					
구분	세부사업명	단위	사업량		운영현황
			계획	실적	
농장조성 (작목입식)	과수 가축(축사) 특용작물 양어장	주/평 두/평 평			
농업부대시설	창고 집장고 저장장 직판장				
편의시설	숙박 - 농원여관 - 민박 - 방갈로 등 식휴게소 낙시터 운동시설 화장실	방수/평/동 평/동 평			
용자금현황 (백만원)					
용자		상환		용자금상환잔액	
일자	금액	일자	금액		
지도·점검 및 평가결과	일자 ○○.○○.○○	지적 및 지도사항, 운영상 문제점 등		조치결과	
부진사유					
향후대책					

- ※ 주 : 1. 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하였을 경우 변경사업계획 기준이며, 총사업비는 관광농원개발계획상 총사업비임
 2. 작성자는 시·군에서 서명 또는 날인
 3. 사업단위는 주/평, 두/평 ...으로 구분하여 표기
 4. 숙박시설은 농원여관, 여인숙, 여관, 민박 등의 유형별로 구분표기(단위는 방수/건평)
 5. 부진사유 및 대책은 부진농원에 한하여 작성하되 상세하게 작성토록 할 것

[별지 제8-3호 서식]

3. 농어촌관광휴양단지사업 추진(운영)현황

작성자 : 소속 _____ 직 _____ 성명 _____ (인)

단 지 명	지구지정일 (개발사업기간)		○○년○○월○○일 (~)		지구지정 면적	ha (평)	
소 재 지				사업시행자			
총사업비 (백만원)	계	지방비보조	국고용자		자부담	기타	
사업추진현황	개발·분양방법			추진현황			
	기반조성후 부지분양, 부지와 시설물분양, 시설물분양						
사업내용							
구 분	세부사업명	단위	사업추진실적		분양실적		운영현황
			계 획	실 적	계 획	실 적	
기반시설							
농업부대시설							
편의시설							
보상비및 용역비							
용 자 금 현 황							
지방비 보조		용 자		상 환		용자금 상환잔액	
일 자	금 액	일 자	금 액	일 자	금 액		
운영관리상의 문제점							
부진사유							
향후대책							

- ※ 주 : 1. 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하였을 경우 변경사업계획 기준
 2. 작성자는 시·군담당자
 3. 사업추진이 부진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세부내역별로 구체적으로 기재
 4. 사업단위는 관광농원사업 추진현황과 동일
 5. 「추진현황」은 기반조성진도(%), 분양율(%), 준공·일부준공여부, 사업중단여부 및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6. 「운영현황」은 분양후 운영여부, 운영자(업체)수 등을 기재
 7. 민자유치사업의 경우 추진일정, 분양계획 및 분양현황을 첨부할 것

4. 농촌관광휴양사업 소득효과(관광농원, 휴양단지, 농촌민박)

(단위 : 백만원)

소재지	단지명 (농원마을명)	지구지정면적 (ha)	지정년도	사업시행자 (대표자)	참여호수	종사자수 (방수)	년간내방객수	자금투자내역				수입 (농업소득+농업외소득)					비용 (B)	순소득 (A-B)
								계	용자	자부담	기타	농산물판매	특산물판매	음식물판매	숙박	기타		
계																		

※ I. 관광농원사업

1. 수입·비용은 1년간의 농원운영과 관련된 사항만을 기재
2. 자금투자내역은 작목입식, 농업부대시설, 편의시설, 기반시설의 투자액 누계를 기재
3. 개원(일부 준공농원포함)된 농원과 미개원(사업추진중인 농원포함) 농원으로 구분하여 작성

II. 농어촌관광휴양단지사업

1. 자금투자내역은 투자액 누계를 기재
2. 참여자수는 토지 또는 시설물을 분양하거나 이용하고 있는 자 또는 업체수
3. 총종사자수는 휴양단지내에서 취업·종사하고 있는 인원수
4. 개장(일부개장포함)된 휴양단지와 미개장된 휴양단지로 구분하여 작성

III. 농촌민박사업

1. 지구지정면적은 기재하지 말고, 종사자수(방수)란에는 방수만을 기재

[별지 제8-5호 서식]

5. 지정(사업계획승인) 취소 현황

(단위 : 백만원)

소재지	단지명 (농원명)	지정 년도	사업 시행자 (대표자)	참여 농가 수	자금투자내역				취소 일자	취소사유	비고
					계	융 자	자 부 담	기 타			
계											

※ 관광농원, 농어촌관광휴양단지, 농촌민박사업을 구분하여 작성할 것

[별지 제8-6호 서식]

6. 관광농원개발사업 지도·점검결과

소재지	농원명	지정 년도	지적 일자	지 적 사 항	조치결과(시정내역)		비고
					완 료	미 완 료	

※ 광역시·도에서 취합하여 농원별로 작성보고, 미완료부분에 대하여는 구체적추진일정을 기재

농촌휴양자원개발사업 연도말 검정서

(단위 : 천원)

시·군	지구명	구분	총사업비			'02까지			'03예산액			'03검정액			미집행액			미집행사유	
			계	응자	자부담	기타	계	응자	자부담	기타	계	응자	자부담	기타	계	응자	자부담		기타

※ 구분란에는 계속, 신규기재

② 녹색농촌체험활동지원

※ 이 사업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농촌진흥과(과장 조무희, 사무관 안용덕)입니다

1. 목 적

- 농촌관광 활성화를 통한 농의소득증대를 위해 녹색농촌체험마을을 조성하고 농업인과 농촌마을의 사업추진을 돕기 위한 다양한 소프트웨어 개발 및 정보 시스템 구축을 추진

<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사업 >

- 농촌관광을 추진하는 마을(“행정리, 자연마을, 마을연합”포함)에 대해 마을 경관조성, 생활편의시설 등 기반시설을 지원하여 도시민 유치를 위한 마을로 조성

< 녹색농촌체험지원체계 구축사업 >

- 농촌관광포털사이트 보완유지, 농촌관광홍보, 주민교육훈련, 농촌마을가꾸기 경진대회 등 지원체계 구축

2. 시책 및 추진방향

- 농촌의 마을을 기본단위로 사업을 추진
 - 마을을 중심으로 인근 지역의 다양한 자연·문화자산, 농업 및 농촌체험활동자원을 연계하여 사업을 추진
- 자연경관과 전통문화 등 농촌의 특색을 살린 자연친화적 마을을 조성하고 유흥·위락 위주의 관광과는 구별되는 차별화된 여가 서비스 제공
- 주민합의에 따른 마을협정과 사업계획, 시·군 또는 시·도 차원의 행정지원계획 및 전문가의 자문을 연계하여 사업을 추진
 -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관련사업을 연계하여 사업간 시너지 효과를 발휘
- 농업은 물론 농·특산물의 가공·판매사업, 농가숙박, 음식물판매, 기타 농촌 체험활동 서비스 제공 등 마을여건에 맞게 복합적으로 추진토록 권장

3. 근거법령

- 지원근거 : 농업·농촌기본법 제38조 제2항 및 제3항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도시민의 건전한 정서 함양과 도·농간의 교류 확대 및 농촌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지역의 특색을 살린 녹색관광 및 휴양자원의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

4. 2003년도 지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 업 량	사 업 비		
		계	국 고 (농특회계)	지방비
합 계	-	5,851	3,251	2,600
○ 녹색농촌체험마을조성사업	26	5,200	2,600	2,600
○ 녹색농촌체험지원체계구축사업	-	651	651	-

< 녹색농촌체험지원체계구축 세부사업 : 총사업비 651백만원 >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 업 량	사 업 비		
		계	국 고 (농특회계)	지방비
합 계		651	651	-
-농촌관광포털사이트 보완 유지	1	106	106	-
-농촌관광 홍보	1	45	45	-
-참여주민 교육훈련	1	175	175	-
-농촌마을 가꾸기 경진대회	1	450	450	-

5. 사업시행요령

I. 녹색농촌체험마을조성사업

가. 사업내용

1) 사업방향

- 주민합의를 바탕으로 마련한 마을협정과 사업계획에 따라 도시민 방문객 유치에 위한 마을공동시설과 농촌체험활동 프로그램이 정비된 마을 조성
- 농촌체험기반시설 및 마을경관 조성·생활편의시설 등 하드웨어 정비는 물론 사업추진방법, 주민간 역할분담, 사업수익모델 등 사업모델 발굴·제시

2) 지원대상

- 농촌관광 추진을 위한 마을협정(별지서식2)을 체결하고 사업계획(별지서식3)을 제출한 하나 또는 복수의 마을로서 ① 또는 ②의 요건을 충족하고 심사를 거쳐 체험마을로 지정된 마을

① 단일 마을이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 전체 20호 이상인 마을로서 전체 가구의 1/3 또는 10호 이상의 가구가 협정에 참여하여야 함

② 둘 이상의 마을이 공동마을협정을 체결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 각마을의 가구수 합계가 30호 이상이고 협정에 참여하는 각마을은 마을 전체가구의 1/3 또는 5호 이상의 가구가 협정에 참여하여야 함

※ 마을협정에서 정할 사항

- 참여가구의 역할분담(농장·숙소 제공, 도시민 안내·음식등 서비스 제공), 시설이용료, 공동시설에서 발생하는 수익의 배분규칙 등
- 주민 자체의 노력부담, 장비사용, 마을내 토지 이용 등에 관한 사항

※ 마을내 비농가도 협정참여가 가능하나 참여가구의 2/3 이상이 농가이어야 함

※ 공동마을협정은 동일 읍·면지역내의 마을간 협정이어야 함

※ 광역시는 준농어촌지역의 마을에 한함

3) 지원조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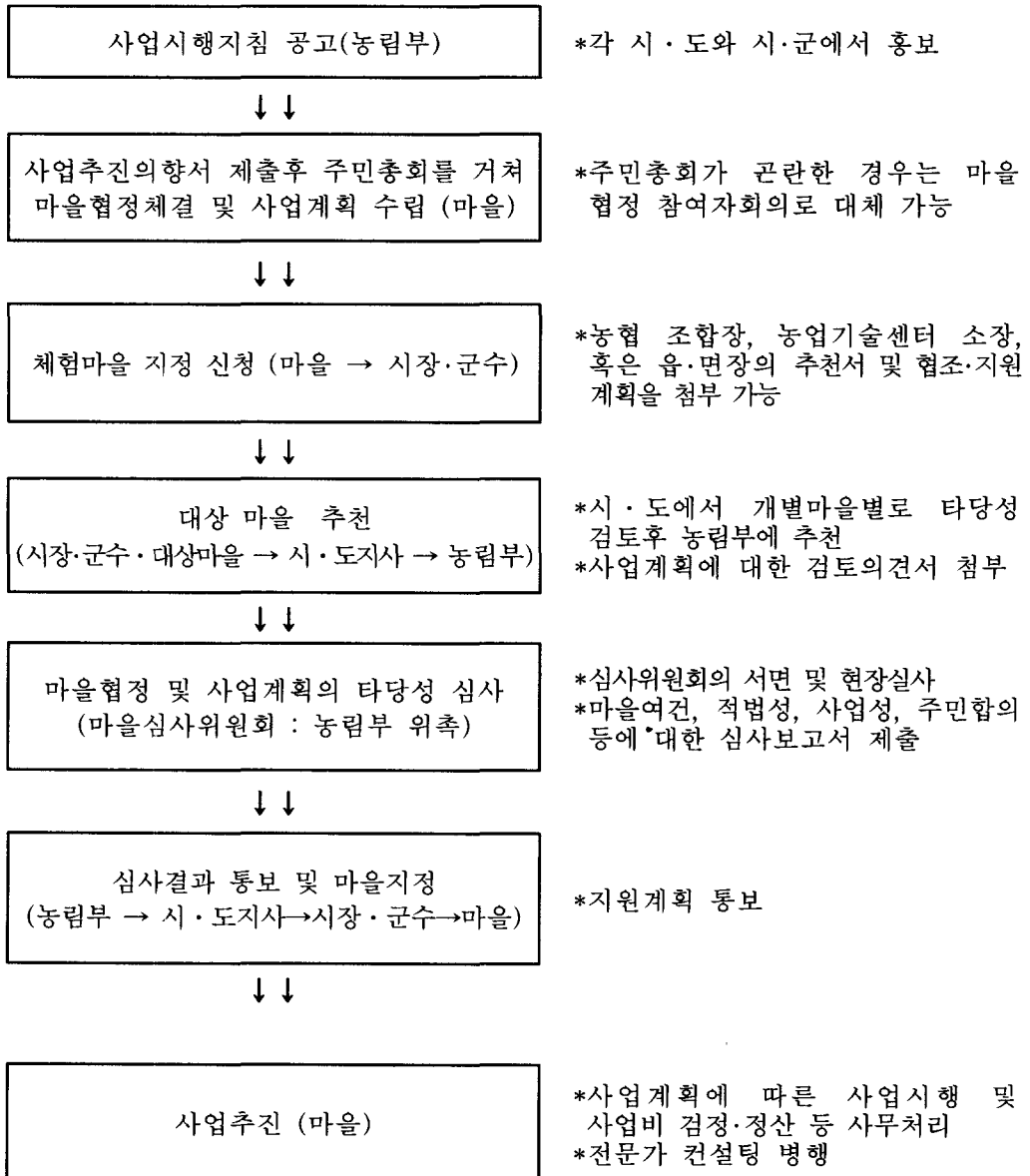
- 지원금액 : 마을협정과 사업계획의 타당성 심사 및 소요자금의 적정성 심사를 거쳐 마을당 2억원 수준에서 지원 (국고50%, 지방비 50% 이상)
 - 마을협정과 사업계획에 따라 지방비로 추가지원 가능
- 자금용도
 - 도시민 유치를 위해 필요한 마을 공동의 농촌체험기반시설, 마을경관 조성, 생활기반시설 등에 포괄적으로 사용 가능
 - 이 지침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이외에는 개인이나 개별 법인이 수익자가 되는 세부사업은 지원하지 않음

구 분	세부사업내역(예시)
생활편의시설	마을안길, 마을안내판(석), 가구별 안내판, 표지판, 상하수도, 오물처리시설, 급수대, 인터넷공동이용시설, 마을 홈페이지, 마을회관 개보수, 벤치·정자, 가로등, 공동화장실·공동샤워실·공동취사장 등
농촌체험기반시설	체험농장·체험목장 조성(농장·목장에 원두막·관찰코스 등 체험시설조성), 주차장, 캠핑장, 산책로, 뉴시터·물놀이시설·해가림시설 등 주변여가시설, 잔디축구장, 소규모체육시설 등 레크리에이션 시설, 어린이놀이터, 기존 마을회관·창고·축사·폐교시설을 단체 숙소나 체육·문화공간으로 개조, 축대, 안전시설·장비 및 장애인·노인용 편의시설·장비 등
마을경관조성지원	화단·꽃밭가꾸기, 마을진입로 수목 식재, 꽃길 조성, 잔디광장조성, 마을내 다리 보수, 토담·돌담 조성, 초가·기와 등 전통지붕 조성, 전통건축물·유적지 보수, 빈집정비 등
컨설팅, 설계비등	사업계획수립과 시행을 위한 전문가 자원조사 및 컨설팅 비용 (*500만원까지 인정), 설계비, 안전진단비용

- ※ 토지·시설의 매입·임차비용, 관리·운영비용은 지원하지 않음
 - 개인이나 법인등이 소유하는 창고·축사를 마을공동시설로 이용하고자 5년 이상 마을에 장기임대하는 조건으로 개조하는 경우는 개조비용 지원가능
- ※ 농업생산기반이나 농업용 시설, 농산물 판매나 가공을 위한 시설의 설치는 지원대상이 아님
 - 농사체험을 위한 체험관찰코스 등 부대시설 설치, 기존 시설물을 활용한 농특산물 공동판매코너 인테리어 비용은 지원 가능
- 추진마을에 정주권개발·문화마을 사업·농어촌용수사업 등 생활여건개선사업과 관광농원개발사업 등 소득기반사업의 우선순위 부여

나. 사업추진체계

- 1) 사업시행주체 : 마을 관할 시장·군수
- 2) 마을지정 : 농림부
- 3) 사업추진절차 개요



※ 마을 사업계획은 시장·군수 추천 및 마을 지정에 앞서 각각 시·군, 시·도와의 협의를 거쳐 수정계획 입안 가능

4) 마을심사위원회

- 기능 : 시·도지사가 추천한 마을을 대상으로 사업추진계획의 적법성, 사업타당성, 마을주민의 사업추진의지 등을 종합 평가하여 심사보고서를 농림부에 제출
- 평가의 범위 : (별지5서식)의 심사기준에 따라 마을협정, 마을의 사업계획, 농협, 농업기술센터, 읍·면의 협조·지원계획,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지원계획을 종합적으로 평가
- 구성 : 구체적인 구성방법은 별도로 정함
 - 관련공무원, 학계, 농촌관광 전문가, 농업관련단체 등 10~15명

5) 담당부서

- 농림부 : 농촌진흥과(02-500-1961~1962)
- 도 : 농업정책과
- 시·군 : 농업담당과

※ 도와 시·군 농정담당부서는 사업추진시 문화관광담당부서와 긴밀히 협조

다. 사업추진 세부절차

1) 체험마을 지정신청(마을 → 시장·군수)

- 녹색농촌체험마을로 지정받고자 하는 마을은 주민총회 또는 마을협정참여자들의 의결을 거쳐 녹색농촌체험마을 추진신청서(별지서식1)를 시장·군수에게 제출
- 시장·군수는 녹색농촌체험마을 추진신청서를 제출한 마을에 대하여 시·군청, 농업기술센터, 관내 농협의 담당직원이나 민간 전문가를 지정하여 신청마을의 마을협정 작성 및 사업계획 수립을 지원
- 녹색농촌체험마을로 지정받고자 하는 마을은 마을협정(별지서식2)과 소정의 사업계획서(별지서식3)를 작성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
 - 농협조합장, 농업기술센터 소장, 읍·면장의 추천서와 협조·지원계획 첨부 가능

2) 녹색농촌체험마을 추천(시장·군수 → 시·도지사 → 농림부)

가. 시장·군수의 추천

- 시장·군수는 제출된 마을협정과 사업계획에 대해 사업타당성 검토후 관내 마을에 대해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시·도에 추천
- 추천시 특히 마을협정의 진실성, 사업계획서상 제반 사업내용의 인허가관계 등 적법성, 지침상 요건과의 부합 여부, 실질적인 지정가능성 등을 검토
 - 추천대상마을과 협의하여 사업계획을 수정토록 할 수 있음
 - * 농업기술센터 : 사업계획서 작성, 마을리더 및 참여농가에 대한 교육 등 지원
- 시장·군수는 추천대상마을에 대해 녹색농촌체험마을조성사업과 중앙부처의 사업·시책이나 시·도, 시·군이 자체적으로 운용하는 사업·시책을 연계 지원하는 계획(행정지원계획)을 입안
 - [예시] ① 도시민 방문객 증가에 따른 쓰레기 수거 및 처리대책
 - ② 시·군 인터넷 사이트에 체험마을 홈페이지 구축 지원
 - ③ 녹색농촌체험마을 방문객의 역사·문화유산 탐방시 전문해설가 투입
 - ④ 녹색농촌체험마을에 대한 관내 공공시설·유희시설 활용 우대
 - ⑤ 녹색농촌체험마을에서의 문화예술행사, 체육행사 개최
 - ⑥ 마을진입로 정비, 하수·오수처리시설 지원
 - ⑦ 정주권개발사업, 오지개발사업 등 지역개발사업과의 연계 지원등
- 추천서류
 - 녹색농촌체험마을 지정 추천서 및 사업계획에 대한 검토의견서
 - 마을협정과 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
 - 당해 시·군의 행정지원계획
 - 기타 마을에 대한 정확한 심사를 위해 참고할 수 있는 문서 또는 서류

나. 시·도지사의 추천

- 시·도지사는 시·군별로 추천한 마을 또는 마을연합에 대해 사업타당성 검토 의견서를 첨부하여 농림부에 추천
- 추천시 마을협정의 진실성, 사업계획서상 제반 사업내용의 인허가관계 등 적법성, 지침상 요건과의 부합 여부, 실질적인 지정가능성 등을 검토

3) 최종 마을선정

- 농림부는 각 시·도에서 제출한 추천서류를 마을심사위원회에 이송
- 마을심사위원회는 마을협정과 사업계획, 농협등의 협조·지원계획, 시·군의 행정지원계획 및 시·군 검토의견서에 대한 서면 검토후 필요시 현지실사를 거쳐 지원대상마을을 선정
 - 필요한 경우 마을 선정을 위한 사업계획 설명회 개최
- 마을심사위원회는 심사보고서 확정 후 농림부에 제출
- ※ 기타 심사의 효율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마을심사위원회가 정할 수 있음

4) 녹색농촌체험마을 심사결과 통보(농림부 → 시·도지사 → 시장·군수 → 녹색농촌체험마을)

- 농림부는 마을심사위원회 심사결과를 시·도에 통보
- 시·도지사는 마을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지정된 마을에 교육일시·장소 등 교육관련사항을 통보
- 지정된 녹색농촌체험마을은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농협등의 협조·지원계획 및 시·군의 행정지원계획을 반영하여 마을조성사업계획을 시·도지사에게 제출
 - 전문가는 마을 스스로 혹은 시·도지사 알선으로 선정
 -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사업계획은 단년도에 그치지 않고 3~5년의 중기 마을발전계획으로 입안토록 권장
 - 시장·군수는 소속공무원 1인을 현장지도 책임자로 지정하여 마을지원
- 녹색농촌체험마을 주민교육
 - 농림부 또는 시·도에서는 녹색농촌체험마을 주민에 대한 소집교육 및 현장방문교육을 실시
- 농림부에 대한 보고 : <행정사항> 참조

라. 자금지원

-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을 위한 자금은 3~4회로 나누어 집행하되, 사업계획서와 실제 사업진도를 대조하여 소요액을 전액 지원
- 전체 지원예정액의 20%는 사업 완료후 검정·정산후 지원
- 자금지원시기와 각 시기별 지원금액은 사전에 마을과 협의하여 정함

마. 사업검정과 사업비 정산

-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증 소지자가 발행한 세금계산서에 입각하여 사업비 검정·정산을 해야 하는 경우
 - 시공업체를 선정하여 사업계획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시행하는 경우
 - 체험마을 조성을 위한 자재구입, 전문가컨설팅, 설계비, 안전진단비용
- 예외사항
 - 자재구입비 중 공급자가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농업인이고 다른 자재 공급자를 물색하기 어려운 경우 등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의 적용이 곤란한 경우는 시·군 실사와 농림부 유권해석을 거쳐 사업비 인정
 - 마을 자체적으로 공사 등 사업을 시행하면서 마을협정에 참여하지 아니한 마을 주민이나 기능보유자의 노력·장비를 사용한 경우 농림사업자금 집행관리기본규정의 노무비 관련 조항에 따라 자필 서명한 증빙을 인정
 - * 마을협정참여자의 노력이나 장비를 사용한 경우는 해당되지 아니함

바. 사업시행시 유의사항

- 전문가 컨설팅 이외에 건물·구조물의 신축, 증축, 개보수, 용도전환시에는 농업기반공사 등 전문기관의 안전진단을 받아야 함

사. 마을협정과 사업계획의 변경

- 녹색농촌체험마을 지정후에도 당해 마을은 시장·군수를 거쳐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마을협정과 사업계획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 승인을 받지 아니한 사업계획에 따른 자금집행은 사업비로 인정되지 아니함
- 사업계획서에서 제시된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사업을 완료한 후에 중요한 마을협정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를 거쳐 시·도지사에게 사후 보고함

아. 사업취소 및 자금회수사유

-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에 따름

자. 사후관리·사후지원 및 행정사항

- 사후관리
 - 시·도지사와 시장·군수는 체험마을로 지정된 마을이 사업시행후 5년 동안 당초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지를 반기별로 점검(예 : 2월, 8월)
 - 시·군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전통음식개발, 향토맥 잇기사업, 주민교육등 기술지도 실시
- 사후지원
 - 농림부와 시·도, 시·군은 체험마을의 홍보와 도시민 유치를 적극 지원
 - 농림부와 시·도, 시·군은 최초 사업시행후 2년이내에 녹색농촌체험마을 주민에 대한 보수교육을 실시

○ 행정사항

〈 2003년 추진일정(안) 〉

- 사업추진의향서 및 마을협정과 사업계획서 제출 (마을→시장·군수) : 2002. 11.10일까지

- 마을 추천(시장·군수 → 시·도지사 → 농림부) : 2002. 11. 20까지

- 녹색농촌체험마을 지정 : 2002. 12.20

〈 농림부에 대한 보고사항 〉

- 마을 지정후 : 녹색농촌체험마을조성사업계획서, 농협등의 협조·지원계획, 행정지원계획, 녹색농촌체험마을 운영계획서(별지4)를 제출

- 사업비 정산 보고 : 2004. 3. 20까지

- 사후관리 및 사후지원 필요사항에 대한 점검 보고 : 2004년부터 반기별 보고

차. 기 타

- 이 지침에 명시하지 않은 내용이라도 정부시책방향과 부합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험마을이 필요로 하는 사업내용을 포함할 수 있음

6. 2004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 안내

가. 사업신청서 제출기관

- 녹색농촌체험마을을 조성코자 하는 마을의 주소지 관할 시·군

나. 신청자격 : 농촌관광을 추진하거나 추진하려는 20호이상의 마을로서 (연합일 경우 30호이상) 아래의 여건을 갖춘 마을

- 전통적인 농촌모습, 주택, 자연경관이 적절히 배치된 마을
- 마을인근에 문화유적 등 관광자원과 스키장 등 레저시설이 발달된 마을
- 정주권개발사업 등 마을정비사업을 추진하였거나 추진중인 마을
- 접근이 용이하고 도시민의 방문, 숙박이 활발한 마을

다. 신청절차

- 사업 희망마을에서는 농촌체험마을 추진의향서, 녹색농촌체험마을 협정서, 녹색농촌체험마을 사업계획서를 시장·군수에게 제출

라. 지원대상자 선정

- 선정기준 : 녹색농촌체험마을 심사위원회에서 마을심사기준표에 근거하여 대상마을 선정

II. 녹색농촌체험지원체계 구축사업

농촌마을가꾸기 경진대회

가. 사업내용

- 농촌관광을 추진하는 마을을 평가하여 우수마을을 선정, 표창 및 홍보함으로써 마을간 선의의 경쟁을 촉진시키고 농촌관광 활성화에 기여
- 우수마을 심사·선정
- 경진대회 개최 및 시상금 지급
- 수상마을 중심으로 마을가꾸기 우수마을 사례 등 홍보책자 발간

나. 사업추진체계

- 1) 사업시행주체 : 농업협동조합중앙회
- 2) 협조기관 : 농림부, 각 시·도 등

다. 사업추진절차

- 1) 경진대회 추진계획 및 제안서 제출(농협중앙회) : 2003. 1. 31까지
- 2) 기본계획 수립 및 보조사업자 지정 (농림부) : 2003. 2. 28까지
 - 농협중앙회는 기본계획에 따른 세부추진계획을 수립
 - 농협중앙회는 경진대회 후원 및 협조기관 협의회 구성
- 3) 경진대회 개최계획 공고 : 2003. 3. 31까지
- 4) 마을 참가 신청 : 2003. 7. 1 ~ 7. 31까지
- 5) 심사위원회 구성 : 2003. 8. 1. ~ 8. 31
- 6) 마을 심사 : 2003. 9. 1 ~ 10. 15
- 7) 표창 및 홍보 : 2003. 11월중
- 8) 시·도 순회 전시회 개최 : 2003. 11월

라. 시상내용

- 시상내용은 예산범위내에서 별도로 정함
- ※ 지원금은 생활편의시설, 기반시설 및 도농교류프로그램개발, 교육홍보 등 마을 공동시설에 사용

마. 행정사항

- 심사기준은 객관성과 투명성을 갖추고,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마을 심사
- 사업정산보고 : 2004. 3. 20까지

[별지1]

녹색농촌체험마을사업 추진의향서

1. 대상마을:	도	시군	읍면	리	부락
2. 마을 현황					
○ 가구수:	호 (농가:	호,	비농가:	호)	
○ 인구수:	명 (남:	명,	여:	명)	
○ 농지면적:	ha (논:	ha, 밭:	ha, 과수원:	ha,	초지 ha)
○ 산림면적:	ha				
3. 주요 문화재:					
○ 유형 문화재:					
○ 무형문화재:					
4. 주요 관광 자원					
5. 내방 관광객 수:	명				
○ 민박 관광객 수:	명,	○ 단순 내방객 수:	명		
6. 녹색농촌체험사업 참여 실태					
○ 사업 참여 가구 수:	호 (농가	호,	비농가	호)	
○ 사업 내용					
민박:	호,	농사체험농장:	호,	주말농장:	호
농가 식당:	호,	농산물 판매장:	호,	기타:	호
<p>우리 마을은 마을 주민 총회의결로 녹색농촌체험사업을 실시하기로 결의하고 첨부된 내용과 같이 녹색농촌체험마을사업을 실시하고자 하니 녹색농촌체험마을로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200 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도 시군 읍면 리 부락</p> <p style="text-align: center;">이장 인</p> <p style="text-align: center;">시장·군수 귀하</p>					
<p>첨부: 1. 도 군 읍면 리 녹색농촌체험마을사업 추진계획서 1부</p> <p style="padding-left: 20px;">2. 마을총회 기록 1부 및 위원회 결의서 1부</p>					

시·도 시·군 읍·면 리 부락

[별지2]

녹색농촌체험사업 마을협정서

시·도 시·군 읍면 리 마을

우리 마을 주민들은 정부에서 실시하는 녹색농촌체험사업 취지에 적극 참여하여 깨끗하고, 아름답고 살기좋은 마을을 주민 스스로 만들어 갈 것이고 이를 바탕으로 도시민들에게 쾌적한 휴식과 체험을 제공하여 상호 이해 증진과 마을 발전에 기여하기로 결의합니다.

200 년 월 일

마을 위원장	인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

첨부: 녹색농촌체험마을사업 실시를 위한 주민 총회 결의 기록 1부

시장·군수 귀하

1. 녹색농촌체험사업을 위한 마을의 여건

가. 마을의 역사

나. 마을의 자연경관과 환경

다. 마을의 전통문화

○ 무형문화재

○ 유형문화재

라. 주요 관광자원 및 관광객 내방 현황

○ 산과 계곡

○ 강과 하천

○ 습지

○ 저수지

○ 해안과 해수욕장

○ 철새도래지, 천연기념물 등 생태 관광자원

○ 기타 관광자원

마. 친환경 농업 현황

바. 도·농교류 프로그램

사. 기타

2. 마을의 공동체 활동

○ 영농회, 부녀회, 청년회, 4-H클럽, 노인회 등 마을 공동체 조직 여부와 주요 활동 내역

○ 기타 마을의 전통적 사회조직 여부와 활동 내역

3. 주요 농산물 및 특산물

가. 주요 농산물

나. 주요 특산물

4. 녹색농촌체험사업 참여 계획

가. 기존의 관광농업 등 관광실태

○ 참여자

○ 주요 프로그램 내용

나. 신규 녹색농촌사업 참여 계획 및 주요 체험 프로그램 내용

○ 민박, 체험농장, 농가식당, 주말농장, 농산물 판매장, 식품가공공장, 떡공장 등을 연계한
기타 사업의 운영 형태

○ 참여 가구 수

5. 관광객 유치 계획

- 자연 내방
- 도·농교류사업 추진
- 홍보 등 기타

6. 관광객 유치를 위한 마을정비 계획

- 마을 조경, 마을 환경 정비 계획
- 마을 공공시설 정비 계획
- 친환경농업 육성 계획
- 기타 계획

7. 녹색농촌체험사업 실시에 따른 컨설턴트 확보 계획

- 대학, 연구기관, 컨설팅 전문가 등 활용계획

8. 녹색농촌체험사업 실시를 위한 재정 계획

민박, 체험농장, 농가식당, 농산물 판매장 등 참여자 별 자부담 및 지원 요청 내역

<녹색농촌체험마을 실시에 따른 투자 계획>

	자부담	보조	융자	계
민박시설 ○○○ ○○○ ○○○				
체험농장 ○○○ ○○○				
농가식당 ○○○ ○○○				
공공시설 - 주차장 - 마을도로 - 마을조경 -				
계				

※사업계획서는 마을실정에 맞게 작성

[별지4]

녹색농촌체험마을 운영계획서

1. 체험마을 운영계획 요약
2. 기반시설별 이용 계획
3. 농수산물, 민예품, 전통음식, 토산품 등 지역특산품 연계판매 계획
4. 입장료 및 시설 이용료 징수계획
5. 추가 참여농가가 있는 경우 참여농가 참여계획서
6. 구체적 운영계획

시기별	운영프로그램	프로그램 및 운영내용	비 고

* 운영프로그램으로 분기별 또는 월별로 구분, 대표적인 프로그램 기준으로 작성하되, 구체적인 내용이 나타나도록 한다.

예시) 1/4분기 : 눈썰매장 개장-마을내의 내방객에게 썰매장 제공

2/4분기 : 시골저녁 풍경감상하기- 농촌의 저녁 놀과 저녁 짓는 저녁 풍경 감상하기

피서지개장-원두막 제공, 마을에서 생산된 과일 등 직판

낚시대회 개최- 마을내의 양어장에서 낚시대회 유치

어린이 자연학습행사개최-유치원생을 유치하여 농사체험·미꾸라지체험 등

3/4분기 : 과수따기행사-과수원개방, 과실을 직접 수확할 수 있도록 함

자매결연단체 유치-자매결연을 맺은 단체 유치, 특산품 등

판매행사 개최

버섯큰잔치-인근 마을에서 생산된 버섯 판매 또는 버섯요리 체험

4/4분기 : 김장담그기 대회-김장담그기 체험

[별지5]

마을심사평가기준

평가항목	배 점	평 가 기 준	
		평 점	내 용
	300		
① 관광자원 및 여건	100	6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통적인 농촌모습, 주택, 자연경관이 적절히 배치되어 있는지 여부 ○ 마을인근에 문화유적 등 관광자원과 스키장 등 레저시설이 발달되어 있는지 여부 ○ 정주권개발사업 등 마을정비사업을 추진하였거나 추진중인지 여부
		4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접근이 용이하고, 도시민의 방문, 숙박이 활발한지 여부
② 주민 합의와 사업추진의지	100	8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농회, 부녀회, 청년회 등 마을공동체가 조직되어 있고,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지 여부, ○ 사업추진 준비 등 주민의 사업참여가 적극적인지 여부 ○ 사업을 이끌어 나가는 지도자가 있고, 적극적인가 여부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환경농산물 인증정도, 친환경 영농교육 이수 등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지 여부
③ 사업계획의 충실성 및 실천성	100	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을의 부존자원의 활용 정도, 체험프로그램 등 활용계획, 마을기반시설의 운영계획 등 사업계획이 충실한지 여부
		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자체가 마을을 지원하기 위한 행정지원계획 수립·추진 여부 ○ 사업 계획서 작성·교육·사후관리지원 등 농협, 농업기술센터의 지원계획 수립·추진 여부

※심사의 세부기준은 마을심사위원회가 별도로 정할 수 있음

③ 농촌전통테마마을 육성*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촌진흥청 생활개선과(과장 김화님, 지도관 김은미, 지도사 박경숙)입니다.

1. 목 적

- 고유한 농촌전통문화를 테마로 발굴·보존하여 체험·학습, 농가숙박, 농산물 직거래 등을 통해 농촌생활의 활력화 및 도농교류에 기여할 수 있는 매력과 이미지가 있는 농촌마을을 조성하고자 함.

2. 시책 및 추진방향

- 마을단위 고유한 농촌전통테마를 발굴·보존하여 교육 및 체험시설 설치
- 계절별, 기간별, 인원별 다양한 농촌전통문화 체험·학습의 프로그램 개발
- 농촌다움과 향수를 자극할 수 있는 마을 고유의 환경 조성
- 마을주민의 경영관리능력, 서비스, 마을안내능력 배양 교육 실시
-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통해 농촌주민의 사업역량 배양
- 농업인 건강관리실, 농촌여성 일감갓기, 향토음식 맥잇기, 농촌노인 생활 시범마을 등 기존의 농촌생활개선사업과 연계 추진
- 종합적인 문화 복지공간으로 조성하여 농촌 생활의 질 향상에 기여

3. 근거법령 : 농촌진흥법 13조 제1항

4. 연도별 지원계획

구 분		2002년 이전	2003년 (예산안)	2004년이후
사업량		개소 9	27	278
사 업 비	계	백만원 900	2,700	27,800
	보 조	450	1,350	13,900
	지 방 비	450	1,350	13,900

※ '03년 사업량 27개소는 기존 9, 신규 18개소임(연차적 1억원씩 2년간 지원)

5. 2003년도 사업시행 요령

< 사업개요 >

가. 사업내용

(1) 배경

- 전통지식의 보존을 위한 세계적인 관심 증대 : 생물다양성협약 체결('92)
- 앞으로의 농촌은 고유한 전통문화, 자연환경, 농산물 생산 등 국가의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새로운 공간으로의 인식과 수요 변화 예측
- 농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농업인의 인식과 관리 능력 부족
- 사라져 가는 농촌 고유의 테마 발굴과 체험·학습, 숙박 시설 필요

(2) 사업기간 : 2003년 1월 ~ 12월

(3) 지원대상 및 조건 : 농촌마을 중

- 마을 지도자의 사업추진 의지 및 주민의 시설 활용 참여 의지가 높은 마을
- 마을내 조직활동이 활발하여 시설 활용시 조직적 뒷받침이 가능한 마을
- 마을민간 화합이 잘되고, 총회를 거쳐 사업추진의 합의가 된 마을
- 운영비 자부담 능력이 있는 마을(마을기금, 회비, 공동활동수익금 등)
- 사업추진 후 활용·관리 계획이 타당하여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마을
- 독특한 전통지식과 문화 등 지역자원이 풍부한 마을
- 자연경관이 아름답고 개성과 이미지가 있는 마을
- 농업인 건강관리실, 농촌여성 일감갓기, 향토음식 맥 잇기, 농촌노인생활 시범마을 등 생활개선사업이 투입하여 성공한 마을

(4) 지원단가 : 개소당 100백만원(국비 50%, 지방비 50%)

(5) 지원내용 : 지역의 전통문화 여건 및 요구에 맞추어 적용(아래 참조)

- 하드웨어 측면
 - 농업·농촌교육시설 : 체험·학습프로그램 개발, 해설판, 농특산물 생산·수확·가공 및 판매시설, 지역문화 체험시설, 기자재 등
 - 마을환경 정비, 숙박 및 편의시설, 종합안내센터 등 설치

○ 소프트웨어 측면

- 전문가 컨설팅 : 고유테마 발굴, 프로그램 개발·보급·시범 실시 등
- 마을주민 및 리더 교육, 홍보와 마케팅 지원 등
- 마을 고유의 테마를 중심으로 계절별, 기간별, 연령별 등 요구를 반영하여 지역실정에 맞게 조정

○ 2차년도 지원을 받는 마을

- 1차년도 사업 평가후 문제점 보완 및 프로그램 업그레이드, 홍보 및 마케팅, 마을 고유 캐릭터상품(농산물 포함) 개발, 체험시설 보완, 마을주민(기초·심화)교육 등에 중점을 두어 추진

나. 2003년도 사업비(예산안) 내용

시도별	사업량	사 업 비					
		사업비 합 계	예산액(농특회계)			지방비	자부담
			계	보조	용자		
계	개소 27	백만원 2,700	2,700	1,350	-	1,350	-

< 추진체계 >

가. 사업주관기관 : 시군 농업기술센터

나. 사업담당부서

- 농촌진흥청 : 기술지원국 생활개선과(031-299-2682)
- 도 : 농업기술원 생활개선(기술)과·팀
- 시군 자치구 : 농업기술센터 생활개선(기술)팀·담당

다. 사업시행

- 사업시행계획 작성
 - 본 지침과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도 및 시군단위 사업추진계획 수립
 - 마을단위에서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사전교육 및 마을 주민의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사업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에게 제출

○ 사업대상지역의 변경

- 사업대상지역이 사업을 포기하거나 사업을 시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여 사업지역을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는 시군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의결을 거쳐 결정하고 변경내용은 직 상위기관에 즉시 보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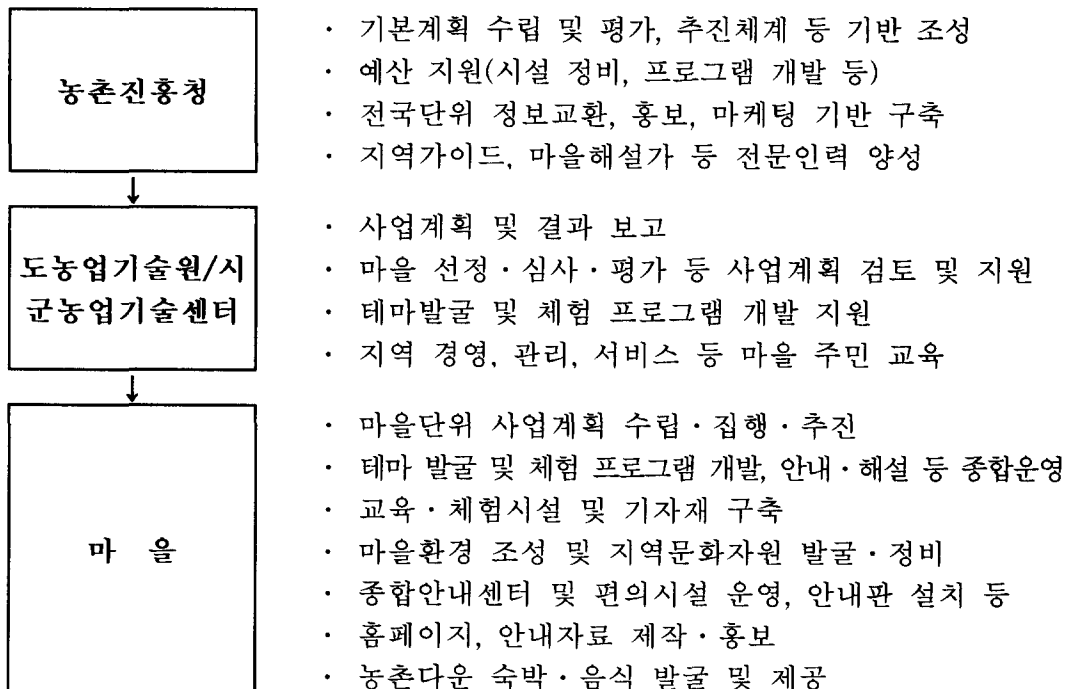
○ 사업비 집행방법

-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보조금 지급 규정에 의해 마을대표에게 지원
-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예산집행상황 등 사업추진상황을 지도 점검

○ 추진일정

세부내용	추진시기												
	1월	2	3	4	5	6	7	8	9	10	11	12	
○ 추진위원회 구성													
○ 사전 교육 및 계획수립													
○ 사업 추진 및 활용지원													
○ 사업 평가													

< 사업추진체계 >



< 행정사항 >

가. 사후관리

- 시·군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사업착수 연도부터 3년간 기술지도하여 연차별, 사업별로 구분하여 사업 추진상황을 도 농업기술원장에게 보고하고, 이후부터는 농업기술센터소장 책임하에 사후 기술지도 실시
- 시군 및 시도에서는 사업계획에 의한 지원금의 타용도 사용을 금지하고, 전·유용 등 타용도로 이용된 경우에는 지원자금을 회수하고 금후 사업 대상에서 제외
- 사업대상지역으로 선정된 마을에서는 시군센터 소장의 승인을 얻어 사업계획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한 사업계획에 대한 자금 집행은 사업비로 인정되지 않음
- 사업 중간 및 연말에 평가회를 개최하여 시범사업 추진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발굴, 개선방안을 강구
- 사업 추진후 마을단위 운영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프로그램 운영, 시설 및 기구 등의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하며, 시설 및 프로그램이 본래의 목적에 맞게 지속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함
- 기타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규정하는 바를 준수하여야 함

나. 보고·기타 : 2003년도 농촌지도사업 기본지침에 의함

6. 2004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 안내

가. 신청서 제출기관 : 시군 농업기술센터

나. 신청자격 : 아래의 여건을 갖춘 농촌마을

- 마을 지도자의 사업추진 의지 및 주민의 시설 활용 참여 의지가 높은 마을
- 마을내 조직활동이 활발하여 시설 활용시 조직적 뒷받침이 가능한 마을
- 마을민간 화합이 잘되고, 총회를 거쳐 사업추진이 합의가 된 마을
- 운영비 자부담 능력이 있는 마을(마을기금, 회비, 공동활동수익금 등)
- 사업추진 후 활용·관리 계획이 타당하여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마을
- 독특한 전통지식과 문화 등 지역자원이 풍부한 마을
- 자연경관이 아름답고 개성과 이미지가 있는 마을
- 농업인 건강관리실, 농촌여성 일감갓기, 향토음식 맥 잇기, 농촌노인생활 시범마을 등 생활개선사업이 투입하여 성공한 마을

다. 신청절차

- 사업 희망마을에서는 사업신청서(사업계획서 포함)를 시군 농업기술센터 소장에게 신청함

라. 구비서류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 농업기술센터에 비치

마. 지원대상자 선정

- 선정기준 : 신청자격 항목과 동일함
- 선정절차

- 마을주민의 사업추진에 대한 협의를 거쳐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해당 시군 농업기술센터에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
- 각도 농업기술원에서는 시군농업기술센터 소장이 추천한 마을을 대상으로 타당성, 적정성, 사업가능성 등을 심사하여 선정한 후 시군농업기술센터 또는 농촌진흥청에 통보
- 시군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신청마을의 설치여건 및 사업계획서를 선정기준에 따라 종합적으로 심사한 후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심의를 거쳐 적합 여부 및 우선 순위를 결정한 후 사업 추진이 가능한 사업량(예산)을 도 농업기술원에 요구하고, 도 농업기술원 및 특별·광역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촌진흥청에 예산을 요구함.

바. 기타사항

- 기본사업방향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청자가 필요로 하는 내용을 신청할 수 있음.

51	한계농지정비사업(자율)
----	--------------

※ 이 사업시행지침에 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농촌진흥과(과장 조무희 서기관 조홍제)입니다

1. 목 적

- 영농조건이 불리하여 생산성이 낮은 한계농지 등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한정된 국토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관리

2. 시책 및 추진방향

- 한계농지의 위치 등 정보를 일반인에게 제공하여 활용토록함
- 지역여건에 따라 공공기관 또는 민간개발로 농촌의 활성화를 도모
- 지역의 개발수요에 알맞게 다양한 유형으로 개발·정비
- 지역개발과 자연환경 보전과 조화를 도모

3. 근거법령

- 농어촌정비법 제76조 내지 제85조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 개소, 백만원)

구 분	계	'96~'99	2000	2001	2002	2003 (예산안)
사 업 량	5	5(4)	1	1	(1)	-
사업비(용자)	13,478	13,128	350	350	-	-

※ 2001년까지 지원은 공공기관사업인 경우이며, 향후로 용자금지원은 예산 편성이 수립될 경우에만 가능

5. 2003년도 사업시행요령

〈사업개요〉

가. 사업내용

- 배 경 : 농어촌정비법의 제정에 따라 '96부터 시행
- 사업시행자 : 공공기관과 사업을 하기 위한 토지를 소유하거나 토지소유자로부터 토지사용동의를 받은 민간인
- 정비유형
 - 과수·원예·특용작물·축산단지·양어장 등 농림수산업을 위한 농지·시설
 - 농어촌관광휴양단지, 관광농원, 관광숙박시설 등 농어촌관광휴양자원의 개발·이용을 위한 시설
 - 주택·택지 및 부속농지, 공업시설, 전시장·박물관 등 문화예술 관련시설, 체육시설, 청소년 수련시설, 의료시설, 교육연수시설, 노인복지시설
 - 기타 농어촌지역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로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시설(식물원, 화초 및 분재등의 온실, 휴게소, 관망탑, 야외극장, 아동관련시설(영유아보육시설·유치원등), 촬영소)

〈추진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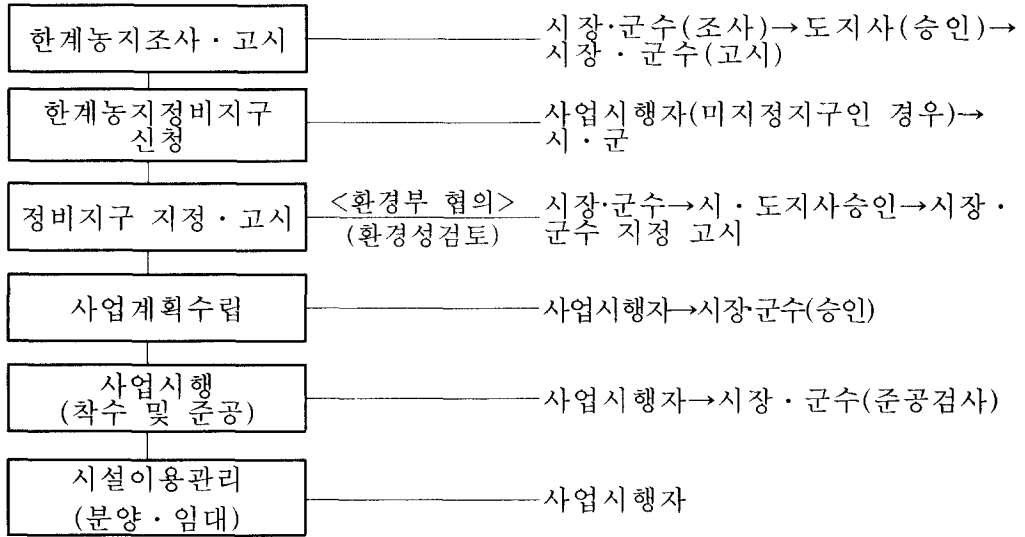
가. 사업주관기관 : 농림부

나. 사업담당부서

- 농림부 : 농촌개발국 농촌진흥과 (전화 : 02-500-1971~2)
- 시·도 : 농정국 농산지원과
- 시·군 : 건설과

다. 사업시행자 : 공공기관과 사업을 하기 위한 토지를 소유하거나 토지소유자로부터 토지사용동의를 받은 민간인

라. 사업추진절차



〈한계농지조사·고시〉

가. 한계농지의 기준

————— < 한 계 농 지 의 기 준 > —————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9호 및 시행령 제3조)

- 농업진흥지역밖의 농지로서 최상단부에서 최하단부까지의 평균경사율이 15%이상이거나 집단화된 농지규모가 2만제곱미터 미만인 농지.
- 광업권에 의한 광업권이 기간만료 또는 취소로 소멸된 광구의 인근지역 농지로서 토양오염 등으로 인하여 농업목적으로 사용하기에 부적당한 농지

나. 한계농지조사 및 고시

- 시장·군수는 농어촌정비법 제78조의 규정에 의거 동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적합한 한계농지를 조사한다. 우선적으로 조사할 지역은 개발수요가 있거나 개발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있는 지역을 먼저 조사한다.
- 시장·군수가 한계농지를 조사할 항목은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현재의 토지이용상태와 위치도(축적 1/5,000, 축적 1/5,000이 없는 지역은 축적 1/1,200 또는 축적 1/3,000)를 포함한다.
- 시장·군수가 한계농지를 조사하고, 이를 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 고시할 사항은 한계농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으로 한다.

〈한계농지정비지구 지정·고시〉

가. 한계농지정비지구 지정요건

- 한계농지의 기준에 부합되는 농지와 그 주변산지 등의 토지를 포함하여 지구별 최대면적은 10만제곱미터이하로 하고
 - 토지중 농지(한계농지를 제외한다)의 면적은 전체면적의 100분의 10미만으로 함.
 - 다만, 농림수산업을 위한 농지·시설의 경우 농지의 최소정비규모는 3천제곱미터로 하고 10만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있음

나. 한계농지정비지구 지정 신청서류

- 사업시행자가 정비지구의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한계농지정비지구 지정 신청서(별지 제3호서식)에 예정지의 위치도(축척 : 1/5,000, 축적 1/5,000이 없는 지역은 1/1,200 또는 1/3,000)와 다음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
 - 지구의 명칭
 - 사업시행예정지의 위치
 - 지구 지정의 필요성
 - 사업의 종류 및 대상면적
 - 주변지역에 대한 환경영향과 피해 예방대책
 - 관련법상 제약요건에 대한 대책 등 기타 지구지정에 필요한 사항

다. 한계농지정비지구 지정시 시장·군수 또는 도지사의 검토사항

- 한계농지의 해당여부를 판단하고, 농업진흥지역, 보전임지, 도시계획구역, 자연생태계보전지역, 상수원보호구역 등은 관계법령에 따라 신중히 검토
- 정비지구지정구역내 및 인접지 토지소유자 등의 호응도(적극적 참여 및 개발의지)
- 사업시행을 위한 토지의 용도변경(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가능성과 토지소유권 또는 토지사용 동의, 사업추진의 용이성, 효율성과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환경성 검토 및 수도권정비법, 건축법 등의 제한여부를 검토
 - 한계농지정비지구를 지정할때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환경성검토서를 작성하여 관할 시·도의 환경부서와 사전협의

- 생산기반정비, 축산단지조성사업 등 타부문 개발계획유무 및 연계성
- 정비지역주변의 사회기반시설(도로, 상·하수도 등) 계획(구상 포함)
- 주변경관의 훼손과 경사지의 산사태 등 발생가능성, 환경보전과의 조화
- 한계농지 등 정비지구 지정은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는 범위내에서 함

라. 한계농지정비지구 지정 및 고시

(1) 시장·군수의 필요성에 의한 지정 및 고시

- 시장·군수는 한계농지등 중에서 정비가 개발의 타당성이 있고,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지역을 한계농지정비지구로 지정할 수 있음
- 시장·군수가 한계농지정비지구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토지이용계획, 시설종류 규모와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고시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 또는 해제하고자 할 때에도 같음
 - 다만, 한계농지정비지구의 명칭, 정비지구면적의 10% 미만의 변경, 정비지구 안에서의 시설물의 위치조정 등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승인을 거치지 않음.

(2) 신청에 의한 한계농지정비지구 지정 및 고시

- 한계농지정비지구로 고시되지 않은 한계농지 등을 정비하고자 할 때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당해 시장·군수에게 한계농지 정비지구의 지정을 신청함.
- 시장·군수는 한계농지정비지구 지정에 따른 관련법 및 지역개발 계획과의 관계, 정비지구 지정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당 지구내 토지소유자와 인접지 토지소유자 의견수렴
- 시장·군수는 사업시행자로부터 접수된 한계농지정비지구의 지정신청서를 검토할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지구지정을 고시하고, 한계농지정비지구로 지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지구지정 신청자에게 통보함

〈사업계획수립〉

가. 한계농지 등 정비지구내의 개발계획수립

- 시장·군수는 지역개발의 필요성이 있고, 개발수요가 있을 경우 계획을 수립하고, 민간인은 시장·군수가 고시한 한계농지 정비지구 내에서 토지소유권을 확보하거나 토지사용동의를 받아 지역경관을 훼손하지 않고, 재해를 유발하지 않으며, 관계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한다.

나. 사업계획수립에 포함할 사항(농어촌정비법시행령 제72조)

- 사업지역의 위치(위치도를 포함한다)
- 사업의 종류
- 사업비(사업비 조달계획을 포함한다)
- 사업기간
- 토지이용계획
- 시설계획(규모, 배치)
- 도로, 상·하수도 등
- 주변지역에 대한 환경영향과 피해예방 대책

다. 주요법령과의 관련사항

- 한계농지정비사업의 종류 및 토지이용계획은 『농지법』의 규정에 의한 토지이용계획과 조화를 이루도록 함
- 국토이용계획의 변경에 대하여 한계농지정비지구로 지정·고시한 지역안에서 농어촌휴양자원이용이나 다목적이용으로 개발할 경우 국토이용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규모 이상은 시장·군수가 한계농지정비사업의 시행계획을 승인할 때에 국토이용계획 결정권자와 협의하여 국토이용계획을 변경하여 시행

〈사업시행〉

가. 사업시행원칙

- 한계농지정비지구로 지정·고시된 지역에 대해 도지사가 승인한 내용에 따라 사업계획을 수립·시행
 - 한계농지정비사업 시행자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이를 변경(경미한 사항 제외)하고자 할 때도 또한 같다.
- 정비사업 사업계획수립시에는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국토훼손을 방지하고,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환경관련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준수
-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경사지 붕괴 등 산사태 방지

나. 용지매수 및 보상

- 용지매수 및 보상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등 보상 관련법령이 규정하는 바에 의하여 집행

다. 조사설계 및 공사감리

- 사업시행자는 해당사업의 종류에 따라 관계법률에서 규정하는 자격이 있는 자로 하여금 측량·조사설계 및 공사감리를 하도록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농업기반공사 등에 위탁할 수 있고, 이때 위탁비용은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별표5의 측량·설계 및 공사감리의 위탁요율을 적용

라. 준공검사

- 사업시행자는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지체없이 사업시행인가권자 또는 시행계획 승인권자에게 준공검사를 받아야 함
- 준공검사시 제출해야 할 서류 및 도면
 - 사업의 명칭, 시행전후 면적조서(용도별), 시설규모, 사업비, 시설물배치 및 시설현황도, 준공도서(준공사진 포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될 토지 등의 내역서, 향후 시설이용 및 유지관리계획
 - 사업시행자와 시·군에서 시공전, 시공중, 준공후의 사진을 첨부한 시설물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비치
- 정비사업계획 승인권자는 준공검사 결과를 한 후 정비사업의 시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함.

마. 정비한 토지의 분양시 특례

- 농어촌정비법 제8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계농지정비사업으로 조성된 농지와 농촌주택(택지) 등에 부속된 농지를 분양·임대할 경우에는 농지 매매 등에 관한 제약을 받지 아니함

바. 선수금

- 사업시행자는 사업진도가 30% 이상인 때에는 그가 개발하는 토지 또는 시설물을 분양받거나 이용하려는 자로부터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음.

<행정사항>

가. 사후관리

- 한계농지 등의 정비사업으로 조성된 농업기반시설은 사업시행자가 관리하거나 시·군 또는 농업기반공사로 이관하여 관리·운영
- 농어촌휴양자원개발, 다목적이용사업으로 조성된 도로, 상·하수도와 그 부대시설 등 기반시설은 당해 시장·군수에게 인계하거나 사업시행자가 관리 관리

나. 보 고

- 한계농지조사·고시현황 보고(별지 1호 서식)
- 한계농지 등 정비지구 지정·고시현황 보고(별지 2호 서식)
- 사업계획(변경) 및 준공결과 보고(자체심사가26-50)
- 사업추진상황 보고 : 매년 6월·12월말 추진실적을 익월 10일까지 보고

6. 2003년도 한계농지정비지구 신청 안내

가. 신청서 제출기관 : 시장·군수

나. 신청자격

- 공공기관과 사업하기 위한 토지를 소유하거나 토지소유자로부터 토지사용 동의를 받은 민간인

다. 신청절차

- 사업신청자격자가 한계농지와 주변토지에 대한 정비사업계획을 우선 수립
- 지구지정 승인요청 : 사업시행자→시장·군수 → 도지사(승인)
- 지구지정 지정승인 : 도지사 → 시장·군수
- 지구지정 및 고시 : 시장·군수 → 사업시행자

라. 구비서류

- 한계농지정비지구 지정신청서 (별지 3호서식)
- 위치도(축척 : 1/5,000, 1/5,000가 없는 지역은 축척 1/1,200 또는 1/3,000)
- 사업목적, 사업종류, 주요사업내용 및 사업기간
- 사업비추정액 및 조달방안
- 정비지구 편입토지조서(지번, 지목, 지적, 소유자)
- 지구내 토지소유자 및 지구와 연결한 토지소유자의 지정에 대한 의견
- 기타 지구지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별지 제1호서식]

한계농지고시 현황

(면적단위 : m²)

위 치			고시		대표 지번	필지 수	면적					한계농 지형태
시·군	읍·면	리·동	번호	일자			계	논	밭	과수원	기타	

※ 작성기준

- 집단단위로 작성하고
- 한계농지형태란에는 경사도 15%이상은 「경사지」로, 2ha미만은 「소단지」로 표기

[별지 제2호서식]

한계농지등 정비지구 지정 현황

(면적단위 : m²)

위 치			고시		지구명	대표 지번	필지 수	면 적						비고
시·군	읍·면	리·동	번호	일자				계	논	밭	과수원	임	기타	

한계농지정비지구 지정 신청서			
신청자 (사업시행자)	주소		
	대표자성명(법인명)		
지구현황	지구의 명칭		
	위치	○○시군 ○○읍면 ○○리동 ○번지의외 ○필지	
	지구면적 (㎡)	계 ○○㎡(한계농지 ○○㎡, 기타 ○○㎡)	
지목별		논 ○○, 밭 ○○, 임야 ○○, 기타 ○○	
지정목적 및 사업종류	지정목적		
	사업의 종류		
사업비		사업기간	~ 년
지구지정의 필요성 (사업시행효과)			
주요사업내용			
지구내 토지소유자 및 권리관계			
<p>농어촌정비법 제8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계농지 정비지구 지정을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200 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신청자 인</p> <p>○○ 시장·군수 귀하</p>			
첨부서류 : 관련서류			

한계농지정비사업 추진동의서

_____ 귀하

1. 귀 시.군(귀사)에서 농어촌정비법에 의거 추진하고자 하는 한계농지 등의 정비사업에 동의하며 귀 시.군 (귀사)에서 선정한 대상지구에 본인 소유의 다음 토지 및 지장물이 포함되어 있는바,
2. 향후 본인 소유 토지 또는 지장물이 한계농지정비지구에 편입될 때에는 공공용지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등 관련 법령에 따라 감정보상액으로 매각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 치			지 번	지 목	지적,가 옥,건물	편입예정 면 적	비 고
시.군	읍면동	리					

200

승 락 자 주 소 :
성 명(한자) :
주민등록번호 :

①

심사제외

○○지구 한계농지정비사업 추진상황보고

(단위 : 백만원)

위 치			지구명	사업목적	사업 기간	총계획	전년까지	금 년		누계진도 (%)	이 후
시군	읍면	리동						계획	실적		
					○○년~ ○○년						

52	농가경영안정지원(자율)
----	--------------

① 농·축산경영자금 지원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협동조합과(과장 이양호, 사무관 김호성)입니다.

1. 목 적

- 정부가 농업인에게 농업경영비의 일부를 저리로 지원함으로써 농·축산 농가의 농업경영을 원활하게 하고 농가소득 증대 도모
- 재해 농·축산농가에게 저리의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경영비부담을 덜어 주어 신속한 재활기반 구축에 기여

2. 시책 및 추진방향

- 벼 농사 위주의 농가에 대한 일반농업경영자금 지원
- 과수, 채소, 잠업, 원예 등 특작농가에 대한 전문농업경영자금 지원
- 부업규모의 축산농가에 대한 일반축산경영자금 지원
- 재해 농·축산농가에 대한 재해대책자금 지원

3. 근거법령

- 농업농촌기본법 제4조 및 축산법 제3조
- 농업경영자금운용요령(농림부 훈령 제 호)

4. 연도별 지원실적 및 계획

(단위 : 억원)

	'98	'99	2000	2001	2002	2003 (예산안)
총 지원규모	44,700	44,700	44,700	44,700	38,310	37,600
재특회계예산	4,233	640	990	1,307	2,133	2,702

5. 2003년도 사업시행요령

<사업개요>

가. 자금별 사업내용

① 일반농업경영자금

- 지원대상 : 벼농사 위주 농가
- 자금용도 : 벼농사 위주 농가의 종자, 자재, 노임 등의 농업경영비
- 지원금액 : 자금연도별로 농가당 1,500만원 이내, 법인 및 단체는 3,000만원이내(전문농업경영자금 포함)
- 지원조건 : 당해연도 12월말까지, 연리 4.0%

< 농업진흥지역 특별경영자금 >

- 지원대상 : 진흥지역 쌀생산농가 및 법인·단체
- 자금용도 : 진흥지역 쌀생산농가의 농업경영비

② 전문농업경영자금

- 지원대상 : 보리등 맥류, 과수, 채소, 원예, 특작농가
- 자금용도 : 종자, 자재, 노임등 농업경영비
- 지원금액 : 자금연도별로 농가당 1,500만원이내, 법인·단체는 3,000만원이내(일반농업경영자금 포함)
- 지원조건 : 1년이내, 연리 4.0%. 단, 인삼식재농가에 지원되는 신규인삼식재자금은 수확시기를 감안하여 연근별로 5년이내까지
- ※ 전문농업경영자금중 인삼분야 신규인삼식재자금은 당해연도 신규인삼식재면적이 900평이하인 농가를 대상으로 하여 자금연도별로 농가당 450만원이내에서 대출하되, 일반·전문농업경영자금을 포함하여 연간 1,500만원이내 지원
- ※ 신규인삼식재면적이 900평을 초과하는 농가라도 당해연도 농업종합자금을 지원받지 않은 경우에는 신규인삼식재자금 지원가능

③ 일반축산경영자금

- 지원대상 : 부업규모 축산농가 및 농업경영종합자금을 지원받지 않은 준·전업 축산농가
- 자금용도 : 사료구입비, 동물약품비등 축산경영비

- 지원대상 축산규모 : 아래규모의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부업규모의 축산농가
 - 한(육)우·젖소 : 30두 미만, 단, 한우의 번식우 및 말은 20두 미만
 - 돼지 : 500두 미만, 닭 : 1만수 미만, 기타가축
- 지원금액 : 축산농가당 사육두수에 따라 10백만원이내(대출잔액 기준)

구 분	5백만원이내	10백만원이내
한(육)우·말	10두미만	10두이상
젖 소	20두미만	20두이상
돼 지	100두미만	100두이상
닭	7,000수미만	7,000수이상
기타가축	상기 사육두수를 감안 운용	

- 지원조건 : 1년이내(필요한 경우 1년범위내 연장가능), 연리 4.0%
- 우수농가 우선지원 : 읍자협의회 심의·결정시 축산시책에 적극 호응한 우수축산농가에게 자금 지원의 우선권 부여
 - 가축질병예방 : 구제역 일제소독등 공동방역 참여, 예방접종실시, 차단방역, 가축수송 차량소독실시, 방역일지기록, 전염병 발생신고 및 검진협조
 - 품질개선 : 규격돈 생산출하, 거세축 생산, 종축등록, 우수축 출하
 - 부존자원활용 : 초지조성, 사료작물 재배, 벼짚이용, 남은음식물 사료화
 - 기 타 : 집유일원화참여, 송아지생산안정사업 참여, 축산분뇨자원화, 경영장부기록유지, 축사시설현대화 등

④ 재해대책경영자금

-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 농림부장관이 재해대책의 일환으로 상환연기 또는 특별 지원키로 한 재해농가와 그 해당금액
- 지원조건
 - 법령에 의한 재해 : 1~2년 상환기간 연장 및 이자감면
 - 법령에 의하지 않은 재해 : 1년이내(필요한 경우 1년범위내 연장가능), 연리 4.0%

<법령에 의하지 않은 재해>

- o 지원대상 : 시장·군수가 본 자금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법령(농어업재해대책법 및 자연재해대책법)에 해당하지 않는 자연재해 및 기타사고
 - 기타사고의 유형 : 화재, 정전, 붕괴, 도난, 폐사 등

- 기타사고의 경우 고의성 유무를 철저히 조사한 후 선의의 피해자에 한하여 지원대상자로 선정
- 피해율이 30%이상 재해농가 및 법인
- 재해로 인한 농업종합자금을 지원 받은 농가는 지원제외(재해이전에 농업종합자금 또는 농축산경영자금을 지원 받은 경우에는 지원가능)
- o 지원금액 : 호당 100만원 ~ 5천만원이내
 - 지원액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지원대상자에서 제외하고, 법인의 경우 1억원까지 지원가능
 - 호당 지원금액 : 연간경영비의 50%범위내 지원
- o 지원대상자 선정방법
 - 피해농가가 시장·군수에게 재해대책자금 지원을 요청
 - 시장·군수는 지역농·축협 또는 품목조합(축산계)과 공동으로 피해원인과 피해 규모 등 피해조사를 실시하여 동 자금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 농협 지역본부장에게 자금지원을 요청
 - 농협 지역본부장은 중앙회장에 자금지원 요청
 - 농협중앙회장은 재원의 범위내에서 지원액을 결정, 지역본부장에게 통지하고 농림부에 보고
 - 대상자 선정 우선순위 : 지원 우선순위는 법령에 의한 재해, 지원금액이 적은 농가부터 하되 피해율이 50%이상인 농가 우선지원

나. 2003사업비(예산안)지원계획

자금명	사 업 비					
	계	국 고 용 자			지방비	자부담
		계	용자	보조		
농축산경영자금	37,600억원	37,600	37,600			

※ 예산액은 총지원규모 기준임

< 추진체계 >

가. 사업주관기관 : 농림부 협동조합과(02-500-1697)

나. 사업담당부서 : 농협중앙회

다. 대상자 선정

- o 일반/전문농업경영자금은 농가가 마을영농회를 통하여 지역농협과 품목조합(축산계 제외)에 신청하고 조합용자협의회에서 영농여건 등을 감안하여 선정함을 원칙
- o 일반축산경영자금은 축산농가가 지역축협과 품목조합(축산계) 또는 축산계장(또는 대의원)에게 신청하고 조합용자협의회에서 대상자 협의조정 또는 선정함을 원칙

- 조합은 관내 축산계장이나 대의원과 협의하여 조합실정에 맞는 읍·면·동 또는 시·군·구 단위 용자협의회를 선택하여 운영
- 용자협의회 구성 및 지원대상자 선정방법 등 세부적인내용은 농협중앙회장이 정하여 시행

라. 사업시행

- 사업계획 수립
 - 농림부에서 연간사업별 운영계획을 수립, 농협중앙회에 시달
 - 농협중앙회에서 구체적인 용자취급방침을 수립하여 계통조직을 통하여 지역(품목)조합까지 시달
 - 지역(품목)조합에서 자체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운영
- 사업비 지원방법
 - 농림부에서 사업별·분기별 배정계획을 수립하여 시달하고, 자금소요시기에 따라 자금 배정
 - 농협중앙회에서 계통조직을 통해 지역별 또는 조합별로 영농여건 및 소요자금을 감안하여 자금 재배정
 - 지역(품목)농협에서 영농여건을 감안하여 지원계획 및 배정기준에 따라 농가 및 경영체에 자금배정

< 행정사항 >

가. 사후관리

- 농축산경영자금지원사업시행지침 등에 의해 정책자금이 효율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농림부가 지도·감독
- 정책사업 목적과 상이하게 지원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회수 조치
- 농협중앙회장은 본 지침의 범위내에서 세부집행계획을 수립 시행

나. 보고사항(농협중앙회 → 농림부)

- 농축산경영자금운용계획 세부지침 보고
- ※ 사업종류별 세부운용 지침 수립보고

○ 농축산경영자금 배정결과 보고(월별)

자체가 26-15

(단위:억원)

시도별	계			사 업 별		
	기배정	금차배정	배정누계	기배정	금차배정	배정누계

○ 농축산경영자금 용자실적 보고(월별)

자체가 26-14

(단위:억원)

	지원 규모	○년 ○월○일 현재			전년동기(○월○일)		
		자금 배정	대출 실적	대출 비율	자금 배정	대출 실적	대출 비율
계							
일반농업경영자금등							

6. 사업신청 안내

- 농림부 협동조합과(농축산경영자금, 02-500-1697)
- 농협중앙회 농업금융부(02-397-5988)
- 농협지역본부 농업금융팀
- 농협시·군지부, 지역 농·축협 및 품목조합
- 신청방법 : 일반·전문경영자금은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영농회를 통하여 지역농협과 품목조합에 신청하고, 일반축산경영자금은 지역축협과 품목조합(축산계)에 신청

7. 대출실행 및 채권보전

- 『농림수산정책자금대출업무규정』 및 농·축협 여신관련 제규정에 의하되 『농림수산정책자금대출업무규정』의 신용대출 한도범위내에서는 신용대출을 원칙으로 함
- 대출제한대상
 - 농·축협 여신관련 제규정에서 정한 대출부적격자(다만, 단순 보증채무 연체거래자는 대출가능하며, 특수채권보증채무자로 등록된 자는 대출대상에서 제외)
 - 지원대상자라 하더라도 사업중단자로 확인된 자(비농업인·법인과 비양축가·법인)
 - 농협중앙회 및 농·축협 상근임직원(조합장, 계약직 직원포함)
 - 재해대책자금중 기타사고의 경우 고의로 사고를 유발한 자
 - 자금을 농업법인·단체에 대출한 경우 농업법인·단체의 출자자 또는 임원개인의 경영자금
 - 농업종합자금중 운영자금을 지원 받은자
 - 기타 이 지침 등에 의거 대출이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자
- ※ 대출포기, 대출불가능한 자 등 발생시에는 차순위 자로 대출실행

② 농업인 경영회생지원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협동조합과(과장 이양호, 사무관 김오영)입니다.

1. 목 적

- 건실하게 농업을 영위하다가 재해, 가격폭락, 질병 등 외부 충격으로 일시적 경영위기에 빠진 농업경영체가 경영위기를 벗어날 수 있도록 경영안정에 필요한 회생자금을 지원하여 건실한 농업경영체를 육성하기 위함

2. 시책 및 추진방향

- 회생가능여부를 심사하기 위한 경영평가위원회 설치
- 평가결과 대상경영체 유형에 따라 자금 지원
 - 회생가능 경영체 : 경영회생자금 지원
 - 회생불능 경영체 : 인수희망자에게 자금지원하여 기존 농업시설 활용

3. 근거법령

- 농업농촌기본법 제4조(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농업인의 책무) 및 동법 제17조(농업인의 경영혁신 및 자금지원)

4. 연도별 지원실적 및 계획

- '03년도 신규사업으로 사업추진 성과를 평가하여 '04년이후 지원계획 확정
(단위 : 백만원)

	'03(예산안)	'04	'05	'06	'07
총 지원규모	50,000	-	-	-	-
일반회계 이차보전 예산	1,100	-	-	-	-

5. 2003년도 사업시행요령

<사업개요>

가. 지원대상 농업경영체

- 건실하게 농업을 영위하다가 재해, 가격폭락, 질병 등 외부충격으로 일시적 경영위기에 처한 전업농 규모이상 경영하는 농업경영체중에서 경영평가결과, 회생 가능한 경영체 (농업인,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 전업농 규모 기준 : 첨부 1
 - 예) 미곡 3ha, 과수 1.5ha, 화훼시설 1,200평, 한우 50두, 젖소 30두(착유), 돼지 1,000두, 닭·오리 30,000수
- 상기요건에 해당하는 농업경영체중 자금지원 받기를 희망하는 농업경영체는 거래조합에 자금 지원을 신청

나. 경영평가 실시

- 농협중앙회(지역본부, 시·군지부)에 회생가능 여부를 심사하기 위한 경영평가위원회를 설치
- 자금지원 신청을 받은 협동조합에서 1차 사전 심사후 지원신청 금액에 따라 농협중앙회 지역본부, 시·군 지부에 설치된 경영평가위원회에서 정밀경영평가 실시
- 경영평가 결과 정상경영체, 회생가능경영체, 회생불능 경영체로 유형별로 구분
 - 경영회생 가능여부 판정기준 : 첨부 2

다. 지원 방안

- 지원대상 경영체 유형에 따라 자금지원
 - 회생가능 농업경영체 : 경영 회생자금 지원
 - 회생불능 농업경영체 : 인수 희망자에게 자금 지원하여 기존 농업시설 활용
 - 다만, 연체 및 이자지연 금액은 대출취급 기관이 동 금액면제

- 지원한도 : 경영안정에 필요한 최소자금
 -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은 출자(자본금) 증대 등 자구노력을 해야 하고, 개별농가는 과거 경쟁력 제고사업 기준을 감안하여 소요자금 판단
 - 다만, 부실경영체 인수희망자에 대하여는 인수에 소요되는 자금
- 지원비율 : 소요자금을 지원하되, 융자 90%이내, 자부담 10% 이상을 부담하는 경영체 우선지원
 - 자부담 투입으로 책임있는 경영체 회생을 유도하고, 자구노력을 강화
- 지원규모 : 500억원(2003년)
- 지원조건 : 연리 4%(이자는 1년후취), 3년거치 5년이내 분할상환
- 재원조달 : 농협중앙회 자금(정부는 중앙회에 이차보전 실시)
- 지원대상자금
 - 지원 신청일기준 1년 전부터 향후 1년이내 상환도래(된) 원리금(연체대출금 포함)
 - 농협중앙회·산림조합중앙회 및 그 회원조합의 농업용 자금
 - 제외대상자금 : 경제사업채무, 비농업용 자금, 타금융기관, 사채, 일반 사료대금 등 외상대금
 - 시설 또는 품목(가축) 피해복구자금
 - 보조 또는 재해복구자금으로 지원되는 자금 제외
 - 1년이내 신규 운영자금
- 지원방법
 - 경영체 회생지원 사업지침 시달 : 농림부
 - 경영체 회생지원 사업 세부지침서 시달 : 농협중앙회
 - 지원신청자는 자구계획 등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대출기관에 제출 : 해당 농업경영체
 - 경영상태 및 자구계획서 평가, 자금지원 규모 결정 : 경영평가위원회
 - 자금지원 및 사후관리 : 대출취급기관(협동조합)
 - 인수자금의 경우 정책사업대상자 변경승인 : 사업주관기관

<사업 세부추진계획>

가. 경영평가 실시

□ 경영평가위원회 구성·운영

- 농협중앙회 시군지부·지역본부에 설치
 - 신청규모에 따라 상위기관에서 심사
· 시·군지부 1억원까지, 지역본부 1억초과
- 구 성 : 10명내외 위촉(전문가, 농업인, 공무원, 협동조합 관계자 등)
 - 부채있는 대출취급 기관의 관계자는 해당 기관에 부채있는 농가에 대해 부채심사시 상시 포함
- 임 무
 - 경영평가단에서 평가한 경영상태 유형, 자구계획 평가결과, 경영체 가액 및 자금지원계획 심의 확정
 - 자구계획 보완지시 및 이의신청에 따라 재심 등
- 중앙회 및 대출취급기관은 현장평가 등을 위해 경영평가단을 구성·운영

□ 평가 내용

- 평가사항
 - 재무상태, 경영능력, 기술수준 등 경영상태파악에 필요한 요소
 - 자구계획의 현실성
 - 회생자금 또는 인수 및 운전자금지원시 소요자금의 규모
- 평가유형
 - 정상경영체 : 추가지원 없이 정상경영이 가능한 경영체
 - 회생가능경영체 : 경영위기에 처해 있으나 자금지원으로 회생이 가능한 농업경영체
 - 회생불능경영체 : 지원하여도 회생이 불가능한 경영체(구조 조정대상 경영체)

나. 유형별 자금지원

< 회생가능 경영체 : 경영 회생자금 지원 >

□ 대 상

- 경영평가결과 자구계획 이행과 추가지원시 회생가능 경영체로 판정된 농업경영체

□ 지원 방안

① 신 청

- 경영체 회생 자금지원 희망경영체는 자구계획서를 첨부하여 대출기관(일선조합)에 신청

② 대출기관의 사전심사

- 대출기관은 자구계획서의 이행가능성 여부 등 신청인의 경영상태를 1차 심사한 후 그 결과를 첨부하여 신청규모별로 경영평가위원회(지역본부, 시·군지부)에 정밀평가 의뢰
- 조합 사전심사결과 회생 불가능으로 판정된 자는 경영평가위원회에 정밀평가 의뢰 생략하고 바로 신청인에게 통보

③ 경영평가위원회의 정밀평가 심의

- 시·군지부 등에 설치된 경영평가위원회는 조합심사결과와 현장실사 자료를 기초로 대상자 심사
- 경영상태 및 자구계획의 이행가능성 등을 정밀평가하여 자금지원 여부 및 규모를 결정

④ 자금지원

- 시·군지부 등에 설치된 경영평가위원회는 심사결과를 일선조합과 신청 농업인에게 통보
- 대출취급기관은 경영평가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자금지원
 - * 연체 농업경영체라 하더라도 경영평가위원회에서 경영회생이 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연체해소 후 경영회생 자금을 지원하여 경영안정도모

< 부실경영체로서 인수 희망자가 있는 경우 : 인수 및 운영자금지원 >

□ 대 상

- 해당 농업경영체에게 자금을 추가지원하여도 경영회생이 불가능하나 타인이 인수하여 본래의 농업용으로 정상경영이 가능한 경영체

□ 지원 방안

① 신 청

- 인수 희망자는 인수 및 운영계획 등을 수립하여 대출기관(일선조합)에 제출

② 대출기관 사전심사

- 대출기관은 인수 및 운영계획 등 신청인의 경영상태를 1차 심사한 후 그 결과를 첨부하여 경영평가위원회에 정밀평가를 의뢰

③ 경영평가위원회의 정밀평가 심의

- 경영상태, 인수 및 운영계획 등을 정밀평가하여 인수자금 지원여부 및 규모를 결정, 사업주관기관(시·군)에 통보
- 인수 희망자가 2인 이상인 경우, 평가결과에 기초하여 지원 우선 순위를 결정
 - * 제3자 인수자금을 신청하였으나 경영평가결과, 회생가능한 경영체로 판정된 경우에는 본래의 경영주에게 경영체 회생자금 지원이 가능함을 통보하고, 그럼에도 계속하여 매도를 희망하는 경우 인수자금 지원 (단, 정상경영체인 경우는 제외)

④ 자금지원

- 시·군지부 등에 설치된 경영평가위원회는 심사결과를 일선조합과 신청 농업인에게 통보
- 대출기관은 경영평가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인수자금지원

⑤ 정책사업 대상자 변경승인

- 대출기관은 사업주관기관(시·군)에 요청하여 보조 및 융자정책자금 승계 조치

<행정사항>

가. 사후관리

- 대출기관에서는 반기당 1회이상 자구계획, 인수·운영계획 등 이행상황 점검

나. 제재조치

- 점검결과 자구계획, 인수 및 운영계획 등을 불이행하는 농업경영체에 대하여는 자금지원을 중단하고 기 지원된 자금도 회수

다. 보 고

- 농협중앙회는 매월 말 기준 자금지원 등 진행상황을 다음달 20일까지 농림부 협동조합과로 보고

라. 농신보·대손보전 및 정책자금 대출업무 관련

-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서로 동 자금을 지원받을시 보증비율은 90%임(부분보증제 도입)
- 동 자금은 농림수산정책자금 대손보전기금의 보전대상(90% 보전)
- 동 자금은 농림수산정책자금대출업무규정 제6조(신용대출)에 의한 신용 한도 예외 사업임

<추진체계>

가. 사업주관기관 : 농림부 협동조합과(02-500-1698, 1699)

- 기본시행지침 시달, 자금배정, 지침보완 등 총괄업무

나. 사업담당부서 : 농협중앙회 농업금융부(02-397-5991, 598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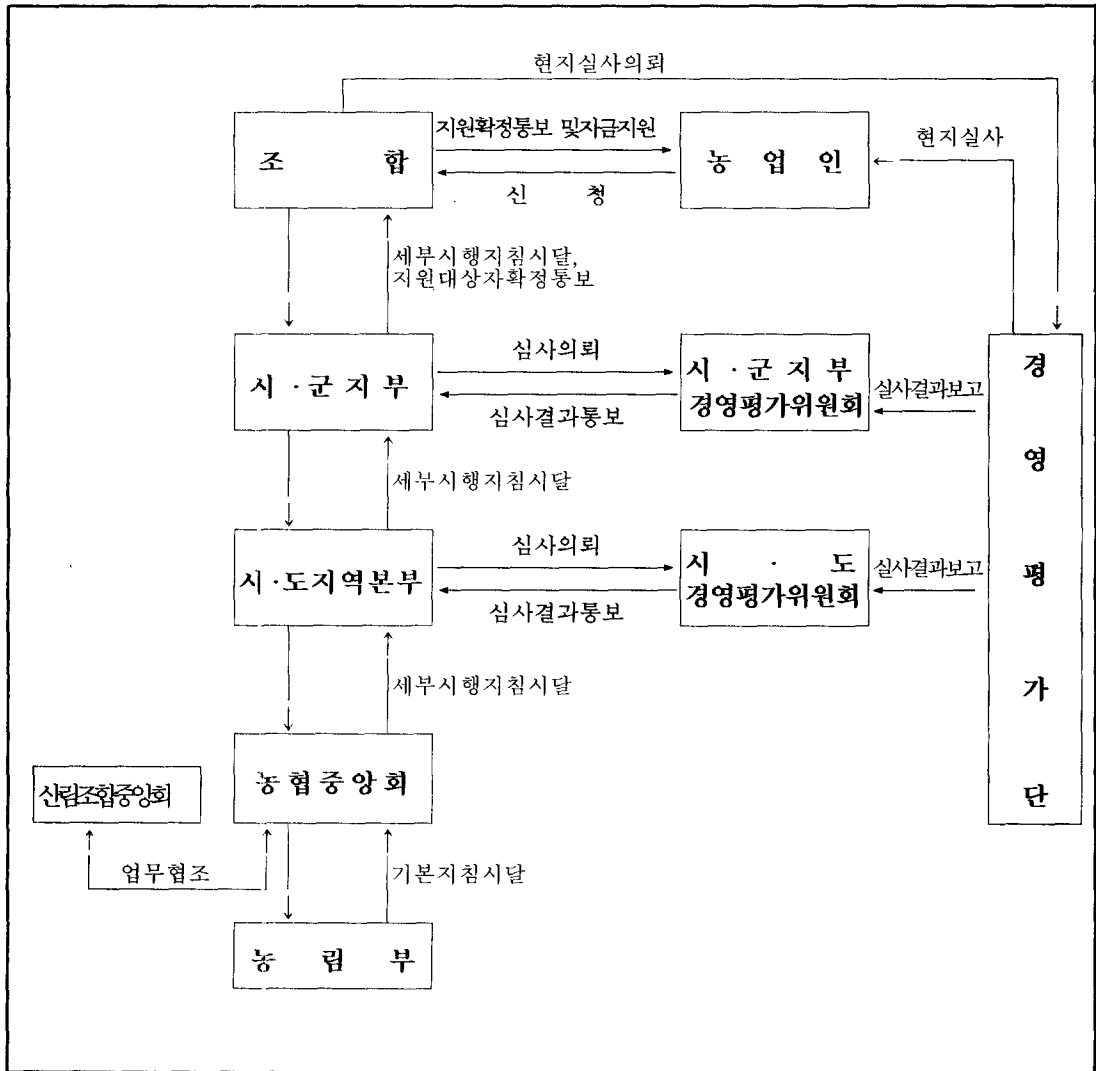
- 경영평가위원회 및 경영평가단 구성·운영 등 협동조합 책임하에 농업경영체 회생자금 지원방안 세부 지침 마련
 - 자구계획서, 인수 및 운영계획, 지원여부 및 금액결정 등

다. 대출기관

- 자구계획서, 인수 및 운영계획 사전심사
- 대출실행 및 사후점검 등

지 원 체 계 도

농업인 신청 → 대출취급기관 1차 심사 → 경영평가위원회에 보고
→ 현장실사 → 경영평가위원회에서 지원결정



<첨부 1>

품목별 일정규모 기준

품 목	규 모	비 고
미 곡	3ha 이상	
밭작물(식량류)	3ha 이상	
채 소		
- 노지채소	2ha 이상	
- 시설채소	1,800평이상	○ 유리온실은 600평이상
과 수	1.5ha 이상	○ 시설일 경우 시설채소 기준
화 훼		
- 절화류	시설 1,200평 이상	○ 유리온실은 400평 이상
- 분화류	시설 900평이상	○ 유리온실은 300평 이상
특용작물		
- 느타리버섯	200평	○ 기타버섯 품목
- 양송이버섯	300평이상	- 병 재배시설은 팽이버섯 규모기준을 따름
- 팽이버섯	120평이상	- 균상 재배시설은 느타리버섯 규모기준을 따름
- 약용작물	3ha 이상	
- 인 삼	3ha 이상	
축 산		
- 한 우	50두 이상	기타 가축은 한우소득기준의 규모에 따름
- 젓 소	30두 이상	착유마리수 기준
- 돼 지	1,000두 이상	모든 기준으로 100두 이상
- 닭, 오리	30,000수	
산 립		
- 산림경영	조림면적 10ha이상	
- 묘목생산	1,000평이상	
- 밤	2.5ha이상	

※ 위 복합영농일 경우 농산물 판매금액이 2천만원 이상일 경우도 전업농규모에 해당

- 일정규모 : 전업농 규모를 기준으로 작성(통계관실 자료)

<첨부 2>

경영회생 가능여부 판정기준

□ 경영평가위원회는 농업인의 지원신청서를 토대로 경영회생여부 판단

- 세무 심사표 등은 농협중앙회의 세부시행지침에 정하되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중점 평가항목 >

- 재무구조의 건전성
- 사업내용의 타당성 및 수익성
- 경영능력, 성실성, 세평 등

□ 중점 평가항목별 세부점검 내용

- 재무구조의 건전성
 - 농업인 소유 재산과 부채를 비교
 - * 재산내역 조사항목 : 부동산, 기계장비, 재고품, 예·적금 등
 - * 부채내역 조사항목 : 은행대출금, 사채, 외상구입잔액 등
- 사업의 수익성 비교
 - 농업인의 연간 순소득으로 금차 구조정자금 지원시 금융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
 - 총 소득대비 부채비율 조사
- 경영능력, 주변 세평 등 평가
 - 경영장부 기장여부, 출하방법, 해당작물 재배경험, 농업관련 지식수준, 교육훈련 실적, 품목인지도 등
 - 성품, 영농의욕, 해당 농업인에 대한 주변세평 등
- 기타, 특이 경력이 있는 농가에 대한 가점
 - 신지식 농업인, 선도농, 후계자, 농업관련 전국단위 표창수여자, 시장·군수가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권장하는 품목재배자 등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농촌진흥과(과장 조무희, 서기관 조홍제)입니다

1. 목 적

- 농촌지역에 농공단지를 조성, 공장을 유치하여 농가소득증대와 농촌지역 경제 활성화 도모

2. 시책 및 추진방향

- 수요자중심의 농공단지 지정 및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한 지원
 - 부지조성비 지원확대, 계열화 및 전문단지육성, 세제, 금융 등 지원
- 중장기목표 : 2014년까지 400개소(2004까지 312개소) 조성

3. 근거법령

-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5조, 농어촌정비법 제85조의3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92 - 2000년	2001년	2002년	2003 (예산안)	2004이후	
사업량(개소)	54	4(-)	4(4)	11(8)	86	
사업비	계	404,083	7,900	8,456	17,533	384,541
	국비보조	100,275	2,900	5,434	13,161	138,053
	국비융자	93,803	1,058	1,712	1,479	59,632
	지방비	210,005	3,942	1,310	2,893	186,856

※ ()외서는 계속지구

5. 2003년도 사업시행 요령

<사업개요>

가. 사업내용

- (1) 사업내용 : 부지조성비(용지취득비, 단지조성비, 부대시설 등) 지원
- (2) 지원대상 : 시장·군수가 개발하는 공영개발 농공단지 및 민간의 실수요자가 개발하는 농공단지중 전문단지 및 지역특화단지
- (3) 지정대상지역

○ 농공단지를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은 아래의 “농공단지 지정대상 농촌”지역의 시·읍 및 시·읍과 연결한 면지역으로 함(다만, 그외의 면지역도 도지사가 인력수급 및 기반시설 등이 양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지정가능)

농공단지 지정대상 농어촌

시도	일반 농어촌	추가지원농어촌	우선지원농어촌
강원	원주시(1)	강릉시, 춘천시, 삼척시, 횡성군(4)	속초시, 태백시,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양양군, 평창군, 정선군, 영월군, (12)
충북	충주시, 음성군, 진천군, 청원군(4)	제천시, 단양군, 괴산군,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6)	-
충남	천안시, 서산시, 아산시, 당진군, 연기군(5)	논산시, 공주시, 보령시, 예산군, 홍성군, 부여군, 서천군, 금산군(8)	태안군, 청양군(2)
전북	군산시, 익산시(2)	김제시, 정읍시, 남원시, 완주군(4)	부안군, 고창군, 임실군, 순창군, 무주군, 진안군, 장수군(7)
전남	광양시(1)	순천시, 나주시, 여수시, 무안군, 영암군, 장성군, 담양군, 곡성군, 완도군, (9)	영광군, 함평군, 화순군, 장흥군, 보성군, 강진군, 해남군, 고흥군, 구례군, 진도군, 신안군(11)
경북	경산시, 경주시, 포항시 구미시, 칠곡군(5)	김천시, 안동시, 영주시, 영천시, 문경시, 상주시, 성주군, 고령군(8)	예천군, 의성군, 군위군, 봉화군, 울진군, 영양군, 영덕군, 청송군, 청도군, 울릉군(10)
경남	김해시, 거제시, 창원시, 마산시, 합안군, 양산시(6)	진주시, 사천시, 통영시, 밀양시, 창녕군, 하동군, 고성군, 합천군(8)	거창군, 함양군, 산청군, 의령군, 남해군(5)
제주	-	북제주군(1)	남제주군(1)
합계	24 (17시, 7군)	48 (23시, 25군)	48 (2시, 46군)

※도농복합형 통합시중 당초 농공단지 지정대상 지역에서 제외되었던 시지역(춘천, 원주, 강릉, 충주, 제천, 천안, 군산, 익산, 순천, 광양, 여수, 여천, 안동, 포항, 경주, 경산, 구미, 진주, 울산, 창원, 마산, 거제, 김해)은 계속 제외함

※2개의 농공단지 지정대상지역이 통합된 시(17) : 삼척, 공주, 보령, 서산, 아산, 남원, 정읍, 김제, 나주, 영천, 김천, 상주, 문경, 영주, 밀양, 통영, 사천시

(4) 지정제외지역

○경기도, 광역시, 동광양시, 장승포시 등 이미 공업화 되어 있는 시

(5) 시·군별 개발연면적 한도 및 단지당 규모

- 시·군별 개발연면적 한도 : 지정면적기준 1,000천㎡이내(2개의 농공단지 지정대상지역이 통합된 시는 1,500천㎡이내)
- 일반농어촌 및 추가지원 농어촌지역에 대하여는 입지수요의 증가등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시·군·구별 지정면적 범위를 330천㎡범위내에서 확대가능
- 단지당 지정면적 : 65~330천㎡이내

(6) 지정 및 분양

- 지정개발주체 : 시장, 군수(도농정심의회 심의를 거쳐 지정)
- 지정제한 : 시·군별로 기지정 농공단지의 미분양면적이 분양대상면적의 10%를 초과하는 경우(미분양면적 및 분양대상면적 산정시 지정후 개발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분양공고를 하지않은 농공단지면적과 입주업체가 입주계약을 체결하고 3년이내에 공장건설에 착수하지 아니한 때의 당해 공장용지 면적을 포함한다. 이때 분양대상면적이 확정되지 아니한 단지는 총지정면적을 미분양면적 및 분양대상면적으로 본다) 나 휴·폐업업체가 입주업체수의 5분의1이상인 경우 또는 분양대상면적의 4분의3이상에 해당하는 실수요자의 입주수요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 단, 대기업이 단독 또는 계열기업(수급기업을 포함한다)과 공동으로 실수요자로서 입주하기 위하여 신규로 농공단지를 조성하는 경우는 예외로 지정가능
- 분 양 : 부지조성 공정이 30%이상일 때

나. 2003사업비(예산안)내용

사업량 (개소)	사 업 비(백만원)				
	계	예 산 액			지방비 보 조
		소 계	국고보조	국고용자	
19	17,533	14,640	13,161	1,749	2,893

<추진체계>

가. 사업주관기관

- 산업자원부장관 : 농공단지 시책의 총괄, 농공단지의 관리
- 농 립 부 장 관 : 농촌의 지역별구분, 농공단지의 조성지원
- 건설교통부장관 : 농공단지의 지정 및 입지기준
- 환 경 부 장 관 : 농공단지의 환경기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지원 및 그 관리

나 사업담당부서

○ 중 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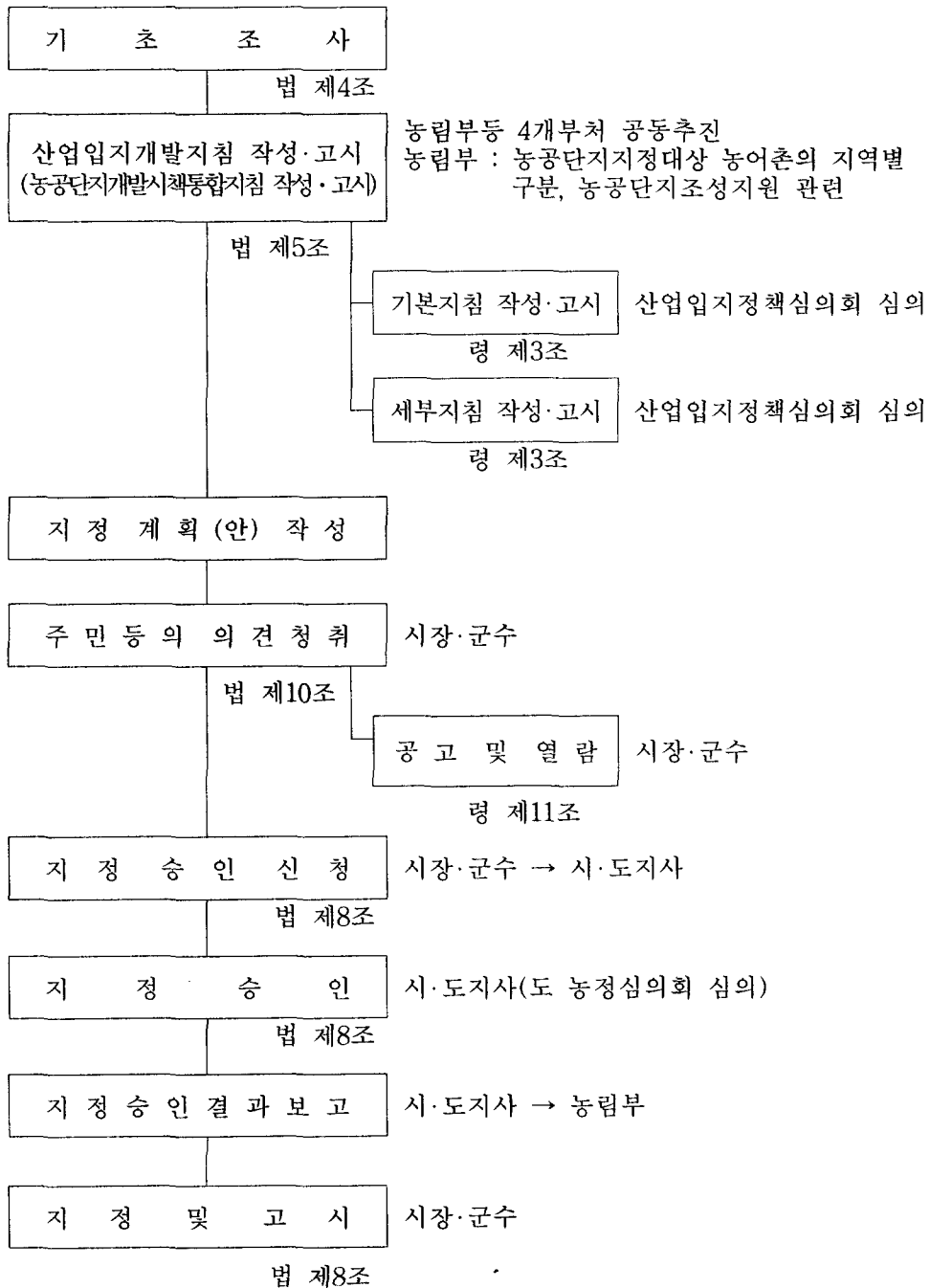
- 농 립 부 농촌개발국 농촌진흥과(02-500-1971~2)
- 산업자원부 산업정책국 산업입지환경과(02-2110-5136)
- 건설교통부 토 지 국 입지계획과(02-2110-8149-50)
- 환 경 부 수질보전국 산업폐수과(02-2110-6840-2)
- 중소기업청 벤처기업국 벤처정책과(042-481-4425)
- 시·도 : 경제통상(산업)국 경제정책과(부산·대구·제주), 경제통상과(울산), 투자
통상과(전북), 기업지원과(광주), 공업지원과(경기), 중소기업지원과
(강원), 첨단산업과(충북·충남), 산업자원과(전남), 기업노동과(경북)
- 시·군 : 지역경제(공단조성)과

다. 사업시행자 : 시장·군수

※ 기타사항은 농공단지의 개발및운영에관한통합지침(이하 통합지침)을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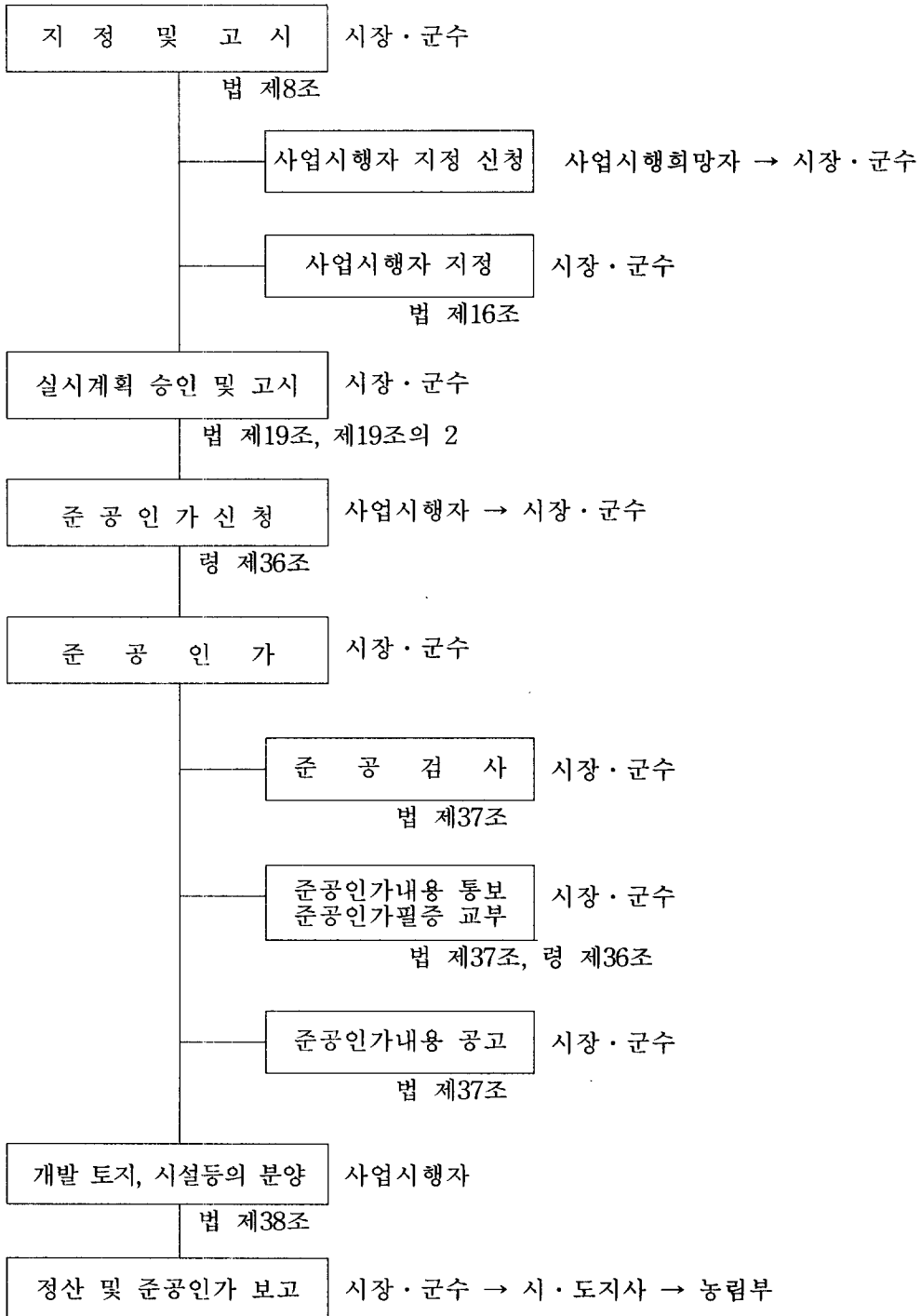
라. 사업추진절차

< 지정절차 >



※ 법 또는 령 :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령

< 개발절차 >



마. 사업계획수립

(1) 사업대상지구 선정

(가) 사업대상지구 검토

- 시장·군수는 농어촌의 균형발전 및 환경보전을 위하여 '입지제외기준'과 지형적·지역적 여건 등 사업시행의 효율화를 위한 검토기준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농공단지의 입지를 선정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을 농업기반공사에 위탁할 수 있음

(나) 농공단지 입지제외 기준

- 국토이용관리법상 자연환경보전지역, 관광휴양지 및 수산자원보전지구(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
- 도시계획법상 주거지역, 상업지역, 개발제한구역, 보전녹지지역
- 문화재보호법상 문화재보호구역
- 자연환경보전법상 자연생태계보전지역 및 완충지역
- 산림법상 임업진흥촉진지역, 채종림, 보안림, 천연보호림, 보존국유림과 산림훼손제한 지역
- 농업진흥지역(초지·임야의 편입비율은 100%까지 허용, 단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중 논은 60%까지 허용)
- 조류 및 희귀동식물의 서식처
- 관계 학술기관의 지표조사결과 매장문화재 분포가 확인된 지역
- 광역상수원 보호구역으로부터 상류측 20km이내 지역
- 일반상수원 보호구역으로부터 상류측 10km이내 지역(보호구역 미고시지역은 취수장으로부터 상류측 15km이내와 하류측 1km이내 지역)
- 저수지 등 농업용수원으로부터 수계상 상류측 5km이내 지역 (폐수배출시설이 아닌 공장은 2km이내)
- 지하수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를 상수원으로 취수하는 경우 상수원 보호구역으로부터 1km이내지역(보호구역 미고시 지역은 취수장으로부터 반경 1km이내지역)
- 하류측으로부터 조수의 영향 등이 우려되는 지역

(다) 입지선정 대상지역

- 단지내의 고저차가 20m이하이고 평균 2m이하의 성토로서 단지조성이 가능한 지역
- 경사도가 10%이하이고 경압반이 많지 않은 지역
- 진입도로의 연장이 단지면적 33천제곱미터당 100m이내인 지역
- 100m이상 교량건설이 필요하지 아니한 지역
- 동력고압선으로부터 200m이상 거리를 유지할 수 있는 지역
- 단지외 오·폐수관로 연장이 1km이내인 지역
- 단지중심 2km이내에서 취토장 및 사토장 확보가 가능한 지역
- 단지의 지정면적 대비 분양가능면적이 70%이상 확보 가능한 지역
- 농공단지 배수로가 농업용 관개·배수시설로 유입되는 경우 또는 농업용수 사용에 지장이 없는 지역일 것
- 지상보상물 및 시설이전 등을 포함하여 평당보상액이 도지사가 지역별, 시·군별로 정하는 적정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지역일 것
- 지하에 광역상수도 관로가 매설되어 있지 않거나 지상에 농업용 배수 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이전보상이 필요없는 지역일 것
- 동일생활권 안에 농공단지외의 다른 산업단지(30만제곱미터 이상의 공업 지역 또는 산업단지 지정계획이 있는 지역을 포함)가 없는 지역일 것. 다만, 인근 다른 산업단지가 분양이 완료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동일생활권 여부에 대해서는 시·도지사가 제반지역여건을 감안하여 종합적으로 판단
- 국토건설종합계획, 도·군농업·농촌발전계획, 농촌정주생활권개발계획 등 중장기 지역개발계획과 연계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지역일 것
- 농공단지 선정시에는 지역적특성을 살려 업종별, 형태별, 입지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입주예정업체가 선호하는 적정지역일것.

(2) 예정지조사

- 시·도지사는 공영개발하는 농공단지의 입지선정을 위한 현지 합동실사반에 농업기반공사,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전문기술자를 참여시켜 입지의 적정성 및 개발의 기술적 문제를 검토하게 할 수 있음
- 시·도지사는 시장·군수의 농공단지 지정승인 신청이 있는 경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입지선정기준에 의한 현지실사를 실시하고 필요시 그 결과를 서면으로 도농정심의회에 제출하게 할 수 있음

(3) 세부설계실시 및 실시계획수립

- 시장·군수는 농공단지의 공간배분, 업종별 배치, 경관보전, 지원시설의 설치 등을 고려하여 실시설계 하여야 함.

바. 사업시행

(1) 사업시행인가 및 공사발주

- 농공단지 지정 및 고시후에 시장·군수는 농공단지개발시책통합지침 제9조에 의한 사업시행희망자의 사업시행자 지정신청을 받아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고 사업시행인가 및 공사발주

(2) 공정계획

- 시장·군수는 세부사업별 공정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공사진척상황을 수시로 파악하고 공사지연시 원인을 분석하여 해결

(3) 실시계획변경

- 현지여건상 부득이하게 계획을 변경코자 할 때는 시장·군수의 승인하에 계획변경

(4) 용지매수 및 보상

- 사업추진시 편입되는 토지는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별법”의 규정에 의한 보상 수용
- 용지보상비 등은 공사비에 우선하여 지급

(5) 조사설계 및 공사감리

- 보조금이 지원되는 농공단지조성사업의 조사설계는 농업기반공사가 담당하고 시공감리는 시장·군수가 지명하는 토목직공무원 또는 농업기반공사에서 담당. 다만, 조성비 일체를 입주기업체가 부담하는 경우에는 입주기업체가 지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음
- 공영개발하는 농공단지의 경우에는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설공사 설계 심의를 필요로 하지 않음
- 공동이용건축물의 건축설계는 건축사 또는 농업기반공사가 담당
- 공동이용건축물의 시공감리는 시장·군수가 지명하는 건축직공무원 또는 농업기반공사가 담당

(6) 사업준공

- 사업시행자는 농공단지의 조성 및 공동이용시설공사 등 농공단지조성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즉시 시장·군수에게 준공인가 신청
- 시장·군수는 사업시행자로부터 준공인가신청서가 접수되면 즉시 준공검사를 실시하고 사업비정산 완료후 사업시행자에게 준공인가필증을 교부
- 시장·군수는 준공인가를 한 때에는 준공인가 내용을 공고하고 그 결과를 시·도지사를 경유하여 농림부장관에게 보고

사. 사업비 지원

(1) 예산 지원

<부지조성비 지원>

- 의무공종 내용(국비보조 교부조건)

용 도 별		세 부 공 종 내 용	
부	용 지 취 득 비	토지보상비, 지상물 보상비(공동이용시설용지 포함)	
	단 지 시 공 비	- 정지토공, 사면보호, 집수탱크, 외곽울타리, 단지내 도로 · 수도관로, 단지내 하수시설, 공동이용시설(위락시설등) · 단지내 구조물, 조경, 시공중 발생이자등	
조	부	진 입 도 로	단지진입도로·편입토지의 용지매수비, 도로포장 및 구조물등
		공동이용건축물	종사원 1,000명당 330㎡이내
	대	전력,통신 용수, 기 타 시 설	단지까지 전력인입, 통신관로, 단지외 용·배수시설, 가로등 용수 개발(또는 상수도 인입), 용배수시설 이설등
		기 타	측량설계비, 공사감독비, 관리비, 잡지출

- 농어촌지역별 단지조성비 지원

(단위 : 천원/3.3058㎡)

구 분	일 반 농 어 촌	추가지원농어촌	우선지원농어촌
· 국비보조	15 (15)	50 (20)	70 (40)
· 국비용자	10 (10)	20 (20)	20 (20)
· 지방비보조	5 (5)	10(10)	10 (10)
합 계	30 (30)	80 (50)	100 (70)

- 1) 국비보조금 교부조건에 의해 기존의 부지조성 공종을 포함
- 2) 지원대상면적은 부대시설면적을 포함한 면적으로 함
- 3) 지원단가로 부족한 금액은 지방비용자(기체)로 충당함

- 4) 전문단지 및 지역특화산업단지는 우선지원농어촌지역의 지원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일반농어촌지역의 전문단지 및 지역특화산업단지는 예산편성에 의해 지원한다.
- 5) ()내는 대기업에 대한 기준이며, 대기업이 단독 또는 중소기업과 같이 입주하고 있는 경우에도 이 기준으로 적용함
- 6) 국비용자조건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연리 5.0%, 5년거치 10년균분상환(단,'98.1.1부터시행)
- 7) 단지조성비 집행은 지방비, 국비순으로 함

(2) 자금의 운용관리

-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농공단지조성자금의 관리를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하여야 함
- 농공단지조성사업에 관한 보조금의 교부 및 관리에 관한 업무는 보조금의 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위임
- 시장·군수는 농공단지의 조성사업비 소요예산을 매분기별로 시·도지사에게 요구하고, 시·도지사는 매분기 20일전까지 농림부장관에게 요구하여야 함
- 시장·군수는 지방비용자금에 대한 기채를 조속히 이행하여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함. 다만, 기확보 내시된 국비소요예산에 대하여는 기채할 수 없음
- 시·도지사는 농공단지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배정된 예산을 단지별로 재조정할 수 있음. 이 경우 재조정된 결과를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보조금지원에 따른 지방비부담액을 확보하여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함.

(3) 사업비 검정 및 정산

- 시·도지사는 매 회계연도마다 회계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당해년도 사업비 집행에 대한 검정과 정산을 실시하고, 다음해 2월 10일까지 정산보고서를 농림부장관에게 제출

<행정사항>

가. 사후관리

○ 공장용지 분양 : 시장·군수

○ 공단 및 업체관리 : 시장·군수

○ 환경관리 : 시장·군수

※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산업과 연계, 관련업종유치, 계열화 등으로 농공단지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

나. 보 고

○ 시·도지사는 다음 각목에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자원부, 농림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근거 : 농공단지개발시책통합지침 →4개부처공동고시)

- 농공단지 지정승인일로부터 10일 이내 농공단지 지정보고

- 매분기말 기준으로 익월 15일까지 농공단지 추진현황보고(별지 3호서식)

○ 시장·군수는 농공단지조성후 준공검사를 실시하고, 검사결과를 시·도지사를 경유하여 제출(별지 4호서식)

○ 농업기반공사는 매분기말 익월15일까지 조성사업 진도를 농림부장관에게 보고

6. 2004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 안내

가. 신청서 제출기관

- 시장·군수

나. 신청자격

○ 공영개발인 경우

- 시장·군수
- 산업입지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지방공기업 기타 다른 법률에 의하여 농공단지의 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자 중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자

○ 민간개발인 경우

- 산업입지법 제16조 제1항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농공단지 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시장·군수가 지정하는 자. 다만, 대기업이 사업시행자이거나 대기업과 그 계열기업(수급기업을 포함)이 공동사업시행자인 경우에는 대기업 또는 대기업과 그 계열기업이 직접사용하고자 하는 단지의 개발에 한함
- 사업시행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농공단지개발시책통합지침이 정한 바에 따름.

다. 구비서류

- 농공단지 지정신청서
- 위치도
- 토지이용현황에 관한 서류
-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개발지원에 관한 서류
- 농공단지 인접지역의 공장분포, 취업 가능인력등 현황
- 농공단지의 개발에 따른 농어가의 고용과 소득증대 및 토지에 관한 서류
- 농어촌 환경 및 문화재의 보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서류
- 농공단지 타당성 조사서(입지여건,입주예정업체 수요조사,기본계획서등 포함)
 - ※ 농림부에 예산신청시 농공단지지정신청서를 제외한 상기서류 제출

[별지 1호서식]

농공단지 예산 및 자금(국비) 요구내역

(단위 : 천원)

농 공 단지명	지 정 승인일	실 시 계 획 승인일	부 지 조 성			예산재배정액 (당해년도)	
			착공일	공정 (%)	준 공 예정일	보 조	용 자
계							

예산 및 자금배정요구액								비고
전년도까지 배 정 액		(당해) 년 도						
		기배정액		금회요구액		소 계		
보 조	용 자	보 조	용 자	보 조	용 자	보 조	용 자	

[별지 2호서식]

총공통-9

농공단지조성사업비 정산내역

가. 총괄

(단위 : 천원)

농공단지명			예산현액				집행액					
							합계				실집행액	
농공 단지명	지정 년월	면적 (평)	합계	국비		지방비		합계	국비		지방비	
				보조	융자	보조	융자		보조	융자	보조	융자

이월액					잔액 (불용액)				
					국비		지방비		합계
합계	보조		융자		합계	보조		융자	
	보조	융자	보조	융자		보조	융자	보조	융자

나. 국고보조금 불용액 조서

(단위 천원)

단지명	불용액	불용사유
		※ 불용사유를 구체적으로 6하원칙에 의거 작성

[별지 3호서식]

보조금제27조

농공단지 추진현황보고

□ **연간계획**

사업지구	사업기간	착수년도	완공년도	2003 사업비 (백만원)					
				합계	국비			지방보조	자담
					소계	보조	융자		
합계									
고창○○									
순창○○									
부안○○									

□ **0/0분기까지 계획 및 실적**

○ 사업추진실적

사업지구	0/0분기까지계획(A)	0/0분기까지 실적(B)	진도(B/A)
고창○○ (신규)	공사발주(100%) 정지토공(30%)	공사발주(80%) 정지토공(20%)	80
순창○○ (계속)	공동건축물(100%) 단지내 구조물(70%)	공동건축물(100%) 단지내 구조물(70%)	100
부안○○ (신규)	관계기관협의(100%) 농공단지승인(100%)	관계기관협의(50%) 농공단지승인(0%)	40%

○ 사업비 집행실적(국비)

사업지구	0/0분기까지 계획(백만원)			0/0분기까지 실적(백만원)		
	합계	보조	융자	합계	보조	융자
합계						
고창○○						
순창○○						
부안○○						

※ 사업비(국비) 집행실적은 집행기관(시·군)집행실적 기준

□ **추진실적**

○ 0/0분기동안 추진실적(건설공정 및 과정)을 개조식으로 간략하게 기재

[별지 4호서식]

자체 가26-49

농공단지 준공결과보고

○ 조성현황

(단위 : 백만원)

단지명	농어촌 구 분	지정면 적(평)	지정 년월	사 업 비					조성 면적 (평)	비 고
				계	국 비		지 방 비			
					보조	용자	보조	용자		

○ 준공현황

단지명	공사기간		시공회사	감 리 자 (감독공무원)	준공 검사자	하자보수 기간맞기한	비 고
	착공일	준공일					

VI. 생활환경개선

① 정주권개발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농촌진흥과(과장 조무희, 서기관 조홍제)입니다.

1. 목 적

- 농어촌 또는 준농어촌지역의 생활환경, 산업기반 및 편익·복지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정비·확충하여 농어민의 복지향상과 국토의 균형개발을 도모

2. 시책 및 추진방향

가. 기본방향

- 농어촌 면지역의 중심생활권과 광역시 자치구의 준농어촌지역을 대상으로 주택정비, 편익시설, 도로, 상·하수도 및 환경시설 등을 집중투자하여 생활환경 개선

나. 장기사업목표

- 2004년까지 전국 1,220개 면중 오지(399)면, 도서(53), 무인(10)면 등을 제외한 758개 정주권개발 대상면 1차 지원 완료 예정
- 준농어촌(50%초과)이 있는 광역시 자치구 15개소는 2002년부터 지원

3. 근거법령 : 농어촌정비법 제2조

4. 연도별 지원계획

(금액 : 백만원)

구 분		'92~2000	2001	2002	2003년 (예산안)	2004이후
사업량(면수)						
- 보조사업		435	61	66	66	153
- 용자사업		346	30	32	32	322
계		1,947,283	279,091	269,414	267,991	748,083
사업비	국고(양여금)	1,070,557	209,112	209,030	224,830	204,644
	지방비	427,069	49,179	41,384	24,981	218,449
	융자	449,657	20,800	18,720	18,180	324,990

주1] 사업량은 완료면 기준

5. 2003년도 사업시행요령

<사업개요>

가. 정주권개발사업

(1) 사업내용설명

(가) 사업내용

- 마을기반정비 : 마을내도로, 상·하수도시설 등
 - 농촌지역 도로정비 : 마을간 도로, 연결도로, 교량등
 - 농촌산업개발 : 공동영농어시설, 농로 등
 - 문화복지시설 : 복지회관, 마을회관 등
 - 필요시 정보통신기반시설을 회관내에 설치(농산물유통, 작목반등 활용 및 주민정보화수준향상 목적)
 - 정보화교육은 지자체가 기업체, 독지가를 알선, 무료교육 방안강구
 - 환경보전시설 : 쓰레기처리시설, 마을하수처리시설 등
 - 재해방지시설 : 하천정비, 마을안전시설 등
 - 주택정비 : 신축, 개량,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사용 하지 아니하는 빈집의 철거·정비
- ※ 타부문사업으로 지원되는 사업은 제외

(나) 지원조건

- 지원규모 : 면 또는 광역시 자치구(이하 “자치구” 라 한다)당 45억원 수준(보조 30억원, 융자 15억원)
 - 보조사업비는 지방양여금예산을 기준하되, 부족사업비는 지방비로 충당
 - 융자사업은 면 또는 자치구당 15억원 수준에서 시행하되, 특별히 주택활성화 지역이 있어 추가소요가 발생할 경우 융자예산 범위내에서 면별 조정·시행 가능

- 지원방법 : 면단위별로 지원완료 위주로 지원
 - 보조사업 : 지방양여금을 시·군·구의 면(자치구 포함)수비율에 의해 배분
 - 용자사업 : 면 또는 자치구당 15억원 수준
 - 주택신축(개축) : 호당 2천만원, 연리 5.5%, 5년거치 15년상환
 - 주택개량(부분개량) : 호당 5백만원, 연리 4.0%, 3년거치 7년상환

(다) 2003사업비(예산안)내용

내 용 별	사업량 (면수)	사 업 비 (백만원)					
		사업비 계	예 산 액			지방비	자부담
			계	국 고 (양여금)	용자 (농특회계)		
정주권개발		267,991	243,010	224,830	18,180	24,981	-
- 보조사업	66	249,811	224,830	224,830	-	24,981	-
- 용자사업	32	18,180	18,180	-	18,180	-	-

※ 사업량은 지원완료면 기준, 예산은 조정될 수 있음.

<추진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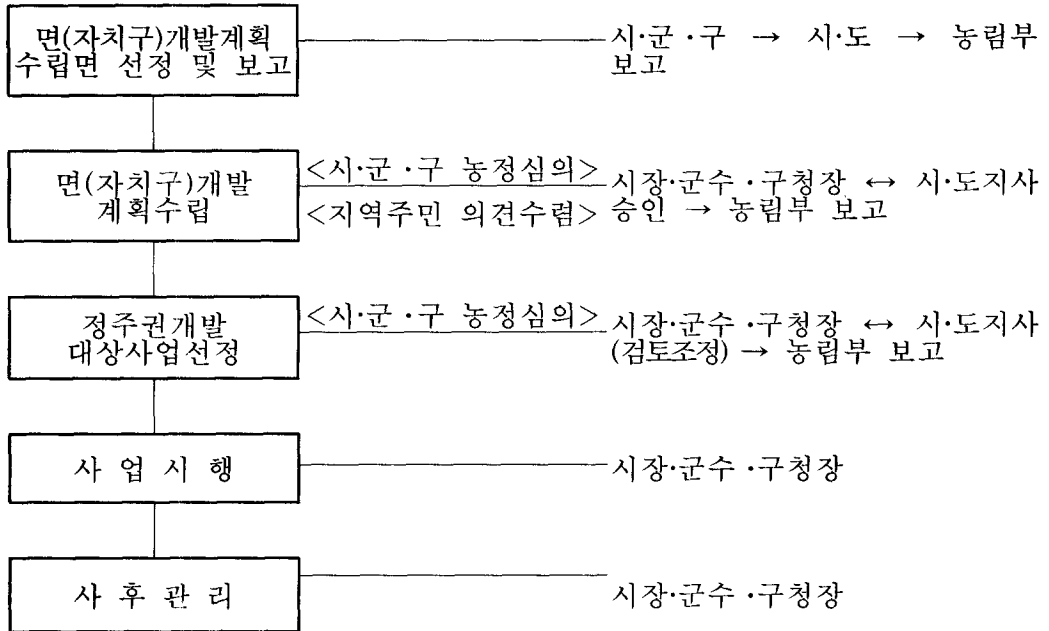
가. 사업주관기관 : 시장·군수·구청장

나. 사업담당부서

- 농림부 : 농촌개발국 농촌진흥과(전화 02-500-1971~2)
- 시·도 : 농정국 농정과(충북), 기반조성과(충남), 농지개발과(전북)
 - 농수축산국 농업특작과(제주)
 - 자치행정국 새마을과(경북),
 - 건설도시국 주택지적과(강원), 지역계획과(경남), 주택과(경기)
 - 건설교통국 개발건축과(전남)
 - 지역경제국 또는 산업경제국 농정과(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 시·군 : 건설과

다. 사업시행자 : 시장·군수·구청장

라. 사업추진절차



<사업계획수립>

가. 대상사업선정

(1) 사업대상면(또는 자치구) 선정

- 면(또는 자치구)단위 정주권개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면 중에서 면별 사업시행순위에 따라 시장·군수가 완료위주로 사업시행 대상면을 선정
 - 신규착수 대상면은 전년도 사업완료 실적과 연계하여 선정함으로써 사업추진의 내실화를 기함
 - 사업기간이 6년이상 장기화 되는 면이 있는 시·군은 신규착수 억제
- 행정구역개편으로 면에서 읍으로 승격된 지역중 개편당시 정주권 개발 사업을 추진중에 있는 지역은 계속 지원가능(보조사업비는 당해 시·군에 배분되는 지방양여금 범위내에서 지원)
- 시·군의 정주권개발 대상면 전체가 1단계가 완료된 시·군은 2단계 계획을 2003년 사업추진절차, 지원조건 및 규모로 수립·시행

(2) 대상지역 선정

- 면개발계획서에 의거 면당 3개내외의 중심마을생활권을 선정, 다만 자치구는 지역특성에 따라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추진

(3) 대상사업 선정

- 개발계획서상의 중심마을 생활권에 대하여 1단계 추진계획 사업시행 우선 순위를 기초로 하여 생활기반조성사업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지원하며, 생산기반정비, 소득원개발, 지방도, 시·군·구도, 농어촌도로, 기계화경작로등 타부문에서 재원조달이 가능한 사업은 대상사업선정시 제외하고 당해 개별사업으로 연계지원
- 녹색여가·체험마을, 농업·농촌체험프로그램 운용 민박마을, 농촌전통마을, 친환경자연생태마을 등을 우선 지원
- 시장·군수·구청장은 개발계획에 의거 단계별 추진계획 범위내에서 대상사업을 선정하고, 기 선정된 중심마을 생활권에 사업을 집중적으로 실시하며, 매년 당해년도에 착수할 대상사업과 전년도부터 계속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을 선정, 시·군·구 농정심의회회의 심의를 거쳐 시·도지사에게 보고 다만, 사용하지 아니하는 빈집의 철거·정비는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이행한 대상지에 한함
- 시·도지사는 매년 정주권개발계획과의 관계, 개발계획서상의 단계별 추진계획과의 관계, 별도의 재원확보가 가능한 타부문의 사업시행 여부, 중심마을 생활권에 대한 집중시행 여부 등 타당성을 검토·확정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시달하고 그 내용을 농림부장관에게 제출

나. 사업시행계획 수립

- 시장·군수·구청장은 대상사업이 확정되면 당해년도 투자계획을 포함한 사업계획을 수립
- 농림수산 관련단체등이 사업을 위탁받아 시행하는 경우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시장·군수·구청장은 예산에 맞추어 매년 최소한의 사업만 시행하여 당해년도 완공 또는 효과 거양을 위주로 추진하고 부분구간 도로공사나 보수형태의 공사 등은 지양함

<사업시행>

가. 사업시행

(1) 보조사업

- 사업시행은 당해년도 대상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에 대하여 시행하며, 설계도서에 맞게 실시하여야 하여야 함
- 사업시행자가 대상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을 시행과정에서 이를 취소하고, 새로운 지역으로 위치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상사업선정절차에 따라 시·군·구 농정심의회를 거쳐 시·도지사의 사전검토를 받은후 시행
다만, 사용하지아니하는 빈집의 철거·정비는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의 규정에 따라 절차를 이행한 대상지를 농어촌주거환경개선업무 담당부서에 협의·지원
- 정보통신기반시설은 지역실정에 맞도록 최소한의 비용으로 설치하되, 전문가의 자문을 들어 활용도, 사후비용부담, 편의성등을 마을주민과 협의후 시행
-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사시행과정중 주요사항에 대하여는 시공전·후의 현장사진등을 보관하여야 함

(2) 용자사업

- 사업시행주체 : 시장·군수·구청장 및 주민(사업자)
- 사업내용
 - 농촌주택정비, 농촌용수시설, 주민편익시설등 지원
 - 발전가능성이 있는 중심마을 생활권을 중심으로 지원(보조사업과 연계 지원)
- 용자대상자 선정
 - 시장·군수·구청장은 용자희망자의 신청을 받아 시·군·구농정심의회의 심의등 공정한 방법으로 대상자 선정(대상자 선정시에는 기수혜 여부, 타부문용자와 중복지급 여부 등을 검토하여야 함)
 - 용자대상자 선정기관(시장·군수·구청장등)은 대상자 선정시 용자신청자의 신용상태, 담보제공능력등 용자가능성에 대하여 용자취급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함
 - 사업시행자는 선정된 용자사업대상자가 주택건축을 착공하지 않아 연내에 용자금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주택건축을 완료한 대상자에게 우선, 용자대상자를 변경하여 시행

- 용자방법
 - 용자금 대출은 사업참여자와 용자취급기관이 협의하여 실시하되 용자취급기관은 사업자의 편의를 최대한 고려하여 지원(시설물수반시 후취담보 적극 활용)
 - 용자취급기관의 장은 사업자로부터 용자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행정기관이 통보한 사업진도에 따라 진도(기성고) 확인후 자금지원 단, 용자취급기관이 지원대상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외
 - 기타 용자에 관한 사항은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준용
- 용자금 사후관리
 -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사업계획대로 사업을 차질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수시점검 및 지도·감독 실시
- 용자대상자 선정기준 및 용자지원조건(별표 1)

나. 사업의 위탁

- 농어촌정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농림수산 관련단체 등에게 사업을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음

다. 용지매수 및 보상

- 용지매수 및 보상업무는 시장·군수·구청장(또는 수탁시행자)가 담당
- 각종 시설용지의 확보는 매수·보상을 원칙으로 함
- 사업시행에 필요한 용지확보 및 보상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 특례법』의 규정에 따름

라. 설계감리등 사업비 요율

- 실시설계 및 공사감독, 사업관리를 위탁할 경우 농어촌정비법시행규칙 제49조(별표5)를 준용
- 사업시행자가 직접 사업을 시행할 경우 농어촌정비법시행규칙 제49조(별표5)의 사업관리비 요율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경비(공사감독추진출장비, 소모품비등)를 실비로 계상할 수 있음

<사업비 지원>

가. 예산의 지원

- 예산의 지원은 보조사업과 융자사업으로 구분하여 지원
 - 보조사업은 지방양여금법에 의하여 시·군·구의 면(또는 자치구)수비율에 의하여 배분하되, 시장·군수·구청장은 배분된 예산범위 내에서 완료면 위주로 집중지원
 - 융자사업은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 융자금으로 보조사업과 연계하여 집중지원
-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양여금지원에 따른 지방비를 반드시 확보하여야 함
- 사업비 예산의 년도말 검정 및 결산은 농림부장관이 정한 지침에 의하여 실시함

<행정사항>

가. 사후관리

- 대상사업중 공동이용시설 및 수익시설은 사업비를 단위사업별로 동일지원 기준에 따라 주민에게 융자 또는 자부담시킬 수 있으며, 완공후 수익자에게 관리토록 할 수 있음
- 시장·군수·구청장(또는 수탁시행자)은 용지매수보상, 공사발주 및 재산관리(동기수속 등)에 철저를 기하고 시설물의 관리자를 지정하며, 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의 반영, 시설물관리대장 및 시설물관리요령 작성등을 하여야 함
- 정보통신기반시설이 설치된 마을에 대하여는 유지관리에 필요한 지침을 마을주민과 협의하여 마련하고, 정기적으로 점검·관리
- 시장·군수·구청장 및 시·도지사는 매년도별(별지 제4호 서식)『면 또는 자치구 정주권개발 대상사업 추진실적』을 관리하여야 함
- 공사실명제
 - 정주권개발사업으로 추진하는 주요시설물(도로, 교량, 공동이용시설등)에는 농림사업실시규정 제39조제4항에 의거 준공전(공사중)·준공후 사업 안내문을 표시하여야 함

나. 보고

- 면(또는 자치구)개발계획승인 결과보고 : 면(또는 자치구)개발계획승인서 (별지 제1호 서식)
- 면(또는 자치구)개발계획수립 대상면(또는 자치구) 선정 보고 : 당해년도 1.31까지(별지 제2호 서식)
- 생활환경정비사업 보조 및 용자사업 추진계획 보고 : 당해년도 1.31까지 (별지 제3호 서식)
- 정주권개발 대상사업선정 결과보고 : 매년 3.10까지(별지 제4호 서식)
- 정주권개발 추진상황 보고 : 매분기 익월 10일까지(별지 제5호 서식)
- 정주권개발사업 완료 보고 : 익년도 1.31까지(별지 제6호 서식)

[별표 1]

용자대상자 선정기준 및 용자지원조건

1. 용자지원대상자 선정기준

대상사업	대상자 선정 기준	선정권자
○ 문화마을조성사업	○ 정주권개발대상지역에 문화마을조성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자(시장·군수·구청장, 농기공) ○ 문화마을조성사업을 실시하는 지구에 한함	시·도지사
○ 주택신축	○ 정주권개발 대상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으로서 주택을 신축(개축)하여 입주하고자 하는 자(주민)	시장·군수·구청장
○ 주택개량	○ 정주권개발 대상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으로서 주택을 개량하여 입주하고자 하는 자(주민)	시장·군수·구청장

2. 용자지원조건

사업명	금리 (%)	용자기간(년)			용자한도
		계	거치	상환	
○ 문화마을용지매수	4.0	4	2	2	○ 지구당 예산확보액 이내
○ 주택신축	5.5(5.0)	20	5	15	○ 호당 2천만원 이내 ()는 문화마을
○ 주택개량	4.0	10	3	7	○ 호당 5백만원 이내

3. 자금의 용도 및 용자대상자

사업명	자금의 용도	용자대상자
○ 문화마을조성사업	○ 문화마을조성 사업지구의 용지매입 등	시장·군수·구청장 (농기공)
○ 주택신축	○ 주택신축(단독 또는 공동주택)에 소요되는 자금	주민
○ 주택개량	○ 부엌·목욕탕·화장실·담장등 기존주택을 개량하는데 필요한 자금	주민

[별지 제1호 서식]

심사제외

○○시(군·자치구) ○○면 면(자치구)개발계획승인 보고

1. 지역 일반현황

면적 (㎡)	법정리 (개)	행정리 (개)	자연부락 (개)	가구수(호)			인구수(인)			비고
				계	농가	비농가	계	남	여	

2. 토지이용현황

(단위 : ha)

총면적	경지면적				임야	대지	기타	비고
	소계	논	밭	과수원				

3. 개발지표

구 분	단위	총계획	현수준		1단계계획		2단계계획		비고
			물량	%	물량	%	물량	%	
계									
○도로부문									
-마을내도로	Km								
-농어촌도로	Km								
○하수도시설	Km								
○상수도시설	개소 (명)								
○하천정비	Km								
○복지회관	개소								
○마을회관	개소								
○주택정비	동								
○경지정리	ha								
○수리답율	%								

4. 부문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부 문 별	총계획	정구권개발계획			타부문 계 획	비고
		소계	1단계	2단계		
계						
1. 마을기반정비						
2. 농어촌도로정비						
3. 농어촌산업개발						
4. 생산기반정비						
5. 문화복지시설						
6. 농어촌용·배수시설						
7. 환경보전시설						
8. 재해방지시설						
9. 농촌주택정비						
10. 기타지역개발						

5. 1단계 부문별·사업별 추진계획

○1단계 투자계획을 별지 제6호서식에 작성

[별지 제2호 서식]

총26-65

년도 면(또는 자치구)개발계획수립 대상면 선정 보고

(시·도)

시·군·구명	대상면수 (자치구수)	사업시행(면 또는 자치구)			개발계획수립			
		계	완료	추진중	계	완료면수 (전년도까지)	당해년도 계획	
계						면수	면(자치구)명	

[별지 제3호 서식]

총26-61

2003년 생활환경정비사업 보조 및 융자사업 추진계획

(시·도)

(단위 : 백만원)

시군	대상면수	시행면·자치구(지구)	합 계		문화마을조성			정주권개발				비고	
			보조	융자	보조	융 자		보조	융 자				
						계	용지매입		주택신축	계	주택신축		주택개량
계							()			()	()	()	

- ※ 1. ()는 주택호수등 물량
- 2. 보조사업비는 지방양여금, 지방비

[별지 제4호 서식]

자체가26-51

정주권개발 대상사업 선정결과(추진실적)

1. 부문별 총괄

(시·도, 시·군·구, 면)

(단위 : 백만원)

부 문 별	사 업 별	단위	2002까 지			2003 계 획			비 고
			사업량 (개소/물량)	계	보 조 용 자	사업량 (개소/물량)	계	보 조 용 자	
계	소계								
마을기반정비	소계	Km	///			///			
	내도 외도 기타	Km	///			///			
농촌도로정비	소계	Km	///			///			
	간도 마을도로 마을단거리 기타	Km	///			///			
농촌산업개발	소계	개소	///			///			
	농산물 농촌 농업 농촌 농업 농촌 농업 농촌	개소	///			///			
생산기반정비	소계	Km	///			///			
	농지 농촌 농업 농촌 농업 농촌	Km	///			///			
문화복지시설	소계	개소	///			///			
	문화 복지 농촌 농업 농촌 농업 농촌	개소	///			///			
농촌용수 배수시설	소계	개소	///			///			
	저수지 관개 배수 기타	개소	///			///			
환경보전시설	소계	개소	///			///			
	수질 환경 보전 기타	개소	///			///			
재해방지시설	소계	Km	///			///			
	천문 방지 시설 기타	Km	///			///			
농촌주택정비	소계	동	///			///			
	주택 정비 기타	동	///			///			
기타	소계	개소	///			///			
	지역 개발 기타	개소	///			///			

*작성방법 : 시·도총괄, 시·군·구 총괄, 면 별 순으로 작성, 2002까지는 기완료된면의 실적도 필히포함

② 문화마을조성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농촌진흥과(과장 조무희, 토목 사무관 박병태)입니다.

1. 목 적

- 농어촌 면지역의 중심(거점)마을 등에 집중 지원하여 생활환경을 정비하고, 농촌관광, 농촌체험활동, 소득증대사업 및 생산기반정비사업을 연계 추진함으로써 생활환경과 소득이 조화된 농촌마을로 정비

2. 시책 및 추진방향

가. 기본 방향

- 정주권개발 대상면내의 발전가능성이 큰 중심(거점)마을 등에 마을기반정비(마을내도로, 상·하수도, 전기·통신시설 등), 주택단지조성, 공동이용시설(어린이놀이터, 마을회관, 공동작업장, 공동주차장, 농기계보관소 등), 환경기초시설(마을하수도시설), 주택 등을 종합정비하고 농촌관광, 농촌체험활동, 농업생산기반조성 및 소득원개발사업 등과 연계 추진함으로써 농촌의 생활환경개선 및 농촌의 활력 증대

나. 장기 사업목표

- 전국 정주권개발 대상면에 대하여 면당 1개 마을을 선정하여 생활환경정비(문화마을조성)사업 시행
 ※ 시·군내 정주권면 전체가 1개소씩 완료된 시·군은 추가시행 가능

3. 근거법령 : 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29조 내지 제42조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목 표 ('91~'14)	'01까지	'02계획	'03(예산안)	'03이후	
사업 착 수 (완 료)	370지구	153 (122)	19 (16)	18 (15)	180 (217)	
사업비	계	2,990,278	601,984	65,426	71,954	2,250,914
	보 조	1,725,193	358,231	52,526	59,054	1,255,382
	용 자	1,265,085	243,753	12,900	12,900	995,532

5. 2003년도 사업시행요령

< 사업개요 >

가. 사업내용

- 정주권대상면지역의 일정규모 이상의 중심(거점)마을 등에 대하여 마을 여건에 맞도록 생활환경정비 및 현대화 추진
- 원지형을 기본 토대로 지역의 특성(전통성·문화성)을 고려하여 마을정비
 - 기존마을의 토지·주택 등의 합리적 재배치
 - 마을기반시설(진입로, 마을안길, 생활용수, 전기·통신시설 등)과 농촌주택정비
 - 마을회관, 공동주차장, 어린이놀이터, 공동작업장 등 주민편익 및 공동이용시설
 - 필요시 회관내에 정보통신기반시설 설치가능(농수산물 유통, 작목반 등 활용 및 주민 정보화수준 향상목적)
 - 정보화교육은 지자체가 기업체, 독지가를 알선, 무료교육 방안강구
 - 마을하수도 등 환경기초시설
 - 농촌관광 및 농촌체험활동 등에 필요한 기반시설 정비 및 마을가꾸기
 - 공가(空家)를 매수 또는 철거하여 공동이용시설 또는 주차장 등의 부지로 활용
 - 생산기반정비, 소득원개발 및 농업관련산업시설(농산물집하장, 농산물가공시설, 농기계수리소, 공동건조장, 보관시설 등) 등과 연계 지원방안 검토
- 필요한 경우 마을기능보강을 위하여 기존 중심마을내 또는 인접하여 소규모 주택용지 및 공동이용시설용지 조성

나. 지원조건

- 지원규모
 - 보조 : 20~30억원 수준 (마을기반정비, 공동이용시설 등 공공시설)
 - 지방양여금 100%, 지방비 폐지
 - 용자 : 10~20억원 수준 (주택신축 및 주택단지 용지매수·보상)
 - 주택신축(개축) : 호당 2,000만원 (연리 5.0%, 5년거치 15년상환)
 - 주택개량(부분) : 호당 500만원 (연리 4.0%, 3년거치 7년상환)
 - 용지매수보상(주택단지 조성시) : 지구당 300백만원 (연리 4.0%, 2년거치 2년상환) * 재원이 확보될 경우 추가 지원
- 보조사업비 재원 : 지방양여금법 시행령 제5조 제3항 [별표 3]에 의한 문화마을조성사업의 양여기준 적용
- 지원기준을 초과하는 사업비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별도 확보 추진

다. 2003사업비(예산안)내용

내 용 별	사업량	사 업 비 (백만원)					
		사업비 계	예 산 액			지방비	자부담
			계	국 고 (양여금)	용자		
문화마을조성사업		71,954	71,954	59,054	12,900	-	-
○ 단 지 조 성	52지구	60,554	60,554	59,054	1,500	-	-
○ 주 택 건 축	570동	11,400	11,400	-	11,400	-	-

< 추진체계 >

가. 사업주관기관 : 시장·군수

나. 사업담당부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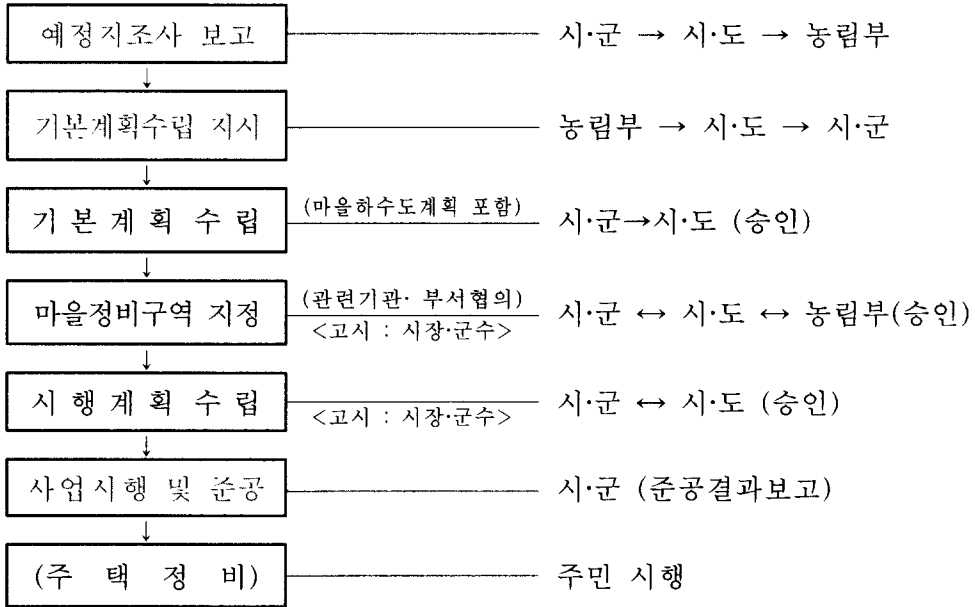
- 농림부 : 농촌개발국 농촌진흥과 (전화 02-500-1964~6)
- 시·도 : 건설도시국 : 주택과(경기), 주택지적과(강원), 지역계획과(경남)
 농 정 국 : 농정과(충북), 기반조성과(충남), 농지개발과(전북)
 건설교통국 : 개발건축과(전남)
 자치행정국 : 새마을과(경북)
 농수축산국 : 농업특작과(제주)

○ 시·군 : 건설과

다. 사업시행자 : 시장·군수

- 사업시행자는 마을정비 및 현대화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기본계획수립, 시행계획수립, 사업시행 등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농업 기반공사 등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으며, 위탁 시행시에는 가능한 한 기본계획수립, 시행계획수립, 사업시행 등을 일괄하여 위탁하며, 이 경우 업무의 범위를 명확히 정하여야 함.
- 사업시행자는 수탁시행자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사항을 시·도지사에게 보고하고, 시·도지사는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함.
- 사업시행자는 마을기반정비와 병행하여 마을하수처리시설이 동시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을기반정비사업 진척상황을 고려하여 설치시기를 조정·시행할 수 있음.

라. 사업추진절차



< 사업계획수립 >

가. 사업대상지구 선정

(1) 선정기준

- 시·도지사는 정주권대상민의 중심(거점)마을 등을 대상으로 농림부 전체사업 계획에 따라 당해 시·도 배분량 범위내에서 다음 요건의 마을을 우선 선정하여 농림부장관에게 제출해야함.
 - 교통·경제·문화 등의 중심으로의 발전가능성이 있으며, 규모화가 가능한 마을
 - 농촌관광, 녹색농촌체험마을로 육성할 지역으로써 생활기반정비가 필요한 지역
 - 농업생산기반정비, 농공단지 등 산업기반정비, 농업진흥지역정비사업 등과 연계하여 농촌 마을의 정비가 필요한 지역
 -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개발의지가 있는 마을
 - 타법에 의하여 개발에 제약요인이 없는 마을
 - 타 부문 개발계획과 연계성이 높은 마을
 - 향후 도시화가 가능한 마을은 대상지 선정에서 후순위
 - 도시근교지역, 당해지역의 땅값이 비싼 지역 등
- 마을기능 보장을 위하여 주택용지조성 및 공동이용시설용지 조성이 필요한 경우 기반정비가 완료된 우량농지 및 농업진흥지역은 제외함.

(2) 선정절차 (농어촌정비법 제32조)

- 사업시행자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문화마을조성사업 예정지를 선정하고, 필요한 경우 농업기반공사 등 전문기관의 현지답사 의견서를 첨부하여 예정지조사보고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함. (면당 1개지구 단, 당해 시·군의 정주권면 전체가 1개소씩 완료한 경우에는 추가 선정 가능)
- 시·도지사는 사업시행자인 시장·군수가 제출한 예정지중 당해 시·도 배분량의 2배까지를 선정하여 시·도내 우선순위 및 시·도 의견을 첨부하여 농림부장관에게 제출함.
다만, 시·군에서의 신청 사업량이 많은 경우에는 시·도지사는 연차별 추진 계획을 수립함.
- 예정지 조사보고서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 마을현황(호수, 인구<농업인/비농업인>), 마을기반시설(도로, 상·하수도 등) 현황, 주소득원, 호당 연간평균소득, 공공기관 및 공동이용시설현황, 편익·복지시설현황 등
 - 정비하여야 할 구역의 면적
 - 마을의 생활수준 지표 및 목표 설정
 - 위치평면도(1:25,000지형도) 및 개발계획도(1:5,000지형도) * 지적도 지양
 - 개발계획내용 - 주택정비계획
 - 소요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
 - 타부문 투자계획 - 마을하수도 및 하수처리장계획
 - 사업 시행후 마을의 발전 전망
 - 기타 필요한 사항
- 시·도지사가 추진할 사업지구를 선정하되, 농림부의 지구선정 적부성이나,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할 검토사항 등을 받은 후 기본계획을 수립함.

나. 계획수립

(1) 기본계획

- 기본계획 수립을 지시받은 시장·군수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가능한 선정 당해연도에 기본계획을 수립토록 하며, 정주권개발사업비로 계상된 보조사업비중 일부를 기본계획 수립비로 전용하거나, 자체예산을 확보하여 기본계획수립비로 사용할 수 있는 예산과목의 설정 등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 기본계획에는 사업대상지구에 대하여 마을현황, 마을의 생활수준 지표 및 목표 설정, 기본계획의 개요, 주요시설계획(공동이용시설 포함), 마을하수도 시설계획, 주택개량계획, 택지분양 우선순위별로 구분한 수요예측, 사업비 조달계획, 사업의 시행기간 등과 연관사업(생산기반정비, 소득원개발, 농어촌도로 등)계획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며, 필요시 환경정책기본법 제11조 제2항과 관련된 지구는 동법 시행령제4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구비조건을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함.
- 녹색농촌체험마을 등 농촌관광사업을 육성할 마을은 체험관광과 연계할 수 있도록 기반시설 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사업시행자는 기본계획 수립시 필요한 경우 마을에 대한 경관형성계획을 수립하고,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 지표조사를 실시하도록 함.
이 경우 경관형성계획수립 및 문화재지표조사에 소요되는 경비는 기본계획 수립비와는 별도로 실비 계상할 수 있음.
- 기존마을 정비시 농촌주택개량계획은 사업시행되는 마을에서 주민신청에 의하여 소요물량을 정확히 판단하여야 하며, 사업기간내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마을회관, 농기계보관창고 등 공동이용시설용지와 건축공사비에 대한 재원 및 조달계획 등을 명확히 하여야 함.
- 사업시행자는 사업예정지로 선정된 지구에 대하여 기본계획수립을 위한 기술적·경제적 타당성조사에 관한 업무를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자(농어촌관련 연구기관 및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처장관에게 신고하고 신고증을 교부받은 자)에게 위탁하여 기본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
- 농림부소관 연관사업(농촌관광, 녹색농촌체험마을, 생산기반정비, 생활용수개발, 유통·소득·가공시설사업 등)과 타부처소관 연관사업(농어촌도로, 소하천정비 등)은 “농산어촌마을현대화사업통합지침(정비51370-216, '96.6.7)”에 의하여 사업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추진계획 및 지원계획을 결정하며, 그 내용을 기본계획에 포함.

- 시장·군수는 기본계획내용(사업계획 및 사업비 조달계획 등)을 검토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함.
- 시·도지사는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기본계획을 면밀히 검토하고, 필요시 관련 부서와 협의, 다음 서류와 함께 농림부장관에게 마을정비구역 지정 승인 신청함. (별지 제1호 서식)
 - 기본계획서(필요시 환경성검토서 포함) 1부
 - 위치평면도(1:25,000 지형도) 및 사업계획평면도(1:5,000 지형도) 각 1부
 - 관련부서 협의결과 및 의견서
 - 사업비수지예산서 및 기본계획 검토내용
- 시·도지사는 마을정비구역지정 승인이 되면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해당구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로 하여금 고시토록 하여야 함.

(2) 사업시행계획

- 사업시행자는 기본계획에 의거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도지사는 사업계획 및 사업비 조달계획 등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시행계획을 승인하고 그 결과를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 시·도지사는 시행계획수립 및 검토시 사업구역내에 국·공유지가 편입될 때에는 관련부서와 무상 증·양여에 관한 사항을 사전협의하고 사업 완료시 농어촌정비법 제93조의 규정 등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 사업시행자는 시행계획이 승인되면 시행계획내용을 고시하고, 농어촌정비법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고시내용을 국토이용계획결정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함.
- 시행계획은 사업시행자가 직접 실시하거나, 농어촌정비법 제97조 규정에 의거 농업기반공사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음.
-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 사업의 목표 및 기본방향
 - 사업비조달계획
 - 농촌마을정비계획 및 주택정비계획
 - 편익·복지 및 공동이용시설계획
 - 마을하수도시설 확충 및 하수처리계획

(3) 계획수립시 유의사항

- 문화마을조성은 단순한 주택단지 개발을 지양하고, 기존마을 정비중심의 특색있는 마을만들기 추진(농촌전통마을, 친환경생태마을 등)
 - 일감갓기사업과 연계하여 소득원개발과 조화를 이루도록 개발
- 환경친화적인 개발계획수립
 - 계획수립시에는 주변 자연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수립하며, 자연환경 훼손을 최소화하도록 하여야 함.
 - 친수공간, 녹지공간, 자연공원, 주민여가 및 체육공간, 생태계보전 등 조성 및 유지보전
- 계획 수립시 주민참여 확대
 - 계획 수립시 마을기반정비계획은 해당주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주민의 관심과 참여를 촉진함.
 - 해당마을의 장기구상 및 개발계획을 주민으로부터 의견을 받아 사업 계획에 반영하여 단계적 추진계획을 수립
 - 지역의 문화전통, 상징적인 마을조성계획 반영
- 정보통신기반시설은 지역실정에 맞도록 최소한의 비용으로 설치계획을 수립 하되, 전문가의 자문을 들어 활용도, 사후비용부담, 편의성 등을 마을 주민과 협의후 계획수립

< 사업시행 >

가. 연도별 사업시행계획

- 사업시행자는 매년도 확보된 사업비에 의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고, 시·도지사는 연도별 시행계획을 승인한 경우 농림부장관에게 보고

나. 공정계획

- 사업시행자는 당해 연도 예산에 의한 시행계획 수립시 공정계획을 함께 수립 하여 시행계획 승인시 일괄 처리되도록 하여야 함.

다. 시행계획의 변경

- 사업시행자가 사업계획을 변경할 때에는 사업계획 수립과 동일한 절차를 거쳐야함.(농어촌정비법 제32조,제36조, 동법 시행령 제33조,제35조) 다만, 다음 각 호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대하여는 타당성을 검토하여 사업시행자가 조정하고 시·도지사에게 결과보고, 시·도지사는 변경내용을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 명칭의 변경
 - 마을정비구역지정면적의 10/100범위 안에서의 증감
 - 문화마을 조성목적에 부합하는 범위내에서 택지의 용도 변경
 - 기타, 단순착오로 인한 사항의 변경

라. 용지매수 및 보상

- 사업시행에 필요한 용지매수 및 보상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 특별법”의 제반규정에 따름.
-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본계획이 확정되어 마을정비구역이 지정·고시되면 용지매수보상을 추진할 수 있음.
-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을 위탁하는 경우 용지매수 및 보상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동의서(별표 1) 징구 등 필요한 행정지원을 하여야 함.

마. 주택건축

- 사업시행자는 기존마을 정비시 마을기반정비와 병행하여 농촌주택개량(신축 및 개량)계획을 수립 추진하며, 주택 등의 건축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분준공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 기존마을 정비시 농촌주택개량(신축·개량)은 주민의 신청에 의하며, 주택개량의 용자지원기간은 분양계약 체결일로부터 2년을 원칙으로 함. 단, 대상자가 실직이나, 영농실패,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유서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하고, 기한을 연장할 수 있음.
- 기존마을의 노후된 주택 신축 및 개량을 위한 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기존마을 정비시 주상복합건물의 개축은 용자지원을 하지 않음.

- 사업시행자는 주민이 주택건축을 할 경우 농어촌주택 표준설계도를 적극 활용하도록 권장하고, 신규택지에 건축시 단지전체와 조화를 이루도록 행정 지도를 하며, 택지분양자를 중심으로 “주택건설추진위원회”를 구성토록 하여 사업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
- 사업시행자가 직접 주택 등의 건축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주택 등의 건설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 경우에 필요한 서류 및 절차는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따름. 단 토지이용계획에 따라 용지로서 공급하여, 용지를 분양받은 자가 개별로 건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외

바. 사업관리 및 공사감리

- 사업시행자는 국토이용계획이나 도시계획 등 관련계획을 검토하여 필요한 절차를 행하고, 사업착수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함.
- 사업시행자는 용지매수 및 보상, 공사발주 및 재산관리(등기수속 등)에 철저를 기하고 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함.
- 공사감리는 시장·군수가 직접 시행하거나 농업기반공사 등에 위탁하여 감리할 수 있음.(농어촌정비법 제97조)
- 사업시행 및 공사감리를 위탁하여 시행할 경우
 - 공사감리자는 전문분야별로 적정인원을 배치하고, 배치상황을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 공사감리자는 공사감리업무를 장기간 계속하여 수행할 수 있는 직원을 배치하여야 하며, 교체시에는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야 함.
 - 공사감리원은 착공전에 설계도서를 숙지하여 설계의 미비여부 및 공정 순위 등을 파악하여 시공중 철저한 공사감리를 하여야함.
 - 사업시행자는 공사감리원이 공사감리업무를 불성실하게 수행할 경우 교체를 요구할 수 있음.
- 사업시행자는 소속 기술직원을 현지 전담자로 지정하고 공사감리원과 유기적인 협조로 공사를 촉진하고, 시공상황을 파악하여 수시 현장확인(사진 촬영 포함) 사업추진의 원활을 기함.

사. 조사설계 및 공사감리 등 요율

- 조사설계 및 공사감독, 사업관리를 위탁하여 시행할 경우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49조(별표5)에 의함.
- 사업시행자가 직접 시행할 경우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49조(별표5)의 사업관리비의 요율 범위내에서 사업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경비(공사감독 추진 출장비, 소모품비 등)를 사업관리비로 계상할 수 있음.

아. 공사준공 및 유지관리

- 공사가 완료되면 시장·군수는 도로, 상·하수도, 공동이용시설 등 공공시설물에 대하여 관련부서 합동으로 예비준공검사를 실시하여 사업비 정산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시·도지사는 준공 확인후 준공사업비를 확정하여 그 결과를 농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 위탁시행자는 준공(부분준공 포함)후 공공시설물에 대하여 당해 시장·군수에게 1개월 이내에 인계하고, 시장·군수는 보완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인수를 하여야 하며, 유지관리 과정에서 공사 하자가 발생할 경우 그 내용을 위탁시행자에게 즉시 통보하여 하자담보 책임기간내에 하자보수가 완료되도록 하는 등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함.
- 정보통신기반시설이 설치된 마을에 대하여는 향후 유지관리에 필요한 지침을 마을주민과 협의하여 마련하고, 정기적으로 점검·관리
- 시장·군수는 준공후 필요시 주요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관리비를 위탁관리자에게 지불하여야 함.

<사업비 지원>

가. 예산 지원

- 보조사업은 지방양여금법에 의하여 사업규모에 따라 2~3년간 보정 지원함.
-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지방양여금 지원기준에 따른 지방비를 반드시 확보하여야 함.
- 사업지구내의 농어촌주택 및 신규택지조성을 위한 용지매수비를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에서 융자 지원할 수 있음.

나. 자금의 운용관리

- 시장·군수가 사업시행을 위탁하였을 때에는 수탁시행자와의 계약에 의거 수탁시행자가 보조사업비를 신청시 이를 지급하여야 하며, 민간에 대한 대행사업비 등으로 일괄집행 할 수 있음.
- 전체 소요사업비중 양여금 보정지원액을 초과하는 사업비는 해당 시·군(면)의 면정주권사업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지구별 양여금 보정지원액이 소요사업비를 초과할 경우 초과분은 당해지구의 공동이용시설과 면정주권사업에 지원할 수 있음.
- 농림부소관 관련 예산사업(생산기반조성, 생활용수개발, 유통·소득·가공시설 사업 등)과 가능한 연계 지원하여야 함.
 - 농어촌도로, 소하천정비 등 타부처소관 연관사업이 당해 생활환경정비사업 지구에 상호 연계하여 종합지원 되도록 추진
- 용자사업 추진
 - 사업시행자는 주택개량자가 선정되면 용자대상자를 확정하여 시·도지사에게 소요액을 보고하고, 용자취급기관에 통보하여야 함.
 - 용자취급기관은 용자금이 공정에 따라 적기에 지원되도록 하며,
 - 용자취급기관은 사업시행자(위탁시행자)가 생활환경정비구역이 지정·고시된 후 용지매수·보상에 소요되는 용자금을 신청할 경우 사업실적확인 없이 용자금을 지급할 수 있음.
 - 용자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후 일정기간동안 주택건축을 착공하지 않아 연내에 용자금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주택건축이 완료된 대상자를 우선하여 조정 시행하여야 함.
- 용자지원시 유의사항
 - 대상자 선정시에는 기 수혜 여부, 타부문용자 중복지급여부를 검토하여야 함.
 - 주택자금 용자대상 : 단독주택(신규마을 조성시 상가겸용주택 포함)에 한하며, 기존마을 정비시 상가겸용주택 개량(개축)은 제외함.
 - 시장·군수가 용자취급기관에 지원대상자 선정 통보시에는 당해 시·군이 승인한 사업계획서 사본을 함께 통보하여야 하며, 지원대상자가 주택건축을 위한 개인일 경우 사업시행자가 발행한 건축공사 착공확인서를 첨부하여 용자를 신청할 경우 용자취급기관과 사업자간에 협의에 의하여 실시하되, 사업자의 편의를 최대한 고려하여 용자지원(후취담보 적극 활용)하여야 함.

- 용자금 취급기관은 용자금의 집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함.
- 기타 용자에 관한 사항은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준용함.
- 용자대상자 선정기준 및 용자지원조건 : 정주권개발 용자사업의(별표1)참조
- 사업비예산의 년도말 검정 및 결산은 농림부장관이 정한 지침에 의하여 실시함.

<행정사항>

가. 조성용지 등의 분양

- 문화마을조성사업으로 조성 및 설치한 택지, 주택과 시설물의 분양은 농림부가 정하는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으로조성된용지및농어촌주택등의 분양업무처리규정”(2000.4.4)에 따름
- 사업시행자는 택지나 주택 등의 분양계획을 수립하여 분양을 시행하며 (위탁시행자의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군수와 협의), 시장·군수는 시·도지사에게, 시·도지사는 농림부장관에게 분양계획 및 분양결과를 보고하여야 함.
 - 시장·군수는 주택자금 등 용자금이 적기에 지원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위탁시행자는 분양대상자가 결정되면 사업시행자에게 분양대상자를 통보하여야 함.
- 조성용지 및 주택 등의 분양을 위해 최초 분양 공고일로부터 2년이 지나도록 미분양된 용지 등의 소유권은 용지매수보상을 집행한 사업시행자에게 귀속되며(위탁시행자인 경우 시장·군수의 승인을 득한후 귀속) 사업시행자는 차입한 용자금을 기한내 상환하여야 함.

단, 사업시행자(위탁시행자 포함)에게 귀속된 용지는 조성목적에 적합한 용도로 활용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시·도지사의 승인을 득하여 용도변경 사용할 수 있음.
- 농어촌정비법 제42조 규정에 의거, 본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수익금 (사업시행자가 시장·군수인 경우 특별회계로, 농업기반공사인 경우에는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의 활용은 다음 순위에 따라 집행함을 원칙으로 함.
 - 시설물 인수 인계전까지의 당해 지구에 설치한 공공시설물의 유지관리
 - 당해 지구에 필요한 공공 및 공동이용시설 등의 설치

- 농어촌생활환경정비를 위한 기술개발·연구 등
- 기타,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마을정비사업
- 분양을 시행한 지구중 공동주택용지 등 최초 분양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도 미분양용지가 있는 경우 분양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단독주택용지 등 필요한 용도로 변경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추가 사업비는 분양수익금 또는 기타(지방비 등)재원을 확보하여 추진함.

나. 보 고

- 문화마을조성 시행계획승인 결과보고 : 시행계획 승인시 (별지 제2호서식)
- 문화마을조성 시행계획변경 결과보고 : 시행계획 변경시 (별지 제3호서식)
- 정주권개발사업(문화마을조성) 시행계획 및 공정계획보고 : 시행계획 및 공정 계획수립시 (별지 제4호 서식)
- 문화마을조성 추진상황보고 : 매분기 익월 10일까지 (별지 제5호 서식)
- 문화마을조성 준공보고 : 준공시 (별지 제6호 서식)
- 문화마을조성 분양계획 및 결과보고 : 매분기 익월10일까지(별지 제7호 서식)

다. 사업추진일정

- 예정지구 선정제출(시·군→시·도→농림부) : 6월말까지
- 기본계획수립, 마을정비구역지정 신청(시·도→농림부) : 익년도 5월말까지
- 마을정비구역지정승인(농림부→시·도) : 익년도 8월말까지
- 시행계획 수립(시·군→시·도 승인→농림부 제출) : 익년도 10월말까지

라. 참고사항

- 시장·군수는 문화마을조성사업과 생산기반정비사업 및 소득기반사업이 종합적으로 연계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함.
- 본 지침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정주권사업 시행지침을 준용함.
- 기타, 중심마을현대화사업의 마을정비에 따른 제반사항은 농어촌정비법의 관계규정에 의함.

[별표 1]

토지 및 지장물 매각동의서

_____군수(시장) 귀하

1. 귀 시·군(귀사)에서 농어촌정비법에 의거 추진하고 있는 마을정비사업(마을하수처리시설 포함)구역에 편입되는 본인 소유의 다음 토지 및 지장물 일체를,
2.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4조 등 관련법령에 따른 감정보상액으로 매각할 것을 동의합니다.(필요시 보상 전이라도 우선공사 또는 사용에 관한 사항 협의 내용 첨언함.)

위 치			지번	지목	지적	편입예정 면 적	비고
시·군	읍면동	리					

년 . . .

승락자 주소 :

성명 (한자) :

주민등록번호 :

[별표 2]

문화마을조성사업의 재원 및 지원기준

(단위 : %)

구 분		재원별 비율		비 고
		보 조 (지방양여금)	용 자 (농특회계)	
문화마을 조성사업	○ 공사비	100	-	○ 자재대, 지장전주이설비, 토취장복구비 등 포함
	○ 잡지출	100	-	○ 이전등기비, 토지감정료, 분양공고비 등 포함
	○ 관리비	100	-	○ 측량설계비, 공사감리비, 분양·주택건축관리비, 사업관리비, 국토이용계획변경협의, 시설물관리비, 환경성검토비 경관형성계획수립비 문화재지표조사비 등
	○ 용지확보 (신규조성)	-	100	○ 발생이자 등 포함
	○ 용지매수보상 (기존마을)	100	-	
마을하수 처리시설	○ 용지확보및 제공사비	100	-	

[별지 제1호서식]

마을정비구역지정승인신청서									
사업명	○○ ○○지구 문화마을조성사업					사업시행자			
지정대상 의 요 구	지정목적								
	및필요성								
	위 치								
	면 적	m ² (평)							
	토지이용 현황(m ²)	지목별	계	전	답	임야	대지	기타	
		면 적							
		비율(%)							
용도지역 현황(m ²)	용도별	계	도시지역	준도시 지	농림지역	준농림 지	자연환경 보전지역		
	면 적								
용도지역 변경내용									
정비내용									
사업기간									
<p>농어촌정비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마을정비구역지정승인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 . .</p> <p style="text-align: right;">신청자 : 도지사(인)</p> <p style="text-align: center; font-weight: bold; font-size: 1.2em;">농 립 부 장 관 귀 하</p>									
<p><구비서류 : 각 3부></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시·도지사 의견서(관련부서 의견 첨부) 2. 정비구역 위치평면도(1/25,000지형도) 및 국토이용계획도(1/5,000지형도)<각 4부> 3. 토지이용계획 4. 매수 또는 수용하여야 할 토지조서 5. 기본계획서(환경성검토서 : 필요시) 6. 사업비확보에 관한 사항 7. 기타 필요한 사항 									

[별지 제2호 서식]

심사제외

○○도 ○○문화마을조성 시행계획승인 결과보고

1. 사업개요

- 위 치 :
- 면 적 :
- 사업기간 :
- 주요공사

-
-

2. 추진경위

- 예정지 지정
- 기본계획수립
- 마을정비구역지정

3. 토지이용계획

구 분	면적(m ²)	구성비(%)	필지수	비 고
계				
○ 주택건설 용지 - 단독주택용지 - 근린시설용지				
○ 공동시설 용지 - 마을회관 - 정보통신기반 - 공동작업장 - 농기계보관소 - 공원 - 놀이터 - 주차장 - 정차대 - 배수로 - 도로 및 보도 - 녹지 및 사면				

※ 지구실정에 맞게 항목조정

4. 사업비수지예산서

(수입)

(단위: 천원)

구분	기본계획 (A)	시행계획승인 (B)	증감 (B-A)	비고
계				
○보조 - 국고 - 지방양여금 - 지방비				
○용자				

(지출)

(단위: 천원)

구분	기본계획 (A)	시행계획승인 (B)	증감 (B-A)	비고
합계				
[마을기반조성]				
○공사비 - - - - -				
○자재대				
○용지매수비 - 용지매수 - 보상				
○관리비 등 - 측량설계비 - 공사감리비 - 사업관리비 - 잡지출				
○예비비				
○기타				
[농촌주택정비 등] ○주택신·개축 ○주택개량				

4. 기타사항(승인조건 등)

※ 관련문서 첨부(승인공문사본, 검토서 등)

[별지 제3호 서식]

심사제외

○○도 ○○문화마을조성 시행계획변경 결과보고

1. 사업개요

- 위 치 :
- 면 적 :
- 사업기간 :
- 주요공사

-
-

2. 주요변경내용

3. 토지이용계획

(면적 : m²)

구 분	당 초			변 경			증 감 (B-A)	비 고
	면적(A)	구성비 (%)	필지	면적(B)	구성비 (%)	필지		
계								
○ 주택건설 용지								
- 단독주택용지								
- 근린시설용지								
○ 공동시설 용지								
- 마을 회 관								
- 정보통신기반								
- 공동 작업장								
- 농기계보관소								
- 공 원								
- 놀 이 터								
- 주 차 장								
- 정 차 대								
- 배 수 로								
- 도로 및 보도								
- 녹지 및 사면								

※ 지구실정에 맞게 항목조정

4. 사업비수지예산서

(수 입)

(단위: 천원)

구 분	당초승인 (A)	금회승인 (B)	증 감 (B-A)	비고
계				
○ 보 조				
- 국 방 양 여 금 비				
- 지 방 양 여 금 비				
○ 용 자				

(지 출)

(단위: 천원)

구 분	당초승인 (A)	금회승인 (B)	증 감 (B-A)	비 고
계				
[마을기반정비]				
○ 공 사 비				
-				
-				
-				
-				
○ 자 재 대				
○ 용 지 매 수 비				
- 용 지 매 수				
- 보 상				
○ 관 리 비 등				
- 측 량 설 계 비				
- 공 사 관 리 비				
- 사 업 관 리 비				
- 잡 지 출				
○ 예 비 비				
○ 기 타				
[농촌주택정비 등]				
○ 주 택 신 · 개 축				
○ 주 택 개 량				

4. 기타사항(승인조건 등)

※ 관련문서 첨부(승인공문사본, 검토서 등)

3. 시행계획 수지예산서(지구별)

- 지구명 :
- 기본계획확정 : . . .
- 시행계획승인 : . . .
- 사업시행기간 : ~

(수입)

(단위: 천원)

구분	승인액	전년도까지 연도별 예산			금년도 예산	내년 이후 잔사업비	비고
		소계	년	년			
계		()	()	()	()		
○ 보조							
- 국							
- 지방							
- 지방							
○ 용자							

- ※ 1. 전년도까지 연도별 예산액 ()는 집행액 내서
- 2. 금년도 예산액 ()는 전년도 이월액 외서

(지출)

(단위: 천원)

구분	승인액	전년도까지 연도별 예산			금년도 예산	내년 이후 잔사업비	비고
		소계	년	년			
계		()	()	()	()		
[마을기반조성]							
○ 공사비							
-							
-							
○ 자재대							
○ 용지매수비							
- 용지매수							
- 보상							
○ 관리비 등							
- 측량설계비							
- 공사감리비							
- 사업관리비							
- 잡지출							
○ 예비비							
○ 기타							
[농촌주택정비 등]							
○ 주택신·개축							
○ 주택개량							

- ※ 1. 전년도까지 연도별 예산액 ()는 집행액 내서
- 2. 금년도 예산액 ()는 전년도 이월액 외서

[별지 제6호 서식]

자체가26-52

○○도 ○○문화마을조성사업 준공결과보고

1. 사업개요

- 위 치 :
- 면 적 :
- 사업기간 :
- 주요공사
-
-
- 시공회사 :

2. 추진경위

- 예정지지정
- 기본계획수립
- 마을정비구역지정
- 시행계획승인
- 공사착수
- 사업준공

3. 토지이용계획

구 분	면적(m ²)	구성비(%)	필지수	비 고
계				
○ 주택건설 용지 - 단독주택용지 - 근린시설용지				
○ 공동시설 용지 - 마을회관 - 정보통신기반 - 공동작업장 - 농기계보관소 - 공원 - 놀이터 - 주차장 - 정차대 - 배수도로 - 도로및보도 - 녹지및사면				

※ 지구실정에 맞게 항목조정

4. 사업비 수지예산서

(수입)

(단위: 천원)

구분	당초 사업비 (A)	준공 사업비 (B)	증감 (B-A)	년도별 내역				비고
				년	년	년	년	
계								
○보조 - 국지방양여금 - 지방양여금								
○용자								

(지출)

(단위: 천원)

구분	당초 사업비 (A)	준공 사업비 (B)	증감 (B-A)	년도별 내역				비고
				년	년	년	년	
계								
[마을기반조성]								
○공사비 - - - - -								
○자재대								
○용지매수비 - 용지매수 - 보상								
○관리비 등 - 측량설계비 - 공사감리비 - 사업관리비 - 잡지출								
○예비비								
○주택정비								
○기타								
[농촌주택정비 등]								
○주택신·개축 ○주택개량								

문화마을조성사업 분양계획 및 분양결과보고

1. 조성용지 분양 현황

구분	시·군	지구명 (면)	착수 연도	분양 개월	분양계획(필지)					분양현황(필지)					분양 율 (B/A)	분양 실시 예정
					계 (A)	단독 주택	근린 시설	공동 주택	업무 시설	계 (B)	단독 주택	근린 시설	공동 주택	업무 시설		
계																
분양계																
계획계																

※ 분양율은 분양이 실시된 지구 기준으로 작성, 분양계획지구는 분양계획과 예정일만 기재

2. 단독주택용지 분양 현황

시·군	지구명 (면)	착수 연도	분양 필지	거주지별(필지)			직업별(필지)					비고	
				면지 역	군지 역	기타 지역	농업	회사원	공무원	상업	기타		
계													

3. 지구별 조성용지 평균 분양가

시·군	지구명 (면)	착수 연도	단독주택용지			근린시설용지		비고
			계획필지	조성원가 (천원/평)	감정가 (천원/평)	계획필지	감정가 (천원/평)	
계								

※ 위탁시행자는 매월 말 현재 기준으로 작성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

③ 농촌마을하수처리시설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농촌정비과(과장 조무희, 토목 사무관 박병태)입니다.

1. 목 적

- 농촌지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하수를 배출 초기단계에서 처리함으로써 하천의 수질오염을 방지하여 쾌적한 농촌지역의 자연환경을 유지·보전함.

2. 시책 및 추진방향

가. 기본방향

- 전국 면단위 이하의 마을에 하수관로 설치를 하거나 하수관로를 통하여 수집한 하수의 처리시설 설치
 - 문화마을조성사업 등 생활기반시설이 정비된 마을 우선 지원
 - 기존마을정비사업과 연계하여 생활하수의 처리가 가능한 지역
- 마을하수처리시설사업의 시행 및 유지관리는 「마을하수도사업통합지침(‘02.8.24)」에 의거 추진

나. 장기사업목표

- 전국 정주권개발대상 면단위지역의 문화마을조성사업 지구에 1개소씩 연차적으로 설치

3. 근거법령 : 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31조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목 표	'94~'99	'01	'02	'03 (예산안)	'04이후
사 업 량 (개소)		762	100	10	12	18	622
사업비	계	304,800	38,800	3,600	3,360	3,600	255,440
	국 고	304,800	38,800	3,600	3,360	3,600	255,400

5. 2003년도 사업시행요령

<사업개요>

가. 사업내용설명

(1) 사업내용

- 문화마을조성지구와 기존마을의 생활하수처리를 위한 마을하수처리시설 설치
 - 주택에서 배출되는 생활하수를 수집·처리하기 위한 하수관로 설치
 - 하수도를 통해 수집한 생활하수의 처리를 위한 마을하수처리장 설치

(2) 지원조건

- 사업비 : 정액사업으로 예산확보에 따라 지원

나. 2003사업비(예산안)내용

구 분	사업량 (지구)	사 업 비 (백만원)					
		사업비 계	예 산 안			지방비	자부담
			계	국고	용자		
마을하수처리시설	18	3,600	3,600	3,600	-	-	-

※ 부족재원은 지자체에서 우선 확보 또는 공정율에 따라 지원

<추진체계>

가. 사업주관기관 : 시장·군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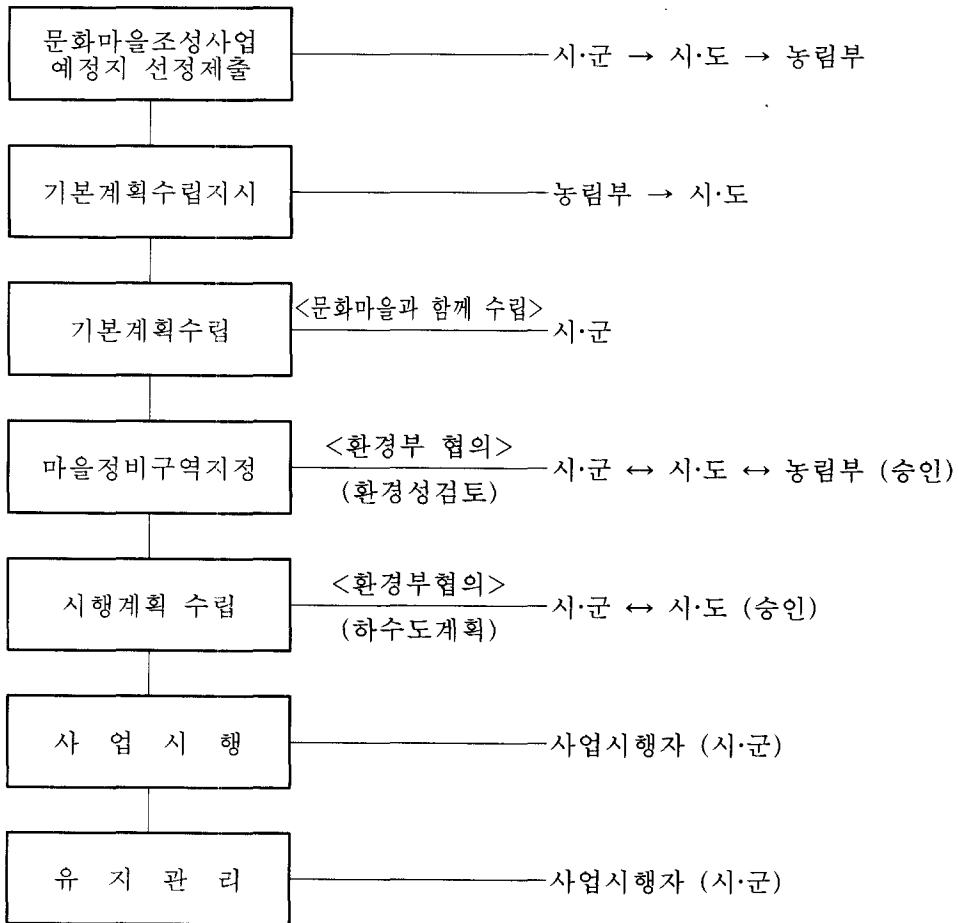
나. 사업담당부서

- 농림부 : 농촌개발국 농촌진흥과(전화 02-500-1964~6)
- 시·도 : 건설도시국 : 주택과(경기), 주택지적과(강원), 지역계획과(경남)
 농 정 국 : 농정과(충북), 기반조성과(충남), 농지개발과(전북)
 건설교통국 : 개발건축과(전남)
 자치행정국 : 새마을과(경북)
 농수축산국 : 농업특작과(제주)
- 시·군 : 건설과

다. 사업시행자 : 시장·군수

- 사업시행자가 시장·군수일 경우 마을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농업기반공사 등에 위탁하여 시행(농어촌정비법 제33조제2항)할 수 있음.
- 시장·군수는 마을하수처리시설사업의 시행 및 유지관리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하수도담당부서에서 설계·시공 등 사업시행 및 유지관리를 전담하도록 부서간에 업무를 협의 조정할 수 있음.
- 문화마을조성사업 시행부서에서는 마을하수도사업을 하수도 담당부서에서 추진할 경우에도 사업시행에 관한 사항(추진상황, 사업비 정산보고 등)을 총괄함.

라. 사업추진절차



<사업계획수립>

가. 사업대상지구 선정

- 문화마을조성사업지구로 기선정된 지구와 하수체계상 병행처리가 가능한 인근마을
- 문화마을조성사업지구가 아닌 지역은 가급적 마을규모가 50호 수준이상인 지역으로써
 - 기존마을의 하수체계, 도로, 상·하수도 등 생활기반시설이 비교적 잘 정비되어 환경개선 효과가 큰 마을
 - 환경오염이 심하여 하천수질오염이나, 영농에 지장을 받고 있는 마을

나. 기본계획

- 계획수립(기본계획 및 실시계획)은 마을하수도업무편람(환경부 1996) 및 하수도시설기준(1997.12), 하수도시설설치사업업무처리일반지침(2001.07.18)에 맞게 수립함.
- 하수처리시설의 계획수립시에는 하수도업무 담당부서와 협의하여 유지관리비가 적게들고, 처리효율이 우수한 시설로 계획하며, 무인·자동화가 가능하도록 함.
- 마을하수도시설의 처리수는 하수도법 시행규칙(2001.10.5 개정) (별표1)의 하수종말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에 만족하도록 계획함.

< 마을하수도에서의 방류수 수질기준 >

(단위: mg/ℓ)

구분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BOD)	화학적산소 요구량 (COD)	부유물질량 (SS)	총질소 (T-N)	총 인 (T-P)	대장균군수 (개/ml)
특정지역기준	10이하	40이하	10이하	20이하	2이하	3,000이하
기타지역기준	20이하	40이하	20이하	60이하	8이하	

※ 대장균군수는 모든 지역에 대하여 2003년 1월 1일 적용

- 문화마을조성사업지구의 마을하수처리시설 기본계획은 문화마을조성사업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함. 단, 문화마을조성사업지구가 아닌 지역의 기본계획은 사업시행자가 직접 시행하거나 농업기반공사 또는 수질환경보전법,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 관한법률에 의거 등록된 민간전문업체에 위탁하여 수립할 수 있음.

- 마을하수처리시설설치사업 기본계획에 다음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함.
 - 하수도정비에 관한 기본방침
 - 하수도에 의하여 하수를 배제 또는 처리하는 구역에 관한 사항
 - 하수도의 기본적 시설의 배치구조 및 능력에 관한 사항
 - 하수도정비사업의 실시순서에 관한 사항
 - 스러지처리계획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 기타 하수도의 정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된 지역에서는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따름
- 문화마을조성사업지구가 아닌 기존마을의 하수처리시설의 기본계획 수립시에는 시·도지사의 의견을 붙여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함.

다. 시행계획

- 사업시행자는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시행계획을 수립,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
- 마을하수처리시설의 계획은 농어촌정비법 제32조 및 제87조 제3항의 규정과 하수도법 제6조의2 및 하수도법 시행령 제6조의2에 의하여 마을정비구역 지정후 또는 시행계획 승인전에 지방환경관리청장과 협의하여야 함.
- 시·도지사는 현지여건, 계획의 타당성, 재원마련대책 등을 검토하여 시행계획을 확정하고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 시행계획의 수립은 사업시행자가 직접 시행하거나, 농업기반공사 또는 수질환경보전법,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에 의거 등록된 민간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수립할 수 있음.

<사업시행>

가. 사업시행

- 사업시행은 문화마을조성사업(단지조성) 준공시기와 연계하여 추진하며, 위탁시행할 경우 사업추진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가능한 한 문화마을조성사업 위탁시행자에게 일괄위탁토록 함.

나. 용지매수 및 보상

- 문화마을조성사업에 준하며,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매수한 토지는 시장·군수 명의로 등기함.
- 용지매수는 가능한 한 문화마을조성사업 용지매수시 일괄매입 함.

다. 사업계획의 변경

- 사업시행자가 사업계획을 변경할 때는 사업계획수립과 동일한 절차를 거쳐야 함. (문화마을조성사업과 관련법 조항 동일) 다만, 다음 각 호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대하여는 타당성을 검토하여 시장·군수가 조정하고, 시·도지사에게 결과보고하여야 함.
 - 관련되는 다른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인한 시설의 변경
 - 지형사정으로 인한 시설의 근소한 위치변경
 - 물가변동으로 인한 사업비의 증감
 - 기타, 단순착오로 인한 사항의 정정
- 사업계획의 내용중 처리공법의 변경이나 처리용량의 변경(10%이상일 경우)에 대하여 사업시행 인가권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라. 설계감리 등 요율

- 마을하수도처리시설설치사업(오·폐수처리시설)의 조사설계, 공사감리, 관리비 등의 요율은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49조 [별표5] 에 준함.

마. 사업관리 및 공사감리

- 사업시행자는 용지매수보상, 공사발주 및 재산관리(등기수속 등)에 철저히 기하고, 주민 입주시 가동에 차질이 없도록 사업을 시행
- 공사감리는 시장·군수가 직접 시행하거나 농업기반공사 또는 민간전문업체에 위탁하여 감리할 수 있음
- 사업시행 및 공사감리를 위탁할 경우
 - 공사감리자는 전문분야별로 적정인원을 배치하고, 배치상황을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 공사감리자는 공사감리업무를 장기간 계속하여 수행할 수 있는 직원을 배치하여야 하며, 교체시에는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야 함.
 - 공사감리원은 착공전에 설계도서를 숙지하여 설계의 미비여부 및 공정순위 등을 파악하여 시공중 철저한 공사감리를 하여야 함.
 - 사업시행자는 공사감리원이 공사감리업무를 불성실하게 수행할 경우 교체를 요구할 수 있음.

- 사업시행자는 소속 기술직원을 현지 전담자로 지정하고 공사감리원과 유기적인 협조로 공사를 촉진하고, 시공상황을 파악하여 수시 현장확인(사진촬영 포함), 사업추진의 원활을 기함.

바. 사업의 준공

- 시장·군수는 사업이 완료되면 예비준공검사를 실시하여 사업비 정산서를 시·도지사에게 보고하고, 시·도지사는 준공확인 후 준공사업비를 확정하여 그 결과를 농림부장관에게 보고

<사업비 지원>

가. 예산의 지원

- 사업비의 예산은 예산확보에 따라 지원하며, 지구별 부족예산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가 별도 재원(가용 지방양여금 등)을 확보 추진
- 사업비지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문화마을 단지조성 준공과 주택건축 입주시기를 고려하여 단지조성과 연계하여 준공이 되도록 지원함.

나. 자금의 운용 및 관리

- 시장·군수가 사업시행을 위탁하였을 때에는 수탁시행자와의 계약에 의거 수탁시행자가 보조사업비를 신청할 경우 이를 지급하여야 하며, 시장·군수는 민간에 대한 대행사업비 등으로 일괄 집행할 수 있음
- 시장·군수는 동의서 징구 및 관련계획의 변경, 지도·감독 등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사업관리비에 계상하여 사용할 수 있음.
- 사업비 예산의 년도말 검정 및 결산은 농림부장관이 정한 지침에 의하여 실시함.

<행정사항>

가. 사후관리

- 사업시행자는 사업이 완료(준공)되면 당해 시설물에 대하여 소유자를 시장·군수로 하여 등기하고 시설물을 인계함.

- 시장·군수가 사업시행을 위탁하여 시행할 경우 공사준공 후 시험가동을 실시하여 1개월 이내에 시설물을 위탁사업자로부터 인수하여야 하며, 시장·군수가 인수하지 않을 경우 준공시부터 인수인계시까지의 발생하는 관리비용을 위탁시행자에게 지불하여야 함.
- 시장·군수는 하수처리장 유지관리지침을 작성하여 성실하게 시설물을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유지관리부서 및 해당 기술부서에서 관리자를 지정하여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유지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에 반영하여야 함. (필요시 시·군 조례를 정하여 조달 가능)
 - 현지 상주직원이 없는 시설에 대하여는 마을주민중 명예관리자를 지정하여 일상점검 및 관리토록 하여야 하며, 유지관리 담당부서와 유기적인 연락체계를 유지토록 하고, 주민에 대하여도 시설의 운영을 위한 필요한 사항을 홍보하여야 함.
- 시설관리자는 유입 및 방류수에 대하여 월 1회 이상 지속적으로 수질을 측정·관리하여야 하며, 전년도 월별 수질검사 결과를 매년 1월말까지 농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 시설물관리자는 시설물관리대장 및 시설물점검대장을 비치하고, 항시 기록 관리하여야 함.

나. 보 고

- 마을하수도시행계획승인 결과보고 : 시행계획 수립시(별지 제1호·제2호서식)
- 마을하수도시행계획변경 결과보고 : 시행계획 변경시(별지 제2호 서식)
- 마을하수도시행계획 및 공정계획보고 : 시행계획·공정계획수립시(별지 제3호서식)
- 마을하수도추진상황보고 : 매분기 익월 10일까지(별지 제4호 서식)
- 마을하수도준공결과보고 : 준공시(별지 제5호 서식)
- 마을하수처리시설 수질검사 결과보고 : 매년 1월말까지(별지 제5호 서식)

다. 참고사항

- 사업시행자는 하수도법 개정 이전에 설치한 오폐수처리시설에 대하여는 개정(법 '01.3.28, 시행령 '01.9.28)된 하수도법에 의하여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공공하수도로 등록 관리하여야 함.

[별지 제1호 서식]

심사제외

○○도 ○○마을하수처리시설 시행계획승인 결과보고

1. 사업개요

- 위 치 :
- 시설규모 : m³/일 (부지면적 : m²)
- 사업기간 :
- 주요공사
-
- 설계기관

2. 추진경위

- 예정지지정 :
- 기본계획수립 :
- 마을정비구역지정 :
- 마을하수도계획협의 :

3. 계획처리용량(시설용량)

구 분		처리규모	단위오수량	유입하수량	비고
문화마을	인구(인)				
	근린시설(m ²)				
	소계(A)				
기존마을	인구(인)				
	근린시설(m ²)				
	공공기관(m ²)				
	소계(B)				
계(C=A+B)					
여유수량(지하수량 등)(D)					
합계(C+D)					

4. 계획공법 및 처리수질

- 계획처리공법 :
- 계획처리수질

(단위 : mg/l)

유입수질					방류수질				
BOD	COD	SS	T-N	T-P	BOD	COD	SS	T-N	T-P

5. 사업비수지예산서

(수 입)

(단위: 천원)

구 분	기본계획 (A)	시행계획승인 (B)	증 감 (B-A)	비고
계				
○ 보 조 금 - 국 방 양 여 금 - 지 방 방 비				

(지 출)

(단위: 천원)

구 분	기본계획 (A)	시행계획승인 (B)	증 감 (B-A)	비 고
계				
○ 공 사 비 - 토목공사 · 하수관로 · 처 리 조 · 조경공사 · 부대공사 · 기 타 - 기계공사 - 전기공사 - 건축공사				
○ 자 재 대				
○ 용지매수비 - 용지매수 - 보 상				
○ 사업 관리비 등 - 측량설계비 - 공사감리비 - 사업관리비 - 잡 지 출				
○ 예 비 비				
○ 기 타				

5. 기타사항(승인조건 등)

※ 관련문서 첨부(승인공문사본, 검토서 등)

[별지 제2호 서식]

심사제외

○○도 ○○마을하수처리시설 시행계획변경 결과보고

1. 사업개요

- 위 치 :
- 시설규모 : m³/일(부지면적 : m²)
- 사업기간 :
- 주요공사
 -
 -
 -
 -
 -
 -
- 사업시행자(위탁시행자) :
- 설계기관 :
- 공사감리기관 :

2. 주요변경내용

3. 사업비수지예산서

(수입)

(단위: 천원)

구분	당초승인 (A)	금회승인 (B)	증감 (B-A)	비고
계				
○보조 - 국고 - 지방양여금 - 지방비				

(지출)

(단위: 천원)

구분	당초승인 (A)	금회승인 (B)	증감 (B-A)	비고
계				
○공사비 - 토목공사 · 하수관로 · 처리조 · 조경공사 · 부대공사 · 기타 - 기계공사 - 전기공사 - 건축공사				
○자재대				
○용지매수비 - 용지매수 - 보상				
○사업관리비 등 - 측량설계비 - 공사감리비 - 사업관리비 - 잡지출				
○예비비				
○기타				

4. 기타사항(승인조건 등)

※ 관련문서 첨부(승인공문사본, 검토서 등)

3. 시행계획 수지예산서(지구별)

- 지구명 :
- 기본계획승인 :
- 시행계획승인 :
- 준공 예정일 :
- 처리 용량 : m³/일(처리계획호수 : 호, 처리계획인구 : 명)

(수입) (단위 : 천원)

구분	승인액	전년도까지 연도별 예산			금년도 예산	내년이후 잔사업비	비고
		소계	년	년			
계		()	()	()	()		
○ 보조 - 국고 - 지방양여금 - 지방비							

- ※ 1. 전년도까지 연도별 예산액 ()는 집행액 내서
- 2. 금년도 예산액 ()는 전년도 이월액 외서

(지출) (단위 : 천원)

구분	승인액	전년도까지 연도별 예산			금년도 예산	내년이후 잔사업비	비고
		소계	년	년			
계		()	()	()	()		
○ 공사비 - 토목공사 · 하수관로 · 처리조 · 조정공사 · 부대공사 · 기타 - 기계공사 - 전기공사 - 건축공사							
○ 자재대							
○ 용지매수비 - 용지매수 - 보상							
○ 사업관리비 - 측량설계비 - 공사감리비 - 일반관리비 - 잡지출							
○ 예비비							
○ 기타							

- ※ 1. 전년도까지 연도별 예산액 ()는 집행액 내서
- 2. 금년도 예산액 ()는 전년도 이월액 외서

3. 공정계획(지구별)

시공회사 : (인)

작성 자 : (인)

지구명 : 지구, 사업시행기간 : , 착공년월일 :

(단위 : 백만원)

과 목	승인액	년 까지	년 계획	년 이후	진도(%)		월 별 공 정 계 획 (금액)																비 고			
							1/4				2/4				3/4				4/4							
					당 년	누 계	1	2	3	계	%	4	5	6	계	%	7	8	9	계	%	10		11	12	계
합 계																										
○공사비																										
-토목공사																										
-우수관로																										
-우수처리조																										
-조경공사																										
-부대공사																										
-기타																										
-기계공사																										
-전기공사																										
-건축공사																										
○자재대																										
○용지매수																										
-용지매수																										
-보상																										
○사업관리비등																										
-측량설계비																										
-공사감독비																										
-사업관리비																										
-잡지출																										
-기타																										
○예비비																										
○기 타																										

※ 이월 예산은 ()외서로 상단에 기재

5. 사업비수지예산서

(수입)

(단위: 천원)

구분	당초 사업비 (A)	준공 사업비 (B)	증감 (B-A)	년도별 내역			비고
				년	년	년	
계							
○ 보조 - 국고 - 지방양여금 - 지방비							

(지출)

(단위: 천원)

구분	당초 사업비 (A)	준공 사업비 (B)	증감 (B-A)	년도별 내역			비고
				년	년	년	
계							
○ 공사비 - 토목공사 · 하수관로 · 처리조 · 조경공사 · 부대공사 · 기타 - 기계공사 - 전기공사 - 건축공사							
○ 자재대							
○ 용지매수비 - 용지매수 - 보상							
○ 사업관리비 - 측량설계비 - 공사감리비 - 일반관리비 - 잡지출							
○ 예비비							
○ 기타							

[별지 제6호 서식]

심사제외

○○도 ○○마을하수처리시설 수질검사 결과보고

- 위 치 :
- 처 리 용 량 :
- 설 치 연 도 :
- 가동 개시일 :
- 처 리 공 법 :
- 유지관리부서 :

수질검사 년 월 일	시설용량 (m ³ /일)	처리용량 (m ³ /일)	유입수질(mg/l)					방류수질(mg/l)					
			BOD	COD	SS	T-P	T-N	BOD	COD	SS	T-P	T-N	
'02평균													
'03.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년평균													

※ 수질검사기관의 성적표 첨부

④ 농가주거환경개선*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촌진흥청 생활개선과(과장 김화님, 지도관 신영숙)입니다.

1. 목 적

- 편리한 주거시설 설치로 농가주부의 가사노동 절감
- 쾌적하고 위생적인 농가주거환경조성으로 농촌생활의 활력 도모
- 농촌 수질환경 오염 방지로 생태환경 보전

2. 시책 및 추진방향

- 농촌의 다원적 기능 활성화를 위한 환경친화적인 주거환경개선사업의 발굴 보급
- 농가의 주거환경 중 부엌개량, 목욕실설치 추진
- 농촌 마을의 공공장소 또는 집단비닐하우스 들판 등에 친환경화장실 설치
- 각종 생활개선시범사업마을·행정 자치부의 마을환경개선사업과 연계 추진

3. 근거법령

- 농촌진흥법 제13조
- 농어촌발전대책 및 농정개혁 추진방안 세부추진계획('94. 9)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 호, 개소, 백만원)

구 분	'92-'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예산안)	2004이후	비 고
사업량	91,070	1,497	1,157	1,011	2,114	○친환경화장실 설치사업 '01:용자 '02~'03:보조
계	343,220	8,141	6,628	5,664	10,082	
사 보 조	-	-	314	942	3,144	
업 용 자	240,254	5,699	4,200	2,646	2,656	
비 지방비	-	-	314	942	3,144	
자부담	102,966	2,442	1,800	1,134	1,138	

※ 2003년 부엌+목욕실 : 540호, 사업비 3,780(용자 2,646)백만원
 화장실 설치 : 471개소, 사업비 1,884(국비 942)백만원

5. 2003년도 사업시행요령

<사업개요>

가. 사업내용

(1) 지원배경

- 상대적으로 미흡한 농가의 주거실태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함
 - '01 농촌주거환경실태(농생연) : 부엌개량 89%, 목욕실설치 76%
- 농촌에서 가장 취약한 시설이 하수도 시설임('94 농진청)
 - 수질오염으로 인해 낙동강 및 팔당상수원은 '90년 1급수에서 '99년 2급수로 전락('00. 1. 한국일보)
 - 농촌지역 옥외화장실의 78%가 재래 수거식이므로 하수도나 정화조가 필요 없는 환경친화형 화장실개량이 절실함

(2) 지원사업의 내용

- 부엌개량 + 목욕실설치
 - 부엌개량 : 부엌의 실내화, 상하수도시설, 작업대설치, 환기·채광시설 등
 - 목욕실설치 : 상하수도시설, 욕조 또는 샤워기 설치, 방수·환기시설 등
- 친환경화장실 설치 : 공공장소 설치
 - 분뇨저장탱크(퇴비조), 컴포스트베드, 배기팬, 배기굴뚝

(3) 지원대상자 : 전국의 농가(부엌+목욕실) 및 마을, 비닐하우스 집단지 등
(친환경화장실)

(4) 지원단가

- 부엌+목욕실 : 농가당 490만원 용자(용자 70%, 자부담 30%)
- 친환경화장실 : 개소당 400만원 보조(국비 50%, 지방비 50%)

나. 2003년도 사업비(예산안) 내용

(단위 : 백만원)

내용별	사업량	사 업 비					
		사업비 합 계	예 산 액(농특회계)			지방비	자부담
			계	보 조	용자		
계	1,011	5,664	3,588	942	2,646	942	1,134
○부엌+목욕실(호)	540	3,780	2,646	-	2,646	-	1,134
○친환경화장실(개소)	471	1,884	942	942	-	942	-

* 용자조건 : 연리 4.0%, 3년거치후 7년상환(부엌+목욕실 설치)

<추진체계>

가. 사업주관기관 : 시·군 농업기술센터

나. 사업 담당부서

- 농촌진흥청 : 기술지원국 생활개선과 (0331-299-2671)
- 시 · 도 : 도 농업기술원 생활개선(기술)과·팀
광역시 농업기술센터 생활개선(기술)팀·담당
- 시군자치구 : 시·군 농업기술센터 생활개선(기술)팀·담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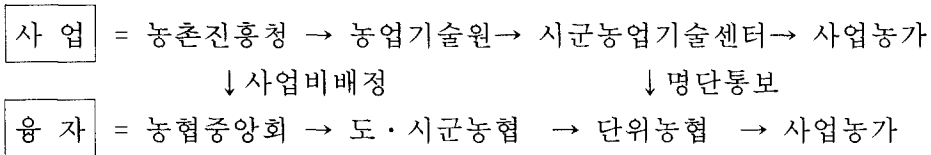
다. 자금지원대상자

- 농림사업시행지침에 의거 사업을 신청한 농가전국의 농가(부엌+목욕실)
및 마을, 비닐하우스 집단지 등(친환경화장실)

라. 사업시행

<부엌+목욕실 설치>

(1) 사업 시행체계



(2)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 사업계획수립 : 본 시행지침에 의거 도, 광역시, 시군단위 사업계획 수립
- 광역시, 시군단위 농가교육 실시 : 광역시 및 시군농업기술센터에서는
개량농가를 대상으로 기술교육 실시
- 사업추진상황 파악 : 광역시 및 시군농업기술센터소장은 사업추진내용을 정기적
으로 파악, 농가별 시행여부 확인

(3) 사업비 집행방법

- 시군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선정된 농가명단을 대출취급기관(농협)에 통보
- 대출취급기관은 계통기관으로부터 대출한도가 배정되고 사업주관 기관으로부터
지원대상자 명단과 대출금액이 확정 통보되면 사업 실적 확인 없이 여신관리
계좌에 입금하지 않고 대출금을 일시 전액 지급함(선용자 후사업 가능)

(4) 추진 순기표(예시)

세 부 내 용	추진 시기(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 지침시달, 계획수립												
○ 농가선정, 기술교육												
○ 사업추진												
○ 자금배정 및 용자지원												
○ 평 가												

<친환경화장실 설치>

(1) 사업시행계획 작성

- 본 지침과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도 및 시군단위 사업추진계획 수립

(2) 사업대상지역의 변경

- 사업대상지역이 설치를 포기하거나 사업을 시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여 사업지역을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는 시군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의 의결을 거쳐 결정 변경

(3) 사업비 집행방법

-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보조금 지급 규정에 의해 사업대표에게 지원
-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예산집행상황 등 사업추진상황을 지도 점검

(4) 추진일정

세부내용	추진 시기											
	1월	2	3	4	5	6	7	8	9	10	11	12
○ 추진위원회 구성												
○ 사전 교육 및 계획수립												
○ 사업 추진 및 활용지원												
○ 사업 평가												

다. 사업검정 및 사업비정산

- 사업실시 후 사업평가서 작성(별지 제1호, 제2호 서식)
- 사업비정산은 사업대상별로 자체 정산토록 하고 총사업비 소요량을 파악 평가서에 기재

바. 기타사항

- 시군 농업기술센터장은 본 사업용으로 지원된 용자금과 보조금이 당초 목적에 맞게 사용되도록 지도 감독하여야 하며, 타 목적에 전용하였을 경우에는 회수 조치함

<행정사항>

가. 사후관리

<부역+목욕실 설치>

- 시군농업기술센터장은 부역및목욕실설치사업 추진실적을 분기별로 보고 (별지 제3호 서식)

<친환경화장실 설치>

-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사업착수 연도부터 3년간 활용지도 실시
- 설치마을에서는 설치완료 후 시설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하며, 시설이 본래의 설치 목적에 맞게 지속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함
- 시군농업기술센터 장은 친환경화장실 설치실적을 보고 (별지 제4호 서식)

6. 2004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 안내

<부역 및 목욕실 설치>

가. 신청서 제출기관 : 시군 농업기술센터

나. 신청자격 : 전국의 농가

다. 신청절차 : 시군 농업기술센터에 서면으로 신청

라. 구비서류 : 부역 및 목욕실 설치 사업계획 및 신청서(별지 제5호 서식)

마. 지원대상자 선정

(1) 선정기준

- 시군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희망농가의 가옥상태, 시설개량 가능성, 자부담 능력, 용자금 상환능력 등을 검토한 후 선정

(2) 우선 순위

- 행정자치부 농어촌주거환경개선지구 거주농가, 생활개선 각 시범마을에 우선 지원

(3) 농가 선정시기

- 전년도 사업신청시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해당 지역의 주거실태 등을 참고로 사업량만 신청하고, 당해 년도에 농가신청을 받아 농업산학협동 심의회에서 총 사업량만 심의
- 농가선정에 대한 심의는 사업년도 초(1/4분기)에 실시

(4) 선정절차

- 시군농업기술센터 소장은 희망농가에 현지 출장하여 선정기준에 의해 선정한 후 농업산학협동심의회를 받아 확정, 농가에 통보
- 농가주거환경개선사업은 소액용자사업으로서 사업추진 중 발생하는 변경 농가 심의는 해당 농업기술센터 소장의 결재로 대신할 수 있음

바. 기타사항

- 정부시책방향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청자가 필요로 하는 사업을 신청할 수 있음
- 위의 경우 시도별로 사업의 종류를 1~2가지로 정하고 그 사업계획서를 같이 제출하여 중앙의 승인을 얻어야 함
 - 사업계획의 주요내용 : 사업선정의 배경, 목적, 추진방향, 사업내용, 세부 추진계획, 기대되는 성과, 소요사업비 산출내역 등

<친환경화장실 설치>

가. 신청서 제출기관 : 시군 농업기술센터

나. 신청자격 : 아래의 여건을 갖춘 마을 또는 비닐하우스 집단지

- 환경보호에 대한 의식이 강하고, 책임관리자가 있는 지역
- 시설 설치가 용이하고 적정규모의 대지가 있는 지역
- 설치 후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지역
- 시범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지역

다. 신청절차 : 시군 농업기술센터에 서면으로 신청

라. 구비서류 : 친환경화장실설치 사업계획 및 신청서(별지 제6호 서식)

마. 지원대상자 선정

(1) 선정기준

- 시군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희망마을 또는 지역의 대지확보, 주변여건, 활용성, 관리성, 시범의 효과 등을 검토한 후 선정

(2) 우선순위

- 그 동안의 사업 지원으로 사업효과가 높은 지역
- 상수도 보호구역내 마을 또는 비닐하우스 집단지역

(3) 선정절차

- 시군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신청마을 또는 지역의 설치여건 및 사업계획서를 선정기준에 따라 종합적으로 심사한 후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심의를 거쳐 적합 여부 및 우선순위를 결정한 후 설치가 가능한 사업량(예산)을 도 농업기술원 및 광역시 농업기술센터에 요구하고, 도 농업기술원 및 광역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촌진흥청에 예산을 요구함
- 시군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희망마을 또는 지역을 선정기준에 의해 선정한 후 시군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심의를 받아 확정, 마을 또는 설치지역 대표자에게 통보

바. 기타사항

- 기본사업방향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청자가 필요로 하는 사업을 신청할 수 있음
- 위의 경우 시도별로 사업의 종류를 1~2가지로 정하고 그 사업계획서를 같이 제출하여 중앙의 승인을 얻어야 함
 - 사업계획의 주요내용 : 사업선정의 배경, 목적, 추진방향, 사업내용, 세부 추진계획, 기대되는 성과, 소요사업비 산출내역 등

[별지 제1호 서식]

부엌 및 목욕실 설치 사업 평가서

주소	농가명	사업규모(평)			소요사업비(천원)			완료일	평가
		부엌	목욕실	기타	계	용자	자부담		
						(%)	(%)		

첨부 : 개량후 사진 매. 끝

2003 년 월 일

평가자 소속 직 성명 (인)

친환경화장실 설치 사업 평가서

설치장소			설치지역 주소	대표자명		사업 규모 (평)	투자내용 (천원)			사업 완료 (월)	비고
							계	보조 금	자부 담		
마을	들판	기타	읍면리동	성명	전화 번호						
		(구체적 기입)									에 로 점 및 문 제 해 결 방 안 등 평 가 결 과

첨부 : 개량전 · 후 사진 1매. 끝.

년 월 일

평가자 소속 직 성명 (인)

[별지 제3호 서식]

부엌 및 목욕실 설치 사업 추진실적(/4분기)

○ 개량실적

(매분기말 10일전 보고)

시도별	개량실적(호)			사 업 비(천원)			
	계획	실적	비율	총소요액	용자액	자부담	기 타

○ 시설설치내용

(단위 : 호)

시도별	개량실적	개량비용(만원)				작업대배치				목욕실유형	
		650 이하	651~ 800	801~ 1,000	1001 이상	-자형	ㄴ자형	ㄷ자형	=자형	온냉수	냉수

- 개량지도시 문제점 및 해결방안과 평가
- 분기보고시는 누계만 기재

[별지 제4호 서식]

친환경 화장실 설치 사업 추진실적(/4분기)

(매분기말 10일전 보고)

시도별	개량실적			사업비(천원)				비고
	계획	실적	비율	총소요액	보조금	자부담	기타	

설치 유형					설치장소			소요액(백만원)				비고	
벽돌형	아이소 판넬형	와이어 메쉬형	ALC형	기타	마을	들판	기타	4	5-6	7-8	9이상		

친환경화장실 설치 사업계획 및 신청서

설치장소			설치지역 주소	대표자명		사업 규모 (평)	투자계획 (천원)			사업 시기 (월)	비고
							계	보조 금	자부 담		
마을	들판	기타	읍면리동	성명	전화 번호						
		(구체적 기업)									

위와 같이 2004년도 사업계획 및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인

시·군농업기술센터 소장 귀하

※ 이 사업시행 지침에 대한 해석권한은 농림부 농촌진흥과(과장 조무희, 서기관 조홍제)입니다.

1. 목 적

- 상수도 공급이 어려운 전국 면지역의 농어촌 자연마을에 암반관정을 개발하여 생활용수, 농업용수 등 다목적 용수를 공급하여 생활환경개선 및 소득향상에 기여

2. 시책 및 추진방향

- '94~2004년까지 면지역의 농촌자연마을에 5,000개소의 암반관정을 개발
- 생활용수와 농업용수(고소득 작목 포함) 외 축산용수, 농산물 세척가공용수 등 다목적으로 겸용 공급
- 상수도계획과 중복되지 않고, 주민들이 물부족으로 시설을 원하고 있으며 주민자치 유지관리조직을 운영하여 잘 활용할 수 있는 지역을 개발
- 관정의 지하수 수질을 보전하고 위생적인 물을 공급하며 정기적으로 수질 검사를 실시
- 시설규모는 공급측면의 지하수부존량과 수요측면의 마을인구나 필요한 농업용수량 등 수요와 이용측면의 전기료 등 부담능력을 고려하여 정함.

3. 근거법령

- 농어촌정비법 제2조

4. 연도별 지원계획

(금액 : 백만원)

구 분	계	'94~2000	2001	2002	2003 (예산안)	2004	
사업량(개소)	5,000	2,871	480	480	480	689	
사 업 비	계	800,000	465,500	81,600	81,600	81,600	89,700
	국 고	400,000	232,750	40,800	40,800	40,800	44,850
	지방교부금	400,000	232,750	40,800	40,800	40,800	44,850

5. 2003년도 사업시행요령

<사업개요>

가. 사업내용 설명

(1) 사업내용

- 추진배경 : 면지역의 농어촌 자연마을은 상수도 공급이 어렵고 기존의 우물·샘·간이상수도등은 수질이 점차 악화되고 있어 심층지하수를 개발하여 용수문제 해결
- 사업내용
 - 수원공 개발
 - 지하수조사·개발 : 지질조사, 물리탐사, 시추조사(오염방지 그라우팅 포함), 영향조사, 착정, 우물자재설치, 우물소독, 수질 검사 등
 - 수원공시설 : 수중모타펌프, 양수장옥, 전기시설
 - 이용시설 : 송·배수관, 수조(물탱크), 정수시설, 계량기, 소화전 등
 - ※ 농가별 내부배관시설은 수혜자 부담(수도법 제 23조)

(2) 지원조건

- 지원대상 : 면지역의 농촌자연마을 중 우물, 하천수 등 자연수 또는 간이 상수도를 이용하는 마을로서 수량이 부족하거나 수질이 오염된 마을
- 지원단가 : 1지구당 평균 170백만원
 - 수원공개발(지하수조사 포함)과 이용시설 설치 및 폐공처리비가 포함된 것으로 시·도지사가 지역여건(관정심도, 마을인구등)에 따라 조정지원
- 재 원 : 국고보조(농특세) 50%, 지방교부금 50%

나. 2003 사업비(예산)내용

사업량 (개소)	사 업 비					
	사업비 계	예산액(백만원)			지 방 교부금	자부담
		계	국 고	읍 자		
480	81,600	40,800	40,800	-	40,800	

<추진체계>

가. 사업주관기관 : 농림부

나. 사업담당부서

- 농림부 농촌개발국 농촌진흥과 (전화 : 02-500-1971~2)
- 시·도 : 기반조성과, 농업기반과, 지역계획과, 농정과, 농축산과, 주택과, 농산지원과, 농지개발과, 수자원 개발사업소
- 시·군 : 건설과

다. 사업시행자 : 시장·군수

라. 사업추진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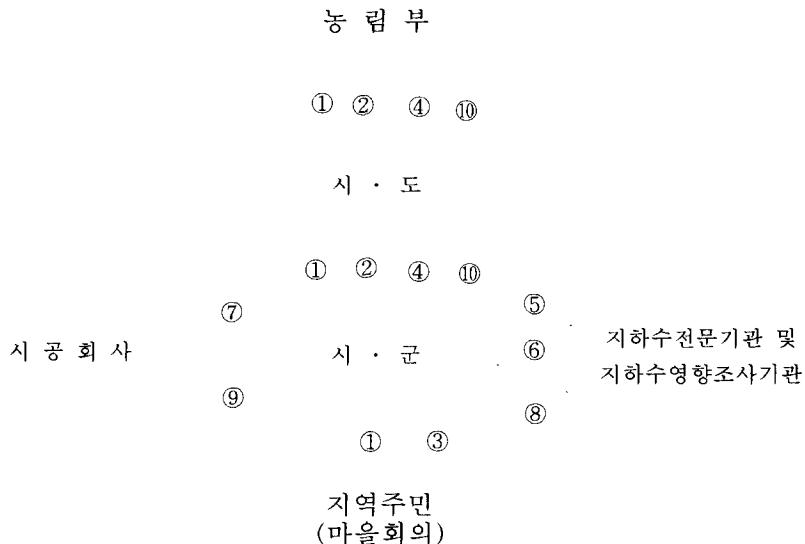
(1) 선정절차

- 사업희망마을(신청) → 면 → 시·군(예정지 선정) → 시·도(확정)
 - ※ 시군에서 수혜대상자의 의견수렴(마을회의) 후 사업예정지 선정
 - 생활 용 수 : 마을규모, 전기료부담 가능호수(호, 인) 및 인구
 - 농 업 용 수 : 공급면적(논, 밭 구분), 필요시 축산용수 등 추가
 - 유지관리조직 구성가능성 및 대표자 선정
 - 농촌농업생활용수개발사업 신청서(별지 1호 서식) 제출

(2) 사업시행순서

- 사업지구선정 → 사업시행인가 → 공사계약 → 지하수조사 → 지하수개발(우물) → 수원공시설(수중모터펌프, 전기시설, 압상관) → 이용시설→송수관(수조 및 배수관시설) → 사업준공 → 간이상수도 등록 → 시설유지관리

(3) 사업시행 체계도



- ①사업후보지 선정 ②예산내시 및 실시요령 시달 ③사업내용 및 지원조건 설명
 ④사업지구 선정 보고 ⑤기초조사 및 영향조사 의뢰 ⑥조사성과품 제출 ⑦공사시행
 ⑧공사감독 위탁 및 승인 ⑨사업준공 및 정산 ⑩사업 준공보고

마. 사업대상지구 선정

(1) 선정기준 (사업지구 적정성 검토)

- 상수도계획수립 또는 수립예정지는 중복개발방지를 위하여 제외 (상수도 부서와 협의하고 중복이 안된다는 확인을 받음)
- 댐수몰예정지 또는 공해로 마을이전을 해야하는 지역은 제외
- 우물, 샘등 자연수 이용마을이라도 수량이 풍부하고 수질오염이 안된지역은 제외
- 주민의견 수렴시 호응도가 높아 농가부담 내부배관시설을 적극 설치하고, 자체 유지관리조직을 구성하며, 전기료등 관리비용을 부담하여 시설물을 잘 이용할 수 있는 지역만 사업추진
- 장기적으로 지하수 수량 및 수질의 변화가 적은지역을 개발하도록 주변 개발지역을 검토하여 지하수부존 및 수질이 적합한 지역 선정 (섬, 해안, 간척지, 특수지질지역은 염분함유, 수량부족에 유의)

(2) 지구선정 우선순위 (선정기준에 적합한 지역중)

- 대상지 5000개소에 해당하는 지구 우선 추진(정비51370-10150호 : 2000.9.29)
- 수혜가구수가 많은 마을 (50호 이상)을 우선
- 제한급수지역등 상습적으로 식수가 부족하거나 수질이 오염되어 시급히 개발이 요구되는 지역
- 농업용수와 생활용수 등 다목적으로 이용 가능한 마을
- 주민호응도가 매우 높고 개발후 시설을 활용, 소득을 높일 수 있는 마을
- 기존의 생활용수 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마을
- 정주권개발등 농촌생활환경 개선사업과 연계가 가능한 마을

(3) 사업지구 확정 (시·도)

- 시·도지사는 시·군에서의 지구선정이 기준(상수도계획과 중복여부 및 개발후 이용저조 예측등)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상주인구에 따라 적정시설규모로 계획하면 사업시행지구를 확정
- 시설완공후 이용이 저조하거나 정기적인 수질검사와 유지관리조직 구성 및 운영이 미진한 마을이 있는 시·군에 대하여는 전년대비 사업량지원 축소방안 강구 (역 인센티브제)

바. 사업시행

(1) 사업시행인가 및 공사발주

- 사업시행인가 : 시장·군수
 - 시장군수는 시행계획 수립시 농어촌정비법 제8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상수도 관련부서(도의 수도과 및 당해 시·군 수도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수도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간이상수도 인가를 의제 처리

- 사업시행인가시에는 마을회의에 따른 공급대상자 및 수혜농지와, 개발후 시설관리운영계획(주민자체 유지관리조직 및 비용부담등에 관한사항)을 첨부함
- 공사발주 : 시장·군수

(2) 공정계획

- 수립자 : 시장·군수
- 수립방법 : 당해연도 예산규모를 감안 지하수조사 및 개발 (지하수영향조사 포함), 수원공시설 및 이용시설로 공종을 구분 수립 (별지 제3호 서식)
 - 사업시행자는 공사진척상황을 수시로 파악하여 시행상의 문제점을 해소함

(3) 시행계획 변경

- 현지여건상 계획보완을 요하는 경우는 시장·군수가 판단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변경시행하고 결과는 시·도지사에게 보고함. 다만, 사업지구를 변경할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승인하고 그 결과(변경사유 명시)를 농림부에 보고

(4) 용지매수 및 보상

- 용지매수 및 보상비는 「감정평가에 관한법률」, 「공공용지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의함
- 농작물보상 등은 용지매수 및 공사시기를 조정하여 원칙적으로 피함.

(5) 조사·설계 및 시공

(가) 지하수조사·개발

- 지하수조사는 일반적으로 답사 → 물리탐사 → 착정위치선정 → 시추(케이싱 설치 및 그라우팅) → 양수시험 및 간이수질검사 → 검층 (필요시) 순으로 하고 시추 결과, 성공공인 경우 확공하고 실패공일 경우 폐공처리함.
 - ※ 시추조사는 적정심도까지 1공을 시행후, 실패시는 1공을 추가시추
- 시장·군수는 지하수 부존조사가 안된 지역에 대하여는 지질조사, 원격탐사, 물리탐사, 시추조사 등 지하수조사를 하여야 하고, 지하수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의 지하수조사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음. 다만 시추조사는 지하수법 제22조에 규정에 의한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을 등록한 업체도 참여할 수 있음.
- 또한, 지하수 개발로 영향권내 지하수의 수량을 현저하게 감소시키거나, 수질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지하수법 제27조에서 규정한 지하수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지하수영향조사를 실시하여야 함.
- 지하수개발에 따른 지하수법 제7조 내지 제8조 규정에 의한 지하수개발·이용의 허가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며 시공시 지하수법 시행령 제25조 및 “지하수의수질보전등에관한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지하수 오염방지 그라우팅 등 지하수의 보전조치를 하여야 함.
 - ※ 암반관정에서의 케이싱과 오염방지그라우팅 시공
 - 암반관정의 케이싱 관입깊이는 견고한 암반선까지 하며, 일반적으로 연암층의 0.5m 정도 깊이까지 설치
 - 그라우팅은 지표의 오염수 유입방지를 위해 미고결층과 암반접속부 안정을 주목적으로 함
 - 그라우팅을 한후 주입재가 소요의 강도로 굳을때 까지 암반층에 충격을 주는 보링작업을 48시간 이내에는 하지 아니함.
- 그라우팅시에는 사업시행자, 공사감독원, 이장 등 마을주민을 입회시켜 지하수오염방지시설을 필히 확인하고, 입회자 대표가 날인

- 지하수(수자원)의 개발은 지역에 필요한 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함을 목표로 하고 생활용수공급기준은 1인당 1일 300~350ℓ(특별한 경우 250~400ℓ)로 하며 농업용수는 지하수부존량과 가뭄피해 농지를 고려하여 정하고 필요시 축산용수나 농산물 세척·가공용수도 공급
- 지하수원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대수층이 발달한 곳에 관정을 시설하며, 일반적으로 적정양수량은 1일 150톤 이상, 관정(우물자재) 직경은 20cm로 함. 이 때 적정양수량 산정을 위한 단계양수시험 (3~4 단계)은 48시간 이상 연속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함.
 - ※ 일반적인 우물기준심도는 150~200m로 적정양수량 확보심도까지 굴착하고, 산간, 해안, 도서지역 등 특수지역은 시·도지사가 조정함
- 마을규모(상주인구)가 적고 농업용수 수요가 적으나, 용수원확보가 어려운 지역으로서 대수층이 발달되지 않아 지하수 부존량이 적어서 지하수개발 가능량이 1일 150톤 이하인 경우 상주인구 1인당 1일 350ℓ의 생활용수를 상시 공급할 수 있으면, 폐공하지 않고 활용할 수 있음.
 - 이때 지하수 수량감소 및 수질악화 예방을 위하여 계획양수량은 단계양수시험량의 50%(안전율 2.0배)로 낮추고, 양수량이 적으면 관정직경을 축소하여 15cm로 할 수 있음.
 - 다만, 해수침입 영향을 받는 도서 및 유역이 작은 반도나 해안지역과 상습 제한급수지역 등은 공급기준을 1인당 1일 250ℓ 이상으로 완화할 수 있음.
- 대수층이 발달되지 않은 지역(개발가능량 1일 150톤 이하)에서 시추공의 성공여부 판단은 적어도 그 지역의 선구조도, 3지점의 물리탐사(쌍극자 및 수직탐사) 자료와 당해 시추공 자료(필요시 과거 시추실패공 자료 포함)를 시공회사로부터 제출 받아 도·시군 담당공무원, 농업기반공사 지하수부장 각 1인 계 3인이 심의하여 합의로 판단함.
- 우물의 확공은 안정수위 이하 심도까지 적절하게 계획·시공하며, 확공 후에는 공내청소(에어써징)를 하고 우물자재 설치후 공내소독을 실시하며 이때 공사감독자가 반드시 입회하고, 수질검사용 원수채취를 확인한다.

- 우물을 완공한후 지하수(원수)에 대한 수질검사를 수도법 관련규정 및 “먹는물수질기준및검사등에관한규칙”에 의한 46개 전항목검사를 실시함.
 - 검사결과 기준에 부적합할 경우 관정시설을 폐쇄하거나 농업용수 등으로 전환하여 이용토록 하고, 대체시설을 추진
- 각종 시설 및 자재는 수도법 제13조, 동법시행령 제8조,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에 적합하도록 설계
- 단가적용 : 농업용지하수사업비산정기준(수리 51322-478, '94. 10. 12)을 참고하고 동일공종의 공인품셈이 있는 경우 비교하여 적은값 적용

(나) 수원공시설

- 관정 및 이용시설계획은 마을규모등에 의한 계획수량에 따라 적정규모의 수중모타펌프, 송수관, 수조, 배수관 별로 각각 산정하며, 본 지침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정비 51370-246('95. 7. 21)호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계획설계요령”을 활용하여 지역실정에 따라 정함.
- 수중모타펌프의 설치위치 및 규격은 양수시험결과에 의한 안정수위, 양수량, 전양정길이 등을 고려하여 안정수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
 - 수중모타펌프의 용량은 필요한 용수공급측면과 이용자의 비용부담여력 측면이 있으므로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정함.
- 지하수법 규정에 의한 유량계, 출수장치, 수위측정관 등을 설치
- 식수부족은 심각하고, 유지관리비(전기료 등) 부담이 어려운 영세한 마을인 경우는 예외적으로 수중모타펌프 및 전기시설을 생활용수 부분만 우선 계획하여 전력기본요금 부담을 줄이고 나중 농업용수분 등의 용량확대에 대비 전선 및 수전반 판넬을 계획할 수 있음
(극심한 가뭄시 수전반 내의 마그네트와 브레이크 등 일부 부품교체로 용량을 쉽게 변경할 수 있는 구조)
<참고 : 수중모터펌프 규격 예시>

가 구 수(호)	50호 이하	51~100	101~150	비고
펌프규격(HP)	5HP	7.5HP	10HP	

- ※ 수중모타펌프 용량별 전기시설은 10HP 이하에서는 Δ 직입기동 (전선 3가닥), 15HP 이상은 Y- Δ 방식(전선 6가닥)으로 전기배선이 상이에 유의
- 압상관은 계획수량을 충분히 통수할 수 있는 단면으로 하고 소켓형에서는 사용중 관체간 분리 위험성을 사전 대비토록 함.

(다) 이용시설

- 송수관은 생활용수공급을 주 대상으로 하며, 지역여건에 따라 축산용수, 농산물세척가공용수를 포함할 수 있음.
- 송수관이 긴 경우 관마찰손실수두가 증가하므로 적정유속으로 관경을 계획하여 모타펌프의 동력이 과대하게 되지않도록 함(모타펌프 기종과 연계하여 계산).
- 수조(물탱크)의 용량은 생활용수를 주 대상으로 하고, 수조의 재질은 위생, 내구연한 등을 감안 스테인레스 제품을 우선 고려하며 수질유지를 위하여 저류시간 단축 및 공기접촉을 최소화하는 구조로 한다. 종래의 콘크리트 수조, FRP 수조의 선택은 신중을 기함.
- 수조(물탱크) 용량은 관정의 고장시 인구 1인당 식수 80~100ℓ 정도를 공급할 수 있고 또한 Peak 시간대의 수급 조절용(1일 사용량의 20~30%)으로 사용하며, 수조의 용량은 지역특성에 맞게 정하되 마을상주 인구에 비하여 과대크기로 설치하지 않도록 함. 다만, 고장시 수리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섬지역 등은 예비펌프를 확보하고 수조는 다소 크게 할 수 있음

<참고 : 수조 용량 예시>

가 구 수(호)	30~39	40~59	60~79	80~99	100~120호
인 구(명)	90~121	122~183	184~245	246~307	308~372
수조용량(m ³)	10	15	20	25	30

- 수조(물탱크)는 물공급이 원활하도록 충분히 높은 곳에 설치하되 동파 및 수온변화가 없도록 설치하고, 송·배수관 등은 동결심도 이하 및 중차량 하중에 견딜 수 있도록 설계
- 정수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설치비는 최고 10백만원을 기준으로 하되, 추가되는 비용은 지방비 등을 투입토록 함.

- 수조(물탱크)는 외부인의 출입을 방지토록 하고 (필요시 울타리시설) 출입문과 물탱크덮개는 시건장치를 하여 안전을 도모함.
- 지역주민이 천재지변, 화재등 긴급 재난시 비상급수 시설을 희망할 경우 민방위 시설 규격의 소화전을 설치할 수 있음.
- 수량부족 또는 수질불량으로 발생한 폐공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지하수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폐공처리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
 - 암반관정 개발시 발생한 폐공처리 (부록1 참조)

(6) 공사감리

- 시장·군수는 수도법 제14조, 시행령 제19조,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적격자를 공사현장에 배치하여 공사감리를 실시토록 하며, 필요시 전문기관에 위탁 가능함

(7) 사업준공

- 공사완료 후 계약서, 설계서 등 이행여부 확인 검사
- 시설완공후 생활용수공급을 개시하기 전에 “먹는물수질기준및검사등에 관한규칙”에 따른 전항목(46개) 수질검사를 재실시하여 수질기준에 적합 여부를 재확인함.
- 완공된 수원공, 이용시설 및 폐공발생 및 처리사항등의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고 지하수법 등 제규정에 따라 조치
- 공사착공, 시공중, 준공사진을 촬영하여 시공대장에 첨부 비치

사. 사업비 지원

- 지구당 평균지원단가 170백만원
 - 국고보조(농특세) 50%, 지방교부금(농특세) 50%
- 시·도지사는 마을규모, 관정심도, 송수관로 길이 등에 따라 지원사업비를 탄력적으로 조정집행할 수 있음.
- 추가시설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군수는 지방비를 지원하여 설치함.

<행정사항>

가. 사후관리

(1) 시설관리자 : 시장·군수

- 수도법 제17조, 시행령 제22조, 시행규칙 제9조 규정에 적합한 공무원 (시·군 수도과 등)을 담당자로 지정하고 생활용수유지관리조직(계) 대표 1인을 관리자로 지정하여 관리

(2) 관리방법

- 시설물의 관리대장 (별지 제5호 서식)을 작성하여 비치함.
- 생활용수 공급을 위한 급배수시설을 수도법 규정에 따른 간이상수도시설로 등록하고 시·군 간이상수도 시설관리 조례에 따라 유지관리
- 일반적인 시설운영은 마을자체 유지관리조직(계)을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관리함.
- 시장·군수는 관리조직으로 하여금 유지관리비(전기료, 소독약품대, 시설개보수비 등)를 징수하여 발생한 비용을 지불하고 일정액을 적립(지역주민자치로 운영)토록 지도함.
- 또한 시장·군수는 유지관리조직(계)의 활성화를 위하여 수질검사나 고장수리 서비스지원 등으로 정상 운영시까지 편의를 제공하고, 수시로 시설이용상황을 파악하며,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애로사항을 지원함.
- 시설점검정비 : 관리조직이 우선실시하고, 자체 점검정비가 불가능한 시설물은 시장·군수가 기술인력을 지원(농업기반공사 등 전문기관 활용)
- 유지관리조직(계)은 관정개발 후 지하수 오염방지를 위하여 영향구역 내 잠재오염원 (축산폐수 등)이 생기지 않도록 예방 노력을 함.
- 수질검사 : 수도법 및 먹는물관리법 제5조 규정에 의한 정기적 수질검사 실시
 - 수질검사는 “먹는물수질기준및검사등에관한규칙” 별표2에 의한 먹는물의 수질검사방법에 의거 시행
 - “먹는물수질기준및검사등에관한규칙(2002.6.21개정)” 제4조(수질검사 횟수)의 규정에 따라 일반세균·총대장균군·대장균(또는 분원성대장균군)·불소·암모니아성질소·질산성질소·냄새·맛·색도·망간·탁도·알루미늄 및 잔류염소에 관한 검사는 매분기 1회이상 실시하고, 전항목검사(46개)는 매년 1회이상 실시.(검사비용은 시·군 부담)

- 개발완료후 이용시설의 수질검사결과 부적합 판정시에는 사용을 중지
토록하고 대체시설 개발 등 사후조치후 결과보고

※ 참고 : (별표1) “먹는물 수질기준 및 인체에 미치는 영향”

- 시설물 보호 : 시설물이 손상 오염되지 않도록 관정 및 수조에는 안내판을
제작설치하여 외부인의 무단출입을 방지(별지 제6, 7호 서식)
특히, 양수장, 물탱크, 염소소독기 관리철저

○ 유지관리 실태확인

시장·군수는 수시로 시설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파악하고
반기별(6월말, 12월말기준) 이용실태 (이용하지 않거나 저조한 시설은 지구명,
위치, 미사용 또는 저조한 이유 및 대책) 에 대하여 시·도지사에게 보고하고
시·도지사는 이를 종합하여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함

(3) 이용이 저조한 시설 또는 수질·수량 변화시설등에 대한 대책

- 전기료등의 비용부담을 하지않아 이용이 저조한 시설은 전력기본요금을 낮추기
위하여 시·군지원으로 소형모타펌프로 대체(기 설치된 모타펌프는 가뭄
대비 보관, 타지구로 활용 전배 등)하는 방안을 검토함.
- 지역여건변화로 상수도가 개발되었거나 관정만 시설을 하고 이용시설을
설치하지 않는 경우는 시장·군수가 주민의견 수렴을 거쳐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은후 농업용수용으로 전환
- 지하수가 먹는물수질기준에 미달하거나, 수량부족등으로 기능이 저하된
경우에는 지자체에서 농업기반공사등 전문기관에 원인조사(우물검층 등
대수층조사)를 의뢰하고 결과에 따라 보강공사(우물그라우팅, 정수지설치 등)
또는 사용량을 조정하며, 조사결과가 농업용수용으로 전환등 계속사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주민의견 수렴후 시·군에서는 시·도에 보고하고 대체
수원을 개발 함.

나. 보고

- 익년도 사업대상지 보고 : 별지 제2호 서식, 매년 8. 30까지
- 사업시행 인가 결과보고 : 별지 제2호 서식, 매년 3월말까지
- 공정계획 수립 결과보고 : 별지 제3호 서식, 매년 3월말까지
- 사업추진상황 보고 : 별지 제4호 서식, 매월말 추진현황을 익월 10일까지
- 시장·군수는 매분기 실시한 수질검사 및 조치결과를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매분기 종료후 익월 10일까지 시·도지사에게 보고, 시·도지사는 12월말 현재 전항목에 대한 수질검사결과를 익년도 1월 15일까지 농림부에 보고

다. 기타

- 시장·군수는 농림업무 지방자치단체 평가지침서에 명시된 농촌생활용수개발 사업(공공) 평가내용과 항목을 준수하여 효율적 사업추진이 되도록 한다.
- 선개발시설 이용 : 가뭄 등 긴급한 사유로 공사중에 지하수를 우선 식수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수질검사를 실시한후 이용함.
- 기타 본 요령에 명시되지 않는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지하수개발실시 요령, 관정 및 양수장비 관리지침, 지하수관계법령, 상수도 공사표준시방서, 상수도 시설기준 등 제규정을 적용

6. 2004년 사업신청안내

가. 신청서 제출기관 : 시장·군수

나. 신청자격

- 면단위 이하 농어촌지역의 자연마을중 우물, 하천수 등 자연수 이용마을
- 간이상수도 이용마을중 필요수량이 현저하게 부족하거나 오염된 마을

다. 신청절차

- 희망마을 → 면 → 시·군 → 시·도

라. 구비서류

- 농촌농업생활용수개발 신청서 (별지8호 서식)
- 위 치 도
- 시설현황 및 생활용수대상 현황

<부 록 1>

암반관정 폐공처리 유의사항

1. 관정개발 관련 법령 및 지침서

□ 지하수법, 시행령, 시행규칙 관련 조항

- 지하수개발 이용신고 (법 제82조, 영 13조, 시행규칙 82조)
- 지하수 영향조사 (법 제7조, 영 제9조 및 제12조)
- 허가 사항의 변경(시행규칙 제7조)
- 원상복구 (법 제15조, 영 제24조)
- 준공신고 (법 제9조)

□ 지하수관련 지침서

- 농촌지역지하수오염방지대책 ('99. 12 농림부, 농진공 발간)
- 지하수업무수행지침서 ('99. 6 건설교통부 발간)
- 방치된폐공관리지침 ('99. 12 환경부 예규 제195호)

2. 폐공발생 예측 및 사전대비

- 착정위치는 지적도(1/1200 등)에 정확히 표시
- 폐공처리비 확보는 지구당 1개소를 우선 설계에 계상하거나 입찰차액으로 예산을 확보한 후 최종정산시 시도에서 일괄 가감정산처리 방안을 검토
 - ※ 참고 : 농업기반공사 폐공처리 단가 78만원
- 시·군에서 지하수전문기관(농업기반공사등)에 위탁하지 않고 공사 감독등을 직접시행할 경우는 착정의 주요공정인 케이싱 외부 밀크액 주입상태(그라우팅) 검사 및 폐공처리시 모래의 충전과 밀크액 주입상태 검사(표면처리공사 직전)에 대하여 공사감리를 일부 용역하는 방안을 강구
 - ※ 시군에서 전문기술 또는 인력 부족시 시·도는 농업기반공사(지사)가 지하수오염방지의 공익에 기여토록 실비로 주요공정만 감리를 협조 요청
- 폐공처리 작업시기는 착정장비 이동직전에 실시, 불확정공(수량 일부 부족 및 수질관련)은 성공공에 대한 우물작업이 완료되기 전에 실시하고 폐공처리 전경과 근접사진을 필히 촬영하여 보관

- 지하수전문기관에 공사감리를 위탁하지 않은 지구는 시공업체가 착정장비를 현장투입한 때부터 철수시까지는 작업일지(착정위치, 공정, 착정심도, 실패공 되메움등 기재)를 매주 1회 이상 시·군에 제출토록 함
- 사업지구별로 사업관리자(군1인, 면1인)를 지정하고 담당자는 가능한 착정장비 투입시부터 각자 주1회 이상 현지를 출장하여 시추위치 및 변경위치를 확인하고, 폐공처리 마무리는 표토를 되메움하기 전에 시공상태를 직접 확인하며, 전문기술이 필요하면 농업기반공사(지사)에 지원요청

3. 폐공처리방법

- 폐공처리에 대한 기술적인 방법은 농촌지역지하수오염방지대책('99.12 농림부, 농진공 발간) page44~49와 지하수업무수행지침서('99. 6 건설교통부 발간) page250~262를 적용
- 케이싱은 가능한 인양하여 제거하되, 인양이 어려운 경우에는 지표하 1m이상을 절단하며, 되메움 방법은 공의 구조, 지층의 성질, 재료 및 장비의 확보조건, 주변 우물에의 영향, 주변오염원까지의 거리, 비용 등을 고려함.
- 폐공 전구간을 투수성재료 되메움구간, 불투수성재료 되메움구간 및 표면처리구간으로 구분하여 각 구간별로 적합하게 되메움을 실시
- 폐공처리 작업기간은 케이싱 제거, 모래충진, 밀크액(시멘트1:물1) 주입 등에 2일 이상 실시하며, 공내 되메움은 공동이 발생되기 쉬우므로 주입재(모래등)를 2~3회에 나누어 충진하고, 24시간 경과 후 다짐상태 및 공동발생 여부를 확인하고, 표면처리공사를 시공
- 주입재가 분리현상이 심하거나 균열된 틈새로 침투가 어려우며, 빈틈메우기에 체적팽창이 필요한 경우 벤토나이트를 혼화재로 사용할 수 있고, 시멘트중량의 2%(부피의 3%)를 일반적으로 사용

4. 방치된 폐공의 처리

□ 폐공유무의 확인

- 개발을 신고한 지점과 준공처리 지점의 상이 여부를 우선 확인
- 폐공처리비가 당초(계획보완을 포함) 설계서에 계상여부를 확인
- 지하수전문기관(농업기반공사등)에 위탁하여 시행하지 않고, 민간업체 시공분은 철저히 확인하며, 특히 폐공발생을 보고하지 않은 지구는 주민청문조사를 실시(이장,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 및 주민에게 탐문 확인)

⇒ 시·군은 미처리폐공을 발견한 즉시 규정대로 폐공처리 조치

□ 폐공처리의 적정시공 여부 확인 및 조치

- 폐공처리의 부적정 유형에는 모래·시멘트 주입은 했으나 상부매움콘크리트 두께부족 및 타설불량, 모래·시멘트주입량이 부족하거나 처리깊이 부족, 모래·시멘트 주입없이 콘크리트 타설하는 경우등이 있음
 - 시공상태에 대하여 주민 청문조사를 실시(이장,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등)
- 폐공처리대장 비치 및 기록을 확인하고 작업일지 등에서 폐공처리 작업 기간(2일이상 여부)과 폐공처리 사진을 검토하여 전경과 근접사진 2매 유무및 내용을 확인
- 준공정산서에서 폐공처리비 내역을 확인하고, 공법(투입재료 및 양)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

⇒ 미흡한 곳은 포크레인등으로 굴착 확인하고 제대로 폐공처리 실시

<별표 1>

먹는물 수질기준 및 인체에 미치는 영향

□ 근거 : 먹는물관리법 제5조

- 먹는물수질기준및검사등에관한규칙(2002.6.21개정) 별표1 : 2002.7.1부터 시행
- 수질검사기준이 개정될 경우에는 개정사항 적용

○ 미생물에 관한 기준(3항목)

항 목	허용기준	오 염 원	인체에 미치는 영향
1 일반세균	100CFU/ml	하수오물, 폐기물, 인간 및 동물의 배설물	수처리 효율의 지표로 이용되며, 세균에 의한 오염여부의 판단자료
2 총대장균군 (Total Coliforms)	불검출/100ml	정화조, 오수, 폐기물	병원성 미생물의 존재가능성에 대한 지표
3 대장균/ 분원성대장균군	불검출/100ml	인간 및 동물의 배설물	"

○ 건강상 유해영향 무기물질에 관한 기준(11항목)

항 목	허용기준	오 염 원	인체에 미치는 영향
4 납(Pb)	0.05mg/ℓ	안료, 도료, 활자제조업, 연관제조업, 인쇄공장, 유리제조공장 등의 폐수 및 납관에서 유출	0.5mg/day이상 섭취시 축적 만성중독 - 정신착란, 심근마비, 악성빈혈 급성중독 - 복통, 구토 소아 : 신경, 면역장애
5 불소(F)	1.5mg/ℓ	지하수중의 천연상태 (불소인회석), 살충제, 방부제, 불소화학	충치예방효과 만성중독 - 반상치 신장 : 지방산 산화효소활성저하 간 : 질소, 지방함량 감소
6 비소(As)	0.05mg/ℓ	광산제련공업, 의약품 및 비소계 살충제 제조공장 폐수, 안료 및 도료공업 유기, 무기상태 (3, 5가 : 독성크다)	만성중독(0.21mg/ℓ 이상) - 수족지각장해, 수족각화증, 빈혈, 흑피증, 손톱, 모발의 위축, 급성중독(성인 : 5~50mg섭취) - 구토, 설사 100~150mg : 경구치사량
7 셀레늄(Se)	0.01mg/ℓ	전기부품(광전지), 정류기제조에 이용	위장장애, 피부의 황달성착색, 치아장애, 위장관으로 93%흡수, 알칼리병, 혈운증

	항 목	허용기준	오 염 원	인체에 미치는 영향
8	수 은 (Hg)	0.001mg/ℓ	소다공업, 농약제조, 수은 정제공장, 도료공장폐수, 폐건전지 무기상태(1,2가염 : 15% 흡수), 유기수은(메틸수은: 미생물에 의해 생성, 100% 흡수되어 먹이 사슬에 축적)	만성중독 : 언어장애, 지각이상, 신경쇠약, 난청유발, 생식선 자극(돌연변이) 급성중독 : 위장병, 구내염, 신장장해(단백뇨) 유기수은이 축적된 담수어의 섭취 (일본 : 미나마따병)
9	시 안 (CN)	0.01mg/ℓ	도금공장, 가스공업, 크롬공장, 정유공장 폐수	세포호흡저해, 질식성경련, 의식장해, 뇌의 젖산함량증가로 인한 혼수상태와 뇌손상 50~60mg : 경구치사량 0.05mg/ℓ 이상 : 물고기에 유해
10	6가크롬 (Cr ⁺⁶)	0.05mg/ℓ	염색공업, 피혁제조, 석유 화학공업, 도금공장폐수	만성중독 - 피부궤양, 폐암유발 급성중독 - 미각장해, 위장염 0.1mg/ℓ : 음용수로서 유해
11	암모니아성 질소 (NH ₃ -N)	0.5mg/ℓ	가정하수, 산업폐수, 동물 배설물, 비료, 폐기물의 침출수, 자동차 및 연소기관, 대기중의 낙진, 토양 내의 유기물질	
12	질산성질소 (NO ₃ -N)	10mg/ℓ		유아 : 10mg/ℓ 이상의 물과 우유는 청색증(Blue baby) 유발 (Methemoglobinemia : 혈액과 반응하여 호흡장애)
13	카드뮴 (Cd)	0.005mg/ℓ	광산(깡내수의 산성화에 의한 용출) 습식제련공정중 가용성염의 용출, 도금공장폐수, 급수 설비에 의한 오염	간, 신장, 갑상선, 뼈에 축적 만성중독 - 내분비, 칼슘대사, 신장, 위장장해, 골연화증 카드뮴에 오염된 쌀의 섭취 (일본 : 이따이 이따이병)
14	보론 (B)	0.3mg/ℓ	boron mineral의 광석, 제련, 고무·유리·페인트공장, 제조제 등	과다할 경우 뇌에 축적 만성중독 - 탈모, 월경장애 급성중독 - 호흡기자극, 기침, 폐부종

○ 건강상 유해영향 유기물질에 관한 기준(16항목)

항 목	허용기준	오 염 원	인체에 미치는 영향	
15	페놀 (C-H-OH)	0.005mg/ℓ	석탄, 석유정제, 도시가스, 제약, 페놀계 합성수지 공장폐수, 살충제의 미생물 분해	소독용 염소와 반응하여 클로로페놀 생성(독성보다 악취가 문제) 만성중독 : 중추신경계 마비
16	다이아지논	0.02mg/ℓ	유기인계 농약물질, 살충제 합성제조, 석유제품 촉매	맹독성, 발암성물질, 신경과 뇌신경계 마비증상, 근육경련
17	파라티온	0.06mg/ℓ		
18	페니트로티온	0.04mg/ℓ		
19	카바틸	0.07mg/ℓ	제초제, 살충제	구토, 설사, 기관지수축, 경련, 시력 감퇴, 혼수상태, 호흡곤란
20	1,1,1-트리클로로에탄 C H D1	0.1mg/ℓ	금속세척, 드라이크리닝 세제	눈 점막자극 고농도 : 마취
21	테트라클로로에틸렌 (PCE) C C1	0.01mg/ℓ	금속탈지공업, 드라이 크리닝용매, 염소화탄산 수소류 생산공장	중추신경계 억제, 불쾌감, 마취 고농도 : 의식불명, 반사기능 저하, 간장장애, 다발성신경염, 간종양유발
22	트리클로로에틸렌 (TCE) C HC1	0.03mg/ℓ	금속산업 : 비운활용매, 드라이크리닝 용매, 식품추출용매, 흡입마취제	급성중독 - 중추신경계억제, 두통, 간장해, 관절이상, 간종양유발
23	디클로로메탄 CH C1	0.02mg/ℓ	살충제, 니스, 공업용세척제	혼수상태, 신경계와 점막자극, 발암성
24	벤젠 CH	0.01mg/ℓ	화학공장 : 페놀, 사이 크로hex산 생산의 중간	만성중독 - 빈혈, 백혈구감소, 면역 기능저하 중추신경계 기능저하, 기형, 발암, 변이성은 없음
25	톨루엔 C H CH	0.7mg/ℓ	물질 공업 : 플라스틱, 페인트 경화제의 합성을 위한	
26	에틸벤젠 C H C H	0.3mg/ℓ	중간물질이나 용매, 기체코크생산의 부산물	
27	크실렌 CH ₄ (CH ₃) ₂	0.5mg/ℓ	석유류	메스꺼움, 구토, 의식불명 유발, 신장 및 간장손상
28	1,1디클로로 에틸렌	0.03mg/ℓ	폴리머원료	신경쇠약, 간기능장애, 시각장애

	항 목	허용기준	오 염 원	인체에 미치는 영향
29	사염화탄소	0.002mg/ℓ	염소계유기용제 도료 및 플라스틱제조	피부, 순환계, 호흡기계, 혈액, 신장, 간장, 위장장애
30	1,2-디브로모-3-클로로프로판	0.003mg/ℓ		

○ 심미적 영향물질에 관한 기준(16항목)

	항 목	허용기준	오 염 원	인체에 미치는 영향
31	경도	300mg/ℓ	자연적, 사회적조건에서 유래 (Ca, Mg, Sr, Ba)	다량 존재시 불쾌한 맛
32	과망간산칼륨 소비량	10mg/ℓ	폐기된 유기물	유기물 오염정도 지표
33	냄새	무미무취	용수원의 수질변화 물처리공정의 결함, 급수관의 화학적 부식, 미생물 성장을 암시	
34	맛			
35	동(Cu)	1mg/ℓ	동제련공장, 금속표면(도금)업소, 수도용 동관	1mg/ℓ : 청색, 착색 1.5~3mg/ℓ : 금속성 맛 5mg/ℓ : 뚝은 맛 80~170mg/ℓ 섭취 : 간장장애
36	색도	5도	미생물, 플랑크톤의 번식 용해성물질, 오수 등의 혼입	심미적 나쁜영향
37	세제(음이온 계면활성제)	0.5mg/ℓ	합성세제	1.0~1.5mg/ℓ : 기름기있고, 생선냄새 규제이유 : 맛, 거품
38	수소이온농도 (pH)	5.8~8.5	알칼리폐수 또는 산폐수	낮은 pH : 수도시설의 부식 높은 pH : 쓴맛, 미끈미끈한 느낌, pH8.0이하에서 염소소독이 효과적
39	아연(Zn)	1mg/ℓ	광산제련공업, 지하수중 천연유래	20~30mg/ℓ : 금속맛, 뚝은맛 급성중독 : 구토, 탈수 근육조절불능, 전해질 불균형

	항 목	허용기준	오 염 원	인체에 미치는 영향
40	염소이온 (Cl ⁻)	250mg/ℓ	세균소독을 위해 투입	불쾌한 맛, 부식유발
41	증발잔류물	500mg/ℓ	맛, 경도, 부식성에 영향	급수시스템의 부식, 스케일의 형성
42	철(Fe)	0.3mg/ℓ	지하수나 저수지 심층수 중에서 천연유래	0.3mg/ℓ : 황갈색, 적갈색 0.5~1mg/ℓ : 금속성 맛 급성중독 - 설사, 구토, 혈색증
43	망간(Mn)	0.3mg/ℓ	광산, 공장배출수 화학비료	0.05mg/ℓ : 흑색, 흑갈색 0.5~1mg/ℓ : 금속성 맛 56mg/ℓ : 개의 치사량
44	탁도	1NTU	가정 및 산업용수의 일반적인 수질오염지표	살균소독방해, 유기체에 의한 질병 감염 우려, 부유물질의 함유의미
45	황산이온 (SO ₄ ⁻²)	200mg/ℓ	산업폐수, 대기방출, 화석연료의 연소	1000mg/ℓ : 설사유발 알카리도 낮은 물에서 급수계 금속 부식
46	알루미늄	0.2mg/ℓ	산업폐기물, 광물, 토양 침출, 응집처리	0.1mg/ℓ 이상 : 변색(퇴색) 경구섭취시 거의 배설, 호흡기 흡입시 허파와 임파선에 축적

농촌농업생활용수개발사업 신청서

(○○시·군 ○○면 ○○지구)

1. 마을 작성용

마을위치 : 도 시군 면 리(○○마을)

마을규모 : 호 명

현재 이용시설현황

- 간이상수도 개(인), 우물 개, 샘 개, 소형관정 개
- 수질상태 : 양호 , 수질기준미달

마을회의 (일시 : 장소:)

- 참석 : 대상 호, 참석 호(%)
- 회의결과

 - 희망가구 : 호, 인 (마을인구대비 %)
 - 농업용수 : 논 ha, 밭 ha, 기타 :
 - 자체 유지관리조직(계) (대표 :)
 - 전기료 등 부담 가능여부: 호(인)

※ 월사용료 : 시군에서 이용자가 많고 적음에 따라 다르고, 추정금액을 해당마을 실정에 맞추어 사전 설명.

2. 시·군 작성용

대상지 적정여부 검토

- 5000개소 대상지에 포함 여부(정비51370-10150호(2000.9.29))
- 상수도 계획 수립 또는 예정지인지 여부
- 수혜인구수가 충분한지 (사업타당성)
- 완공후 시설이용 가능성(전기료 부담 등)

시설규모 계획

- 생활용수 : 톤/일 (호, 인)
- 농업용수 : 톤/일 (논 ha, 밭 ha, 기타)
- 시설규모 : 수중모터펌프 HP
 송수관 구경 mm, 길이 m
 수조용량 m³ (재질)
- 추정사업비 : 총 백만원(수원공: ,이용시설:)

※ 상수도부서의 상수도계획 중복여부 확인서 공한사본 첨부

자체가26-54

농촌 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 대상지(시행인가, 계획변경)보고

우선순위	지구명	위치			개발공수	급수대상							사업비(백만원)			선정기준		수맥조사		비고				
		군	면	리		총이용량	생활용수			관개용수			축산수산공업등	계	국고	지방교부금	기타	정주권지구	일반지구		실시	미 실시		
							이용량	가구수	급수인구	이용량	답작	전작											m ³ /일	m ³ /일
계					공	m ³ /일	m ³ /일	호	명	m ³ /일	ha	ha	m ³ /일											

- ※ 1. 생활용수는 250 l -300 l /인/일 기준
- 2. 개발공수는 필요수량을 감안하여 결정하되, 1지구당 사업비(수원공 및 이용시설)는 170백만원 계상
- 3. 선정기준, 수맥조사는 해당란에 ○표
- 4. 비고란에는 기타 참고자료 기재
- 5. 1:25,000 지형도 원도에 지구위치 표시(도면을 자르지 말 것)

[별지 제3호 서식]

자책가26-55

농촌 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 공정계획

○○군 ○○면 ○○마을

사업시행년월일 :

착공년월일 :

(단위: 천원)

	승인액		○년도 까지			년도계획		년도이후		분기별 공정계획				비고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공정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1/4 분기	2/4 분기	3/4 분기	4/4 분기	
계														
○ 수 원 공	공													
○ 이 용 시 설														
- 양수장	m ²													
- 물탱크	m ³													
- 송수관	m													
- 기 타														
○ 용지매수 및 보상비														
○ 측량설계비														
○ 공사감독비														
○ 관 리 비														
○ 기 타														

심사제외

농촌 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 진도보고

지구명	위 치			급 수 계 획				사업계획			사업비(백만원)				진도(%)		특기사항		
	군	면	리	생활용수		관개용수		기타용수	개발공수	배수지	송배수관	계	국고	지방교부세	기타	계		수원공시설	이용시설
				가구수	인구	답작	전작												
				호	인	ha	ha		공	m ³	m								

지하수개발 시설물 관리대장

코드번호: 지구명: 위치: 도 군 면 리 지번: 관리자:				
○ 공사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사업비	계	국고	지방비	기타
이용현황	○ 급수면적 : ha - 답 : ha - 전 : ha ○ 생활용수 : 호(명) ○ 기타용수 :			
주 요 시 설 내 용				
○ 착 정				
- 관 정 : 구경 m/m, 심도 m				
- 양수량 : m ³ /일				
- 우물자재설치 : 파이프 m, 유공관 m				
- 수 위 : 자연수위 m, 안정수위 m				
○ 이용시설				
- 물 탱 크 : m ³				
- 양 수 장 : 평				
- 송 · 배수관 : m				
○ 시공업체				
○ (수중)모타펌프				
- 구경 ()m/m, 설치심도 ()m				
- 마력 ()HP				
- 제품명 :				
주 상 도				
심 도	층 후	주상도	지 질	비 고
m	m			

자체가26-1-6

농촌 농업·생활용수 수질검사 결과보고

1. 검사결과 총괄

시·군	시설수 (개소)	급수인구 (명)	검체수 (개)	검사결과(개)		비 고 (검사미 실시 건수, 사유)
				적 합	부적합	
계						
○○시						
○○시						
○○군						
○○군						
○○군						

2. 부적합 내역

지구명	소재지	1일 평균 이용자수	부적합 항목 및 검사결과	조치내용	비 고

[별지 제7호 서식]

농촌 농업 · 생활용수용 암반관정 시설 안내판

시 설 명	○○ 지구 농촌 농업 · 생활용수용 암반관정					
관리번호				개발년도		
위 치	시·군 면 리 번지					
관정구경	m/m	심 도	m	자연수위	m	안정수위 m
모타설치심도	m	동 력	HP		양수량	m ³ /일
관 리 자	○○ 시·군 ○○○ 면 ○○○ 리 ○○○ 번지 성명 ○○○ (TEL)					
	○○ 시·군 ○○○ 과 ○○○ 계 성명 ○○○ (TEL)					
수질검사 실시현황	일 자	의 퇴 자	검 사 항 목	검 사 기 관	검 사 결 과	
<p>협 조 사 항</p> <p>1. 이곳은 농림부의 농어촌특별세 지원으로 설치한 농촌 농업 · 생활용수용 암반관정 시설입니다.</p> <p>2. 이곳에서는 상수원의 수질보호를 위하여 일체의 수질오염 행위와 관계자 이외의 무단 출입을 금하고 있으니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오염행위 및 시설 이상을 발견시에는 ○○ 시·군 ○○ 과 또는 관리자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 군 수 (시장)</p>						

- 규 격 : 가로 40cm , 세로30cm
- 재질 및 두께 : 스텔레스강판 1.5mm(STS 304(27종) A급)
- 글 씨 : 검정색
- 부 착 장 소 : 양수장 출입문 좌측 상단

농촌 농업·생활용수 배수지 시설 안내판

알 림

1. 이곳은 농림부의 농어촌특별세 지원으로 설치한 농촌 농업·생활용수 급수 시설입니다.
2. 이곳에서는 상수원의 수질보호를 위하여 일체의 수질오염행위와 관리자 이외의 무단 출입을 금하고 있으니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설명 : ○ ○ 지구 농촌 농업·생활용수 배수지 시설
- 관리번호 :
- 위치 : ○ ○ 시·군 ○ ○ 면 ○ ○ 리
- 시설용량 : 톤
- 사업기간 : 년 월 ~ 년 월
- 사업시행자 : ○ ○ 시장·군수
- 관리자 : ○ ○ 시·군 ○ ○ 면 ○ ○ 리 ○ ○ 번지
 성명 ○ ○ ○(TEL)

○ ○ 시·군 ○ ○ 과 ○ ○ 계
성명 ○ ○ ○(TEL)

※ 오염행위 및 시설이상을 발견시에는 ○ ○ 시·군 ○ ○과 또는
 관리자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군 수 (시장)

- 규 격 : 가로 100cm , 세로80cm
- 재질 및 두께 : 스텐레스강판 1.5mm(STS 304(27종) A급)
- 글 씨 : 검정색
- 부 착 장 소 : 배수장 울타리 출입문 옆 지상 1.2m